동행·매력 특별시 서울

서울시보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www.seoul.go.kr

제4106호

2025. 11. 13.(목)

서울특별시

목 차

◈ 자치법규 등

[규 칙]

제4743호 서울특별시 행정감사 규칙 일부개정규칙 ····· 5

[입법예고]

제2025-3183호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8

제2025-3184호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20

제2025-3196호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23

제2025-3199호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27

제2025-3200호 서울특별시 의정회 설치 및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33

제2025-3207호 서울특별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36

제2025-3215호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41

제2025-3224호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45

◈ 고 시

제2025-615호 제3종시설물의 지정고시 ····· 52

제2025-616호 안암동 캠퍼스타운 도시재생활성화계획(변경) 고시 ····· 54

제2025-617호 도시관리계획(미아역 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62

제2025-618호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 ····· 114

제2025-619호 구의·자양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구의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경미한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117

제2025-621호 온수근린공원(벽산지구)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121

제2025-622호 금천구 독산동 292-6 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청년안심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변경)·지구계획 승인(변경) 및 도시관리계획(독산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 ····· 137

제2025-623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153

제2025-624호 우신빌라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154

제2025-625호 도시관리계획 [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내 특별계획구역14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일원개포한신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경미한)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181
제2025-627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198
제2025-628호 목동11단지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특별계획구역11 세부개발계획 수립 · 지형도면 고시 ····· 210
제2025-629호 창신동 23-606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284
제2025-630호 창신동 629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329
제2025-631호 도곡우성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경미한)변경 결정, 지구단위계획(경미한)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365
제2025-632호 신반포19차 · 25차 아파트 (통합)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변경)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 도시관리계획(반포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386
제2025-634호 서초구 서초동 1673-3 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청년안심주택)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고시 ····· 437

◈ 공 고

제2025-3134호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 ····· 441
제2025-3138호 녹색교통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부과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 443
제2025-3139호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과태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 446
제2025-3140호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과태료 부과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 451
제2025-3145호 종합건설사업자 처분 사전통지(청문) 공시송달 공고 ····· 457
제2025-3148호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 ····· 458
제2025-3149호 자동차번호판 영치 사전안내서 공시송달 공고 ····· 459
제2025-3152호 종합건설사업자 처분 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 공시송달 공고 ····· 594
제2025-3153호 종합건설사업자 처분 사전통지(청문) 공시송달 공고 ····· 595
제2025-3165호 도시관리계획((구)서초소방학교 부지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 열람공고 ····· 596
제2025-3166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인가 취소 처분 통지 공시송달 공고 ····· 597
제2025-3173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공고 (공시송달) ····· 601
제2025-3174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 603
제2025-3175호 정보통신공사업 행정처분 공고 ····· 605
제2025-3177호 도시관리계획(필동 일대 지구단위계획 및 장충동2가 191일대 특별계획구역 지정 및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안) 열람공고 ····· 607

제2025-3181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632
제2025-3182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 통지 공시송달 공고 ····· 633
제2025-3189호 공영주차장 부대시설 사용료 및 변상금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 ····· 634
제2025-3190호 공영주차장 부대시설 사용료 및 변상금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 ····· 636
제2025-3198호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 ····· 638
제2025-3201호 2025년 제11차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공고 ····· 639
제2025-3202호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 ····· 643
제2025-3203호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 ····· 644
제2025-3212호 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 645

◈ 구 고 시

제2025-171호 - 창신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내 소단위관리지구 - 개발행위허가 제한 연장 및 지형도면 고시(종로구) ····· 668
제2025-172호 익선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 - 건축물 불허용도에 관한 결정(변경)-(종로구) ····· 670
제2025-53호 도시관리계획(중곡역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광진구) ····· 672
제2025-169호 도시관리계획(석관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성북구) ····· 680
제2025-140호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도로)사업 실시계획 고시(강북구) ····· 681
제2025-100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주차장) 중복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강서구) ····· 685
제2025-184호 도시관리계획(개봉역 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고시(구로구) ····· 688
제2025-155호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 (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동작구) ····· 694
제2025-157호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 (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동작구) ····· 710

◈ 구 공 고

제2025-1516호 종로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자연경관지구 건폐율·높이 완화 결정(변경) (안) 열람공고(종로구) ····· 727
제2025-1537호 도시계획시설(인왕산근린공원)사업 (부분)완료 공고(종로구) ····· 737
제2025-1529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공고(동대문구) ····· 741

제2025-1789호 도시관리계획(공릉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재열람공고 (노원구) ····· 743
제2025-1846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 열람공고(마포구) ····· 744
제2025-1848호 신촌지역 마포3구역 3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 공람공고(지구단위계획 내용 포함)(마포구) ····· 745
제2025-1934호 도시관리계획(개봉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재열람공고 (구로구) ····· 764
제2025-2091호 관악산 도시공원 부지사용계약을 위한 주민의견청취 열람공고 (관악구) ····· 765
제2025-2186호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사업 공사완료 공고(서초구) ····· 770

◈ 사업소고시

제2025-446호 하천점용허가 고시(미래한강본부) ····· 775
제2025-447호 하천점용허가 고시(미래한강본부) ····· 776

◈ 사업소공고

제2025-445호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위반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미래한강본부) ····· 777

자치법규 등

[규 칙]

◈ 서울특별시규칙 제4743호

서울특별시 행정감사 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행정감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5년 11월 13일

서울특별시 행정감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지방자치법」 제185조”를 “「지방자치법」 제185조”로,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한다.

제7조 본문 중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를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로, “같다.)”를 “같다)”로 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중 “훈령 지침 예규”를 “훈령·예규·지침”으로 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변호인의 참여) ① 위원회는 제14조제2항에 따른 문답서 작성 시 관계자가 신청하는 경우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② 변호인의 참여요건과 제한사유는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제18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제17조제7항 중 “시장”을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감사위원장은(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을 “감사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으로 한다.

제19조제1항제1호 중 “변상명령 :”을 “변상명령:”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문책요구 :”를 “문책요구:”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시정요구 :”를 “시정요구:”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주의요구 :”를 “주의요구:”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개선요구 :”를 “개선요구:”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권고 :”를 “권고:”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통보

:” 를 “통보:” 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고발 :” 을 “고발:” 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훈계 :” 를 “훈계:” 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경고·기관경고 :” 를 “경고·기관경고:” 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주의 :” 를 “주의:” 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처분 등을 병과 할” 을 “처분등을 동시 부과할” 로 한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교육이수 또는 현장봉사) ① 시장은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 당시 재직기간 5년 미만인 공무원의 경우, 제19조제2항제1호에 따른 훈계 처분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주의 처분을 각각 교육이수 또는 현장봉사로 대체하여 처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이수 대상 공무원은 지적된 분야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고, 이수시간은 집합교육 또는 사이버교육 15시간 이상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현장봉사 대상 공무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에서 15시간 이상을 봉사하여야 한다.

④ 교육이수 또는 현장봉사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감사처분결과를 통보받은 날(재심의 신청이 있는 경우 재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이수 확인서 또는 봉사활동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기한 내 교육이수 또는 현장봉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시장은 해당 공무원에게 제19조제2항제1호에 따른 훈계 처분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주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처분 등” 을 “처분등”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변상명령 :” 을 “변상명령:” 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문책요구 :” 를 “문책요구:” 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주의요구, 시정요구 :” 를 “시정요구, 주의요구:” 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본문 중 “통보 :” 를 “통보:” 로 한다.

제23조 중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를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로 한다.

제27조제2항 중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를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로 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선발함에 있어서” 를 “선발할 때” 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자체감사 시 저연차 공무원 보호 방안을 마련하고, 문답 절차 시 변호인의 조력권을 보장하여 감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감·조사 과정에서 문답서 작성 시 변호사 참여 규정 신설(제14조의2)

- 문답서 작성 시 관계자 등이 신청하는 경우 변호사가 변호인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및 참여요건 등 규정

나. 저연차 공무원 대상 신분상 조치 대체처분 규정 신설(제19조의2)

- 재직기간 5년 미만 공무원이 업무 미숙 등 사유로 주의·훈계 처분 대상이 되는 경우, 교육이수 또는 사회봉사로 대체하여 처분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다. 띄어쓰기 및 자구 수정

[입법예고]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5-3183호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11월 13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개정 사항과 민원 처리기한 조정 등 도매시장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반영하기 위해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개정에 따른 사항 반영
- 도매시장거래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련 조항 신설
(안 제56조, 제56조의2, 제56조의3, 제56조의4, 제56조의5)

나. 민원 처리기한 정비
- 산지유통인 등록 신청서 및 구매자 신고서 처리기한 변경
(별지 제11호, 제15호 서식)

3.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 ·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농수산유통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농수산유통과(전화: 02-2133-44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에 기재할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 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서 보내실 곳
(1) FAX: 02) 768-8945
(2) 이메일: erics07@seoul.go.kr
(3) 우 편: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7층 농수산유통과

(4) 온라인: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이 입법예고문 및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legal.seoul.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규칙 제 호

이 규칙의 개정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 등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부터 제64조까지를 각각 제57조부터 제65조까지로 하고, 제56조 및 제56조의2부터 제56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6조(도매시장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① 조례 제43조제1항에 따라 도매시장거래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가목 및 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시 도매시장 업무 부서장 또는 공사 유통관리업무 총괄 부서장(본부장 등)
2. 위촉직 위원
   가. 출하자를 대표하는 사람
   나.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다. 도매시장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라. 소비자단체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56조의2(위원장의 직무) ①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조정위원회를 대표하며, 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6조의3(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①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조정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전문위원회에는 제56조제2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④ 조정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원의 해촉, 제척·기피·회피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 및 제9조에 따른다.

제56조의4(분쟁의 조정 등) ① 도매시장 거래 당사자 간에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당사자는 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조정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쟁조정을 신청받은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조정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사전 조정을 실시하여 분쟁 당사자 간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③ 분쟁조정을 신청받은 조정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분쟁 사항을 심의·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분쟁 당사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조정위원회는 참석위원 전원이 서명한 별지 제33호서식의 심의·조정안 의결서를 작성하여 분쟁 당사자에게 전달하여야 하고, 당사자는 심의·조정안에 동의하면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⑤ 조정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그 밖에 분쟁조정에 관한 세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6조의5(분쟁조정관의 임명·위촉자격·운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분쟁조정관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1. 변호사 또는 경매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10년 이상 도매시장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도매시장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을 갖춘 사람

② 분쟁 당사자는 제56조의4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을 하기 전에 분쟁조정관에게 책임 소재의 판단, 손실 지원의 수준 권고·제시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62조(종전의 제61조) 제1항 전단 중 “제60조제3항”을 “제61조제3항”으로 한다.

제64조(종전의 제63조) 제1항 본문 중 “제62조제1항”을 “제63조제1항”으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처리기한란 중 “7일”을 “3일”로 하고, 별지 제15호서식 처리기한란 중 “7일”을 “3일”로 하고, 별지 제3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33호 서식] (56조의4제4항 관련)

도매시장 분쟁조정위원회 심의·조정안 의결서

가. 신 청 명 :

나. 신청인 및 피신청인 :

다. 신청취지 :

라. 조정(안) :

※ 필요시 별지 사용 가능

마. 조정(안) 의결사항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8조의2에 의하여 위 사건에 관한 조정안을 위와 같이 수락권고합니다.

바. 참석위원 의결

구 분	소속 및 직위	성 명	의결사항		서명
			찬성	반대	
위 원 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56조(도매시장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① 조례 제43조제1항에 따라 도매시장거래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가목 및 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시 도매시장 업무 부서장 또는 공사 유통관리업무 총괄 부서장(본부장 등) 2. 위촉직 위원 가. 출하자를 대표하는 사람 나.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다. 도매시장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라. 소비자단체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신 설>	제56조의2(위원장의 직무) ①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조정위원회를 대표하며, 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 설>	제56조의3(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①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조정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전문위원회에는 제56조

	제2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④ 조정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원의 해촉, 제척·기피·회피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 및 제9조에 따른다.
<신 설>	제56조의4(분쟁의 조정 등) ① 도매시장 거래 당사자 간에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당사자는 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조정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쟁조정을 신청받은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조정위

	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사전 조정을 실시하여 분쟁 당사자 간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③ 분쟁조정을 신청받은 조정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분쟁 사항을 심의·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분쟁 당사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조정위원회는 참석위원 전원이 서명한 별지 제33호서식의 심의·조정안 의결서를 작성하여 분쟁 당사자에게 전달하여야 하고, 당사자는 심의·조정안에 동의하면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⑤ 조정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그 밖에 분쟁조정에 관한 세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 설>	제56조의5(분쟁조정관의 임명·위촉자격·운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사람을 분쟁조정관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1. 변호사 또는 경매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10년 이상 도매시장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도매시장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을 갖춘 사람 ② 분쟁 당사자는 제56조의4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을 하기 전에 분쟁조정관에게 책임소재의 판단, 손실 지원의 수준 권고·제시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56조 ~ 제64조 (생 략)	제57조 ~ 제65조 (현행 제56조부터 제64조까지와 같음)
제61조(사용료 등의 징수) ① 시장은 제60조제3항의 시설 사용자로부터 사용료 또는 임대료와 전기, 가스. 상하수도, 그 밖의 시설 사용에 따른 부과금(이하 "관리비"라 한다)의 매월분을	제62조(사용료 등의 징수) ① ---------- 제61조제3항---------- ---------- -------. ---------- ---------- ----------

납입고지서에 의해 징수한다.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63조(규격출하품의 결정 등) ① 제62조제1항 및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정하는 규격출하품은 국내산 농수산물 중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5조에 따라 국립농·수산물품질관리원이 고시하는 "표준규격품"으로 한다. 단, 시장은 출하물품의 종류 및 특성을 감안하여 따로 규격출하품을 지정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제64조(규격출하품의 결정 등) ① 제63조제1항 ---------- ---------- ---------- ---------- ---------- ----------. ---------- ----------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별지 제11호서식]

산지유통인 등록 신청서

산지유통인 등록 신청서	처리기한 7일
(이하 생략)	

[별지 제11호서식]

산지유통인 등록 신청서

----------	---- 3일
(이하 생략)	

[별지 제15호서식]

구매자 신고서

구매자 신고서	처리기한 7일
(이하 생략)	

[별지 제15호서식]

구매자 신고서

-------	---- 3일
(이하 생략)	

<신 설>

[별지 제88호 서식] (56조의4제4항 관련)

도매시장 분쟁조정위원회 심의·조정안 의결서

가. 신 청 명 :

나. 신청인 및 피신청인 :

다. 신청취지 :

라. 조정(안) :
※ 필요시 별지 사용 가능

마. 조정(안) 의결사항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8조의2에 의하여 위 사건에 관한 조정안을 위와 같이 수락권고합니다.

바. 참석위원 의결

구 분	소속 및 직위	성 명	의결사항		서명
			찬성	반대	
위 원 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5-3184호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11월 13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도시철도 노후시설 안전투자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교통공사의 수권자본금을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서울교통공사의 수권자본금을 현행 25조 원에서 27조 원으로 확대함(안 제4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도시철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팩스 · 이메일 · 등기우편 · 온라인
      (1) FAX: 02)2133-1076
      (2) E-mail: sylee420@seoul.go.kr
      (3) 우편: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6층
      (4) 온라인: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다. 문의: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과(☎02-2133-4342)

※ 이 입법예고문 및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및 시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25조원”를 “27조원”으로 한다.
제5조의2제7호 중 “서울시”를 “시”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자본금) ① 공사의 수권자본금은 25조원으로 하고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가 전액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제4조(자본금) ① ---------- 27조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의2(의회에 대한 보고) 공사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울특별시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의2(의회에 대한 보고) ----------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서울시 및 중앙 투자심사 대상 사업	7. 시 ----------
8.·9. (생 략)	8.·9. (현행과 같음)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5-3196호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5년 11월 13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서울시 물재생센터 내 주민편익시설 운영 현황을 반영하여 시설 사용료 부과기준을 현행화함으로써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서남물재생센터 테니스장 및 탁구장 전용 사용료 폐지(안 별지)
나. 서남물재생센터 사물함 임대료 폐지(안 별지)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물재생시설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물재생시설과(전화: 02-2133-38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이메일 · 등기우편 · 온라인
(1) 이 메 일: juyoung@seoul.go.kr
(2) 등기우편: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15 서소문별관 1동 8층 물재생시설과
(3) 온 라 인: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s://legal.seoul.go.kr)

※ 이 입법예고문 및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s://legal.seoul.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규칙 제 호

이 규칙의 개정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 등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제5조의2제3항제5호”를 “제5조의2제3항제6호”로, “구청장 주관행사시”를 “구청장이 주관하는 행사의 경우에”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물재생시설 내 편익시설 사용시간, 사용료(제2조1항 관련)

1. 서남물재생시설의 편익시설 중 테니스장, 탁구장 및 파크골프장

구 분		기준 및 사용료(원)	비 고
테니스장	사용료 (1면, 1시간 기준)	5,000원	
	조명 사용료 (1면, 1시간 기준)	5,000원	사용료 감면 적용 제외
탁구장	사용료 (1면, 2시간 기준)	3,000원	
파크골프장	사용료 (1회, 2시간 기준)	3,000원	매주 월 휴무
	골프용품 대여료 (1회, 2시간 기준)	1,000원	사용료 감면 적용 제외

2. 탄천물재생시설의 편익시설 중 마루공원 주차장, 테니스장

구 분			기준 및 사용료	비 고
주차장	1회주차 (10분당)		200원	
	월정기권 (비주거자)	전일	70,000원	
		주간	50,000원	
		야간	20,000원	
테니스장	조명사용료	1시간 기준	5,000원	사용료 감면 적용 제외

신 · 구조문대비표

<table>
<tr><th>현 행</th><th>개 정 안</th></tr>
<tr><td>제3조(사용료 감면) ① (생 략)
② 조례 제5조의2제3항제5호에 따라 편익시설이 설치된 물재생시설 소재 지역 자치구의 구청장 주관행사시 편익시설 사용료는 무료로 한다.

[별표 1] 물재생시설 내 편익시설 사용시간, 사용료(제2조1항 관련)

1. 서남물재생시설의 편익시설 중 테니스장, 탁구장 및 파크골프장

<table>
<tr><th colspan="4">구 분</th><th>기준 및 사용료(원)</th><th>비 고</th></tr>
<tr><td rowspan="5">테니스장</td><td rowspan="2">개 인 사용료</td><td rowspan="2">1면 1시간 기준</td><td>평일</td><td>5,000원</td><td></td></tr>
<tr><td>토,일,공휴</td><td>6,500원</td><td></td></tr>
<tr><td rowspan="2">전용 사용료</td><td rowspan="2">1면 1일 8시간기준</td><td>평일</td><td>40,000원</td><td></td></tr>
<tr><td>토,일,공휴</td><td>52,000원</td><td></td></tr>
<tr><td>조 명 사용료</td><td colspan="2">1시간 기준</td><td>5,000원</td><td>사용료 감면 적용 제외</td></tr>
<tr><td colspan="2" rowspan="2">탁구장</td><td colspan="2">월정기회원 (1개월, 1일 2시간 기준)</td><td>20,000원</td><td rowspan="2"></td></tr>
<tr><td colspan="2">일일이용자 (1일, 1면 2시간 기준)</td><td>3,000원</td></tr>
<tr><td colspan="2">사물함 임대료</td><td colspan="2">원/월</td><td>4,000원</td><td>사용료 감면 적용 제외</td></tr>
<tr><td colspan="2" rowspan="3">파크골프장</td><td rowspan="2">사용료 (9홀 기준)</td><td>월</td><td>휴 무</td><td>매 주</td></tr>
<tr><td>화~일</td><td>3,000원</td><td>평일/휴일 동일적용</td></tr>
<tr><td colspan="2">골프용품대여료</td><td>1,000원</td><td>사용료 감면 적용 제외</td></tr>
</table>

2. (생 략)</td><td>제3조(사용료 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 --- 제5조의2제3항제6호---------- 구청장이 주관하는 행사의 경우에 ----------.

[별표 1] 물재생시설 내 편익시설 사용시간, 사용료(제2조1항 관련)

1. 서남물재생시설의 편익시설 중 테니스장, 탁구장 및 파크골프장

<table>
<tr><th colspan="2">구 분</th><th>기준 및 사용료(원)</th><th>비 고</th></tr>
<tr><td rowspan="2">테니스장</td><td>사용료 (1면, 1시간 기준)</td><td>5,000원</td><td></td></tr>
<tr><td>조명 사용료 (1면, 1시간 기준)</td><td>5,000원</td><td>사용료 감면 적용 제외</td></tr>
<tr><td>탁구장</td><td>사용료 (1면, 2시간 기준)</td><td>3,000원</td><td></td></tr>
<tr><td rowspan="2">파크골프장</td><td>사용료 (1회, 2시간 기준)</td><td>3,000원</td><td>매주 월 휴무</td></tr>
<tr><td>골프용품 대여료 (1회, 2시간 기준)</td><td>1,000원</td><td>사용료 감면 적용 제외</td></tr>
</table>

2. (현행과 같음)</td></tr>
</table>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5-3199호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11월 13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서울시 공공예식장 운영과 관련하여 감면 근거가 필요한 시설의 명단을 시행규칙의 별표에 변경·추가하여 감면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서울시 공공예식장 감면 시설 추가 및 시설 명칭 현행화(안 별표)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가족담당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가족담당관(전화: 02-2133-655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에 기재할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 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팩스 · 이메일 · 등기우편 · 온라인
1) 팩 스: 02-2133-0732
2) 이메일: tjgus911@seoul.go.kr
3) 우 편: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9층
4) 온라인: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이 입법예고문 및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도 게재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규칙 제 호

이 규칙의 개정(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및 시의회 심의 결과 등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공공예식장 대관료 감면 대상 시설 및 감면 범위(제2조 관련)

연번	감면대상 시설	위 치	감면범위
1	광진구청 대강당홀	광진구 자양동	전액감면
2	금천구 녹색광장 잔디마당	금천구 시흥동	전액감면
3	남산 장충 웨딩가든	중구 장충동2가	전액감면
4	남산 한남 웨딩가든	용산구 이태원동	전액감면
5	남산 호현 웨딩가든	중구 회현동1가	전액감면
6	노원구 화랑대 철도공원	노원구 공릉동	전액감면
7	도봉구청 선인봉홀	도봉구 방학동	전액감면
8	뚝섬 루프탑 웨딩홀	광진구 자양동	전액감면
9	마곡광장(썬큰마당)	강서구 마곡동	전액감면
10	망원 루프탑 웨딩홀	마포구 망원동	전액감면
11	매헌시민의숲	서초구 양재동	전액감면
12	문화비축기지	마포구 성산동	전액감면
13	백인제가옥	종로구 가회동	전액감면
14	보라매시민안전체험관(다목적홀)	동작구 신대방동	전액감면
15	북서울 꿈의숲(창녕위궁재사)	강북구 번동	전액감면
16	북서울미술관(썬큰가든, 별광장)	노원구 중계동	전액감면
17	불암산 힐링타운 철쭉동산	노원구 중계동	전액감면
18	서대문 안산 잔디마당	서대문구 연희동	전액감면
19	서울도시건축전시관	중구 태평로1가	전액감면
20	서교생활문화센터 서교스퀘어	마포구 서교동	전액감면
21	서울물재생시설공단(마루공원)	강남구 일원동	전액감면
22	서울물재생시설공단(물재생공원)	강서구 마곡동	전액감면
23	서울새활용플라자	성동구 용답동	전액감면
24	서울수상레포츠센터 루프탑 웨딩홀	마포구 상암동	전액감면
25	서울숲 설렘정원	성동구 성수동1가	전액감면
26	서울시 인재개발원(인재홀)	서초구 서초동	전액감면
27	서울시립대 자작마루	동대문구 전농동	전액감면

연번	감면대상 시설	위 치	감면범위
28	서울식물원 사색의 정원	강서구 마곡동	전액감면
29	서울식물원 잔디마당	강서구 마곡동	전액감면
30	서울여성플라자 피움서울	동작구 대방동	전액감면
31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대강당홀)	강남구 개포동	전액감면
32	서울한방진흥센터(야외마당)	동대문구 제기동	전액감면
33	선유도공원(원형무대)	영등포구 양화동	전액감면
34	세종문화회관(예인마당)	종로구 세종로	전액감면
35	솔밭근린공원	강북구 우이동	전액감면
36	압구정 루프탑 웨딩홀	강남구 압구정동	전액감면
37	어린이대공원 포시즌가든	광진구 능동	전액감면
38	어울림플라자 공연장	강서구 등촌동	전액감면
39	여의도 루프탑 웨딩홀	영등포구 여의도동	전액감면
40	용산가족공원(연못광장)	용산구 용산동6가	전액감면
41	용산아트홀 전시장	용산구 이태원동	전액감면
42	월드컵공원 평화의 공원(새록결혼식)	마포구 상암동	전액감면
43	월드컵공원 평화잔디광장	마포구 상암동	전액감면
44	잠실 루프탑 웨딩홀	송파구 잠실동	전액감면
45	청년예술청 SAPY	서대문구 충정로3가	전액감면
46	초안산 가드닝센터	도봉구 창동	전액감면
47	초안산 하늘꽃정원	도봉구 창동	전액감면
48	카페마루 웨딩홀	중구 서소문동	전액감면
49	푸른수목원 잔디마당	구로구 항동	전액감면
50	한강공원 광나루 장미원	강동구 암사동	전액감면
51	한강공원 물빛무대	영등포구 여의도동	전액감면
52	한성백제박물관 하늘정원 루프탑	송파구 방이동	전액감면
53	SETEC 컨벤션홀	강남구 대치동	전액감면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별표]

공공예식장 대관료 감면 대상 시설 및 감면 범위(제2조 관련)

연번	감면대상 시설	위 치	감면범위
1	<신 설>		
2	금천구 녹색광장(잔디마당)	금천구 시흥동	전액감면
3	남산장충자락(하우스커피)	중구 장충동2가	전액감면
4	남산한남자락(더힐스 남산웨딩홀)	용산구 이태원동	전액감면
5	남산호현당	중구 회현동1가	전액감면
6	노원구 화랑대(철도공원)	노원구 공릉동	전액감면
7	<신 설>		
8	뚝섬선착장(루프탑)	광진구 자양동	전액감면
9	마곡광장(썬큰마당)	강서구 마곡동	전액감면
10	망원선착장(루프탑)	마포구 망원동	전액감면
11	매헌시민의숲	서초구 양재동	전액감면
12	문화비축기지(야외무대)	마포구 성산동	전액감면
13	<신 설>		
14	보라매시민안전체험관(다목적홀)	동작구 신대방동	전액감면
15	북서울꿈의숲(창녕위궁재사)	강북구 번동	전액감면
16	북서울미술관	노원구 중계동	전액감면
17	불암산 힐링타운(철쭉동산)	노원구 중계동	전액감면
18	서대문 안산(잔디마당)	서대문구 연희동	전액감면
19	서울도시건축전시관(루프탑)	중구 태평로 1가	전액감면
20	<신 설>		
21	서울물재생시설공단(마루공원)	강남구 일원동	전액감면
22	서울물재생공원	강서구 마곡동	전액감면
23	서울새활용플라자	성동구 용답동	전액감면
24	서울수상레포츠센터(루프탑)	마포구 상암동	전액감면
25	서울숲(설렘정원)	성동구 성수동1가	전액감면
26	서울시 인재개발원(인재홀)	서초구 서초동	전액감면
27	서울시립대(자작마루)	동대문구 전농동	전액감면
28	서울식물원(사색의정원)	강서구 마곡동	전액감면
29	서울식물원(잔디마당)	강서구 마곡동	전액감면
30	서울여성플라자(피움서울)	동작구 대방동	전액감면
31	<신 설>		
32	서울한방진흥센터(야외마당)	동대문구 제기동	전액감면
33	선유도공원(원형무대)	영등포구 양화동	전액감면
34	세종문화회관(예인마당)	종로구 세종로	전액감면
35	솔밭근린공원	강북구 우이동	전액감면
36	압구정선착장(루프탑)	강남구 압구정동	전액감면
37	어린이대공원(포시즌가든)	광진구 능동	전액감면
38	<신 설>		

개 정 안

[별표]

공공예식장 대관료 감면 대상 시설 및 감면 범위(제2조 관련)

연번	감면대상 시설	위 치	감면범위
1	광진구청 대강당홀	광진구 자양동	전액감면
2	금천구 녹색광장 잔디마당	금천구 시흥동	전액감면
3	남산 장충 웨딩가든	중구 장충동2가	전액감면
4	남산 한남 웨딩가든	용산구 이태원동	전액감면
5	남산 호현 웨딩가든	중구 회현동1가	전액감면
6	노원구 화랑대 철도공원	노원구 공릉동	전액감면
7	도봉구청 선인봉홀	도봉구 방학동	전액감면
8	뚝섬 루프탑 웨딩홀	광진구 자양동	전액감면
9	마곡광장(썬큰마당)	강서구 마곡동	전액감면
10	망원 루프탑 웨딩홀	마포구 망원동	전액감면
11	매헌시민의숲	서초구 양재동	전액감면
12	문화비축기지	마포구 성산동	전액감면
13	백인제가옥	종로구 가회동	전액감면
14	보라매시민안전체험관(다목적홀)	동작구 신대방동	전액감면
15	북서울 꿈의숲(창녕위궁재사)	강북구 번동	전액감면
16	북서울미술관(썬큰가든, 별광장)	노원구 중계동	전액감면
17	불암산 힐링타운 철쭉동산	노원구 중계동	전액감면
18	서대문 안산 잔디마당	서대문구 연희동	전액감면
19	서울도시건축전시관	중구 태평로1가	전액감면
20	서교생활문화센터 서교스퀘어	마포구 서교동	전액감면
21	서울물재생시설공단(마루공원)	강남구 일원동	전액감면
22	서울물재생시설공단(물재생공원)	강서구 마곡동	전액감면
23	서울새활용플라자	성동구 용답동	전액감면
24	서울수상레포츠센터 루프탑 웨딩홀	마포구 상암동	전액감면
25	서울숲 설렘정원	성동구 성수동1가	전액감면
26	서울시 인재개발원(인재홀)	서초구 서초동	전액감면
27	서울시립대 자작마루	동대문구 전농동	전액감면
28	서울식물원 사색의 정원	강서구 마곡동	전액감면
29	서울식물원 잔디마당	강서구 마곡동	전액감면
30	서울여성플라자 피움서울	동작구 대방동	전액감면
31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대강당홀)	강남구 개포동	전액감면
32	서울한방진흥센터(야외마당)	동대문구 제기동	전액감면
33	선유도공원(원형무대)	영등포구 양화동	전액감면
34	세종문화회관(예인마당)	종로구 세종로	전액감면
35	솔밭근린공원	강북구 우이동	전액감면
36	압구정 루프탑 웨딩홀	강남구 압구정동	전액감면
37	어린이대공원 포시즌가든	광진구 능동	전액감면
38	어울림플라자 공연장	강서구 등촌동	전액감면

연번	감면대상 시설	위 치	감면범위
39	여의도선착장(루프탑)	영등포구 여의도동	전액감면
40	<신 설>		
41	<신 설>		
42	월드컵공원 평화의공원(새록결혼식)	마포구 상암동	전액감면
43	월드컵공원(평화잔디광장)	마포구 상암동	전액감면
44	잠실선착장(루프탑)	송파구 잠실동	전액감면
45	청년예술청 SAPY	서대문구 충정로3가	전액감면
46	도봉구 초안산가드닝센터	도봉구 창동	전액감면
47	초안산하늘꽃정원	도봉구 창동	전액감면
48	서울특별시 서소문2청사(카페마루)	중구 서소문동	전액감면
49	푸른수목원(잔디마당)	구로구 항동	전액감면
50	한강공원(광나루 장미원)	강동구 암사동	전액감면
51	한강공원(물빛무대)	영등포구 여의도동	전액감면
52	한성백제박물관(하늘정원)	송파구 방이동	전액감면
53	SETEC(컨벤션센터)	강남구 대치동	전액감면

연번	감면대상 시설	위 치	감면범위
39	여의도 루프탑 웨딩홀	영등포구 여의도동	전액감면
40	용산가족공원(연못광장)	용산구 용산동6가	전액감면
41	용산아트홀 전시장	용산구 이태원동	전액감면
42	월드컵공원 평화의 공원(새록결혼식)	마포구 상암동	전액감면
43	월드컵공원 평화잔디광장	마포구 상암동	전액감면
44	잠실 루프탑 웨딩홀	송파구 잠실동	전액감면
45	청년예술청 SAPY	서대문구 충정로3가	전액감면
46	초안산 가드닝센터	도봉구 창동	전액감면
47	초안산 하늘꽃정원	도봉구 창동	전액감면
48	카페마루 웨딩홀	중구 서소문동	전액감면
49	푸른수목원 잔디마당	구로구 항동	전액감면
50	한강공원 광나루 장미원	강동구 암사동	전액감면
51	한강공원 물빛무대	영등포구 여의도동	전액감면
52	한성백제박물관 하늘정원 루프탑	송파구 방이동	전액감면
53	SETEC 컨벤션홀	강남구 대치동	전액감면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5-3200호

서울특별시 의정회 설치 및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의정회 설치 및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11월 13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의회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에 따라 「서울특별시 의정회 설치 및 육성지원 조례」 보조금 교부 근거법령을 반영하기 위하여 해당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보조금 교부 근거 법령 수정(안 제3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기획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기획담당관(02-2133-663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에 기재할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서 보내실 곳
(1) FAX: 02)2133-0818
(2) E-mail: smartkb@seoul.go.kr
(3) 우편: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기획담당관
(4) 온라인: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이 입법예고문 및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및 시의회 심의 결과 등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의정회 설치 및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의정회 설치 및 육성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의정회는”을 “의정회의”로 한다.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서울특별시장은 의정회가 추진하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중 “처분은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13조”를 “처분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로 한다.

제8조 중 “범위안”을 “범위 안”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구성 및 설립운영) ①·② (생 략) ③ 의정회는 설립, 육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구성 및 설립운영)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의정회의 ----------.
제3조(사업과 보조금의 교부) ① (생 략) ② 서울특별시장은 의정회가 추진하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사업과 보조금의 교부) ① (현행과 같음) ② 서울특별시장은 의정회가 추진하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잔여재산의 귀속) 의정회가 해산하는 경우에는 잔여재산의 처분은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 관한법률 제13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잔여재산의 귀속) ---------- 처분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
제8조(운영규정) 의정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 및 의정회 정관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의정회 회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운영규정) ---------- 범위 안----------.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5-3207호

서울특별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11월 13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과 문언을 일치시키고, 현행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체납시세 징수포상금의 대상에 과장급(시는 4급, 자치구 및 사업소 등은 5급 공무원)을 제외하고(안 제2조제4항)
나.「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의 문언에 맞게 “납부독려”를 “지속적인 납부독려”로 개정(안 제2조제2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38세금징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38세금징수과(전화 : 2133-3471, E-mail : kang01@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이메일·등기우편·온라인
(1) E-mail: kang01@seoul.go.kr
(2) 우편: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0층 38세금징수과
(3) 온라인: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다. 문의: 서울특별시 38세금징수과(☎02-2133-3471)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 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조례 제00호

이 조례(안)는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사람에 대하여는 제3조부터 제5조까지”를 “사람에게는 제3조 및 제5조”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지난년도 체납액(부과 당해연도”를 “지난 연도 체납액(부과 당해 연도”로, “‘체납액’”를 ““체납액””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말한다) 체납액을 납부 독려”를 “말한다)을 체납한 자에 대해서 지속적인 납부독려”로, “「지방세기본법」 제111조”를 “「지방세기본법」 제111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국장급(시는 3급”을 “과장급(시는 4급”으로, “4급”을 “5급”으로, “공무원에 대하여”를 “공무원에게”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경우는 예외로 한다”로 한다.

제3조제9호 중 “1,000분의 43을 포상금으로 지급한다”를 “1,000분의 43”으로 한다.

제6조제6항제2호 중 “제3조 및 제4조”를 “제3조”로 한다.

제8조제1항 본문 중 “제3조 및 제4조”를 “제3조”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대하여”를 “대해서”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지급대상)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3조부터 제5조까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조(지급대상) ① ---------- ---------- ---------- 사람에게는 제3조 및 제5조--- ---------- -----. ---------- ---------- ----------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지난년도 체납액(부과 당해 연도 종료일로부터 2개월 미경과분은 제외하며, 이하 ‘체납액’이라 한다)을 징수한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	3. 지난 연도 체납액(부과 당해 연도 ---------- ---------- “체납액”---------- ----------
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특별한 공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으로 제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세입징수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 ---------- ---------- ---------- ---------- ----------.
1. 서울특별시 세입금(서울특별시세 및 세외수입을 말한다) 체납액을 납부 독려, 체납처	1. ---------- ---------- 말한다)을 체납한 자에 대해서 지속적인

분,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관허사업 제한, 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의 제공,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지방세징수법」 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요청, 「지방세기본법」 제111조에 따른 고발 또는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강제징수한 경우	납부독려---------- 「지방세기본법」 제111조----------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장급(시는 3급, 자치구 및 사업소 등은 4급 공무원)이상 관리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 과장급(시는 4급---------- 5급 ---------- 공무원에게---------- ----. ----------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3조(지급기준)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제3조(지급기준)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른 고액체납액 중 정리보류(기존 결손처분 포함)된 고액체납액의 징수를 전담하는 공무원에게	9. ----------

는 제2조제1항제3호의 지급대상이 되는 징수액의 1,000분의 43을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 1,000분의 43
제6조(위원회 구성 등) ① ~ ⑤ (생 략)	제6조(위원회 구성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⑥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지급기준에 관련된 사항	2. 제3조----------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⑦ ~ ⑨ (생 략)	⑦ ~ ⑨ (현행과 같음)
제8조(지급신청) ①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와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의 심사결정서를 붙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다만, 제2조제1항제5호의 경우를 제외한 자치구공무원 또는 민간인의 포상금 신청에 대하여는 구청장이 해당 자치구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서를 붙여 일괄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지급신청) ① ---------- 제3조---------- 대해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5-3215호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인사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11월 13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임용권자가 전문경력관을 신규임용 시 전문경력관 신규임용 특전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절차를 명문화하여 채용 과정의 예측 가능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임용권자가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별표에서 정한 자격증 외 전문경력관 신규임용 가산 대상 자격증 및 가산 비율을 추가하고자 할 때 고시 또는 공고하여야 함을 명시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인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인사과(전화: 02-2133-573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에 기재할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서 보내실 곳
1) 이메일: cst393@seoul.go.kr
2) 우편: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7층 인사과
3) FAX: 02-768-8886
4) 온라인: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이 규칙의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규칙 제 호

이 규칙(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단서 중 “정하는 자격증”을 “별도로 추가하여 고시 또는 공고하는 자격증”으로, “필기시험의”를 “가산하는 점수의 비율은 필기시험의”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를 “정하여 고시 또는 공고한다”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조(신규임용시험의 특전) ① 삭 제	제17조(신규임용시험의 특전)
② 「국가기술자격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 중 별표 6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6급 이하(연구사 · 지도사를 포함한다) 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별표 7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8의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개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때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다만, 임용권자가 정하는 자격증 소지자가 전문경력관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필기시험에 한정하며, 법 제27조제2항	② ---------- ---------- ---------- ---------- ---------- ---------- ---------- ---------- ---------- ---------- ---------- ---------- ---------- ---------- --. ---------- ---------- ----------. ---------- 별도로 추가하여 고시 또는 공고하는 자격증 ---------- ----------

제2호 규정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는 제외한다)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임용권자가 정하는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 ---------- 가산하는 점수의 비율은 필기시험의 ---------- ---------- 정하여 고시 또는 공고한다.
③ 삭 제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5-3224호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11월 13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임산부 교통비 지원한도(1인당 70만 원 이내) 삭제
나. 지원요건, 지급방식, 신청방법, 지급결정 규정 조항 삭제
다. 그 밖의 문구 수정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 ·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저출생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팩스 · 이메일 · 등기우편 · 온라인
(1) FAX : 02-2133-5054
(2) E-mail : kimyr7@seoul.go.kr
(3) 우편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9층 저출생담당관
(4) 온라인 :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다. 문의 : 서울특별시 저출생담당관(☎02-2133-5054)

※ 이 입법예고문 및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및 시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시에”를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서울특별시의”를 “시의”로, “서울특별시 내 자치구”를 “시 자치구 내”로 하며, 같은 조 제8호 중 “서울특별시”를 “시”로 한다.

제4조의2제3항 중 “서울특별시 내 자치구”를 “시 자치구 내”로 한다.

제4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임산부에게”를 “임산부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하여”로, “1인당 70만 원 이내의 교통비”를 “교통비”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자치구청장”을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의7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서울특별시에”를 각각 “시에”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서울특별시”를 “시”로 한다.

제4조의8제2항 중 “범위 내”를 “범위”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자치구청장”을 “구청장”으로 한다.

제7조의3제1항 중 “서울특별시가”를 “시가”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를 “시”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다둥이 행복카드”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다자녀 가족을 위한 우대용 카드를 말한다.	4. ----------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 ----------.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6. “대상 아이”란 서울특별시의 주민등록지 관할 동장에 의해 주민등록표에 ‘출생’ 등의 사유로 신규 등록된 아이 및 서울특별시 내 자치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예정일이 기입된 출생축하용품 신청서를 제출한 모 또는 부의 아이를 말한다.	6. ---------- 시의 ---------- 시 자치구 내----------.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8. “지원대상자”란 대상 아이의 보호자 중 1명으로 서울특별시 자치구 내에 주민등록을 마친 사람을 말한다.	8. ---------- 시 ----------.
9. (생 략)	9. (현행과 같음)
제4조의2(출생축하용품 지원) ① · ② (생 략)	제4조의2(출생축하용품 지원)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출생축하용품 지원대상자는	③ ----------

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 내 자치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대상 아이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어야 한다.	------- 시 자치구 내------- ---------- ---------- ---------- -.
④ ~ ⑧ (생 략)	④ ~ ⑧ (현행과 같음)
제4조의4(임산부 교통비 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임산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1인당 70만 원 이내의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의4(임산부 교통비 지원) ① ---- 임산부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하여 ---------- ----- 교통비---------- ----------.
1. 신청일을 기준으로 서울특별시 관할구역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인 임산부의 경우 시장이 인정하는 증빙서류를 통해 서울특별시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는 것이 확인이 되면 해당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삭 제>
2. 신청일 현재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임산부	<삭 제>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임산부 교통비를 현금, 교통카드, 바우처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삭 제>
③ 임산부 또는 임산부의 배우자	<삭 제>

등은 임산부 교통비 지원신청서 또는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제출하여 임산부 교통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임산부 교통비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교통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삭 제>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 시장은 임산부 교통비 지원 관련 사무를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⑥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제4조의7(공공예식장 대관료 감면)	제4조의7(공공예식장 대관료 감면)
① 시장은 결혼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공공예식장으로 지정된 시설의 대관료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① ----------.
1.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결혼하는 경우	1. 시에 ----------
2.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자녀가 결혼하는 경우	2. 시에 ----------
3. 서울특별시 소재 학교 또는	3. 시 ----------

직장에 다니는 사람(자영업자 포함)이 결혼하는 경우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조의8(1인 자영업자등 출산·휴가급여 지원) ① (생 략)	제4조의8(1인 자영업자등 출산·휴가급여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1인 자영업자등 임산부 출산급여·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 범위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6조(일·생활 균형 지원) ①·② (생 략)	제6조(일·생활 균형 지원)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 구청장----------.
제7조의3(우선입장제) ① 시장은 서울특별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축제·행사 등에 임산부 및 유아동(「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 중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과 그 동반가족 또는 보호자를 우선입장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의3(우선입장제) ① ----- 시가 ----------.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8조(중장기 기본계획) ① 시장은	제8조(중장기 기본계획) ①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른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고려하여 서울특별시 특성에 맞는 저출산 중장기계획(이하 "중장기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 ---------- ---------- ---------- 시 ---------- ---------- ---------- ------.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고 시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615호

제3종시설물의 지정고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13일
서 울 특 별 시 장

대상 시설물			지정 사유	안전점검·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비고
시설물 명칭	소재지	관리주체			
암사교	서울특별시 강동구 암사동 산1-7	미래한강본부(시설부)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의2]의 1.토목분야 - 가. 교량 - 2) 제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매뉴얼 5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매년 2월 15일까지 유지관리계획 수립 후, 상/하반기 정기안전점검 실시 * 신규 지정·고시된 제3종 시설물은 지정된 다음연도부터 시설물관리계획 제출 및 지정된 다음반기부터 정기안전점검 제출대상입니다. ※ 제3종 시설물 지정·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설물관리대장과 설계도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버들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9				
전망마루목교 A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49				
전망마루목교 B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9				
전망마루목교 C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9				
샛강 보행1교	거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523				
샛강 보행2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9				
샛강 보행3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9				
샛강 보행4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81-13				
강서생태습지 1교	서울특별시 강서구 개화동 165-41				

대상 시설물			지정 사유	안전점검·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비고
시설물 명칭	소재지	관리주체			
강서생태습지 2교	서울특별시 강서구 개화동 79-1				
강서생태습지 3교	서울특별시 강서구 개화동 41				
여의샛강 횡단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63	미래한강본부 (시설부)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의2]의 1.토목분야 - 바. 그 밖의 시설물 제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매뉴얼 5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매년 2월 15일까지 유지관리계획 수립 후, 상/하반기 정기안전점검 실시 * 신규 지정·고시된 제3종 시설물은 지정된 다음연도부터 시설물관리계획 제출 및 지정된 다음반기부터 정기안전점검 제출대상입니다. ※ 제3종 시설물 지정·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설물관리대장과 설계도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여의샛강 생태산책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9				
안양천교	서울특별시 강서구 염창동 221-2				
샛강 보행자 자전거 통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81-13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616호

안암동 캠퍼스타운 도시재생활성화계획(변경) 고시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1570호(2018.7.5.)로 「2025 서울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지정 공고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571(2020.12.24.)로 수립 고시된 「안암동 캠퍼스타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대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변경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13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현황(변경)
 가. 지역의 명칭 : 안암동 캠퍼스타운 도시재생활성화지역(변경없음)
 나.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개요(변경없음)

지역명	유형	위치	면적	비고
안암동 캠퍼스타운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중심시가지형 (총괄사업관리자)	성북구 안암동5가 104-338번지 일대	171,000㎡	도시재생 뉴딜사업

다. 사업기간(마중물사업) : (기정) 2020.10. ~ 2025.12. (6년간)
 (변경) 2020.10. ~ 2026.12. (7년간)

2.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목표
 가. 계획의 비전 및 목표(변경없음)
 나. 도시재생사업의 계획 및 파급효과(변경없음)
  1) 도시재생사업 및 파급효과
  ○ 핵심사업(마중물사업) : 4개 부문 10개 사업

단위 사업	세부사업		사업내용	파급효과	비고
창 업 활성화	창업 스테이션	H/W	• 실전창업단계 창업자를 위한 창업특화 창업공간 확대 조성	• 창업 인프라 확보 및 지역 내 인재 외부 유출 방지	
	레벨업 스튜디오 (코워킹스페이스)	H/W	• 성장창업단계 창업자를 위한 코워킹스페이스 사업 위치를 변경하여 조성	• 창업기업 지역 정착에 따른 토착기업화 유도 • 창업기업 증가로 일자리 창출·취업자 유동인구 증가 및 지역 활성화	
	창업육성 프로그램	S/W	• 기업의 생애를 고려한 교육, 멘토링 등 지원프로그램 운영 • 4차 산업혁명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기간 확대	• 창업 성공률 향상 및 지역 내 일자리 창출 • 창업기업과 대학(현직 전문가)의 상생 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 및 창업기업 고도성장 도모	

단위 사업	세부사업		사업내용	파급효과	비고
주 거 안정화	스타트업 하우징 조성	H/W	• 청년창업자 주거공간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 및 주거공간 조성	• 청년 창업자 주거비 부담 감소 및 창업자 간 네트워크 구축 • 청년창업자의 지역 정착에 따른 토착기업화 유도 및 지역 내 일자리 창출	
	주거지 안전거리 조성	H/W	• 노후 저층주거지 환경정비 및 CPTED 적용	• 범죄 발생 위험 감소 및 재해 재난시 안전성 확보	
지 역 활성화	안암 어울림센터 조성	H/W	• 지역주민 및 창업 성장 기업 간의 소통 및 교류 증진 등 종합적 지원을 위한 거점공간 조성	• 공간 활용성을 제고하고 청년, 지역주민 및 창업기업 간 소통과 교류를 통한 화합의 매개체 역할 수행	
	캠퍼스타운 문화가로 조성	H/W	• 캠퍼스타운 특화 문화거리 조성 및 도로정비 • 디자인 가이드라인 마련	• 대학가 특유의 문화 정체성 향상 및 지역 이미지 제고	
	안암 문화 기획·운영	S/W	•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컨텐츠 발굴 및 운영 기간 확대	• 방문객 증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안암 지역 이미지 브랜딩 및 주민 참여로 지역 문화 활성화	
지 속 가능성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	S/W	• 현장지원센터 운영 확대 및 서포터즈 운영	•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촉매 기능 • 캠퍼스타운 사업의 창업지원 확대와 지속성을 위한 촉매 기능	
	역량 강화 사업	S/W	• 캠퍼스타운 아카데미 운영, 주민공모사업, 지역관리기업 육성 등 주민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 대학-지역간 교류 증진 및 재생사업 지속가능성 향상	

○ 협력사업(연계사업) : 3개 부문, 10개 사업

구 분		세부사업		주요내용	파급효과	비고
지 자 체	서 울 시	창업 스튜디오	H/W	• 기 운영중인 초기창업단계 창업자을 위한 단위형 창업공간 지속 지원	• 창업 활동 기반 마련	
		가꿈주택 사업	H/W	• 노후주택 개선 비용 지원	• 집수리 비용 절감 및 주거환경 개선에 따른 거주만족도 향상	
		골목길 재생사업	H/W	• 노후한 골목길 환경 정비	• 골목길 환경 개선	

구 분		세부사업		주요내용	파급효과	비고
공기업	SH	창업 스튜디오	H/W	• 초기창업단계 창업자를 위한 단위형 창업공간 추가 조성	• 초기 창업을 위한 기초 인프라 확보	
		창업 스테이션	H/W	• 실전창업단계 창업공간 조성을 위한 SH공사 부지 제공	• 창업거점 특화를 위한 기반 마련	
		레벨업 스튜디오	H/W	• 성장창업단계 창업자를 위한 대규모 창업공간 조성	• 창업기업 지역 정착에 따른 토착기업화 유도	
		스타트업 하우징 조성	H/W	• 청년창업자 주거공간 조성	• 청년 창업자 주거비 부담 감소 및 창업자 간 네트워크 구축	
민간	고려대학교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	S/W	• 현장지원센터 운영인력 인건비 및 사무공간 제공	•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촉매 기능	
		창업 스튜디오	S/W	• 임대보증금 지원	• 창업 활동 기반 마련	
		창업전용입주공간, 창업육성프로그램, 역량강화사업 등	H/W · S/W	• 지역재생회사 사무공간 및 창업활동공간 등 공간 무상제공 • 창업전용 입주공간 제공 (정운오IT 교양관 별관 일부)	• 산·학·연 기관의 연계 활성화 • 창업 생태계 기반 마련	

※ 창업 스테이션·레벨업 스튜디오·스타트업 조성 사업은 핵심사업(마중물사업) + 협력사업임
※ 향후 세부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 등에서 변경될 수 있음

다.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정비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라. 재원 조달계획(변경)

구분		사 업 명	사업비(억원)							비고
			계	마중물		자체 지방비	공기업	기금	민간	
				국비	지방비					
총 합계			486.25	100.0	150.0	18.74	202.71	10.00	4.80	
마중물	합 계		260.00	100.0	150.0	-	-	10.00	-	
	창업 활성화	창업 스테이션	10.00	-	10.00	-	-	-	-	
		레벨업 스튜디오 (코워킹스페이스)	4.50	2.54	1.96	-	-	-	-	

사업		창업 육성 프로그램	20.37	5.27	15.10	-	-	-	-	
	주거 안정화	스타트업 하우징	31.62	6.62	25.00	-	-	-	-	
		주거지 안전거리 조성	29.05	18.30	10.75	-	-	-	-	기정
			16.77	8.40	8.37					변경
	지역 활성화	안암 어울림센터	81.33	50.52	20.81			10.00		기정
			101.52	68.39	23.13			10.00		변경
		캠퍼스타운 문화가로 조성	25.50	15.30	10.20	-	-	-	-	기정
			17.59	7.33	10.26					변경
		안암 문화 기획·운영	24.26	-	24.26	-	-	-	-	
	지속 가능성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	21.93	-	21.93	-	-	-	-	
		역량강화사업	8.94	1.45	7.49	-	-	-	-	
	수수료	총괄사업자 수수료(50%)	2.50	-	2.50	-	-	-	-	
지자체 (서울시)		합 계	18.74	-	-	18.74	-	-	-	
		창업 스튜디오	4.80	-	-	4.80	-	-	-	
		가꿈주택 사업	1.44	-	-	1.44	-	-	-	
		골목길 재생사업	10.00	-	-	10.00	-	-	-	
		총괄사업자 수수료(50%)	2.50	-	-	2.50	-	-	-	
공기업 (SH)		합 계	202.71	-	-	-	202.71	-	-	
		창업 스튜디오	16.56	-	-	-	16.56	-	-	
		창업 스테이션	20.00	-	-	-	20.00	-	-	
		레벨업 스튜디오	139.67	-	-	-	139.67	-	-	
		스타트업 하우징	26.48	-	-	-	26.48	-	-	
민간 (고려대)		합 계	4.80	-	-	-	-	-	4.80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	2.40	-	-	-	-	-	2.40	
		창업 스튜디오	2.40	-	-	-	-	-	2.40	
		창업전용입주공간, 대학 공간 지원 등	-	-	-	-	-	-	-	

※ 향후 세부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 등에서 변경될 수 있음

마. 예산집행계획(변경)

구분		사업명	총 사업비	단계별 재원투입(억원)							비고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합 계			486.25	78.50	52.12	26.13	40.02	39.63	217.75	32.10	
마중물사업	마중물예산 소계		260.00	58.50	34.50	19.47	33.36	30.47	77.93	5.77	
	창업 활성화	창업 스테이션	10.00	10.00	–	–	–	–	–	–	
		레벨업 스튜디오	4.50	–	–	–	–	4.50	–	–	기정
			4.50	–	–	–	–	–	4.50	–	변경
		창업 육성 프로그램	20.37	1.40	2.61	4.09	4.09	4.09	4.09	–	
	주거 안정화	스타트업 하우징 조성	31.62	–	25.00	–	–	0.85	5.77	–	기정
			31.62	–	25.00	–	–	–	0.85	5.77	변경
		주거지 안전거리 조성	29.05	–	4.88	20.00	4.17	–	–	–	기정
			16.77	–	–	–	8.24	–	8.53	–	변경
	지역 활성화	안암 어울림센터	81.33	39.00	2.00	13.40	11.25	15.68	–	–	기정
			101.52	44.00	0.22	1.25	1.64	13.91	40.50	–	변경
		캠퍼스타운 문화가로 조성	25.50	–	7.00	3.25	15.25	–	–	–	기정
			17.59	–	–	1.92	7.17	–	8.50	–	변경
		안암 문화 기획 · 운영	24.26	1.00	1.55	5.90	5.90	6.00	3.91	–	
	지속 가능성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	21.93	1.20	3.73	4.10	4.10	4.10	4.70	–	
		역량강화사업	8.94	0.90	1.39	2.21	2.22	2.22	–	–	
	수수료	총괄사업자 위탁수수료(50%)	2.50	–	–	–	–	0.15	2.35	–	
지자체 (서울시)		자자체사업-소계	18.74	–	12.28	1.32	1.32	3.82	–	–	
		창업 스튜디오	4.80	–	1.92	0.96	0.96	0.96	–	–	
		가꿈주택 사업	1.44	–	0.36	0.36	0.36	0.36	–	–	
		골목길 재생사업	10.00	–	10.00	–	–	–	–	–	
		총괄사업자 위탁수수료(50%)	2.50	–	–	–		2.50	–	–	
공기업투자 (SH공사)		공기업투자-소계	202.71	20.00	4.14	4.14	4.14	4.14	139.82	26.33	
		창업 스튜디오	16.56	–	4.14	4.14	4.14	4.14	–	–	
		창업 스테이션	20.00	20.00	–	–	–	–	–	–	
		레벨업 스튜디오	139.67	–	7.13	67.18	54.48	10.88	–	–	기정
			139.67	–	–	–	–	–	139.67	–	변경
		스타트업 하우징	26.48	–	1.77	5.90	18.81	–	–	–	기정
			26.48	–	–	–	–	–	0.15	26.33	변경

구분	사업명	총 사업비	단계별 재원투입(억원)							비고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민간투자 (고려대)	민간투자-소계	4.80	-	1.20	1.20	1.20	1.20	-	-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	2.40	-	0.60	0.60	0.60	0.60	-	-	
	창업 스튜디오	2.40	-	0.60	0.60	0.60	0.60	-	-	
	대학 공간 지원	-	-	-	-	-	-	-	-	

※ 향후 세부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 등에서 변경될 수 있음

바. 도시재생사업의 평가 및 점검 계획(변경)

○ 비전에 따라 설정된 사업 목표들의 달성여부를 판단하기에 적합한 부문별 평가지표를 설정하여 연1회 모니터링 조사 실시

○ 사업의 실행 실적 및 사업추진에 따른 양적 · 질적 성과평가를 위해 모니터링 계획 수립 후 연1회 정기적 성과 측정 및 성과보고회 개최

목표	평가지표	단위	2019 (기준년도)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창업활성화	창업 거점시설 입주팀 / 창업활동인구 수	팀/명	30/150	40/200	50/250	60/300	65/350	65/350	65/350	-
	직간접 고용인구 수(누적)	명	300	600	1,200	2,000	2,300	2,600	2,900	2,900
	창업팀 매출액(누적)	억원	70	150	250	350	450	500	550	550
	투자유치액	억원	20	30	40	50	60	70	70	-
	지식재산권 (특허출원 · 등록/상표 등록 등)	건	40	50	60	70	80	80	80	-
	창업기업 수익 지역 환원 확약서 작성 건수	건	5	10	15	20	25	25	25	-
주거안정화	창업지원주택 공급 호수 / 입주자 수	호/ 가구	-	-	-	-	-	-	-	12/12
	노후 건축물 개선 건수(누적)	개소	-	-	3	6	9	12	12	12
	가로환경 만족도	%	-	-	50	70	80	90	-	-
지역활성화	안암 어울림센터 연간 이용자 수	백명	-	-	-	-	-	-	30	33
	대학-지역 연계 축제 개최 건수 / 방문객수	건/ 백명	1/20	1/- (온라인)	1/30	2/40	2/50	2/60	2/60	-
지속가능성	대학-지역 연계 수업 강좌수 / 참석자수	강/명	100/170	120/200	130/240	140/270	130/300	135/330	135/330	-
	기획제안사업 참여팀 수	건/팀	4/300	6/400	8/500	10/600	-	-	-	-

목표	평가지표	단위	2019 (기준년도)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서포터즈 활동 참여자 수	명	8	8	9	8	10	10	10	-
	지역관리기업(CRC) 사단법인 설립 및 사업 유치 건수	건	-	-	-	-	-	-	-	법인 설립

※ 기준시점 : 2019.12 / 2025.10.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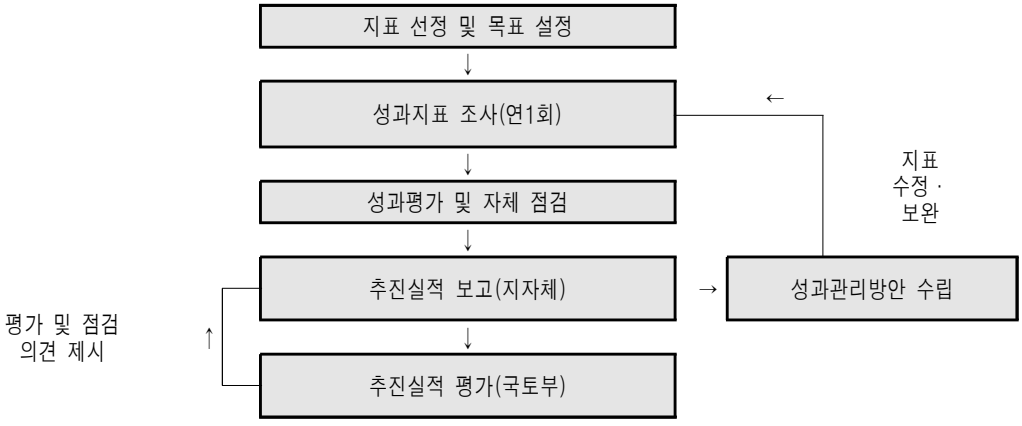

사. 행위제한이 적용되는 지역 : 해당 없음

아. 도시재생 조직의 운영 및 활성화 방안 : 변경없음

3. 관련 도면 : 붙임 참조

○ 도시재생사업 구상도(변경)

※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4. 관련서류 열람

관련서류는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대학협력과(☎ 2133-4834)에서 열람 가능하며 서울시 홈페이지(공고-서울시보)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붙임1

< 위 치 도(변경없음) >

붙임2

< 도시재생활성화 사업 구상도(변경)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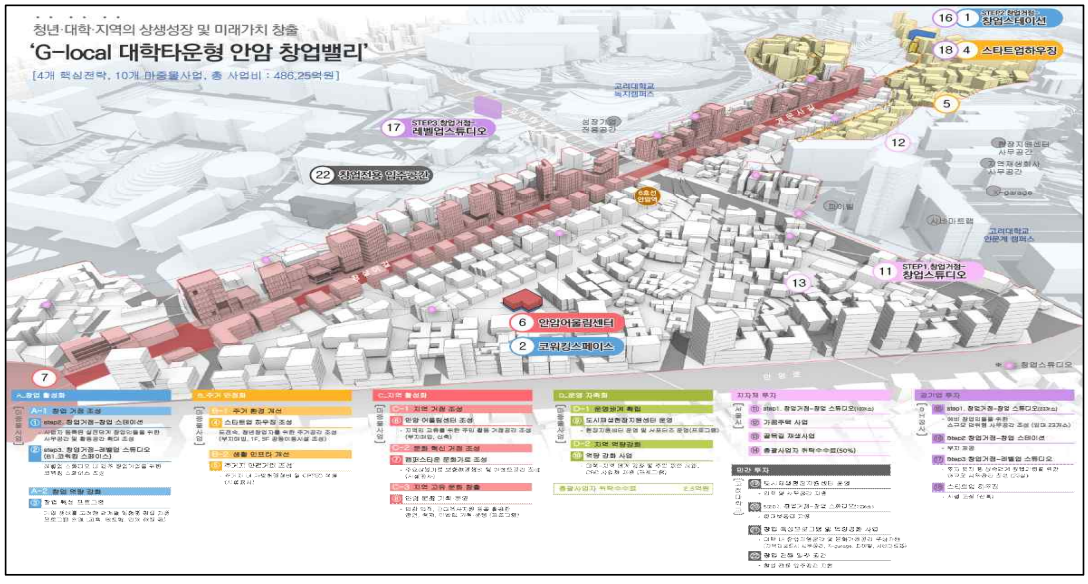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617호

도시관리계획(미아역 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462호(2014.12.26.)로 지구단위계획구역 최초 결정된 “미아역 일대 지구단위계획” 에 대하여 2025년 제15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2025.09.11.) 심의 결과(수정가결)를 반영하여 강북구공고 제2025-1310호(2025.10.02.)로 재열람 공고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 고시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13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결정(변경) 취지

2014년 최초 결정 이후 배후 주거지역의 정비사업 활성화에 따른 지역여건 변화와 관련 제도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고 열악한 차량 및 보행환경 등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하는 사항임

Ⅱ.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없음)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			최초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미아역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강북구 미아동 197-5일대	132,786.9	-	132,786.9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462호 (2014.12.26)	-

[2]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결정(변경)

1.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 용도지역 결정조서

구 분		면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계		132,786.9	-	132,786.9	100.0	
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127,679.1	-	127,679.1	96.15	
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5,107.8	-	5,107.8	3.85	

2. 용도지구에 관한 결정조서 : 해당없음

3.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교통시설 : 변경

1) 도로 : 변경

▌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기 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 용 형 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1	8	35~40	주간선도로	6,100 (968)	수유동 우이교	제기동 정릉천	일반도로	미아 삼거리	1952.3.25	도봉로
변경	대로	1	8	35~40	주간선도로	6,100 (968)	수유동 우이교	제기동 정릉천	일반도로	미아 사거리	내고499호 (1958.11.3.)	도봉로
기정	소로	2	1	8	국지도로	45	미아동 194-1	미아동 195-1	일반도로	-	-	-
변경	소로	2	1	8	국지도로	45	미아동 195-16도	대1-8	일반도로	-	내고554호 (1961.1.11.)	-
기정	중로	3	1	12	국지도로	45	미아동 121-18대	대1-8	일반도로	-	2014.12.26.	-
변경	중로	3	1	12	국지도로	45	미아동 121-18대	대1-8	일반도로	-	서고2014-462호 (2014.12.26.)	-
기정	중로	3	2	12	국지도로	45	미아동 304-25대	대1-8	일반도로	-	2014.12.26.	-
변경	중로	3	2	12	국지도로	45	미아동 304-25대	대1-8	일반도로	-	서고2014-462호 (2014.12.26.)	-
기정	소로	1	1	10	국지도로	45	미아동 126-1대	대1-8	일반도로	-	2014.12.26.	-
변경	소로	1	1	10	국지도로	45	미아동 126-1대	대1-8	일반도로	-	서고2014-462호 (2014.12.26.)	-
기정	소로	2	2	8	국지도로	45	미아동 197-16대	대1-8	일반도로	-	2014.12.26.	-
변경	소로	2	2	8	국지도로	45	미아동 197-16대	대1-8	일반도로	-	서고2014-462호 (2014.12.26.)	-
기정	소로	2	3	8	국지도로	45	미아동 125-22대	대1-8	일반도로	-	2014.12.26.	-
변경	소로	2	3	8	국지도로	45	미아동 125-22대	대1-8	일반도로	-	서고2014-462호 (2014.12.26.)	-
기정	소로	2	4	8	국지도로	45	미아동 126-6대	대1-8	일반도로	-	2014.12.26.	-
변경	소로	2	4	8	국지도로	45	미아동 126-6대	대1-8	일반도로	-	서고2014-462호 (2014.12.26.)	-
기정	소로	2	5	8	국지도로	45	미아동 131-1대	대1-8	일반도로	-	2014.12.26.	-
변경	소로	2	5	8	국지도로	45	미아동 131-1대	대1-8	일반도로	-	서고2014-462호 (2014.12.26.)	-

구분	규 모				기 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 용 형 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2	6	8	국지도로	55	미아동 322-4대	대1-8	일반도로	-	2014.12.26.	-
변경	소로	2	6	8	국지도로	55	미아동 322-4대	대1-8	일반도로	-	서고2014-462호 (2014.12.26.)	-
기정	소로	2	7	8	국지도로	55	미아동 317-22대	대1-8	일반도로	-	2014.12.26.	-
변경	소로	2	7	8	국지도로	55	미아동 317-22대	대1-8	일반도로	-	서고2014-462호 (2014.12.26.)	-
기정	소로	2	8	8	국지도로	45	미아동 304-16대	대1-8	일반도로	-	2014.12.26.	-
변경	소로	2	8	8	국지도로	45	미아동 304-16대	대1-8	일반도로	-	서고2014-462호 (2014.12.26.)	-
기정	소로	2	9	8	국지도로	45	미아동 209-8대	대1-8	일반도로	-	2014.12.26.	-
변경	소로	2	9	8	국지도로	45	미아동 209-8대	대1-8	일반도로	-	서고2014-462호 (2014.12.26.)	-
기정	소로	1	가	10	국지도로	45	미아동 195대	대1-8	일반도로	-	-	-
변경	소로	1	가	10	국지도로	45	미아동 195대	대1-8	일반도로	-	서고2022-412호 (2022.10.13.)	-
기정	소로	3	1	6	국지도로	45	미아동 194대	대1-8	일반도로	-	2014.12.26.	-
변경	소로	3	1	6	국지도로	45	미아동 194대	대1-8	일반도로	-	서고2014-462호 (2014.12.26.)	-
기정	소로	3	3	6	국지도로	45	미아동 131-6대	대1-8	일반도로	-	2014.12.26.	-
변경	소로	3	3	6	국지도로	45	미아동 131-6대	대1-8	일반도로	-	서고2014-462호 (2014.12.26.)	-
기정	소로	3	4	6	국지도로	55	미아동 317-12대	대1-8	일반도로	-	2014.12.26.	-
변경	소로	3	4	6	국지도로	55	미아동 317-12대	대1-8	일반도로	-	서고2014-462호 (2014.12.26.)	-
기정	소로	3	5	6	국지도로	45	미아동 310-7대	대1-8	일반도로	-	2014.12.26.	-
변경	소로	3	5	6	국지도로	45	미아동 310-7대	대1-8	일반도로	-	서고2014-462호 (2014.12.26.)	-
기정	소로	3	6	6	국지도로	45	미아동 207-1대	대1-8	일반도로	-	2014.12.26.	-
변경	소로	3	6	6	국지도로	45	미아동 207-1대	대1-8	일반도로	-	서고2014-462호 (2014.12.26.)	-

구분	규 모				기 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 용 형 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3	7	6	국지도로	45	미아동 206-7대	대1-8	일반도로	-	2014.12.26.	-
변경	소로	3	7	6	국지도로	45	미아동 206-7대	대1-8	일반도로	-	서고2014-462호 (2014.12.26.)	-
기정	소로	3	8	6	국지도로	45	미아동 203-16대	대1-8	일반도로	-	2014.12.26.	-
변경	소로	3	8	6	국지도로	45	미아동 203-16대	대1-8	일반도로	-	서고2014-462호 (2014.12.26.)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 전 도로명	변경 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대로 1-8	대로 1-8	• 주요경과지 지명변경사항 반영 - 미아삼거리 → 미아사거리 • 최초결정일 고시번호 및 고시일 정정 - 1952.3.25 → 내고499호(1958.11.3.)	• 오타 및 누락사항 정정
소로 2-1	소로 2-1	• 기점 및 종점 정정 - 기점 : 미아동 194-1 → 미아동 195-16 - 종점 : 미아동 195-1 → 대로 1-8	• 도면상 기·종점 방향 및 종점 시설명 일치
중로 3-1 ~ 소로 2-8	중로 3-1 ~ 소로 2-8	• 최초결정일 고시번호 및 고시일 기입 - 고시번호 누락사항 기입 - 고시번호 및 고시일 누락사항 기입	• 누락사항 기입

3 건축계획에 관한 결정(변경)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최대개발규모 : 변경

▌최대개발규모 결정(변경)조서

구 분	도봉로 전면부	도봉로 이면부	비 고
기 정	3,000㎡	1,000㎡	-
변 경	폐지		

▌최대개발규모 결정(변경) 사유서

구 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비고
변 경	최대개발규모 폐지	도봉로변의 자율적인 민간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최대개발규모 기준 폐지	-

나. 가구 : 변경

▌가구 결정(변경)조서

구 분	가 구 번 호	비 고
기 정	1, 2, 2-1, 3 ~ 19	가구 2-1, 4, 9는 특별계획구역
변 경	1, 2, 2-1, 3 ~ 9, 9-1, 10 ~ 19	가구 2-1, 4, 9-1는 특별계획구역

▌가구 결정(변경)사유서

구 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비 고
신 설	• 가구 9-1 신설 - 가구 9 → 가구 9, 9-1로 분할	• 특별계획구역 면적 축소에 따른 가구 1개소 신설	-
변 경	• 가구 5, 7 범위 변경 - 가구5 : 2,012.5㎡ → 2,527.6㎡, 증) 515.1㎡ - 가구7 : 2,331.4㎡ → 2,846.5㎡, 감) 515.1㎡	• 용도계획 범위 변경에 따른 가구경계 조정	

다. 획지 : 변경

▌ 획지 결정(변경)조서

구 분	적 용 대 상	계 획 내 용	비고
기 정	미아역세권 활성화사업 특별계획구역	• 획지 A : 미아동 194-2, 1,473.4㎡ • 획지 B : 미아동 195, 3,634.4㎡	
변 경	미아역세권 활성화사업 특별계획구역	없음	폐지

▌ 획지 결정(변경)사유서

구 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비고
변 경	• 미아역세권 활성화사업 특별계획구역 내 획지 A,B 폐지	• 단일 필지에 대한 획지계획 폐지 특별계획구역 시행지침으로 관리	-

라. 공동개발 : 변경

▌ 공동개발 결정(변경)조서

구 분		계 획 기 준	비고
기정	공동개발(권장)	• 구체적 개발계획이 있는 지역, 과소(90㎡이하)필지, 동일 소유자이거나 기 공동개발된 필지로서 적정개발규모 유도 및 정형화 필요시 • 주변 대지규모를 고려한 적정개발규모 유도 시	32개소
	자율적 공동개발	• 최대개발규모 범위 내에서 자율적 공동개발 허용	전 지역
	맞벽건축(권장)	• 연속적인 가로경관 및 건축물의 일체감 형성이 필요한 가로에 면한 필지	-
변경	공동개발(지정)	• 기 공동개발된 필지	10개소
	공동개발(권장)	• 맹지	3개소
	자율적 공동개발	• 공동개발 계획 필지 외 자율적 공동개발 허용	전 지역

▌ 공동개발 결정(변경) 사유서

구 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비고
변 경	• 공동개발 지정 신설	• 기 공동개발 완료된 필지에 한하여 공동개발 지정 계획	-
	• 공동개발 권장 계획 변경	• 공동개발 권장 계획기준 변경에 따라 계획적 권장 필요 필지에 한하여 계획	-
	• 맞벽건축(권장) 삭제	• 개별필지 단위 개발완료 등으로 실현가능성이 낮은 권장사항 삭제	-

마. 가구 및 획지계획 : 변경

▌ 가구 및 획지 결정(변경)조서

가구 번호	가구 면적	위 치		대지면적	공동개발면적	계획내용		비 고
						기정	변경	
1	5,039.8	미아동	203-1대	173.2	377.8	공동개발 (권장)	-	-
		미아동	203-13대	82.0			-	-
		미아동	203-14대	122.6			-	-
		미아동	203-2대	846.3	-	-	-	-
		미아동	203-4대	225.5	-	-	-	-
		미아동	203-5대	407.9	-	-	-	-
		미아동	203-6대	365.3	-	-	-	-
		미아동	203-7대	156.0	-	-	-	-
		미아동	203-8대	638.6	802.6	공동개발 (권장)	-	-
		미아동	203-11대	82.0			-	-
		미아동	203-12대	82.0			-	-
		미아동	203-15도	118.3	-	-	-	-
		미아동	203-16대	163.3	-	-	-	-
		미아동	203-17대	122.6	-	-	-	-
		미아동	203-18대	122.6	-	-	-	-
		미아동	203-19대	122.6	-	-	-	-
		미아동	203-22대	73.1	162.7	공동개발 (권장)	-	-
		미아동	203-23대	89.6			-	-
		미아동	203-24대	618.2	-	-	-	-
		미아동	203-25대	189.1	-	-	-	-
		미아동	203-26대	119.7	-	-	-	-

가구 번호	가구 면적	위 치		대지면적	공동개발면적		계획내용		비 고
							기정	변경	
		미아동	203-27대	119.3	-		-	-	-
2	3,379.7	미아동	194대	3,379.7	-		-	-	-
2-1	1,473.4	미아동	194-2대	1,473.4	-		-	-	미아역세권 활성화사업 특별계획구역
3	4,666.1	미아동	206-1대	670.4	-		-	-	-
		미아동	206-4대	243.3	1,135.8		공동개발 (권장)	-	-
		미아동	206-5대	239				-	-
		미아동	206-2대	332.2				-	-
		미아동	206-6대	321.3				-	-
		미아동	206-3대	340.5	-		-	-	-
		미아동	206-7대	268.1	-		-	-	-
		미아동	206-9대	132.6	-		-	-	-
		미아동	206-10대	455.9	-		-	-	-
		미아동	206-11대	177.5	-		-	-	-
		미아동	206-12대	132.2	-	751.9	-	공동개발 (지정)	기 공동개발된 필지
		미아동	206-13대	132.2	619.7		공동개발 (권장)		
		미아동	206-14대	147.0					
		미아동	206-20대	340.5					
		미아동	206-15도	128.9	-		-	-	-
		미아동	206-16대	145.8	-		-	-	-
		미아동	206-17대	145.8	-		-	-	-
		미아동	206-18대	145.5	-		-	-	-
		미아동	206-19대	165.3	-		-	-	-
		미아동	206-21도	2.1	-		-	-	-
4	3,634.4	미아동	195대	3,634.4	-		-	-	미아역세권 활성화사업 특별계획구역
5	기정 2,012.5	미아동	207-1대	1,322.3	-		-	-	-
		미아동	207-20대	690.2	-		-	-	-
5	변경 2,527.6	미아동	207-1대	1,322.3	2,527.6		-	-	미아역 출입구 인접대지
		미아동	207-20대	690.2			-	-	
		미아동	207-2대	132.2			-	-	
		미아동	207-14대	249.3			-	-	
		미아동	207-15대	133.6			-	-	
6	5,774.7	미아동	196종	4,831.7	-		-	-	-
		미아동	196-1대	176.7	-		-	-	-

가구 번호	가구 면적	위 치		대지면적	공동개발면적		계획내용		비 고
							기정	변경	
		미아동	196-2대	766.3	-		-	-	-
7	기정 2,846.5	미아동	207-2대	132.2	-		-	-	-
		미아동	207-6대	399.3	1,437.3		공동개발 (권장)	-	-
		미아동	207-24대	183.1				-	-
		미아동	207-3대	854.9				-	-
		미아동	207-17대	247.9	-		-	-	-
		미아동	207-11대	123.6	-		-	-	-
		미아동	207-13대	140.5	-		-	-	-
		미아동	207-21대	123.3	-		-	-	-
		미아동	207-15대	133.6	-		-	-	-
		미아동	207-16도	126.6	-		-	-	-
		미아동	207-10대	132.2	-		-	-	-
		미아동	207-14대	249.3	-		-	-	-
7	변경 2,331.4	미아동	207-6대	399.3	-		-	-	-
		미아동	207-24대	183.1	-		-	-	-
		미아동	207-3대	854.9	-		-	-	-
		미아동	207-17대	247.9	-		-	-	-
		미아동	207-11대	123.6	-		-	-	-
		미아동	207-13대	140.5	263.8		-	공동개발 (지정)	기 공동개발된 필지
		미아동	207-21대	123.3			-		
		미아동	207-10대	132.2	-		-	-	-
		미아동	207-16도	126.6	-		-	-	-
8	3,679.3	미아동	209-1대	364.0	575.9	2,362.3	공동개발 (권장)	-	미아역 출입구 인접대지
		미아동	209-2대	211.9					
		미아동	209-3대	212.9	617.5		공동개발 (권장)	-	
		미아동	209-4대	212.2				-	
		미아동	209-5대	192.4				-	
		미아동	209-8대	1,168.9	-		-	-	
		미아동	209-9대	366.9	735.8		공동개발 (권장)	-	-
		미아동	209-6대	368.9				-	-
		미아동	209-7대	108.1	228.1		-	공동개발 (권장)	맹지
		미아동	209-13대	120.0			-		
		미아동	209-10대	154.4	-		-	-	-
		미아동	209-11대	173.2	-		-	-	-
		미아동	209-12대	25.5	-		-	-	-

가구 번호	가구 면적	위 치		대지면적	공동개발면적		계획내용		비 고
							기정	변경	
9	3,676.8	미아동	197-5대	730.9	3,676.8	-	특별계획구역 ①	-	-
		미아동	197-9대	452.2		783.8		공동개발 (지정)	기 공동개발된 필지
		미아동	197-18대	331.6					
		미아동	197-17대	315.1		-		-	-
		미아동	197-16대	330.9		-		-	-
9-1	1,516.1	미아동	197-11대	326.3		1,516.1		특별계획구역 ①	가구번호 9-1 분할(신설)
		미아동	197-14주	885.3					
		미아동	197-15주	304.5					
10	4,330.2	미아동	304-1대	231.4	469.4		공동개발 (권장)	공동개발 (지정)	기 공동개발된 필지
		미아동	304-18대	238.0					
		미아동	304-19도	126.0	-		-	-	-
		미아동	304-20대	134.2	-		-	-	-
		미아동	304-21대	134.2	-		-	-	-
		미아동	304-22대	134.2	-		-	-	-
		미아동	304-23대	134.2	-		-	-	-
		미아동	304-24대	134.2	-		-	-	-
		미아동	304-25대	134.2	-		-	-	-
		미아동	304-2대	398.0	801.3		공동개발 (권장)	-	-
		미아동	304-38대	403.3				-	-
		미아동	304-4대	329.2	-		-	-	-
		미아동	304-5대	75.0	184.8		공동개발 (권장)	-	-
		미아동	304-10대	109.8				-	-
		미아동	304-11도	31.4	-		-	-	-
		미아동	304-12대	184.8	-		-	-	-
		미아동	304-3대	739.2	1,398.1		-	-	미아역 출입구 인접대지
		미아동	304-17대	329.6			-	-	
		미아동	304-37대	329.3			-	-	
11	4,339.8	미아동	121-28대	296.5	-		-	-	-
		미아동	121-18대	178.2	-		-	-	-
		미아동	121-19대	889.2	-		-	-	-
		미아동	121-26대	421.2	1,139.9	738.9	공동개발 (권장)	공동개발 (지정)	기 공동개발된 필지
		미아동	121-24대	156.4					
		미아동	121-20대	161.3					
		미아동	121-27대	401.0		-		-	-
		미아동	121-25대	156.4	-	1,836.0	-	-	미아역 출입구 인접대지
		미아동	121-21대	372.2	1,679.6		공동개발 (권장)	-	
		미아동	121-22대	1,307.4				-	

가구 번호	가구 면적	위 치		대지면적	공동개발면적		계획내용		비 고
							기정	변경	
12	4,141.7	미아동	304-6대	447.3	1,066.5	1,842.3	공동개발 (권장)	-	미아역 출입구 인접대지
		미아동	304-7대	619.2				-	
		미아동	304-15대	188.9	-		-	-	
		미아동	304-16대	398.0	-		-	-	
		미아동	304-30대	188.9	-		-	-	
		미아동	304-31대	209.1	2,299.4		-	-	미아역 출입구 인접대지
		미아동	304-32대	239.2			-	-	
		미아동	304-33대	219.1			-	-	
		미아동	304-34대	220.1			-	-	
		미아동	304-35대	193.0			-	-	
		미아동	304-8대	1,077.1			-	-	
		미아동	304-9대	141.8			-	-	
13	4,134.5	미아동	125-22대	120.7	451.9	-	공동개발 (권장)	-	미아역 출입구 인접대지
		미아동	125-34대	123.6		-		-	
		미아동	125-35대	120.3		207.6		공동개발 (권장)	
		미아동	125-49대	87.3					
		미아동	125-50대	44.0	-		-	-	
		미아동	125-28대	458.2	862.5	-	공동개발 (권장)	-	
		미아동	125-33대	404.3		689.3		공동개발 (지정)	
		미아동	125-51대	120.3	201.0		공동개발 (권장)		
		미아동	125-52대	80.7					
		미아동	125-53대	84.0	168.0		공동개발 (권장)		-
		미아동	125-57대	84.0		-		-	-
		미아동	125-31대	270.1	605.3		공동개발 (권장)	-	-
		미아동	125-32대	335.2				-	-
		미아동	125-54도	57.2	-		-	-	-
		미아동	125-55대	136.9	-		-	-	-
		미아동	125-56대	123.6	-		-	-	-
		미아동	125-47대	84.0	170.0	-	공동개발 (권장)	-	-
		미아동	125-48대	86.0		-		-	미아역 출입구 인접대지
		미아동	125-25대	258.5	704.0	-	공동개발 (권장)	-	
		미아동	125-26대	455.5		-		-	
		미아동	125-23대	123.3	-	-	-	-	
		미아동	125-24대	115.7	-	-	-	-	
		미아동	125-39대	135.9	-	-	-	-	
		미아동	125-40대	181.2	-	-	-	-	
		미아동	125-46대	44.0	-	-	-	-	

가구 번호	가구 면적	위 치		대지면적	공동개발면적		계획내용		비 고
							기정	변경	
14	5,811.9	미아동	310-1대	385.3	-		-	-	-
		미아동	310-2대	367.3	1,329.8	532.6	공동개발 (권장)	공동개발 (지정)	기 공동개발된 필지
		미아동	310-52대	165.3					
		미아동	310-34대	100.8		898.0		공동개발 (지정)	기 공동개발된 필지
		미아동	310-5대	696.4					
		미아동	310-35대	100.8	-		-		
		미아동	310-4대	1,273.7	-		-	-	-
		미아동	310-7대	279.3	-		-	-	-
		미아동	301-3대	329.3	-		-	-	-
		미아동	310-36대	100.8	221.1		-	공동개발 (지정)	기 공동개발된 필지
		미아동	310-37대	120.3			-		
		미아동	310-38대	106.8	-		-	-	-
		미아동	310-39대	109.8	-		-	-	-
		미아동	310-40대	158.0	-		-	-	-
		미아동	310-41도	313.7	-		-	-	-
		미아동	310-42대	198.0	-		-	-	-
		미아동	310-43대	163.6	-		-	-	-
		미아동	310-44대	165.3	-		-	-	-
		미아동	310-45대	173.9	-		-	-	-
		미아동	310-46대	170.9	-		-	-	-
		미아동	310-47대	148.8	-		-	-	-
		미아동	310-48대	101.2	183.8		공동개발 (권장)	공동개발 (지정)	기 공동개발된 필지
		미아동	310-49대	82.6					
15	4,769.0	미아동	126-1대	198.7	-		-	-	-
		미아동	126-2대	133.9	-		-	-	-
		미아동	126-3대	623.8	1,079.3		공동개발 (권장)	-	-
		미아동	126-4대	455.5				-	-
		미아동	126-8대	160.3	-		-	-	-
		미아동	126-9대	117.7	-		-	-	-
		미아동	126-10대	137.2	-		-	-	-
		미아동	126-11대	140.5	-		-	-	-
		미아동	126-12대	140.5	-		-	-	-
		미아동	126-13대	140.5	-		-	-	-
		미아동	126-14대	140.5	-		-	-	-
		미아동	126-15대	157.0	-		-	-	-
		미아동	126-16대	222.8	-		-	-	-
		미아동	126-17대	168.9	-		-	-	-

가구 번호	가구 면적	위 치		대지면적	공동개발면적	계획내용		비 고
						기정	변경	
		미아동	126-18대	124.0	-	-	-	-
		미아동	126-19대	124.0	-	-	-	-
		미아동	126-20대	124.3	-	-	-	-
		미아동	126-22대	510.3	1,272.1	공동개발 (권장)	-	-
		미아동	126-23대	365.9			-	-
		미아동	126-46대	395.9			-	-
		미아동	126-33대	186.8	-	-	-	-
16	5,476.4	미아동	317-1대	1,306.8	-	-	-	-
		미아동	317-3주	741.2	-	-	-	-
		미아동	317-14대	245.6	-	-	-	-
		미아동	317-18도	116.4	-	-	-	-
		미아동	317-19대	365.2	531.5	공동개발 (권장)	-	-
		미아동	317-22대	166.3			-	-
		미아동	317-31대	32.7	2,534.9	공동개발 (권장)	-	-
		미아동	1351대	2,502.2			-	-
17	4,441.4	미아동	126-6대	157.0	-	-	-	-
		미아동	126-7대	1,102.8	-	-	-	-
		미아동	126-35대	139.8	-	-	-	-
		미아동	126-26대	140.5	-	-	-	-
		미아동	126-27대	159.0	-	-	-	-
		미아동	126-28대	73.4	-	-	-	-
		미아동	126-29대	124.0	-	-	-	-
		미아동	126-30대	145.8	-	-	-	-
		미아동	126-31대	356.7	681.7	공동개발 (권장)	-	-
		미아동	126-32대	325.0			-	-
		미아동	126-34대	167.3	-	-	-	-
		미아동	126-25대	140.5	-	-	-	-
		미아동	126-36대	139.8	-	-	-	-
		미아동	126-37대	139.8	-	-	-	-
		미아동	126-38대	152.7	-	-	-	-
		미아동	126-39대	150.7	-	-	-	-
		미아동	126-40대	249.9	-	-	-	-
		미아동	126-41대	143.1	-	-	-	-
		미아동	126-42대	143.1	-	-	-	-

가구 번호	가구 면적	위 치		대지면적	공동개발면적	계획내용		비 고
						기정	변경	
		미아동	126-43대	143.1	-	-	-	-
		미아동	126-44대	147.4	-	-	-	-
18	4,881.8	미아동	317-5대	831.1	-	-	-	-
		미아동	317-6대	893.6	-	-	-	-
		미아동	317-7대	785.5	-	-	-	-
		미아동	317-8대	450.5	-	-	-	-
		미아동	317-9대	462.8	-	-	-	-
		미아동	317-30대	496	-	-	-	-
		미아동	317-11대	104.1	-	-	-	-
		미아동	317-12대	97.5	-	-	-	-
		미아동	317-13대	246	-	-	-	-
		미아동	317-25대	235.4	-	-	-	-
		미아동	317-27도	44.0	-	-	-	-
		미아동	317-28대	117	235.3	-	공동개발 (권장)	-
		미아동	317-10대	118.3		-		-
19	3,989.9	미아동	131-1대	204.6	-	-	-	-
		미아동	131-3대	324.6	-	-	-	-
		미아동	131-4대	1,004.0	1,438.0	공동개발 (권장)	-	-
		미아동	131-19대	434.0			-	-
		미아동	131-5대	359.2	718.3	공동개발 (권장)	-	-
		미아동	131-32대	359.1			-	-
		미아동	131-13대	77.4	200.0	공동개발 (권장)	-	-
		미아동	131-15대	81.3			-	-
		미아동	131-33도	41.3			-	-
		미아동	131-22대	191.7	-	-	-	-
		미아동	131-23대	263.8	-	-	-	-
		미아동	131-27대	318.3	-	-	-	-
		미아동	131-29대	330.6	-	-	-	-

▮ 가구 및 획지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가구번호	가구면적(㎡)	위 치	대지면적(㎡)	변경 내용	변경 사유
변경	5	2,527.6	미아동 207-1	2,527.6	• 2,012.5㎡ → 2,527.6㎡	• 건축물 용도계획 범위 조정에 따른 가구범위 조정
	7	2,331.4	미아동 207-3	2,331.4	• 2,846.5㎡ → 2,331.4㎡	
	9	2,160.7	미아동 197-5	2,160.7	• 3,676.8㎡ → 2,160.7㎡ • 특별계획구역에서 제척	• 특별계획구역 면적축소에 따른 가구 범위 조정
	9-1	1,516.1	미아동 194-11	1,516.1	• 3,676.8㎡ → 1,516.1㎡ • 특별계획구역 면적 축소	
	1~19	-	-	-	• 공동개발 지정/권장 조정	• 공동개발 지정/권장 기준 변경에 따른 조정

2. 건축물 용도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불허용도 계획 : 변경

▮ 불허용도 결정(기정)조서

구 분		불허용도	비 고
기 정	A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석유 판매소 제외)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 세차장 제외)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5호의 발전시설	-
	B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안마시술소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6호의 종교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5호의 발전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8호의 장례식장	특별계획구역
	C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단독주택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아목 (변전소, 도시가스배관시설, 통신용 시설, 정수장, 양수장 등)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 숙박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6호 위락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 공장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시설	미아역세권 활성화사업 특별계획구역

▌ 불허용도 결정(변경)조서

구 분		불허용도	비 고
변 경	공통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3호의 교정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3의2의 국방·군사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5호의 발전시설	-
	A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
	B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주유소, 석유·액화가스·도료류 판매소, 저공해자동차 연료공급시설 제외)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 세차장 제외)	-

※ 상기 외 불허용도는 관련법규 및 조례에 따름

▌ 불허용도 결정(변경) 사유서

구 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비고
변 경	• 공통사항 신설	• 기존 계획상 공통사항 구분하여 조닝별 특성구분 용이	-
	• 불허용도 위치 및 범위 조정 - A : 대상지 남·북측 → 대상지 중심부 - B : 대상지 중심부 → 대상지 남·북측 - 대상지 중심부 범위 확장	• 대상지 내 주요지역인 미아역 인접지역을 A로 설정	-
	• 불허용도C 삭제 - 미아역세권 활성화사업 특별계획구역	• 특별계획구역 세부지침에 명시하여 관리·운영	-

나. 권장용도 계획 : 변경

▌ 권장용도 결정(변경)조서

구분		권장용도	비 고
기정	A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서점·독서실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전시장 • 교육연구시설	대학문화 지원권역
	B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전시장 • 판매시설 중 소매시장 및 상점	거점중심권역
	C	• 판매시설 중 소매시장·상점 • 의료시설 중 병원(정신병원, 요양병원 제외) • 업무시설(오피스텔, 1층부 금융업소 제외)	상업·업무권역
	D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점·휴게음식점·제과점·이용원·미용원·금융업소·사무소·부동산중개사무소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서점·휴게음식점·제과점·일반음식점·학원·독서실·금융업소·사무소·부동산중개사무소 • 판매시설 중 상점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전시장 • 교육연구시설 •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거점형 키움센터) • 수련시설 중 생활권 수련시설(청소년 문화센터)	미아역세권 활성화사업 특별계획구역 (지하 1층주) ~ 지상 3층)
변경	공통	• 소매점 / 사무소 • 노유자시설 / 의료시설 중 병원(정신병원, 요양병원 제외)	전층
	1	• (간선부) 판매시설 / 업무시설 • 학원 · 교습소 · 직업훈련소 · 독서실	전층
	2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주민체육활동시설 • 공연장(영화관,극장,연예장,음악당) · 전시장	전층

※ 권장용도는 연면적(용적률 산정용)의 30% 이상 설치시 인정

▌ 권장용도 결정(변경) 사유서

구 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비고
변 경	• 권장용도 유형 2개로 구분 - 권장용도A,C → 권장용도2 - 권장용도B → 권장용도1	• 지하철역 출입구 인접지역과 이 외 지역으로 구분 계획	-

구 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비고
	• 권장용도1 용도 변경	• 대상지 현황, 주민의견수렴 결과, 보행일상권 개념 적용하여 도입용도 계획	-
	• 권장용도2 용도 변경	• 대상지 현황, 주민의견수렴 결과, 보행일상권 개념 적용하여 도입용도 계획	-
	• 권장용도D 삭제 - 미아역세권 활성화사업 특별계획구역	• 특별계획구역 세부지침에 명시하여 관리 · 운영	-

다. 지정용도 계획 : 변경

▌지정용도 결정(변경)조서

구 분		지정용도	비고
기정	A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점 · 휴게음식점 · 제과점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서점 · 휴게음식점 · 제과점 · 일반음식점 • 판매시설 중 상점	도봉로변 (1층)
	B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 전시장 • 판매시설 • 의료시설 중 병원(정신병원, 요양병원 제외) • 업무시설	특별계획구역
변경	-	없음	폐지

▌지정용도 결정(변경) 사유서

구 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비고
변 경	• 지정용도계획 폐지	• 당연입지시설인 1층 가로활성화 용도 폐지 및 의무적 도입이 어려운 용도계획 재정비	-

라. 용도완화 계획 : 변경

▌용도완화 결정(변경)조서

구분	현재 제3종일반주거지역내 건축 가능한 건축물	제3종일반주거지역 용도완화 계획
기정	• 업무시설 - 오피스텔의 경우 너비 20m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에 한함 - 바닥면적 합계 3,000㎡미만인 것	• 준주거지역에서 건축가능한 건축물 용도 도입
변경	• 업무시설 - 오피스텔의 경우 너비 20m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에 한함 - 바닥면적 합계 3,000㎡미만인 것 • 판매시설 - 너비 20m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에 한함 - 바닥면적 합계 2,000㎡미만인 것	• 제3종일반주거지역 내 업무시설 및 판매시설의 바닥면적 제한 완화 - 너비 20m 이상 도로에 접한 사업지에 한함 - 용도완화 적용대지는 이면부 차량 진출입 원칙. 부득이한 경우, 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한 공동주차 출입구 신설(변경)등 지구단위계획 변경시 간선부 차량진출입 가능

▌용도완화 결정(변경) 사유서

구 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비고
변 경	• 판매시설 면적 제한 완화 추가	• 역세권 일대 근린상업기능 확충을 위하여 판매시설 건축물 규모 완화사항 추가	-

3. 건축물 건폐율 · 용적률 · 높이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건폐율 계획 : 변경

▌건폐율 결정(변경)조서

구 분	적용지역		건폐율	비 고
기 정	주거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	50% 이하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4조 준용
	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60% 이하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4조 준용
변 경	주거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	50% 이하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4조 준용

▌건폐율 결정(변경) 사유서

구 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비고
변 경	• 특별계획구역 내용 삭제 - 근린상업지역	• 특별계획구역 세부지침에 명시하여 관리 · 운영	-

나. 용적률 계획 : 변경

▌용적률 결정(변경)조서

구 분	용도지역		용적률			비고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기 정	주거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	230% 이하	250% 이하	법적 용적률의 2배 이하	-
	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250% 이하주1)		600% 이하주2)	미아역세권 활성화사업 특별계획구역
변 경	주거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	250% 이하	275% 이하	법적 용적률의 2배 이하	-

주1)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기준」에 따른 기준(허용)용적률
주2)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기준」에 따른 상한용적률

▌용적률 결정(변경) 사유서

구 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비고
변 경	• 특별계획구역 내용 삭제 - 근린상업지역	• 특별계획구역 세부지침에 명시하여 관리 · 운영	-
	• 기준/허용 용적률 변경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 개편사항('24.4.) 반영	-

다. 높이 계획 : 변경

▌ 높이 결정(변경)조서

구 분	용도지역	높 이	간선부	이면부		비 고
				-	A	
기 정	제3종 일반주거지역	기준높이	60m 이하	20m 이하	24m 이하	-
		최고높이	70m 이하	30m 이하	35m 이하	
	근린상업지역	최고높이	83m 이하			미아역세권 활성화사업 특별계획구역
변 경	제3종 일반주거지역	최고높이	70m 이하	30m 이하	35m 이하	-

▌ 높이 결정(변경) 사유서

구 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비고
변 경	• 특별계획구역 내용 삭제 - 근린상업지역	• 특별계획구역 세부지침에 명시하여 관리·운영 •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에 따른 높이계획 체계 조정	-

4. 건축물의 배치·형태 및 경관계획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건축물의 배치 및 형태 계획 : 변경

▌ 건축물 건축선·배치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구 분	적용지역	계획내용		비고
		기 정	변 경	
건축 한계선	도봉로변	• 3m	• 3m	-
	도봉로 이면부	• 2~5m[주1)] - 솔매로49길, 소로 1-가 • 2m - 솔매로45길, 솔매로49길 - 소로 1-가 및 소로 2-1[주2)] • 1m	• 2m • 1m - 구역계(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인접 도로 중 현황 폭 8m이상 보차혼용도로변 - 현황 폭 10m이상 보차혼용도로변	-
벽면 한계선	도봉로 이면부	• 1m - 소로 1-가 (지하1층[주3)]~지상3층)	-	-

※ 단, 도봉로 이면부 건축한계선 지정 적용 시 건축이 불가능한 대지(세장형필지, 과소필지 등)에 한하여 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한계선을 조정할 수 있다.(경미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

주1) 미아역세권 활성화사업 특별계획구역에 한함

주2) 건축한계선 상세 계획은 미아역세권 활성화사업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으로 별도로 결정함

주3) 지하1층 벽면한계선의 경우 보행로로 사용되는 지상부분에 한함

▌건축물 건축선 · 배치에 관한 결정(변경)사유서

구 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비고
변 경	• 특별계획구역 내용 삭제 - 특별계획구역내 건축한계선 및 벽면한계선	• 특별계획구역 세부지침에 명시하여 관리 · 운영	-
	• 도봉로 이면부 건축한계선 1m 구간 축소	• 도봉로변 진출입구간 현황도로폭 및 교통체계 고려하여 건축한계선 2m로 변경	-

나. 건축물의 형태·외관 및 환경친화적 계획 : 변경

▌건축물 형태 · 외관 및 환경친화적 요소에 관한 계획(기정)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건축물 형태	저층부 형태	• 인접대지에 기존 건축물들이 있을 경우 신축건물의 1층 개구부 높이는 기존 건축물들의 1층 개구부 높이와 조화를 이루도록 함 • 간선가로변에 개방형 쇼윈도우를 설치하여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도모함 • 건축물의 1층 바닥높이 : 접하는 보도 또는 도로로부터 일반인 및 장애인의 진출입에 불편함이 없도록 계획(단, 경사지의 경우 접하는 보도 또는 도로 높이의 높은 쪽을 기준으로 함) • 측면 이격공지의 차폐 : 대지의 측면경계선과 건물사이의 이격거리가 3m 미만이고 이격부분이 통로로 사용되지 않을 경우 이격공지는 차폐조경 등으로 차폐	-
건축물 외관		• 건축물의 외벽은 원칙적으로 골조가 노출되어서는 아니됨 • 의장, 재료, 색채에 있어 3면 이상의 벽면에서 통일성을 유지하여야 함 • 조립식 무피복철골조, 컨테이너 등의 구조를 제한하여 가로경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함 • 개구부가 없는 벽면을 가로에 노출하여서는 아니됨(단, 벽면에 조경, 벽화 등 장식적 처리를 하여 당해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제외) • 건축물 외벽 재료는 자연스러운 재질 및 색채이용 권장 • 1층에 차양시설의 설치 및 창문부착 광고물을 금지	-
기타 사항	옥외 광고물	• 통합간판 설치 유도 • 폭 20m이상 도로변의 옥외광고물은 옥외광고물 관리조례등 관련 규정 준수	-
	야간 조명	• 투시형벽면 설치시 내·외부 조명을 설치하여 가로분위기를 조성하며, 특히 이면부의 야간경관 향상 및 보행활동 활성화 유도	-

▌건축물 형태 · 외관 및 환경친화적 요소에 관한 계획(변경)

구 분		적용대상	계 획 내 용	비고
건축물 형태	분절 및 분할	전구역	• 건축물의 입면이 단조롭고 폐쇄적인 벽면이 되지 않도록 저층/고층 재료구분 및 분절요소 활용한 입면 디자인 • 주변 건축물과의 경관적 조화 및 연속성 확보 • 창호디자인(다양한 차폐시설 디자인 적용)을 활용한 다양한 입면 구성	권장
	1층 바닥 높이	전구역	• 접한 보도 또는 도로로부터 일반인 및 장애인의 진출입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성	규제
	투시형벽면/셔터	전구역	• 1층 전면적의 50% 이상을 쇼윈도 등의 투시형 벽면(내부가 안보이는 컬러유리필름지 등의 설치 금지)으로 설치 • 셔터를 설치 할 경우 가로에서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셔터면적의 2분의 1이상이 개방되어 있는 투시형으로 설치	
	개구부 높이	도봉로변	• 1층 개구부의 높이는 연접한 대지에 기존 건축물이 있을 경우 해당 건물과 조화롭게 조성	권장
건축물 외관	재료/색채	전구역	• 건축물 외벽면의 재료, 의장, 색채는 주변 건축물과 조화를 유지하여야 하며, 원색 사용 및 반사성재료는 금하도록 함 • 과도한 패턴을 이용한 연출 지양 • 재료고유의 질감과 특성이 나타날 수 있는 재료 사용(지나친 장식물이나 어울리지 않는 재료 지양) • 건축물 외벽의 재료는 자연스러운 재질 및 색채이용	권장
	측면 이격 공지	도봉로변	• 폭20m이상 도로에 면한 대지의 측면경계선과 건물사이의 이격거리가 3m미만이고, 이격부분이 통로로 사용되지 않을 경우 이격공지는 조경으로 차폐	
	건축설비의 노출	도봉로변	• 폭 20m이상 도로에 면한 건축물은 옥탑, 냉각탑, 에어컨 실외기 등의 건축설비가 도로변에 노출 불가 • 보행로에 면한 건축물의 외벽면은 기계 환기설비 및 쓰레기통 등의 보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의 설치 금지	
	야간경관조명	전구역	• 쇼윈도 및 건축물 외부에서 1층 전면을 투사하는 저층부 강조조명의 야간조명 등을 설치 권장 • 건축물의 형태를 강조하는 경관조명 적용(고층부 장식조명 연출 지양) • 주변경관과 조화되는 조명연출	
	차양설치	도봉로변	•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사인존, 출입문 및 디스플레이 윈도우를 설치하는 윈도우존, 어닝등의 차양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차양존으로 1층부 수평분할요소를 적용 • 보행자의 이동 및 이용편의를 위한 가변공간 및 캐노피(어닝포함) 등의 설치	규제
기타 사항	옥외 광고물	전구역	• 공공목적 이외의 지주이용간판은 대지경계선을 넘어서 설치금지 • 외부에 노출이 심하거나 건축물과의 이질감이 심한 옥외광고물 설치 규제 및 통합간판 설치 유도 • ‘서울시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및 간판디자인 가이드북’ , ‘서울시 강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기준을 준수	규제
환경 친화적 건축물	옥상녹화	전구역	• 「서울특별시 옥상녹화 활성화 기본계획」 및 「서울특별시 옥상녹화 가이드라인(2017)」에 의한 설치 • 「서울시 건축물 옥상녹화 시스템 유형결정과 관리 매뉴얼」에 적합한 옥상조경 설치 • 대지면적 2,000㎡이상 또는 지상층 연면적 10,000㎡이상 개발시 옥상녹화 설치 의무화	권장/ 규제

구 분		적용대상	계 획 내 용	비고
	빗물이용시설 및 저영향개발	전구역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서울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 개발 기본 조례」, 「서울특별시 물순환정책과 저영향개발 사전협의제도(2016)」에 의한 설치 빗물이용시설 설치 및 저영향개발 기법 도입 • 매장면적의 합계가 3,000㎡이상 개발시 빗물이용시설 설치 의무화	

○ 변경 사유서

구 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비고
변 경	•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 계획 세부 계획기준 추가 • 환경친화적건축물(옥상녹화) 항목 신설	• 역세권 건축물의 외관정비 가이드라인 제시 • 녹지공간 부족한 대상지내 친환경 건축물 유도	-

5.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특별계획구역 계획 : 변경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계획(변경)조서

구 분	구 역 명	위 치	면적(㎡)	비 고
기 정	특별계획구역 ①	미아동 197-14 일대	3,676.8	-
변 경	특별계획구역 ①	미아동 197-14 일대	1,516.1	-
기 정	미아역세권 활성화사업 특별계획구역	미아동 194-2 일원	5,660.02	-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계획(변경) 사유서

구 분	구역명	변경사유
변 경	특별계획구역 ①	• 주민설문조사 결과에 따른 면적 축소 - 감) 2,160.7㎡

가. 특별계획구역 세부지침 계획 : 변경

1) 특별계획구역 ① : 변경

▌계획지침(기정)

구 분		계 획 지 침	비 고
용도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세부개발 계획 수립시
기반시설		• 구역면적의 15% 이상 기부채납 - 도로 : 이면도로와의 연결로 확보를 위한 도로 신설 및 확폭 권장 - 공원 : 역세권 주변 소공원 위치 권장 - 광장 : 역세권 주변 근린광장 위치 권장	-
건축물 용도	불허용도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 안마시술소, 종교시설,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발전시설, 장례식장	전 층

구 분		계 획 지 침	비 고
	지정용도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전시장, 판매시설, 의료시설 중 병원(정신병원, 요양병원 제외), 업무시설 ※ 지정용도는 연면적의 30%이상(주차장면적 제외)인 경우 지정용도가 수용된 것으로 봄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제시된 지정용도 중 선택
건축물 밀도	건폐율	• 60% 이하	-
	용적률	• 기준 : 250% 이하, 허용 : 350% 이하(상한용적률 : 400% 이하) ※ 허용용적률 산정 용적률 인센티브 완화항목 및 완화내용은 특별계획구역 밖과 동일하게 적용 ※ 상한용적률 산정방식은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제7조 내용을 따름	-
	높이	• 80m 이하	-
건축물 배치	건축 한계선	• 간선부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3m • 이면부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2m	-
대지내 공지	전면공지	• 도봉로변 3m, 이면도로변 2m, 건축한계선 후퇴부분 전면공지 조성 • 접한 보도 또는 차도와 단차 없이 조성하고 차량통행 지장물은 설치하지 않음 • 전면공지는 인접한 공공부문과 조화되는 포장재료를 사용하고, 내구성 있는 재료를 사용하여 건축물 신축 시 사업시행자가 조성	조성방식은 건축심의 및 허가 시 허가권자와 협의하여 조성 가능
	공개공지	• 미아역과 인접한 블록의 가각부 및 보행결절점 주변으로 공개공지 설치 권장 • 개방형 구조로서 조경, 벤치 등 다중이용 편의시설 설치	
대지내 공지	차량출입 불허구간	• 도봉로변	-
운용기준		• 본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은 shift, 정비사업 등의 사업추진시 적용되는 계획지침으로, 계획지침 내용 변경에 대한 타당성이 인정 될 경우에는 조정이 가능함	-

▌ 계획지침(변경)

<table>
<tr><th colspan="4">구 분</th><th>계 획 지 침</th><th>비 고</th></tr>
<tr><td colspan="4">용도지역</td><td>• 상향 전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 준주거지역 상향</td><td>-</td></tr>
<tr><td colspan="4">기반시설</td><td>• 용도지역 상향 면적의 15% 이상
- 공공기여 우선순위를 참고하여 실현 가능하고 연속성 있는 공공기여계획 수립
<table>
<tr><th colspan="2">공공기여(공공시설등)항목 및 우선순위</th></tr>
<tr><td>필수</td><td>•솔매로변 도로폭 1m 확폭 조성</td></tr>
<tr><td>1</td><td>•지역필요시설(생활권계획, 주민설문조사 등에서 도출된 시설)</td></tr>
<tr><td>2</td><td>•공공임대주택 등 조례로 정하는 시설</td></tr>
<tr><td>3</td><td>•도시·건축공동위원회 등 관련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시설</td></tr>
</table></td><td></td></tr>
<tr><td rowspan="4">건축물 용도</td><td rowspan="2">불허 용도</td><td>공통</td><td colspan="2">• 창고시설
• 교정시설
• 발전시설
•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 국방·군사시설</td><td>-</td></tr>
<tr><td>A</td><td colspan="2">•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 자동차 관련시설</td><td>-</td></tr>
<tr><td rowspan="2">권장 용도</td><td rowspan="2">1</td><td>전층</td><td>• 판매시설 / 업무시설
• 학원·교습소·직업훈련소·독서실</td><td rowspan="2">-</td></tr>
<tr><td>특정층</td><td>• 비주거시설 건축시 최상층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최상층 전용면적 30%이상)</td></tr>
<tr><td rowspan="4">건축물 밀도</td><td colspan="2">건폐율</td><td colspan="2">• 60% 이하</td><td>-</td></tr>
<tr><td colspan="2">용적률</td><td colspan="2">• 기준 : 250% / 허용 : 350% / 상한: 400%</td><td>-</td></tr>
<tr><td colspan="2">용적률 인센티브</td><td colspan="2">•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 유형B
•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 공공시설 등 제공 시, 지하철출입구 설치 시 등</td><td>-</td></tr>
<tr><td colspan="2">높이</td><td colspan="2">• 80m 이하</td><td>-</td></tr>
<tr><td>건축물 배치</td><td colspan="2">건축 한계선</td><td colspan="2">• 도봉로변 3m
• 솔매로변, 이면부 2m</td><td>-</td></tr>
</table>

구 분	계 획 지 침	비 고
대지내공지	• 전면공지 : 간선부 보도형, 이면부 차도형 전면공지 조성 • 공개공지 :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 및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26조에 따름	공개공지 위치: 결정도 준수
건축물 형태	• 간선가로에서의 차량 간섭을 최소화하기 위해 차량출입불허구간 설정 • 1층부 층고는 주변 건축물과의 경관적 조화 및 연속성 확보 • 1층 개구부 높이는 연접한 대지에 기존 건축물과 조화롭게 조성	-

※ 역세권활성화사업 등 개별사업 진행시 관련법령에 따름
※ 기부채납 도로의 폭원은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주변 여건변화에 따라 조정 가능

2) 미아역세권 활성화사업 특별계획구역 : 변경없음

▌ 계획지침(변경없음)

구 분		계 획 지 침	비 고
용도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 근린상업지역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공공기여 계획		• 기준(허용)용적률: 250%, 상한용적률: 600% • 공공기여율: 부지면적[주1]의 29% 이상 (계획: 35.46%)	-
건축물 용도	불허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단독주택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아목 (변전소, 도시가스배관시설, 통신용 시설, 정수장, 양수장 등)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 숙박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6호 위락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 공장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시설	전층
	권장용도※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점·휴게음식점·제과점·이용원·미용원·금융업소·사무소·부동산중개사무소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서점·휴게음식점·제과점·일반음식점·학원·독서실·금융업소·사무소·부동산중개사무소 • 판매시설 중 상점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전시장 • 교육연구시설 /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거점형 키움센터) • 수련시설 중 생활권 수련시설(청소년 문화센터)	지하 1층[주2] ~ 지상 3층
건축물 밀도	건폐율	• 60% 이하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용적률	• 기준(허용)용적률 : 250% 이하 • 상한용적률 : 600% 이하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기준」
	높이	• 83m 이하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기준」

구 분		계 획 지 침			비 고
건축물 배치	건축선	건축 한계선	간선부	도로경계선으로부터 3m	도봉로변
			이면부	도로경계선으로부터 2~5m	솔매로 49길,소로1-가
				도로경계선으로부터 2m	소로 1-가, 소로 2-1
		벽면 한계선	이면부	도로경계선으로부터 1m (지하1층[주3]~지상3층)	소로 1-가
대지내 공지	전면공지	간선 도로변	• 건축한계선(3m)을 통한 전면공지 확보 • 간선도로변 미관증진 및 보행공간 확보 • 접하는 보도와 단차를 없애고, 통행이 가능한 구조로 설치 • 주차장, 통행방해물의 설치 금지		-
		이면 도로변	• 건축한계선(2~5m) 및 벽면한계선(1m)을 통한 전면공지 확보 • 보·차도와 접하는 곳은 단차를 없애고 차량 또는 보행자 통행이 원활한 구조로 설치 • 주차장, 통행방해물의 설치 금지		
	공개공지	쌈지형 공지	• 위치 : 주요 보행결절점에 쌈지형공지 위치 지정 • 조성방식 : 쌈지형공지는 미아역세권 활성화사업 특별계획구역의 세부개발계획에 따라 조성		-
차량 동선 및 주차계획	차량출입 불허구간	• 도봉로변			-
운용기준		• 본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은 미아역세권 활성화사업의 사업추진시 적용되는 계획지침으로, 계획지침 내용 변경에 대한 타당성이 인정 될 경우에는 조정이 가능함			-

주1)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용적률 증가분에 대한 부지
주2) 대상지의 단차로 인해 지하1층이 간선로(도봉로)변의 지반 높이와 같음
주3) 지하 1층 벽면한계선의 경우 보행로로 사용되는 지상부분에 한함
※ 권장용도 외 타용도 전환시 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 등을 통하여 승인반도록 함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탁구장 및 체육도장,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동물병원과 동물미용실, 사진관, 교습소는 전환승인 받음)

▮ 용적률 적용기준(변경없음)

구 분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완화내용	비고
공공기여에 관한 계획	공공기여율	• 부지면적의 29.0% 이상	• 부지면적의 35.46%	기준(허용) 용적률 250% 상한 용적률 600% 부여	모든 항목을 충족 하여야 함
			• 공공임대주택 9.21% • 지역필요시설 24.56% • 거점형 키움센터 17.13% • 청소년 문화센터 7.43% • 도로 1.69%		
건축물 용도구분	비주거비율	• 지상용적률 10% 이상	• 주거 : 비주거 = 78.41% : 21.59%		
		• 전체 연면적 20% 이상	• 주거 : 비주거 = 76.41% : 23.59%		

구 분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완화내용	비고
	주거비율	• 제한 없음	-		
주택건설 기준	주택규모	• 공공임대주택 : 전용 60㎡ 이하	• 공공임대주택: 49㎡(10세대), 59㎡(18세대), 74㎡(4세대), 84㎡(2세대)		
		• 민간주택(임대, 분양): 기준 없음	• 아파트(분양): 49㎡(11세대), 59㎡(126세대), 74㎡(70세대), 84㎡(19세대)		
건축물 형태	21세기 미래형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주요정책	•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커뮤니티 지원시설의 설치계획, 에너지 효율 건축물, 친환경 건축물 등 2가지 이상 의무적으로 이행	• 에너지효율 건축물 이행, 친환경 건축물 이행		
주민 공동시설	주민공동시설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에 따른 주민공동시설 설치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100㎡ 이상 설치	• 주민공동시설 568.38㎡ 계획 - 커뮤니티시설, 주민운동시설(휘트니스), 카페 등		

※ 「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기준」 준용
※ 상기 사항은 향후 건축계획 등에 따라 위치, 면적(규모)은 조정될 수 있음

▮ 건축물의 배치 및 건축선 결정조서(변경없음)

구 분	적용지역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고
건축 한계선	도봉로변	• 3m	좌 동	도면참조
	도봉로변 이면부	• 2 ~ 5m (솔매로 49길, 소로 1-가) • 2m (소로 1-가, 소로 2-1)	• 4m (소로 1-가) • 2 ~ 5m (솔매로 49길) • 2m (소로 1-가, 소로 2-1)	
벽면 한계선	도봉로변 이면부	• 1m (※ 지하1층 ~ 지상3층) (소로 1-가)	좌 동	

※ 지하 1층 벽면한계선의 경우 보행로로 사용되는 지상부분에 한함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 등 결정조서(변경없음)

구 분		계획내용		비 고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건축물 형태	저층부 형태	• 인접대지에 기존 건축물들이 있을 경우 신축건물의 지상1층 개구부 높이는 기존 건축물들의 1층 개구부 높이와 조화를 이루도록 함 • 간선가로변에 개방형 쇼윈도우를 설치하여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도모함 • 건축물의 지상1층 바닥높이 : 접하는 보도 또는 도로로부터 일반인 및 장애인의 진출입에 불편함이 없도록 계획(단, 경사지의 경우 접하는 보도 또는 도로 높이의 높은 쪽을 기준으로 함) • 측면 이격공지의 차폐 : 대지의 측면경계선과 건물사이의 이격거리가 3m 미만이고 이격부분이 통로로 사용되지 않을 경우 이격공지는 차폐조경 등으로 차폐	• 인접대지에 기존 건축물들이 있을 경우 신축건물의 ※지하1층 ~ 지상1층 개구부 높이는 기존 건축물들의 1층 개구부 높이와 조화를 이루도록 함 • 간선가로변에 개방형 쇼윈도우를 설치하여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도모함 • 건축물의 ※지하1층 ~ 지상1층 바닥높이 : 접하는 보도 또는 도로로부터 일반인 및 장애인의 진출입에 불편함이 없도록 계획(단, 경사지의 경우 접하는 보도 또는 도로 높이의 높은 쪽을 기준으로 함) • 측면 이격공지의 차폐 : 대지의 측면경계선과 건물사이의 이격거리가 3m 미만이고 이격부분이 통로로 사용되지 않을 경우 이격공지는 차폐조경 등으로 차폐	-
건축물 외관		• 건축물의 외벽은 원칙적으로 골조가 노출되어서는 아니됨 • 의장, 재료, 색채에 있어 3면 이상의 벽면에서 통일성을 유지하여야 함 • 조립식 무피복철골조, 컨테이너 등의 구조를 제한하여 가로경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함 • 개구부가 없는 벽면을 가로에 노출하여서는 아니 됨(단, 벽면에 조경, 벽화 등 장식적 처리를 하여 당해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제외) • 건축물 외벽 재료는 자연스러운 재질 및 색채이용 권장 • 지상1층에 차양시설의 설치 및 창문부착 광고물을 금지	• 건축물의 외벽은 원칙적으로 골조가 노출되어서는 아니 됨 • 의장, 재료, 색채에 있어 3면 이상의 벽면에서 통일성을 유지하여야 함 • 조립식 무피복철골조, 컨테이너 등의 구조를 제한하여 가로경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함 • 개구부가 없는 벽면을 가로에 노출하여서는 아니 됨(단, 벽면에 조경, 벽화 등 장식적 처리를 하여 당해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제외) • 건축물 외벽 재료는 자연스러운 재질 및 색채이용 권장 • ※지하1층 ~ 지상1층에 차양시설의 설치 및 창문부착 광고물을 금지	-
기타 사항	옥외 광고물	• 통합간판 설치 유도 • 폭 20m이상 도로변의 옥외광고물은 옥외광고물 관리조례등 관련 규정 준수	좌 동	-
	야간 조명	• 투시형벽면 설치시 내·외부 조명을 설치하여 가로분위기를 조성하며, 특히 이면부의 야간경관 향상 및 보행활동 활성화 유도	좌 동	-

※ 대상지의 단차로 인해 지하1층이 간선로(도봉로)변의 지반 높이와 같음

▮ 대지내 공지 결정조서(변경없음)

구 분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 고
전면공지	간선부	• 건축한계선(3m)을 통한 전면공지 확보 • 간선도로변 미관증진 및 보행공간 확보 • 접하는 보도와 단차를 없애고, 통행이 가능한 구조로 설치 • 주차장, 통행방해물의 설치 금지	• 건축한계선(3m)(도봉로변)을 통한 보도부속형 전면공지 확보 • 전면가로 활성화를 위해 주차 진·출입, 통행방해물의 설치 금지 • 일반인의 통행이 용이하도록 접하는 보도와 단차를 없애고, 통행이 가능한 구조로 설치 • 주요 보행결절점에 쌈지형공지 위치 지정	-
	이면부	• 건축한계선(1~5m) 및 벽면한계선(1m, 지하1층※ ~ 지상3층)주) 을 통한 전면공지 확보 • 보·차도와 접하는 곳은 단차를 없애고 차량 또는 보행자 통행이 원활한 구조로 설치 • 주차장, 통행방해물의 설치 금지	• 건축한계선(2~5m) 및 벽면한계선(1m, 지하1층※ ~ 지상3층)을 통한 보도부속형 전면공지 확보 • 건축한계선(4m)을 통한 차도부속형 전면공지(3m) 및 보도부속형 전면공지(1m) 확보 • 보·차도와 접하는 곳은 단차를 없애고 차량 또는 보행자 통행이 원활한 구조로 설치 • 주차장, 통행방해물의 설치 금지 • 대상지 북측의 학교에서부터 이어지는 보행체계와 연결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이면도로부의 충분한 보행공간 확보	
	적용기준	• 간선부 : 건축한계선 3m(도봉로변) • 이면부 : 건축한계선 2m (솔매로 49길) : 건축한계선 1m	• 간선부 : 건축한계선 3m(도봉로변) • 이면부 : 건축한계선 4m(소로1-가변) : 건축한계선 2m (소로 1-가변, 소로 2-1변) : 건축한계선 2~5m (솔매로49길변) : 벽면한계선 1m(지하1층※ ~지상3층) (소로 1-가변)	
쌈지형공지	적용기준	• 위치 : 주요 보행결절점에 쌈지형공지 위치지정 • 조성방식 : 쌈지형공지는 미아역세권 활성화사업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에 따라 조성	• 위치 : 주요 보행결절점에 쌈지형공지 위치지정 • 조성방식 : 최소면적 45㎡ 이상, 폭 5m 이상으로 조성	도면 및 시행지침 참조

주) 미아역세권 활성화사업 특별계획구역에 한함
※ 지하 1층 벽면한계선의 경우 보행로로 사용되는 지상부분에 한함

▮ 소로 1-가 차도부속형 전면공지에 대한 지역권 설정(변경없음)

- 소로 1-가 차도부속형 전면공지(3m)에 대해서는 공공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권 설정

구 분	내 용
위 치	서울시 강북구 미아동 194-2번지 일부
규 모※	너비 : 3m, 길이 : 42.57m, 면적 : 139.60㎡
보 상	도로 존속기간 내 무상제공
시행주체	사업시행자 조성
관리운영주체	도로관리청 (강북구청)

※ 규모의 경우 향후 측량성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공공기여 계획에 관한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용도지역	용적률		공공기여율		비 고
		기준(허용)	상한	기준	계획	
기정	근린 상업지역	250%	600%	부지면적주1)의 29% 이상	35.46%	「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 운영기준」 준용

주1)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용적률 증가분에 대한 부지

▌ 공공기여 세부계획

구 분		총 공공기여 면적(㎡)	부지제공 면적(㎡)	환산부지 면적(㎡)	비율(%)	지상 연면적(㎡)	지하 연면적(㎡)	연면적 계(㎡)	비 고
공공임대주택		470.46	470.46	-	9.21	2,920.33	1,634.58	4,554.91	34 세대
도로		86.30	86.30	-	1.69	-	-	-	-
지역 필요 시설	거점형 키움센터	875.07	288.33	586.74	17.13	1,857.85	500.65	2,358.50	195 번지 지상 3층
	청소년 문화센터	379.64	132.78	246.86	7.43	855.55	205.22	1,060.77	195 번지 지상 2층
계(㎡)		1,811.47	977.87	833.60	35.46	5,633.73	2,340.46	7,974.18	-

※ 상기 사항은 향우 건축계획 등에 따라 위치, 면적(규모)은 조정될 수 있음

▌ 그 밖에 세부개발계획 내용은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과 동일(변경없음)

6. 인센티브 계획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용적률 인센티브 계획 : 변경

1)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계획 : 변경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기준(기정) – 공통사항

유형	완화항목		완화기준		비 고
환경 친화 에너지 효율화	녹색건축인증	준수시	최우수(그린 1등급) : 기준용적률×0.12 이내 우수(그린 2등급) : 기준용적률×0.08 이내 우량(그린 3등급) : 기준용적률×0.04 이내	세기준 모두 1등급 만족시 기준용적률×0.4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에 따른 녹색건축물 인증기준,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준 준용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 기준에 따른 의무 대상준수
	에너지효율 등급인증		에너지효율 1등급 : 기준용적률×0.08 이내 에너지효율 2등급 : 기준용적률×0.06 이내 에너지효율 3등급 : 기준용적률×0.04 이내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신재생에너지 1등급 : 기준용적률×0.12 이내 신재생에너지 2등급 : 기준용적률×0.10 이내 신재생에너지 3등급 : 기준용적률×0.08 이내 신재생에너지 4등급 : 기준용적률×0.06 이내 신재생에너지 5등급 : 기준용적률×0.04 이내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준용 – 건축물 인증 심사기준(별표 1) ※공급률로 등급판정 대체 가능
	중수도 시설설치	설치시	기준용적률 x 0.04 이내		– 총 사용량의 10%이상 처리시설 설치시 적용 – 관련법상 의무 시설인 경우 제외
	빗물관리 시설설치	설치시	기준용적률 x 0.04 이내		– 빗물저류·이용시설 용량(ton) 및 빗물침투시설 – 침투량(ton/hr)의 합이 건축면적 x 0.05 또는 대지면적 x 0.02 이상이 되도록 설치
	옥상녹화	준수시	기준용적률 × (녹화면적 / 대지면적) × 0.1 이내		– 법정 조경으로 산입된 면적 제외 – 녹화면적은 대지면적 30%까지만 허용
	자연지반보존	준수시	기준용적률 × (보존면적 / 대지면적) × 0.2 이내		– 자연토양 및 투수성 포장 – 지하구조물 미설치시
	녹색주차장	설치시	기준용적률 × (설치면적 / 대지면적)× 0.2 이내		– 기준용적률 × 0.05 이내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유형(기정)

구 분	용도지역	용적률			비고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유형A	제3종 일반주거지역	230% 이하	250% 이하	법적 용적률의 2배 이하	-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기준(기정) - 유형A

유형	내 용	비고
용도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기준/허용용적률	230% 이하 / 250% 이하	
계획목표	• 건축한계선 지정을 통한 보행환경 개선 • 블록단위개발 유도로 간선부 중심기능 강화 • 맞벽건축 유도로 가로경관 향상 • 건축물의 권장용도 수용을 통한 지역특화 유도 • 보차혼용통로 지정으로 맹지해소 및 현황도로 유지 • 지정용도 계획으로 보행활성화 유도	

항목	세부완화항목		완 화 기 준	비 고
공동 개발	공동개발 (권장)	준수시	기준용적률 x α	• 2~3필지 : α= 0.1 • 4필지 이상 : α= 0.2
	맞벽건축			
	블록단위 개발			
대지 내 공지	건축한계선 (전면공지)	준수시	기준용적률 x {(조성면적 - 의무면적) / 대지면적} × 1	-
	공개공지	준수시	기준용적률 x {(설치면적 - 의무면적) / 대지면적} x α	• 피로티구조 : α= 0.5 • 침상형구조 : α= 0.8 • 개방형구조 : α= 1.0
	쌈지형, 침상형 공지	준수시	기준용적률 x {(설치면적 - 의무면적) / 대지면적} x α	
	공공보행통로 (보차혼용통로)	준수시	기준용적률 x (조성면적 / 대지면적) x 0.4	-
건축물 용도	권장용도	전층 권장	기준용적률 x (권장용도 면적 / 주차장을 제외한 건축연면적) x 0.2	-

항목	세부완화항목		완 화 기 준	비 고
	저층부(1층) 가로활성화 용도	준수시	기준용적률 x (지정용도 면적 / 주차장을 제외한 건축면적) x 0.4	1층 건축면적의 30% 이상 (주차장면적 제외)을 해당용도로 설치 시
	지정용도	준수시	기준용적률 x (지정용도 면적 / 주차장을 제외한 건축연면적) x 0.4	연면적의 30%이상 (주차장면적 제외)을 해당용도로 설치 시 [특별계획구역 및 특별계획가능구역 해당]
보행 개선	가로지장물 지중화 또는 이전설치, 지하 연결통로 설치 등	설치시	기준용적률 x 0.2	건물내부 또는 대지내 설치 시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기준(변경) – 유형A(용도지역 유지시)

완화기준	계획내용
용도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용적률(기준/허용/상한)	250% / 275% / 법적 용적률의 2배 이하
중점계획목표	1. 탄소중립, 디자인 혁신 등 서울시 정책사항 실현 유도 2. 강북구 건축 특화디자인 강화 정책사항 적용 3. 공공복리를 증진시키는 공공보행통로 및 공동주차장 조성시 인센티브 부여

인센티브 항목		산정기준	계획기준	인센티브 배분	비고
구분	유형				
탄소 중립	저영향 개발	기준용적률 x 0.06	• 저영향개발 사전협의 대상 건축물: 빗물분담량 기준의 1.2배 이상 설치 • 그 외: 저영향개발 사전협의 빗물분담량 기준 준수	15%	
디자인 혁신	특색있는 건축설계	기준용적률 x 0.06	• 강북구 특화디자인 강화계획 상 특화디자인 케어 및 자문단 제도 이행시	15%	
	유니버셜 디자인 도입	기준용적률 x 0.06	• 서울시 장애물 없는 건축물 인증시	15%	

인센티브 항목		산정기준	계획기준	인센티브 배분	비고
구분	유형				
녹색 생태 도심	공공보행 통로설치	기준용적률 x 0.06	• 폭 4m이상 개방형 공공보행통로 설치 및 통행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권 설정시	15%	
지역 맞춤형	공동 주차장	기준용적률 x 0.06	• 법정주차대수 초과설치(3면 이상 5면 미만) 및 일반개방시	15%	
합계				75%	

주1) '강북구 특화디자인 강화계획' 이란「강북구 '미래, 도시경관 수준 제고' 를위한 민간건축물 특화 디자인 강화 계획」 (2024.4.15., 도시계획과-2732)의 내용을 따르며 향후 계획내용의 개정·변경시그 내용을 따름
주2) '서울형 장애물 없는 건물 인증제' 는서울시 담당 부서의 운영기준에 따라 10년간 유지 의무
주3) '공동주차장' 은 강북구 주차관리과의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신청 및 운영 의무(관련 기준의 개정사항을 따름)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기준(변경) – 유형B(용도지역 상향시)

완화기준	계획내용
용도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용적률(기준/허용/상한)	250% / 350% / 400%
중점계획목표	1. 권장용도 수용을 통한 다양한 역세권 중심기능 확보 2. 대지내 공지 확대 등으로 가로의 개방성 확대 3. 지역필요시설(공동주차장, 공익시설 등) 도입 유도

인센티브 항목		산정기준	계획기준	인센티브 배분	비고
구분	유형				
건축물 용도	권장용도	기준용적률 x (권장용도면적/건축연면적) x 0.4	•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의 30%이상 설치시	30%	
대지내 공지	전면공지 추가 확보	기준용적률 x 0.08	• 간선부 및 이면부 폭 1m 이상 추가 확보시	20%	
	이면도로변 보행공간 조성	기준용적률 x 0.08	• 폭 1m이상 이면부 전면공지 외 보행공간(보도) 추가 조성시	20%	
	공공보행 통로 설치	기준용적률 x 0.08	• 폭 4m이상 개방형 공공보행통로 설치 및 통행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권 설정시	20%	
주차 계획	공동주차장	기준용적률 x 0.16	• 법정주차대수 초과설치(5면 이상) 및 일반 개방시	40%	
건축물 개방	건축물 내 공익시설 설치시	기준용적률 x (제공면적/건축연면적) x 0.8	•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보육시설 등 계획수립시 결정 또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의 20%이상 설치	40%	
합계				170%	

주1) '공동주차장' 은 강북구 주차관리과의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신청 및 운영 의무(관련 기준의 개정사항을 따름)

▌허용용적률 완화계획 변경 사유서

구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비고
변경	• 인센티브계획 유형 및 항목 변경	•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관리운영 기준 및 매뉴얼」 개정사항 반영	-

2) 한시적용적률 완화 계획

▌한시적 용적률 완화 등에 관한 결정조서

완화기준	완화내용	비고
한시적 용적률 완화	산식 = 허용용적률 + 50%p 이내 • 당해 지구단위계획 상 용적률 결정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조례 제51조제2항에 따라 50%p를 추가 계획 가능 - 용도지역이 변경된 제3종일반주거지역 포함 - 허용용적률+완화량(50%p)는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 용적률의 최대한도 안에서 적용 - 용적률 체계개편('24.4.)에 따른 허용용적률 체계와 한시적 용적률 완화는 시행령용적률 범위안에서 적용 가능(300%이하) • 도시계획조례 제51조제2항에 따른 용적률 완화조건을 준수해야 하며, 해당 규정의 존속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적용 불가	제3종일반 주거지역 (서고시 제2025-475호 관련)
임대의무기간 임대주택 도입 용적률 완화	• 당해 지구단위계획 상 용적률 결정에도 불구하고 주거지역에서 임대주택 건설시 도시계획조례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임대주택을 추가 건설 가능 • 2000.7.1. 이후 용적률이 높은 용도지역으로 상향된 경우에는 용적률 완화 적용이 불가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5조제4항)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51조제2항3에 따른 '준주거지역 내 공공임대주택 확보시 적용기준' 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추가 확보 시 적용되는 용적률은 기 계획된 용적률계획과 별도로 100% 이하의 범위에서 추가하여 계획할 수 있음(서울특별시 고시 제2019-313호)	일반주거지역 (서공고 제2025-3046호 관련)

※ 관련법 및 기준(관련고시 등) 변경 시 그에 따름

▌한시적 용적률 완화 등에 관한 결정 사유서

구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비고
변경	• 한시적 용적률 완화 신설	• 서울시 정책사항(임대주택 건설, 일반주거지역 한시적 용적률 완화)의 인센티브 적용을 위한 계획 신설	-

3)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계획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기준조서

공공시설등 제공시 상한용적률	상한용적률 = 허용용적률* or 기준용적률 x (1+1.3 x 가중치 x α토지 + 1.0** x α현금·건축물 ▪ 인센티브 계수 적용 : 토지 1.3, 건축물 1.0, 현금 1.0 * 용도지역 변경이 없는 지역에서의 허용용적률은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관리운영기준 및 매뉴얼」 3-8-2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외한 법적용적률 적용 ** 건축물 계수 완화(1.2적용) : 권역생활서비스시설 또는 정책적으로 필요한 시설로서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 가중치 : 사업부지 용적률에 대한 공공시설 등 부지의 해당 용적률 - 사업부지의 용적률과 공공시설제공 부지의 용적률은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허용용적률로 적용 - 사업부지 및 공공시설 제공부지에 각각의 용도지역이 있는 경우 평균용적률(용적률 적용이 다른 부지 면적으로 가중평균한 용적률)을 산정하여 적용 - 공공시설 제공부지는 용도지역이 상향 또는 하향 조정되는 경우 변경 전 허용용적률 적용 ▪ α토지 : 공공시설등 부지(토지)로 제공한 후의 대지면적 대 공공시설등 부지(건축물 설치비용 환산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의 비율 ▪ α건축물 : 공공시설등 부지(토지)로 제공한 후의 대지면적 대 공공시설등 부지(건축물 설치비용 환산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의 비율 ▪ α현금 : 공공시설등 부지(토지)로 제공한 후의 대지면적 대 공공시설등 부지(현금 환산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의 비율 ▪ 공공시설 등 부지제공 면적 (기존 건축물 기부채납시) = 공공시설등부지 제공면적 X (공공시설등제공부지의 부지가액/용적률을 완화받는부지의 부지가액) ▪ 건축물 환산부지 면적(㎡) = 공공시설등 설치비용(원) / 용적률을 완화 받고자 하는 부지가액(원/㎡) ▪ 현금 환산부지 면적(㎡) = 현금 기부채납비용(원) / 용적률을 완화 받고자 하는 부지가액(원/㎡)
지하철 출입구등 설치시 인센티브	▪ 대지에 설치할 경우 : 상한용적률 = 허용용적률* X (지하철출입구 또는 환기구의 건폐면적 / 대지면적) 이내 ▪ 건물에 설치할 경우 : 상한용적률 = 허용용적률* X (지하철출입구 또는 환기구의 연면적 / 건물 연면적) 이내 * 용도지역 변경이 없는 지역에서의 허용용적률은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관리운영기준 및 매뉴얼」 3-8-2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외한 법적용적률 적용 ▪ 연결통로 공사비 : '공공시설등 제공 시 인센티브 산정기준' 에 따라 공사비를 환산부지면적으로 환산하여 산정하되, 계수는 1.2로 적용

다른 법률에 따른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상한용적률 = 허용용적률 + 법적용적률 x 용적률 완화 비율 ▪ 「건축법」에 따른 공개공지등 설치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른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녹색건축인증,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재활용건축자재 사용시 ▪ 「주택법」에 따른 장수명주택 인증시 ▪ 「건축법」에 따른 특별건축구역(건축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 「지능형건축물 인증기준」에 따른 지능형건축물 인증 시

※ 공공시설 등 제공에 따른 인센티브는 높이와 용적률에 중복적용 가능
※ 관련법 및 기준(관련고시 등) 변경 시 그에 따름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기준 결정 사유서

구분	결정내용	결정사유	비고
신설	• 공공시설등 제공시 • 지하철출입구등 설치시 • 다른 법률에 따른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관리운영 기준 및 매뉴얼」 개정사항 반영	-

나. 높이 완화계획 : 변경

1)기준높이 완화계획 : 변경

▌ 기준높이 완화계획 결정(기정)조서

적용대지	항 목		완화기준
간선부	공개공지 또는 공간		• 기준완화높이 = 기준높이 X (공개공지 등 면적/대지면적) ※ 공개공지 등의 면적은 건축법, 지구단위계획 등에서 정하는 설치의무면적을 전부 포함한다.
	전면공지		• 기준높이 완화 = 기준높이 X (전면공지 면적/대지면적)
	보차혼용통로		• 기준높이 완화 = 기준높이 X (대지내 보차혼용통로면적/대지면적)
	공공보행통로	대지내 공공보행통로	• 기준높이 완화 = 기준높이 X (대지내 공공보행통로면적/대지면적)
		지하공간 연결통로	• 기준높이 완화 = 기준높이 X (대지내 지하공간 연결통로 면적 면적/대지면적)
	건폐율	저층부(5층,20m이하) 건폐율 40%이하	• 기준높이 완화 = 기준높이 X 0.1
이면부	공개공지 또는 공간		• 기준완화높이 = 기준높이 X (공개공지 등 면적/대지면적) ※ 공개공지 등의 면적은 건축법, 지구단위계획 등에서 정하는 설치의무면적을 전부 포함한다.
	전면공지		• 기준높이 완화 = 기준높이 X (전면공지 면적/대지면적)
	보차혼용통로		• 기준높이 완화 = 기준높이 X (대지내 보차혼용통로면적/대지면적)
	대지내 공공보행통로		• 기준높이 완화 = 기준높이 X (대지내 공공보행통로면적/대지면적)
	접도조건 양호대지		• 기준완화 높이 = 3m

▌ 기준높이 완화계획 결정(변경)조서

– 내용없음(폐지)

▌ 기준높이 완화계획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변 경 사 유
폐지	◦ 높이계획 체계 조정에 따른 기준높이 완화계획 삭제

2) 최고높이 완화계획

▌ 최고높이 완화계획 결정조서

구분	완화조건	비고
공공시설부지 제공에 따른 완화	• 완화할 수 있는 높이 = 「건축법」 제60조에 따라 제한된 높이 × (1+공공시설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원래의 대지면적)이내	지구단위 계획구역 전체
공공시설 등 설치에 따른 완화	• 공공시설등을 설치하는 데에 드는 비용에 상응하는 가액(價額)의 부지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 높이 제한을 완화하여 적용	

구분	완화조건	비고
공공시설 등을 설치하여 그 부지와 함께 제공하는 경우	• 공공시설 제공 및 설치에 따른 완화비율 합산가능	

※ 공공시설 등 제공에 따른 인센티브는 높이와 용적률에 중복적용 가능
※ 완화높이 = 최고높이 + (최고높이 x 공공시설등 제공면적/대지면적) ≤ 최고높이의 1.2배

4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변경)

1. 대지내 공지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대지내 공지에 및 통로 등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구 분			계 획 내 용	적용기준	비 고
전면공지	간선 도로변		• 건축한계선을 통한 전면공지 확보 • 간선도로변 미관증진 및 보행공간 확보 • 접하는 보도와 단차를 없애고, 통행이 가능한 구조로 설치 • 주차장, 통행방해물의 설치 금지	건축한계선 3m	보도형 전면공지
	이면 도로변		• 건축한계선을 통한 전면공지 확보 • 보·차도와 접하는 곳은 단차를 없애고 차량 또는 보행자 통행이 원활한 구조로 설치 • 주차장, 통행방해물의 설치 금지	건축한계선 1~2m	보도 · 차도형 전면공지
	이면 도로변	기정	• 건축한계선 및 벽면한계선을 통한 전면공지 확보 • 보·차도와 접하는 곳은 단차를 없애고 차량 또는 보행자 통행이 원활한 구조로 설치 • 주차장, 통행방해물의 설치 금지	건축한계선 1~5m, 주1) 벽면한계선 1m(지하1층 주2) ~지상3층)	미아역세권 활성화사업 특별계획 구역
		변경	없 음	-	폐 지
공개공지	공개공지의 위치		• 공개공지 위치지정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결정도에 표시된 위치에 공개공지 조성 • 공개공지 위치지정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주요 보행결절점 및 전면도로 가각부, 전면도로변에 설치	-	-
	공개공지의 조성		• 공개공지는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 및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 조성 • 공개공지는 소공원(쌈지공원)의 형태로 조성토록 권장	-	대지규모 1,500㎡ 이상 공개공지 설치권장
	쌈지형공지의 위치 및 조성	기정	• 위치 : 주요 보행결절점에 쌈지형공지 위치 지정 • 조성방법 : 쌈지형공지는 미아역세권 활성화사업 특별계획구역의 시행지침에 따라 조성	-	미아역세권 활성화사업 특별계획 구역
		변경	없 음	-	폐 지
통로	보차 혼용통로		• 보차혼용통로는 「건축법」 제2조(정의), 동법 제44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3(지형적 조건 등에 따른 도로의 구조와 너비)의 규정을	폭원 2~4m	-

구 분		계 획 내 용	적용기준	비 고
		준용하여 조성 - 통과도로형 : 4m - 막다른 도로형 : 2~3m · 길이 10m 미만 : 2m · 길이 10m 이상 ~ 35m 미만 : 3m		

주1) 미아역세권 활성화사업 특별계획구역에 한함
주2) 대상지의 단차로 인해 지하1층이 간선로(도봉로)변의 지반 높이와 같음

▌대지내 공지에 및 통로 등에 관한 결정(변경) 사유서

구 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비고
전면공지 및 공개공지	• 특별계획구역 내용 삭제 - 전면공지 : 이면도로변 - 공개공지 : 쌈지형공지의 위치 및 조성	• 특별계획구역 세부지침에 명시하여 관리·운영	-
보차혼용통로 및 전면공지	• 보차혼용통로 일부 삭제 • 보·차도형 전면공지 구분 표현	• 자루형 필지 및 지목상 도로에 계획된 보차혼용통로 삭제	

2. 교통처리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차량동선 및 주차계획 : 변경

▌차량동선 및 주차 결정(변경)조서

구 분		계획내용	비 고
기정	차량출입 불허구간	•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구간 내 대지로 차량출입을 불허함	도봉로변
	공동주차 출입구	• 간선부에 면한 대지가 이면부로의 차량진입이 불가할 경우 계획된 주차 출입구간 내에서 출입이 가능하며 공동개발 등에 따라 이면부 차량진입이 가능한 경우 간선부 주차출입구는 폐쇄된 것으로 봄	도봉로변 20개소
변경	차량출입 불허구간	•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구간 내 대지로 차량출입을 불허함	도봉로변
	공동주차 출입구	• 간선부에 면한 대지가 이면부로의 차량진입이 불가할 경우 계획된 주차 출입구간 내에서 출입이 가능하며 공동개발 등에 따라 이면부 차량진입이 가능한 경우 간선부 주차출입구는 폐쇄된 것으로 봄 • 공동주차출입구가 계획된 일부 대지가 공동개발에 따라 이면부 차량 진입이 가능한 경우 해당 대지의 기존 공동주차출입구를 이면부 진출입이 불가능한 필지의 주차출입구로 변경	도봉로변 17개소
	주차출입구		도봉로변 3개소

▌차량동선 및 주차 결정(변경) 사유서

구 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비고
공동주차출입구	• 3개소 감소 - 삭제 3개소	• 이면도로 차량 진·출입 가능필지 제외 및 위치조정 • 특별계획구역계 조정	-
주차출입구	• 3개소 신설		

3. 경미한 사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도시관리계획의 입안)제4항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19조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처리 등) 및 제68조(권한의 위임) 등의 규정에 의한다.

경 미 한 사 항
1.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변경 · 결정으로서 영 제25조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변경
2. 가구(영 제42조의3제2항 제4호에 따른 별도의 구역을 포함)면적의 10% 이내의 변경
3. 획지면적의 30% 이내의 변경
4. 건축물 높이의 20% 이내의 변경(층수변경이 수반되는 경우 포함)
5. 영 제46조제7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획지의 규모 및 조성계획의 변경
6. 건축선 또는 차량출입구의 변경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건축선의 1m 이내의 변경 – 교통영향평가서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경우
7. 건축물의 배치 · 형태 또는 색채의 변경
8. 지구단위계획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결정된 사항의 변경(다만 용도지역 · 용도지구 · 도시계획시설 · 가구면적 · 획지면적 · 건축물높이 또는 건축선의 변경에 해당하는 사항 제외)
9.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의 10%(용도지역 변경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5%) 이내의 변경 및 동 변경지역안에서의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10. 법 제52조제1항 제7호에 따른 교통처리계획 중 주차장 출입구, 차량 출입구 또는 보행자 출입구의 위치 변경 및 보행자 출입구의 추가 설치
11. 지하 또는 공중공간에 설치할 시설물의 높이 · 깊이 · 배치 또는 규모
12. 대문 · 담 또는 울타리의 형태 또는 색채
13. 간판의 크기 · 형태 · 색채 또는 재질
14. 장애인 · 노약자 등을 위한 편의시설계획
15. 에너지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관한 계획

경 미 한 사 항
16. 생물서식공간의 보호 · 조성 · 연결 및 물과 공기의 순환 등에 관한 계획
17. 국가유산 및 역사문화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18. 「건축법」 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른 건폐율 또는 용적률 완화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 향후 관련지침 및 법령이 제정·개정 또는 변경될 경우 제정·개정 또는 변경된 지침 및 법령을 적용함

▌영 제25조제4항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본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변경)

기정

1. 대지의 분할·교환에 관한 사항
2. 공개공지, 쌈지형 공지, 대지 내 통로의 위치 및 조성방법의 변경(신설, 폐지 포함)
3. 전면공지의 조성방법의 변경
4. 수종·조경시설물 등의 설치계획의 변경
5. 구역과 연접한 필지의 공동개발(지구단위계획에 따를 것을 전제함)
6. 건축선에 접해야 하는 건축물 벽면에 관한 사항
7. 필지면적의 20% 이내에서의 필지분할가능선의 변경

변경

1. 대지의 분할·교환에 관한 사항
2. 공개공지, 쌈지형 공지, 대지 내 통로의 위치 및 조성방법의 변경(신설, 폐지 포함)
3. 전면공지의 조성방법의 변경
4. 수종·조경시설물 등의 설치계획의 변경
5. 구역과 연접한 필지의 공동개발(지구단위계획에 따를 것을 전제함)
6. 건축선에 접해야 하는 건축물 벽면에 관한 사항
7. 필지면적의 20% 이내에서의 필지분할가능선의 변경
8. 민간부문 시행지침의 변경
9. 허용용적률 인센티브에 관한 다음의 사항 (단, 서울시장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함)
   - 지역 특성을 고려한 계획유도 항목을 추가하는 경우
   - 계획기준 변경 또는 산정요율 결정이 필요한 경우

※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경미한 사항의 처리는 자치구청장이 구 도시 · 건축공동위원회 심의(자문) 필요여부 판단하여 처리
※ 결정조서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민간부문 시행지침에 따름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변경) 사유서

구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비고
변경	〈추가〉 • 민간부문 시행지침의 변경 • 허용용적률 인센티브에 관한 사항	• 민간부문 시행지침의 신속한 대응 및 보안을 위한 사항 추가 • 용적률체계 변경에 따른 허용용적률 인센티브의 유연한 변경을 위한 재정비사항 반영	-

Ⅲ. 관계도면 : 붙임 참조(세부 관계도면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 참조)

※ 첨부된 지형도면 등(그 외 세부 관계도면은 첨부 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Ⅳ. 열람장소

○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과(☎02-2133-8386), 강북구 도시계획과(☎02-901-6873)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s://www.eum.go.kr) 및 서울도시공간포털(https://urban.seoul.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용도지역·지구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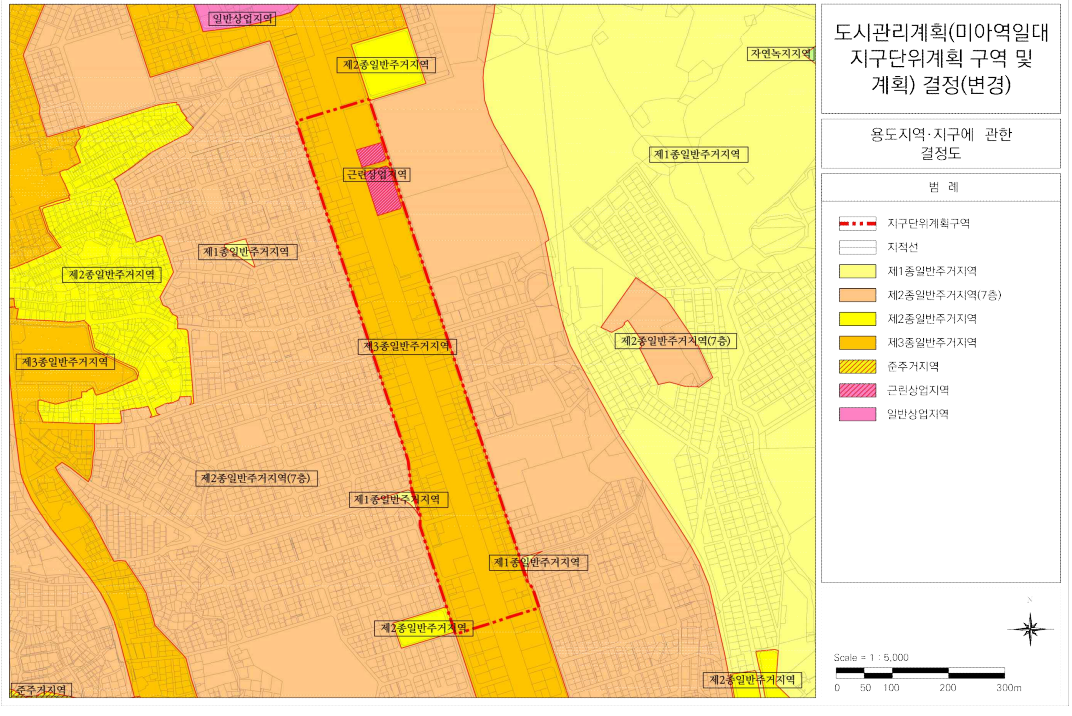

▌도시기반시설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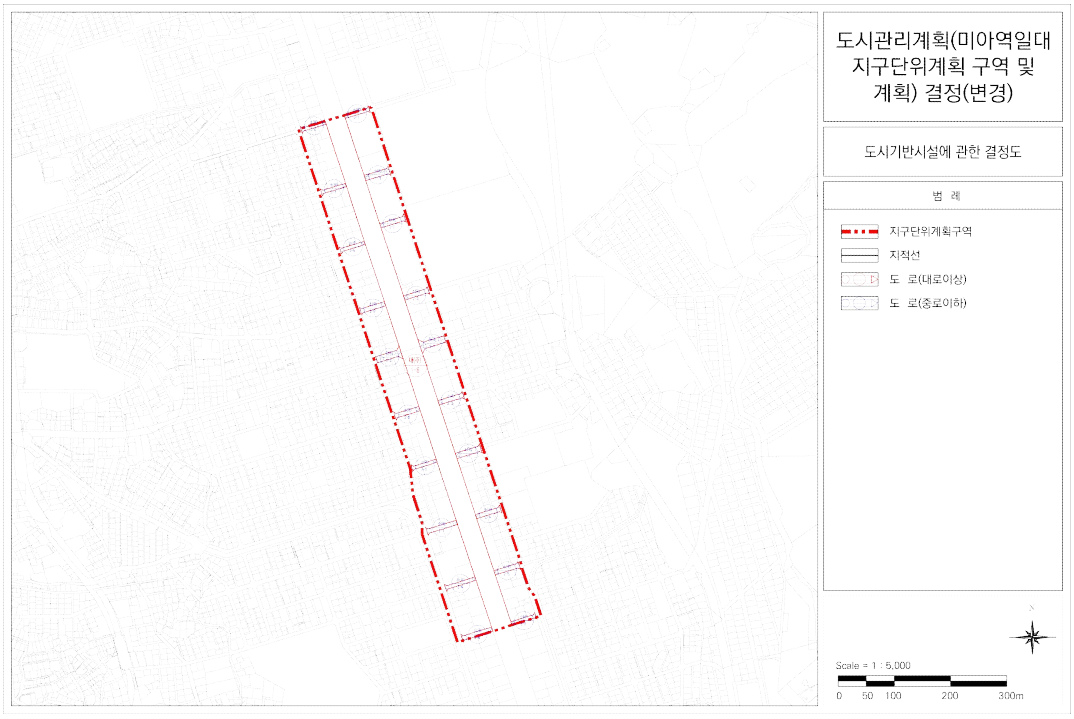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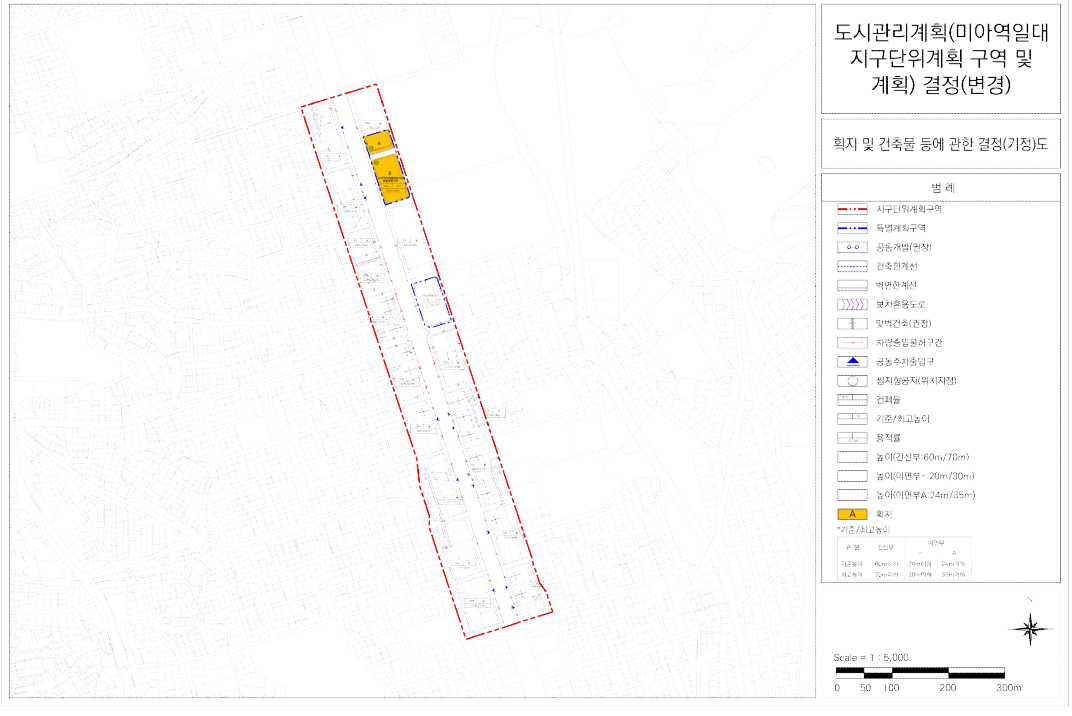

▌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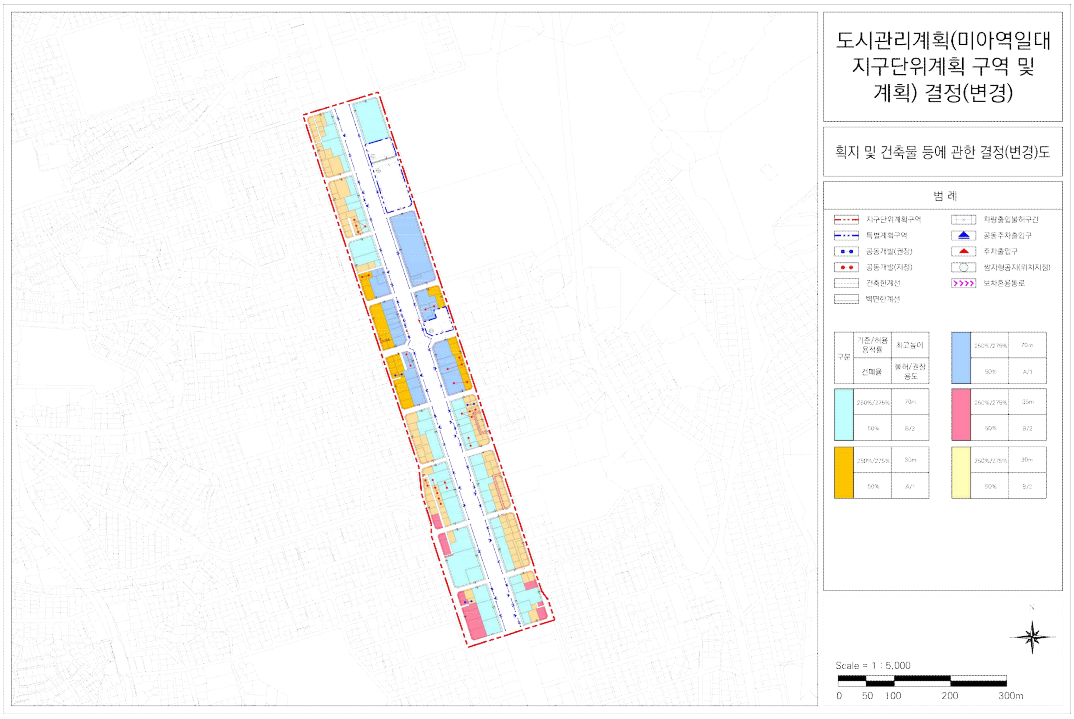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618호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대상지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을 정하고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13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대상지

연번	자치구	명 칭(예정)	위 치	면적(㎡)	비고
1	서대문구	홍제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홍제동 311-1번지 일원	91,801.5	

2. 권리기준산정일 : 2025. 11. 13.(목)
※ 당해 고시 게재일

3. 지정사유
○ 기존 세대수가 증가될 경우 지역주민들의 사업비 부담 증가에 대한 피해 최소화 및 투기억제를 위하여 정비사업을 통하여 분양받을 건축물이 토지의 분할, 단독·다가구주택의 다세대주택 전환, 토지와 건축물의 분리취득, 건축물의 신축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준일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함

4.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기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7조제1항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6조 제2항 규정에 따름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되는 필지에 한하여 적용하되, 구역지정에서 제외되는 필지에 대한 권리산정기준일은 자동 실효

5. 관계도면 : 붙임 참조

6. 안내사항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특별시 공공주택과 (☎02-2133-7071) 또는 아래 구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치구	부서명	연락처	비고
서대문구	도심개발과	02-330-8154	

※ 서울시는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사업 투기방지대책」(`23. 10. 26. 시행)에 따라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권리산정기준일을 '입안권자가 정비계획을 공람공고한 날'로 따로 정함에 따라 고시함

※ 첨부된 관계도면은 참고용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관계도면

○ 홍제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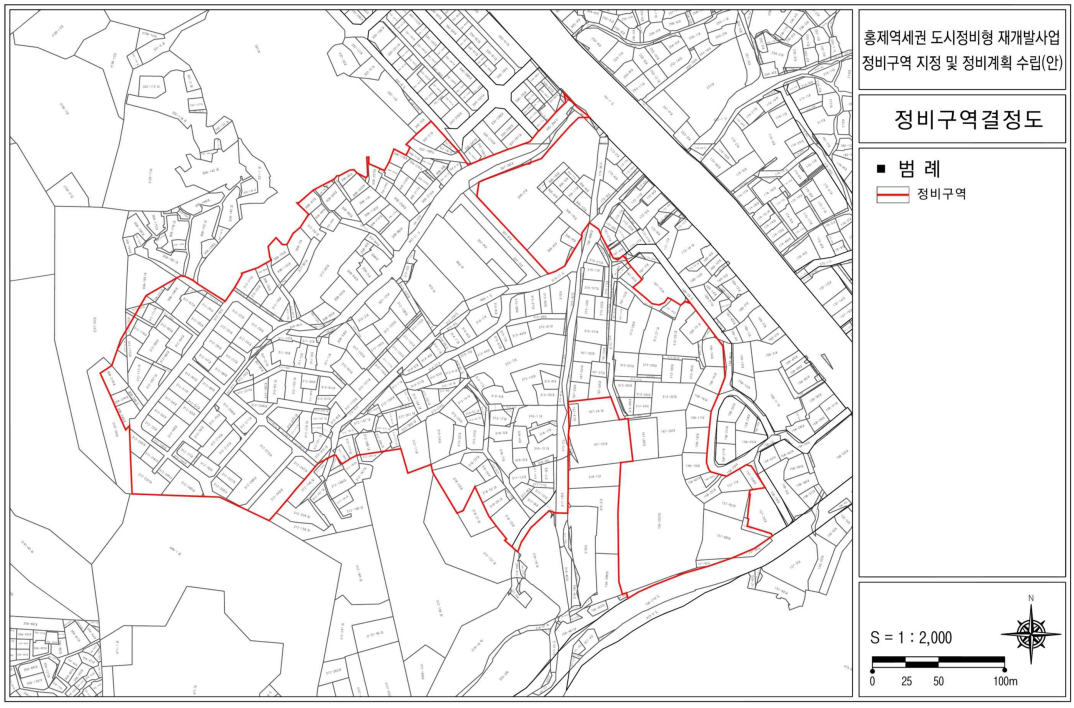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619호

구의 · 자양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구의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경미한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405호(2005.12.16.)로 균형발전촉진지구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57호(2006.10.19.)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225호(2009.6.4.)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98호(2010.3.18.) 및 제2010-186호(2010.5.20.), 제2011-341호(2011.11.17.), 제2012-143호(2012.5.31.), 제2013-41호(2013.2.14.), 제2013-151호(2013.5.16.), 제2014-240호(2014.6.26.), 제2015-115호(2015.5.7.), 제2016-319호(2016.10.13.), 제2017-146호(2017.4.27.), 제2017-253호(2017.7.13.), 제2017-332호(2017.9.14.), 제2017-366호(2017.10.19.), 제2018-015호(2018.1.18.), 제2018-153호(2018.5.17.), 제2018-384호(2018.11.29.), 제2020-317호(2020.7.23.), 제2021-610호(2021.11.4.), 제2022-181호(2022.4.21.), 제2022-541호(2022.12.29.), 제2024-282호(2024.6.7.)에 의거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고시된 「구의 · 자양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하여,
2.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 제12조 제1항에 따라 「구의 · 자양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구의지구 지구단위계획)을 (경미한)변경 결정하고, 「같은 법」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3. 「구의 · 자양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 결정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13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구의 · 자양 재정비촉진지구 내 촉진계획 변경 결정(변경)

1.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 · 유형 · 위치 · 면적 및 지정목적(변경없음)

지구명	유형	위치	면적 (㎡)	비고
구의 · 자양 재정비 촉진지구	주거지형	광진구 구의동 246번지 및 자양동 680번지 일대	385,324.6	-

2. 재정비촉진사업의 완료목표 연도 (변경없음)
3. 재정비촉진지구 정비의 기본방향 및 목표 (변경없음)
4. 재정비촉진계획의 개요 (변경)
   1)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2) 인구·주택 수용계획 (변경없음)
   3) 기반시설 설치계획 (변경없음)
   4) 공원·녹지 및 환경보존계획 (변경없음)

5) 교통계획 (변경없음)
6) 건축계획 (변경없음)
7)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없음)
8) 재정비촉진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9) 재정비촉진사업별 용도지역 계획 (변경없음)
10) 재정비촉진사업별 용적률·건폐율 및 높이계획 등 건축계획 (변경없음)
11) 기반시설의 비용분담 계획 (변경없음)
12) 임대주택 건설 등 세입자 등의 주거대책 (변경없음)
13) 단계적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14) 광고물 관리계획 (변경없음)
15) 폐기물 처리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16) 방재계획 (변경없음)
17) 정보화계획 (변경없음)
18) 에너지 순환계획 (변경없음)
19) 재정비촉진구역별 정비계획 (변경없음)
20) 존치구역의 정비 및 정비계획(변경)
가) 존치정비구역 (변경없음)
나) 존치관리구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1) 구의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변경없음)
○ 토지이용에 관한 결정 (변경없음)
○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변경없음)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변경)
■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 (변경없음)
■ 건축물에 관한 결정 (변경)
① 건축물의 용도계획 결정 (변경없음)
② 건축물 밀도에 관한 결정 (변경없음)
③ 건축물 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④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 (변경)
· 차량동선 및 주차계획에 관한 결정(변경) (변경)

구분	계획내용	비고
차량출입 불허구간	· 간선도로변(25m 이상)에서 대지로의 직접 차량진출입은 원칙적으로 불허 단, 이면도로에서의 차량출입 불가 필지에 한하여 일부 허용	※결정도 참조

※ 금회 변경 사항(자양동 779-12번지 일대 차량출입구 및 차량출입불허구간의 변경사항) 결정도면 참조

▌ 차량출입불허구간 변경(결정도) 사유

위치	변경내용	변경사유
자양동 779-12	차량출입 불허구간 위치 변경	· 기정 차량진출입로가 횡단보도와 인접해 있어 「주차장법」에 따라 출입구 설치 불가하여, 적정 차량 출입구 및 차량출입 불허구간 위치 변경

○ 특별계획구역 및 특별계획가능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변경없음)

○ 경미한 사항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2) 자양9 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없음)

5. 관계도면 : 붙임 참조(세부 관계도면은 열람 장소에 준비된 도면 참조)

※ 첨부된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6. 열람장소 : 시민의 열람 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재정비촉진과(☎ 02-2133-7199) 및 광진구 도시계획과(☎ 02-450-7686)에 관계도서를 각각 비치하고 있습니다.

○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종합지침(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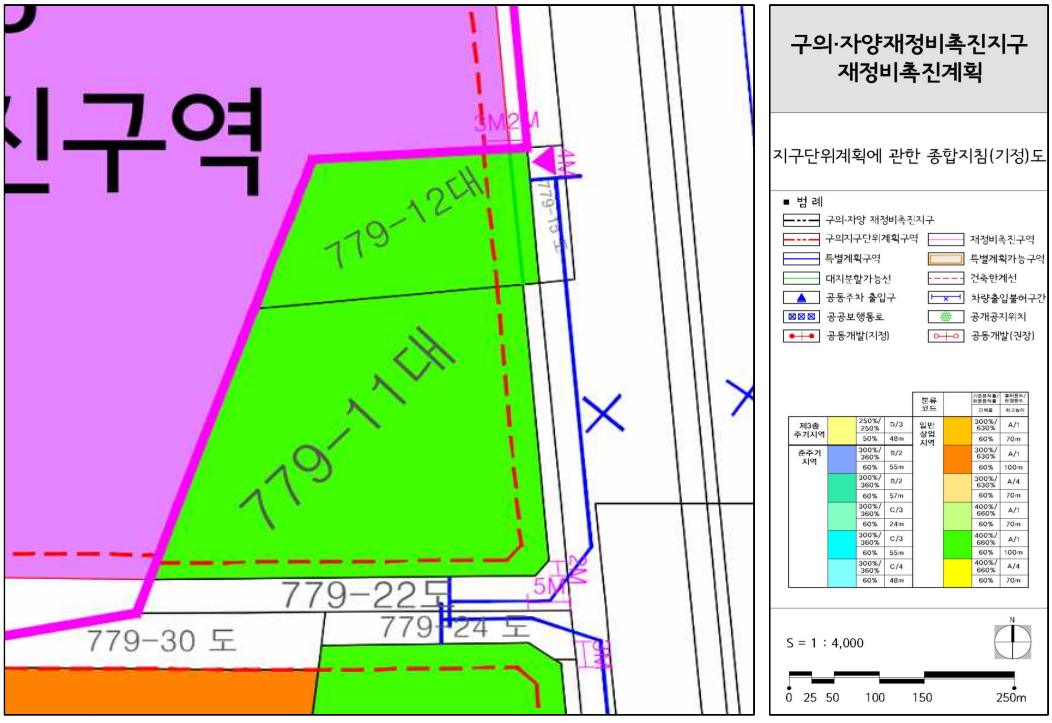

○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종합지침(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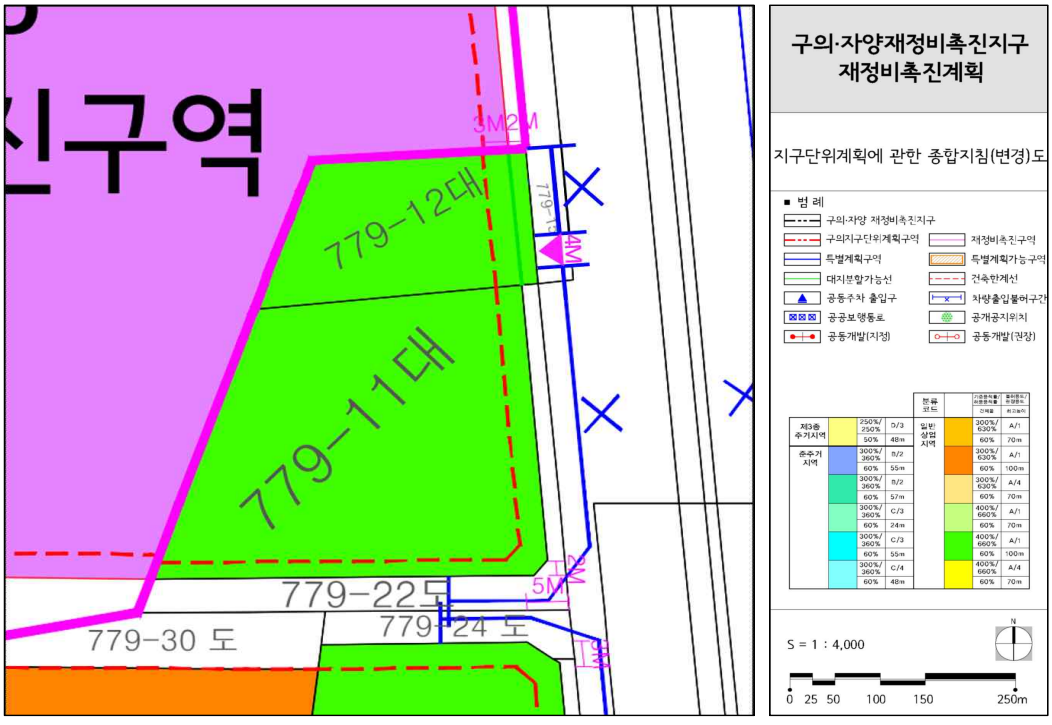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621호

온수근린공원(벽산지구)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건설부 고시 제465(1971.08.06.)호로 도시계획시설(공원)로 최초 지정 및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5-186(2025.4.10.)호로 공원조성계획 최종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온수근린공원)에 대하여 2025년 제3차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13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결정취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온수근린공원(벽산지구) 조성계획결정(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공원 내 유아숲체험원 등을 조성하여 유아들에게 숲체험, 자연교육을 제공하고자 함

2. 위 치 :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류동 산4-24번지 일대 [온수근린공원(벽산지구)]

3. 면 적 : 온수근린공원(벽산지구) 26,074.70㎡

4. 조성계획결정(변경) 조서 및 도면 : 따로 붙임
※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5.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공원조성과(☎ 02-2133-2076) 및 구로구 공원녹지과(☎ 02-860-3097), 양천구 공원녹지과(☎ 02-26203574)에서 관련 도서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온수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조서

■ 온수근린공원 총괄표

구분		변경전						구분	변경후						비고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축물			공작물(기)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축물			공작물(기)	
				동수(동)	바닥면적(㎡)	연면적(㎡)					동수(동)	바닥면적(㎡)	연면적(㎡)		
계		425,237.40	71,559.13	8	666.15	708.15	359	계	425,237.40	73,309.78	10	698.15	740.15	381	
공원시설녹지구역	소 계	425,237.40	71,559.13	8	666.15	708.15	359	소 계	425,237.40	73,309.78	10	698.15	740.15	381	
	지양지구	80,208.90	14,847.73	1	37.51	37.51		지양지구	80,208.90	14,847.73	1	37.51	37.51		
	연의지구	28,155.50	4,792.88	1	72.60	72.60	78	연의지구	28,155.50	4,792.88	1	72.60	72.60	78	
	강신지구	15,463.20	1,710.26				9	강신지구	15,463.20	1,710.26				9	
	농업지구	48,695.10	7,017.72	1	207.00	249.00	43	농업지구	48,695.10	7,017.72	1	207.00	249.00	43	
	매봉지구	88,731.00	4,413.54				48	매봉지구	88,731.00	4,413.54				48	
	잣절지구	77,320.60	17,508.19	2	48.74	48.74		잣절지구	77,320.60	17,508.19	2	48.74	48.74		
	반달지구	1,529.20	726.14				17	반달지구	1,529.20	726.14				17	
	문학지구	26,766.70	7,944.43	1	222.50	222.50	13	문학지구	26,766.70	7,944.43	1	222.50	222.50	13	

구 분	변경 전						구 분	변경 후						비 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동수 (동)	건축물 바닥면적 (㎡)	건축물 연면적 (㎡)	공작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동수 (동)	건축물 바닥면적 (㎡)	건축물 연면적 (㎡)	공작물 (기)	
텃골지구	6,026.00	1,534.90	1	23.80	23.80	34	텃골지구	6,026.00	1,534.90	1	23.80	23.80	34	
궁동지구	868.00	485.62				1	궁동지구	868.00	485.62				1	
벽산지구	26,074.70	3,767.60				36	벽산지구	26,074.70	5,518.25	2	32.00	32.00	58	
온수골지구	7,985.30	2,060.77				10	온수골지구	7,985.30	2,060.77				10	
온수체육지구	17,413.20	4,749.35	1	54.00	54.00	70	온수체육지구	17,413.20	4,749.35	1	54.00	54.00	70	
시설률 (법정40%이하)	71,559.13 / 425,237.40 x 100 = 16.83%						시설률 (법정40%이하)	73,309.78/ 425,237.40 x 100 = 17.24%						증 0.41%
특정시설률 (시설면적20%이하)	9,198.84 / 71,559.13 x 100 = 12.85%						특정시설률 (시설면적20% 이하)	9,164.73/ 73,309.78 x 100 = 12.50%						감 0.35%
건폐율 (법정10%이하)	666.15 / 425,237.40 x 100 = 0.16%						건폐율 (법정10%이하)	698.15/ 425,237.40 x 100 = 0.17%						증 0.01%

온수근린공원(벽산지구) 조성계획결정(변경)조서

12-1. 온수근린공원(벽산지구) 총괄표

구분		변경전						변경후						비고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축물			공작물(기)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축물			공작물(기)	
				동수(동)	바닥면적(㎡)	연면적(㎡)				동수(동)	바닥면적(㎡)	연면적(㎡)		
계		26,074.70	3,767.60				36	26,074.70	5,518.25	2	32.00	32.00	58	
기반시설	소계	2,428.50	2,428.50					2,385.38	2,385.38					감 43.12㎡
	도로	2,292.43	2,292.43					2,266.42	2,266.42					감 26.01㎡
	광장	136.07	136.07					118.96	118.96					감 17.11㎡
조경시설		397.03	397.03					264.35	264.35					감 132.68㎡
휴양시설		244.54	244.54				21	331.15	331.15				18	증 86.61㎡

구 분	변경전						변경후						비 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 (기)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유희시설	433.66	433.66				2	299.66	299.66				1	감 134.00㎡
운동시설	263.87	263.87				13	229.76	229.76				13	감 34.11㎡
교양시설							1,990.95	1990.95	1	15.00	15.00	26	증 1990.95㎡
편익시설							17.00	17.00	1	17.00	17.00		증 17.00㎡
관리시설													
녹지 및 기타	22,307.10						20,556.45						감 1,750.65㎡

12-2. 온수근린공원(벽산지구) 시설조서

구분	시설명	변경전									변경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동)	건축물(㎡)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동)	건축물(㎡)		공작물(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합 계				26,074.70	3,767.60					36			26,074.70	5,518.25		2	32.00	32.00	58	
기반시설	소계			2,428.50	2,428.50								2,385.38	2,385.38						감 43.12㎡
	도로(소계)			2,292.43	2,292.43								2,266.42	2,266.42						감 26.01㎡
	광장(소계)			136.07	136.07								118.96	118.96						감 17.11㎡
	광장-1	가	온수동 9-44임	118.96	118.96						가	온수동 9-44임	118.96	118.96						
	광장-2	가-1	온수동 9-44임	9.36	9.36															폐지
	광장-3	가-2	온수동 9-44임	7.75	7.75															폐지
조경시설	소계			397.03	397.03								264.35	264.35						감 132.68㎡
	장미원	나	온수동 9-44임	157.45	157.45															폐지
	정원										나	온수동 9-44임	157.45	157.45						신설
	생태연못	바	온수동 산4-24임	37.25	37.25															폐지

구분	시설명	변경전									변경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동)	건축물(㎡)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동)	건축물(㎡)		공작물(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초화원	사	온수동 산4-24임	187.85	187.85						사	온수동 산4-24임	106.90	106.90						감 80.95㎡
	목교	아	온수동 9-44임	14.48	14.48															폐지
휴양시설	소계			244.54	244.54					21			331.15	331.15					18	증 86.61㎡
	소나무쉼터	다	온수동 9-44임	225.54	225.54						다	온수동 9-44임	225.54	225.54						
	쉼터	자	온수동 산4-24임	19.00	19.00						자	온수동 산4-24임	105.61	105.61						증 86.61㎡
	파고라	①	전지역							2	①	전지역							3	증 1기
	평의자	②	전지역							6										폐지
	등의자	③	전지역							13	②	전지역							15	증 2기

구분	시설명	변경전									변경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동)	건축물(㎡)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동)	건축물(㎡)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유희시설	소계			433.66	433.66					2			299.66	299.66					1	증 134.00㎡
	어린이놀이터	라	온수동 9-44임	299.66	299.66						라	온수동 9-44임	299.66	299.66						
	어린이놀이터-1	라-1	온수동 산4-24임	134.00	134.00															폐지
	조합놀이대	④	전지역							2	③	전지역							1	감 1기
운동시설	소계			263.87	263.87					13.00			229.76	229.76					13	감 34.11㎡
	다목적운동장	마	온수동 9-44임	229.76	229.76						마	온수동 9-44임	229.76	229.76						
	체력단련장	차	온수동 산4-24임	34.11	34.11															폐지
	체력단련시설	⑤	전지역							13	④	전지역							13	
양교시설	소계												1,990.95	1,990.95		1	15.00	15.00	26	증 1,990.95㎡
	유아숲체험원										카	온수동 산4-3임	1,990.95	1,990.95						신설

구분	시설명	변경전									변경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동)	건축물(㎡)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동)	건축물(㎡)		공작물(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휴게실										1	온수동 9-44임				1	15.00	15.00		신설
	평상										⑤	전지역							3	신설
	숲속아지트										⑥	전지역							1	신설
	통나무 건너기										⑦	전지역							3	신설
	사면오르기										⑧	전지역							2	신설
	놀이테이블										⑨	전지역							3	신설
	관찰데크										⑩	전지역							1	신설
	네트놀이대										⑪	전지역							1	신설
	흔들다리 건너기										⑫	전지역							1	신설

구분	시설명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동)	건축물(㎡)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동)	건축물(㎡)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교양시설	헤먹										⑬	전지역							2	신설
	데크 평상										⑭	전지역							1	신설
	모래놀이대										⑮	전지역							1	신설
	암구게이트										⑯	전지역							1	신설
	이용안내판										⑰	전지역							5	신설
	종합안내판										⑱	전지역							1	신설
편익시설	소계												17.00	17.00		1	17.00	17.00		증 17.00㎡
	공중화장실										2	온수동 9-44임	17.00	17.00		1	17.00	17.00		신설
녹지 및 기타	소계			22,307.10									20,556.45							감 1,750.65㎡
	녹지			22,307.10									20,556.45							감 1,750.65㎡

12-3. 온수근린공원(벽산지구) 도로조서

구분	등 급	류별	번호	폭 원 (m)	연 장 (m)	면 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당초	합 계					2,292.43				
변경	합 계					2,266.42				
	소로	계			206.83	874.96				
		3류	1	2.0~5.5	77.76	326.92	진입로	공원경계	산책로-2	
		3류	2	3.0~5.5	129.07	548.04	진입로	공원경계	공원경계	
당초	산책로	계				1,417.47				
변경						1,391.46				감 32.81㎡
		3류	1	1.5	59.95	95.51	산책로	산책로-1	산책로-1	
		3류	2	2.5	13.03	29.71	산책로	공원경계	산책로-3	
당초		3류	3	4.0~10.0	110.46	525.68	산책로	산책로-1	운동마당 마	
변경		3류		4.0~10.0	110.46	518.35	산책로	산책로-1	운동마당 마	감 7.33㎡
		3류	4	6.0	6.00	36.86	산책로	소로3-2	산책로-3	
		3류	5	1.5	7.44	12.14	산책로	산책로-3	산책로-7	
		3류	6	2.0	133.49	268.56	산책로	공원경계	산책로-7	
		3류	7	2.0	62.83	128.68	산책로	산책로-7	산책로-7	

구분	등 급	류별	번호	폭 원 (m)	연 장 (m)	면 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3류	8	2.0	10.70	22.42	산책로	산책로-7	운동마당 마	
		3류	9	1.5	11.72	17.90	산책로	운동마당 마	광장 가	
		3류	10	4.0	3.31	13.11	산책로	소로3-2	광장 가	
		3류	11	1.0	71.00	71.00	산책로	산책로-1	산책로-6	
당초		3류	12	1.0	19.30	19.30	산책로	목교	산책로-11	
변경		3류		1.5	58.31	85.78	산책로	산책로-1	공원경계	증 66.48㎡
당초		3류	13	1.0	19.70	19.70	산책로	산책로-14	목교	
변경		3류		1.2	20.39	24.35	산책로	산책로-12	쉼터 자	증 4.65㎡
당초		3류	14	1.2	108.00	129.60	산책로	광장-3	광장-3	
변경		3류		1.2	28.63	36.05	산책로	쉼터 자	산책로-15	감 93.55㎡
당초		3류	15	1.0	24.60	24.60	산책로	산책로-14	산책로-14	
변경		3류		1.2	18.92	22.70	산책로	쉼터 자	녹지대	감 1.90㎡
당초		3류	16	1.5	1.8	2.7	산책로	광장-2	광장-3	
변경		3류		1.5	5.56	8.34	산책로	산책로-12	쉼터 자	증 5.64㎡

조성계획도 [변경전]

온수근린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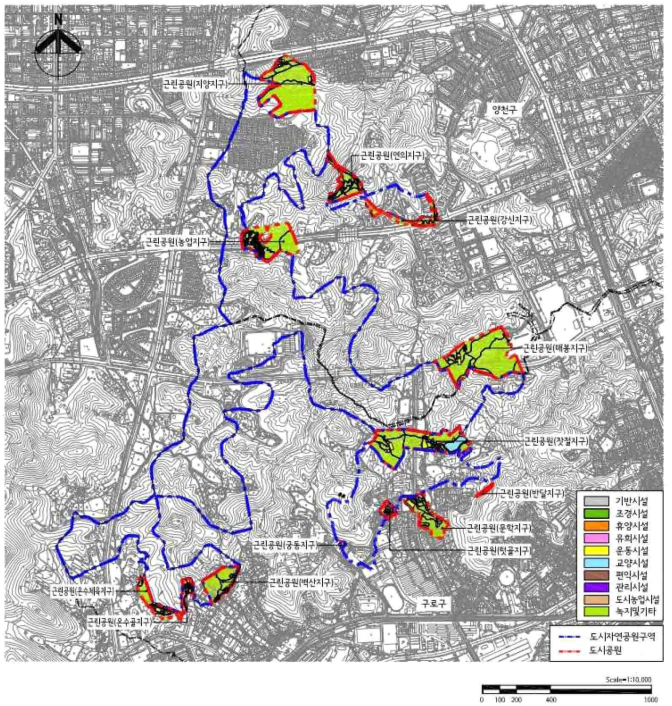

■ 총괄표

구분		총계	지양지구	연의지구	강신지구	농업지구	매봉지구
부지 총 면적		425,237.40	80,208.90	28,155.50	15,463.20	48,695.10	88,731.00
시설 총 면적		71,559.13	14,847.73	4,792.88	1,710.26	7,017.72	4,413.54
기반시설	소계	32,118.76	5,496.91	3,983.44	1,256.02	4,550.72	2,812.61
	도로	27,206.48	5,345.17	2,778.61	1,256.02	3,285.72	2,486.11
	광장	4,912.28	151.74	1,204.83	-	1,265.00	326.50
조경시설		9,311.50	-	650.72	353.35	1,734.00	-
휴양시설		3,768.26	1,014.00	-	54.20	526.00	411.52
유희시설		1,802.38	207.64		-	-	-
운동시설		9,198.84	1,435.37	-	46.69	-	1,189.41
교양시설		14,769.80	6,656.30	-	-	-	-
편익시설		186.36	-	-	-	-	-
관리시설		403.23	37.51	158.72	-	207.00	-
녹지 및 기타		353,678.27	65,361.17	23,362.62	13,752.94	41,677.38	84,317.46
건축물	동수(동)	8	1	1	-	1	-
	바닥면적	666.15	37.51	72.60	-	207.00	-
	연면적	708.15	37.51	72.60	-	249.00	-
공작물(기)		359	-	78	9	43	48
비고							

구분		잣절지구	반달지구	문학지구	탓골지구	중동지구	백산지구	온수골지구	온수체육지구
부지 총 면적		77,320.60	1,529.20	26,766.70	6,026.00	868.00	26,074.70	7,985.30	17,413.20
시설 총 면적		17,508.19	726.14	7,944.43	1,534.90	485.62	3,767.60	2,060.77	4,749.35
기반시설	소계	4,629.16	276.99	3,327.29	503.30	139.07	2,428.50	676.41	2,038.34
	도로	3,590.58	276.99	3,140.22	434.60	99.90	2,292.43	644.79	1,575.34
	광장	1,038.58	-	187.07	68.70	39.17	136.07	31.62	463.00
조경시설		995.25	6.00	2,805.83	475.80	-	397.03	1,384.36	509.16
휴양시설		300.17	112.32	167.69	272.80	177.81	244.54	-	487.21
유희시설		281.00	196.62	-	-	145.82	433.66	-	537.64
운동시설		3,339.87	134.21	1,384.30	259.20	22.92	263.87	-	1,123.00
교양시설		7,891.00	-	222.50	-	-	-	-	-
편익시설		71.74	-	36.82	23.80	-	-	-	54.00
관리시설		-	-	-	-	-	-	-	-
녹지 및 기타		59,812.41	803.06	18,822.27	4,491.10	382.38	22,307.10	5,924.53	12,663.85
건축물	동수(동)	2	-	1	1	-	-	-	1
	바닥면적	48.74	-	222.50	23.80	-	-	-	54.00
	연면적	48.74	-	222.50	23.80	-	-	-	54.00
공작물(기)		-	17	13	34	1	36	10	70
비고									

* 공원시설률 : 71,559.13 / 425,237.40 x 100 = 16.83%
* 특정시설률(도서관·문화예술회관·청소년수련시설·노인복지관 및 운동시설률)
: 9,198.84 / 71,559.13 x 100 = 12.85%
* 건폐율 : 666.15 / 425,237.40 x 100 = 0.16%

조성계획도 [변경후]

온수근린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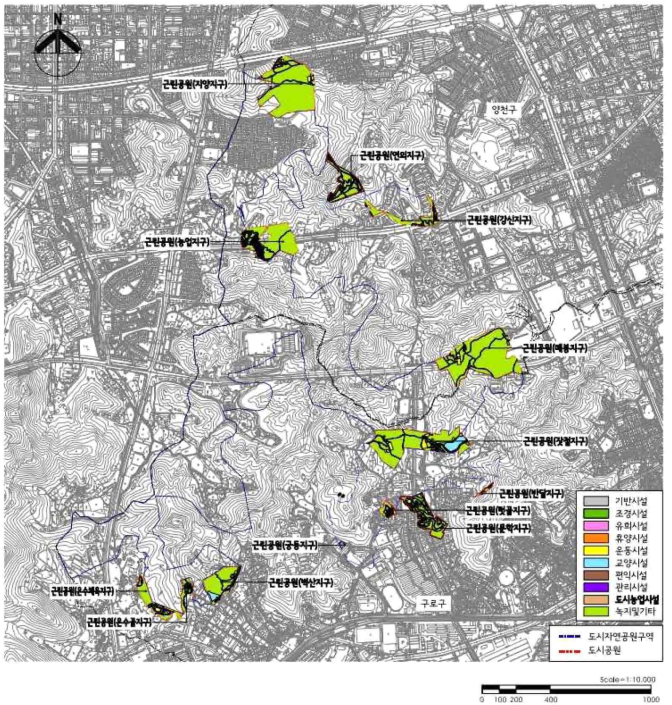

■총괄표

구분		총계	지양지구	연희지구	강신지구	농업지구	매봉지구
부지 총 면적		425,237.40	80,208.90	28,155.50	15,463.20	48,695.10	88,731.00
시설 총 면적		73,309.78	14,847.73	4,792.88	1,710.26	7,017.72	4,413.54
기반시설	소계	32,075.64	5,496.91	3,983.44	1,256.02	4,550.72	2,812.61
	도로	27,180.47	5,345.17	2,778.61	1,256.02	3,285.72	2,486.11
	광장	4,895.17	151.74	1,204.83	-	1,265.00	326.50
조경시설		9,178.82	-	650.72	353.35	1,734.00	-
휴양시설		3,854.87	1,014.00	-	54.20	526.00	411.52
유희시설		1,668.38	207.64		-	-	-
운동시설		9,164.73	1,435.37	-	46.69	-	1,189.41
교양시설		16,760.75	6,656.30	-	-	-	-
편익시설		203.36	-	-	-	-	-
관리시설		403.23	37.51	158.72	-	207.00	-
녹지 및 기타		351,927.62	65,361.17	23,362.62	13,752.94	41,677.38	84,317.46
건축물	동수(동)	10	1	1	-	1	-
	바닥면적	698.15	37.51	72.60	-	207.00	-
	연면적	740.15	37.51	72.60	-	249.00	-
공작물(기)		355	-	78	9	43	48
비고							

구분		잣절지구	반달지구	문학지구	청골지구	궁동지구	백산지구	온수골지구	온수체육지구
부지 총 면적		77,320.60	1,529.20	26,766.70	6,026.00	868.00	26,074.70	7,985.30	17,413.20
시설 총 면적		17,508.19	726.14	7,944.43	1,534.90	485.62	5,518.25	2,060.77	4,749.35
기반시설	소계	4,629.16	276.99	3,327.29	503.30	139.07	2,385.38	676.41	2,038.34
	도로	3,590.58	276.99	3,140.22	434.60	99.90	2,266.42	644.79	1,575.34
	광장	1,038.58	-	187.07	68.70	39.17	118.96	31.62	463.00
조경시설		995.25	6.00	2,805.83	475.80	-	264.35	1,384.36	509.16
휴양시설		300.17	112.32	167.69	272.80	177.81	331.15	-	487.21
유희시설		281.00	196.62	-	-	145.82	299.66	-	537.64
운동시설		3,339.87	134.21	1,384.30	259.20	22.92	229.76	-	1,123.00
교양시설		7,891.00	-	222.50	-	-	1,990.95	-	-
편익시설		71.74	-	36.82	23.80	-	17.00	-	54.00
관리시설		-	-	-	-	-	-	-	-
녹지 및 기타		59,812.41	803.06	18,822.27	4,491.10	382.38	20,556.45	5,924.53	12,663.85
건축물	동수(동)	2	-	1	1	-	2	-	1
	바닥면적	48.74	-	222.50	23.80	-	32.00	-	54.00
	연면적	48.74	-	222.50	23.80	-	32.00	-	54.00
공작물(기)		-	17	13	34	1	58	10	70
비고									

* 공원시설률 : 73,309.78 / 425,237.40 x 100 = 17.24%
* 특정시설률(도서관·문화예술회관·청소년수련시설·노인복지관 및 운동시설률)
: 8,494.01/ 71,559.13 x 100 = 11.87%
* 건폐율 : 698.15/ 425,237.40 x 100 = 0.17%

조성계획도 [변경전]

온수근린공원(온수벽산지구)

■사업조서

구분		부호	부지면적 (㎡)	사업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 (개)	비고
합계			26,074.70	3,767.65	-	-	-	-	36	
개발사업	소계		2,428.50	2,428.50	-	-	-	-	-	
	도로		2,292.43	2,292.43	-	-	-	-	-	
	철거	가	136.07	136.07	-	-	-	-	-	
		가-1	(118.98)	(118.98)	-	-	-	-	-	
		가-2	(8.36)	(8.36)	-	-	-	-	-	
		가-3	(7.75)	(7.75)	-	-	-	-	-	
조경사업	소계		397.03	397.03	-	-	-	-	-	
	장미원	나	157.45	157.45	-	-	-	-	-	
	생태연못	바	37.25	37.25	-	-	-	-	-	
	초화원	사	187.85	187.85						
	목교	아	14.48	14.48	-	-	-	-	-	
용장사업	소계		244.54	244.54	-	-	-	-	21	
	소나무쉼터	다	225.54	225.54	-	-	-	-	-	
	쉼터	차	19.00	19.00	-	-	-	-	-	
	파고라	①			-	-	-	-	2	
	정자각	②			-	-	-	-	6	
	휴게각	③			-	-	-	-	13	
유희사업	소계		433.66	433.66	-	-	-	-	2	
	어린이놀이터	라	299.66	299.66	-	-	-	-	-	
	어린놀이터-1	라-1	134.00	134.00	-	-	-	-	-	
	조합놀이대	④		-	-	-	-	-	2	
운동사업	소계		263.87	263.87	-	-	-	-	13	
	다목적운동장	마	229.76	229.76	-	-	-	-	-	
	체력단련장	자	34.11	34.11	-	-	-	-	-	
	체력단련시설	⑤	-	-	-	-	-	-	13	
녹지 및 기타	소계		22,307.10	-	-	-	-	-	-	
	녹지		22,307.10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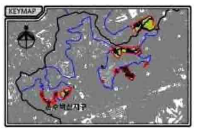

조성계획도 [변경후]

온수근린공원(온수벽산지구)

▪사업조서

구분		부호	부지면적(㎡)	사업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주차대수(기)	비고
합계			26,074.70	5,518.25	-	2	32.00	32.00	58	
기반시설	소계		2,385.38	2,385.38	-	-	-	-	-	
	도로		2,266.42	2,266.42	-	-	-	-	1	
	광장	가	118.96	118.96	-	-	-	-	-	
공원시설	소계		264.35	264.35	-	-	-	-	-	
	정원	나	157.45	157.45	-	-	-	-	-	
	초화원	사	106.90	106.90						
휴양시설	소계		331.15	331.15	-	-	-	-	18	
	소나무쉼터	다	225.54	225.54	-	-	-	-	-	
	쉼터	차	105.61	105.61	-	-	-	-	-	
	퍼고라	①			-	-	-	-	3	
	등의자	②			-	-	-	-	15	
유희시설	소계		299.66	299.66	-	-	-	-	1	
	어린이놀이터	라	299.66	299.66	-	-	-	-	-	
	조합놀이대	③		-	-	-	-	-	1	
운동시설	소계		229.76	229.76	-	-	-	-	13	
	다목적운동장	마	229.76	229.76	-	-	-	-	-	
	체력단련시설	④	-	-	-	-	-	-	13	
교양시설	소계		1,990.95	1,990.95	-	1	15.00	15.00	26	
	공작숲체험원	카	1,990.95	1,990.95	-	-	-	-	-	
	휴게실	1	-	-	-	1	15.00	15.00	-	
	학습	⑤			-	-	-	-	3	
	숲속미끄트	⑥			-	-	-	-	1	
	중나무 관찰	⑦			-	-	-	-	3	
	사면오르기	⑧			-	-	-	-	2	
	놀이테마풀	⑨			-	-	-	-	3	
	관찰데크	⑩			-	-	-	-	1	
	넥트 놀이대	⑪			-	-	-	-	1	
	종합구체관찰	⑫			-	-	-	-	1	
	해먹	⑬			-	-	-	-	2	
	테크 평상	⑭			-	-	-	-	1	
	모래놀이대	⑮			-	-	-	-	1	
	입구제이트	⑯			-	-	-	-	1	
	이용안내판	⑰			-	-	-	-	5	
	종합안내판	⑱			-	-	-	-	1	
환경시설	소계		17.00	17.00	-	1	17.00	17.00	-	
	공중화장실	2	17.00	17.00	-	1	17.00	17.00	-	
녹지 및 기타	소계		20,556.45	-	-	-	-	-	-	
	녹지		20,556.45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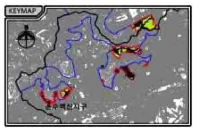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622호

금천구 독산동 292-6 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청년안심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변경)·지구계획 승인(변경) 및 도시관리계획(독산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561호(2021. 10. 14.)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지구계획 승인 및 도시관리계획(독산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된 금천구 독산동 292-6 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청년안심주택)에 대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6조, 제28조에 따라 금천구 독산동 292-6 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청년안심주택) 공급촉진지구를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을 승인(변경) 고시합니다.

또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고시 제1998-232호(1998. 7. 2.)로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34호(2018. 2. 19.),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561호(2021. 10. 14.),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513호(2023. 11. 23.)로 결정(변경)된 「독산 지구단위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결정(변경)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13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청년안심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변경)에 관한 사항

1. 촉진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변경)
   - 명 칭 : 금천구 독산동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청년안심주택) 공급촉진지구
   - 위 치 :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292-6번지 일대
   - 면 적
     - 기정 : 2,942.2㎡
     - 변경 : 2,937.4㎡
2. 촉진지구의 지정일(변경없음) : 2021년 10월 14일
3. 사업의 종류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청년안심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
4.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변경)
   - 명 칭 : 주식회사 성원산업
   - 대표자의 성명 : 정성훈
   - 소재지
     - 기정 :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심궁로 42
     - 변경 :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심궁로 48
   - 법인등록번호 : 284911-0091478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주소(변경)

1) 토지세목조서

가) 기정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지분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금천구 독산동	292-6	대	336.7	336.7	주식회사 성원산업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심궁로 42	100.0	중소기업은행		근저당
2	금천구 독산동	292-7	대	876.3	876.3			100.0	주식회사 우리은행		근저당
3	금천구 독산동	292-12	대	37.2	37.2			100.0	중소기업은행		근저당
4	금천구 독산동	292-13	대	23.1	23.1			100.0	주식회사 우리은행		근저당
5	금천구 독산동	292-16	대	11.2	11.2			100.0	중소기업은행		근저당
6	금천구 독산동	292-28	대	47.6	47.6			100.0	주식회사 우리은행		근저당
7	금천구 독산동	292-29	주	124.9	124.9			100.0	중소기업은행		근저당
8	금천구 독산동	292-31	대	48.1	48.1			100.0	주식회사 우리은행		근저당
9	금천구 독산동	292-32	대	611.5	611.5			100.0	중소기업은행		근저당
10	금천구 독산동	292-37	대	499.3	499.3	정성훈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 비동 1905호 (서초동, 현대슈퍼빌)	10분의4	중소기업은행		근저당
						나미선		10분의3	주식회사 우리은행		근저당
						정원호		10분의3	서초세무서장		근저당
11	금천구 독산동	292-38	대	61.3	61.3	정성훈		10분의4	중소기업은행		근저당
						나미선		10분의3	주식회사 우리은행		근저당
						정원호		10분의3	서초세무서장		근저당
12	금천구 독산동	292-39	주	265	265	정성훈		10분의4	중소기업은행		근저당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공부 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지분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나미선		10분의3	주식회사 우리은행		근저당
						정원호		10분의3	서초세무서장		근저당
합계	-	-	-	2,942.2	2,942.2	-	-		-	-	

나) 변경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공부 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지분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금천구 독산동	292-6	대	2,937.4	2,937.4	[위탁자] 주식회사 성원산업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심궁로 48	100.0	-	-	-
2	금천구 독산동	292-7	대								
3	금천구 독산동	292-12	대								
4	금천구 독산동	292-13	대								
5	금천구 독산동	292-16	대								
6	금천구 독산동	292-28	대								
7	금천구 독산동	292-29	주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공부 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지분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8	금천구 독산동	292-31	대			[수탁자] 우리자산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1, 13층(역삼동, 삼정빌딩)				
9	금천구 독산동	292-32	대								
10	금천구 독산동	292-37	대								
11	금천구 독산동	292-38	대								
12	금천구 독산동	292-39	주								
합계	-	-	-	2,937.4	2,937.4	-	-		-	-	

2) 물건조서(변경없음)

6.「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구 역 명	위 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 고
기정	독산 지구단위계획구역	금천구 독산동 1030번지 일원	198,388	1998. 7. 2. (서울특별시고시 제1998-232호)	
변경	독산 지구단위계획구역	금천구 독산동 1030번지 일원	198,383.2	1998. 7. 2. (서울특별시고시 제1998-232호)	감)4.8㎡

가) 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변경사유
-	· 지적확정측량 결과에 따른 촉진지구 면적의 변경

2)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198,388	감)4.8	198,383.2	100.0	
주거지역	소계	71,283	-	71,283	35.9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5,997	-	5,997	3.0	
	제2종일반주거지역	840		840	0.4	
	제3종일반주거지역	64,446	-	64,446	32.5	
상업지역	소계	58,821	-	58,816.2	29.6	
	일반상업지역	19,937.5	감)4.8	19,932.7	10.0	
	근린상업지역	38,883.5	-	38,883.5	19.6	
공업지역	소계	68,284	-	68,284	34.4	
	준공업지역	68,284	-	68,284	34.4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적(㎡)		변경사유
		기 정	변 경	기정	변경	
-	금천구 독산동 292-6번지 일원	일반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2,942.2	2,937.4	· 지적확정측량 결과에 따른 촉진지구 면적의 변경

Ⅱ. 공급촉진지구 · 지구계획에 관한 사항(변경)

1. 지구계획의 개요(변경)

- 명 칭 : 금천구 독산동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청년안심주택) 공급촉진지구
- 위 치 :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292-6번지 일원
- 면 적
  - 기정 : 2,942.2㎡
  - 변경 : 2,937.4㎡
- 공급촉진지구의 지정 목적(변경없음)
  -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생활여건이 우수한 대상지에 대학생 · 사회초년생 · 신혼부부 등의 주거안정 실현을 위하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청년안심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변경)

- 명 칭 : 주식회사 성원산업
- 대표자 성명 : 정성훈
- 소재지
  - 기정 :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심궁로 42
  - 변경 :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심궁로 48
- 법인등록번호 : 284911-0091478

3. 사업기간 및 재원조달계획(변경)

- 사업기간
  - 기정 : 지구지정일 ~ 2024년
  - 변경 : 지구지정일 ~ 2025년
- 재원조달계획 : 자기자본 및 은행차입 등

4. 토지이용계획

- 기정

구 분	면적(㎡)	구성비(%)	비 고
주택건설용지	2,942.2	100.0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합 계	2,942.2	100.0	-

※ 행정절차 이행시 관련부서 협의의견 및 측량성과 등에 의해 변경 가능

– 변경

구 분	면적(㎡)	구성비(%)	비 고
주택건설용지	2,937.4	100.0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합 계	2,937.4	100.0	-

※ 지적확정측량 결과에 따른 촉진지구 면적의 변경

5. 인구 · 주택수용계획(변경없음)

6. 교통 · 공공 · 문화체육시설 등을 포함한 기반시설 설치계획 : 해당없음

7. 환경보전 및 탄소저감 등 환경계획(변경없음)

8. 그 밖에 지구단위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붙임]

(이 하 여 백)

[붙임]

1. 도시 · 군관리계획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구 역 명	위 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 고
기정	독산 지구단위계획구역	금천구 독산동 1030번지 일원	198,388	1998. 7. 2. (서울특별시고시 제1998-232호)	
변경	독산 지구단위계획구역	금천구 독산동 1030번지 일원	198,383.2	1998. 7. 2. (서울특별시고시 제1998-232호)	감)4.8㎡

■ 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변경사유
-	· 지적확정측량 결과에 따른 촉진지구 면적의 변경

2)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변경)사항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198,388	감)4.8	198,383.2	100.0	
주거 지역	소계	71,283	-	71,283	35.9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5,997	-	5,997	3.0	
	제2종일반주거지역	840		840	0.4	
	제3종일반주거지역	64,446	-	64,446	32.5	
상업 지역	소계	58,821	-	58,816.2	29.6	
	일반상업지역	19,937.5	감)4.8	19,932.7	10.0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근린상업지역	38,883.5	-	38,883.5	19.6	
공업지역	소계	68,284	-	68,284	34.4	
	준공업지역	68,284	-	68,284	34.4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적(㎡)		변경사유
		기 정	변 경	기정	변경	
-	금천구 독산동 292-6번지 일원	일반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2,942.2	2,937.4	· 지적확정측량 결과에 따른 촉진지구 면적의 변경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1) 가구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2) 획지 결정(변경)조서

- 단위대지의 최대개발규모(변경없음)
- 대지의 분할(변경없음)
-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구	가구 면적		위 치	면 적(㎡)		계 획 내 용	비 고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C1	14,152.5	14,147.7	292-1대, 292-36대	771.2	771.2	공동개발 권장	-
			292-3대, 292-33대, 292-34대	1,432.7	1,432.7	공동개발 지정	-
			292-4대, 292-5대, 292-17대, 292-27대	1,996.0	1,996.0	공동개발 지정	-
			292-6대, 292-7대, 292-12대, 292-13대, 292-16대, 292-28대, 292-29대, 292-31대,	2.942.2	2,937.4	① 292-6, 7, 12, 13, 16, 28, 31, 32 공동개발 지정 ② 292-37, 38, 39	청년안심주택 건립을 위한 공동개발 지정

가 구	가구 면적		위 치	면 적(㎡)		계 획 내 용	비 고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292-32대, 292-37대, 292-38대, 292-39대			공동개발 지정 ①, ② 공동개발 지정	
			292-8대, 292-30대, 292-10대	1,321.4	1,321.4	공동개발 권장	-
			292-11대, 292-30대	1,520.0	1,520.0	공동개발 지정	-
			292-2대, 292-14대, 292-21대	4,169.0	4,169.0	공동개발 해제 ※ 292-2,26 → 292-2로 합필	-

■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변경) 사유서

• 지적확정측량에 따른 촉진지구 면적의 변경

나) 건축물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1) 건축물의 불허용도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2) 건축물의 권장용도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3) 건축물의 지정용도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4) 건축물의 허용용도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5) 건축물의 밀도 결정(변경)조서

- 건폐율 결정조서(변경없음)
- 용적률 결정조서(변경없음)
- 용적률 적용기준(의무사항)(변경)

– 기정

구 분		내 용	계획사항	비 고
공공기여율		· 10% 이상 (부지면적기준) (294.22㎡이상)	· 공공임대주택 부속토지 – 10.01%(294.5271㎡)	· 독산동 292-6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에 한함 · 기본용적률 700% 이하 부여 · 모든 항목을 충족하여야 함
		· 완화용적률 연면적의 50%이상 (149.67%이상 / 4,403.5907㎡ 이상)	· 공공기여용적률 150.69% 계획 –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4,433.7078㎡	
용도별 비율	주 거	· 80% 이상 90% 이하	· 주거 : 90.42%	

구 분		내 용	계획사항	비 고
	비주거	· 10%이상 20% 이하주1) (가로변 비주거 설치 의무)	· 비주거 : 9.58%	
건축물 형태	21세기 미래형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주요정책	·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커뮤니티 지원시설의 설치 계획, 에너지 효율 건축물, 친환경 건축물, 공공시설물 설치 중 2가지 사항 이상 의무적으로 이행	· 에너지 효율 건축물주1) 친환경 건축물 이행 적용주2)	
커뮤니티시설		·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 364세대 이상 기준 : – 세대수(589–299=290)×2.5㎡×1.25 =906.25㎡이상	· 주민공동시설(953.1993㎡) : (3층) 체력단련실, 공유라운지, 공용주방, 공용세탁실, (4층) 작은도서관, 스터디룸, 주민회의실(다용도회의실)	
주택규모		· 공공임대주택 : 전용 45㎡ 이하	· 공공임대주택 – 전용 19.3319㎡ – 전용 41.7901㎡ – 전용 19.7808㎡ – 전용 43.4644㎡ – 전용 21.2101㎡ – 전용 59.0206㎡ – 전용 41.2144㎡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 전용 60㎡ 이하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 전용 19.3319㎡ – 전용 41.7901㎡ – 전용 19.7808㎡ – 전용 43.4644㎡ – 전용 21.2101㎡ – 전용 59.0206㎡ – 전용 41.2144㎡	

주1)「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3-2-1. 마. 2) 용도별 비율 산정기준 나)
비주거 용도는 지하 2층에서 지상 2층에 위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지의 형태 및 고저차 등의 사유와 상업지역에서 지상 2층까지 비주거 비율 10% 이상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및 용도변경의 경우에는 관련 위원회의 자문 또는 심의를 거쳐 위치 및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주2)「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 의한 에너지 성능지표 검토서의 평점 합계 86점 이상 /「건물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정」에 의한 에너지효율 2등급 이상
주3)「녹색건축 인증 기준」에 따른 인증등급별 점수기준 우수(그린2등급) 이상

– 변경

구 분		내 용	계획사항	비 고
공공기여율		· 10% 이상 (부지면적기준) (293.74㎡이상)	· 공공임대주택 부속토지 : 10.01%(294.0466㎡)	· 독산동 292-6 일원 청년안심주택에 한함 · 기본용적률 700% 이하 부여 · 모든 항목을 충족하여야 함
		· 완화용적률 연면적의 50%이상 (149.96%이상 / 4,404.9250㎡ 이상)	· 공공기여용적률 149.96% 계획 –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4,429.9625㎡	
용도별 비율	주 거	· 80% 이상 90% 이하	· 주거 : 90.43%	
	비주거	· 10%이상 20% 이하주1) (가로변 비주거 설치 의무)	· 비주거 : 9.57%	
건축물 형태	21세기 미래형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주요정책	·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커뮤니티 지원시설의 설치 계획, 에너지 효율 건축물, 친환경 건축물, 공공시설물 설치 중 2가지 사항 이상 의무적으로 이행	· 에너지 효율 건축물주1) 친환경 건축물 이행 적용주2)	
커뮤니티시설		·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 364세대 이상 기준 : – 세대수(589-299=290)×2.5㎡×1.25 =906.25㎡이상	· 주민공동시설(953.3279㎡) : (3층) 체력단련실, 공유라운지, 공용주방, 공용세탁실, (4층) 작은도서관, 스터디룸, 주민회의실(다용도회의실)	
주택규모		· 공공임대주택 : 전용 45㎡ 이하	· 공공임대주택 – 전용 19.3319㎡ – 전용 41.7901㎡ – 전용 19.7808㎡ – 전용 43.4644㎡ – 전용 21.2101㎡ – 전용 59.0206㎡ – 전용 41.2144㎡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 전용 60㎡ 이하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 전용 19.3319㎡ – 전용 41.7901㎡ – 전용 19.7808㎡ – 전용 43.4644㎡ – 전용 21.2101㎡ – 전용 59.0206㎡ – 전용 41.2144㎡	

주1)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3-2-1. 마. 2) 용도별 비율 산정기준 나)
비주거 용도는 지하 2층에서 지상 2층에 위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지의 형태 및 고저차 등의 사유와 상업지역에서 지상 2층까지 비주거 비율 10% 이상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및 용도변경의 경우에는 관련 위원회의 자문 또는 심의를 거쳐 위치 및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주2)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 의한 에너지 성능지표 검토서의 평점 합계 86점 이상 / 「건물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정」에 의한 에너지효율 2등급 이상

주3) 「녹색건축 인증 기준」에 따른 인증등급별 점수기준 우수(그린2등급) 이상

4) 건축물의 높이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5)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6)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2.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계획 : 해당없음

3. 방재계획(변경없음)

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 · 물건 및 권리의 수용 및 사용계획

1) 토지세목 조서(변경)

가) 기정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공부 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지분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금천구 독산동	292-6	대	336.7	336.7	주식회사 성원산업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심궁로 42	100.0	중소기업은행		근저당
2	금천구 독산동	292-7	대	876.3	876.3			100.0	주식회사 우리은행		근저당
3	금천구 독산동	292-12	대	37.2	37.2			100.0	중소기업은행		근저당
4	금천구 독산동	292-13	대	23.1	23.1			100.0	주식회사 우리은행		근저당
5	금천구 독산동	292-16	대	11.2	11.2			100.0	중소기업은행		근저당
6	금천구 독산동	292-28	대	47.6	47.6			100.0	주식회사 우리은행		근저당
7	금천구 독산동	292-29	주	124.9	124.9			100.0	중소기업은행		근저당
8	금천구 독산동	292-31	대	48.1	48.1			100.0	주식회사 우리은행		근저당
9	금천구 독산동	292-32	대	611.5	611.5			100.0	중소기업은행		근저당
10	금천구 독산동	292-37	대	499.3	499.3	정성훈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 비동 1905호 (서초동, 현대슈퍼빌)	10분의4	중소기업은행		근저당
						나미선		10분의3	주식회사 우리은행		근저당
						정원호		10분의3	서초세무서장		근저당
11	금천구 독산동	292-38	대	61.3	61.3	정성훈		10분의4	중소기업은행		근저당
						나미선		10분의3	주식회사 우리은행		근저당
						정원호		10분의3	서초세무서장		근저당
12	금천구 독산동	292-39	주	265	265	정성훈		10분의4	중소기업은행		근저당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공부 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지분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나미선		10분의3	주식회사 우리은행		근저당
						정원호		10분의3	서초세무서장		근저당
합계	-	-	-	2,942.2	2,942.2	-	-		-	-	

나) 변경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공부 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지분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금천구 독산동	292-6	대	2,937.4	2,937.4	[위탁자] 주식회사 성원산업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심궁로 48	100.0	-	-	-
2	금천구 독산동	292-7	대								
3	금천구 독산동	292-12	대								
4	금천구 독산동	292-13	대								
5	금천구 독산동	292-16	대								
6	금천구 독산동	292-28	대								
7	금천구 독산동	292-29	주								
8	금천구 독산동	292-31	대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공부 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지분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9	금천구 독산동	292-32	대			[수탁자] 우리자산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1, 13층(역삼동, 삼정빌딩)				
10	금천구 독산동	292-37	대								
11	금천구 독산동	292-38	대								
12	금천구 독산동	292-39	주								
합계	-	-	-	2,937.4	2,937.4	-	-		-	-	

- 변경사유서 : 지적확정측량에 따른 촉진지구 면적의 변경

2) 물건조서(변경없음)

5.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계획 : 해당없음

6. 공사의 감리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7. 조성토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변경)

- 기정

구 분	위 치	면 적(㎡)	공급대상자	공급시기	비 고
합 계	-	2,942.2	-	-	-
주택건설용지	금천구 독산동 292-6번지 일원	2,942.2	자체사용	승인후	-

– 변경

구 분	위 치	면 적(㎡)	공급대상자	공급시기	비 고
합 계	-	2,937.4	-	-	-
주택건설용지	금천구 독산동 292-6번지 일원	2,937.4	자체사용	승인후	-

– 변경사유서 : 지적확정측량에 따른 촉진지구 면적의 변경

(이 하 여 백)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623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마포구·서대문구·성동구·성북구·용산구·중구 일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및 제30조제4항,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1항3호에 따라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으로 주민 및 지방의회의견 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생략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합니다.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13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결정(변경) 취지

○ 00부대 군사시설사업(기존 시설 개축 등)의 허가를 위해 용도지역을 결정(변경)하는 사항임.

2.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55,898		55,898	100.0	
주거지역	소계	55,898		55,898	100.0	
	제1종일반주거지역	55,898	감) 55,898		-	
	제2종일반주거지역		증) 55,898	55,898	100.0	

■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	용적률(%)	결정(변경) 사유
		기정	변경			
-	마포구·서대문구·성동구·성북구·용산구·중구 일원	제1종일반 주거지역	제2종일반 주거지역	55,898	200% 이하	군사시설사업 시행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

3. 관계도면 : 기재생략

※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으로 도면은 생략합니다.

4. 기타사항 :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청 도시계획과 (☎02-2133-8329)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624호

우신빌라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602(2023.12.28.)호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고시된 우신빌라 재건축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1조에 따라 정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13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1. 정비구역 지정(변경) 조서

구분	정비사업 명칭	위치		면적(㎡)			변경사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우신빌라 재건축사업	구로구 궁동 213-27번지 외 2필지	구로구 궁동 213-27번지 외 1필지	51,071.1	감) 380.1	50,691.0	· 궁동 286번지(동광빌라) 토지등소유자들의 원에 의거 정비구역에서 제척함

2. 토지이용계획(변경)

구분	명칭	면적(㎡)			비율(%)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51,071.1	감) 380.1	50,691.0	100.0	-
정비기반 시설	소계	4,296.0	감) 322.8	3,973.2	7.8	-
	도로	696.0	감) 322.8	373.2	0.7	-
	공원	3,600.0	-	3,600.0	7.1	공영주차장 중복결정
획지	소계	46,775.1	감) 57.3	46,717.8	92.2	-
	공동주택	46,775.1	감) 57.3	46,717.8	92.2	비오톱 1등급 포함 (3,879.8㎡)

3.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변경)

<table>
<tr><td rowspan="3">기정</td><td>추정
비례율</td><td>• 추정비례율 산정방식 : (총 수입 - 총 지출) / 총자산 총액 X 100%
• 추정비례율 : 100.01%
⇒ (8,910.2억 - 4,544.1억) / 4,365.7억 X 100 = 100.01%
- 총 수입 추정 : 8,910.2억
- 총 지출 추정 : 4,544.1억
- 조합원자산총액 추정 : 4,365.7억 (종전자산총액 - 현금청산자)</td></tr>
<tr><td>개별
종전자산
추정액</td><td>• 우신빌라 공동주택 소유자 = 공동주택 공시가격 X 보정률 (1.60)
• 동광빌라 공동주택 소유자 = 공동주택 공시가격 X 보정률 (1.80)
※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토지평가액 포함하며, 상기 보정률은 본건 공동주택 공시가격과 실거래가격과의 비율임
※ 개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확인
• 우신빌라, 동광빌라 상가 소유자 = 대지권 또는 지분과 건물을 일체로 각각의 집합건물을 본건 및 인근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가격을 추정.
(전유면적당 단가 X 전유면적)</td></tr>
<tr><td>추정
분담금
산출</td><td>• 추정분담금 산정방식 = 권리자 분양가 추정액 - (종전자산 추정액 X 추정비례율)
<table><tr><th colspan="2">권리자 분양가 추정액(a)</th><th>추정 권리가액(b)</th><th>추정분담금(a-b)</th></tr><tr><td>전용 59㎡형</td><td>6.29억</td><td rowspan="5">개별 종전자산 추정액
X 추정비례율 (100.01%)</td><td rowspan="5">권리자 분양가 추정액 - 추정 권리가액
(+ : 부담 / - : 환급)</td></tr><tr><td>전용 74㎡형</td><td>7.39억</td></tr><tr><td>전용 84㎡형</td><td>8.15억</td></tr><tr><td>1층상가 20㎡</td><td>2.40억</td></tr><tr><td>2층상가 20㎡</td><td>1.08억</td></tr></table></td></tr>
<tr><td rowspan="3">변경</td><td>추정
비례율</td><td>• 추정비례율 산정방식 : (총 수입 - 총 지출) / 총자산 총액 X 100%
• 추정비례율 : 100.86%
⇒ (9,494.1억 - 5,166.8억) / 4,290.1억 X 100 = 100.86%
- 총 수입 추정 : 9,494.1억
- 총 지출 추정 : 5,166.8억
- 조합원자산총액 추정 : 4,290.1억 (종전자산총액 - 현금청산자)</td></tr>
<tr><td>개별
종전자산
추정액</td><td>• 우신빌라 공동주택 소유자 = 공동주택 공시가격 X 보정률 (1.62)
※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토지평가액 포함하며, 상기 보정률은 본건 공동주택 공시가격과 실거래가격과의 비율임
※ 개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확인
• 우신빌라, 동광빌라 상가 소유자 = 대지권 또는 지분과 건물을 일체로 각각의 집합건물을 본건 및 인근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가격을 추정.
(전유면적당 단가 X 전유면적)</td></tr>
<tr><td>추정
분담금
산출</td><td>• 추정분담금 산정방식 = 권리자 분양가 추정액 - (종전자산 추정액 X 추정비례율)</td></tr>
</table>

		권리자 분양가 추정액(a)		추정 권리가액(b)	추정분담금(a-b)
		전용 59㎡형	7.19억	개별 종전자산 추정액 X 추정비례율 (100.86%)	권리자 분양가 추정액 - 추정 권리가액 (+ : 부담 / - : 환급)
		전용 74㎡형	8.37억		
		전용 84㎡형	8.96억		
		1층상가 20㎡	2.40억		
		2층상가 20㎡	1.08억		

※ 관리처분계획인가 시 개별 물건에 대한 종전자산 감정평가 및 분양가격 확정 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용도지역 · 지구 결정(변경) 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면적(㎡)			비율(%)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합계		51,071.1	감) 380.1	50,691.0	100.0	-
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4,296.0	감) 322.8	3,973.2	7.8	-
	제2종일반주거지역	46,775.1	감) 57.3	46,717.8	92.2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		용적률(%)	변경사유
			기정	변경		
-	구로구 궁동 213-27번지 외 1필지	제2종일반 주거지역	46,775.1	46,717.8	250 이하	· 정비구역 변경에 따른 면적 변경

나. 용도지구 결정(변경) 조서 : 해당사항 없음

5.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가.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중로	1	18	20~33	보조간선	3,805 (125)	천왕동 서울시계	서울시계	일반도로	-	-	-
변경	중로	1	18	20~33	보조간선	3,805 (98)	천왕동 서울시계	서울시계	일반도로	-	-	도로선형 변경
기정	소로	1	-	10~13	국지도로	43	궁동 285-4	궁동 286	일반도로	-	-	-
변경	소로	2	-	8	국지도로	43	궁동 285-4	궁동 286	일반도로	-	-	도로확폭 (10~13m→8m)
기정	소로	2	-	8	국지도로	410	궁동 278	궁동 285-4	일반도로	-	-	구역 외

※ ( )는 정비사업 구간임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중로 1-18	중로 1-18	· 도로연장(선형 포함) 변경 - L : 125m → 98m	· 정비구역 변경(동광빌라 제척)에 따른 도로선형 변경 및 도로연장 축소
소로 1-	소로 2-	· 도로폭원 변경 - B : 10~13m → 8m	· 정비구역 변경(동광빌라 제척)에 따른 도로폭원 축소

나.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관리청)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	주차장	구로구 궁동 213-27번지 일대	3,600.0	-	3,600.0	서고제602호 ('23.12.28)	공원시설과 중복결정(구로구) ※ 연면적 변경

▌주차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주차장	· 주차장 연면적 변경 - 연면적 : 3,600.0㎡ → 2,974.2㎡(공원시설과 중복결정) - 주차대수 : 70면 → 65면	· 정비구역 변경(동광빌라 제척)에 따른 주차장 연면적 변경

※ 공영주차장의 세부계획 등은 관리청 및 관할 자치구와 협의하고, 건축위원회 심의 내용을 반영하여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확정

다.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관리청)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	공원	어린이 공원	구로구 궁동 213-27번지 일대	3,600.0	-	3,600.0	서고제602호 ('23.12.28)	주차장 중복결정 (구로구) ※ 선형 변경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공원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어린이 공원	· 공원 선형 변경 - 면적 : 3,600.0㎡(변경 없음)	· 정비구역 변경(동광빌라 제척)에 따른 공원 선형 조정

6.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변경)

구분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경로당	궁동 213-27번지 외 2필지	궁동 213-27번지 외 1필지	460.0	-	460.0	공공개방
	어린이집			1,000.0	-	1,000.0	공공개방
	다함께돌봄센터			150.0	-	150.0	공공개방
	주민공동시설			1,800.0	-	1,800.0	일부 공공개방 (700.0㎡)
	작은도서관			250.0	-	250.0	공공개방
	어린이놀이터			1,300.0	-	1,300.0	공공개방
	주민운동시설			700.0	-	700.0	공공개방
계				5,660.0	-	5,660.0	-

※ 향후 건축위원회(정비사업 통합) 심의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변경될 수 있으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서울특별시 주택조례」 등 관련 법령 기준 적용

7. 기존 건축물의 정비 · 개량에 관한 계획(변경)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정비개량계획(동)					비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축	철거 이주	
기정	우신빌라 재건축 정비구역	51,071.1	획지	46,775.1	구로구 궁동 213-27번지 외 2필지	30	-	-	30	-	-
변경	우신빌라 재건축 정비구역	50,691.0	획지	46,717.8	구로구 궁동 213-27번지 외 1필지	29	-	-	29	-	-

8. 건축물에 관한 계획(변경)

■획지 및 주택규모 등에 관한 계획(기정)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m)(최고층수)	비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정비계획	법적상한		
신설	우신빌라 재건축 정비구역	51,071.1	획지	46,775.1	궁동 213-27번지 외 2필지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60 이하	226.8 이하	250 이하	90 이하/ 최고 30층 이하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 비율

· 주택공급계획 : 1,127세대
· 전체 건립 규모(전용면적기준)

구분		합계	분양주택	공공주택
합계		1,127(100.0%)	1,063(94.3%)	64(5.7%)
공동주택	60㎡ 이하	331(100.0%)	274(82.8%)	57(17.2%)
	60㎡~85㎡ 이하	796(100.0%)	789(99.1%)	7(0.9%)
	85㎡ 초과	-	-	-

※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60%이상을 85㎡이하로 건설(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102호)

심의완화사항

▪허용용적률 적용
- 허용용적률 = 190%(기준) + 10% = 200%

인센티브 항목	인센티브 용적률	비고
공공보행통로(4개소)	10%	허용용적률 최대 10%

※ 위에서 적용된 인센티브로 제공되는 허용용적률의 인정 여부는 건축위원회(정비사업 통합) 심의를 통하여 확정되며, 심의 결과에 따라 정비계획 용적률이 변경될 수 있음

▪공공주택 건설에 따른 상한용적률 완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

①법적상한 용적률	②상한용적률 (정비계획)	초과용적률 (①-②)	초과용적률의 50% 적용	공공주택 공급계획
250.0%	226.8%	23.2%	11.6%	-57세대(공급 81.69㎡) -7세대(공급 110.99㎡)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대지경계로부터 6m 이격(비오톱 구간 제외)
· 공공보행통로(②, ④)변 3m 이상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 공공보행통로 4개소(6m) ※ 정비계획 결정도 도면참고

■획지 및 주택규모 등에 관한 계획(변경)

<table>
<tr><th rowspan="2">구분</th><th colspan="2">구역구분</th><th colspan="2">가구 또는
획지 구분</th><th rowspan="2">위치</th><th rowspan="2">주용도</th><th rowspan="2">건폐율
(%)</th><th colspan="2">용적률(%)</th><th rowspan="2">높이(m)
(최고층수)</th><th rowspan="2">비고</th></tr>
<tr><th>명칭</th><th>면적(㎡)</th><th>명칭</th><th>면적(㎡)</th><th>정비
계획</th><th>법적
상한</th></tr>
<tr><td>변경</td><td>우신빌라
재건축
정비구역</td><td>50,691.0</td><td>획지</td><td>46,717.8</td><td>궁동
213-27번지
외 1필지</td><td>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td><td>60 이하</td><td>226.1
이하</td><td>250
이하</td><td>90 이하/
최고 30층이하</td><td>-</td></tr>
</table>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 비율

· 주택공급계획 : 1,125세대
· 전체 건립 규모(전용면적기준)

구분		합계	분양주택	공공주택
합계		1,125(100.0%)	1,061(94.3%)	64(5.7%)
공동주택	60㎡ 이하	329(100.0%)	278(84.5%)	51(15.5%)
	60㎡~85㎡ 이하	796(100.0%)	783(98.4%)	13(1.6%)
	85㎡ 초과	-	-	-

※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60% 이상을 85㎡ 이하로 건설(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102호)

심의완화사항

▪허용용적률 적용
- 허용용적률 = 190%(기준) + 10% = 200%

인센티브 항목	인센티브 용적률	비고
공공보행통로(4개소)	10%	허용용적률 최대 10%

※ 위에서 적용된 인센티브로 제공되는 허용용적률의 인정 여부는 건축위원회(정비사업 통합) 심의를 통하여 확정되며, 심의 결과에 따라 정비계획 용적률이 변경될 수 있음

▪공공주택 건설에 따른 상한용적률 완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

①법적상한 용적률	②상한용적률 (정비계획)	초과용적률 (①-②)	초과용적률의 50% 적용	공공주택 공급계획
250.0%	226.1%	23.9%	11.95%	-51세대(공급 81.69㎡) -13세대(공급 110.99㎡)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대지경계로부터 6m 이격(비오톱 구간 제외)
· 공공보행통로(②, ④)변 3m 이상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 공공보행통로 4개소(6m) ※ 정비계획 결정도 도면참고

■용적률 계획(기정)

<table>
<tr><td>구분</td><td colspan="7">산정내용</td></tr>
<tr><td rowspan="2">토지
이용
계획</td><td rowspan="2">계
(구역면적)</td><td rowspan="2">획지
(공동주택)</td><td colspan="4">새로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 면적</td><td rowspan="2">새로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면적</td><td rowspan="2">대지 내 용도폐지
되는 기존 기반시설
(국·공유지) 면적</td></tr>
<tr><td>계</td><td>도로</td><td>공원</td><td>주차장
(건축물
환산부지면적)</td></tr>
<tr><td>51,071.1㎡</td><td>46,775.1㎡</td><td>5,679.6㎡</td><td>696.0㎡</td><td>3,600.0㎡</td><td>1,383.6㎡</td><td>-</td><td>-</td></tr>
<tr><td>공공
시설부지
제공면적
(순부담)</td><td colspan="7">▪ 5,679.6㎡(새로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 면적) - 0㎡(새로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면적)
- 0㎡(대지 내 용도폐지되는 기존 기반시설 면적) = 5,679.6㎡
▪ 순부담 면적 : 5,679.6㎡(구역면적 대비 11.1%)</td></tr>
<tr><td>기준용적률</td><td colspan="7">▪ 기준용적률 = 190%</td></tr>
<tr><td>허용용적률</td><td colspan="7">▪ 허용용적률 = 기준용적률 + 인센티브(최대 10%) = 190% + 10% = 200%
▪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항목 = 공공보행통로 10% 적용
※ 공동주택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개선(’23.03) 적용
※ 인센티브로 제공되는 허용용적률의 인정 여부는 건축위원회(정비사업 통합) 심의를 통하여 확정되며, 심의 결과에 따라 정비계획 용적률이 변경될 수 있음</td></tr>
<tr><td>상한용적률
산정</td><td colspan="7">▪ 기준용적률 190%, 허용용적률 200%
▪ 상한용적률 = 허용용적률 × (1 + 1.3 × 가중치 × α토지 + 0.7 × α현금·건축물)
= 200% × (1 + 1.3 × 0.95 × 0.0918 + 0.7 × 0.0296)
= 226.8%</td></tr>
<tr><td>α토지</td><td colspan="7">▪ 공공시설등 부지(토지) 제공 후의 대지면적 대 공공시설등 부지(토지) 제공 면적 비율
= (696.0㎡ + 3,600.0㎡) ÷ 46,775.1㎡ = 0.0918
※ 공공시설등 부지(토지)는 ‘기부채납 부지’ 및 ‘건축물 기부채납 토지지분’ 포함</td></tr>
<tr><td>α건축물</td><td colspan="7">▪ 공공시설등 부지(토지) 제공 후의 대지면적 대 공공시설등 부지(현금 및 건축물 설치비용 환산부지) 제공 면적 비율
= 1,383.6㎡ ÷ 46,775.1㎡ = 0.0296</td></tr>
<tr><td>가중치</td><td colspan="7">▪ 사업부지 용적률에 대한 공공시설 등 부지의 해당 용적률
= 190% ÷ 200% = 0.95</td></tr>
<tr><td>법적
상한용적률</td><td colspan="7">▪ 법적상한용적률 : 250.0%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시 결정된 법적상한용적률은 건축위원회심의를 통해 확정 예정</td></tr>
</table>

■용적률 계획(변경)

<table>
<tr><td>구분</td><td colspan="8">산정내용</td></tr>
<tr><td rowspan="2">토지
이용
계획</td><td rowspan="2">계
(구역면적)</td><td rowspan="2">획지
(공동주택)</td><td colspan="4">새로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 면적</td><td rowspan="2">새로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면적</td><td rowspan="2">대지 내 용도폐지
되는 기존 기반시설
(국·공유지) 면적</td></tr>
<tr><td>계</td><td>도로</td><td>공원</td><td>주차장
(건축물
환산부지면적)</td></tr>
<tr><td>50,691.0㎡</td><td>46,717.8㎡</td><td>5,296.6㎡</td><td>373.2㎡</td><td>3,600.0㎡</td><td>1,323.4㎡</td><td>-</td><td>-</td></tr>
<tr><td>공공
시설부지
제공면적
(순부담)</td><td colspan="8">▪ 5,296.6㎡(새로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 면적) - 0㎡(새로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면적)
- 0㎡(대지 내 용도폐지되는 기존 기반시설 면적) = 5,296.6㎡
▪ 순부담 면적 : 5,296.6㎡(구역면적 대비 10.4%)</td></tr>
<tr><td>기준용적률</td><td colspan="8">▪ 기준용적률 = 190%</td></tr>
<tr><td>허용용적률</td><td colspan="8">▪ 허용용적률 = 기준용적률 + 인센티브(최대 10%) = 190% + 10% = 200%
▪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항목 = 공공보행통로 10% 적용
※ 공동주택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개선(`23.03) 적용
※ 인센티브로 제공되는 허용용적률의 인정여부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확정되며, 건축심의 결과에 따라 정비계획용적률이 변경 될 수 있음</td></tr>
<tr><td>상한용적률
산정</td><td colspan="8">▪ 기준용적률 190%, 허용용적률 200%
▪ 상한용적률 = 허용용적률 × (1 + 1.3 × 가중치 × α토지 + 0.7 × α현금·건축물)
= 200% × (1 + 1.3 × 1 × 0.0850 + 0.7 × 0.0283)
= 226.1%</td></tr>
<tr><td>α토지</td><td colspan="8">▪ 공공시설등 부지(토지) 제공 후의 대지면적 대 공공시설등 부지(토지) 제공 면적 비율
= (373.2㎡ + 3,600.0㎡) ÷ 46,717.8㎡ = 0.0850
※ 공공시설등 부지(토지)는 ‘기부채납 부지’ 및 ‘건축물 기부채납 토지지분’ 포함</td></tr>
<tr><td>α건축물</td><td colspan="8">▪ 공공시설등 부지(토지) 제공 후의 대지면적 대 공공시설등 부지(현금 및 건축물 설치비용 환산부지) 제공 면적 비율
= 1,323.4㎡ ÷ 46,717.8㎡ = 0.0283</td></tr>
<tr><td>가중치</td><td colspan="8">▪ 사업부지 용적률에 대한 공공시설 등 부지의 해당 용적률
= 210% ÷ 210% = 1.0</td></tr>
<tr><td>법적
상한용적률</td><td colspan="8">▪ 법적상한용적률 : 250.0%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결정된 법적상한용적률은 건축위원회(정비사업 통합) 심의를 통해 확정 예정</td></tr>
</table>

9. 공공주택(법적상한용적률 완화) 건설에 관한 계획(변경)

○ 모든 공공주택은 원칙적으로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주택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시 해당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 공공주택 등은 도시저소득 주민의 입주기회 확대 등 공공목적의 공공주택 용도로 정하며, 서울시에 매각(처분)하여야 한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50% 이상을 공공주택(법적상한용적률 완화)으로 건설하여야 한다.

▌공공주택 배치계획

○ 공공주택은 분양주택과 차별없이 외관, 마감 등을 동일하게 계획(동별 · 동내 혼합과 층별 혼합)하고, 전체 주택을 대상으로 동 · 호수 배정도 조합원과 서울특별시(공공주택)가 동일 · 동시에 공개추첨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추첨 시 서울 특별시가 필수 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그 결과를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에 반영할 것

■ 법적상한용적률에 따른 공공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table>
<tr><th colspan="2">구분</th><th colspan="5">산정내용</th></tr>
<tr><td rowspan="6">기정</td><td>계획기준</td><td colspan="5">•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50% 이상</td></tr>
<tr><td>법적상한용적률</td><td colspan="5">•250.0% [건축위원회(정비사업 통합)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td></tr>
<tr><td>상한용적률(정비계획)</td><td colspan="5">•226.8%</td></tr>
<tr><td>초과용적률의 50%</td><td colspan="5">•(250.0% - 226.8%) X 50% = 11.6%
•46,775.1㎡(대지면적) X 11.6% = 5,425.9㎡ 이상(공공주택 연면적 기준)</td></tr>
<tr><td rowspan="4">공공주택 확보계획
(법적상한용적률 완화)</td><td>전용면적</td><td>공급면적</td><td>세대수</td><td>연면적</td><td>비고</td></tr>
<tr><td>59.99㎡</td><td>81.69㎡</td><td>57</td><td>4,656.33㎡</td><td rowspan="2">소셜믹스</td></tr>
<tr><td>84.99㎡</td><td>110.99㎡</td><td>7</td><td>776.93㎡</td></tr>
<tr><td colspan="2">합계</td><td>64</td><td>5,433.26㎡</td><td>〉5,425.9㎡
(공공주택 연면적 기준)</td></tr>
<tr><td rowspan="4">변경</td><td>계획기준</td><td colspan="5">•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50%이상</td></tr>
<tr><td>법적상한용적률</td><td colspan="5">•250.0%</td></tr>
<tr><td>상한용적률(정비계획)</td><td colspan="5">•226.1%</td></tr>
<tr><td>초과용적률의 50%</td><td colspan="5">•(250.0% - 226.1%) X 50% = 11.95%
•46,717.8㎡(대지면적) X 11.95% = 5,582.78㎡ 이상(공공주택 연면적 기준)</td></tr>
</table>

구분		산정내용				
		전용면적	공급면적	세대수	연면적	비고
	공공주택 확보계획 (법적상한용적률 완화)	59.99㎡	81.69㎡	51	4,166.19㎡	소셜믹스
		84.99㎡	110.99㎡	13	1,442.87㎡	
		합계		64	5,609.06㎡	〉5,582.78㎡ (공공주택 연면적 기준)

11. 환경보전,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및 환경성 검토 결과(변경 없음)

가.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구분	계획내용	비고
환경보전	• 환경성 검토를 통하여 정비사업으로 인한 환경 저해요소를 검토하여 환경영향 저감방안 마련 • 부득이한 법면 발생시 경계부에 녹화 및 조경 처리 • 주차시설을 최대한 지하에 설치하여 지상녹화를 통한 친환경적 주거지 조성 • 조경공간을 최대한 확보하여 자연친화적인 단지계획을 수립하겠음 ※ 공사 시 저감 방안(세부계획 일부) - 비산먼지의 발생으로 인한 주변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세륜·세차시설, 방진망 설치, 사업 대상지 내 살수실시, 풍속에 따른 공사 진행 여부 판단 등 적절한 저감대책을 현장의 여건에 맞게 단계적으로 수립·시행토록 할 계획임	-
재난방지	• 구역 내 화재 발생을 대비한 방화계획은 건축법의 방화에 관한 규정 및 관리 법규를 준수하여 종합적 방재계획 수립 • 구역 주변의 우수관망을 충분히 설치토록 하며, 구역 내부로의 유입을 최소한으로 억제토록 하여 홍수, 수목 등에 대한 방재계획 수립 • 재해시 소방도로 기능수행이 가능하도록 진입로 및 내부 동선체계 구축 도모 • 인화성 건축내장재 사용을 규제하고 사업완료 후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음 • 녹지 · 조경 면적의 확대로 토양 포장율을 억제하고 불가피할 경우 가급적 투수포장재를 사용하여 우수유출량을 최대한 억제하겠음	-

나. 환경성 검토 결과

검토항목		목표기준	결과	환경영향	대책 및 반영사항
자연환경	비오톱	3등급	○	· 주거지 비오톱, 산림지 비오톱 · 비오톱 유형 평가 1, 5등급 · 개별 비오톱 평가 제외 및 1등급	· 조경녹지 확보에 따른 녹지율 증가 · 비오톱 평가등급 5등급에서 상향 예상
	동·식물상	동·식물상 보호	○	· 공사에 따른 녹지변화 · 공사 장비에 의한 동·식물상 영향 · 식생보전등급의 변화 · 생태자연도 2,3등급지	· 도시생태기능 및 생물서식 공간 확보 · 공사 시 동·식물에 대한 영향 최소화 · 생태자연도 2등급지 보존

검토항목		목표기준	결과	환경영향	대책 및 반영사항
생활환경	토지이용	종합적인 토지이용 계획	○	· 대상지는 주거 형태를 이루고 있음 · 비효율적인 공간 이용 및 주변과의 정주 환경 차이	· 노후화된 건축물의 주거 역활 강화 · 종합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 반영 · 임대주택 공급으로 서민 주거안정 도모
	토양	토양오염 최소화	○	· 공사 시 폐유 발생 등 토양오염 우려 · 철거 시 정화조 등에 의한 토양오염	· 공사 전 지하시설물 확인 · 공사 시 폐유 적정관리
	지형·지질	지형변동 최소화	○	· 토양 포장율 변화 · 지형변화	· 조성 시 현 지형을 고려하여 계획 · 불투수 면적의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녹지조성 및 투수성 포장 활용
	물순환 및 수리·수문	생태면적률 확보	○	· 생태공간 확보	· 일부 자연지반 녹지 등 생태면적률(31.27%) 확보 · 조경녹지, 식재지 확보
	수질	용수량, 오수량 예상	○	· 개발전·후의 우수유출량 변화 · 운영 시 계획인구 및 수용인구에 따른 용수사용량, 오수 발생량 발생 · 비점오염원 발생	· 공사 시 가배수로 및 침사지 설치 · 기존의 하수관로를 이용 서남물재재생센터 처리할 계획 ·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기존의 상수관로를 이용 · 급수 할 계획
생활환경	바람	바람길 확보	○	· 건축물 조성에 따른 바람 및 미기후 변화 예상됨	· 건축물 간의 이격거리 확보 · 건축물 간 높이차를 주어 바람길 확보
	대기질·미세먼지	대기오염 최소화	○	· 공사 시 장비 가동 및 토사 이동 · 운영 시 연료 사용	· 공사 시 세륜·세차시설 운영, 방진망 설치 등 · 청정연료 사용
	온실가스	온실가스 저감 신재생에너지 사용	○	· 공사 장비 가동에 따른 탄소배출량 · 공동주택에 따른 에너지사용량 발생	· 공사 장비 공회전 최소화 · 정부의 에너지 정책 참여, 청정연료 사용 · 부지 내 녹지공간 확보, 투수성 포장재 사용, 고효율 가로등 등 친환경적, 에너지 절약형 설계 사용 권장
	친환경적 자원순환	폐기물 발생 최소화	○	· 공사 시 건축, 생활폐기물, 오수 발생 · 현재 지장물 분포함 · 운영 시 생활폐기물 발생	· 공사시 오수는 이동식 화장실 설치 및 사용 · 운영시 생활폐기물 구로구폐기물처리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처리, 발생분뇨는 서남물재생센터에 연계하여 처리토록 함
	소음·진동	소음진동 예상	○	· 공사 시 건설장비소음 발생 · 현재 시가지로 교통소음 발생	· 소음저감대책 수립 · 공사 시 가설방음판넬 설치, 건설공사장비 분산 투입
	경관	Sky Line보전 조망권 확보	○	· 주변 지형과 조화로운 경관 형성	· 단지 조성 시 건물배치 및 높이 설정에 반영하여 주변과의 자연스러운 스카이라인 계획
	휴식 / 여가공간	휴식 및 여가공간 확보	○	· 휴식 · 여가공간 확보	· 기능적 공간고려 조경시설 조성 · 휴게공간 및 조경시설을 조성하여 휴식공간 확보
	보행친화 공간	보행자도로 계획수립	○	· 단지 내 차량 통행 최대 억제	· 지하공간 활용한 주차공간 확보 · 지상 보도 위주의 공간 조성
사회환경	인구	인구 및 세대현황, 인구동태, 활동인구 예측	○	· 재건축으로 인한 세대수 증가로 인구 밀집 발생	· 구로구에 대한 인구 밀집 발생은 미미함
	주거		○	· 재건축으로 인한 기존 거주자 타지역으로 이동	· 공동주택의 공급을 확대하여 주택난 해소와 주택보급률 증가

12. 정비사업 시행계획(변경 없음)

구분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예정)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비고
				기정	변경	
변경	재건축사업	구역지정 고시일로부터 4년 이내	정비사업조합	• 현황세대수 : 775세대 • 계획세대수 : 1,127세대 • 증가세대수 : 352세대	• 현황세대수 : 762세대 • 계획세대수 : 1,125세대 • 증가세대수 : 363세대	-

13.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정비구역 주변 현황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비고
대상지 200m 이내 우신중학교, 세종과학고등학교, 우신고등학교, 온수초등학교 위치	• 「소음진동관리법」 제23조에 따라 구청장은 주민의 정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되는 소음·진동을 규제 • 교육시설의 보건관리와 환경위생 등에 지장을 초래하는 시설의 설치를 지양함 • 공사 시 교육환경 장애요소(소음·진동·먼지 등)의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계획 • 교육시설 이용 시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계획 • 추후 사업으로 발생하는 학교 신·증설에 대한 설치비용은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협의하도록 하겠음(현재 사업으로 신증설이 있을 경우에 한함) • 대상지는 교육환경평가대상으로 향후 사업시행계획인가 전에 교육환경평가서를 제출하여 교육환경평가심의를 득하도록 하겠음	-

14.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구분	내용	비고
방범용 CCTV	• 방범용 CCTV 설치시 가로등과 가로수, 건축물에 부착된 돌출물 등의 관계를 고려해 가시범위를 축소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설치해야 하며, 간선도로보다는 주거지 내부 골목길의 진출입부와 막다른 골목 주변, 어린이 놀이터 및 근린공원 등에 집중적으로 배치함 • CCTV를 설치할 경우 반드시 하단에 안내표지판을 부착하되 안내표지판은 주변과 차별화 되는 색상(노란색, 주황색 등)이나 야간인식을 고려하여 형광 기능을 추가하거나 조명시설과 함께 설치토록 함	-
비상벨	• 긴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변과 차별화된 색상이 반영된 비상벨을 골목길의 취약공간을 중심으로 설치하고, 주변에서의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경광기능이 있는 제품을 선택	-
주민공동체·자치단체·경찰의 연대를 통한 방범대책	• 범죄 특성은 동네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되며, 범죄 패턴이나 범죄 수법은 시간의 경과와 함께 변화함. 따라서 시의적절하게 해당지역에 적합하고 효율적인 방범대책을 시행하는 것이 중요함으로 이를 위해서는 주민공동체, 자치단체, 경찰 등 지역 상황에 따라 지역주민조직, 자치단체, 경찰과의 업무협약을 통한 지원하는 것이 필요	-

Ⅱ. 우신빌라 재건축 정비사업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지구단위계획 명칭	위치		면적(㎡)			비율(%)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우신빌라 재건축 정비사업	구로구 궁동 213-27번지 외 2필지	구로구 궁동 213-27번지 외 1필지	51,071.1	감) 380.1	50,691.0	100.0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위치	면적(㎡)	변경사유
변경	-	구로구 궁동 213-27번지 외 1필지	50,691.0	· 궁동 286번지(동광빌라) 토지등소유자들의 원에 의거 정비구역에서 제척함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면적(㎡)			비율(%)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51,071.1	감) 380.1	50,691.0	100.0	-
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4,296.0	감) 322.8	3,973.2	7.8	-
	제2종일반주거지역	46,775.1	감) 57.3	46,717.8	92.2	-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		용적률(%)	변경사유
			기정	변경		
-	구로구 궁동 213-27번지 외 1필지	제2종일반주거지역	46,775.1	46,717.8	250 이하	· 정비구역 변경에 따른 면적 변경

나. 용도지구 결정(변경) 조서 : 해당사항 없음

다. 기반시설 결정(변경) 조서

(1)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중로	1	18	20~33	보조간선	3,805 (125)	천왕동 서울시계	서울시계	일반도로	-	-	-
변경	중로	1	18	20~33	보조간선	3,805 (98)	천왕동 서울시계	서울시계	일반도로	-	-	도로선형 변경
기정	소로	1	-	10~13	국지도로	43	궁동 285-4	궁동 286	일반도로	-	-	-
변경	소로	2	-	8	국지도로	43	궁동 285-4	궁동 286	일반도로	-	-	도로확폭 (10~13m→8m)
기정	소로	2	-	8	국지도로	410	궁동 278	궁동 285-4	일반도로	-	-	구역 외

※ ( )는 정비사업 구간임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중로 1-18	중로 1-18	· 도로 연장(선형 포함) 변경 - L : 125m → 98m	· 정비구역 변경(동광빌라 제척)에 따른 도로 선형 변경 및 도로 연장 축소
소로 1-	소로 2-	· 도로 폭원 변경 - B : 10~13m → 8m	· 정비구역 변경(동광빌라 제척)에 따른 도로 폭원 축소

(2)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관리청)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	주차장	구로구 궁동 213-27번지 일대	3,600.0	-	3,600.0	서고제602호 ('23.12.28.)	공원시설과 중복결정(구로구) ※연면적 변경

▌주차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주차장	· 주차장 연면적 변경 - 연면적 : 3,600.0㎡ → 2,974.2㎡(공원시설과 중복결정) - 주차대수 : 70면 → 65면	· 정비구역 변경(동광빌라 제척)에 따른 주차장 연면적 변경

※ 공영주차장의 세부계획 등은 관리청 및 관할 자치구와 협의하고, 건축위원회 심의 내용을 반영하여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확정

(3)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관리청)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	공원	어린이 공원	구로구 궁동 213-27번지 일대	3,600.0	-	3,600.0	서고제602호 ('23.12.28.)	주차장 중복결정 (구로구) ※선형 변경

▌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공원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어린이 공원	· 공원 선형 변경 - 면적 : 3,600.0㎡(변경 없음)	· 정비구역 변경(동광빌라 제척)에 따른 공원 선형 조정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

가.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가구	면적(㎡)			비율(%)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획지	-	46,775.1	감) 57.3	46,171.8	100.0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나. 건축물의 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1)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결정조서

구분		가구	계획내용	비고
기정	허용용도	획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 제2호의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허용용도 외의 용도는 불허

(2) 건축물 개발밀도(건폐율, 용적률, 높이)

가) 건폐율 계획

구분	지역	건폐율(%)	비고
기정	제2종일반주거지역	60 이하	-

나) 용적률 계획

구분	용적률(%)				비고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상한용적률	법적상한용적률		
기정	190 이하	200 이하	226.8 이하	250 이하	정비계획	허용용적률 200.0%
						상한용적률 226.8%
						법적상한용적률 250.0%
변경	190 이하	200 이하	226.1 이하	250 이하	정비계획	허용용적률 200.0%
						상한용적률 226.1%
						법적상한용적률 250.0%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사항

구분	인센티브	비고
	공공보행통로	
기정	10%	총 12.9%(10% 적용)

■상한(법적상한)용적률 완화사항

구분	용적률 완화		비고
	공공시설 기부채납	공공주택 건설(법적상한용적률 적용)	
기정	26.8%	11.6%	38.4%
변경	26.1%	12.0%	38.1%

다) 높이계획

구분	지역	높이기준	비고
기정	제2종일반주거지역	최고 30층 이하(90m 이하)	-

다. 건축물 건축선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구분	적용 위치	계획내용
건축한계선	획지	·대지경계로부터 6m 이격(비오톱 구간 제외) ·공공보행통로(②, ④)변 3m 이상 ※ 지구단위계획 종합결정도 도면참고

라.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변경 없음)

(1) 대지 내 공지에 관한 결정 조서

구분	적용위치	계획내용
공공보행통로	획지	·대지 내 고립되어 있는 비오톱 연계를 위해 공공보행통로 설치 - 공공보행통로 4개소, 폭원 : 6m ※ 지구단위계획 종합결정도 도면참고

(2) 환경관리계획

검토항목		목표기준	결과	환경영향	대책 및 반영사항
자연환경	비오톱	3등급	○	· 주거지 비오톱, 산림지 비오톱 · 비오톱 유형 평가 1, 5등급 · 개별 비오톱 평가 제외 및 1등급	· 조경녹지 확보에 따른 녹지율 증가 · 비오톱 평가등급 5등급에서 상향 예상
	동·식물상	동·식물상 보호	○	· 공사에 따른 녹지변화 · 공사 장비에 의한 동·식물상 영향 · 식생보전등급의 변화 · 생태자연도 2,3등급지	· 도시생태기능 및 생물서식 공간 확보 · 공사 시 동·식물에 대한 영향 최소화 · 생태자연도 2등급지 보존
생활환경	토지이용	종합적인 토지이용 계획	○	· 대상지는 주거 형태를 이루고 있음 · 비효율적인 공간 이용 및 주변과의 정주환경 차이	· 노후화 된 건축물의 주거역활 강화 · 종합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 반영 · 임대주택 공급으로 서민 주거안정 도모
	토양	토양오염 최소화	○	· 공사 시 폐유 발생 등 토양오염 우려 · 철거 시 정화조 등에 의한 토양오염	· 공사 전 지하시설물 확인 · 공사 시 폐유 적정 관리
	지형·지질	지형변동 최소화	○	· 토양 포장율 변화 · 지형 변화	· 조성 시 현 지형을 고려하여 계획 · 불투수 면적의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녹지조성 및 투수성 포장 활용
	물순환 및 수리·수문	생태면적률 확보	○	· 생태공간 확보	· 일부 자연지반 녹지 등 생태면적률(31.27%) 확보 · 조경녹지, 식재지 확보
생활환경	수질	용수량, 오수량 예상	○	· 개발전·후의 우수유출량 변화 · 운영 시 계획인구 및 수용인구에 따른 용수 사용량, 오수 발생량 발생 · 비점오염원 발생	· 공사 시 가배수로 및 침사지 설치 · 기존의 하수관로를 이용 서남물재재생센터 처리할 계획 ·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기존의 상수관로를 이용 · 급수 할 계획
	바람	바람길 확보	○	· 건축물 조성에 따른 바람 및 미기후 변화 예상됨	· 건축물 간의 이격거리 확보 · 건축물 간 높이차를 주어 바람길 확보
	대기질·미세먼지	대기오염 최소화	○	· 공사 시 장비 가동 및 토사 이동 · 운영 시 연료 사용	· 공사 시 세륜·세차시설 운영, 방진망 설치 등 · 청정연료 사용
	온실가스	온실가스 저감 신재생에너지 사용	○	· 공사 장비 가동에 따른 탄소 배출량 · 공동주택에 따른 에너지사용량 발생	· 공사 장비 공회전 최소화 · 정부의 에너지 정책 참여, 청정연료 사용 · 부지 내 녹지공간 확보, 투수성 포장재 사용, 고효율 가로등 등 친환경적, 에너지 절약형 설계 사용 권장

검토항목		목표기준	결과	환경영향	대책 및 반영사항
	친환경적 자원순환	폐기물 발생 최소화	○	· 공사 시 건축, 생활폐기물, 오수 발생 · 현재 지장물 분포함 · 운영 시 생활폐기물 발생	· 공사시 오수는 이동식화장실 설치 및 사용 · 운영시 생활폐기물 구로구폐기물처리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처리, 발생분뇨는 서남물재생센터에 연계하여 처리토록 함
	소음·진동	소음진동 예상	○	· 공사 시 건설장비소음 발생 · 현재 시가지로 교통소음 발생	· 소음저감대책 수립 · 공사시 가설방음 판넬 설치, 건설공사장비 분산 투입
	경관	Sky Line 보전 조망권 확보	○	· 주변 지형과 조화로운 경관 형성	· 단지 조성 시 건물배치 및 높이 설정에 반영하여 주변과의 자연스러운 스카이라인 계획
	휴식 / 여가공간	휴식 및 여가공간 확보	○	· 휴식·여가공간 확보	· 기능적 공간고려 조경시설 조성 · 휴게공간 및 조경시설을 조성하여 휴식공간 확보
	보행친화 공간	보행자도로 계획수립	○	· 단지 내 차량 통행 최대 억제	· 지하공간 활용한 주차공간 확보 · 지상 보도 위주의 공간 조성
사회환경	인구	인구 및 세대현황, 인구동태, 활동인구 예측	○	· 재건축으로 인한 세대수 증가로 인구 밀집 발생	· 구로구에 대한 인구 밀집 발생은 미미함
	주거		○	· 재건축으로 인한 기존 거주자 타지역으로 이동	· 공동주택의 공급을 확대하여 주택난 해소와 주택보급률 증가

(3) 공공주택(법적상한용적률 완화) 건설에 관한 계획

○ 모든 공공주택은 원칙적으로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주택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시 해당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 공공주택 등은 도시저소득 주민의 입주기회 확대 등 공공목적의 공공주택 용도로 정하며, 서울시에 매각(처분)하여야 한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50% 이상을 공공주택(법적상한용적률 완화)으로 건설하여야 한다.

▌공공주택 배치계획

○ 공공주택은 분양주택과 차별 없이 외관, 마감 등을 동일하게 계획(동별 · 동내 혼합과 층별 혼합)하고, 전체 주택을 대상으로 동 · 호수 배정도 조합원과 서울특별시(공공주택)가 동일 · 동시에 공개추첨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추첨 시 서울특별시가 필수 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그 결과를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에 반영할 것

■ 법적상한용적률에 따른 공공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table>
<tr><th colspan="2">구분</th><th colspan="5">산정내용</th></tr>
<tr><td rowspan="8">기정</td><td>계획기준</td><td colspan="5">•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50% 이상</td></tr>
<tr><td>법적상한용적률</td><td colspan="5">•250.0%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최종 결정)</td></tr>
<tr><td>상한용적률(정비계획)</td><td colspan="5">•226.8%</td></tr>
<tr><td>초과용적률의 50%</td><td colspan="5">•(250.0% - 226.8%) X 50% = 11.6%
•46,775.1㎡(대지면적) X 11.6% = 5,425.9㎡ 이상(공공주택 연면적 기준)</td></tr>
<tr><td rowspan="4">공공주택 확보계획
(법적상한용적률 완화)</td><td>전용면적</td><td>공급면적</td><td>세대수</td><td>연면적</td><td>비고</td></tr>
<tr><td>59.99㎡</td><td>81.69㎡</td><td>57</td><td>4,656.33㎡</td><td rowspan="2">소셜믹스</td></tr>
<tr><td>84.99㎡</td><td>110.99㎡</td><td>7</td><td>776.93㎡</td></tr>
<tr><td colspan="2">합계</td><td>64</td><td>5,433.26㎡</td><td>〉5,425.9㎡
(공공주택 연면적 기준)</td></tr>
<tr><td rowspan="8">변경</td><td>계획기준</td><td colspan="5">•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50% 이상</td></tr>
<tr><td>법적상한용적률</td><td colspan="5">•250.0%</td></tr>
<tr><td>상한용적률(정비계획)</td><td colspan="5">•226.1%</td></tr>
<tr><td>초과용적률의 50%</td><td colspan="5">•(250.0% - 226.1%) X 50% = 11.95%
•46,717.8㎡(대지면적) X 11.95% = 5,582.78㎡ 이상(공공주택 연면적 기준)</td></tr>
<tr><td rowspan="4">공공주택 확보계획
(법적상한용적률 완화)</td><td>전용면적</td><td>공급면적</td><td>세대수</td><td>연면적</td><td>비고</td></tr>
<tr><td>59.99㎡</td><td>81.69㎡</td><td>51</td><td>4,166.19㎡</td><td rowspan="2">소셜믹스</td></tr>
<tr><td>84.99㎡</td><td>110.99㎡</td><td>13</td><td>1,442.87㎡</td></tr>
<tr><td colspan="2">합계</td><td>64</td><td>5,609.06㎡</td><td>〉5,582.78㎡
(공공주택 연면적 기준)</td></tr>
</table>

■ 공공주택 혼합계획

건립규모		전체 세대수	비율(%)	조합원 및 일반분양	공공주택	공공주택 비율(%)	
						전체 세대수 대비	전체비율
기정	합계	1,127	100.0	1,063	64	5.7	100.0
	60㎡ 이하	331	29.4	274	57	17.2	89.1
	60㎡초과~85㎡ 이하	796	70.6	789	7	0.9	10.9

건립규모		전체 세대수	비율(%)	조합원 및 일반분양	공공주택	공공주택 비율(%)	
						전체 세대수 대비	전체비율
	85㎡ 초과	-	-	-	-	-	-
변경	합계	1,125	100.0	1,061	64	5.7	100.0
	60㎡ 이하	329	29.2	278	51	15.5	79.7
	60㎡초과~85㎡ 이하	796	70.8	783	13	1.6	20.3
	85㎡ 초과	-	-	-	-	-	-

Ⅲ. 관련도면 : 붙임 참조

※ 첨부된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등(그 외 세부관계도면은 첨부 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Ⅴ. 정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도서 : 생략

Ⅵ. 열람장소 :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과(☎02-2133-7148), 구로구 주택과(☎02-860-2941)에 정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도서 등 관계서류를 비치 및 열람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s://www.eu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비구역 결정도(기정)]

[정비구역 결정도(변경)]

[용도지역 결정도(기정)]

[용도지역 결정도(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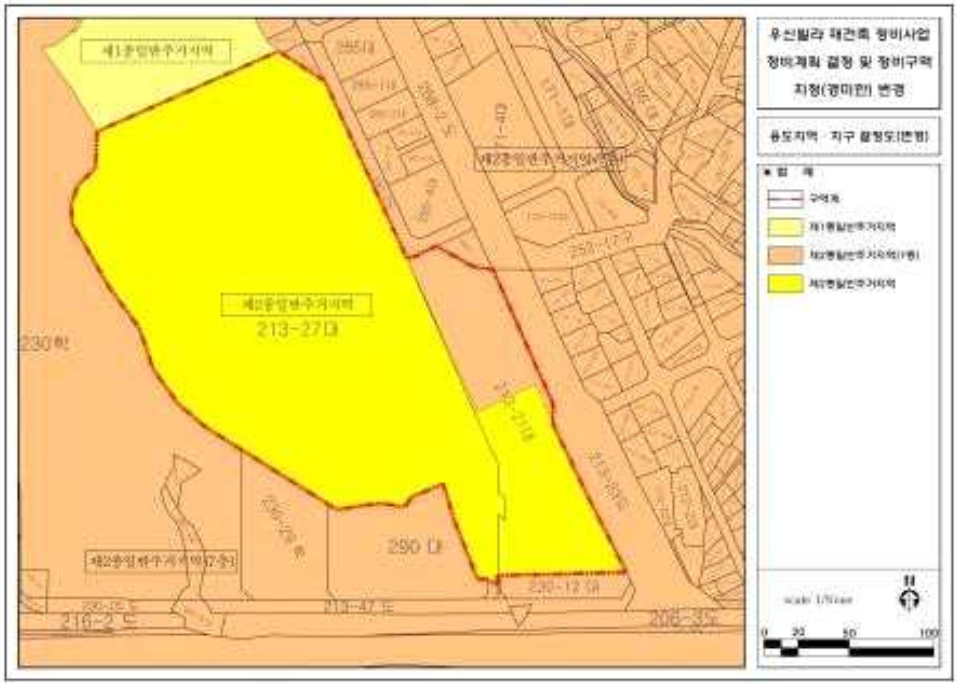

[도시계획시설 결정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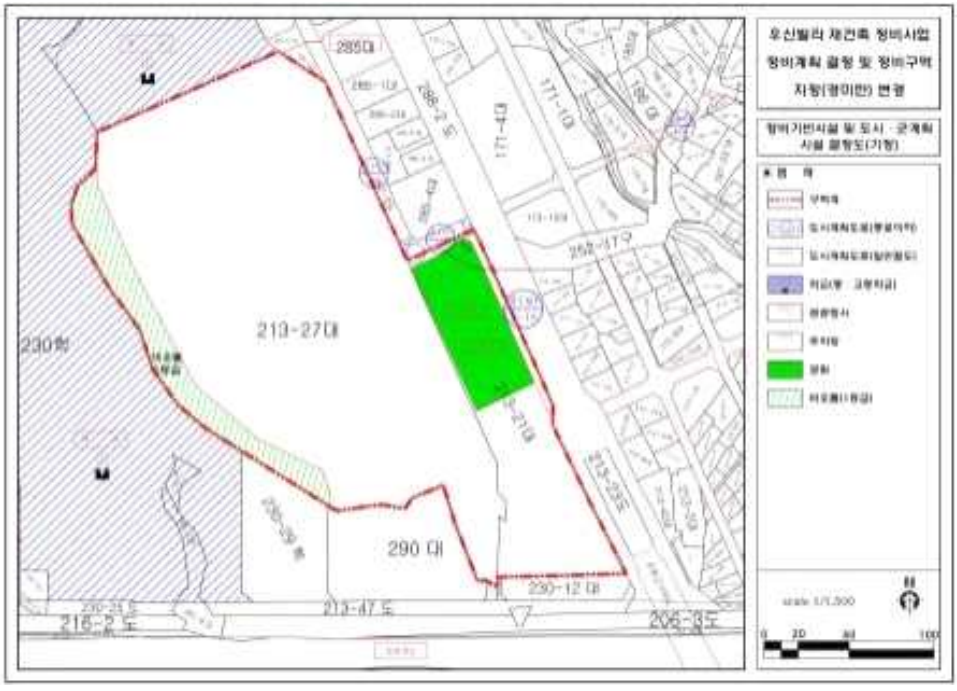

[도시계획시설 결정도(변경)]

[정비계획 결정도(기정)]

[정비계획 결정도(변경)]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625호

도시관리계획 [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내 특별계획구역14(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일원개포한신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경미한)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167(2011.06.23)호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254(2017.07.13.)로 특별계획구역14 지구단위(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254(2017.07.13.)로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 강남구고시 제2019-76호(2019.5.16.), 강남구고시 제2021-118호(2021.7.16.), 서울시고시 제2024-227호(2024.5.2.), 강남구고시 제 2025-642호(2025.7.25.)로 정비계획 결정(변경)된 일원개포한신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및 제16조,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및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11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정비계획 (경미한)변경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13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개포택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 변경없음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 변경

가. 용도지역·지구 결정조서 : 변경업음

나.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

(1) 교통시설 : 변경

가) 도로 결정(변경) 조서 : 변경

구 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유지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3	108	25 ~28	보조 간선	526 (49)	광로 1-28	대로 2-68	일반 도로	-	-	
변경	대로	3	108	25 ~28	보조 간선	526 (49)	광로 1-28	대로 2-68	일반 도로	-	-	대상지 구간 27m
기정	중로	2	407	15 ~24	국지 도로	620 (205)	광로 1-72	대로 3-108	일반 도로	-	-	가감속차로 폭3m, 4-9m 확폭

(2) 공간시설

가) 공원 : 변경없음

나) 녹지 결정(변경) 조서 : 변경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녹지	연결녹지	일원동 615-1 일대	1,016.7	감) 74.4	942.3	-	일원로변, 폭 10m

다) 광장 : 변경없음

(3) 유통 및 공급시설 : 변경없음

(4) 공공문화체육시설 : 변경없음

(5) 방재시설 : 변경없음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 변경

가.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나. 건축물에 대한 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 배치 · 형태 · 색채 · 건축선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다. 기타사항에 과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라.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 변경

(6)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7)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단지별 지구단위계획 내용 : 변경

■특별계획구역14 (개포한신)

구분	계획지침		비고
	기정	변경	
위치	• 강남구 일원동 615-1	좌동	
특별계획구역 면적	• 20,876.0㎡	좌동	
획지(계획대지) 면적	• 18,499.4㎡	좌동	
공공시설 면적	• 2,376.6㎡	좌동	
공공시설 비율	• 기부채납(순부담) 비율 11.4% 내외	좌동	
용도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좌동	
공공 · 기반시설 계획	• 기부채납(순부담) 공공·기반시설 면적 : 2,376.6㎡ - 연결녹지 폭12m(영희초교변)(면적 : 1,016.7㎡) 계획	• 기부채납(순부담) 공공·기반시설 면적 : 2,376.6㎡ - 연결녹지 폭10m(영희초교변)(면적 : 942.3㎡) 계획	지침도에 따름 : 향후 세부 개발계획(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시 도시계획

구분			계획지침		비고
			기정	변경	
			- 폭4-9m 도로(개원길) 계획 및 개원길·일원로변 가감속차로 설치(면적 : 1,359.9㎡)	- 도로 확폭(면적 : 1,434.3㎡) · 개포로110길 : 폭4-9m 도로, 가속차로 설치 · 일원로 2m 확폭	시설 결정
건축물의 용도·밀도에 관한 계획	용도	불허용도 A	•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내 용도제한 규정 준용 • 이외 불허용도는 별도의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결정	좌동	
		허용용도 a	•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좌동	
	건폐율		• 50% 이하	좌동	
	용적률	기준용적률	• 210% 이하	좌동	
		허용용적률	• 230% 이하	좌동	
		상한용적률	• 250% 이하	좌동	
	높이		• 최고층수 35층 이하 • 저층구간(7층 이하) : 개원길변 폭 25m	• 최고층수 35층 이하 • 저층구간(7층 이하) : 개포로110길변 폭 25m	
배치	건축한계선		• 개원길변 : 6m • 개원길변 건축물의 저층부(3층이하)의 용도가 주민편의시설 (상가, 부대복리시설 등)인 경우 : 건축지정선 3m	• 개포로110길변 : 6m • 개포로110길변 건축물의 저층부 (3층이하)의 용도가 주민편의시설 (상가, 부대복리시설 등)인 경우 : 건축지정선 3m	지침도에 따름 : 공공·기반 시설의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따라 계획결정
기타에 관한 사항	경관		• 경관체크리스트 준용	좌동	
	보행동선		• 대청역, 중앙광장, 단지 주출입구를 연결하는 보행동선 조성	좌동	
	자전거도로		• 개원길, 일원로변으로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 조성 (폭1.5m이상)	• 개포로110길변, 일원로변으로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 조성 (폭1.5m이상)	

※ 법정 상한용적률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신청시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할 수 있음

※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건축부문) 및 관련법령과 기준을 우선 적용함

※ 공동개발추진이 무산되어 개별구역별로 개발을 진행할 때에는 해당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기반시설 및 지침 등을 각 개별구역에 맞게 지구단위계획 변경수립을 통하여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음

※ 보행동선 · 근린광장 · 쌈지형공지에 관한 사항은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변경할 수 있음
※ 소형주택(임대주택)은 정비계획 수립시 규모를 다양하게 계획(예시 : 주거전용면적 40㎡~59㎡)
※ 부분임대아파트 확보는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도입하여야 하며, 비율은 60~85㎡, 85㎡이상 세대수의 20%이상 확보하는 것을 권장
※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은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관련법에 근거하여 결정하도록 함
※ 세부사항은 본 지구단위계획운영지침 및 지침도에 따름

※ 상기 변경 특별계획구역을 제외한 개포택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기타 특별계획구역의 계획 내용은 변경없음

Ⅱ.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

정비사업의 명칭 : 일원개포한신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3) 정비구역 결정조서(변경없음)

구 분	정비사업 명 칭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경	변경후	
기 정	일원개포한신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강남구 일원동 615-1번지 일대	20,876.0	-	20,876.0	

4) 정비계획 수립(변경)

가. 용도지역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20,876.0	-	20,876.0	100.0	
제3종일반주거지역	20,876.0	-	20,876.0	100.0	

나. 토지이용계획 : 변경

구 분	명 칭	면 적(㎡)			비 율(%)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20,876.0	-	20,876.0	100.0	
정비기반 시 설	소 계	2,376.6	-	2,376.6	11.4	기반시설 조성 및 부지제공 2,376.6㎡ (순부담 11.4%)
	도 로	1,359.9	증)74.4	1,434.3	6.9	
	녹 지	1,016.7	감)74.4	942.3	4.5	
획 지1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18,499.4	-	18,499.4	88.6	

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 : 변경

(1) 도로 결정(변경) 조서 : 변경

구 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유지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3	108	25 ~28	보조 간선	526 (49)	광로 1-28	대로 2-68	일반 도로	-	-	
변경	대로	3	108	25 ~28	보조 간선	526 (49)	광로 1-28	대로 2-68	일반 도로	-	-	대상지 구간 27m
기정	중로	2	407	15 ~24	국지 도로	620 (205)	광로 1-72	대로 3-108	일반 도로	-	-	가감속차로 폭3m, 4-9m 확폭

2) 녹지 결정(변경) 조서 : 변경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녹지	연결녹지	일원동 615-1 일대	1,016.7	감)74.4	942.3	-	일원로변, 폭 10m

라.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 변경없음

시설 구분	시설의종류	위 치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공동 이용 시설	계		4,680.66	-	4,680.66	
	경로당	획지1 (공동주택용지)	227.24	-	227.24	
	관리사무소		542.90	-	542.90	
	어린이놀이터		768.43	-	768.43	
	주민운동시설		90.0	-	90.0	
	어린이집		242.64	-	242.64	
	작은도서관		351.81	-	351.81	
	주민공동시설		2,457.64	-	2,457.64	

마. 건축물의 정비 · 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1) 기존 건축물의 정비 · 개량계획 : 변경없음

구분	구 역 구 분		위 치	정비개량계획(동)					비고
	명 칭	면적(㎡)		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축	철거 이주	
기정	일원개포한신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구역	20,876.0	일원동 615-1 일대	5	-	-	5	-	

2) 건축시설계획 : 변경없음

구분	구역구분		획지구분		위 치	주된 용도	건폐율 (%)	용적률(%)		높이(m) 최고층수
	명 칭	면적(㎡)	명칭	면적 (㎡)				정비계획	법적상한	
기정	일원개포한신 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20,876.0	획지1	18,499.4	일원동 615-1번지 일대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50이하	250 이하	299.99 이하	115m이하/ 최고35층
주택의 규모 및	• 규모별 주택건설비율									

<table>
<tr><td rowspan="2">구분</td><td colspan="2">구역구분</td><td colspan="2">획지구분</td><td rowspan="2">위 치</td><td rowspan="2">주된
용도</td><td rowspan="2">건폐율
(%)</td><td colspan="2">용적률(%)</td><td rowspan="2">높이(m)
최고층수</td></tr>
<tr><td>명 칭</td><td>면적(㎡)</td><td>명칭</td><td>면적
(㎡)</td><td>정비계획</td><td>법적상한</td></tr>
<tr><td>규모별 건설비율</td><td colspan="10">
<table>
<tr><td rowspan="2">구분</td><td colspan="3">세대수(세대)</td><td rowspan="2">비율(%)</td></tr>
<tr><td>기정</td><td>변경</td><td>변경후</td></tr>
<tr><td>전용 60㎡이하</td><td>168
(재건축소형주택 61)</td><td>-</td><td>168
(재건축소형주택 61)</td><td>34.8%</td></tr>
<tr><td>전용 60초과
~85㎡이하</td><td>219</td><td>-</td><td>219</td><td>45.3%</td></tr>
<tr><td>전용 85㎡초과</td><td>96</td><td>-</td><td>96</td><td>19.9%</td></tr>
<tr><td>합계</td><td>483</td><td>-</td><td>483</td><td>100%</td></tr>
</table>
- 전체 연면적 대비 전용면적 85㎡이하 주택 비율 : 50% 이상
</td></tr>
<tr><td>심의를 통하여 완화 받고자 하는 사항</td><td colspan="10">•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 총 5% 완화
- 에너지효율등급 1+ / 녹색건축인증 우수등급 : 6%
• 용적률 완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3)
- 정비계획용적률(250%) → 법적상한용적률 (299.99%)</td></tr>
<tr><td>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td><td colspan="10">• 건축한계선(개포택지개발지구(공동주택) 제1종지구단위계획 준용)
- 개포로110길변 : 6m
- 개포로110길변 건축물의 저층부(3층이하)의 용도가 주민편의시설 (상가, 부대복리시설 등)인 경우 : 건축지정선 3m</td></tr>
</table>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은 관련규정 범위 내에서 사업시행인가시 조정될 수 있음

3) 개발가능(상한)용적률 산정 : 변경없음

구 분	산 정 내 용				
토지이용 계 획	구역면적	획지 (공동주택)	신설 정비기반시설	신설 정비기반시설 내 기존 국·공유지	획지내 용도폐지되는 기존 기반시설 국공유지
	20,876.0㎡	18,499.4㎡	2,376.6㎡	-	-
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 (순부담)	• 새로이 설치하는 기반시설 면적 - 새로이 설치하는 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 획지 내 용도 폐지되는 기존 기반시설 국공유지 = 2,376.6㎡ - 0㎡ - 0㎡ = 2,376.6㎡				
계획용적률	•개포택지개발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의 계획(기준)용적률 : 210.0%이하				
허용용적률	•허용용적률 = 기준용적률 + 인센티브로 제공되는 용적률 = 210% + 5% = 215% •인센티브로 제공되는 용적률 : 총 5% 완화 - 에너지효율 1+ 등급 / 녹색건축인증 우수등급 : 6% ※ 2020년 제11차 건축위원회 심의(2020.7.28.)에서 결정된 사항임				
정비계획 용적률	• 상한용적률(개발가능용적률) = 허용용적률 × (1+1.3α) = 215% × (1 + 1.3 × 0.12847) = 250.9% * α = 공공시설부지 제공 면적 / 공공시설부지 제공 후 대지면적 = 2,376.6㎡ / (20,876.0㎡-2,376.6㎡) = 0.12847 • 정비계획용적률 : 250% • 법적상한용적률 : 299.99%				

바.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구 분	계획내용
도시경관	• 인공적인 녹지공간을 설치하여 주변 경관과 조화되도록 하며, 이용객 편익 및 휴식공간이 되도록 계획 • 사업대상지 경계부의 녹지대는 외부에서의 시각적 경관을 고려하여 조화된 수림대 형성 • 시각적 압박감을 줄이기 위해 조경 및 구조물 선정은 형태, 색채, 질감 등이 주변 경관과 조화될 수 있도록 재료와 구성의 변화로 시각적 경험을 다양화

구 분	계획내용
환경보전	• 토양포장면적을 최소화하고 필요시 최대한 틈새투수포장 활용 •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을 위하여 『생태면적율 도시계획활용 개선방안, 2007. 12, 서울시 도시계획국』에 제시된 건축 유형에 따른 생태면적율 기준인 30%(공동주택기준) 이상 확보하되, 개포택지(공동주택)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의해 생태면적률40%, 자연지반율 10% 확보 • 조경계획 수립시 다층구조의 식생대를 조성하여 조류를 유인하고, 소규모 비오톱을 조성하여 새로운 녹지축을 형성 • 단지내 청정연료를 사용토록 계획하고 에너지 절약형 건축물 설계기법을 도입하여 장래 에너지 사용량을 절감토록 하며, 그에 따른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 • 조경녹지 및 가로변에는 대기오염물질의 정화능력 및 적응력이 우수한 환경정화 수종을 우선 식재토록 계획 • 주변개발계획을 고려하여 공사시 정온시설 주변으로 가설방음판넬 설치 • 차음성능이 우수한 창호 사용 등을 통한 정온한 환경 유지
재난방지	• 사업대상지내 전면공지 등은 우수침투가 가능한 투수성 바닥포장을 사용하고, 내구성 및 유지관리가 용이한 소재를 이용 • 지구내 자연지반을 최대화하고 표면수 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수침투율이 높은 투수성포장재를 사용 • 공사는 원칙적으로 우기를 피하여 시행하고 절개지 발생시 비닐 등을 덮어 토사유실 방지 • 터파기 공사시 균열, 침하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흙막이공법을 실시 후 공사 시행

사. 정비사업 시행계획 : 변경없음

구분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예정자	정비사업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홍수 등 취약요인에 대한 검토 결과	비 고
기정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구역지정 후 4년 이내	개포한신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 기존세대수 : 364 • 계획세대수 : 483 증)119세대	이상없음	

아.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구 분	가 구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합계		18,499.4	-	18,499.4	도로, 녹지 제외
획 지	1	18,499.4	일원동 615-1번지 일대	18,499.4	공동주택용지

자. 소형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table>
<tr><td>구 분</td><td colspan="2">산 정 내 용</td></tr>
<tr><td rowspan="3">용적률</td><td>정비계획용적률</td><td>•250%</td></tr>
<tr><td>법적상한용적률</td><td>•299.99%</td></tr>
<tr><td>용적률 차이의 50%</td><td>•(299.99% - 250%) × 50% = 24.995%</td></tr>
<tr><td>소형주택
공급기준</td><td colspan="2">•소형주택 건설 면적 : 대지면적 × 24.995%
= 18,499.4㎡ × 24.995% = 4,623.925㎡ 이상</td></tr>
<tr><td>소형주택
건설계획</td><td colspan="2">
<table>
<tr><td rowspan="2">구분</td><td rowspan="2">건립위치</td><td rowspan="2">세대수</td><td colspan="2">주택규모</td><td rowspan="2">연면적</td></tr>
<tr><td>전용면적</td><td>공급면적</td></tr>
<tr><td rowspan="4">기정</td><td rowspan="4">획지</td><td>10세대</td><td>44.95㎡</td><td>60.8825</td><td rowspan="4">•계획 = 60.8825㎡ × 10세대
+ 64.4138㎡ × 11세대
+ 82.6552㎡ × 20세대
+ 82.9808㎡ × 20세대
= 4,630.1㎡ 〉 4,623.925㎡</td></tr>
<tr><td>11세대</td><td>46.97㎡</td><td>64.4138</td></tr>
<tr><td>20세대</td><td>59.98㎡</td><td>82.6552</td></tr>
<tr><td>20세대</td><td>59.98㎡</td><td>82.9808</td></tr>
</table>
</td></tr>
</table>

※ 주택의 규모는 관련규정 범위 내에서 조정될 수 있음

Ⅲ.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 : 변경

가.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사항 : 변경없음

1) 특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 분	명 칭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경	변경후	
기 정	특별계획구역 14	강남구 일원동 615-1번지 일대	20,876.0	-	20,876.0	

나.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사항 : 변경

1)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20,876.0	-	20,876.0	100.0	
제3종일반주거지역	20,876.0	-	20,876.0	100.0	

2)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 : 변경

① 도로 결정(변경) 조서 : 변경

구 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유지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3	108	25 ~28	보조 간선	526 (49)	광로 1-28	대로 2-68	일반 도로	-	-	
변경	대로	3	108	25 ~28	보조 간선	526 (49)	광로 1-28	대로 2-68	일반 도로	-	-	대상지 구간 27m
기정	중로	2	407	15 ~24	국지 도로	620 (205)	광로 1-72	대로 3-108	일반 도로	-	-	가감속차로 폭3m, 4-9m 확폭

② 녹지 결정(변경) 조서 : 변경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녹지	연결녹지	일원동 615-1 일대	1,016.7	감)74.4	942.3	-	일원로변, 폭 10m

다.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사항 : 변경없음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조서

구분	획지		비고
	위치	면적(㎡)	
합계		18,499.4	도로, 녹지 제외
공동주택용지	소계	18,499.4	
	획지1	18,499.4	

2)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조서

① 건축물 용도계획

구분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고
용도	불허용도	•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내 용도제한 규정 준용 • 이외 불허용도는 별도의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결정	허용용도 외 불허	
	허용용도	•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좌동	

② 건축물 개발밀도 계획

▌건폐율

구 분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 고
건폐율	50% 이하	50%이하	

▌용적률

구분	구 분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 고
기정	기준/허용/상한 용적률	210% / 230% / 250%	• 기준용적률 : 210% 이하 • 허용용적률 : 215% 이하 • 상한용적률 : 250% 이하 • 법적상한용적률 : 299.99% 이하	

구분	구 분	용적률 완화		비 고
		공공시설 기부채납	소형주택 건설	
기정	상한용적률	35%	49.99%	합계 : 84.99%

③ 건축물 개발밀도 계획

구분	구 분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 고
기정	최고높이	35층이하	35층이하 115m 이하	

④ 건축선에 관한 계획

구 분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 고
건축한계선	개포로110길 변 : 6m 개포로110길변 건축물의 저층부(3층이하)의 용도가 주민편의시설(상가, 부대복리시설 등)인 경우 : 건축지정선 3m	개포로110길 변 : 건축지정선 3m	

3)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조서

구 분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 고
보행동선	대청역, 중앙광장, 단지 주출입구를 연결하는 보행동선 조성	개포로110길에서 북측으로 연결되는 보행동선 확보	
자전거도로	개포로110길, 일원로변으로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 조성 (폭1.5m이상)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 계획	

Ⅳ.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결정도서(관계도면 등 지형도면 포함) : 첨부(세부 관계 도면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도면 참조)

※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Ⅴ. 관계도서는 시민의 열람 편의를 위하여 서울시청 공동주택과(☎ 02-2133-7142) 및 강남구청 재건축사업과(☎ 02-3423-6076)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첨부도면

▣ 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구역 세부지침도(기정/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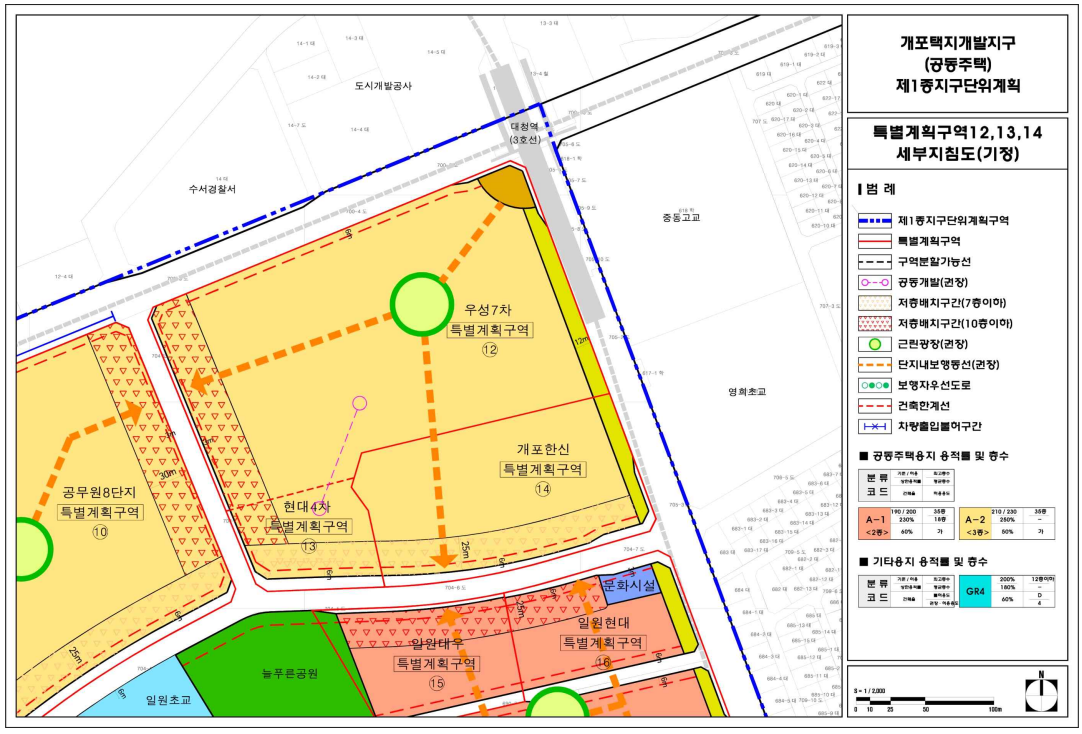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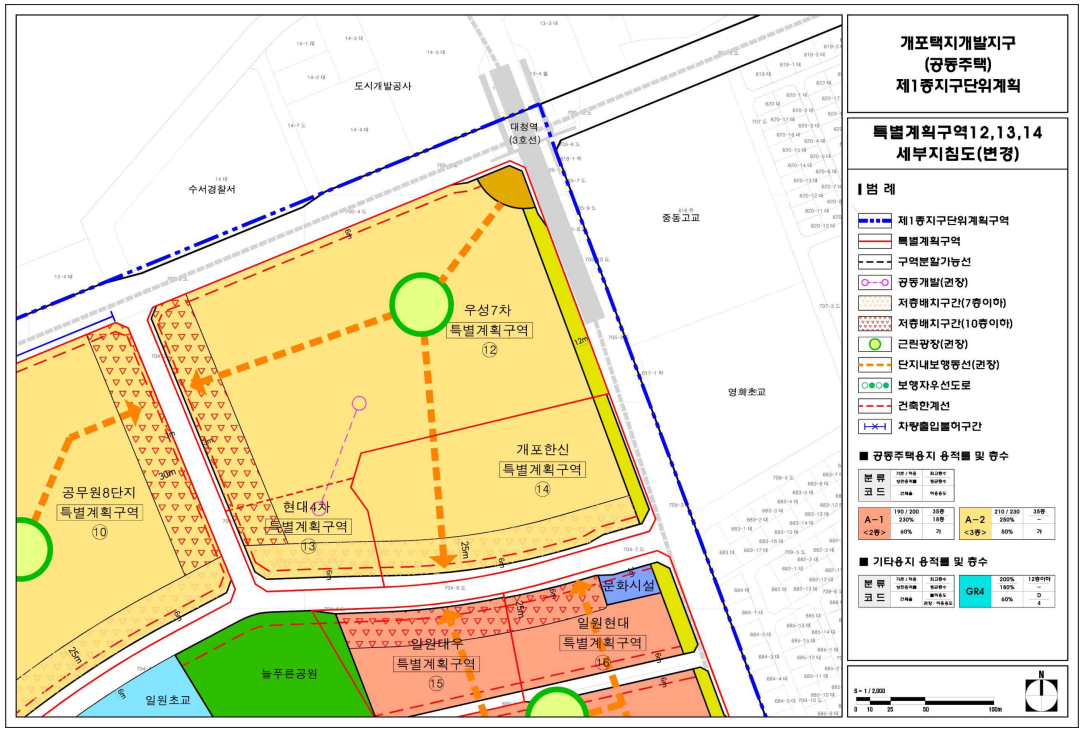

▣ 정비계획구역 결정도 : 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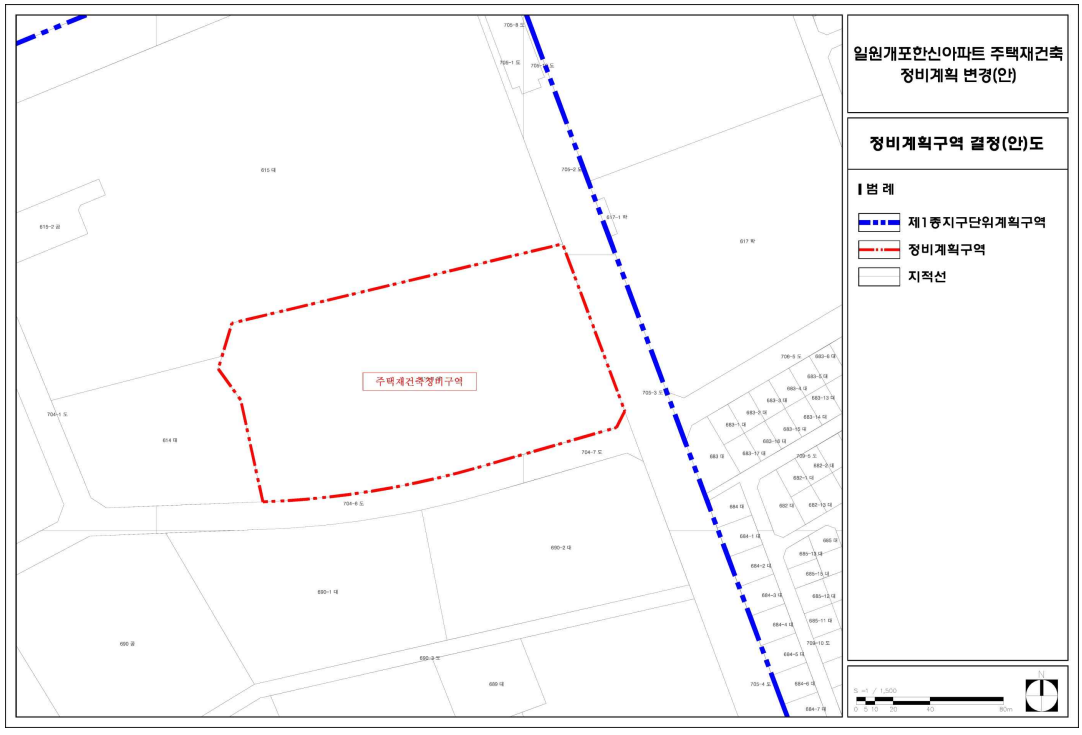

▣ 용도지역 결정도 : 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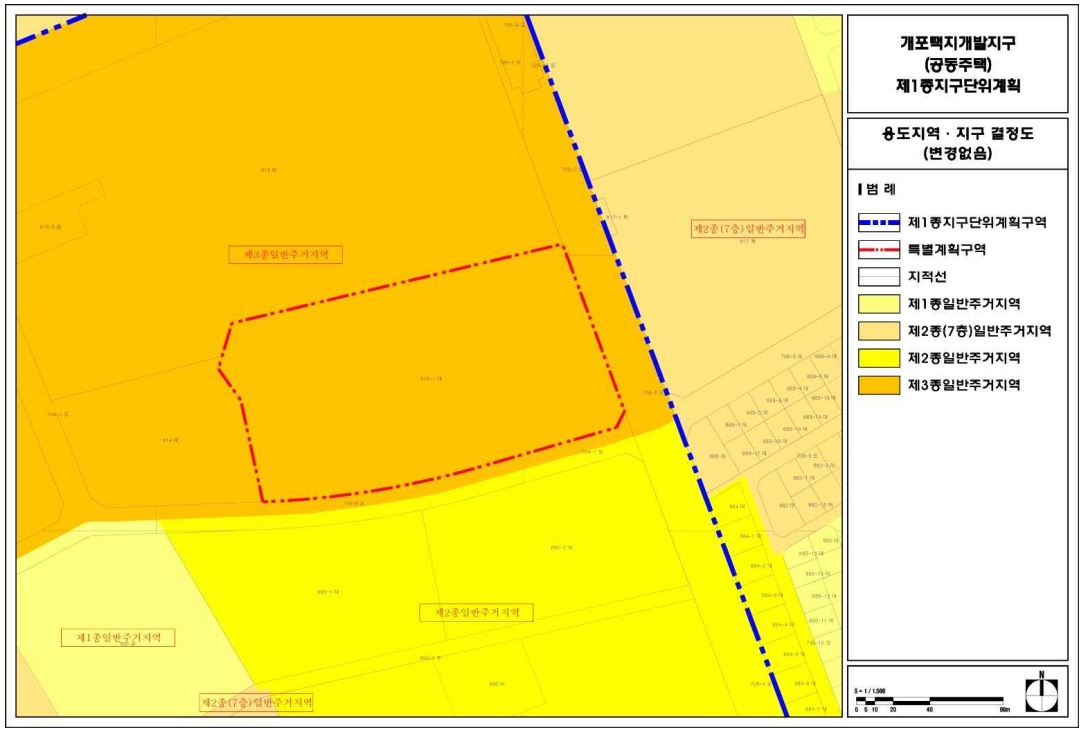

▣ 도시계획시설 결정도(기정/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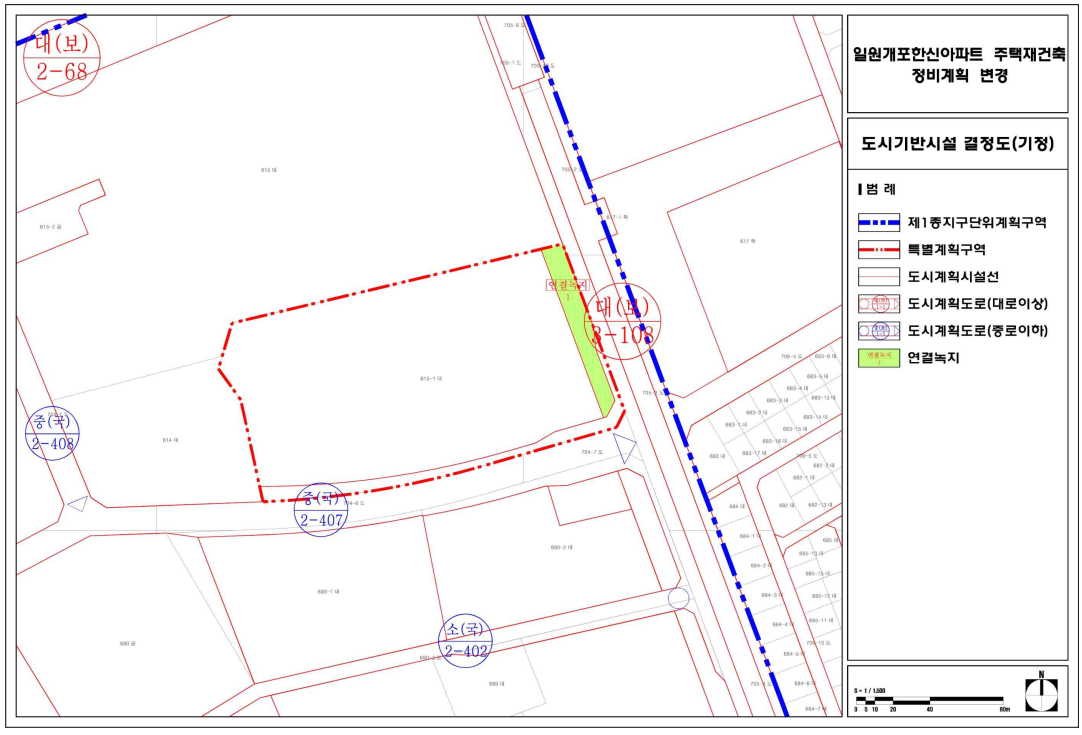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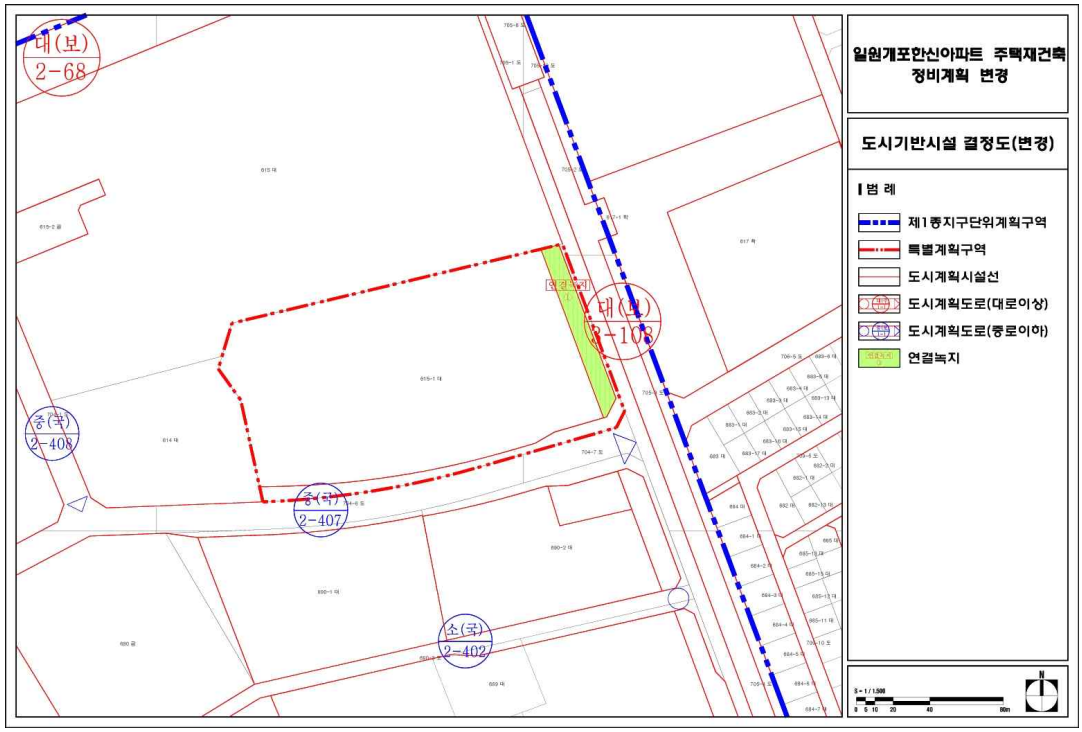

▣ 정비계획 결정도(기정/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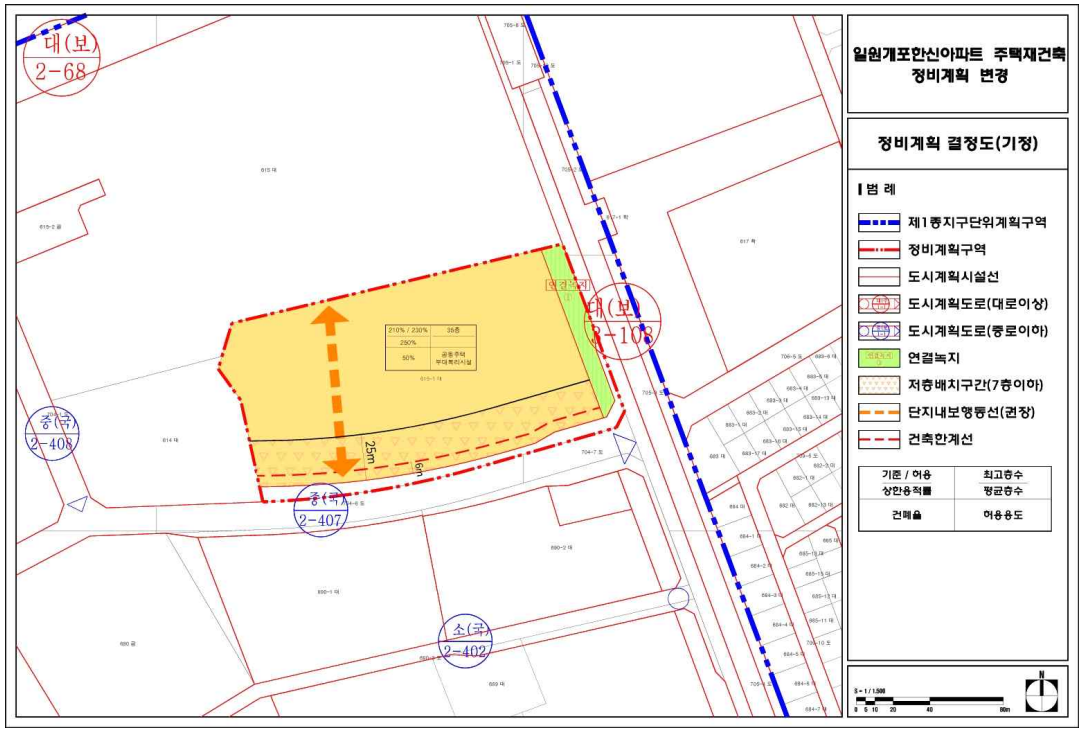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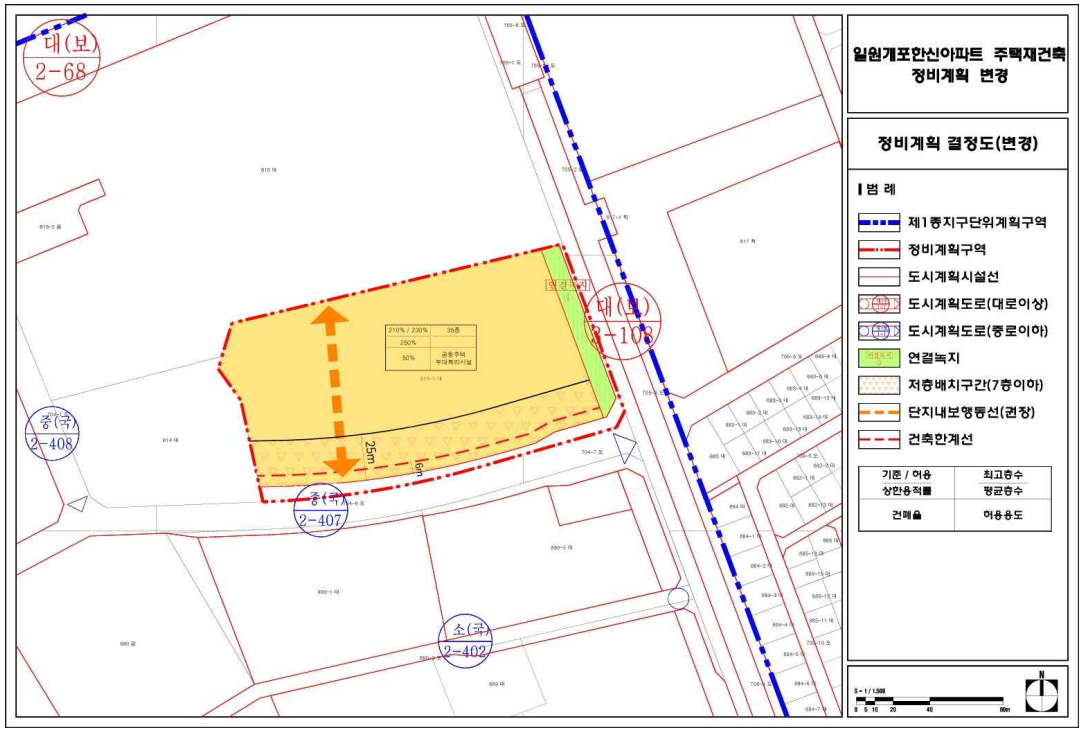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627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151호(1975.9.26.)로 도시계획시설(학교) 최초 결정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383호(2015.12.3.)로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기본계획 수립)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94호(2020.3.5.)로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농동 90번지 일대 서울시립대학교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을 결정(변경)·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13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결정(변경) 취지

○ 동대문구 전농동 90번지 일대에 위치한 서울시립대학교에 구역계획 변경을 통해 기숙사 증축 및 바이오메디컬관(교육연구공간) 확보를 위한 세부시설조성계획을 결정(변경)하고자 함

2.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 조서

가.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 조서 [변경 없음]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학 교	대 학 (서울시립대학교)	동대문구 전농동 90 일대	270,595	-	270,595	서고 제151호 (1975.9.26)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자연경관지구

나.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 조서

1) 구역계획(기정)

구 역	구 분	면 적 (㎡)	구 역	구 분	면 적 (㎡)
일반관리구역	①	43,384	외부활동구역	⑦	9,817
	②	49,239		⑧	10,758
	③	47,831		소 계	20,575
	④	42,466	녹지보존구역	⑨	5,887

구 역	구 분	면 적 (㎡)	구 역	구 분	면 적 (㎡)
	⑤	3,720		⑩	4,301
	소 계	186,640		⑪	39,846
상징경관구역	⑥	13,346		소 계	50,034
	소 계	13,346	합 계		270,595

2) 구역계획(변경)

구 역	구 분	면 적 (㎡)	구 역	구 분	면 적 (㎡)
일반관리구역	①	43,384	외부활동구역	⑥	9,817
	②	49,239		⑦	10,758
	③	50,551		소 계	20,575
	④	43,466	녹지보존구역	⑧	5,887
	소 계	186,640		⑨	4,301
상징경관구역	⑤	13,346		⑩	39,846
	소 계	13,346		소 계	50,034
			합 계		270,595

3) 밀도계획(건폐율)(기정)

구 분	밀도산정 기준면적(㎡)	조례 건폐율(%)	사용 건폐율(%)	관리 건폐율(%)	비 고
제1종일반주거지역	16,826	60.0	23.4	28.0	○ 밀도 산정시 제외한 면적 -비오톱1등급지 : 33,482㎡ ※ 산정기준 면적 계산 270,595㎡-33,482㎡=237,113㎡
제1종일반주거지역, 자연경관지구	193,427	30.0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26,860	60.0			
계	237,113	35.5			

4) 밀도계획(건폐율)(변경)

구 분	밀도산정 기준면적(㎡)	조례 건폐율(%)	사용 건폐율(%)	관리 건폐율(%)	비 고
제1종일반주거지역	16,826	60.0	24.0	28.0	○ 밀도 산정시 제외한 면적 -비오톱1등급지 : 33,482㎡ ※ 산정기준 면적 계산 270,595㎡-33,482㎡=237,113㎡
제1종일반주거지역, 자연경관지구	193,427	30.0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26,860	60.0	19.0		
계	237,113	35.5	23.4		

5) 밀도계획(용적률 · 높이)(기정)

구역 구분	면적 (밀도산정 기준면적)	용적률 (%) 조례 용적률	사용 용적률	계획 용적률	이전 용적률	관리 용적률	높이 (m)	비고
①	43,384	177.5	79.6	104.1	-	114.0	• 지표로부터 12~50m 이하	
②	49,239	150.0	108.1	117.4	-	127.0	• 지표로부터 24~28m 이하	
③	47,831	150.0	97.8	131.0	-	140.0	• 지표로부터 24~28m 이하	
④	42,466	150.0	102.1	128.8	-	138.0	• 지표로부터 28m 이하	
⑤	3,720	150.0	-	134.4	-	140.0	• 지표로부터 28m 이하	
⑥	13,346	150.0	16.8	-	-	19.0	• 지표로부터 8m 이하 (기존 건축물 개축 및 리모델링 허용)	
⑦	9,817	165.2	-	-	-	3.0	• 지표로부터 12m 이하 (기존 건축물 및 외부공간 부대시설에 한하여 허용)	
⑧	10,758	150.0	33.8	-	-	36.0	• 지표로부터 22m 이하 (기존 건축물 및 외부공간 부대시설에 한하여 허용)	
⑨	5,887 (0)	150.0	0.2	-	-	0.2	• 기존 건축물 현 범위내 활용	
⑩	4,301 (0)	150.0	-	-	-	-	-	
⑪	39,846 (16,552)	150.0	-	-	-	-	-	

※ 구역별 높이계획 : 결정도면 참조

6) 밀도계획(용적률 · 높이)(변경)

구역 구분	면적 (밀도산정 기준면적)	용적률 (%) 조례 용적률	사용 용적률	계획 용적률	이전 용적률	관리 용적률	높이 (m)	비고
①	43,384	177.5	79.6	104.1	-	114.0	• 지표로부터 12~50m 이하	
②	49,239	150.0	108.4	117.4	-	127.0	• 지표로부터 24~28m 이하	
③	50,551	150.0	92.5	139.9	-	140.0	• 지표로부터 24~35m 이하	
④	43,466	150.0	99.8	121.4	-	138.0	• 지표로부터 28m 이하	
⑤	13,346	150.0	16.8	-	-	19.0	• 지표로부터 8m 이하 (기존 건축물 개축 및 리모델링 허용)	
⑥	9,817	165.2	-	-	-	3.0	• 지표로부터 12m 이하 (기존 건축물 및 외부공간 부대시설에 한하여 허용)	
⑦	10,758	150.0	33.8	-	-	36.0	• 지표로부터 22m 이하 (기존 건축물 및 외부공간 부대시설에 한하여 허용)	

구역 구분	면적 (밀도산정 기준면적)	용적률 (%)					높이 (m)	비고
		조례 용적률	사용 용적률	계획 용적률	이전 용적률	관리 용적률		
⑧	5,887 (0)	150.0	0.2	-	-	0.2	• 기존 건축물 현 범위내 활용	
⑨	4,301 (0)	150.0	-	-	-	-	-	
⑩	39,846 (16,552)	150.0	-	-	-	-	-	

※ 구역별 높이계획 : 결정도면 참조

7) 변경건축물 조서

구분	건물명	건축면적(㎡)				연면적(㎡)				지상층 면적(㎡)				건축물높이 (층수)		비고
		제1종일반 주거지역		제2종일반 주거지역		제1종일반 주거지역		제2종일반 주거지역		제1종일반 주거지역		제2종일반 주거지역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1구역	정문 안내실	-	-	49.27	65.98	-	-	49.27	65.44	-	-	49.27	65.44	지상1층	지상1층	22년 증축
2구역	과학 기술관	1,655.29	1,655.29	-	-	9,677.34	9,808.85	-	-	8,020.18	8,151.69	-	-	지하1층, 지상6층	지하1층, 지상6층	25년 증축
2구역	건설 공학관 별관	-	313.92	-	-	-	990.99	-	-	-	990.99	-	-	-	지상5층	21년 증축
2구역	시대 융합관	1,245.43	1,237.47	-	-	11,859.68	11,865.33	-	-	5,996.46	6,011.98	-	-	지하2층, 지상5층	지하3층, 지상5층	23년 증축
4구역	정보 기술관	1,762.45	1,762.45	-	-	11,414.64	11,463.78	-	-	9,095.79	9,144.93	-	-	지하1층, 지상6층	지하1층, 지상6층	21년 증축

3. 관계도면 :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 도면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과 같음)

※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시설계획과 및 동대문구 도시계획과에 관련도면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시설계획과 :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1층(☎2133-8413)
- 동대문구 도시계획과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천호대로 145, 9층(☎3299-2631)

※ 고시문 및 지형도면 등은 서울도시계획 포털(http://urban.seoul.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 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도 (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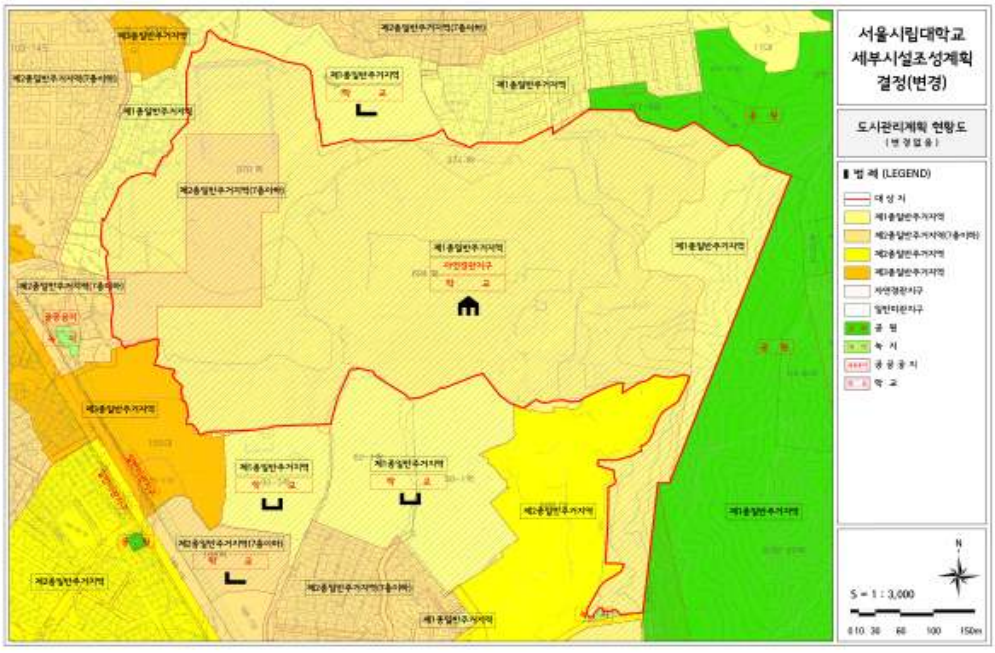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구역계획도 (기정)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구역계획도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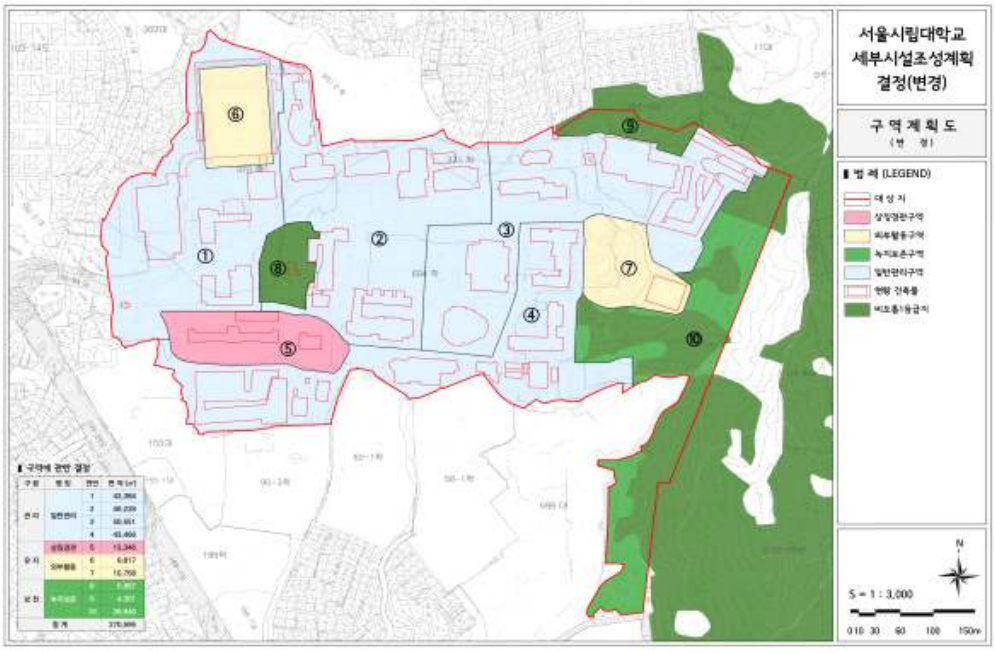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밀도계획도 (건폐율 · 용적률) (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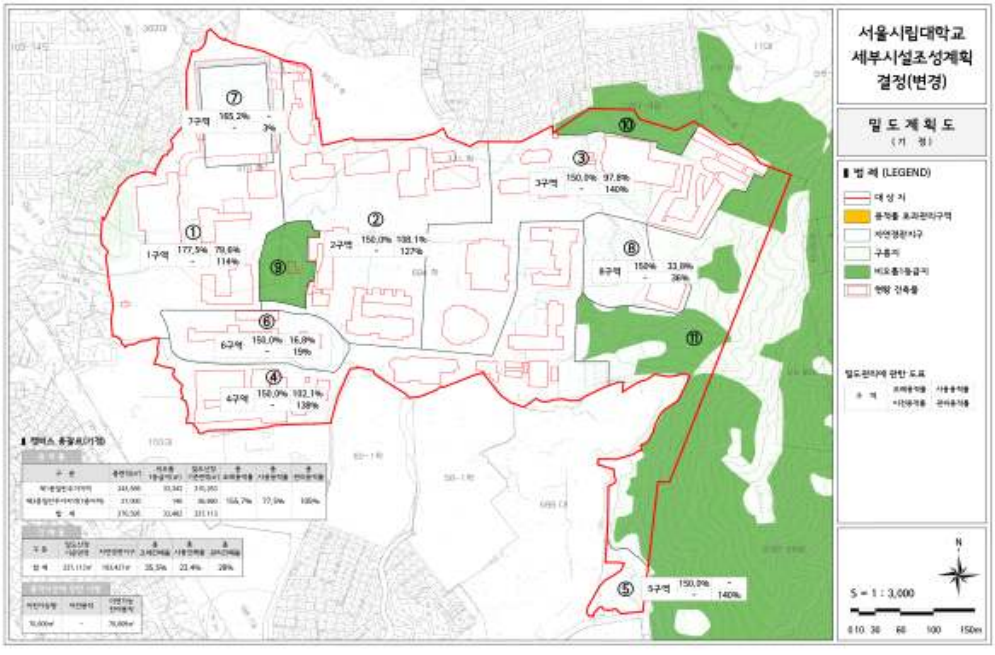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밀도계획도 (건폐율 · 용적률)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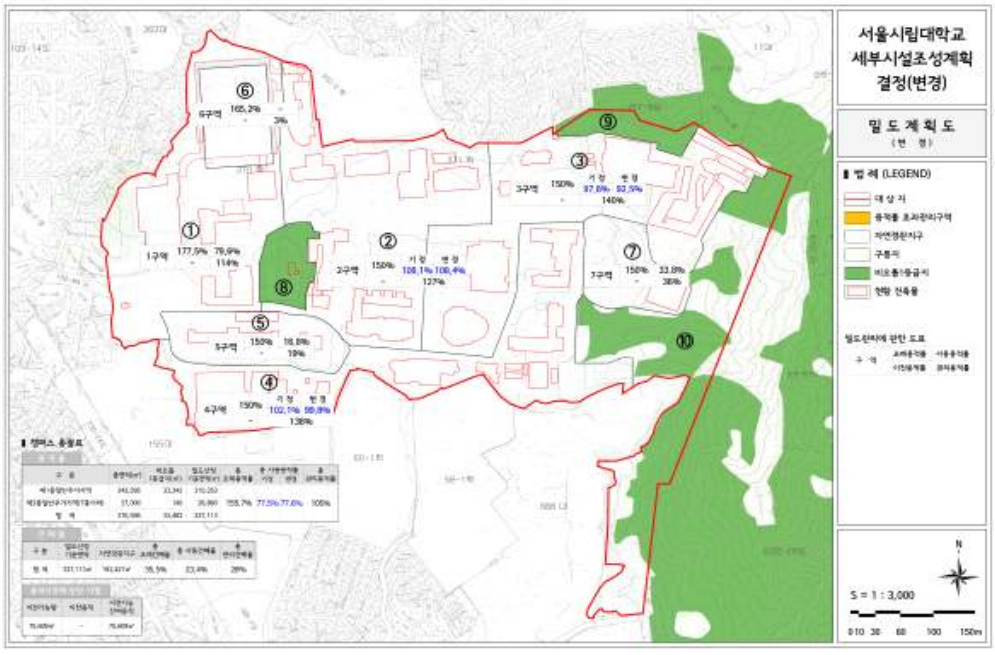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밀도계획도 (높이) (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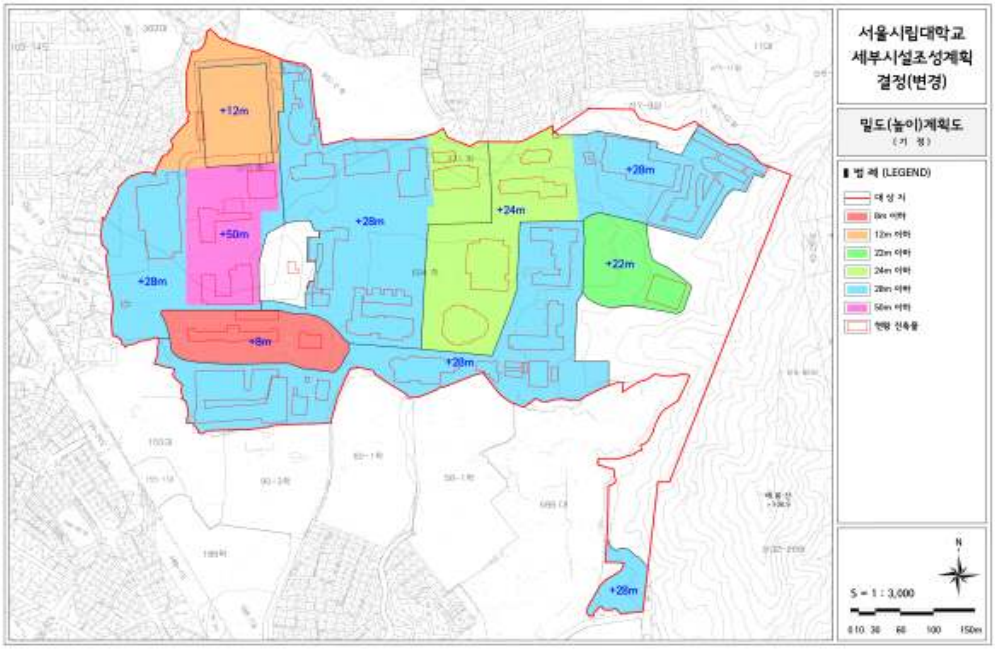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밀도계획도 (높이)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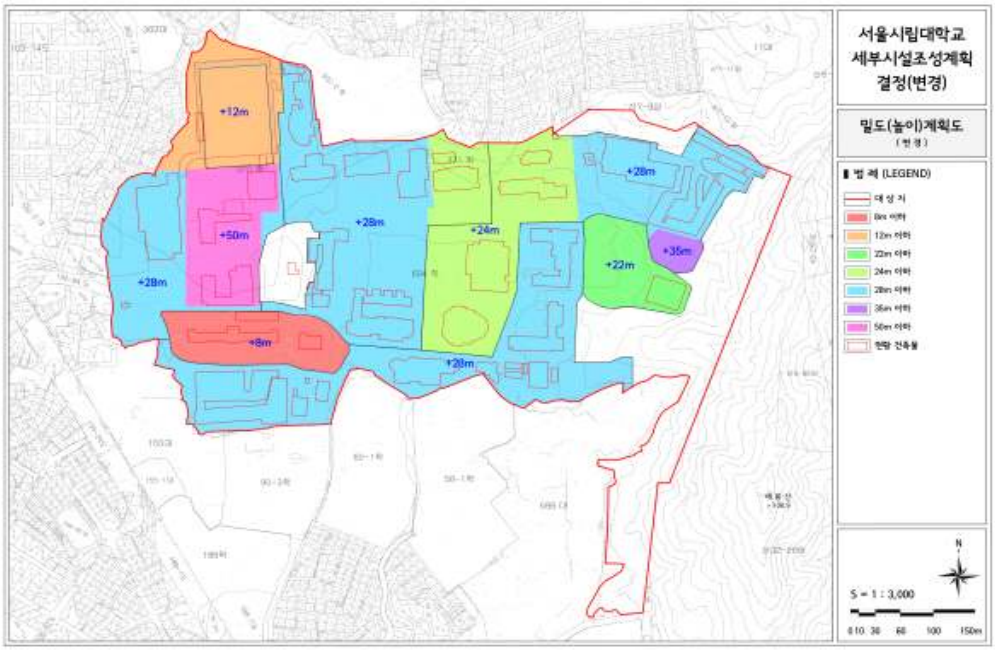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입지특성계획도 (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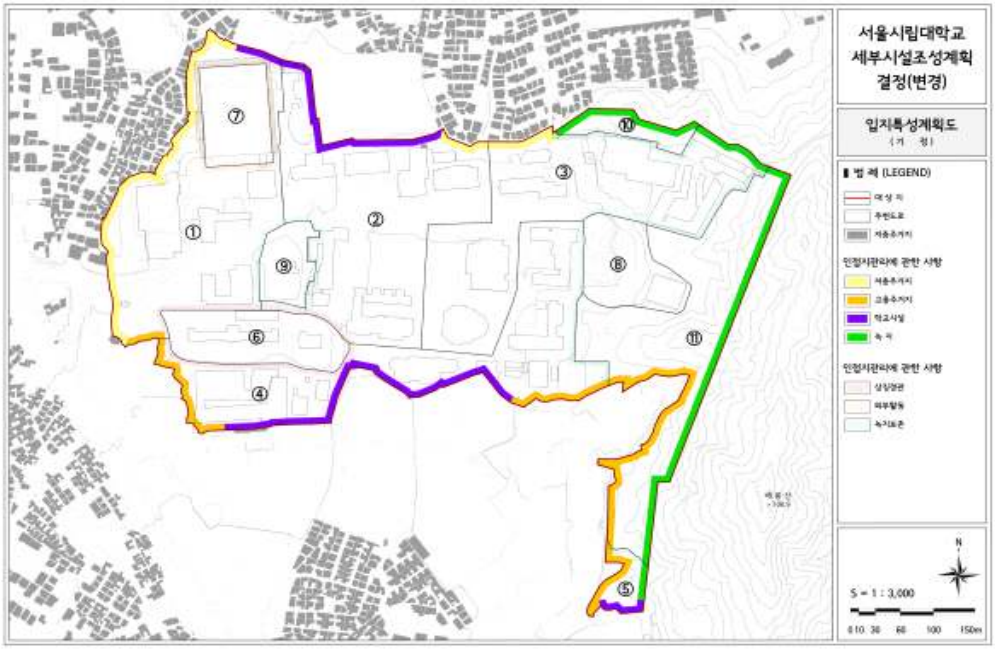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입지특성계획도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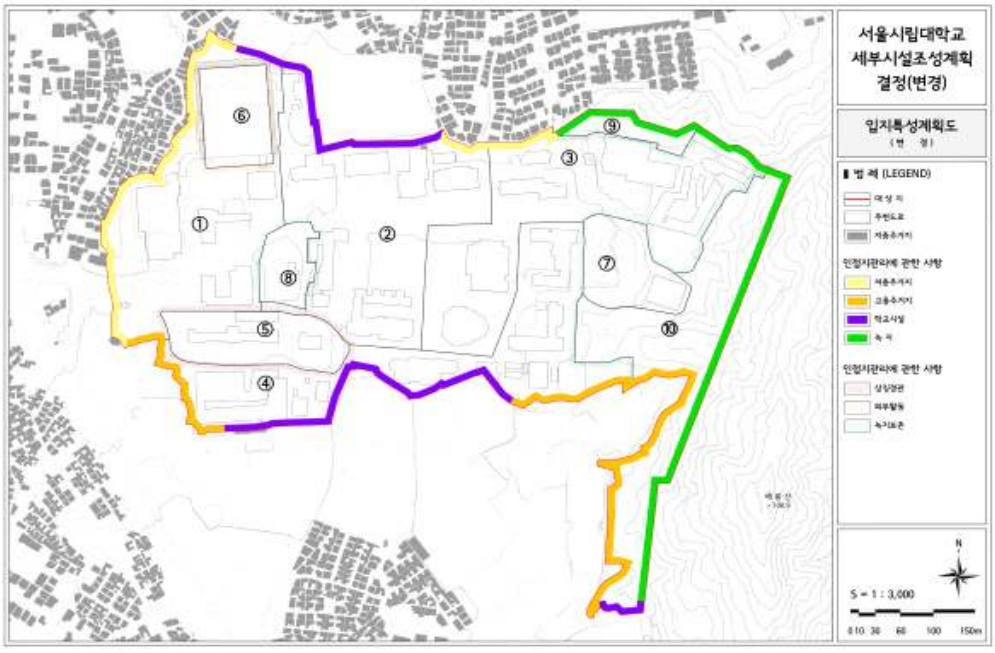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건축물 배치계획도 (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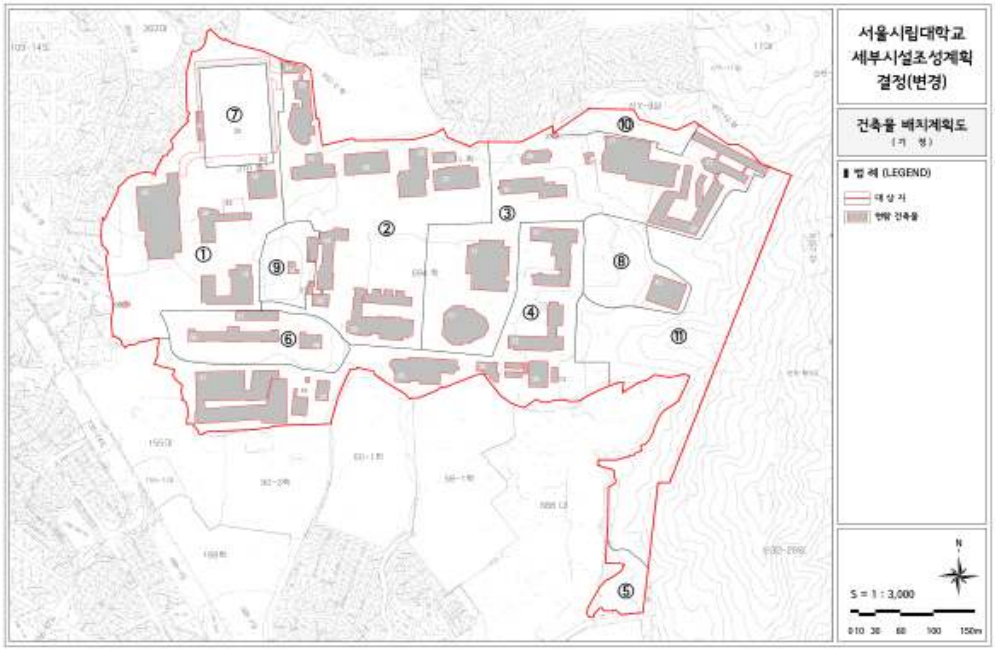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건축물 배치계획도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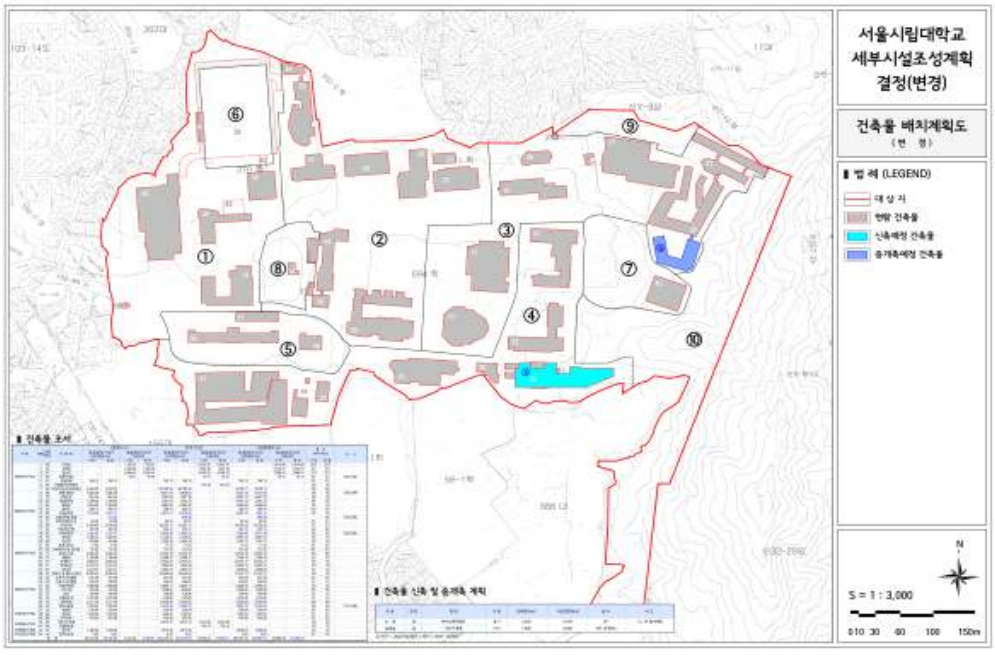

도시계획시설(학교) 기숙사배치계획도 (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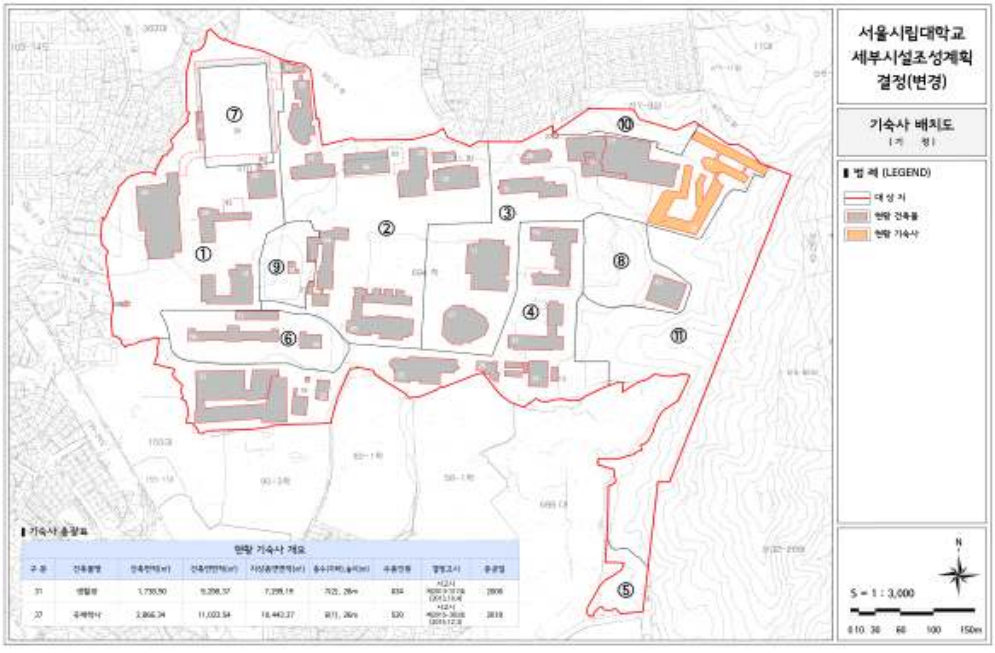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기숙사배치계획도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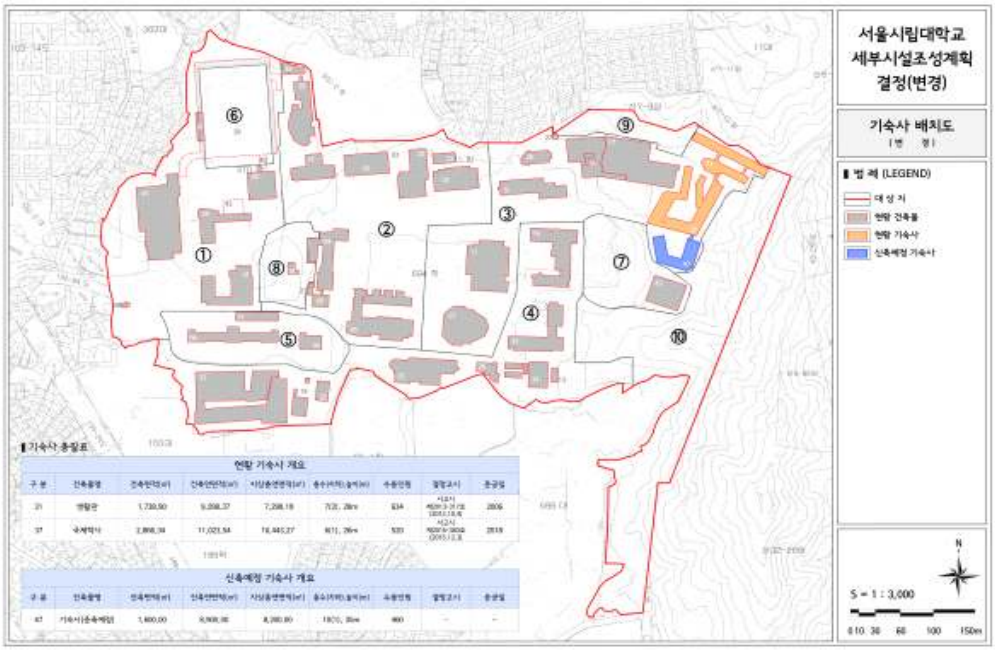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도 (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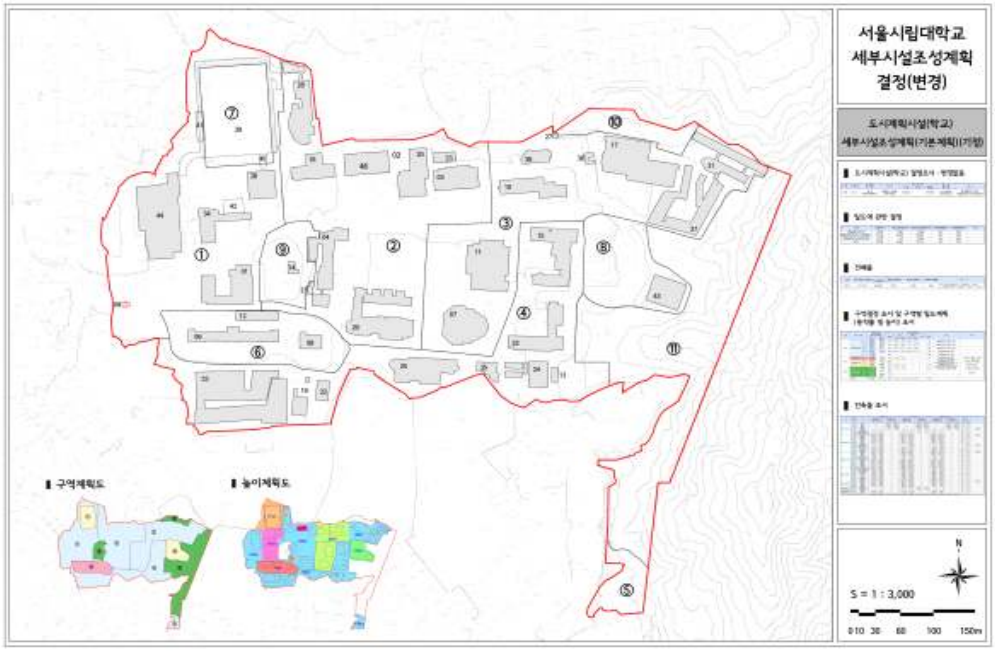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도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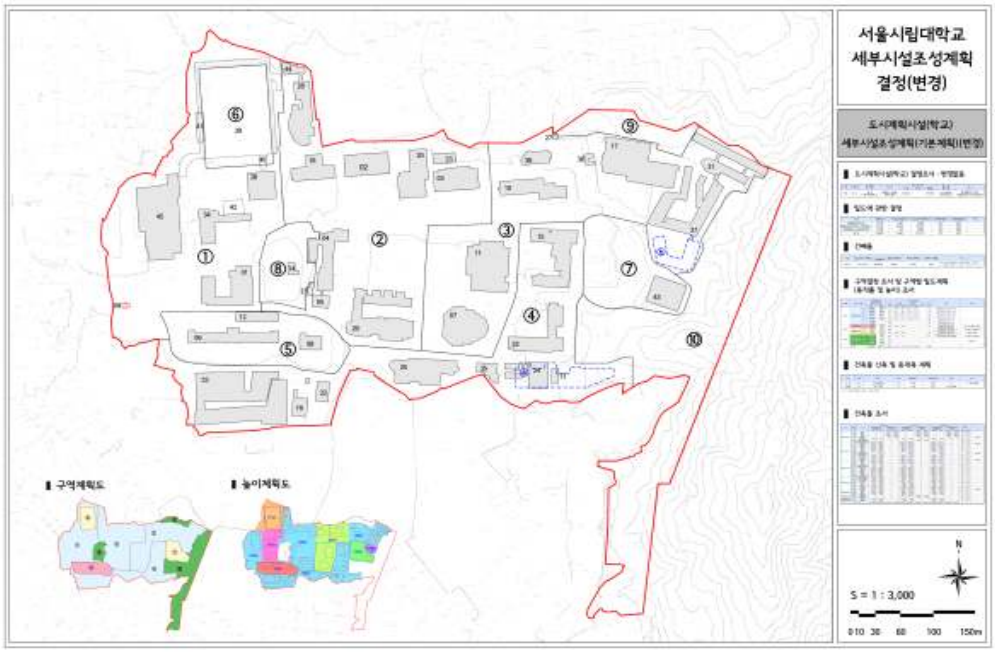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628호

목동11단지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특별계획구역11 세부개발계획 수립 ·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408호(2023.09.14.)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575호(2024.11.28.)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된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11(양천구 신정동 325 일대 목동11단지 아파트)의 재건축사업 시행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라 2025년 제9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수권분과) 심의(2025.09.01.)를 거쳐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특별계획구역11 세부개발계획 수립,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13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변경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변경	①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양천구 목동, 신정동 일원	4,379,770.5	-	4,379,770.5	최초결정일 (1994.2.15.) 서울특별시고시 제1994-34호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 변경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합 계		4,379,770.5	-	4,379,770.5	100.0	
주거지역	소계	3,180,195.4		3,180,195.4	72.6	
	제1종일반주거지역	267,461.8	증) 1,283.3	268,745.1	6.1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234,953.8	-	234,953.8	5.4	
	제2종일반주거지역	606,609.2	-	606,609.2	13.9	
	제3종일반주거지역	2,052,500.1	감) 1,283.3	2,051,216.8	46.8	
	준주거지역	18,670.5	-	18,670.5	0.4	
상업지역	소계	568,384.8	-	568,384.8	13.0	
	일반상업지역	568,384.8	-	568,384.8	13.0	
공업지역	소계	73,561.2	-	73,561.2	1.7	
	준공업지역	73,561.2	-	73,561.2	1.7	
녹지지역	소계	557,629.1	-	557,629.1	12.7	
	자연녹지지역	557,629.1	-	557,629.1	12.7	

■ 용도지역별 변경 사유서

위치	용도지역		면적(㎡)	결정(변경)사유서
	기정	변경		
신정동 325	제3종일반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8,964.5	·목동11단지 내 공공청사, 공원, 녹지 계획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신정동 325-1	제3종일반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7,970.4	·목동11단지 내 공원, 녹지 계획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신정동 325-2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2,498.5	·목동11단지 내 공원, 녹지 계획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신정동 325-4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7,822.8	·목동11단지 내 공공청사, 공원, 녹지 계획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신정동 325-9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7,896.9	·목동11단지 내 공원, 녹지 계획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나. 용도지구 결정조서 : 변경없음

다.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1) 교통시설

① 도로 : 변경

■ 도로 총괄표(기정)

구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수(개소)	연장(m)	면적(㎡)	노선수(개소)	연장(m)	면적(㎡)	노선수(개소)	연장(m)	면적(㎡)	노선수(개소)	연장(m)	면적(㎡)
합계	109	58,218	1,023,417	21	7,679	204,593	40	25,264	288,229	48	25,275	530,595
광로	1	1,750	84,637	1	1,750	84,637	-	-	-	-	-	-
대로	37	40,293	648,286	1	1,823	61,137	5	14,332	66,546	31	24,138	520,603
중로	25	10,278	226,681	3	1,671	25,680	19	8,285	196,894	3	322	4,107
소로	46	5,897	63,813	16	2,435	33,139	16	2,647	24,789	14	815	5,885

※ 상기사항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의 해당사항임

■ 도로 총괄표(변경)

구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수(개소)	연장(m)	면적(㎡)	노선수(개소)	연장(m)	면적(㎡)	노선수(개소)	연장(m)	면적(㎡)	노선수(개소)	연장(m)	면적(㎡)
합계	109	58,201	1,025,102	21	7,679	204,593	40	25,247	289,914	48	25,275	530,595
광로	1	1,750	84,637	1	1,750	84,637	-	-	-	-	-	-
대로	37	40,293	648,721	1	1,823	61,137	5	14,332	66,981	31	24,138	520,603

구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수(개소)	연장(m)	면적(㎡)	노선수(개소)	연장(m)	면적(㎡)	노선수(개소)	연장(m)	면적(㎡)	노선수(개소)	연장(m)	면적(㎡)
중로	25	10,261	227,931	3	1,671	25,680	19	8,268	198,144	3	322	4,107
소로	46	5,897	63,813	16	2,435	33,139	16	2,647	24,789	14	815	5,885

※ 상기사항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의 해당사항임

■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광로	1	12	50	주간선	1,750	안양천교	목1동 407-20	일반도로	-	서고시 422호 (94.12.27)	상수공급설비와 중복결정
기정	대로	1	78	10.8~147.5	주간선	7,530	신월동 835	여의도동 2-11	자동차 전용도로	-	서고시 2013-318 (2013.10.04.)	입체적 결정 (도로, 교통 광장, 공원 일부 중복)
기정	대로	2	36	30	주간선	3,663	진명여고 사거리	서울시계	일반도로	-	건고시 198 (71.04.07)	신월로
기정	대로	2	37	30	주간선	1,600	도림동	신길동	일반도로	-	서고시 422호 (94.12.27)	소로3-A와 중복결정
기정	대로	2	38	30~31	주간선	7,250	외발산동	고척동	일반도로	-	〃	철도와 중복결정
기정	대로	2	73	33~36	주간선	272	신정동 576-3	대 3-147	일반도로	-	〃	-
변경	대로	2	73	33~39 (3)	주간선	272	신정동 576-3	대 3-147	일반도로	-	〃	-
기정	대로	2	79	42	주간선	1,550	오목교	목동오거리	일반도로	-	〃	소로3-C와 중복결정
기정	대로	3	86	25~33.5	보조간선	6,950	양화동	광명시계	일반도로	-	〃	제방과 중복결정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3	146	28	보조간선	2,170	경인고속국도	강서구 목동 136-2	일반도로	-	〃	중앙로 (강서로)
기정	대로	3	147	25 ~28	보조간선	1,527	대 2-79	신정동 80-1	일반도로	-	〃	하수도와 중복결정
기정	대로	3	148	25~28	보조간선	2,080 (534)	신정동 576-3	신정동 406-1	일반도로	-	〃	-
기정	대로	3	149	25~28	보조간선	1,415	대 2-73	신정동 85-3	일반도로	-	〃	-
기정	대로	3	150	25	집산도로	383	대 3-169	대 3-148	일반도로	-	〃	-
기정	대로	3	151	28	보조간선	2,000	대 3-169	대 3-86	일반도로	-	〃	-
기정	대로	3	152	25~30	보조간선	2,000	대 3-169	대 3-86	일반도로	-	〃	-
기정	대로	3	153	25	집산 도로	150	대 3-151	대 3-152	일반도로	-	〃	-
기정	대로	3	154	25	보조간선	230	신정동 36-1	고척동 186-3	일반도로	-	서고시 422호 (94.12.27)	-
기정	대로	3	155	25	집산도로	150	대 3-151	대 3-152	일반도로	-	〃	-
기정	대로	3	156	25	집산도로	150	대 3-151	대 3-152	일반도로	-	〃	-
기정	대로	3	157	25	집산도로	150	대 3-151	대 3-152	일반도로	-	〃	-
기정	대로	3	158	25	집산도로	150	대 3-151	대 3-152	일반도로	-	〃	-
기정	대로	3	159	25	집산도로	150	대 3-151	대 3-152	일반도로	-	〃	-
기정	대로	3	160	25	집산도로	150	대 3-151	대 3-152	일반도로	-	〃	-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3	161	25	집산도로	150	대 3-148	대 3-150	일반도로	-	〃	-
기정	대로	3	163	25	집산도로	150	대 3-147	신정동 868	일반도로	-	〃	-
기정	대로	3	164	25	집산도로	150	대 3-147	대 3-149	일반도로	-	〃	-
기정	대로	3	165	25	집산도로	150	대 3-147	대 3-149	일반도로	-	〃	-
기정	대로	3	166	25	집산도로	150	대 3-147	대 3-149	일반도로	-	〃	-
기정	대로	3	167	25	집산도로	150	대 3-147	대 3-149	일반도로	-	〃	-
기정	대로	3	168	25	집산도로	150	대 3-147	대 3-149	일반도로	-	〃	-
기정	대로	3	169	25	주간선 도로	529	대 3-86 (구역계)	대 3-173 (대 3-173)	일반도로	-	〃	-
기정	대로	3	170	25	보조간선	30	대 3-149	목동중교	일반도로	-	〃	-
기정	대로	3	171	25	보조간선	880	구로구 고척동 41-1	강서구 신정동 171-2	일반도로	-	〃	-
기정	대로	3	172	25	보조간선	323	대 3-148	대 3-151	일반도로	-	〃	-
기정	대로	3	173	25	주간선	150	대 3-150	대 3-148	일반도로	-	서고시 422호 (94.12.27)	하수도와 중복결정
기정	대로	3	174	25	보조간선	894	-	-	일반도로	-	〃	-
기정	대로	3	205	25	집산도로	150	대로3-147	대로3-149	일반도로	-	〃	-
기정	대로	3	-	25	보조간선	330	대 3-152	목동 914-3	일반도로	-	양천구공고 225호 (04.07.05)	목동 운동장과 유수지 사잇길
기정	중로	1	A	25~34	집산도로	248	대 2-37	신정동 331-2	일반도로	-	서고시 422호 (94.12.27)	철도 중복결정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1	B	21~25	집산도로	960	대 3-86	신정동 329-6	일반도로	-	〃	-
기정	중로	1	C	22	보조간선	463	대 3-147	목동 809-1	일반도로	-	-	하수도, 공동구와 중복결정
기정	중로	1	280	20.5	집산도로	501	광 1-12	대 3-152	일반도로	-	〃	-
기정	중로	2	A	18	집산도로	399	광 1-12	대 3-152	일반도로	-	서고시 제2025-494호 (25.09.04)	-
기정	중로	2	263	15	집산도로	548	대 3-146	대 3-151	일반도로	-	〃	-
기정	중로	2	264	15	집산도로	255	대 3-146	대 3-151	일반도로	-	〃	-
기정	중로	2	265	15	집산도로	463	대 3-146	대 3-151	일반도로	-	〃	-
기정	중로	2	266	16.5	집산도로	498	대 3-146	대 3-151	일반도로	-	〃	목동서로8길 (3단지 폭 1.5m 확보예정)
기정	중로	2	268	18	집산도로	534	대 2-36	대 3-147	일반도로	-	〃	-
기정	중로	2	269	18	집산도로	365	중 2-271	대 2-36 대 3-147	일반도로	-	〃	-
기정	중로	2	270	18	집산도로	516	중 2-271	대 2-73	일반도로	-	〃	하수도 일부 중복결정
기정	중로	2	271	18	보조간선	350	대 3-149	신정동	일반도로	-	〃	〃
기정	중로	2	272	16.5	집산도로	443	대 2-73	중 2-276	일반도로	-	〃	-
변경	중로	2	272	18.0 (1.5)	집산도로	426	대 2-73	중 2-276	일반도로	-	〃	-
기정	중로	2	273	15	집산도로	370	중 2-276	대 3-154	일반도로	-	〃	-
기정	중로	2	274	18	집산도로	341	대 3-149	중 2-276	일반도로	-	서고시 422호 (94.12.27)	-
기정	중로	2	275	18	집산도로	341	대 3-149	중 2-276	일반도로	-	〃	-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2	276	18	집산도로	1,092	대 2-38	대 2-37	일반도로	-	〃	철도와 중복결정
변경	중로	2	276	18 (3)	집산 도로	1,092	대 2-38	대 2-37	일반도로	-	〃	철도와 중복결정
기정	중로	2	281	15	집산도로	326	신정동 76-22	신정동 80-1	일반도로	-	〃	-
기정	중로	2	282	15	집산도로	290	대 3-147	목동 408-115	일반도로	-	〃	-
기정	중로	2	C	15~27	특수도로	314	중 1-B	신정동 1278	보행자 전용도로	-	서고시 제2025-117호 (25.03.06)	철도와 중복결정
기정	중로	3	261	12	집산도로	150	대 3-150	대 3-151	일반도로	-	서고시 422호 (94.12.27)	-
기정	중로	3	262	12	집산도로	150	대 3-150	대 3-151	일반도로	-	〃	-
기정	중로	3	338	12	집산도로	22	대 3-171	신정동 330-13	일반도로	-	〃	-
기정	소로	1	1	10	특수도로	240	목동 917-2	목동 918-2	보행자 전용도로	-	〃	-
기정	소로	1	2	10	특수도로	250	목동 917-2	목동 918-2	보행자 전용도로	-	〃	-
기정	소로	1	4	10	특수도로	170	목동 924-1	목동 924-2	보행자 전용도로	-	〃	-
기정	소로	1	5	10	특수도로	170	목동 923-1	목동 924-1	보행자 전용도로	-	〃	-
기정	소로	1	6	10	특수도로	230	신정동 319-4	신정동 318	보행자 전용도로	-	〃	-
기정	소로	1	7	10	특수도로	230	신정동 320-3	신정동 319-4	보행자 전용도로	-	〃	-
기정	소로	1	8	10	특수도로	160	신정동 322-3	신정동 321-3	보행자 전용도로	-	〃	-
기정	소로	1	9	7	국지도로	7	신정동 312-3	신정동 1126	일반도로	-	〃	녹지와 중복결정
기정	소로	1	11	10	국지도로	40	대 3-147	신정동 318	일반도로	-	〃	-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1	12	10	특수도로	150	대 3-151	대 3-152	보행자 전용도로	-	〃	-
기정	소로	1	13	10	특수도로	70	목동 908-38	목동 908-35	보행자 전용도로	-	서고시 422호 (94.12.27)	-
기정	소로	1	14	10	특수도로	85	목동 908-35	대 3-157	보행자 전용도로	-	〃	-
기정	소로	1	15	10	특수도로	95	광 1-12	대 3-159	보행자 전용도로	-	〃	-
기정	소로	1	16	10	특수도로	170	대 3-168	대 2-73	보행자 전용도로	-	〃	-
기정	소로	1	17	11	특수도로	184	대로 3-173	대로 2-79 (오목로)	보행자 전용도로	-	〃	-
기정	소로	1	18	10~27	특수도로	184	대로 2-79 (오목로)	목동 408-178	보행자 전용도로	-	〃	-
기정	소로	2	2	8	특수도로	300	목동 900-8	목동 909-1	보행자 전용도로	-	〃	-
기정	소로	2	3	8	특수도로	300	신정동 324-3	신정동 323-1	보행자 전용도로	-	〃	-
기정	소로	2	5	8	특수도로	380	목동 908-1	목동 907-1	보행자 전용도로	-	〃	-
기정	소로	2	6	8	특수도로	260	신정동 323-1	신정동 322-3	보행자 전용도로	-	〃	-
기정	소로	2	9	8	국지도로	106	대 3-163	신정 318-10	일반도로	-	〃	-
기정	소로	2	10	8	국지도로	210	대 3-147	대 3-164	일반도로	-	〃	-
기정	소로	2	11	8	국지도로	104	대 3-147	대 3-163	일반도로	-	〃	-
기정	소로	2	12	8	국지도로	116	대 3-147	대 3-147	일반도로	-	〃	-
기정	소로	2	13	8	국지도로	92	대 3-149	대 3-167	일반도로	-	〃	-
기정	소로	2	14	8	국지도로	92	대 3-147	대 3-168	일반도로	-	〃	-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2	15	8	국지도로	180	대 3-152	대 3-155	일반도로	-	〃	-
기정	소로	2	16	8	국지도로	90	대 3-151	대 3-156	일반도로	-	〃	-
기정	소로	2	17	8	국지도로	20	대 3-152	목동 905-21	일반도로	-	〃	-
기정	소로	2	18	8	국지도로	90	대 3-167	대 3-147	일반도로	-	〃	-
기정	소로	2	19	8	국지도로	90	대 3-168	대 3-149	일반도로	-	서고시 422호 (94.12.27)	-
기정	소로	2	20	8	국지도로	217	대 3-146 목동 산 29-3	목동 231-217	일반도로	-	서고시 152 (82.04.03)	녹지와 중복결정
기정	소로	3	1	6	국지도로	85	신정동 296-7	신정동 296-5	일반도로	-	〃	-
기정	소로	3	4	4	국지도로	5	신정동 312-3 (중 2-271)	신정동 1050-16	일반도로	-	〃	녹지와 중복결정
기정	소로	3	5	4	국지도로	9	신정동 312-3 (중 2-271)	신정동 1050-15	일반도로	-	〃	녹지와 중복결정
기정	소로	3	8	6	국지도로	10	신정동 312-3 (중 2-271)	신정동 1123	일반도로	-	〃	녹지와 중복결정
기정	소로	3	10	6	국지도로	10	신정동 312-3 (중 2-271)	신정동 1123	일반도로	-	〃	녹지와 중복결정
기정	소로	3	15	6~10	국지도로	130	대 3-151	대 3-151	일반도로	-	서고시 422호 (94.12.27)	-
기정	소로	3	16	6~8	국지도로	120	대 3-152	대 3-152	일반도로	-	〃	-
기정	소로	3	17	6	특수도로	50	대 3-152	소 1-1	보행자 전용도로	-	〃	-
기정	소로	3	18	6	국지도로	136	대 3-151	대 3-151	일반도로	-	〃	-
기정	소로	3	25	6	특수도로	25	목동 905-1	목동 905-34	보행자 전용도로	-	〃	-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소로	3	26	6	특수도로	32	대 3-151	소로 3-18	보행자 전용도로	-	〃	-
기정	소로	3	27	6	특수도로	22	소로 3-18	소로1-1	보행자 전용도로	-	〃	-
기정	소로	3	A	5	특수도로	71	신정동 314-2	신정동 313-3	보행자 전용도로	-	서고시 제2025-121호 (25.03.13)	대로2-37과 중복결정, 녹지와 중복결정
기정	소로	3	B	6	국지도로	115	대로 2-38	신정동 310-3	일반도로	-	건설부고시 제475호 (82.12.29)	-
기정	소로	3	C	5	특수도로	110	목동 926-1	목동 927-1	보행자 전용도로	-	서고시 제2025-495호 (25.09.04)	대로2-79, 철도, 공동구, 공원과 중복결정

※ ( )는 목동11단지 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내 수치임

■ 도로 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대로 2-73	대로 2-73	· 도로 폭원 변경 - 폭원 : 33~36m → 33~39m	· 특별계획구역11 세부개발계획 수립에 따라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 11단지변 도로(3m)확폭
중로 2-272	중로 2-272	· 도로 폭원 및 연장 변경 - 폭원 : 16.5m → 18m - 연장 : 443m → 426m	· 특별계획구역11 세부개발계획 수립에 따라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 11단지변 도로(1.5m)확폭 및 연접도로 도로 확폭에 따른 도로 연장길이 변경
중로 2-276	중로 2-276	· 도로 폭원 변경 - 폭원 : 18m → 18m	· 특별계획구역11 세부개발계획 수립에 따라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 11단지변 도로(3m)확폭

② 주차장 : 변경없음

③ 철도 : 변경없음

2) 공간시설

① 공원 : 변경

■ 공원 총괄표(기정)

구분	개소	면적(㎡)
합계	19	193,418.9
근린공원	7	111,104.4
문화공원	2	37,953.4
어린이공원	7	27,480.7
소공원	3	16,880.4

■ 공원 총괄표(변경)

구분	개소	면적(㎡)
합 계	20	210,431.7
근린공원	8	122,645.0
문화공원	2	37,953.4
어린이공원	6	24,982.2
소공원	4	24,851.1

■ 공원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기정	①	제1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	목동 901-2	2,299.5	-	2,299.5	서고시 422호 (94.12.27)	1단지
기정	②	제2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	목동 902-2	4,211.4	-	4,211.4	〃	2단지
기정	③	제3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	목동 903-2	2,985.4	-	2,985.4	〃	3단지
기정	⑨	목동8단지 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	신정동 314-3 일대	7,884.5	-	7,884.5	서고시 제2025-121호 (25.03.13)	8단지
기정	⑩	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	신정동 312	5,707.2	-	5,707.2	서고시 제2025-419호 (25.07.31)	9단지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폐지	⑬	제13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	신정동 325-2	2,498.5	감) 2,498.5	-	서고시 422호 (94.12.27)	11단지
기정	Ⓓ	목동7단지 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	목동927-1	1,894.2	-	1,894.2	서고시 제2025-495호 (25.09.04)	공동구와 중복결정
기정	A	공원	소공원	신정동 326	8,435.0	-	8,435.0	서고시 제2025-123호 (25.03.13)	12단지
기정	B	공원	소공원	신정동 327	5,000.0	-	5,000.0	서고시 제2025-122호 (25.03.13)	13단지
기정	소-①	5단지 소공원	소공원	목동 912	3,445.4	-	3,445.4	서고시 제2025-494호 (25.09.04)	5단지
기정	근-①	신트리공원	근린공원	신정동 310-7	16,409.3	-	16,409.3	서고시 422호 (94.12.27)	-
기정	근-②	목마공원	근린공원	목동 910	12,816.8	-	12,816.8	〃	-
기정	근-③	오목공원	근린공원	목동 921	21,470.4	-	21,470.4	〃	-
기정	근-④	양천공원	근린공원	신정동 320	33,797.9	-	33,797.9	〃	-
기정	근-A	목동14단지 근린공원	근린공원	신정동 331	7,000.0	-	7,000.0	서고시 제2025-117호 (25.03.06)	14단지
기정	근-B	10단지 근린공원	근린공원	신정동 311	9,510.0	-	9,510.0	서고시 제2025-420호 (25.07.31)	10단지
기정	근-Ⓒ	4단지 근린공원	근린공원	목동 904	10,100.0	-	10,100.0	서고시 제2025-431호 (25.08.07)	4단지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기정	문-①	파리공원	문화공원	목동 906	29,619.3	-	29,619.3	서고시 422호 (94.12.27)	-
신설	근-⑤	11단지 근린공원	근린공원	신정동 325	-	증) 11,540.6	11,540.6	-	11단지
신설	소-②	11단지 소공원	소공원	신정동 325-1	-	증) 7,970.7	7,970.7	-	11단지

■ 공원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근린-⑤	11단지 근린공원	· 근린공원 신설 - 증) 11,540.6㎡	· 특별계획구역11 세부개발계획 수립에 따른 근린공원 신설
소-②	11단지 소공원	· 소공원 신설 - 증) 7,970.7㎡	· 특별계획구역11 세부개발계획 수립에 따른 소공원 신설
⑬	제13어린이공원	· 공원 폐지 - 감) 2,498.5㎡	· 특별계획구역11 세부개발계획 수립에 따른 어린이공원 폐지

② 녹지 : 변경

■ 녹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기정	①	3단지 서측녹지	경관녹지	목동 903-7,8, 10~17	1,280.0	-	1,280.0	서고시 422호 (94.12.27)	도로와 중복결정
기정	②	4단지 연변녹지	경관녹지	목동 904-2	8,910.9	-	8,910.9	〃	4단지
기정	③	4단지 서측녹지	경관녹지	목동 904-5,6,7, 20~24	1,970.4	-	1,970.4	〃	-
기정	④	6단지 연변녹지	경관녹지	목동 911-8	4,987.7	-	4,987.7	〃	-
기정	⑤	5단지 연변녹지	경관녹지	목동 913-2	8,345.3	-	8,345.3	〃	-
기정	⑥	목동교 서측IC녹지	완충녹지	목동 914-1	6,498.7	-	6,498.7	〃	-
기정	⑦	목동교 서측IC녹지	완충녹지	목동 911-7	7,207.9	-	7,207.9	〃	-
기정	⑧	916-1 도 남측녹지	경관녹지	목동 916-2	1,891.6	-	1,891.6	〃	-
기정	⑫	진명여고변 녹지	경관녹지	목동 927-11,12,13,14	6,622.8	-	6,622.8	〃	-
기정	⑬	8단지 연변녹지	연결녹지	신정동 314-2,3	8,606.5	-	8,606.5	〃	8단지 서측, 소로 3-A와 중복결정
기정	⑭	9단지 연변녹지	경관녹지	신정동 313-3	6,181.8	-	6,181.8	〃	-
기정	⑮	9, 10단지 북측녹지	경관녹지	신정동 312-4,6,7,8,9,10,11,12,13,14,15,16,17, 313-5,7	2,726.5	-	2,726.5	〃	도로와 중복결정
기정	⑰	양명초등 북측녹지	경관녹지	신정동 310-5	980.6	-	980.6	〃	-
폐지	⑱	11단지 연변녹지	경관녹지	신정동 325-4	10,815.9	감) 10,815.9	-	〃	-
폐지	⑲	11단지 연변녹지	경관녹지	신정동 325-9	7,896.9	감) 7,896.9	-	〃	-
기정	⑳	11단지 남측녹지	경관녹지	신정동 325-13,14	3,031.9	-	3,031.9	〃	-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기정	㉒	13단지 연변녹지	연결녹지	신정동 328-2	6,654.3	-	6,654.3	서고시 422호 (94.12.27)	-
기정	㉓	14단지 연변녹지	경관녹지	신정동 329-1	6,636.1	-	6,636.1	〃	-
기정	㉔	14단지 연변녹지	경관녹지	신정동 330-6	4,629.9	-	4,629.9	〃	-
기정	㉕	목동중학교 서측녹지	경관녹지	신정동 319-10	102.4	-	102.4	〃	-
기정	㉖	하수도변 연변녹지	경관녹지	신정동 330-16,23	411.5	-	411.5	〃	-
기정	㉗	하수도변 연변녹지	경관녹지	신정동 330-17	341.9	-	341.9	〃	-
기정	ⓐ	6단지 동측녹지	경관녹지	목동 911 일대	2,812.3	-	2,812.3	서고시 제2024-401호 (24.08.16)	-
기정	ⓑ	10단지 경관녹지	경관녹지	신정동 310-1일대	1,665.3	-	1,665.3	서고시 제2025-420호 (25.07.31)	-
기정	Ⓐ	4단지 동측녹지	연결녹지	목동 904	2,236.5	-	2,236.5	서고시 제2025-431호 (25.08.07)	4단지
기정	Ⓒ	7단지 서측녹지	연결녹지	목동925 서측	3,953.2	-	3,953.2	서고시 제2025-495호 (25.09.04)	7단지 서측

■ 녹지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⑱	11단지 연변녹지	·경관녹지 폐지 - 감) 10,815.9㎡	·특별계획구역11 세부개발계획 수립에 따른 경관녹지 폐지
⑲	11단지 연변녹지	·경관녹지 폐지 - 감) 7,896.9㎡	·특별계획구역11 세부개발계획 수립에 따른 경관녹지 폐지

③ 공공공지 : 변경없음

3) 유통 및 공급시설 : 변경없음

4) 공공·문화체육시설 : 변경

① 운동장 : 변경없음

② 체육시설 : 변경없음

③ 공공청사 : 변경

■ 공공청사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기정	①	공공청사	의약품 안전청	목동900-2	657.0	-	657.0	서고시 422호 (94.12.27)	-
기정	②	공공청사	소방서	목동900-11	4,327.2	-	4,327.2	〃	-
기정	③	공공청사	의약품 안전청	목동900-12	8,313.0	-	8,313.0	〃	-
기정	④	공공청사	목4동 주민센터	목동904-19	720.0	-	720.0	〃	-
기정	⑤	공공청사	남부지방 법원, 검찰청	신정동313-1	29,668.9	-	29,668.9	〃	-
기정	⑥	공공청사	신정2동 치안센터, 주민센터	신정동329-9	660.0	-	660.0	〃	-
기정	⑦	공공청사	구민회관	신정동 322	4,685.7	-	4,685.7	〃	-
기정	⑧	공공청사	경찰서	신정동 321, 321-2	6,862.2	-	6,862.2	〃	-
기정	⑨	공공청사	구청	신정동 321-4	7,461.4	-	7,461.4	〃	-
기정	⑩	공공청사	동파출소	목동 907-3	760.1	-	760.1	〃	-
기정	⑪	공공청사	출입국 관리사무소	신정동 319-2	4,121.2	-	4,121.2	〃	-
기정	⑫	공공청사	세무서	신정동 319-12	4,067.9	-	4,067.9	〃	-
기정	⑬	공공청사	구의회	신정동 321-1	1,947.8	-	1,947.8	〃	-
기정	⑭	공공청사	수도 사업소	신정동 319-15	1,954.5	-	1,954.5	〃	-
기정	⑮	공공청사	다목적 회관	신정동 322-11	2,958.5	-	2,958.5	2006.04.20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기정	⑯	공공청사	동파출소	신정동 322-9	1,008.5	-	1,008.5	서고시 422호 (94.12.27)	-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기정	⑰	공공청사	동파출소	신정동 324-5	656.2	-	656.2	〃	-
기정	⑱	공공청사	동사무소	목동 919-3, 919-5	1,554.7	-	1,554.7	양천구고시 제2019-43호 (2019.06.13.)	-
기정	⑲	공공청사	소방서	목동 919-6	4,459.9	-	4,459.9	서고시 422호 (94.12.27)	-
기정	⑳	공공청사	-	신정동 322-15	1,360.1	-	1,360.1	〃	-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기정	㉑	공공청사	보건소	신정동 321-5	2,249.5	-	2,249.5	서고시 422호 (94.12.27)	-
기정	㉒	공공청사	-	목동 908-32	1,013.7	-	1,013.7	2006.04.20	-
기정	ⓐ	공공청사	주민센터 및 복지시설	목동911 일대	1,600.0	-	1,600.0	서고시 제2024-401호 (24.8.16)	-
기정	ⓑ	공공청사	-	목동 927-10일대	-	증)12,516.5	12,516.5	-	하수도와 중복결정
신설	ⓒ	서부여성 발전센터	공공청사	신정동 325일대	-	증) 1,700.0	1,700.0	-	-

■ 건축범위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건폐율	용적률	최고높이	비 고
기정	①	60% 이하	200% 이하	12층 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기정	②	〃	〃	〃	
기정	③	〃	〃	〃	〃
기정	④	〃	〃	〃	〃
기정	⑤	50% 이하	250% 이하	-	제3종일반주거지역
기정	⑥	50% 이하	250% 이하	-	〃

구분	도면 표시번호	건폐율	용적률	최고높이	비 고
기정	⑦	60% 이하	기준용적률 : 500% 이하 허용용적률 : 800% 이하	80m 이하	일반상업지역
기정	⑧	〃	〃	〃	〃
기정	⑨	〃	〃	〃	〃
기정	⑩	〃	〃	100m 이하	〃
기정	⑪	〃	〃	80m 이하	〃
기정	⑫	〃	〃	〃	〃
기정	⑬	〃	〃	〃	〃
기정	⑭	〃	〃	〃	
기정	⑮	〃	〃	〃	〃
기정	⑯	〃	〃	〃	〃
기정	⑰	〃	〃	〃	〃
기정	⑱	60% 이하	기준용적률 : 500% 이하 허용용적률 : 800% 이하	120m 이하	일반상업지역
기정	⑲	〃	〃	〃	〃
기정	⑳	〃	〃	80m 이하	〃
기정	㉑	〃	〃	〃	〃
기정	㉒	〃	〃	100m 이하	〃
기정	㉓	50% 이하	250% 이하	60m	제3종일반주거지역
기정	ⓐ	〃	〃	-	〃
기정	ⓑ	〃	〃	-	〃
신설	ⓒ	50% 이하	250% 이하	-	제3종일반주거지역

■ 공공청사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서부여성 발전센터	·공공청사(서부여성발전센터) 신설 - 위치 : 신정동 325 일대 - 면적 : 1,700.0㎡ ·건축범위 신설 - 건폐율 50%이하 - 용적률 250%이하 - 최고높이 -	·특별계획구역11 세부개발계획 수립에 따른 공공청사 신설 ·서울시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목동동로변 공공청사 신설

■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분	시설명	위치		토지면적 (㎡)	기정	변경	변경 후	결정일	비 고
		지번	입체공간						
기정	공공 청사	신정동 322-11	지상1층~5층	2,958.5	도시계획시설	-	도시계획시설	2006.04.20	-
			잔여층		비도시계획시설	-	비도시계획시설		

④ 문화시설 : 변경없음

⑤ 학교 : 변경없음

⑥ 사회복지시설 : 변경

■사회복지시설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기정	①	어린이집 (3단지)	사회복지 시설	목동 903-3	1,012.4	-	1,012.4	서고시 422호 (94.12.27)	-
기정	③	노인종합 복지관 (11단지)	사회복지 시설	신정동 325-3	2,141.7	-	2,141.7	〃	사회복지시설 위치 변경 (데이케어센터, 실버케어센터)
변경	③			신정동 325 일대					
기정	⑤	남부준법 지원센터, 출입국 관리사무소 등	사회복지 시설	신정동 330-11	3,353.8	-	3,353.8	〃	-
기정	⑥	어린이집, 여성교실	사회복지 시설	신정동 330-13	1,580.7	-	1,580.7	〃	-
기정	⑦	청소년회관	사회복지 시설	목동 918	5,473.8	-	5,473.8	〃	-
기정	⑧	장애인 복지시설	사회복지 시설	신정동 319-13	1,987.0	-	1,987.0	〃	-
기정	A	14단지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 시설	신정동 331	2,000.0	-	2,000.0	서고시 제2025-117호 (25.03.06)	-
기정	B	어린이집 (10단지)	사회복지 시설	신정동 311	718.3	-	718.3	서고시 제2025-420호 (25.07.31)	-
기정	Ⓒ	사회복지시설 (4단지)	사회복지 시설	목동 904	2,000.0	-	2000.0	서고시 제2025-431호 (25.08.07)	-

■ 건축범위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건폐율	용적률	최고높이	비 고
기정	①	60% 이하	200% 이하	12층 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기정	③	60% 이하	200% 이하	12층 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변경	③	50% 이하	250% 이하	-	제3종일반주거지역
기정	⑤	60% 이하	200% 이하	12층 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구분	도면 표시번호	건폐율	용적률	최고높이	비 고
기정	⑥	〃	〃	〃	〃
기정	⑦	〃	기준용적률 : 500% 이하 허용용적률 : 800% 이하	120m 이하	일반상업지역
기정	⑧	〃	〃	80m 이하	〃
기정	A	50% 이하	250% 이하	-	제3종일반주거지역
기정	B	〃	〃	5층 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10단지)
기정	Ⓒ	〃	〃	-	제3종일반주거지역(4단지)

■ 사회복지시설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③	노인종합 복지관	·사회복지시설 위치 변경 ·건축범위 변경 - 건폐율 60%이하 → 건폐율 50%이하 - 용적률 200%이하 → 용적률 250%이하 - 최고높이 12층 이하 → 최고높이 -	·특별계획구역11 세부개발계획 수립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데이케어센터, 실버케어센터) 위치 및 건축범위 변경

5) 방재시설 : 변경없음

6) 보건위생시설 : 변경없음

7) 환경기초시설 : 변경없음

3. 건축계획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1) 가구계획 : 변경

① 주거지역(공동주택용지) 및 기타지역 : 변경

■ 가구 결정(변경)조서 : 변경

구 분	가구번호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가구 주거지역 (공동주택용지) 및 기타지역	A1	96,186.0	-	96,186.0	•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에 따른 가구 계획 수립
	A2	177,564.6	-	177,564.6	
	A3	171,688.4	-	171,688.4	
	A4	163,149.1	-	163,149.1	
	A5	122,825.3	-	122,825.3	
	A6	114,644.0	-	114,644.0	
	A7	78,869.3	-	78,869.3	
	A8	181,713.1	-	181,713.1	
	A9	146,916.7	-	146,916.7	
	A10	104,961.0	-	104,961.0	
	A11	133,205.9	-	133,205.9	
	A12	43,030.4	-	43,030.4	
	A13	65,872.3	-	65,872.3	
	A14	89,260.9	-	89,260.9	
	A15	104,335.1	-	104,335.1	
	A16	113,122.2	-	113,122.2	
	A17	144,010.4	-	144,010.4	
	A18	38,862.1	-	38,862.1	
	A19	80,011.8	감) 1,711.6	78,300.2	
	A20	79,831.2	-	79,831.2	
	A21	123,669.8	-	123,669.8	
	A22	110,639.8	-	110,639.8	
	A23	58,344.7	-	58,344.7	
	A24	3,878.3	-	3,878.3	
	A25	76,081.8	-	76,081.8	
	A26	94,128.7	-	94,128.7	
	A27	135,005.9	-	135,005.9	
	A28	17,593.8	-	17,593.8	

■ 가구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가구계획	·A19 가구면적 변경 - 감) 1,711.6㎡	·특별계획구역11 세부개발계획 수립에 따른 가구면적 변경

② 중심지역(목동중심지구) : 변경없음

2) 획지계획 : 변경

① 주거지역(공동주택용지) 및 기타지역 : 변경

■ 획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획지번호	가구번호	지번	면적(㎡)	계획내용	비고
기정	A1-①	A1	목동 900-4	3,302.8	-	-
기정	A1-②	〃	목동 900-2	657.0	-	공공청사
기정	A1-③	〃	목동 900-12	8,313.0	-	공공청사
기정	A1-④	〃	목동 900-11	4,327.2	-	공공청사
기정	A1-⑤	〃	목동 900	77,258.5	-	전기공급설비
기정	-	〃	목동 900-16	455.9	자율적공동개발	-
기정	-	〃	목동 900-17	1,169.5	자율적공동개발	-
기정	A2-①	A2	목동 901	163,197.4	특별계획구역1	1단지
기정	A3-①	A3	목동 902	155,041.1	특별계획구역2	2단지
기정	A4-①	A4	목동 903	146,538.1	특별계획구역3	3단지
기정	A5-①	A5	목동 904	97,278.0	특별계획구역4	4단지
기정	A6-①	A6	목동 913 일대	95,325.3	특별계획구역5	5단지
기정	A7-①	A7	목동 912 일대	73,001.9	특별계획구역5	5단지
기정	A8-①	A8	목동 911 일대	90,074.6	특별계획구역6	6단지
기정	A8-②	A8	목동 911 일대	1,600.0	특별계획구역6	6단지 공공청사
기정	A11-①	A11	목동 925	107,093.0	특별계획구역7	7단지
기정	A11-②	A11	목동 925-3	21,536.3	특별계획구역7	7단지

구분	획지번호	가구번호	지번	면적(㎡)	계획내용	비고
기정	A12-①	A12	목동 926	18,670.5	특별계획구역7	7단지
기정	A12-②	A12	목동 926-2	13,895.1	특별계획구역7	7단지
기정	A13-②	〃	목동 927-3	800.3	-	종교시설
기정	A13-③	〃	목동 927-4	661.2	-	종교시설
기정	A14-①	A14	신정동 314, 314-5	70,493.4	특별계획구역8	8단지
기정	A14-②	〃	신정동 314-4	661.9	-	종교시설
기정	A15-①	A15	신정동 313	68,484.4	특별계획구역9	9단지
기정	A16-①	A16	신정동 312	94,796.3	특별계획구역9	9단지
기정	A17-①	A17	신정동 311	133,051.4	특별계획구역10	10단지
기정	A18-①	A18	신정동 310, 310-2	32,320.6	특별계획구역10	10단지
기정	A19-①	A19	신정동 325	64,555.7	특별계획구역11	11단지
변경	A19-①	A19	신정동 325 일대	62,917.9	특별계획구역11	11단지
신설	A19-②	A19	신정동 325 일대	2,141.7	특별계획구역11	11단지 사회복지시설
신설	A19-③	A19	신정동 325 일대	1,700.0	특별계획구역11	11단지 공공청사
기정	A20-①	A20	신정동 325-1	39,491.2	특별계획구역11	11단지
변경	A20-①	A20	신정동 325-1 일대	39,417.4	특별계획구역11	11단지
기정	A21-①	A21	신정동 326	114,234.8	특별계획구역12	12단지
기정	A21-②	A21	신정동 326	1,000.0	특별계획구역12	유치원
기정	A22-①	A22	신정동 327	105,639.8	특별계획구역13	13단지
기정	A23-①	A23	신정동 328	50,698.4	특별계획구역13	13단지
기정	A24-①	A24	신정동 329-8	1,320.0	-	종교시설
기정	A24-②	〃	신정동 329-10	1,238.3	-	근생시설
기정	A24-③	〃	신정동 329-12	660.0	-	종교시설
기정	A25-①	A25	신정동 329 일원	69,445.7	특별계획구역14	14단지
기정	A26-①	A26	신정동 332 일원	36,512.7	특별계획구역14	14단지

구분	획지번호	가구번호	지번	면적(㎡)	계획내용	비고
기정	A26-②	〃	신정동 331	41,680.4	특별계획구역14	14단지
기정	A26-③	〃	신정동 331	2,000.0	특별계획구역14	14단지 사회복지시설
기정	-	〃	신정동 332-4	310.0	자율적공동개발	-
기정	-	〃	신정동 332-5	313.3	자율적공동개발	-
기정	-	〃	신정동 332-6	318.6	자율적공동개발	-
기정	-	〃	신정동 332-7	308.6	자율적공동개발	-
기정	A27-①	A27	신정동 330	61,084.7	특별계획구역14	14단지

■ 획지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획지계획	· A19-①, A20-① 획지면적 변경	· 특별계획구역11 세부개발계획 수립에 따른 획지면적 변경
	· A19-②, A19-③ 획지 신설	· 특별계획구역11 세부개발계획 수립에 따른 획지(사회복지시설, 공공청사) 신설

② 중심지역(목동중심지구) : 변경없음

나. 건축물 용도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다. 건축물 건폐율 · 용적률 · 높이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1) 건폐율 계획 : 변경없음

2) 용적률 계획 : 변경

① 주거지역(공동주택용지) 및 기타지역 : 변경

■ 용적률계획 : 기정

구분		용적률(%)			비고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 법적상한용적률	
주거지역 (공동주택부지)	제2종일반주거지역	190% 이하	200% 이하	250% 이하	-
	제3종일반주거지역	210% 이하	230% 이하	250% 이하	-
	제3종일반주거지역	210% 이하	230% 이하	246.96% 이하 / 299.87% 이하	6단지
	제3종일반주거지역	210% 이하	230% 이하	250.00% 이하 / 300.00% 이하	4, 5, 7, 8, 9, 10, 12, 13, 14단지
	제3종일반주거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름			12단지 유치원
	준주거지역	210% 이하	230% 이하	400.00% 이하 / 400.00% 이하	7단지
기타지역	준공업지역 (목동 900-4)	300% 이하	400% 이하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름 - 허용용적률×(1+1.3×가중치 ×α토지+0.7×α건축물)	서고시 제2020-239호 (20.06.11)
	제2종일반주거지역	190% 이하	200% 이하	법적용적률의 2배 이하	-
	제3종일반주거지역	210% 이하	230% 이하	법적용적률의 2배 이하	-

※ 1) 주거지역(공동주택부지)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름(향후, 기본계획변경 시 이에 따름)
· 상한용적률 : 허용용적률에 시행자가 기반(공공)시설을 조성 후 제공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부여되는 용적률을 합산하여 산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세부개발계획) 수립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의한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신청시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할 수 있음
· 순부담 면적 = 새로 설치하는 기반시설면적 - 새로 설치하는 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면적 - 대지 내 용도폐지 되는 기존 기반시설(국공유지면적)
·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기준(서울시, 2025.03.) 개정에 따른 상한용적률 산식 적용(향후 운영기준 변경 시 이에 따름)
- 상한용적률 = 허용(기준)용적률×(1+1.3×가중치×α토지+0.7~1.0×α건축물+0.7×α현금)
2) 기타지역의 상한용적률은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제7조 [허용용적률×(1+1.3×가중치×α토지+(1.0~1.2)×α건축물)이내] 적용
3) 기반시설(학교, 공공청사, 문화시설 등)의 용적률은 각 시설별 건축범위 결정조서에 따르며, 특별계획구역 내 기반시설은 각 시설별 건축범위 결정조서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결정토록 함

■ 용적률계획 : 변경

구분		용적률(%)			비고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 법적상한용적률	
주거지역 (공동주택부지)	제2종일반주거지역	190% 이하	200% 이하	250% 이하	-
	제3종일반주거지역	210% 이하	230% 이하	250% 이하	-
	제3종일반주거지역	210% 이하	230% 이하	246.96% 이하 / 299.87% 이하	6단지
	제3종일반주거지역	210% 이하	230% 이하	250.00% 이하 / 300.00% 이하	4, 5, 7, 8, 9, 10, 11, 12, 13, 14단지
	제3종일반주거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름			12단지 유치원
	준주거지역	210% 이하	230% 이하	400.00% 이하 / 400.00% 이하	7단지
기타지역	준공업지역 (목동 900-4)	300% 이하	400% 이하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름 - 허용용적률×(1+1.3×가중치 ×α토지+0.7×α건축물)	서고시 제2020-239호 (20.06.11)
	제2종일반주거지역	190% 이하	200% 이하	법적용적률의 2배 이하	-
	제3종일반주거지역	210% 이하	230% 이하	법적용적률의 2배 이하	-

※ 1) 주거지역(공동주택부지)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름(향후, 기본계획변경 시 이에 따름)
· 상한용적률 : 허용용적률에 시행자가 기반(공공)시설을 조성 후 제공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부여되는 용적률을 합산하여 산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세부개발계획) 수립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의한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신청시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할 수 있음
· 순부담 면적 = 새로 설치하는 기반시설면적 - 새로 설치하는 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면적 - 대지 내 용도폐지 되는 기존 기반시설(국공유지면적)
·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기준(서울시, 2025.03.) 개정에 따른 상한용적률 산식 적용(향후 운영기준 변경 시 이에 따름)
- 상한용적률 = 허용(기준)용적률×(1+1.3×가중치×α토지+0.7~1.0×α건축물+0.7×α현금)
2) 기타지역의 상한용적률은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제7조 [허용용적률×(1+1.3×가중치×α토지+(1.0~1.2)×α건축물)이내] 적용
3) 기반시설(학교, 공공청사, 문화시설 등)의 용적률은 각 시설별 건축범위 결정조서에 따르며, 특별계획구역 내 기반시설은 각 시설별 건축범위 결정조서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결정토록 함

② 중심지역(목동중심지구) : 변경없음

3) 높이계획 : 변경

① 주거지역(공동주택용지) 및 기타지역 : 변경

■ 높이계획 : 기정

구분	적용지역		계획기준	비고
최고 높이 (층수)	제2종일반주거지역	공동주택용지	25층 이하	-
	제3종일반주거지역	공동주택용지	35층 이하	-
	제3종일반주거지역	공동주택용지	40층 이하	10단지
	제3종일반주거지역	공동주택용지	43층 이하	12단지
	제3종일반주거지역	공동주택용지	49층 이하	4, 5, 6, 7, 8, 9, 13, 14단지
	준주거지역	공동주택용지	49층 이하	7단지
	제3종일반주거지역	유치원	5층 이하	12단지

■ 높이계획 : 변경

구분	적용지역		계획기준	비고
최고 높이 (층수)	제2종일반주거지역	공동주택용지	25층 이하	-
	제3종일반주거지역	공동주택용지	35층 이하	-
	제3종일반주거지역	공동주택용지	40층 이하	10단지
	제3종일반주거지역	공동주택용지	41층 이하	11단지
	제3종일반주거지역	공동주택용지	43층 이하	12단지
	제3종일반주거지역	공동주택용지	49층 이하	4, 5, 6, 7, 8, 9, 13, 14단지
	준주거지역	공동주택용지	49층 이하	7단지
	제3종일반주거지역	유치원	5층 이하	12단지

■ 기타지역 : 변경없음

② 중심지역(목동중심지구) : 변경없음

라. 건축물 배치·형태 및 경관계획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마.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1) 특별계획구역 결정조서 : 변경없음

① 주거지역(공동주택용지) 및 기타지역 :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위치	면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특별계획구역1	목동 901 일대	165,496.9	-	165,496.9	목동1단지
기정	특별계획구역2	목동 902 일대	159,252.5	-	159,252.5	목동2단지
기정	특별계획구역3	목동 903 일대	150,543.5	-	150,543.5	목동3단지
기정	특별계획구역4	목동 904 일대	122,825.3	-	122,825.3	목동4단지
기정	특별계획구역5	목동 912 일대	204,003.2	-	204,003.2	목동5단지
기정	특별계획구역6	목동 911 일대	102,424.6	-	102,424.6	목동6단지
기정	특별계획구역7	목동 925 일대	229,578.9	-	229,578.9	목동7단지
기정	특별계획구역8	신정동 314 일대	88,842.3	-	88,842.3	목동8단지
기정	특별계획구역9	신정동 312 일대	183,057.8	-	183,057.8	목동9단지
기정	특별계획구역10	신정동 310 일대	194,686.2	-	194,686.2	목동10단지
기정	특별계획구역11	신정동 325 일대	128,668.4	-	128,668.4	목동11단지
기정	특별계획구역12	신정동 326 일대	127,339.5	-	127,339.5	목동12단지
기정	특별계획구역13	신정동 327 일대	178,919.9	-	178,919.9	목동13단지
기정	특별계획구역14	신정동 329 일대	250,722.1	-	250,722.1	목동14단지

② 중심지역(목동중심지구) : 변경없음

2)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 변경

① 주거지역(공동주택용지) 및 기타지역 : 변경

■ 특별계획구역1~10, 12~14단지 : 변경없음

■ 특별계획구역11 – 목동11단지 : 변경

<table>
<tr><th rowspan="2">구분</th><th colspan="6">계획지침</th><th rowspan="2">비고</th></tr>
<tr><th colspan="3">기정</th><th colspan="3">변경</th></tr>
<tr><td>위치</td><td colspan="3">·양천구 신정동 325 일대</td><td colspan="3">좌동</td><td>-</td></tr>
<tr><td>특별계획구역 면적</td><td colspan="3">·128,668.4㎡</td><td colspan="3">좌동</td><td>-</td></tr>
<tr><td rowspan="2">획지면적</td><td rowspan="2">·98,432.0㎡
(76.5%)</td><td>획지1</td><td>69,373.5㎡ (53.9%)</td><td rowspan="2">·102,335.3㎡
(79.5%)</td><td>획지1</td><td>62,917.9㎡
(48.9%)</td><td rowspan="2">공동주택 및
부대복리
시설</td></tr>
<tr><td>획지2</td><td>29,058.5㎡ (22.6%)</td><td>획지2</td><td>39,417.4㎡
(30.6%)</td></tr>
<tr><td rowspan="5">기반시설
면적</td><td rowspan="5">·30,236.4㎡
(23.5%)</td><td>사회복지시설</td><td>2,129.5㎡
(1.7%)</td><td rowspan="5">·26,333.1㎡
(20.5%)</td><td>근린공원</td><td>11,540.6㎡
(9.0%)</td><td rowspan="5">-</td></tr>
<tr><td>근린공원</td><td>18,329.6㎡
(14.2%)</td><td>소공원</td><td>7,970.7㎡
(6.2%)</td></tr>
<tr><td>소공원</td><td>6,765.0㎡
(5.3%)</td><td>도로</td><td>2,980.1㎡
(2.3%)</td></tr>
<tr><td>도로</td><td>3,012.3㎡
(2.3%)</td><td>사회복지시설</td><td>2,141.7㎡
(1.7%)</td></tr>
<tr><td></td><td></td><td>공공청사</td><td>1,700.0㎡
(1.3%)</td></tr>
<tr><td>용도지역</td><td colspan="3">제3종일반주거지역(획지)
※ 기반시설의 경우, 기존 용도지역 유지</td><td colspan="3">제1종일반주거지역(근린공원, 소공원)
제3종일반주거지역(획지, 사회복지시설, 공공청사)
※ 기반시설의 경우, 기존 용도지역 유지</td><td>-</td></tr>
<tr><td>기반시설
설치</td><td colspan="3">도로폭원 확장
- 목동동로 : 42m(구역내 3m 확폭)
- 목동로3길 : 18m(구역내 획지1 3m 확폭)
- 목동동로2길 : 18m(구역내 획지1 1.5m 확폭)
근린공원 및 소공원 신설
사회복지시설 신설</td><td colspan="3">도로폭원 확장
- 목동동로 : 42m(구역내 3m확폭)
- 목동로3길 : 18m(구역내 획지1 3m확폭)
- 목동동로2길 : 18m(구역내 획지1 1.5m 확폭)
근린공원 및 소공원 위치 및 면적 변경
사회복지시설 위치 변경
공공청사 신설</td><td>-</td></tr>
</table>

구분			계획지침		비고
			기정	변경	
건축물의 용도·밀도	용도	불허용도 A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용도제한 규정 준용 · 이외 불허용도는 별도의 정비계획(세부개발계획) 수립시 결정	좌동	-
		지정용도 a	[커뮤니티활성화용도 배치구간 1~2층]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총포판매소, 장의사, 다중생활시설,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는 제외) · 주택법에 의한 복리시설 중 노유자시설, 작은도서관(독서실), 지식산업센터, 사회복지관, 공동작업장, 주민공동시설	좌동	[전층]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건폐율		· 50% 이하	좌동	-
	용적률		· 기준/허용/상한용적률 : 210%/230%/250% 이하	· 기준/허용/상한/법적상한용적률 : 210%/230%/249.80%/300% 이하	-
	높이		· 최고높이 : 35층 이하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관련계획을 고려하여 3차원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위원회 심의에서 변경 가능 · 저층배치구간(공공보행통로변 폭 5m) - 아파트 : 7층 이하 / 커뮤니티활성화용도 : 2층 이하 · 중저층배치구간(목동동로변 폭 72m / 목동로3길변 폭 26m) - 15층 이하 - 목동로3길에 연접하여 건축하는 아파트의 첫 주동은 7층 이하	· 최고높이 : 41층 이하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관련계획을 고려하여 3차원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위원회 심의에서 변경 가능 · 저층배치구간(공공보행통로변 폭 5m) - 아파트 : 7층 이하 / 커뮤니티활성화용도 : 2층 이하 · 중저층배치구간(목동동로변 폭 44m / 목동로3길변 폭26m) - 15층 이하 - 목동로3길에 연접하여 건축하는 아파트의 첫 주동은 7층 이하	-
배치	저층부 건축지정선 (2층 이하)		· 목동로3길(커뮤니티활성화용도 배치구간) : 획지선으로부터 4m	좌동	
	건축 한계선		· 목동로3길변(3층 이하 공동주택) : 획지선으로부터 8m · 중앙로, 목동동로2길, 소공원, 목동남로, 획지2의 북측경계부변 : 획지선으로부터 6m	· 목동로3길변(3층 이하 공동주택) : 획지선으로부터 8m · 중앙로, 목동동로2길, 목동남로, 소공원, 근린공원, 학교시설변 : 획지선으로부터 6m	공동주택 부지
			· 목동동로, 중앙로변 : 획지선으로부터 6m	· 중앙로변 : 획지선으로부터 6m · 목동로3길변 : 획지선으로부터 8m	사회복지시설부지
			-	· 목동동로, 중앙로변 : 획지선으로부터 6m	공공청사 부지

구분		계획지침		비고
		기정	변경	
대지내 공지	전면공지	·목동로3길변 건축지정선 후퇴부(4m) ·중앙로, 목동동로2길, 소공원, 목동남로, 획지2의 북측경계부변 건축한계선 후퇴부 (6m)	·목동로3길변 건축지정선 후퇴부(4m) ·중앙로, 목동동로2길, 목동남로, 소공원, 근린공원, 학교시설변 건축한계선 후퇴부 (6m)	공동주택부지
		·목동동로, 중앙로변 건축한계선 후퇴부(6m)	·중앙로변 건축한계선 후퇴부(6m) ·목동로3길변 건축한계선 후퇴부(8m)	사회복지시설부지
		-	·중앙로, 목동동로변 건축한계선 후퇴부(6m)	공공청사부지
	공공 보행통로	·단지 내 공공보행통로 : 폭 15m ※공공보행통로에는 자전거도로 설치 및 연속된 가로수 식재 (도로(기반시설)에 설치된 자전거도로와 연속되도록 설치함) ※공공보행통로는 녹지생태도심 개념을 반영하여 조성하도록 함	·단지 내 공공보행통로 : 폭 15m ※공공보행통로에는 자전거도로 설치 및 연속된 가로수 식재 (도로(기반시설)에 설치된 자전거도로와 연속되도록 설치함) ※공공보행통로는 녹지생태도심 개념을 반영하여 조성하도록 함 ※공공보행통로는 일반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24시간 상시 개방하여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함	-
교통처리	차량출입 불허구간	·목동동로, 중앙로변 차량출입불허구간 설정 ·차량출입 불허구간이 지정된 구간내에서는 대지안으로의 차량출입이 불가능하도록 조성 ※기존 건축물에 대하여 차량출입불허구간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기존 차량출입구간 적용	좌동	-
	단지 내 주차 및 차량동선	·비상차량과 별도 용도의 차량을 제외한 단지 내 지상주차를 금지 ·단지 내 도로는 아스팔트 포장을 지양하고 가급적 보도와 같은 형태의 재료 및 형태로 조성 ·단지 내 보행동선과 차량동선이 교차하는 구간은 보행우선 통행구조로 조성 ·커뮤니티활성화시설을 이용하는(서비스 포함) 차량을 위한 별도의 동선 및 지상주차 확보	좌동	-
	단지 내 보행동선	·커뮤니티활성화시설 등 보행다발시설과 연계되는 곳에 단지 내 보행동선을 조성 ·보행동선은 인접단지의 보행동선과 연계하여 조성 ·보행축 상에 조경시설 및 주민휴게시설 설치 ·목동로3길변 커뮤니티활성화용도 배치구간 후면부 보행환경개선 및 커뮤니티시설 활용을 위한 보행동선 설치(권장)		

구분		계획지침		비고
		기정	변경	
배치 구간 설정	커뮤니티 활성화용도 배치구간	·목동로3길변 ·단지 내 공공보행통로변 ·건축지정선으로부터 유효너비 2m 이상의 연속된 아케이드 조성(권장)	좌동	-
기타 사항	경관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커뮤니티활성화용도 배치구간은 보행환경개선을 위한 “가로경관특화방안” 을 수립	좌동	-
	주택의 규모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1~2인 가구 및 노령가구 등 충분한 수요조사를 통해 다양한 주거유형의 공급을 위한 “소형주택공급계획” 수립 - 주변 특성과 세대별 행태(생활패턴, 라이프스타일 등)를 고려하여 주동을 배치하고 특성화함 - 청년주택 등 활동적인 세대들은 역세권 주변 등 교통편의성이 높은 장소에 우선 배치 - 노인주택 등 주거 정주성이 중요한 세대들은 대중교통 중심지와는 일정거리를 두고, 공원 주변 등 정온한 생활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장소에 우선 배치	좌동	-
	자전거 도로	·자전거전용도로 : 중앙로, 목동동로, 목동동로2길, 목동로3길, 목동남로변 (폭 1.5m 이상, 부득이한 경우 1.2m 가능)	좌동	-

※ 1) 층수 및 상한용적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세부개발계획) 수립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신청시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할 수 있음
2) 기반시설(사회복지시설 등) 부지의 용도·밀도는 해당시설의 건축범위 결정조서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결정토록 함
3)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1천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에 해당될 경우 공원 · 녹지면적을 1세대당 3㎡이상 또는 개발부지면적의 5% 이상 중 큰 면적 확보
4) 기타 세부사항은 본 지구단위계획운영지침 및 지침도 참조

② 중심지역(목동중심지구) : 변경없음

4.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Ⅱ. 특별계획구역11 세부개발계획 결정

1.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구분	명칭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기정	특별계획구역11	서울시 양천구 신정동 325일대	128,668.4	-	128,668.4	-

2.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면적(㎡)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합계	128,668.4	-	128,668.4	100.0	-
제1종일반주거지역	21,211.3	감) 1,283.3	19,928.0	15.5	-
제3종일반주거지역	107,457.1	증) 1,283.3	108,740.4	84.5	-

■ 용도지역 변경 사유서

위치	용도지역		면적(㎡)	결정(변경)사유서
	기정	변경		
신정동 325	제3종일반 주거지역	제1종일반 주거지역	8,964.5	·목동11단지 내 공공청사, 공원, 녹지 계획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신정동 325-1	제3종일반 주거지역	제1종일반 주거지역	7,970.4	·목동11단지 내 공원, 녹지 계획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신정동 325-2	제1종일반 주거지역	제3종일반 주거지역	2,498.5	·목동11단지 내 공원, 녹지 계획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신정동 325-4	제1종일반 주거지역	제3종일반 주거지역	7,822.8	·목동11단지 내 공공청사, 공원, 녹지 계획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신정동 325-9	제1종일반 주거지역	제3종일반 주거지역	7,896.9	·목동11단지 내 공원, 녹지 계획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나. 용도지구 결정조서 : 해당사항 없음

다.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1) 교통시설

①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2	73	33~36	주간선도로	272	신정동 576-3	대 3-147	일반도로	-	서고시 422호 (94.12.27)	도로확폭
변경	대로	2	73	33~39 (3)	주간선도로	272	신정동 576-3	대 3-147	일반도로	-		
기정	중로	2	272	16.5	집산도로	443	대 2-73	중 2-276	일반도로	-	서고시 422호 (94.12.27)	도로확폭 및 연장 변경
변경	중로	2	272	18.0 (1.5)	집산도로	426	대 2-73	중 2-276	일반도로	-		
기정	중로	2	276	18	집산도로	1,092	대 2-38	대 2-37	일반도로	-	서고시 422호 (94.12.27)	철도와 중복결정
변경	중로	2	276	18 (3)	집산도로	1,092	대 2-38	대 2-37	일반도로	-		철도와 중복결정, 도로확폭

※ ( )는 목동11단지 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내 수치임

■ 도로 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대로 2-73	대로 2-73	· 도로 폭원 변경 - 폭원 : 33~36m → 33~39m	· 특별계획구역11 세부개발계획 수립에 따라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 11단지변 도로(3m)확폭
중로 2-272	중로 2-272	· 도로 폭원 및 연장 변경 - 폭원 : 16.5m → 18m - 연장 : 443m → 426m	· 특별계획구역11 세부개발계획 수립에 따라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 11단지변 도로(1.5m)확폭 및 연접도로 도로 확폭에 따른 도로 연장길이 변경
중로 2-276	중로 2-276	· 도로 폭원 변경 - 폭원 : 18m → 18m	· 특별계획구역11 세부개발계획 수립에 따라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 11단지변 도로(3m)확폭

2) 공간시설 : 변경

①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폐지	⑬	제13어린이 공원	어린이공원	신정동 325-2	2,498.5	감) 2,498.5	-	서고시 422호 (94.12.27)	11단지
신설	근린-⑤	11단지 근린공원	근린공원	신정동 325 일대	-	증) 11,540.6	11,540.6	-	11단지
신설	소-②	11단지 소공원	소공원	신정동 325-1일대	-	증) 7,970.7	7,970.7	-	11단지

■ 공원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⑬	제13어린이공원	·공원 폐지 - 감) 2,498.5㎡	·특별계획구역11 세부개발계획 수립에 따른 어린이공원 폐지
근린-⑤	11단지 근린공원	·근린공원 신설 - 증) 11,540.6㎡	·특별계획구역11 세부개발계획 수립에 따른 근린공원 신설
소-②	11단지 소공원	·소공원 신설 - 증) 7,970.7㎡	·특별계획구역11 세부개발계획 수립에 따른 소공원 신설

② 녹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폐지	⑱	11단지 연변녹지	경관녹지	신정동 325-4	10,815.9	감) 10,815.9	-	서고시 422호 (94.12.27)	-
폐지	⑲	11단지 연변녹지	경관녹지	신정동 325-9	7,896.9	감) 7,896.9	-	서고시 422호 (94.12.27)	-

■ 녹지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⑱	11단지 연변녹지	·시설 폐지 - 감) 10,815.9㎡	·특별계획구역11 세부개발계획 수립에 따른 경관녹지 폐지
⑲	11단지 연변녹지	·시설 폐지 - 감) 7,896.9㎡	·특별계획구역11 세부개발계획 수립에 따른 경관녹지 폐지

3) 공공·문화체육시설 : 변경

① 공공청사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신설	ⓒ	서부여성 발전센터	공공청사	신정동 325 일대	-	증) 1,700.0	1,700.0	-	-

■ 공공청사 건축범위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건폐율	용적률	최고높이	비 고
신설	ⓒ	50% 이하	250% 이하	-	제3종일반주거지역

■ 공공청사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서부여성 발전센터	·공공청사(서부여성발전센터) 신설 - 위치 : 신정동 325 일대 - 면적 : 1,700.0㎡ ·건축범위 신설 - 건폐율 50%이하 - 용적률 250%이하 - 최고높이 -	·특별계획구역11 세부개발계획 수립에 따른 공공청사 신설 ·서울시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목동동로변 공공청사 신설

② 사회복지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기정	③	노인종합 복지관 (11단지)	사회복지 시설	신정동 325-3	2,141.7	-	2,141.7	서고시 422호 (94.12.27)	사회복지시설 위치 변경 (데이케어센터, 실버케어센터)
변경	③			신정동 325 일대					

■ 사회복지시설 건축범위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건폐율	용적률	최고높이	비 고
기정	③	60% 이하	200% 이하	12층 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변경	③	50% 이하	250% 이하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사회복지시설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③	노인종합 복지관	·사회복지시설 위치 변경 ·건축범위 변경 - 건폐율 60%이하 → 건폐율 50%이하 - 용적률 200%이하 → 용적률 250%이하 - 최고높이 12층 이하 → 최고높이 -	·특별계획구역11 세부개발계획 수립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데이케어센터, 실버케어센터) 위치 및 건축범위 변경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가. 획지 결정조서

구분		위치	면적(㎡)	비고
소 계		-	106,177.0	-
획지1	A19-①	양천구 신정동 325번지 일대	62,917.9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획지2	A20-①	양천구 신정동 325-1번지 일대	39,417.4	
획지3	A19-②	양천구 신정동 325번지 일대	2,141.7	사회복지시설
획지4	A19-③	양천구 신정동 325번지 일대	1,700.0	공공청사

나. 건축물 용도에 관한 결정조서

구분		특별계획구역11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고
용도	불허용도 A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용도제한 규정 준용 ·이외 불허용도는 별도의 정비계획(세부개발계획) 수립시 결정	좌동	-
	지정용도 a	[커뮤니티활성화용도 배치구간 1~2층]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총포판매소, 장의사, 다중생활시설,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는 제외) ·주택법에 의한 복리시설 중 노유자시설, 작은도서관(독서실), 지식산업센터, 사회복지관, 공동작업장, 주민공동시설	좌동	[전층] ·공동주택 ·주택법에 의한 부대·복리시설

다. 건축물 건폐율 · 용적률 · 높이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1) 건폐율 계획

구분	특별계획구역11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고
건폐율	50% 이하	좌동	획지1, 2

2) 용적률 계획

구분		특별계획구역11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고
용적률	기준	210% 이하	좌동	획지1, 2
	허용	230% 이하	좌동	
	상한	250% 이하	정비계획 249.80% 이하	
	법적상한	300% 이하	좌동	

3) 높이계획

구분	특별계획구역11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고
높이 (층수)	· 최고높이 : 41층 이하	좌동	획지1, 2
	· 저층배치구간 (공공보행통로변 폭 5m) - 아파트 : 7층 이하 / 커뮤니티활성화용도 : 2층 이하	좌동	
	· 중저층배치구간 (목동동로변 폭 44m / 목동로3길변 폭 26m) - 15층 이하 - 목동로3길에 연접하여 건축하는 아파트의 첫 주동은 7층 이하	좌동	

4) 건축선 계획

구분	특별계획구역11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고
저층부 건축지정선 (2층 이하)	· 목동로3길(커뮤니티활성화용도 배치구간) : 획지선으로부터 4m	좌동	획지1, 2
건축한계선	· 목동로3길변 : 획지선으로부터 8m · 중앙로, 목동동로2길, 목동남로, 소공원, 근린공원, 학교시설변 : 획지선으로부터 6m	좌동	
	· 중앙로변 : 획지선으로부터 6m · 목동로3길변 : 획지선으로부터 8m	좌동	획지3 (사회복지시설)
	· 목동동로, 중앙로변 : 획지선으로부터 6m	좌동	획지4 (공공청사)

라.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 조서

1) 대지 내 공지 계획

구분	특별계획구역11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고
전면 공지	· 목동로3길변 건축지정선 후퇴부(4m) · 중앙로, 목동동로2길, 목동남로, 소공원, 근린공원, 학교시설변 건축한계선 후퇴부(6m)	좌동	획지1, 2
	· 중앙로변 건축한계선 후퇴부(6m) · 목동로3길변 건축한계선 후퇴부(8m)	좌동	획지3 (사회복지시설)
	· 중앙로, 목동동로변 건축한계선 후퇴부(6m)	좌동	획지4 (공공청사)
공공 보행 통로	· 단지 내 공공보행통로 : 폭 15m ※공공보행통로에는 자전거도로 설치 및 연속된 가로수 식재(도로(기반시설)에 설치된 자전거도로와 연속되도록 설치함) ※공공보행통로는 녹지생태도심 개념을 반영하여 조성하도록 함 ※공공보행통로는 일반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24시간 상시 개방하여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함	좌동	-

2) 교통처리에 관한 계획

구분	특별계획구역11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고
차량출입 불허구간	·목동동로, 중앙로변 차량출입불허구간 설정 ·차량출입 불허구간이 지정된 구간내에서는 대지안으로의 차량출입이 불가능하도록 조성 ※기존 건축물에 대하여 차량출입불허구간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기존 차량출입구간 적용	좌동	-
단지 내 주차 및 차량동선	·비상차량과 별도 용도의 차량을 제외한 단지 내 지상주차를 금지 ·단지 내 도로는 아스팔트 포장을 지양하고 가급적 보도와 같은 형태의 재료 및 형태로 조성 ·단지 내 보행동선과 차량동선이 교차하는 구간은 보행우선 통행구조로 조성 ·커뮤니티활성화시설을 이용하는(서비스 포함) 차량을 위한 별도의 동선 및 지상주차 확보	좌동	-
단지 내 보행동선	·커뮤니티활성화시설 등 보행다발시설과 연계되는 곳에 단지 내 보행동선을 조성 ·보행동선은 인접단지의 보행동선과 연계하여 조성 ·보행축 상에 조경시설 및 주민휴게시설 설치 ·목동로3길변 커뮤니티활성화용도 배치구간 후면부 보행환경개선 및 커뮤니티시설 활용을 위한 보행동선 설치(권장)	좌동	-

3) 배치구간 설정에 관한 계획

구분	특별계획구역11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고
커뮤니티 활성화용도 배치구간	·목동로3길변 ·단지 내 공공보행통로변 ·건축지정선으로부터 유효너비 2m이상의 연속된 아케이드 조성(권장)	좌동	-

4)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구분	특별계획구역11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고
경관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커뮤니티활성화용도 배치구간은 보행환경개선을 위한 "가로경관 특화방안"을 수립	·커뮤니티활성화용도 배치구간은 보행환경개선을 위한 "가로경관 특화방안"을 수립	-
주택의 규모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1~2인 가구 및 노령가구 등 충분한 수요조사를 통해 다양한 주거유형의 공급을 위한 "소형주택공급계획" 수립 - 주변특성과 세대별 행태(생활패턴, 라이프스타일 등)를 고려하여 주동을 배치하고 특성화함 - 청년주택 등 활동적인 세대들은 역세권 주변 등 교통편의성이 높은 장소에 우선 배치 - 노인 주택 등 주거정주성이 중요한 세대들은 대중교통 중심지와는 일정거리를 두고, 공원 주변 등 정온한 생활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장소에 우선 배치	·1~2인 가구 및 노령가구 등 충분한 수요조사를 통해 다양한 주거유형의 공급을 위한 "소형주택공급계획" 수립 - 주변특성과 세대별 행태(생활패턴, 라이프스타일 등)를 고려하여 주동을 배치하고 특성화함 - 청년주택 등 활동적인 세대들은 역세권 주변 등 교통편의성이 높은 장소에 우선 배치 - 노인 주택 등 주거정주성이 중요한 세대들은 대중교통 중심지와는 일정거리를 두고, 공원 주변 등 정온한 생활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장소에 우선 배치	-
자전거도로	·자전거전용도로 : 중앙로, 목동동로, 목동동로2길, 목동로3길, 목동남로변 (폭 1.5m 이상, 부득이한 경우 1.2m 가능)	좌동	-

Ⅲ.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1. 정비사업의 명칭 : 목동11단지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구분	정비구역 명칭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신설	목동11단지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서울시 양천구 신정동 325번지 일대	-	증) 128,668.4	128,668.4	-

3. 토지등소유자 유형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가. 추산액

추정 비례율	• 추정비례율 산정방식 : (분양대상 대지 및 건축물 등 총 추산액 - 총 사업비) ÷ 종전 토지 및 건축물 총 추산액 X 100 • 추정비례율 : 100.29% ⇒ (4,378,724,250천원 - 1,724,996,513천원) ÷ 2,646,184,000천원 X 100% ≒ 100.29%

종전 토지 및 건축물 총 추산액	• 아파트는 부동산 시세조회(KB부동산,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테크, 2025년 2분기 기준) 및 최근 2년(2023년 7월 ~ 2025년 6월) 실거래가 평균 등을 종합 참작하여, KB시세 2분기 평균 하한가를 기준으로 개략적으로 추정하여 산정하였음. • 아파트外(근린생활시설 등)는 목동11단지 아파트 내 상가 등의 거래사례를 조사한 후 층별 · 위치별 가격형성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략적으로 추산하였음. • 공동주택 소유자 = 25,550.89억원 • 상가 등 소유자 = 910.95억원
추정 분담금 산출	추정분담금 산정방식 = 권리자 분양가 추산액 - (종전자산 추산액 X 추정비례율)

권리자 분양가 추산액		추정 권리가액	추정 분담금
전용 59㎡	1,307,800 천원	개별 종전자산 추산액 X 추정 비례율(100.29%)	권리자 분양가 추산액 -추정 권리가액 (+ : 부담 / - : 환급)
전용 74㎡	1,604,900 천원		
전용 84㎡	1,699,900 천원		
전용 99㎡	1,960,000 천원		
전용 114㎡	2,217,100 천원		
전용 124㎡	2,300,000 천원		
전용 142㎡	3,718,100 천원		
신축상가 (지하1,지상2)	49,602,980 천원		

※ 상기 분담금 추산액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조 제1항 제2의2호에 따라 작성시점 현재의 정비계획과 설계 개요를 기준으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을 개략적으로 추산한 예시이며, 추후 변동될 수 있으며, 분담금은 향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통하여 확정됨

※ 상기 분담금 추산액은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계획인가, 토지등소유자의 분양신청, 관리처분계획인가의 내용, 물가상승률, 시공사와의 공사비 계약내용, 사업진행 속도 등에 의하여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사항은 관련 법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 의하여 단계별로 고지 예정임

※ 상기 조합원 및 일반분양 세대수에 따른 분양수입은 현재 주택형별 토지등소유자의 수 등을 감안하여 임의적으로 배분한 것으로 향후 조합원 분양신청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상기 가액은 소수점 또는 단위 절사 등으로 제곱미터 또는 평당 단가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나. 산출근거

■ 종전자산가액 추정 : 2,646,184,000천원

(단위 : 천원)

구분	건물면적		세대수	시세 하한가 (2025년 2분기)	종전자산 (세대평균)	종전자산추산액
	공급타입(py)	전용(㎡)		KB시세조회		
아파트	22A	51.48	720	1,473,000	1,473,000	1,060,560,000
	22B	59.29	40	1,530,000	1,530,000	61,200,000
	25	66.77	8	1,618,000	1,618,000	12,944,000
	28A	66.24	795	1,715,000	1,715,000	1,363,425,000
	29C	75.68	32	1,780,000	1,780,000	56,960,000
	합계		1,595	-	-	2,555,089,000
아파트外	동명칭		호수	해당 층	종전자산총액	
	상가 에이동		27	1층	45,028,000	
	상가 에이동		15	2층	20,279,000	
	상가 에이동		2	지층	2,896,000	
	상가 비동		12	1층	13,948,000	
	상가 비동		7	2층	6,555,000	
	상가 비동		1	지층	2,389,000	
	합계		64	-	91,095,000	
종전자산 총계			1,659	-	2,646,184,000	

※ 상기 종전 토지 및 건축물 추산액은 개략적으로 추산한 금액이며, 토지등소유자의 종전자산은 향후 사업시행계획인가고시일을 기준으로 복수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금액의 평균으로 산정될 예정임

※ 청산세대를 감안하여 추산하였으며, 상기 면적과 세대수, 호수 등은 건축물대장, 한국부동산원 KAIS 및 각종 공부자료 등을 기준으로 추산하였음

■ 총 수입 산출 : 4,378,724,250천원

구분		공급세대(세대)	전용면적(㎡)	공급면적(㎡)	3.3㎡당 분양단가(천원)	세대별 분양금액(천원)	분양수입(천원)	비고
공동주택	조합원분양	597	59.99	81.59	52,990	1,307,800	780,756,600	-
		345	74.99	101.99	52,020	1,604,900	553,690,500	-
		653	84.99	115.59	48,620	1,699,900	1,110,034,700	-
		총 1,595	-	-	-	-	2,444,481,800	-
	일반분양	-	59.99	81.59	62,345	1,538,640	-	-
		-	74.99	101.99	61,201	1,888,140	-	-
		10	84.99	115.59	57,197	1,999,880	19,998,800	-
		347	99.99	135.99	56,053	2,305,850	800,129,950	-
		151	114.99	158.69	54,337	2,608,390	393,866,890	-
		211	124.99	169.99	52,622	2,705,900	570,944,900	-
		13	142.95	198.27	74,357	4,374,210	56,864,730	-
		총 732	-	-	-	-	1,841,805,270	-
	국민주택 규모주택	201	59.99	81.59	-	136,266	27,389,500	-
		42	74.99	101.99	-	170,219	7,149,200	-
		43	84.99	115.59	-	192,918	8,295,500	-
		총 286	-	-	-	-	42,834,200	-
	기부채납 임대	53	59.99	81.59	-	-	-	-
		13	84.99	115.59	-	-	-	-
		총 66	-	-	-	-	-	-
	소계	2,679	-	-	-	-	4,329,121,270	-
근린생활시설 등		-	-	2,392.40	-	-	49,602,980	-
총 수입					-	-	4,378,724,250	-

※ 상기 종후아파트 중 일반분양의 경우 인근 신축아파트 시세수준, 분양가 및 실거래가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기준세대 55,000원/3.3㎡로 추정하였으며, 인근 유사 신축아파트의 주택형별 격차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정하였음

※ 조합원분양가의 경우 주택형별 일반분양가의 90%로 추산하였음

※ 상기 소형주택 매각수입은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국토교통부고시 제2023-64호)에 근거하여 추정하였으며, 근린생활시설의 분양수입은 설계도서 등을 기준으로 위치별, 층별 격차 등을 고려하되, 인근지역, 유사 상가의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추산하였음

※ 근린생활시설 분양가는 인근지역 신축아파트 단지 내 상가의 시세 등을 감안하여 개략적으로 추정하였음

■ 총 지출(사업비) 산출 : 1,724,996,514천원

항 목	금 액(천원)	포함 내용
공사비	1,265,128,474	건축 및 부대시설공사비(8,000천원/3.3㎡)
	135,906,493	정비기반시설 공사비(사회복지시설, 공공청사 등), 추가공사비, 지장물이설비, 인입공사비 등
보상비	-	매도청구 및 현금청산대상자 추정
관리비	6,094,425	추진위원회, 조합운영비, 신탁등기비 등
설계비	17,317,377	건축설계,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정비계획(변경), 문화재조사비, 지질조사비, 정비기반시설 설계, 기타 설계용역관련비용 등
감리비	23,703,156	건축, 전기, 소방 등
수수료등 기타사업비	121,710,134	안전진단 용역비,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비, 경계명시분할확정측량비, 감정평가수수료, 기장, 세무회계, 외부감사, 세무조정, 이주관리 및 명도업무, 채권매입비, 분양보증수수료, 광고선전비, 민원처리비 등
각종부(분)담금	19,745,860	광역교통시설부담금, 학교용지부담금, 상하수도 부담금 및 공사비, 지역난방/도시가스 분담금
법인세 등	100,000	추정법인세(미발생) 및 세무조정료 등
기타경비	6,830,000	견본주택건축/임차운영비, 분양대행수수료 등
예비비	68,338,002	기타 향후 청산 시까지의 예상치 못하여 발생한 제비용
항목별 사업비계	1,664,873,921	-
대여금이자	60,122,592	연 5.00%, 24개월 대여 기간 추정
중도금이자	-	개별부담으로 사업비에서 제외
이주비이자	-	개별부담으로 사업비에서 제외
총합계	1,724,996,513	-

※ 상기 추산액은 금회 정비계획(안)과 개략적인 설계 개요에 기반하여 개략적으로 추산한 사업비로서 향후 물가상승률, 시공사와의 공사비 계약내용, 사업진행속도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관련 법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 의하여 단계별로 고지될 예정임

■ 추정분담금 예시

(단위 : 천원)

공급타입 (전용면적(㎡))	종전자산 추정액	추정권리가액		예상분양가		분담금 추산액	
		비례율	권리가액	선택유형 (전용㎡)	분양가	분담금 추산액	구분
22A (51.48)	1,473,000	100.29%	1,477,272	59.99	1,307,800	-169,472	환급
				74.99	1,604,900	127,628	추가분담
				84.99	1,699,900	222,628	추가분담
				99.99	1,960,000	482,728	추가분담
				114.99	2,217,100	739,828	추가분담
				124.99	2,300,000	822,728	추가분담
				142.95	3,718,100	2,240,828	추가분담
22B (59.29)	1,530,000	100.29%	1,534,437	59.99	1,307,800	-226,637	환급
				74.99	1,604,900	70,463	추가분담
				84.99	1,699,900	165,463	추가분담
				99.99	1,960,000	425,563	추가분담
				114.99	2,217,100	682,663	추가분담
				124.99	2,300,000	765,563	추가분담
				142.95	3,718,100	2,183,663	추가분담
25 (66.77)	1,618,000	100.29%	1,622,692	59.99	1,307,800	-314,892	환급
				74.99	1,604,900	-17,792	환급
				84.99	1,699,900	77,208	추가분담
				99.99	1,960,000	337,308	추가분담
				114.99	2,217,100	594,408	추가분담
				124.99	2,300,000	677,308	추가분담
				142.95	3,718,100	2,095,408	추가분담
28A (66.24)	1,715,000	100.29%	1,719,974	59.99	1,307,800	-412,174	환급
				74.99	1,604,900	-115,074	환급
				84.99	1,699,900	-20,074	환급
				99.99	1,960,000	240,026	추가분담
				114.99	2,217,100	497,126	추가분담
				124.99	2,300,000	580,026	추가분담
				142.95	3,718,100	1,998,126	추가분담
29C (75.68)	1,780,000	100.29%	1,785,162	59.99	1,307,800	-477,362	환급
				74.99	1,604,900	-180,262	환급
				84.99	1,699,900	-85,262	환급
				99.99	1,960,000	174,838	추가분담
				114.99	2,217,100	431,938	추가분담
				124.99	2,300,000	514,838	추가분담
				142.95	3,718,100	1,932,938	추가분담

전용면적(㎡)	종전자산	추정권리가액		예상분양가		분담금 추산액	
		비례율	권리가액	선택유형(전용㎡)	분양가	분담금 추산액	구분
아파트 外							
에이동 1층	1,667,700	100.29%	1,672,536	1층	1,418,800	-253,736	환급
에이동 2층	1,351,930	100.29%	1,355,851	2층	1,141,400	-214,451	환급
에이동 지층	1,448,000	100.29%	1,452,199	지층	1,272,100	-180,099	환급
비동 1층	1,162,330	100.29%	1,165,701	1층	886,700	-279,001	환급
비동 2층	936,430	100.29%	939,146	2층	714,400	-224,746	환급
비동 지층	2,389,000	100.29%	2,395,928	지층	2,142,600	-253,328	환급

※ 분담금 추산액은 백만단위에서 반올림하여 추산하였음
※ 상기 분담금 추산액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조 제1항 제2의2호에 따라 작성시점 현재의 정비계획(안)과 설계 개요를 기준으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을 개략적으로 추산한 예시이며, 추후 변동될 수 있으며, 분담금은 향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통하여 확정됨
※ 상기 분담금 추산액은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계획인가, 토지등소유자의 분양신청, 관리처분계획인가의 내용, 물가상승률, 시공사와의 공사비 계약내용, 사업진행 속도 등에 의하여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사항은 관련 법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 의하여 단계별로 고지 예정임
※ 상기 조합원 및 일반분양 세대수에 따른 분양수입은 현재 주택형별 토지등소유자의 수 등을 감안하여 임의적으로 배분한 것으로 향후 조합원 분양신청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상기 가액은 소수점 또는 단위 절사 등으로 제곱미터 또는 평당 단가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이 하 여 백 -

4. 정비계획

가. 토지이용계획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합 계		128,668.4	100.0	-
정비기반시설	소 계	22,491.4	17.5	-
	근린공원	11,540.6	9.0	-
	소공원	7,970.7	6.2	-
	도로	2,980.1	2.3	-
기타시설	소 계	3,841.7	3.0	-
	사회복지시설	2,141.7	1.7	노인복지시설
	공공청사	1,700.0	1.3	여성발전지원센터
획 지	소 계	102,335.3	79.5	-
	획지1 (A19-①)	62,917.9	48.9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획지2 (A20-①)	39,417.4	30.6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나.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주거지역	합계	128,668.4	-	128,668.4	100.0	-
	제1종일반주거지역	21,211.3	감) 1,283.3	19,928.0	15.5	-
	제3종일반주거지역	107,457.1	증) 1,283.3	108,740.4	84.5	-

■ 용도지역 변경 사유서

위치	용도지역		면적(㎡)	결정(변경)사유서
	기정	변경		
신정동 325	제3종일반 주거지역	제1종일반 주거지역	8,964.5	·목동11단지 내 공공청사, 공원, 녹지 계획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신정동 325-1	제3종일반 주거지역	제1종일반 주거지역	7,970.4	·목동11단지 내 공원, 녹지 계획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신정동 325-2	제1종일반 주거지역	제3종일반 주거지역	2,498.5	·목동11단지 내 공원, 녹지 계획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신정동 325-4	제1종일반 주거지역	제3종일반 주거지역	7,822.8	·목동11단지 내 공공청사, 공원, 녹지 계획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신정동 325-9	제1종일반 주거지역	제3종일반 주거지역	7,896.9	·목동11단지 내 공원, 녹지 계획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다. 용도지구 결정조서 : 해당사항 없음

라.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1) 교통시설

①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2	73	33~36	주간선도로	272	신정동 576-3	대 3-147	일반도로	-	서고시 422호 (94.12.27)	도로확폭
변경	대로	2	73	33~39 (3)	주간선도로	272	신정동 576-3	대 3-147	일반도로	-		
기정	중로	2	272	16.5	집산도로	443	대 2-73	중 2-276	일반도로	-	서고시 422호 (94.12.27)	도로확폭 및 연장 변경
변경	중로	2	272	18.0 (1.5)	집산도로	426	대 2-73	중 2-276	일반도로	-		
기정	중로	2	276	18	집산도로	1,092	대 2-38	대 2-37	일반도로	-	서고시 422호 (94.12.27)	철도와 중복결정
변경	중로	2	276	18 (3)	집산도로	1,092	대 2-38	대 2-37	일반도로	-		철도와 중복결정, 도로확폭

※ ( )는 목동11단지 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내 수치임

■ 도로 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대로 2-73	대로 2-73	· 도로 폭원 변경 - 폭원 : 33~36m → 33~39m	· 특별계획구역11 세부개발계획 수립에 따라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 11단지변 도로(3m)확폭
중로 2-272	중로 2-272	· 도로 폭원 및 연장 변경 - 폭원 : 16.5m → 18m - 연장 : 443m → 426m	· 특별계획구역11 세부개발계획 수립에 따라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 11단지변 도로(1.5m)확폭 및 연접도로 도로 확폭에 따른 도로 연장길이 변경
중로 2-276	중로 2-276	· 도로 폭원 변경 - 폭원 : 18m → 18m	· 특별계획구역11 세부개발계획 수립에 따라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 11단지변 도로(3m)확폭

2) 공간시설

①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폐지	⑬	제13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	신정동 325-2	2,498.5	감) 2,498.5	-	서고시 422호 (94.12.27)	11단지
신설	근린-⑤	11단지 근린공원	근린공원	신정동 325 일대	-	증) 11,540.6	11,540.6	-	11단지
신설	소-②	11단지 소공원	소공원	신정동 325-1일대	-	증) 7,970.7	7,970.7	-	11단지

■ 공원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⑬	제13어린이공원	· 공원 폐지 - 감) 2,498.5㎡	· 특별계획구역5 세부개발계획(재건축사업) 수립에 따른 단지 내 어린이공원 폐지
근린-⑤	11단지 근린공원	· 근린공원 신설 - 증) 11,540.6㎡	· 특별계획구역5 세부개발계획(재건축사업) 수립에 따른 단지 내 근린공원 신설
소-②	11단지 소공원	· 소공원 신설 - 증) 7,970.7㎡	· 특별계획구역5 세부개발계획(재건축사업) 수립에 따른 단지 내 소공원 신설

② 녹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폐지	⑱	11단지 연변녹지	경관녹지	신정동 325-4	10,815.9	감) 10,815.9	-	서고시 422호 (94.12.27)	-
폐지	⑲	11단지 연변녹지	경관녹지	신정동 325-9	7,896.9	감) 7,896.9	-	서고시 422호 (94.12.27)	-

■ 녹지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⑱	11단지 연변녹지	·시설 폐지 - 감) 10,815.9㎡	·특별계획구역11 세부개발계획 수립에 따른 경관녹지 폐지
⑲	11단지 연변녹지	·시설 폐지 - 감) 7,896.9㎡	·특별계획구역11 세부개발계획 수립에 따른 경관녹지 폐지

다) 공공·문화체육시설

① 공공청사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신설	ⓒ	서부여성 발전센터	공공청사	신정동 325일대	-	증) 1,700.0	1,700.0	-	-

■ 공공청사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서부여성 발전센터	·공공청사(서부여성발전센터) 신설 - 위치 : 신정동 325 일대 - 면적 : 1,700.0㎡ ·건축범위 신설 - 건폐율 50%이하 - 용적률 250%이하 - 최고높이 -	·특별계획구역11 세부개발계획 수립에 따른 공공청사 신설 ·서울시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목동동로변 공공청사 신설

■ 공공청사 건축범위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건폐율	용적률	최고높이	비고
신설	ⓒ	50%이하	250%이하	-	제3종일반주거지역

② 사회복지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기정	③	노인종합 복지관 (11단지)	사회복지 시설	신정동 325-3	2,141.7	-	2,141.7	서고시 422호 (94.12.27)	사회복지시설 위치 변경 (데이케어센터, 실버케어센터)
변경	③			신정동 325 일대					

■ 사회복지시설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③	노인종합 복지관	·사회복지시설 위치 변경 ·건축범위 변경 - 건폐율 60%이하 → 건폐율 50%이하 - 용적률 200%이하 → 용적률 250%이하 - 최고높이 12층 이하 → 최고높이 -	특별계획구역11 세부개발계획 수립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데이케어센터, 실버케어센터) 위치 및 건축범위 변경

■ 사회복지시설 건축범위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건폐율	용적률	최고높이	비고
기정	③	60%이하	200%이하	12층 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변경	③	50%이하	250%이하	-	제3종일반주거지역

마.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구 분		획지 1		획지2		비고
		법정면적(㎡)	계획면적(㎡)	법정면적(㎡)	계획면적(㎡)	
주민공동시설 (커뮤니티시설)	경로당	725.0	750.0	330.0	400.0	개방
	어린이집	725.0	800.0	330.0	400.0	개방
	작은 도서관	298.0	300.0	158.0	200.0	개방
	주민운동시설	-	1,150.0	-	600.0	-
	다함께돌봄센터	66.0	500.0	66.0	250.0	개방
	공공개방시설	-	700.0	-	300.0	개방
	어린이 놀이터	-	1,657.0	-	900.0	-
	주민공동시설	-	2,500.0	-	1,500.0	-
부대시설	관리사무소	93.4	180.0	50.35	120.0	-
	경비실	-	100.0	-	100.0	-

구 분		획지 1		획지2		비고
		법정면적(㎡)	계획면적(㎡)	법정면적(㎡)	계획면적(㎡)	
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등	-	791.0	-	1,063.4	-

주1) 향후 사업승인시 시설 설치면적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바. 기존 건축물의 정비 · 개량에 관한 계획

구분	구역 구분		위치	정비개량계획(동)					비고
	명칭	면적(㎡)		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축	철거 이주	
신설	목동11단지 아파트 재건축정비구역	128,668.4	서울시 양천구 신정동 325일대	24	-	-	24	-	-

사. 건축물에 관한 계획

<table>
<tr><th rowspan="2">구분</th><th colspan="2">구역구분</th><th colspan="2">가구 또는 획지 구분</th><th rowspan="2">위 치</th><th rowspan="2">용도</th><th rowspan="2">건폐율
(%)</th><th colspan="2">용적률(%)</th><th rowspan="2">높이(m)
(최고층수)</th><th rowspan="2">비고</th></tr>
<tr><th>명칭</th><th>면적(㎡)</th><th>명칭</th><th>면적(㎡)</th><th>상한</th><th>법적상한</th></tr>
<tr><td rowspan="4">신설</td><td rowspan="4">목동11단지
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td><td rowspan="4">128,668.4</td><td>획지1
(A19-①)</td><td>62,917.9</td><td rowspan="4">신정동
325번지
외 6필지</td><td rowspan="2">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td><td rowspan="2">50
이하</td><td rowspan="2">249.80
이하</td><td rowspan="2">300이하
(299.90
이하)</td><td rowspan="2">145m이하
(41층이하)</td><td rowspan="4">-</td></tr>
<tr><td>획지2
(A20-①)</td><td>39,417.4</td></tr>
<tr><td>획지3
(A19-③)</td><td>2,141.7</td><td>사회복지시설</td><td>50
이하</td><td colspan="2">250이하</td><td>-</td></tr>
<tr><td>획지4
(A19-④)</td><td>1,700.0</td><td>공공청사</td><td>50
이하</td><td colspan="2">250이하</td><td>-</td></tr>
</table>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주택공급계획 : 2,679세대
· 전체 건립규모(전용면적 기준) ※ 세대수는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최종 결정
-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주택이 전체 세대수의 60% 이상 건립 : 73.0%

구분	총 세대수 (세대)	일반분양	공공주택			비율(%)
			계	국민주택규모	기부채납	
계	2,679	2,327	352	286	66	100.0
60㎡이하	851	597	254	201	53	31.8
60~85㎡이하	1,106	1,008	98	85	13	41.2
85㎡초과	722	722	-	-	-	27.0

심의완화 사항

· 2025 서울시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허용용적률 완화
- 기준용적률 210% → 허용용적률 230% (공공보행통로, 열린단지, 돌봄시설, 방재안전)
· 기반시설 제공에 따라 상한용적률 완화
- 상한용적률(정비계획용적률)
= 허용용적률×[1 + (1.3 × 가중치 ×α토지) + (1.0× α공공주택) + (1.0× α사회복지시설) + (1.0× α공공청사)]
= 230%×[1+(1.3×1×0.0379)+(1.0×0.0107)+(1.0×0.0139)+(1.0×0.0122)]
= 249.80% → 상한용적률 249.80%
· 공공주택 건설에 따른 상한용적률 완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
- 상한용적률 249.80% → 법적상한용적률 300%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건축지정선 및 건축한계선 지정

구분	건축선 지정 내용	비고
저층부 건축지정선 (2층이하)	· 목동로3길변 : 획지선으로부터 4m	도면참조
건축한계선	· 목동로3길변 : 획지선으로부터 8m · 중앙로, 목동동로, 목동동로2길, 목동남로, 소공원, 근린공원, 학교시설변 : 획지선으로부터 6m	

■ 용적률 계획

<table>
<tr><th>구분</th><th colspan="9">산정내용</th></tr>
<tr><td rowspan="3">토지이용계획</td><td rowspan="2">계
(구역면적)</td><td rowspan="2">획지
(공동주택등)</td><td colspan="5">정비기반시설 등 면적</td><td rowspan="2">새로
설치되는
기반시설 내
국·공유지</td><td rowspan="2">대지(획지)내
용도폐지 되는
정비기반시설
국·공유지</td></tr>
<tr><td rowspan="2">소계</td><td colspan="3">토지</td><td rowspan="2">현금·
건축물
(환산부지)</td></tr>
<tr><td>기반시설</td><td>기타시설</td><td>건축물
대지지분</td></tr>
<tr><td>128,668.4㎡</td><td>102,335.3㎡</td><td>29,969.7㎡</td><td>22,491.4㎡</td><td>1,700.0㎡</td><td>2,090.5㎡</td><td>3,687.8㎡</td><td>4,338.0㎡</td><td>18,141.8㎡</td></tr>
<tr><td>공공시설
제공면적
(순부담)</td><td colspan="9">· 순부담 면적
= 새로 설치하는 공공시설 등 제공면적 - 새로이 설치되는 정비기반시설내 국공유지 면적
- 획지내 용도폐지 되는 기존 기반시설 국공유지 면적
= 29,969.7㎡ − 4,338.0㎡ − 18,141.8㎡ = 7,489.9㎡</td></tr>
<tr><td>공공시설등
부지(토지)
면적</td><td colspan="9">· 정비기반시설 등 면적 : 24,191.4㎡
= 도로 2,980.1㎡ + 공원 : 19,511.3㎡, 공공청사 : 1,700.0㎡
· 건축물 기부채납(공공주택) 토지지분 면적 : 2,090.5㎡
= 건축연면적(지상&지하) ÷ 전체연면적 X 주택용지면적
− 전용59㎡ : (4,324.27㎡ + 3,320.98㎡) ÷ 504,322.47㎡ X 102,335.3㎡ = 1,551.35㎡
− 전용84㎡ : (1,502.67㎡ + 1,154.14㎡) ÷ 504,322.47㎡ X 102,335.3㎡ = 539.11㎡</td></tr>
<tr><td>건축물
환산부지</td><td colspan="9">· 건축물 환산부지 = 건축연면적(지상&지하) X 건축비 ÷ 부지가액(공시지가 2배)
① 공공주택 환산부지 면적 : 1,071.0㎡
− 전용59㎡ : (4,324.27㎡ X 2,082,273원 + 3,320.98㎡ X 930,909원) ÷ 15,090,003원 = 801.58㎡
− 전용84㎡ : (1,502.67㎡ X 1,990,682원 + 1,154.14㎡ X 930,909원) ÷ 15,090,003원 = 269.43㎡
② 사회복지시설(노인복지센터) 환산부지 = 사회복지시설 건립비 + 설계비 + 감리비 ÷ 부지가액 = 1,396.7㎡
− (5,000.00㎡ X 3,990,909원 + 899,950,000원 + 221,495,455원) ÷ 15,090,003원 = 1,396.7㎡
③ 공공청사(복합청사) 환산부지 = 공공청사 건립비 + 설계비 + 감리비 ÷ 부지가액 = 1,220.1㎡
− (5,000.00㎡ X 3,486,364원 + 786,175,000원 + 193,493,182원) ÷ 15,090,003원 = 1,220.1㎡
※ 2025 「주택법」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 전용 59㎡(1~45층) 평균 건축비 : 2,290,500원의 부가세 10% 제외 금액 = 2,082,273원/㎡
: 전용 84㎡(1~45층) 평균 건축비 : 2,189,750원의 부가세 10% 제외 금액 = 1,990,682원/㎡
※ 2025 「주택법」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지하) : 1,024,000원/㎡의 부가세 10% 제외 금액 = 930,909원/㎡
※ 2024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
: 노인복지센터 건축비 : 2,000㎡~5,000㎡ 신축 건축비 4,390,000원의 부가세 10% 제외 금액 = 3,990,909/㎡
: 복합청사 건축비 : 4,000㎡~10,000㎡ 신축 건축비 3,835,000원의 부가세 10% 제외 금액 = 3,486,364원/㎡</td></tr>
<tr><td>기준용적률</td><td colspan="9">· 기준용적률 = 210%</td></tr>
<tr><td>허용용적률</td><td colspan="9">· 허용용적률 = 기준용적률 + 인센티브(최대 20%) = 210% + 20% = 230%</td></tr>
<tr><td>상한용적률</td><td colspan="9">· 공공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용적률 완화
· 상한용적률(정비계획용적률)
= 허용용적률×[1+(1.3×가중치×α토지)+(1.0×α건축물)+(1.0×α건축물)+(1.0×α건축물)]
= 230%×[1+(1.3×1×0.0379)+(1.0×0.0107)+(1.0×0.0139)+(1.0×0.0122)]
= 249.80% → 상한용적률 249.80%
※ α토지 = 공공시설 등 부지(토지·지분) 제공면적 ÷ 공공시설 등 부지(토지·지분) 제공 후 면적 = 3,802.1㎡ ÷ 100,244.8㎡ = 0.0379
α건축물(공공주택) = 공공시설 등(건축물 환산부지) 제공면적 ÷ 공공시설 등 부지(토지·지분) 제공 후 면적 = 1,071.0㎡ ÷ 100,244.8㎡ = 0.0107
α건축물(사회복지시설) = 공공시설 등(건축물 환산부지) 제공면적 ÷ 공공시설 등 부지(토지·지분) 제공 후 면적 = 1,396.7㎡ ÷ 100,244.8㎡ = 0.0139</td></tr>
</table>

구분	산정내용	
	αe건축물(공공청사) = 공공시설 등(건축물 환산부지) 제공면적 ÷ 공공시설 등 부지(토지 · 지분) 제공 후 면적 = 1,220.1㎡ ÷ 100,244.8㎡ = 0.0122	
법적 상한용적률	· 공공주택 건설에 따른 상한용적률 완화	
	· 법적상한용적률 = 300% 이하	· 2030 서울특별시 도시 ·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용도지역별 법적상한용적률 이하로서 건축심의에서 최종 확정

■ 허용용적률 계획

구분	인센티브량	적용	
공공보행통로	· 주변 가로망 연계를 위한 공공보행통로 등 조성(지역권* 설정) - 기준 : 기준용적률×(조성면적÷대지면적)×α ※ α = 1이하 : 210% × (2,991.52㎡ ÷ 102,335.5㎡) × 1 = 6.14% * 지역권 : 통행 등 일정 목적으로 타인 토지를 자기 토지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등기로 설정)	10%p 이내	6%
열린단지	· 단지 외곽 개방, 담장 미설치, 연도형상가 등 열린 단지로 조성 (지형도면 고시) - 개방공간 조성 : 개방이 필요한 구간은 단차장애물 없이 보행을 단지 내부로 접근 가능하도록 조성 : 개방공간 주변 개방형 커뮤니티 등 설치 권장 - 시각적으로 열린단지 : 단지 외곽 담장 미설치, 수목 식재 또는 구조물 설치가 필요한 경우 높이 1.5m이하 * 개방되는 부분은 결정도면에 표시 (준공 후에도 유지)	5%p	5%
돌봄시설	· 지역에 필요한 놀이 · 돌봄시설* 설치 및 제공 (무상임대) - 기준 : 기준용적률×(조성면적(의무면적제외)÷대지면적(의무면적))×α ※ α = 0.1이하 : 210% × (1,625.0㎡ ÷ 7,062.5㎡) × 0.1 = 4.83% * 국 · 공립어린이집, 서울형키즈카페, 우리동네키움센터, 공동육아나눔터, 실내어린이놀이터 등	5%p 이내	4%
방재안전	· 화재 · 소방 · 피난 안전 등 공동주택 안전성능 개선 또는 저류지 설치 시 - 기준 : 안전 성능을 의무기준 보다 초과 설치 · 개선하는 경우 관련 위원회 심의 · 자문을 통해 적용	5%p	5%
합계	최대 20%p 이내	20% 적용	

아. 교통 및 동선처리계획

구 분	지 점	개 선 방 안
주변 가로 및 교차로	Ⓐ Ⓑ Ⓒ	○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교통영향평가, 2020 .11』 교통개선대책 내용 반영 - 대로 2-73호선(목동동로) 확폭 후 차로운영방안 수립 : L=0.3km, B=36.0m→42.0m - 중로 2-276호선(목동로3길) 확폭 후 차로운영방안 수립 : L=1.2km, B=15.0m→18.0m - 중로 2-272호선(목동동로2길) 확폭 후 차로운영방안 수립 : L=0.4km, B=15.0m→18.0m
		○ 사업지 차량 진출입구 설치(4개소) 및 운영계획 수립 - 비신호교차로 : 3개소 - IN-OUT : 1개소
진출입 동선	Ⓓ	○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교통영향평가, 2020 .11』 교통개선대책 내용 반영 - 주요 교차로 좌회전차로 설치(7개소) : B=3.0m, L=30.0~108.0m(테이퍼 포함)
	Ⓔ	○ 중로 2-272호선 및 중로2-273호선(목동동로2길) 상 사업지 차량 진출입구 교차로 좌회전차로 설치(4개소) - B=3.0m, L=24.0m(테이퍼 포함)
	Ⓕ Ⓖ	○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교통영향평가, 2020 .11』 교통개선대책 내용 반영 - 교차로 가속차로 설치(1개소) : B=3.25m, L=105.0m(테이퍼 포함) - 교차로 감속차로 설치(3개소) : B=3.0~3.25m, L=46.0~105.0m(테이퍼 포함)
	-	○ 사업지 차량 진출입구 회전반경 확보(R=6.0m 이상)
주차시설	-	○ 법정주차대수 : 2,521대 ○ 주차수요대수 : 3,179대(2028년, 원단위법) ○ 계획주차대수 : 4,836대 - 법정주차대수 대비 191.8% 확보 - 주차수요대수 대비 152.1% 확보
대중교통, 보행 및 자전거	Ⓗ	○ 버스정류장 이설(3개소)
	-	○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교통영향평가, 2020 .11』 교통개선대책 내용 반영 - 단지 간 연결 공공보행통로 설치 : B=15.0~20.0m
	Ⓘ	○ 사업지 주변 보행동선 단절지점에 횡단보도(7개소) 및 고원식 횡단보도(2개소) 설치
	-	○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교통영향평가, 2020 .11』 교통개선대책 내용 반영 - 대로 2-73호선(목동동로) 자전거전용도로 설치 : L=0.3km - 중로 2-276호선(목동로3길) 자전거전용도로 설치 : L=1.2km - 중로 2-272호선(목동동로2길) 자전거전용도로 설치 : L=0.4km - 중로 2-273호선(목동동로2길) 자전거전용도로(사업지 측 단방향) 설치 : L=0.3km

구 분	지 점	개 선 방 안
	Ⓙ	○ 사업지 주변 자전거횡단도 설치(8개소)
교통안전 및 기 타	-	○ 사업지 주변 교통안전표지판 및 노면표시 설치
	Ⓚ	○ 중로 2-272호선(목동동로2길) 상 과속방지턱 이동 설치(2개소)

자.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환경보전	자연환경	·절성토의 균형 고려, 지형변화의 최소화 ·기존 구역내 녹지율을 향상시키는 녹지면적 확보 ·차폐 및 조경녹지의 확보로 비오톱(biotop) 공간 확장	-
	생활환경	·도시가스 등 청정연료(LNG) 사용과 에너지 절양형 주거단지 조성	
	사업시행시 환경영향	·대기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건설공사장 소음관리요령 등에 의거 저감 대책 마련	
재난방지	수재해	·본 계획구역의 입지상 침수 등 수재해에 대한 우려는 없으나, 집중호우시 구역내로 유입되는 수량 등을 감안하여 계획구역 주변에 적정 우수관망을 설치하고 우수집중구간 발생시 저류조 설치 등 우수로 인한 피해방지 검토	-
	산사태	·토질의 종류에 따른 안정구배를 유지토록 하고, 벽면의 상·하단에 배수시설 설치 등을 통하여 토사의 유출을 방지	
	화재	·구역내 화재발생을 대비한 방화계획은 건축법의 방화에 관한 규정 및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종합적 방재계획 수립	
기존 수목의 현황 및 활용 계획		·사업대상지에 사업시행으로 인해 발생되는 훼손 수목은 서울특별시에서 운영하는 나무은행(green.seoul.go.kr)을 활용하여 수형이 우수한 수목을 재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이식이 불가능한 수목에 관하여 공사장 내 임시적 치장을 지정하여 지상부와 뿌리분을 분리하여 전량 수거하여 임목폐기물 업체 위탁처리 예정	-

차.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구 분	필요한 조치사항	계 획
소음 피해	·학교 주변 방음벽 설치	·공사장 주변 방음벽 설치
	·공사장비는 시험가동 후 소음 발생 시 이동식 방음막 설치	·설치함
	·소음 유발공사는 수업종료 후 또는 방학 중 시행	·수업 종료 후 또는 방학 중 시행
	·여름철 소음방지를 위한 냉방시설 설치 및 운영비 부담	·필요 시 설치 및 운영비 부담
	·50~65dB이하 유지	·유지
비산먼지 피해	·살수차 운영 및 세륜기 설치	·설치함
	·학교시설물 정기적 청소	·피해 시 청소
진동 피해	·65~70dB이하 유지	·유지
	·기초파일 박기, 건물발파철거 등은 수업종류 후 또는 방학 중 시행	·수업 종료 후 또는 방학 중 시행
	·공사차량 및 장비는 학교 우회통행	·학교 우회통행 예정
인근지역 우범지대화	·주민 이주부터 건물 철거까지의 기간 중 우범지대 방지를 위한 침입통제 펜스 설치 및 통제요원 배치하여 출입 통제	·펜스 설치 및 통제요원 배치
통학로 안전확보	·학생 및 교직원 전용 통학로 별도 설치	·별도 설치 불필요
	·통학로 주변 공사장비 및 자재 방치 금치	·통학로 주변 자재 방치 금지
	·공사 중 낙하물에 의한 사고방지를 위한 안전벽(막) 설치	·안전막 설치
	·주통학로의 공사차량 통행금지 및 통제요원 배치	·주통학로 공사차량 통행안함
학교시설물 피해	·공사 과정에서 학교시설물 및 부속시설(담장, 가스관, 상하수도관 등 설치물)이 훼손되어 학교운영이 지장이 없도록 공사 전에 정밀조사하고, 발생한 손해(손실)에 대하여 배상(보상) 조치	·학교 경계로부터 20m이상 이격되어 지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학교시설물 및 부속시설 등 학교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공사 전에 정밀조사하고, 발생한 손해(손실)에 대하여 보상 조치하겠음
	·학교 주변에 계측기를 설치하여 학교 건물의 변위 발생 여부를 조사하고, 변위 감지 시 즉시 공사중지 및 조치	·학교 경계로부터 20m이상 이격되어 지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학교 주변에 계측기를 설치하여 변위 감지 시 조치하겠음
교육환경보호구역 금지행위	·대상지는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 및 상대보호구역에 해당되며, 이에 따라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해당 관할 교육청의 협의결과를 준수토록 계획하겠음

구 분	필요한 조치사항	계 획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의 시설 금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에 의거 사업시행계획서에 협의사항을 반영하여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득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 및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9조에 의거 정비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교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해당	·불허용도 계획을 통한 청소년 유해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등) 교육환경 위해시설 입지를 금지하겠음

카.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계획

구 분	계 획 내 용	
범죄 예방을 고려한 환경설계 (CPTED)	분명한 시야선 확보	·건축물 설계 시 시야 선을 확보하고, 숨을 수 있는 장소 최소화
		·도로변을 따라 관목을 식재하고, 안으로 교목을 식재하여 시야 확보
		·수목 식재 형태 및 크기의 일관성 유지로 은닉 장소를 없앰
		·공원 등 녹지 설계 시 도로에서 내부가 관찰 가능하도록 조성 등
	적합한 조명의 사용	·어둠이 없는 적합한 조명설계
	고립지역 개선	·시야 선이 닿지 않거나 자연적 감시가 어려운 곳, 사람의 통행이 적거나 도로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유사시 구조 요청 또는 구조가 어려운 지역을 과감히 없애는 설계
	사각지대의 개선	·감시가 곤란한 지역은 주변 환경을 개선하여 사각지대를 없애는 설계
	대지의 복합적 사용증진	·다양한 복합시설 배치로 활용도를 높여 시설이용을 증진시키고, 통행자에 의한 자연적 감시로 안전성 확보
	활동인자 증대	·일정지역에 모여 활동하도록 하여 도로나 공간에 생동감을 부여함으로써 범죄 기회를 감소시킴
	영역성 강화	·특정지역에 대한 소유감·영역성 부여로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제3자에게는 허가받지 않은 영역 침범에 불안 심리를 증폭시켜 범죄를 예방
	정확한 표시로 정보제공	·표지판은 적절한 위치에 설치하여 시민이나 방문객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
		·간선변 및 이면도로변 보행로에 유도등 및 안내시설 설치로 통로의 인지성 확보와 비상장소 활용

구 분	계 획 내 용	
	쾌적한 공간설계	· 보안장비 설치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환경이 메말라 오히려 공포감을 조장할 수 있으므로, 아름다운 환경을 만들어 사용자에게 안락감을 제공
범죄예방 프로그램화		· 능동적 범죄예방체계 및 개방형 공간구조 형성, 통합형 관리시스템 구축
		· 가로 및 구역별로 적합한 시설 설치로 효율적인 방범체계 구축

타.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

구분	가구	면 적(㎡)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	
목동11단지 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A19	78,300.2	신정동 325번지 일대	62,917.9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2,141.7	사회복지시설
				1,700.0	공공청사
	A20	79,831.2	신정동 325-1번지 일대	39,417.4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파.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계획

구분	정비구역 명칭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신설	목동11단지 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양천구 신정동 325번지 일원	-	증) 128,668.4	128,668.4	-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 예정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비고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고시가 있는 날부터 4년 이내	-	현황	증감	계획	-
			1,595세대	증) 1,084세대	2,679세대	

거. 공공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

- 모든 공공주택은 원칙적으로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주택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시 해당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 공공주택 등은 세입자 주거대책 및 도시저소득 주민의 입주기회 확대 등 공공목적의 공공주택 용도로 정하며, 서울시에 매각(처분)하여야 한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50% 이상을 공공주택으로 건설하여야 한다.

■ 공공주택 배치계획

- 공공주택은 분양주택과 차별 없이 외관, 마감 등을 동일하게 계획(동별 · 동내 혼합과 층별 혼합)하고, 전체 주택을 대상으로 동 · 호수 배정도 조합원과 서울특별시(공공주택)가 동일 · 동시에 공개추첨방식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추첨 시 서울특별시가 필수 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그 결과를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에 반영할 것

■ 상한용적률(정비계획 용적률) 완화를 위한 기부채납 임대주택

구분	건립위치	부지면적(㎡)	동수	세대수	세대규모		비고 (제공연면적)
					전용면적	공급면적	
신설	획지 1,2	102,335.3	32	소계	66세대		5,826.94㎡
				53세대	59.99	81.59	4,324.27㎡
				13세대	84.99	115.59	1,502.67㎡

■ 법적상한용적률 완화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계획 기준		・공공주택(법적상한용적률 완화) 건설 :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50% 이상 ・공공목적의 공공주택 용도				
상한용적률(정비계획 용적률)		・249.80%				
법적상한용적률(건축계획)		・300% 이하(건축위원회 심의에서 최종결정)				
공공주택 산출근거	용적률 증가분	획지1	299.90%-249.80% = 50.10%			
		획지2	299.88%-249.80% = 50.08%			
	증가된 용적률의 50%	획지1	(299.90%-249.80%)×50% = 25.05%			
		획지2	(299.88%-249.80%)×50% = 25.04%			
	의무 연면적	・{(법적상한용적률-상한용적률)×부지면적}×50% ={(299.90%-249.80%)×62,917.9㎡}×50%+{(299.88%-249.80%)×39,417.4㎡}×50% =25,630.22㎡(15,760.42㎡+9,869.80㎡)이상 확보 〈 확보면적 25,653.54㎡				
공공주택 확보계획 (법적상한용적률 완화)		전용면적	공급면적	세대수	연면적	비고
		59.99㎡	81.59㎡	201	16,399.59㎡	
		74.99㎡	101.99㎡	42	4,283.58㎡	
		84.99㎡	115.59㎡	43	4,970.37㎡	
		합 계		286	25,653.54㎡	〉 25,630.22㎡

하. 환경성 검토결과

검토항목			목표기준	준수여부	현황 및 검토결과	계획에의 반영사항
자연생태환경분야		비 오 톱	4등급	○	· 계획대상지 비오톱유형평가도 2,4등급	· 계획시행으로 인한 변화 미미
		생 태 네트워크	녹지확보	○	· 계획대상지 내 공개공지 및 조경녹지 계획	· 녹지공간의 최대확보로 도시생태기능 복원 및 강화
		동 · 식물상	동식물상보호	X	· 해당사항 없음	-
		자연환경 자산	자연환경보호	X	· 대상지 주변 보호지역 없음	-
생활환경분야	토지환경	토지이용	종합적인 토지이용계획	○	· 토지이용 및 용도조사	· 종합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
		토 양	토양오염최소화	○	· 토양포장률 85%	· 폐유유출방지 등 토양오염최소화 · 조경녹지 등을 최대한 확보
		지형 · 지질	지형변동 최소화	○	· 계획대상지는 평탄지임	· 토질 및 지형변화 최소화
	물환경	물순환 수리 · 수문	생태면적률 30%	○	· 계획대상지 내 공개공지 및 조경녹지 계획	· 생태면적률 30% 이상 확보 계획
		수질	토사유출저감 오수처리	○	· 공사시 토사유출 · 운영시 오수 발생	· 침사지 및 가배수로 설치 · 기존 하수관로에 연계처리
	대기환경	바람	바람길 확보	○	· 건물 신축으로 바람길 변화가 예상되나 그 영향은 미미	· 바람길을 확보하도록 계획됨
		열	열환경 영향 최소화	○	· 토지 피복변화 없음	· 열환경의 변화가 없도록 계획
		악취	악취발생 억제	X	· 해당사항 없음	-
		대기질 · 미세먼지	비산먼지발생 억제	○	· 대기질 현황조사 결과 기준 만족 · 공사시 비산먼지에 의한 영향	· 저감시설(방진망등)설치 · 공사장 살수계획 · 공사장 내 차량속도 제한
		온실가스	온실가스 저감	○	· 도시가스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	· 수목식재시 온실가스 흡수능력 고려
	기타	친환경적 자원순환	폐기물처리	○	· 공사시 폐유 및 폐기물발생 · 운영시 폐기물발생	· 폐유 지정처리 · 분리수거 및 재활용
		에너지	에너지 절약계획수립	○	· 에너지 사용량 증가 예상	· 단열재, 이중창 우선시공
		소음 · 진동	생활소음 및 소음환경기준	○	· 공사시 장비에 의한 소음발생	· 가설방음판넬 설치 · 차량의 속도 20㎞/hr로 제한
		경 관	Skyline 보전	○	· 주변 시설물에 의해 일부 조망	· 주변 시설물과 조화를 이루는 경관계획수립
		휴식 및 여가공간	휴식 · 여가공간 최대확보	○	· 주변 휴식 · 여가공간	· 녹지 및 공개공지 조성으로 휴식 · 여가 공간 확보
		일 조	법적기준 높이만족	○	· 지상49층 이하 계획수립으로 일조에 대한 영향 미미	· 일조영향을 반영한 층고 계획 수립

검토항목		목표기준	준수 여부	현황 및 검토결과	계획에의 반영사항
	보 행 친화공간	보행친화공간 확충	○	· 보행친화공간에 대한 영향변화 없음	· 보행 접근성의 변화가 없도록 계획
	전파장애	전파장해 저감	X	· 전파장해와 관련없음	-
사회 경제 환경 분야	인구 및 주거	인구를 고려한 계획	○	· 인구 증가 예상	· 계획시행으로인한 주거인구 증가
	산 업	산업을 고려한 계획	X	· 해당사항 없음	-

Ⅳ. 신속통합기획 가이드라인

구분		신속통합기획 가이드라인
공공시설 등	공원	· 학교 일조를 고려하고 획지 형태상 건축배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공원 위치 조정 검토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시설 적정 위치 및 노인인구 증가를 고려하여 사회복지시설 연면적 추가 확보 검토
배치계획		· 중앙로변 계남근린공원과 연계하여 가로대응형 건축배치 검토
허용용적률 인센티브계획		· 허용용적률 항목 중 열린단지는 단지 내 주민만 사용하는 공간 등을 배려하고 준공 후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계획 검토
교통처리계획		· 획지1의 차량 진 · 출입구는 인접 단지와의 선형을 고려하여 배치
		· 획지2와 인접한 도로의 영향을 최소화하여 차량 진 · 출입구 배치
스카이라인 및 경관계획		· 중앙로변 획일화되고, 단조로운 건축배치는 지양하고, 다채로운 경관 형성
기타사항	자전거도로	· 중앙로 및 목동남로변 자전거도로는 보도와 분리하여 설치

Ⅴ. 2025년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 (’25.09.01.) 심의결과 : 수정가결

구분	심의의견	조치(안)	비 고
수정 사항	·용도지역, 높이계획, 용적률, 건축한계선, 공공기여계획, 순부담면적 및 주택공급계획은 구청장 수정가결요청(안) 반영 ·목동지구 일대 노인인구 증가를 고려하여 사회복지시설 연면적 추가 확보로 공공기여 변경 - 순부담7,380.7㎡(6.95%) → 7,489.9㎡(7.05%) - 상한용적률249.81% → 249.80%(감 0.01%) - 사회복지시설 연면적 3,051.48㎡ → 5,000㎡ (환산면적 852.4㎡ → 1,396.7㎡) - 기부채납임대주택 면적 3,596.6㎡ → 3,161.5㎡ (총 9세대 감소, 59㎡ 7세대, 84㎡ 2세대)	·용도지역, 높이계획, 용적률, 건축한계선, 공공기여계획, 순부담면적 및 주택공급계획은 구청장 수정가결요청(안)을 반영하였음	반영
	·신속통합기획 자문의견(스카이라인 및 경관계획 등) 반영한 가이드라인을 정비계획에 명시할 것	·신속통합기획 자문의견(스카이라인 및 경관계획 등)을 반영한 가이드라인을 정비계획에 명시하였음	반영
조건 사항	·사회복지시설 현황보다 증가되는 면적은 데이케어센터 및 실버케어센터 용도를 균등 도입하여 세부운영계획을 수립할 것	·사회복지시설의 데이케어센터 및 실버케어센터는 세부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상담실, 프로그램실, 다목적실, 노인요양 의료시설 등으로 운영하고, 위탁운영을 통해 양천구에서 관리 운영하겠음	반영
	·목동동로2길 및 목동로3길은 주변 개발계획을 고려한 3,4차로 확보를, 목동남로 양천구청역 방향 차선은 효율적인 도로폭 등 횡단계획을 재검토할 것	·향후 건축심의(정비사업통합심의 등)시 교통영향평가를 통해 인접 도로의 효율적인 교통처리를 위해 차로계획이 조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음	추후 반영
	·기정 지구단위계획 대비 높이가 완화된 바, 과도한 주동형태 지양 등 경관을 고려한 건축배치 계획 수립할 것	·향후 건축심의(정비사업통합심의 등)시 경관을 고려한 건축 배치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음	추후 반영
권고 사항	·대상지 및 목동 재건축 예정 단지에 대한 공원 조성계획 수립 시, 정원도시국과 협의하여 공공조경가를 선정하고 조경 특화 설계 및 지역 특성을 반영한 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조치	·현재 양천구에서 목동 택지개발지구 전체에 대한 공원 조성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향후 건축심의(정비사업통합심의 등) 시 공원 조성에 지장이 없도록 정원도시국과 협의하여 공공조경가를 선정하고, 조경 특화설계 및 지역 특성이 반영된 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음	추후 반영

Ⅵ. 열람장소 : 시민열람 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과(02-2133-7286) 및 양천구 재건축사업과(02-2620-3458)에 관계 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목동11단지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1) 정비구역 결정도(신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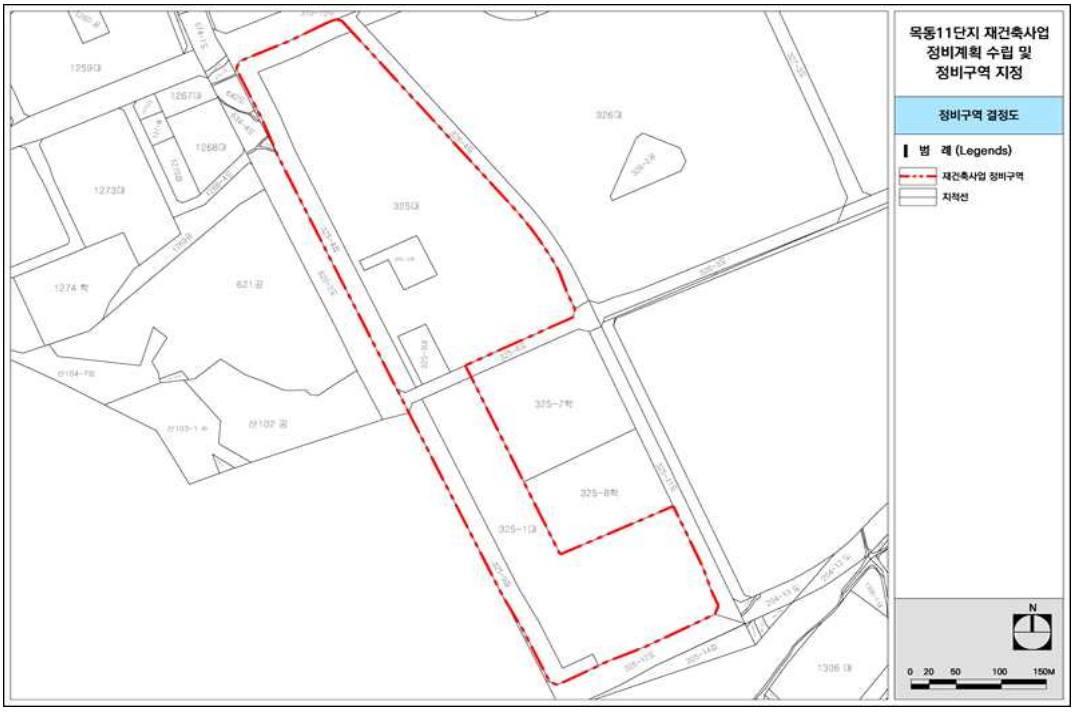

2) 용도지역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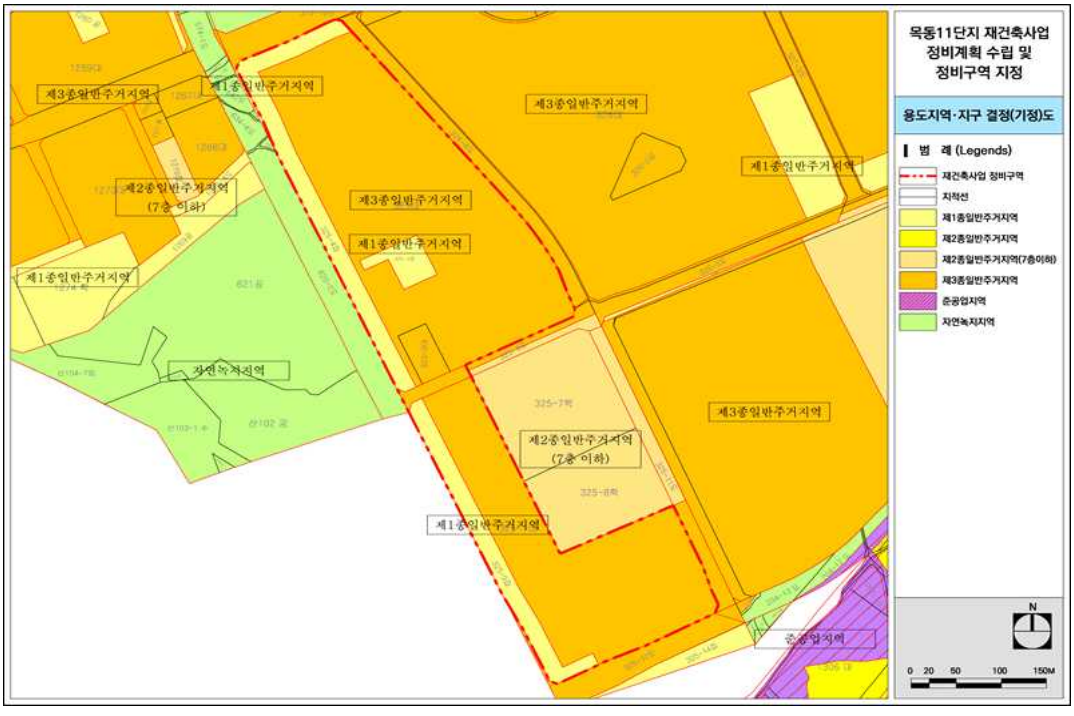

3) 용도지역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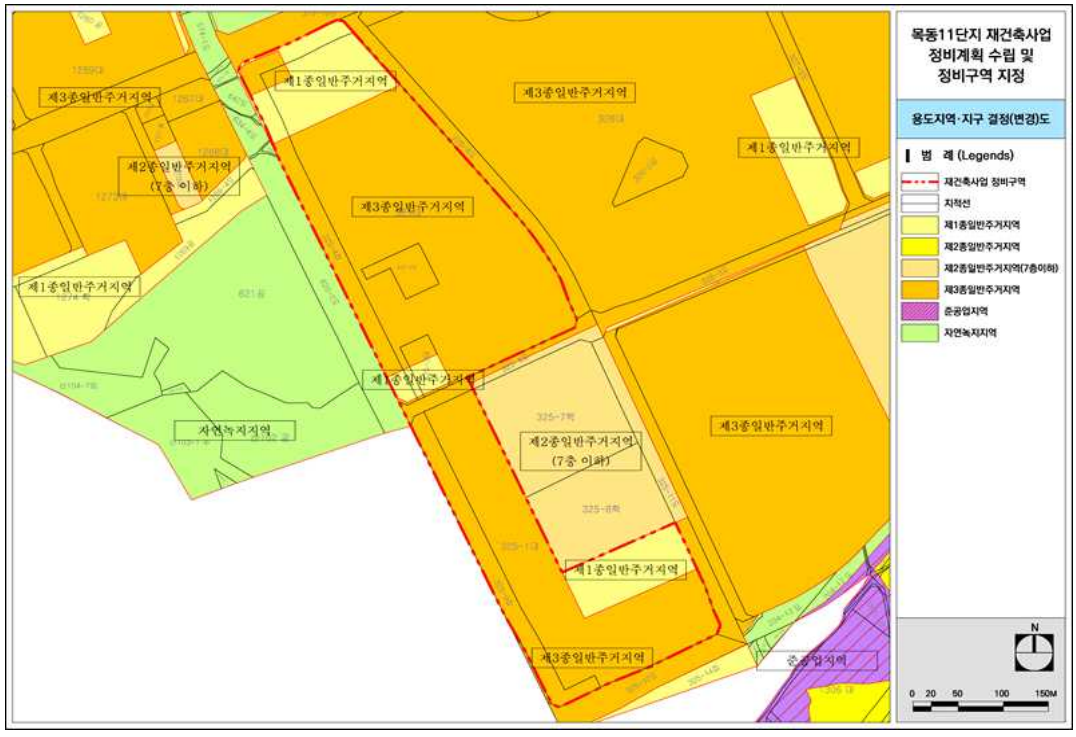

4) 도시계획시설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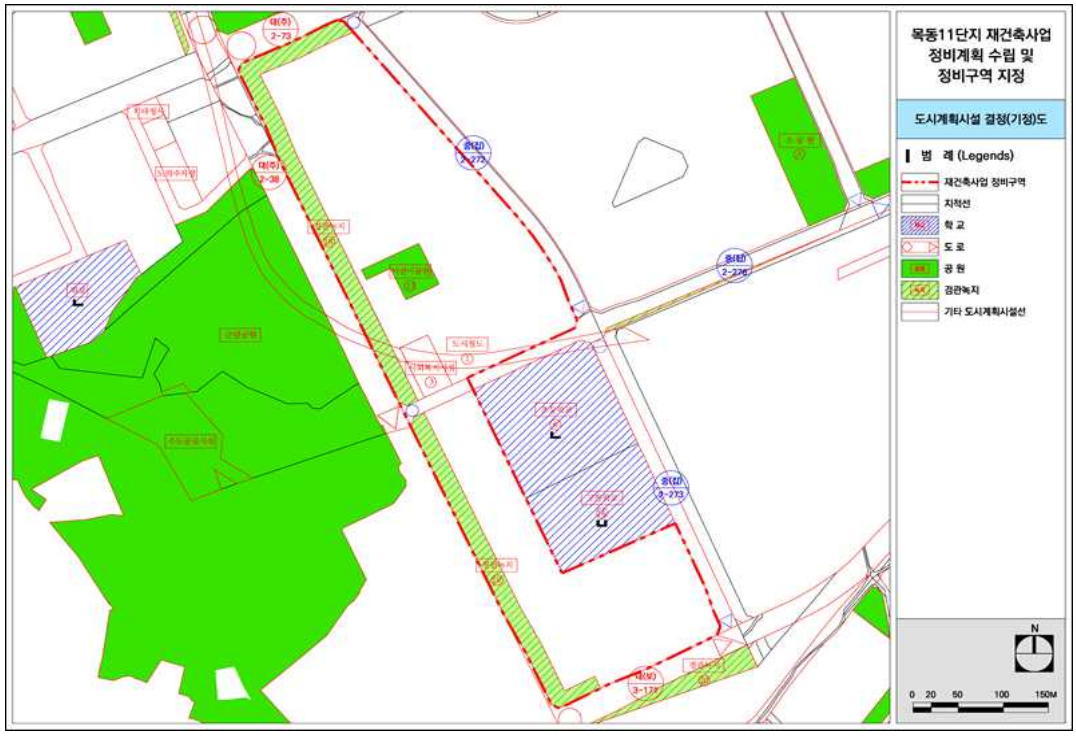

5)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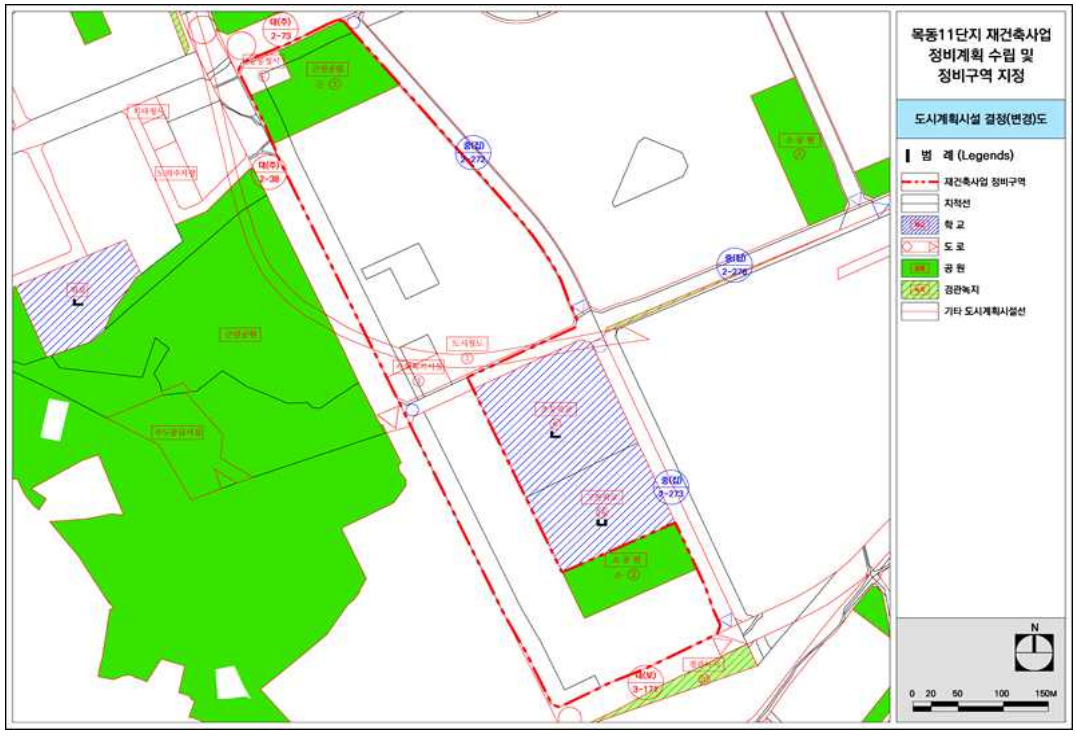

6) 정비계획 결정도(신설)

<붙임2>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1) 특별계획구역11 세부지침도(기정)

2) 특별계획구역11 세부지침도(변경)

3) 특별계획구역11 세부개발계획 결정도(신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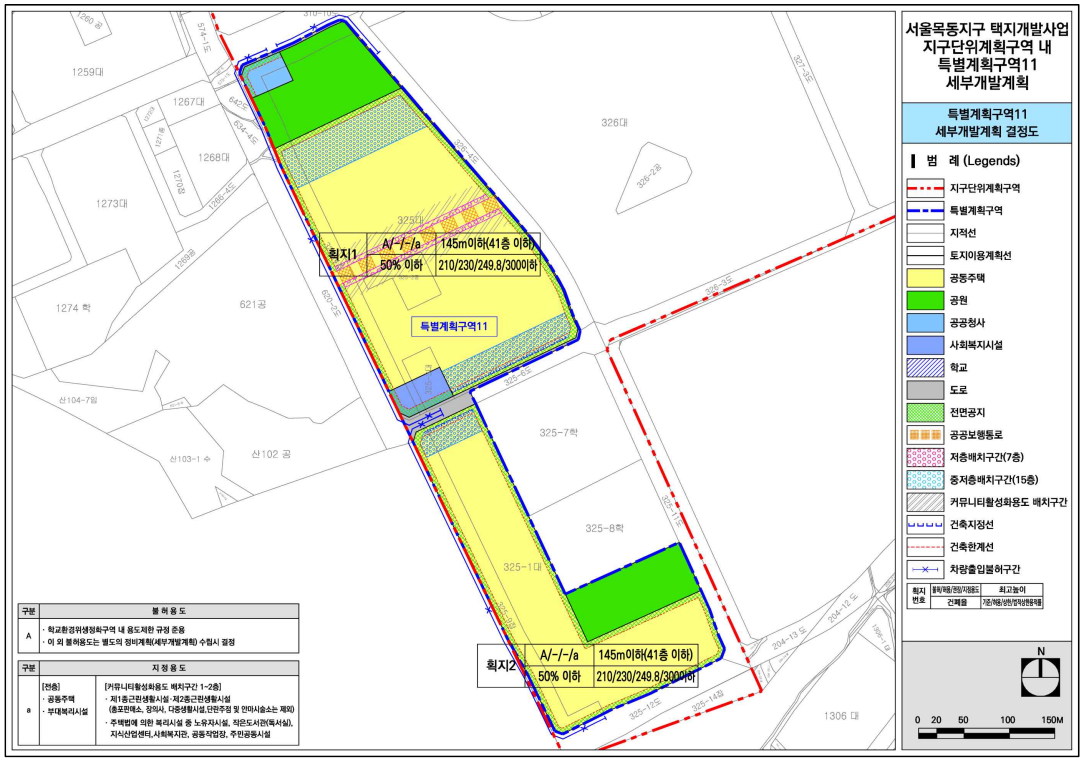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629호

창신동 23-606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23-606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6조에 따라 2025년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2025. 07. 18.) 심의(수정가결)를 거쳐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도시정비법 제1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13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1. 정비구역의 지정 조서

구분	구역명	위 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창신동 23-606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23-606번지 일대	-	증) 143,148.7	143,148.7	-

2. 토지이용계획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합 계		143,148.7	100.0	-
정비기반시설 등	소 계	41,420.6	28.9	-
	도 로	20,894.2	14.6	공원 일부 중복결정 (면적 1,109.2㎡)
	공 원	17,525.2	12.2	도로 일부 중복결정
	공공청사	962.4	0.7	복합시설
	사회복지시설	2,038.8	1.4	복합시설
획 지	소 계	101,728.1	71.1	-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공동주택용지	99,605.0	69.6	-
	종교용지	2,123.1	1.5	3개소

3. 용도지역 · 지구 결정(변경) 조서

가. 용도지역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합 계	143,148.7	-	143,148.7	100.0	-
제1종일반주거지역	7,252.0	-	7,252.0	5.1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135,547.5	감) 102,606.2	32,941.3	23.0	-
제2종일반주거지역	-	증) 102,606.2	102,606.2	71.7	-
제3종일반주거지역	349.2	-	349.2	0.2	-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	창신동 23-606번지 일대	제2종 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	제2종 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	32,941.3	노후 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 및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한 제2종일반주거지역 변경
			제2종 일반주거지역	102,606.2	

나. 용도지구 : 해당사항 없음

4.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토지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은 정비구역 지정도서 참조)

가. 추정 비례율 산출근거

구분	항목		금액(천원)
수입	소계		2,456,629,700
	분양주택	조합원분양	1,190,464,000
		일반분양	1,105,533,000
	임대주택	의무임대	117,776,800
		국민주택규모	-
	기타시설	근린생활시설	42,855,900
	매출부가세		-
지출	소계		1,564,383,601
	공사비		1,108,181,054
	제사업경비		456,202,547
종전자산 추정액			678,434,298
추정비례율	131.52% = [총수입(2,456,629,700천원) - 총지출(1,564,383,601천원)] / 종전자산 추정액(678,434,298천원)		

※상기 비례율은 추정값으로 추후 관리처분계획인가 시 개별 물건에 대한 종전자산 감정평가 및 공사비, 분양가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공사비 및 분양가 변동표

구 분		공사비 변동				
		90%	95%	100%	105%	110%
분양가 변동	110%	190.78%	179.26%	167.73%	156.20%	144.67%
	105%	172.68%	161.15%	149.62%	138.09%	126.56%

구 분		공사비 변동				
		90%	95%	100%	105%	110%
	100%	154.57%	143.04%	131.52%	119.99%	108.46%
	95%	136.47%	124.94%	113.41%	101.88%	90.35%
	90%	118.36%	106.83%	95.31%	83.78%	72.25%

5.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가. 교통시설

1)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 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유별	번호	폭원(m)								
폐지	소로	2	-	6	국지도로	348	창신동 615-45	창신동 23-735	일반도로	-	-	창신11길
폐지	소로	2	-	6~8	국지도로	100	창신동 595-327	창신동 595-327	일반도로	-	건설부고시 제432호 (1963.07.01.)	-
폐지	소로	3	1	6	국지도로	82.4	창신동 610-68	창신동 610-21	일반도로	-	-	-
폐지	소로	3	2	4	국지도로	24.6	창신동 610-21	창신동 610-22	일반도로	-	-	-
폐지	소로	3	3	4	국지도로	20.7	창신동 23-854	창신동 610-4	일반도로	-	-	-
폐지	소로	3	4	4	국지도로	25.6	창신동 23-533	창신동 23-534	일반도로	-	-	-
폐지	소로	3	5	3	보행자전용도로	62.1	창신동 23-556	창신동 23-554	일반도로	-	-	-
폐지	소로	3	-	4~6	-	138	창신동 601-2	창신동 601-9	-	-	-	-
기정	중로	2	B	15	국지도로	140	창신동 23-216	창신동 23-393	일반도로	-	서울시고시 제2023-623호 (2024.12.19)	창신5길
변경	중로	2	B	15~33	국지도로	140 (43)	창신동 23-878	창신동 23-878	일반도로	-	서울시고시 제2023-623호 (2024.12.19)	창신5길
기정	소로	2	1	8	국지도로	725	창신동 615-263	창신동 570-4	-	-	서울시고시 제92-26호 (1992.01.29.)	창신길
변경	중로	1	A	12~20	집산도로	1,066 (799)	창신동 611-19	창신동 530-1	-	-	-	낙산근린공원 및 중로3-C와 일부 중복결정
기정	소로	3	-	6	-	-	-	-	-	-	-	창신5길
변경	중로	3	A	6 (12)	집산도로	262	창신동 570-3	창신동 107-1	일반도로	-	-	창신5길 시점변경(연장축소)
기정	소로	3	-	6	국지도로	515	창신동 627-49	창신동 627-85	-	-	건설부고시 제46호 (1976.04.07.)	-
변경	소로	3	A	6	국지	515	창신동 627-49	창신동 627-85	-	-	건설부고시	낙산근린공원과 일부

구분	규모				기능	연 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유별	번호	폭원(m)								
					도로	(12)					제46호 (1976.04.07.)	중복결정
신설	중로	2	A	15~22	집산 도로	413	창신동 611-19	창신동 23-878	일반도로	-	-	낙산5길 중로3-C 및 낙산배수지와 일부 중복결정
신설	중로	3	C	12	집산 도로	257 (204)	창신동 627-179 (창신동 627-254)	창신동 23-878 (창신동 23-878)	일반도로	-	-	창신길, 낙산5길, 낙산근린공원과 일부 중복결정

※ 사업시행자 조성 후 기부채납
※ ( )는 구역 내 사항임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 사유
변경 전	변경 후		
소로 2-	-	도로 폐지 - B: 6m / L: 348m	정비계획 입안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폐지
소로 2-	-	도로 폐지 - B: 6~8m / L: 100m	정비계획 입안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폐지
소로 3-1	-	도로 폐지 - B: 6m / L: 82.4m	정비계획 입안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폐지
소로 3-2	-	도로 폐지 - B: 4m / L: 24.6m	정비계획 입안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폐지
소로 3-3	-	도로 폐지 - B: 4m / L: 20.7m	정비계획 입안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폐지
소로 3-4	-	도로 폐지 - B: 4m / L: 25.6m	정비계획 입안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폐지
소로 3-5	-	도로 폐지 - B: 3m / L: 62.1m	정비계획 입안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폐지
소로 3-	-	도로 폐지	정비계획 입안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폐지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 사유
변경 전	변경 후		
		- B: 4~6m / L: 138m	
중로 2-B	중로 2-B	변경 : 도로 폭원 확장 - B: 15~33m / L: 140m	창신동 23-2일대 개발구역 도로와 연계성 확보 및 노선버스 운행을 고려한 회차 공간 신설
소로 2-1	중로 1-A	변경: 도로 선형 변경 - B: 8m → 12~20m - L: 725m → 1,066m(799m)	종로-낙산길과의 연결 및 교통량 고려한 도로 연장 및 폭원 확장 낙산근린공원 및 중로 3-C와 일부 중복결정
소로 3-	중로 3-A	변경: 도로 연장 축소 및 폭원 확장 - B: 6m → 6m(12m) - L: -m → 262m	창신길, 지봉로와의 연결 및 창신시장 이용자의 안전한 접근 위해 도로 연장 및 폭원 확장 ※ 시점변경(연장축소)
소로 3-	소로 3-A	변경: 공원 중복결정 - B: 6m / L: 515m(12m)	신설되는 창신길 북측 낙산근린공원과 일부 중복결정
-	중로 2-A	도로 신설 - B: 15~22m / L: 413m	창신동 23-2일대 개발구역 도로와 연계성 확보를 위한 신설
-	중로 3-C	도로 신설 - B: 12m / L: 257m(204m)	교통량 분산 및 동서방향 연결(율곡로~지봉로)을 통한 접근성 향상을 위해 지하도로 신설 * 인접 지역 개발시 구간별 노선 확장 추진 - 도로(안): 충신동 53-22 ~ 창신동 23-815

※ ( )는 구역 내 사항임

2) 도시계획시설(도로) 입체적 결정(신설) 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구분	기정(m)	변경(m)	변경 후(m)	최초 결정일	비고
신설	중로3-C	도로 (지하도로)	창신동 627-179 일대	길이	-	204	204	-	-
				폭	-	12	12		
				높이 (해수면 기준)	-	53	53		

※ 사업시행자 조성 후 부동산등기법 제69조에 따른 지상권 설정 및 구조물 기부채납
※ 입체적 결정 범위 높이의 기준은 추후 계획지반고를 고려하여 재설정하고, 측량을 통해 확정 예정

■ 지하도로 입체적 결정(신설)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중로3-C	도로 (지하도로)	·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 L=204m B=12m	· 율곡로와 지봉로 사이의 연계를 위한 지하도로 계획

3)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폐지) 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폐지	-	창이 거주자 우선 주차장	종로구 창신동 23-611	405	감) 405	-	-	-
폐지	-	낙산 거주자 우선 주차장	종로구 창신동 23-343	725	감) 725	-	종로구 제2001-82호 (2001.07.28.)	-

■ 주차장 결정(폐지)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 사유
-	창이 거주자 우선 주차장	폐지	정비계획 입안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 폐지
-	낙산 거주자 우선 주차장	폐지	정비계획 입안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 폐지

나. 공간시설

1)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치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경	변경 후		
변경	낙산근린공원	근린공원	종로구 창신동 615-279 일원	182,191.8 (6,055.3)	증) 11,014.9 (증) 5,389.9)	193,206.7 (11,445.2)	총독부 고시 제208호 (1940.3.12.)	중로3-C 및 창신길과 일부 중복결정
신설	문화공원	문화공원	종로구 창신동 23-334 일원	-	증) 2,414.4	2,414.4	-	쌈지마당 일대
신설	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	종로구 창신동 23-878 일원	-	증) 4,774.8	4,774.8	-	산마루놀이터 (도시재생시설)

※ ( )는 구역 내 사항임

※ 구역 내 낙산근린공원은 중로3-C와 일부 중복결정 된 면적(1,109.2㎡) 포함

※ 낙산근린공원 변경 면적 중 5,625.0㎡는 창신동 629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으로 증가

■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 사유
-	낙산근린공원	변경	기존 낙산공원과의 녹지공간 연계를 위해 공원 면적 및 형태 변경
-	문화공원	신설	기존 쌈지마당을 공원화하여 채석장전망대와 연계되는 휴게공간 조성
-	어린이공원	신설	도시재생시설(산마루놀이터)의 기존 공원 기능 유지·확대를 통해 학습·놀이공간으로 조성

다. 유통 및 공급시설

1)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경	변경 후		
변경	-	수도공급설비	종로구 창신동 23-322 일원	4,317	-	4,317	-	중로2-A와 일부 중복결정 (361.3㎡)

■ 수도공급설비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 사유
-	수도공급설비	도로 중복결정	수도공급시설로의 진출입로 개선을 위한 도로 확폭 필요로 인해 중로 2-A(낙산5길)와 일부 중복결정

라. 공공 · 문화체육시설

1)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신설)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신설	-	공공청사	창신동 131-15 일원	-	증) 962.4	962.4	-	복합 (종로구, 행안부)

※ 사업시행자 조성 후 기부채납

■ 공공청사 결정(신설)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공공청사	· 신설 · 토지 962.4㎡	· 토지의 활용도 및 주민 접근성을 고려하여 파출소, 주민센터를 복합화하여 조성

■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건축 범위 결정(변경) 조서

건폐율(%)	용적률(%)	높이(층수)	비고
60	200	4층 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기존 건축물 높이 반영

■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건축 범위 결정(변경) 사유서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공공청사	신설	토지의 활용도 및 주민 접근성을 고려하여 파출소, 주민센터를 복합화하여 조성

2)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폐지	-	사회복지시설	창신동 23-344	661	감) 661	-	-	-
신설	-	사회복지시설	창신동 130-21 일원	-	증) 2,038.8	2,038.8	-	복합 (서울시, 종로구)

※ 사업시행자 조성 후 기부채납
※ 기부채납시설 채납행정청(관리청) 지정 내용은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도서에 첨부

■ 사회복지시설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사회복지시설	· 폐지 · 토지 661㎡	· 토지의 활용도 및 시설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분산된 기존 사회복지관, 여성문화센터, 패션제조지원센터, 재생시설(회오리마당)을 복합화하여 신설
-	사회복지시설	· 신설 · 토지 2,038.8㎡	

■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건축 범위 결정(변경) 조서

건폐율(%)	용적률(%)	높이(층수)	비고
60	200	4층 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기존 건축물 높이 반영

■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건축 범위 결정(변경) 사유서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사회복지시설	신설	· 토지의 활용도 및 시설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분산된 기존 사회복지관, 여성문화센터, 패션제조지원센터, 재생시설(회오리마당) 복합화하여 신설

6.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시설 구분	시설의 종류	법정기준	법정면적(㎡)	계획면적(㎡)	비고
합 계		-	-	9,291.00	-
주민 공동 시설	소 계	{500㎡+(2,667세대x2㎡)}x1.25	7,292.5 이상	8,738.00	-
	경로당	2,000세대 이상(서울시 주택조례)	858.4 이상	966.40	-
	어린이집	2,000세대 이상(서울시 주택조례)	858.4 이상	923.30	-
	작은도서관	2,000세대 이상(서울시 주택조례)	364.7 이상	433.00	-
	다함께돌봄센터	전용면적 최소 66 이상(아동복지법)	66.00 이상	449.61	
	주민운동시설	-	-	1,230.34	옥외
	어린이놀이터	-	-	2,387.48	5개소
	주민공동시설A (공공개방)	-	-	1,409.09	독서실, 주민회의실 등
	주민공동시설B	-	-	938.78	게스트하우스, 피트니스 등
관리사무소		10㎡+{(2,667세대-50)x0.05㎡}	140.85 이상	553.00	방재실, MDF실, 경비실 포함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8조, 제55조의2), 서울특별시 주택조례(제8조의4)

7. 기존 건축물의 정비 · 개량에 관한 계획

구분	구역 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정비개량계획(동)					비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계	존치	개수	철거 후 신축	철거 이주	
신설	창신동 23-606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143,148.7	획지1	99,605.0	창신동 23-606번지 일대	841	3	-	838	-	-

8. 건축물에 관한 계획

가. 획지 및 주택규모 등에 관한 계획

<table>
<tr><th rowspan="2">구분</th><th colspan="2">구역 구분</th><th colspan="2">가구 또는
획지 구분</th><th rowspan="2">위치</th><th rowspan="2">주용도</th><th rowspan="2">건폐율
(%)</th><th rowspan="2">정비계획
(상한)
용적률(%)</th><th rowspan="2">높이(m)/
최고층수</th></tr>
<tr><th>명칭</th><th>면적(㎡)</th><th>명칭</th><th>면적(㎡)</th></tr>
<tr><td rowspan="4">신설</td><td rowspan="4">창신동
23-606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td><td rowspan="4">143,148.7</td><td>획지1</td><td>99,605.0</td><td>창신동 23-606
일대</td><td>공동주택
및 부대
복리시설</td><td>60
이하</td><td>230
이하</td><td>해발 125m 이하/
지상 29층 이하
(영역별 높이 준수)</td></tr>
<tr><td>획지2</td><td>968.6</td><td>창신동 23-703
일대</td><td>종교용지</td><td colspan="3" rowspan="3">관련 법규에 의함</td></tr>
<tr><td>획지3</td><td>582.4</td><td>창신동
626-3 일대</td><td>종교용지</td></tr>
<tr><td>획지4</td><td>572.1</td><td>창신동 131-121
일대</td><td>종교용지</td></tr>
<tr><td>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td><td colspan="8">· 주택공급계획 : 2,667세대 (분양 2,342세대, 임대 325세대)
- 주택 건립 규모
<table>
<tr><th colspan="2">구분</th><th>총 세대수</th><th>분양 세대수</th><th>임대 세대수</th><th>구성비(%)</th></tr>
<tr><td colspan="2">합 계</td><td>2,667</td><td>2,342</td><td>325</td><td>100.0</td></tr>
<tr><td rowspan="5">공동
주택</td><td>전용 39.99㎡</td><td>509</td><td>379</td><td>130</td><td>19.1</td></tr>
<tr><td>전용 49.99㎡</td><td>97</td><td>97</td><td>-</td><td>3.6</td></tr>
<tr><td>전용 59.99㎡</td><td>1,423</td><td>1,228</td><td>195</td><td>53.4</td></tr>
<tr><td>전용 84.99㎡</td><td>539</td><td>539</td><td>-</td><td>20.2</td></tr>
<tr><td>전용 104.99㎡</td><td>99</td><td>99</td><td>-</td><td>3.7</td></tr>
</table>
- 임대주택 규모별 건설 비율
<table>
<tr><th>규모</th><th>합계</th><th>전용 40㎡ 미만</th><th>전용 40㎡
~50㎡ 미만</th><th>전용 50㎡
~60㎡ 미만</th></tr>
<tr><td>세대수</td><td>325</td><td>130</td><td>-</td><td>195</td></tr>
<tr><td>비율(%)</td><td>100.0</td><td>40.0</td><td>-</td><td>60.0</td></tr>
</table>
※ 주택 확보 관련 규정
- 85㎡ 이하 규모의 주택이 전체 세대수에서 차지하는 비율 : 80% 이상
→ 계획 : 96.3%(2,568세대)
- 임대주택 건설 1) 주택 전체 세대수의 15% 이상 또는 전체 연면적의 10% 이상
→ 계획 : 주택 전체 연면적의 10.01%(39,330.22㎡)
2) 전체 임대주택 세대수의 30% 이상 또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 이상을 40㎡ 이하로 건설
→ 계획 : 전체 임대주택 세대수의 40.0%(130세대)
- 국민주택규모 주택(85㎡이하) 건설 : 해당 없음</td></tr>
</table>

<table>
<tr><td>심의완화 사항</td><td>· 기준용적률 완화 : 20%p
- 「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전용면적 60㎡ 이하 분양주택 공급하는 경우 최대 20% 이내 기준용적률 완화 적용
<table>
<tr><th>세부내용</th><th>완화기준</th><th>최대 완화량</th><th>적용 완화량</th></tr>
<tr><td>40㎡ 이하
분양주택 공급</td><td>기준용적률 완화량에 해당하는 연면적은
전용면적 40㎡ 이하 주택으로 건설하여야 함</td><td>10%</td><td>10%</td></tr>
<tr><td>40~50㎡ 이하
분양주택 공급</td><td>기준용적률 완화량에 해당하는 연면적은
전용면적 40~50㎡ 이하 주택으로 건설하여야 함</td><td>15%</td><td>-</td></tr>
<tr><td>50~60㎡ 이하
분양주택 공급</td><td>기준용적률 완화량에 해당하는 연면적은
전용면적 50~60㎡ 이하 주택으로 건설하여야 함</td><td>10%</td><td>10%</td></tr>
</table>
· 「건축법」 제73조에 따라 특별건축구역에 한하여 「건축법」 제61조 및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에 따른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의 완화 적용
·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어린이집, 개방형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건축법」 제56조에 따른 건축물의 용적률 완화 적용</td></tr>
<tr><td>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td><td>· 창신길, 낙산5길, 창신6가길, 창신5길변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3m 이상
· 절개지변 : 절개지 전면으로부터 20m 이상
· 공공보행통로변 : 공공보행통로변으로부터 2m 이상
· 연접부지(획지2, 획지4,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사회복지시설, 공공청사)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 이상</td></tr>
<tr><td>공공보행통로 계획</td><td>· 공공보행통로① (폭원 12m 이상) : 중앙공원 ~ 대상지 ~ 낙산5길(채석장 전망대)
· 공공보행통로② (폭원 8m 이상) : 한양도성(시점) ~ 낙산5길(종점)
※ 공공보행통로②는 정비계획 지침도의 기종점을 기준으로 보행 흐름 및 단지의 열린 경관 형성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형 조정 가능
※ 공공보행통로는 향후 지역권을 설정하여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함</td></tr>
</table>

나. 용적률 계획

<table>
<tr><th>구분</th><th colspan="9">산정내용</th></tr>
<tr><td rowspan="3">토지
이용
계획
(㎡)</td><td rowspan="3">계
(구역면적)</td><td rowspan="3">대지면적
(공동주택)</td><td colspan="3">신설정비기반시설 제공 면적
(도로, 공원)</td><td rowspan="3">신설
정비기반시설
내 국·공유지</td><td rowspan="3">대지 내
용도 폐지되는
기존 기반시설
국·공유지</td><td colspan="2">기반시설 제공 면적
(공공청사, 사회복지시설,
지하도로)</td></tr>
<tr><td rowspan="2">계</td><td rowspan="2">도로</td><td rowspan="2">공원</td><td>토지
(대지지분 포함)</td><td>건축물
(환산부지)</td></tr>
<tr><td>143,148.7</td><td>99,605.0</td><td>38,419.47</td><td>20,894.27</td><td>17,525.20</td><td>19,529.24</td><td>11,273.68</td><td>3,001.17</td><td>2,877.84</td></tr>
<tr><td>공공시설 등
부지 제공면적
(순부담)</td><td colspan="9">· 순부담 면적 : 12,122.30㎡
= 신설정비기반시설 제공 면적 + 기반시설 제공 면적(대지지분 면적 포함) - 신설 정비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 대지 내 용도폐지 되는 기존 기반시설 국·공유지 - 기존 시설면적*
= 38,419.47㎡ + 3,001.17㎡ + 2,877.84㎡ - 19,529.20㎡ - 11,273.68㎡ - 1,373.3* = 12,122.30㎡
※ 기존 시설면적 관련 사항: 기존시설 교환원칙으로 증가분에 한하여 기부채납 인정
- 사회복지관, 문화센터, 회오리마당 :
토지 (1,373.3㎡ → 2,038.8㎡), 건축물 연면적(2,672.1㎡ → 3,684.42㎡)
- 산마루놀이터 기존 면적(3,869.0㎡)은 신설 정비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면적에 포함</td></tr>
<tr><td>기 준
용적률</td><td colspan="9">· 기준용적률 : 190% 이하
· 기준용적률 완화 적용 시 : 210% 이하
= 기준용적률(190%) + 소형(분양)주택 인센티브(20.0%)
※ 소형(분양)주택 인센티브 = 20.0%
<table>
<tr><th>구 분</th><th>최대 완화량 기준</th><th>분양주택 공급 연면적</th><th>적용 완화량</th></tr>
<tr><td>전용 40㎡ 이하</td><td>99,605㎡×10% = 9,960㎡</td><td>53.87㎡×379세대 = 20,416.73㎡</td><td>10%</td></tr>
<tr><td>전용 50~60㎡ 이하</td><td>99,605㎡×10% = 9,960㎡</td><td>80.81㎡×1,325세대= 107,073.25㎡</td><td>10%</td></tr>
</table></td></tr>
<tr><td>허 용
용적률</td><td colspan="9">· 허용용적률 : 226.4% 이하
= 기준용적률 +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 사업성 보정계수)
= 210% + (8.2% × 2.0) = 226.4%
※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8.2%)
- 항목 ① 공공보행통로
= 기준용적률 × (조성면적/대지면적) × a (a=1 이하)
= 190% × (4,296.9 / 99,605.0) × 1 = 8.20% (최대 10% 적용 가능)
※ 사업성 보정계수 (2.0)
= 서울시 평균공시지가(2024년 기준) / 대상지 평균공시지가
= 5,969,319(원) / 2,668,245(원) = 2.2 (최대 2.0 적용)</td></tr>
</table>

가중치 산정

· 가중치 : 0.9839

= 공공시설 등 부지의 허용용적률 / 상한 인센티브 적용 사업부지 허용용적률

= 195.0% / 198.2% = 0.9839

※ 공공시설 등 부지의 허용용적률 : 195.00%

$$= \frac{150\% \times 632.03㎡ + 198.2\% \times (6,939.36㎡ + 3,001.17㎡ - 1,373.30㎡) + 218.2\% \times (45.16㎡)}{(7,616.55㎡ + 3,001.17㎡ - 1,373.30㎡)}$$

구분		면적(㎡)				
		합계	제1종	제2종	제3종	비고
정비 기반 시설	① 토지면적	38,419.47	7,252.04	30,818.26	349.17	도로,공원
	② 계획기반시설 내 기존 국공유지	19,529.24	6,620.01	12,605.22	304.01	산마루 놀이터 포함
	③ 용도폐지되는 기존 국공유지	11,273.68	-	11,273.68	-	-
	④ 순부담면적 (= ①-②-③)	7,616.55	632.03	6,939.36	45.16	-
기반 시설	⑤ 토지 (대지지분 포함)	3,001.17	-	3,001.17	-	-
	⑥ 기존 시설면적	1,373.30	-	1,373.30	-	사회복지관, 문화센터, 재생시설 (회오리마당)
⑧ 공공시설 등 부지의 허용용적률		195.00%	150%	198.2%	218.2%	-

※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사업부지 허용용적률 : 198.2%

= 기준용적률 +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기준용적률 완화 및 사업성 보정계수 미적용)

= 190% + 8.2%

상한 용적률

· 상한용적률 : 230% 이하 (건축계획용적률 229.31%)

= 허용용적률 + 상한 인센티브 적용 사업부지 허용용적률 × [(1.3 × 가중치 × α) + (0.7 × β)]

= 226.4% + 198.2% × [(1.3 × 0.9839 × 0.0928) + (0.7 × 0.0289)]

※ 공공시설등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현금 및 건축물 환산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연면적(증가분) × 건축비(㎡당)) / 부지가액
① 사회복지시설 = (1,012.33㎡ × 4,188,000원) / 4,638,326원 = 830.95
② 공공청사 = (1,927.55㎡ × 4,019,000원) / 4,638,326원 = 1,518.34
③ 지하도로 = (연장 × 건축비(m당)) / 부지가액
= (134m × 20,125,000원) / 4,638,326원 = 528.55
∴ 총 건축물 환산부지 면적 = ① + ② + ③ = 2,877.84

※ α = 공공시설등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공공시설등 부지로 제공한 후 대지면적
= (④+⑤-⑥) / 획지 면적 = 9,244.42 / 99,605.00 = 0.0928

※ β = 공공시설등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현금 및 건축물 환산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공공시설등 부지로 제공한 후 대지면적
= 2,877.84(증가분) / 99,605.00 = 0.0289

	※ 신속통합기획 가이드라인 반영 - 낙산 능선, 절개지 등 지형 현황, 종로변 개발, 문화재(한양도성, 안양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획 · 낙산 연접부 : 낙산공원 인접 및 능선변 급경사 고려하여 중층(18층 내외)으로 계획 · 단지 중앙부 : 채석장절개지 고려 중저층(4~18층 내외)으로 계획 · 성곽 ↔: 채석장절개지 연계부 : 성곽 조망 등 고려하여 중저층(10층 이하) 계획 · 종로 이면부 : 최고 29층 내외로 계획 - 가로변 보행자의 개방감 확보. 주변 지역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대상지 경계부 중·저층 계획 - 능선변 급경사 및 지형의 단차를 활용하여 중첩경관 창출

다. 임대주택 및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 모든 공공주택은 원칙적으로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주택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시 해당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는 그에 따른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 공공주택 등은 세입자 주거대책 및 도시 저소득 주민의 입주기회 확대 등 공공목적의 공공주택 용도로 정하며, 서울시에 매각(처분)하여야 한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50% 이상을 공공주택(법적상한용적률 완화)으로 건설하여야 한다.
- 공공주택은 특정 세대 및 평면 타입에 편중되지 않고 분산 배치하며 공공주택과 분양주택이 소셜믹스 되도록 계획 및 시공하여야 한다.

1) 재개발 의무 임대주택 건설계획

구분	내용		
계획기준	· 주택 전체 세대수의 15% 또는 연면적의 10% 이상 (정비계획으로 정한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함으로써 증가 된 세대수는 제외) · 임대 주택 세대수의 30% 이상 또는 건설하는 주택 세대수의 5% 이상을 주거전용면적이 40㎡이하 규모의 임대주택으로 건설		
건립 규모	세대수	전체비율	임대주택비율
합계	325	12.2	100.0
전용 39㎡	130	4.9	40.0
전용 59㎡	195	7.3	60.0

2) 법적상한용적률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 해당 사항 없음

9. 환경보전,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구분	계 획 내 용	비고
환경보전	· 환경성 검토를 통해 정비구역 내 정비사업에 의한 환경 영향에 따라 종합적 방재계획 수립	-
재난방지	· 건축법의 방화에 관한 규정 및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화재에 대한 종합적 방재계획 수립 · 구역 주변의 우수관망을 충분히 설치토록 하며, 지구 내부로의 유입을 최소한으로 억제하도록 하여, 홍수, 수몰 등에 대한 방재계획 수립 · 진입로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통문제에 대한 처리방안 계획	-

10. 환경성 검토 결과

검토항목	목표 기준	현황 및 환경영향예측	환경영향최소화를 위한 저감방안	비고
비오톱 및 동·식물	비오톱 보전 등급 향상 동·식물상보호	· 비오톱유형평가 : 5등급 · 개별비오톱 : 평가제외 · 생태·자연도 : 3등급 · 현지조사시 사업대상지 및 주변지역으로 보호할 만한 동·식물은 분포치 않음	· 조경녹지 등 녹지공간의 확보 및 식재계획 수립 · 녹지 확보를 통한 비오톱 및 생태적 기능 향상 도모 · 체계적인 조경계획 수립을 통한 생물 서식환경 조성	-
녹지 네트워크	녹지연결성 확보	· 종로구 내 녹지지역 46.7% · 종로구 내 기타공원(유원지, 한강시민공원, 마을마당 등)이 대부분 공원 비중 차지	· 녹지공간 확보 및 식재 계획을 통한 주변과의 녹지 및 생태 단절 예방 · 생태징검돌(Stepping stone) 개념의 녹지 연결성 및 녹지체계 수립 · 생태면적률 41.01% 확보	-
토양	토양오염 최소화	· 공사시 건설장비 및 공사인부에 의한 토양오염 유발 가능성	· 공사시 현장내 폐유처리 등 금지 및 폐유보관시설 설치시 전량 전문 처리업체 위탁 처리 계획	-
지형·지질	지형·지질 영향 최소화	· 건축물 터파기 공사에 의한 절성토 비율 미미	· 현 지형을 고려한 계획 수립 · 발생 사토처리 계획 수립	-
물순환	자연물순환 유지	· 기 시가화 지역으로 불투수비율이 높은 주거지 및 상업지	· 사업대상지 내 충분한 녹지를 조성하여 법적기준 이상 적용 · 저감 효율이 높은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토록 함	-
바람·열	바람길 확보	· 사업대상지는 대부분 불투수비율이 높은 시가지 및 일부 녹지	· 건축물 계획 시 주풍향 고려하여 계획	-
대기질	대기오염 최소화	· 사업시행시 건설장비가동 등에 따른 대기오염 우려	· 사업시행시 비산먼지 발생 방지를 위한 저감대책 수립	-

검토항목	목표 기준	현황 및 환경영향예측	환경영향최소화를 위한 저감방안	비고
온실가스·에너지	에너지절약/효율극대화	· 사업시행 후 온실가스 및 에너지 배출량 산정	· 녹지공간 확보를 통한 이산화탄소 저장, 흡수가 가능토록 계획 및 신·재생에너지 확보	-
친환경적 자원순환	폐기물발생량 최소화	· 공사시 및 운영시 폐기물 발생 예상됨	· 종로구 폐기물 처리계획에 의거하여 적정 처리	-
소음·진동	규제기준 만족	· 공사시 소음·진동 영향 예상됨 · 운영시 인근 도로소음이 예상됨	· 가설방음판넬 및 가설휀스 설치 · 저소음, 저진동 장비사용	-

11. 정비사업 시행계획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예정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 예상 세대수	비고
조합방식 내지 지정개발자 방식 등	구역 지정 후 4년 이내	-	현황: 1,587세대 계획: 2,667세대 증) 1,080세대	-

12.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정비구역 주변 현황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비고
창신초등학교	· 교육시설의 보건관리와 환경위생 등에 초래하는 시설의 설치를 지양함 · 「소음진동규제법」 제23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의 정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되는 소음·진동을 규제 · 공사 시 교육환경 장애요소(소음·진동·먼지 등)의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계획 · 교육시설 이용시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계획 · 해당 관할 교육청의 협의 결과를 준수토록 계획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상대보호구역 : 학교경계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까지인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	-
한성여자중학교		
서일문화예술고등학교		
한성대학교		

13.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계획

정비구역 현황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계획			비고
	추진위/조합 설립 ~ 착공 전	착공 ~ 공사 완료	범죄예방설계 적용	
-	· 펜스 설치 및 유지 · 관리 · 1인 오전 · 오후 1회 우범지역 순찰 · 방범용 CCTV설치 운영	·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건축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규정 준수 안전 시공 · 안전관리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공사비 계상	· 방범용 CCTV는 사각지대에 설치 · 식재로 인해 밀폐된 공간이 발생되지 않는 식재 계획 수립(자연감시 고려)	-

Ⅱ. 지구단위계획 결정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	구역명	위 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창신동 23-606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23-606번지 일대	-	증) 143,148.7	143,148.7	-

2. 토지이용에 관한 결정

가. 용도지역 · 지구 결정(변경) 조서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면적(㎡)			비율(%)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143,148.7	-	143,148.7	100.0	-
제1종일반주거지역	7,252.0	-	7,252.0	5.1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135,547.5	감) 102,606.2	32,941.3	23.0	-
제2종일반주거지역	-	증) 102,606.2	102,606.2	71.7	-
제3종일반주거지역	349.2	-	349.2	0.2	-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	창신동 23-606번지 일대	제2종 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	제2종 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	32,941.3	노후 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 및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한 제2종일반주거지역 변경
			제2종 일반주거지역	102,606.2	

2) 용도지구 결정 조서 : 해당사항 없음

3. 기반시설 결정(변경) 조서

가. 교통시설

1)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 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유별	번호	폭원(m)								
폐지	소로	2	-	6	국지 도로	348	창신동 615-45	창신동 23-735	일반도로	-	-	창신11길
폐지	소로	2	-	6~8	국지 도로	100	창신동 595-327	창신동 595-327	일반도로	-	건설부고시 제432호 (1963.07.01.)	-
폐지	소로	3	1	6	국지 도로	82.4	창신동 610-68	창신동 610-21	일반도로	-	-	-
폐지	소로	3	2	4	국지 도로	24.6	창신동 610-21	창신동 610-22	일반도로	-	-	-
폐지	소로	3	3	4	국지 도로	20.7	창신동 23-854	창신동 610-4	일반도로	-	-	-
폐지	소로	3	4	4	국지 도로	25.6	창신동 23-533	창신동 23-534	일반도로	-	-	-
폐지	소로	3	5	3	보행자 전용 도로	62.1	창신동 23-556	창신동 23-554	일반도로	-	-	-
폐지	소로	3	-	4~6	-	138	창신동 601-2	창신동 601-9	-	-	-	-
기정	중로	2	B	15	국지 도로	140	창신동 23-216	창신동 23-393	일반도로	-	서울시고시 제2023-623호 (2024.12.19)	창신5길
변경	중로	2	B	15~33	국지 도로	140 (43)	창신동 23-878	창신동 23-878	일반도로	-	서울시고시 제2023-623호 (2024.12.19)	창신5길
기정	소로	2	1	8	국지 도로	725	창신동 615-263	창신동 570-4	-	-	서울시고시 제92-26호 (1992.01.29.)	창신길
변경	중로	1	A	12~20	집산 도로	1,066 (799)	창신동 611-19	창신동 530-1	-	-	-	낙산근린공원 및 중로3-C와 일부 중복결정
기정	소로	3	-	6	-	-	-	-	-	-	-	창신5길
변경	중로	3	A	6 (12)	집산 도로	262	창신동 570-3	창신동 107-1	일반도로	-	-	창신5길 시점변경(연장축소)
기정	소로	3	-	6	국지 도로	515	창신동 627-49	창신동 627-85	-	-	건설부고시 제46호 (1976.04.07.)	-
변경	소로	3	A	6	국지 도로	515 (12)	창신동 627-49	창신동 627-85	-	-	건설부고시 제46호 (1976.04.07.)	낙산근린공원과 일부 중복결정
신설	중로	2	A	15~22	집산 도로	413	창신동 611-19	창신동 23-878	일반도로	-	-	낙산5길 중로3-C 및 낙산배수지와 일부 중복결정
신설	중로	3	C	12	집산 도로	257 (204)	창신동 627-179 (창신동 627-254)	창신동 23-878 (창신동 23-878)	일반도로	-	-	창신길, 낙산5길, 낙산근린공원과 일부 중복결정

※ 사업시행자 조성 후 기부채납

※ ( )는 구역 내 사항임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 사유
변경 전	변경 후		
소로 2-	-	도로 폐지 - B: 6m / L: 348m	· 정비계획 입안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폐지
소로 2-	-	도로 폐지 - B: 6~8m / L: 100m	· 정비계획 입안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폐지
소로 3-1	-	도로 폐지 - B: 6m / L: 82.4m	· 정비계획 입안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폐지
소로 3-2	-	도로 폐지 - B: 4m / L: 24.6m	· 정비계획 입안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폐지
소로 3-3	-	도로 폐지 - B: 4m / L: 20.7m	· 정비계획 입안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폐지
소로 3-4	-	도로 폐지 - B: 4m / L: 25.6m	· 정비계획 입안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폐지
소로 3-5	-	도로 폐지 - B: 3m / L: 62.1m	· 정비계획 입안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폐지
소로 3-	-	도로 폐지 - B: 4~6m / L: 138m	· 정비계획 입안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폐지
중로 2-B	중로 2-B	변경 : 도로 폭원 확장 - B: 15~33m / L: 140m	· 창신동 23-2일대 개발구역 도로와 연계성 확보 및 노선버스 운행을 고려한 회차 공간 신설
소로 2-1	중로 1-A	변경: 도로 선형 변경 - B: 8m → 12~20m - L: 725m → 1,066m(799m)	· 종로-낙산길과의 연결 및 교통량 고려한 도로 연장 및 폭원 확장 · 낙산근린공원 및 중로 3-C와 일부 중복결정
소로 3-	중로 3-A	변경: 도로 연장 축소 및 폭원 확장 - B: 6m → 6m(12m) - L: -m → 262m	· 창신길, 지봉로와의 연결 및 창신시장 이용자의 안전한 접근 위해 도로 연장 및 폭원 확장 ※ 시점변경(연장축소)
소로 3-	소로 3-A	변경: 공원 중복결정 - B: 6m / L: 515m(12m)	· 신설되는 창신길 북측 낙산근린공원과 일부 중복결정
-	중로 2-A	도로 신설 - B: 15~22m / L: 413m	· 창신동 23-2일대 개발구역 도로와 연계성 확보를 위한 신설
-	중로 3-C	도로 신설 - B: 12m / L: 257m(204m)	· 교통량 분산 및 동서방향 연결(율곡로~지봉로)을 통한 접근성 향상을 위해 지하도로 신설 * 인접 지역 개발시 구간별 노선 확장 추진 - 도로(안): 충신동 53-22 ~ 창신동 23-815

※ ( )는 구역 내 사항임

2) 도시계획시설(도로) 입체적 결정(신설) 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구분	기정(m)	변경(m)	변경 후(m)	최초 결정일	비고
신설	중로3-C	도로 (지하도로)	창신동 627-179 일대	길이	-	204	204	-	-
				폭	-	12	12		
				높이 (해수면 기준)	-	53	53		

※ 사업시행자 조성 후 부동산등기법 제69조에 따른 지상권 설정 및 구조물 기부채납
※ 입체적 결정 범위 높이의 기준은 추후 계획지반고를 고려하여 재설정하고, 측량을 통해 확정 예정

■ 지하도로 입체적 결정(신설)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중로3-C	도로 (지하도로)	·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 L=204m B=12m	· 율곡로와 지봉로 사이의 연계를 위한 지하도로 계획

3)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폐지) 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폐지	-	창이 거주자 우선 주차장	종로구 창신동 23-611	405	감) 405	-	-	-
폐지	-	낙산 거주자 우선 주차장	종로구 창신동 23-343	725	감) 725	-	종로구 제2001-82호 (2001.07.28.)	-

■ 주차장 결정(폐지)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 사유
-	창이 거주자 우선 주차장	폐지	정비계획 입안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 폐지
-	낙산 거주자 우선 주차장	폐지	정비계획 입안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 폐지

나. 공간시설

1)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치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경	변경 후		
변경	낙산근린공원	근린 공원	종로구 창신동 615-279 일원	182,191.8 (6,055.3)	증) 11,014.9 (증) 5,389.9)	193,206.7 (11,445.2)	총독부 고시 제208호 (1940.3.12.)	중로3-C 및 창신길과 일부 중복결정
신설	문화공원	문화 공원	종로구 창신동 23-334 일원	-	증) 2,414.4	2,414.4	-	쌈지마당 일대
신설	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	종로구 창신동 23-878 일원	-	증) 4,774.8	4,774.8	-	산마루놀이터 (도시재생시설)

※ ( )는 구역 내 사항임

※ 구역 내 낙산근린공원은 중로3-C와 일부 중복결정 된 면적(1,109.2㎡) 포함

※ 낙산근린공원 변경 면적 중 5,625.0㎡는 창신동 629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으로 증가

■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 사유
-	낙산근린공원	변경	기존 낙산공원과의 녹지공간 연계를 위해 공원 면적 및 형태 변경
-	문화공원	신설	기존 쌈지마당을 공원화하여 채석장전망대와 연계되는 휴게공간 조성
-	어린이공원	신설	도시재생시설(산마루놀이터)의 기존 공원 기능 유지·확대를 통해 학습·놀이공간으로 조성

다. 유통 및 공급시설

1)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경	변경 후		
변경	-	수도공급설비	종로구 창신동 23-322 일원	4,317	-	4,317	-	중로2-A와 일부 중복결정 (361.3㎡)

■ 수도공급설비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 사유
-	수도공급설비	도로 중복결정	수도공급시설로의 진출입로 개선을 위한 도로 확폭 필요로 인해 중로 2-A(낙산5길)와 일부 중복결정

라. 공공 · 문화체육시설

1)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신설)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신설	-	공공청사	창신동 131-15 일원	-	증) 962.4	962.4	-	복합 (종로구, 행안부)

※ 사업시행자 조성 후 기부채납

■ 공공청사 결정(신설)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공공청사	신설 토지 962.4㎡	토지의 활용도 및 주민 접근성을 고려하여 파출소, 주민센터를 복합화하여 조성

■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건축 범위 결정(변경) 조서

건폐율(%)	용적률(%)	높이(층수)	비고
60	200	4층 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기존 건축물 높이 반영

■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건축 범위 결정(변경) 사유서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공공청사	신설	토지의 활용도 및 주민 접근성을 고려하여 파출소, 주민센터를 복합화하여 조성

2)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폐지	-	사회복지시설	창신동 23-344	661	감) 661	-	-	-
신설	-	사회복지시설	창신동 130-21 일원	-	증) 2,038.8	2,038.8	-	복합 (서울시, 종로구)

※ 사업시행자 조성 후 기부채납
※ 기부채납시설 채납행정청(관리청) 지정 내용은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도서에 첨부

■ 사회복지시설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사회복지시설	폐지 토지 661㎡	토지의 활용도 및 시설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분산된 기존 사회복지관, 여성문화센터, 패션제조지원센터, 재생시설(회오리마당)을 복합화하여 신설
-	사회복지시설	신설 토지 2,038.8㎡	

■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건축 범위 결정(변경) 조서

건폐율(%)	용적률(%)	높이(층수)	비고
60	200	4층 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기존 건축물 높이 반영

■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건축 범위 결정(변경) 사유서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사회복지시설	신설	토지의 활용도 및 시설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분산된 기존 사회복지관, 여성문화센터, 패션제조지원센터, 재생시설(회오리마당) 복합화하여 신설

4.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가.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 조서

구분	가구	면적(㎡)			비율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획지	합 계	-	증) 101,728.1	101,728.1	100.0	-
	1	-	증) 99,605.0	99,605.0	97.9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2	-	증) 968.6	968.6	0.9	종교용지
	3	-	증) 582.4	582.4	0.6	종교용지
	4	-	증) 572.1	572.1	0.6	종교용지

나.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관한 결정조서

1)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결정조서

구분		가구	용도	비고
신설	허용용도	획지1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 「주택법」 제2조, 제13호, 제14호에 의한 부대 · 복리시설	허용용도 외의 용도는 불허
		획지2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의 종교시설	
		획지3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의 종교시설	
		획지4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의 종교시설	

2) 건축물 개발밀도(건폐율, 용적률, 높이)

가) 건폐율 계획

구분		지역	건폐율	비고
신설	획지1	제2종일반주거지역	60% 이하	-
	획지2, 3, 4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60% 이하	-

나) 용적률 계획

구분		용적률(%)			비고
		기준	허용	상한	
신설	획지1	210 이하	226.4 이하	230 이하	소형주택 건립에 따른 기준용적률 상향 적용 등
	획지2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에 의한 용도지역을 따름			-
	획지3				
	획지4				

다) 높이 계획

구분		지역	높이기준	비고
신설	획지1	제2종일반주거지역	29층 이하(125m 이하)	영역별 높이 준수

※ 신속통합기획 높이계획 준수

– 낙산 능선, 절개지 등 지형 현황, 종로변 개발, 문화재(한양도성, 안양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획

· 낙산 연접부 : 낙산공원 인접 및 능선변 급경사 고려하여 중층(18층 이하)으로 계획

· 단지 중앙부 : 채석장절개지 고려 중저층(4~18층 이하)으로 계획

· 성곽 ↔: 채석장절개지 연계부 : 성곽 조망 등 고려하여 중저층(10층 이하) 계획

· 종로 이면부 : 최고 29층 이하로 계획

– 가로변 보행자의 개방감 확보. 주변 지역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대상지 경계부 중·저층 계획

– 능선변 급경사 및 지형의 단차를 활용하여 중첩경관 창출

다. 건축물 배치 계획

1) 건축선에 관한 계획

구분		적용위치	계획내용	비고
건축 한계선	획지1	· 창신길, 낙산5길, 창신6가길, 창신5길변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3m 이상	-
		· 절개지변	· 절개지 전면으로부터 20m 이상	-
		· 공공보행통로변	· 공공보행통로변으로부터 2m 이상	-
		· 연접부지 (획지2, 획지4,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사회복지시설, 공공청사)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 이상	-
	획지2	· 낙산5길변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1.5m 이상	-
		· 연접부지 (근린공원)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m 이상	-
	획지3	· 창신길변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1.5m 이상	-
		· 연접부지 (근린공원)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m 이상	-
	획지4	· 창신5길변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3m 이상	-
		· 연접부지 (획지1, 사회복지시설)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m 이상	-
	공공청사	· 창신길변, 창신5길변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3m 이상	-
		· 연접부지 (획지1)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m 이상	-
	사회복지시설	· 창신5길변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3m 이상	-
		· 연접부지 (획지1, 획지4, 어린이공원)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m 이상	-
벽면 한계선	획지1	· 창신길변	· 건축한계선으로부터 3m 이상	-
근린생활시설	획지1	· 창신길변(대상지 북측, 남서측) · 낙산5길변 · 창신5길변	· 기존 창신시장의 위치, 주변 개발계획(창신동 23-2일대)과 연계하고 창신길, 낙산공원(북측) 가로활성화 고려하여 우선 배치	-

2) 가로활성화시설 배치구간

구분		적용위치	계획내용
가로활성화시설 배치구간	연도형상가 배치구간	창신길변 낙산5길변 창신5길변	· 가로활성화시설 배치구간은 가로활성화가 필요한 주요 가로로서 가로의 1/2이상 대지안의 공지 또는 건축한계선에 맞추어 건축물의 저층부(도로 레벨 이상)에 가로활성화 시설을 연도형으로 조성 · 가로활성화시설의 권장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라. 경관계획(배치 · 형태포함)

1) 건축물의 배치에 관한 계획

구분	적용위치	계획내용
건축물의 배치	획지1	· 건폐율을 고려한 대상지 내 적절한 통풍, 채광, 개방감 등을 확보하도록 계획 · 기존 창신·숭인동 일대 구릉지와 조화로운 경관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구릉지 본연의 지형을 드러내는 지형 순응형 배치 계획
건물 진출입구	획지1	· 보행약자의 동선이 단절되지 않도록 단차가 발생하는 지점에 경사로 또는 엘리베이터 계획

2) 건축물 형태 및 외관에 관한 계획

구분	적용위치	계획내용	비고
건축물 외부형태	획지1	저층부는 지형, 길 등을 활용하여 커뮤니티 시설 등 가로활성화 및 공동이용시설을 배치하고 지형, 길 등을 고려하여 프라이버시가 침해되지 않도록 계획	-
입면계획	획지1	건축물 저층부와 고층부를 구분하여 변화감 있는 입면계획 및 주변 단지와 연계된 디자인 계획	-

3) 경관에 관한 계획

구분	적용위치	계획내용
높이	획지1	능선, 절개지 등 지형 특성과 종로변 개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영역별로 차별화된 유연한 높이계획 적용
스카이라인	획지1	구릉지형에 순응하며 한양도성, 안양암 등 주변 지역과 인접한 문화재와 조화로운 도시경관 창출할 수 있도록 스카이라인 계획

마.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 조서

1) 대지 내 공지 등에 관한 결정

구분	적용위치	계획내용	비고
공공보행통로	획지1	· 공공보행통로① (폭원 12m 이상)계획 – 한양도성 ~ 근린공원 ~ 대상지 ~ 채석장전망대 연결 · 공공보행통로② (폭원 8m 이상)계획 – 한양도성 ~ 창신동 629번지 일대 ~ 대상지 ~ 문화공원 연결	–

※ 공공보행통로는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 관리운영기준 및 매뉴얼’에 따라 지역권 설정하여야 함

– 지역권 : 통행 등 일정목적으로 타인토지를 자기토지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등기로 설정)

2) 환경관리 계획

검토항목	목표 기준	현황 및 환경영향예측	환경영향최소화를 위한 저감방안	비고
비오톱 및 동·식물	비오톱 보전 등급 향상 동·식물상보호	· 비오톱유형평가 : 5등급 · 개별비오톱 : 평가제외 · 생태·자연도 : 3등급 · 현지조사시 사업대상지 및 주변지역으로 보호할 만한 동·식물은 분포치 않음	· 조경녹지 등 녹지공간의 확보 및 식재계획 수립 · 녹지 확보를 통한 비오톱 및 생태적 기능 향상 도모 · 체계적인 조경계획 수립을 통한 생물 서식환경 조성	–
녹지 네트워크	녹지연결성 확보	· 종로구 내 녹지지역 46.7% · 종로구 내 기타공원(유원지, 한강시민공원, 마을마당 등)이 대부분 공원 비중 차지	· 녹지공간 확보 및 식재 계획을 통한 주변과의 녹지 및 생태 단절 예방 · 생태징검돌(Stepping stone) 개념의 녹지 연결성 및 녹지체계 수립 · 생태면적률 41.01% 확보	–

검토항목	목표 기준	현황 및 환경영향예측	환경영향최소화를 위한 저감방안	비고
토양	토양오염 최소화	· 공사시 건설장비 및 공사인부에 의한 토양오염 유발 가능성	· 공사시 현장내 폐유처리 등 금지 및 폐유보관시설 설치시 전량 전문 처리업체 위탁처리 계획	-
지형·지질	지형·지질 영향 최소화	· 건축물 터파기 공사에 의한 절성토 비율 미미	· 현 지형을 고려한 계획 수립 · 발생 사토처리 계획 수립	-
물순환	자연물순환 유지	· 기 시가화 지역으로 불투수비율이 높은 주거지 및 상업지	· 사업대상지 내 충분한 녹지를 조성하여 법적기준 이상 적용 · 저감 효율이 높은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토록 함	-
바람·열	바람길 확보	· 사업대상지는 대부분 불투수비율이 높은 시가지 및 일부 녹지	· 건축물 계획 시 주풍향 고려하여 계획	-
대기질	대기오염 최소화	· 사업시행시 건설장비가동 등에 따른 대기오염우려	· 사업시행시 비산먼지 발생 방지를 위한 저감대책 수립	-
온실가스·에너지	에너지절약 /효율극대화	· 사업시행 후 온실가스 및 에너지 배출량 산정	· 녹지공간 확보를 통한 이산화탄소 저장, 흡수가능토록 계획 및 신·재생에너지 확보	-
친환경적 자원순환	폐기물발생량 최소화	· 공사시 및 운영시 폐기물 발생 예상됨	· 종로구 폐기물 처리계획에 의거하여 적정 처리	-
소음·진동	규제기준 만족	· 공사시 소음·진동 영향 예상됨 · 운영시 인근 도로소음이 예상됨	· 가설방음판넬 및 가설휀스 설치 · 저소음, 저진동 장비사용	-

3) 임대주택 및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건설에 관한 결정 조서

- 모든 공공주택은 원칙적으로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주택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시 해당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는 그에 따른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 공공주택 등은 세입자 주거대책 및 도시저소득 주민의 입주기회 확대 등 공공목적의 공공주택 용도로 정하며, 서울시에 매각(처분)하여야 한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50% 이상을 공공주택(법적상한용적률 완화)으로 건설하여야 한다.
- 공공주택은 특정 세대 및 평면 타입에 편중되지 않고 분산 배치하며 공공주택과 분양주택이 소셜믹스 되도록 계획 및 시공하여야 한다.
- 주택의 규모별 비율

구분	내용		
계획기준	· 주택 전체 세대수의 15% 또는 연면적의 10% 이상 (정비계획으로 정한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함으로써 증가 된 세대수는 제외) · 임대 주택 세대수의 30% 이상 또는 건설하는 주택 세대수의 5% 이상을 주거전용면적이 40㎡이하 규모의 임대주택으로 건설		
건립 규모	세대수	전체비율	임대주택비율
합계	325	12.2	100.0
전용 39㎡	130	4.9	40.0
전용 59㎡	195	7.3	60.0

4) 교통처리에 관한 결정

구 분	적용지역	계 획 내 용
차량출입 불허구간	창신길변	·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한 차량출입불허구간 지정
	낙산5길변	
	창신5길변	
차량출입구	창신길변 2개소	· 단지 내 출입을 위한 차량출입구 개설
	낙산5길변 1개소	

Ⅲ. 2025년 제7차(’ 25.07.18) 도시계획 수권분과위원회 심의결과 : 수정가결

구분	심의의견	조치계획	비고
수정사항	• 높이계획, 공공기여계획 및 순부담 면적은 구청장 수정가결 요청(안) 반영	• 구청장 수정가결 요청사항 정비계획(안) 반영함	반영
	• 신속통합기획 가이드라인을 준용하여 대상지 여건에 맞는 건축계획 적용을 위해 용적률 계획, 건폐율 계획 및 주택공급계획은 주관부서 수정가결 요청(안) 반영	• 용적률계획 : 상한250%이하 → 상한230%이하 • 건폐율계획 : 60%(변경없음) • 주택공급계획 : 2,566세대 → 2,667세대	반영
	• 공원명칭 단순화 할 것(문화공원①, 어린이공원① → 문화공원, 어린이공원)	• 도시계획시설 결정 “공원명칭” 조정 문화공원①, 어린이공원① → 문화공원, 어린이공원	반영
	•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 변경(창신길 및 낙산5길과 중복결정된 근린공원은 실제 이용현황 등을 고려하여 중복결정 미설정)	• 창신길 및 낙산5길은 근린공원과 중복결정 없이 시설별 각각 결정(근린공원, 도로)	반영
	• 건축물 환산부지 산정 시 건축물 기존 연면적 제외한 증가분 반영 [건축물 환산부지 면적(2,662.69㎡), 순부담 면적(11,907.12㎡)]	• 건축물 환산부지 산정 시 구역내 기존시설인 “종로종합사회복지관, 회오리마당, 동부여성문화센터” 는 기존 연면적 제외한 증가분만 반영 • 공공건축물의 계획면적(시-구 채납청 지정 합의서 기준)을 환산하여 순부담 면적으로 반영함 - 건축물 환산부지 면적 : 2,558.57㎡ → 2,877.84㎡ - 순부담 면적 : 11,802.99㎡ → 12,122.30㎡	반영
조건사항	• 율곡로 ~ 지봉로를 연결하는 대상지 내외부 지하터널계획을 정비계획 고시 전까지 도로 관련 부서 및 자치구와 협의를 통해 실현 가능성, 단계별 실행 방안 및 비용 분담 방안 등 정리할 것	• (대상지 내부) 대상지 동-서 연결도로(창신동 23-606~창신동 629) 지하터널 계획(약 134m)은 해당 정비사업 시행 과정에서 사업시행자(조합 등)의 비용 부담으로 설치 • (대상지 외부) 대상지 동-서 연결도로(창신동 23-606~창신동 629)와 지봉로를 연결하는 대상지 외부 지하터널 계획(약 150m)은 해당 정비구역의 사업시행 계획인가 시점에서 추진하는 교통영향평가 결과를 토대로 실현 가능성 및 실행방안 구체화 검토 - 대상지 동~서 연결도로와 주변도로 연결시 발생할 수 있는 교통수요 및 교통분산량 등을 예측하고 지하터널에 대한 경제성 분석(B/C) 등으로 도로 연결 필요성 및 사업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실행방안 검토 추진 - 대상지 외부 지하터널은 인접 대상지인 창신동 23일대 정비구역 내의 종로구에서 시행 예정인 자원순환센터 설치 사업과 연계하여 실행방안 검토 추진	반영

Ⅳ. 관련도면 : 붙임 참조

1. 정비구역 결정도(신설)
2. 정비계획 결정도(신설)
3. 용도지역 · 지구 결정도(기정/변경)
4. 도시계획시설 결정도(기정/변경)
5. 영역별 높이계획도(신설)
6.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신설)

※ 첨부된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등(그 외 세부관계도면은 첨부 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Ⅴ.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도서 : 생략

Ⅵ. 열람장소 :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주거정비과(☎02-2133-7208), 종로구 도시개발과(☎02-2148-2682)에 관계도서를 비치 및 열람하고 있습니다.

■ 정비구역 결정도(신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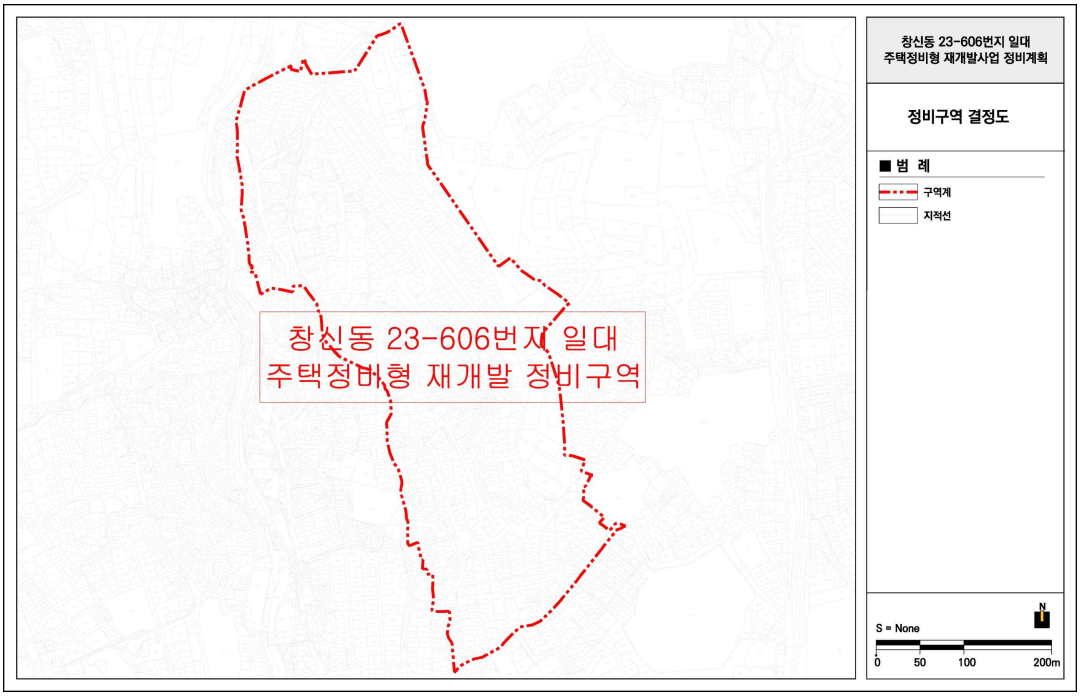

■ 정비계획 결정도(신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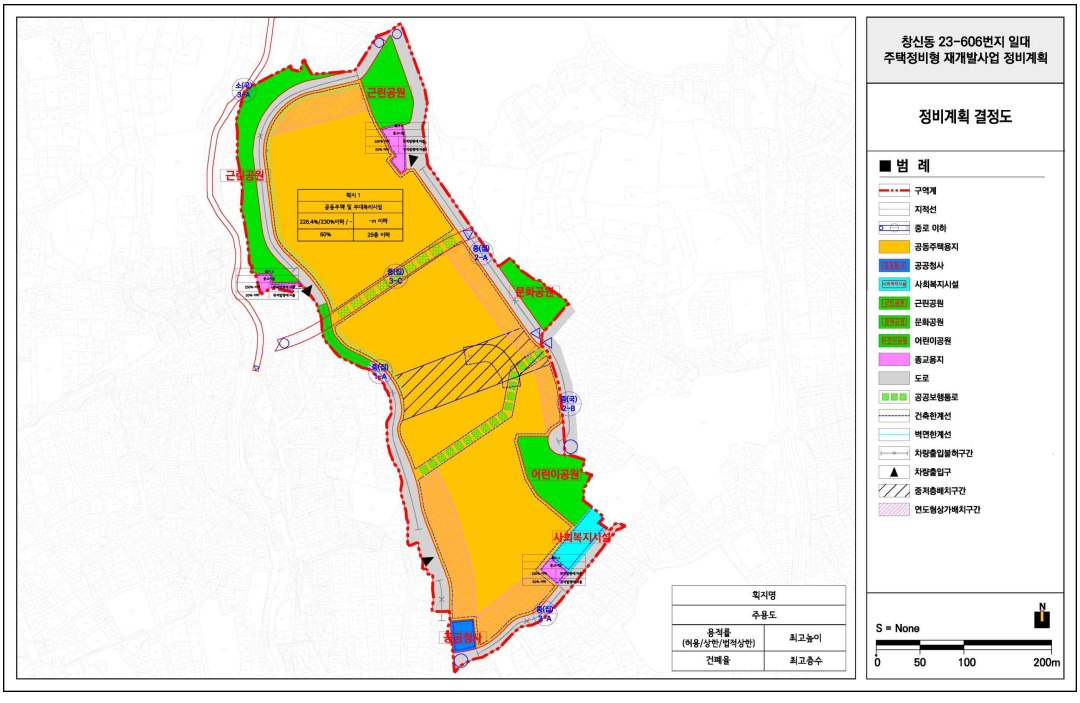

■ 용도지역 결정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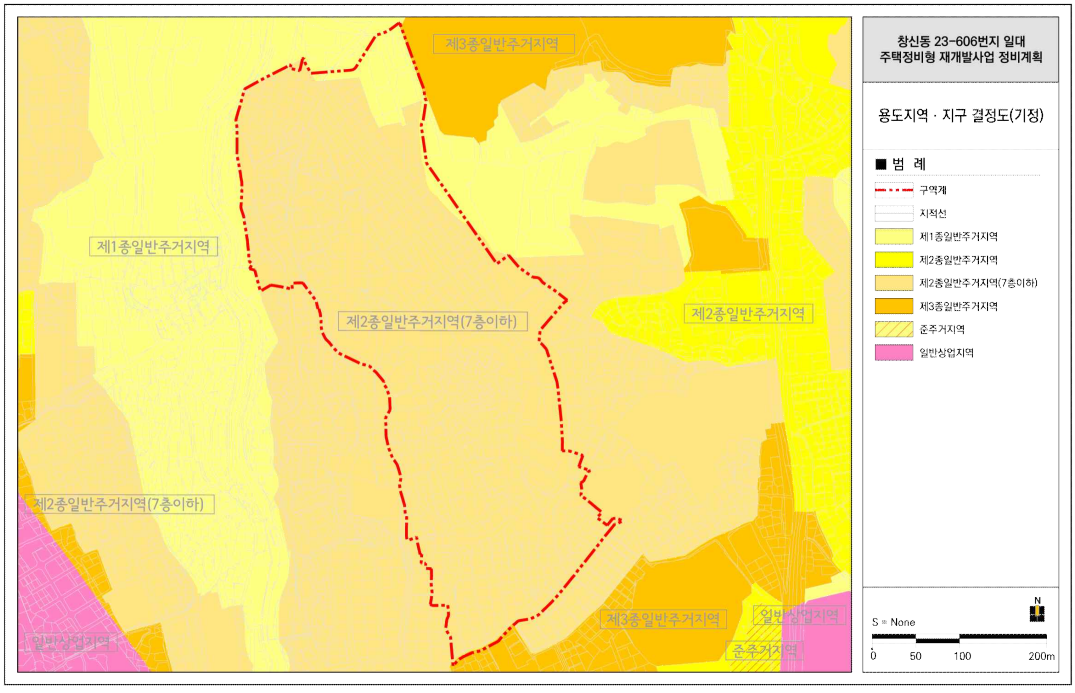

■ 용도지역 결정도(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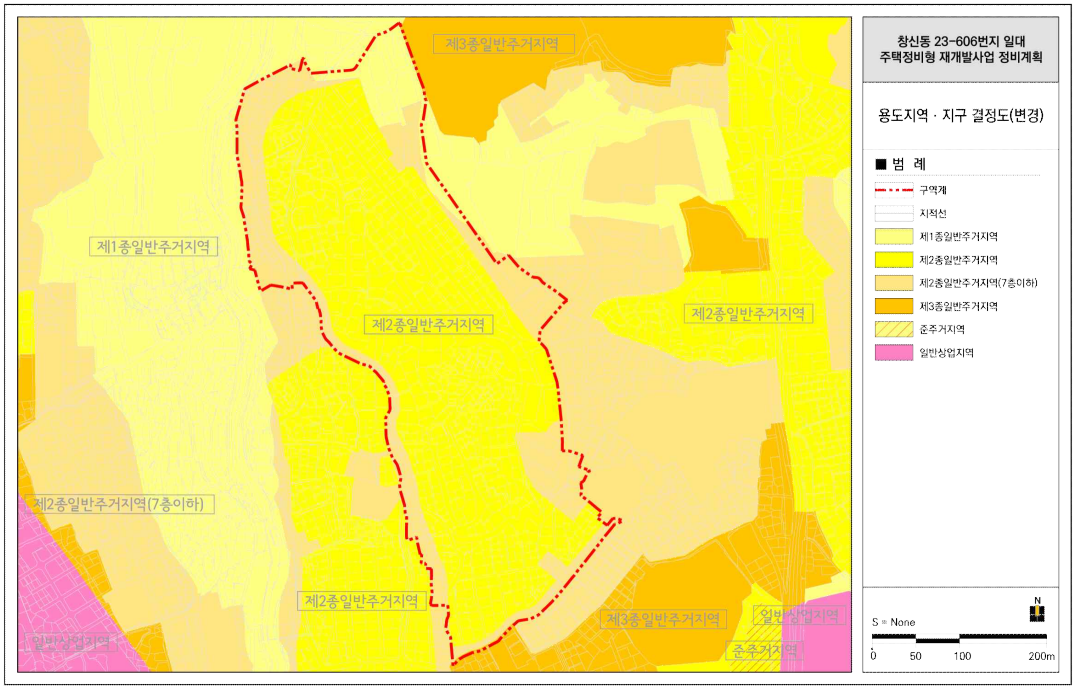

■ 도시계획시설 결정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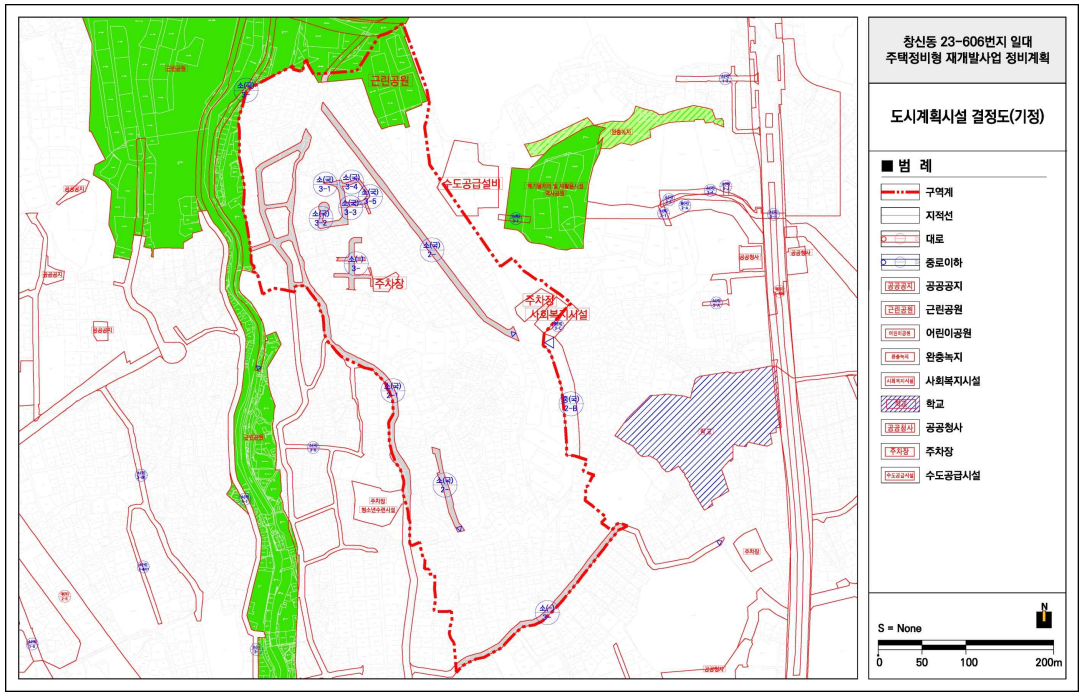

■ 도시계획시설 결정도(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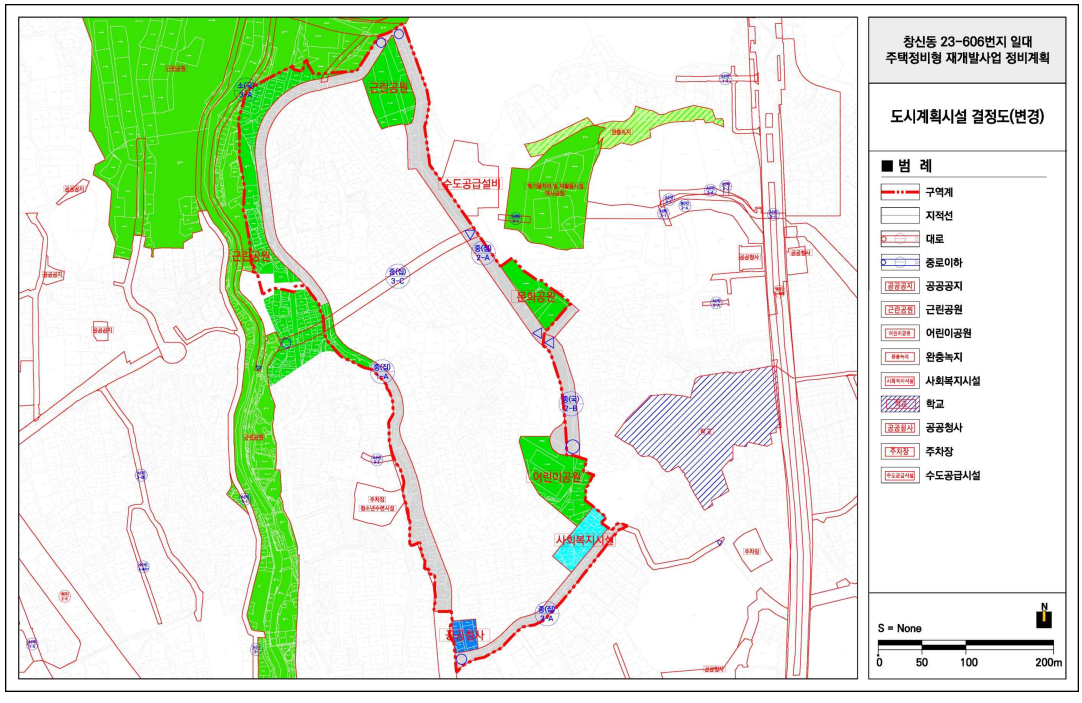

■ 영역별 높이계획도(신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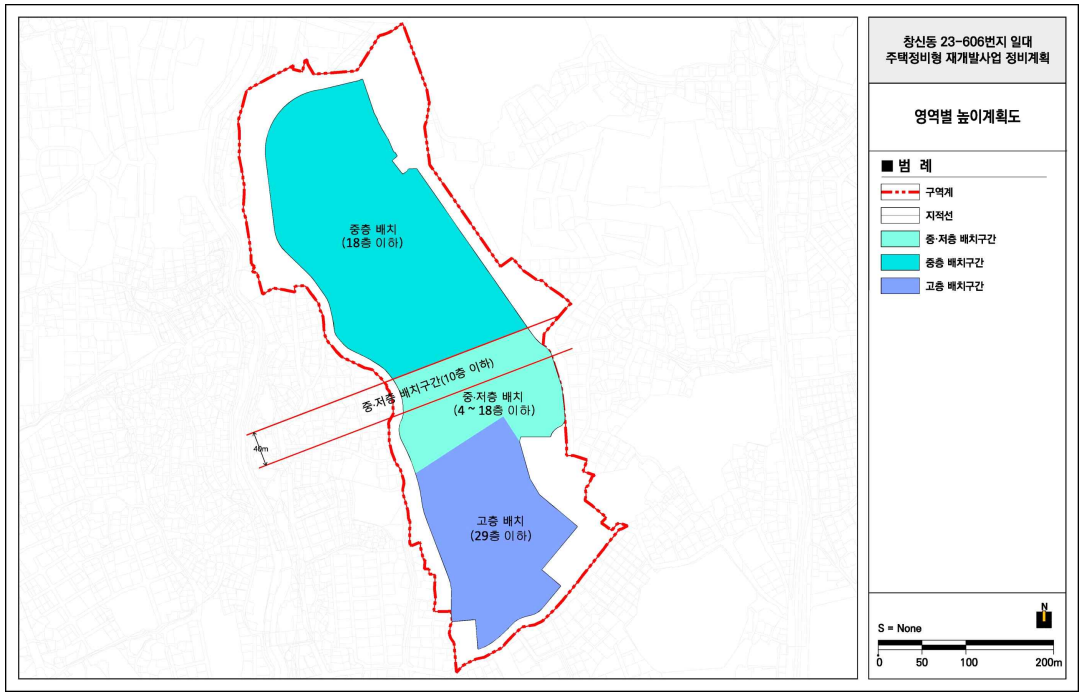

■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신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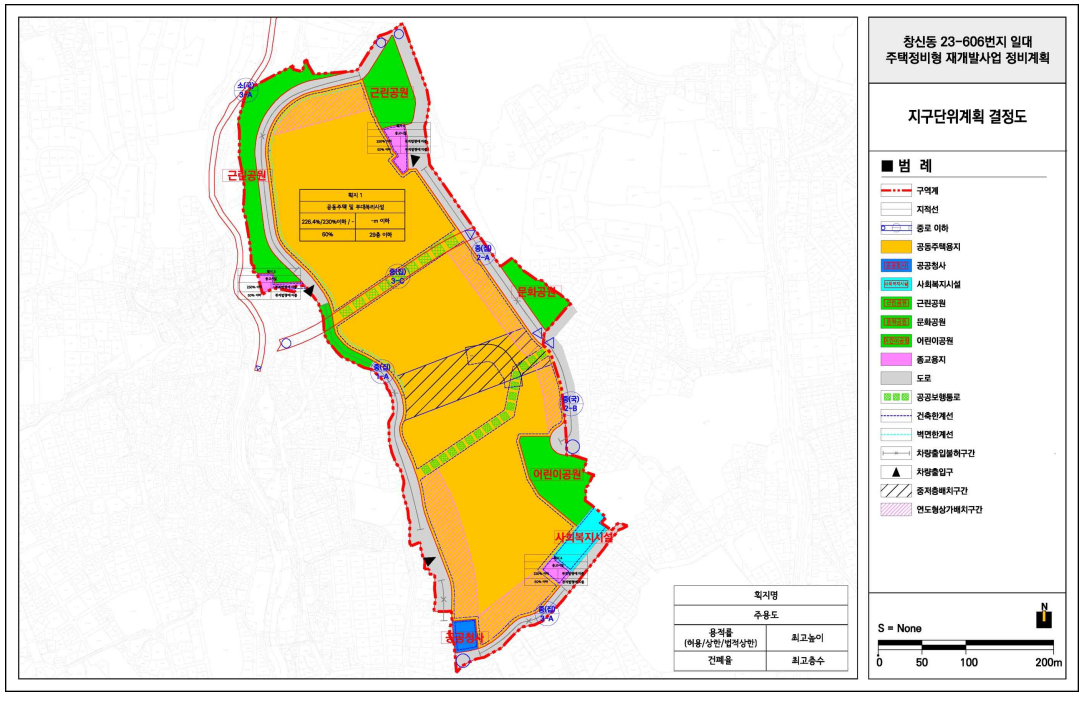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630호

창신동 629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9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6조에 따라 2025년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2025. 07. 18.) 심의(수정가결)를 거쳐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도시정비법 제1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13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1. 정비구역의 지정 조서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신설	창신동 629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9번지 일대	-	증) 92,190.8	92,190.8	-

2. 토지이용계획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합 계		92,190.8	100.0	-
정비기반시설 등	소 계	18,687.4	20.3	-
	도 로	10,990.0	12.0	-
	공 원	5,625.0	6.1	-
	주차장, 청소년수련시설	2,072.4	2.2	공공청사
획지	소 계	73,503.4	79.7	-
	공동주택용지	68,680.9	74.4	-
	지원기능용지	2,072.3	2.3	-
	종교용지	2,750.2	3.0	4개소

3. 용도지역 · 지구 결정(변경) 조서

가. 용도지역

구분		면적(㎡)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합 계		92,190.8	-	92,190.8	100.0	-
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377.1	-	377.1	0.4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75,396.8	감) 60,221.7	15,175.1	16.5	-
	제2종일반주거지역	-	증) 60,221.7	60,221.7	65.3	-
	제3종일반주거지역	14,040.2	-	14,040.2	15.2	-
	준주거지역	1,844.8	-	1,844.8	2.0	-
일반상업지역		531.9	-	531.9	0.6	-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	창신동 629번지 일대	제2종 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	제2종 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	15,175.1	노후 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 및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한 제2종일반주거지역 변경
			제2종 일반주거지역	60,221.7	

나. 용도지구 : 해당사항 없음

4.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토지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은 정비구역 지정도서 참조)

가. 추정 비례율 산출근거

구분	항목		금액(천원)
수입	소계		1,726,867,405
	분양주택	조합원분양	1,295,584,000
		일반분양	320,700,000
	임대주택	의무임대	98,255,175
		국민주택규모	-
	기타시설	근린생활시설	12,328,230
	매출부가세		-
지출	소계		908,186,200
	공사비		637,501,565
	제사업경비		270,684,635
종전자산 추정액			715,130,082
추정비례율	114.48% = [총수입(1,726,867,405천원) - 총지출(908,186,200천원)] / 종전자산 추정액(715,130,082천원)		

※상기 비례율은 추정값으로 추후 관리처분계획인가 시 개별 물건에 대한 종전자산 감정평가 및 공사비, 분양가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공사비 및 분양가 변동표

구분		공사비 변동				
		90%	95%	100%	105%	110%
분양가 변동	110%	151.33%	144.98%	138.63%	132.28%	125.93%
	105%	139.25%	132.90%	126.55%	120.20%	113.85%

구분		공사비 변동				
		90%	95%	100%	105%	110%
	100%	127.18%	120.83%	114.48%	108.13%	101.78%
	95%	115.11%	108.76%	102.41%	96.06%	89.71%
	90%	103.03%	96.68%	90.33%	83.98%	77.63%

5.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가. 교통시설

1)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 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유별	번호	폭원(m)								
폐지	소로	3	8	4	국지 도로	114	창신동 639-55	창신동 635-1	-	-	서울특별시고시 제92-26호 (1992.01.29.)	-
기정	소로	2	1	8	국지 도로	725	창신동 615-263	창신동 570-4	-	-	서울특별시고시 제92-26호 (1992.01.29.)	-
변경	중로	1	A	12~20 (15~20)	집산 도로	1,066 (267)	창신동 615-263	창신동 570-4	-	-	서울특별시고시 제92-26호 (1992.01.29.)	낙산근린공원 및 중로3-C와 일부 중복결정
기정	-	-	-	-	-	-	-	-	-	-	-	서울시고시 제2013-329호의 환원도로 반영
변경	소로	2	A	8	국지 도로	380	창신동 627-341	창신동 660-138	일반 도로	-	-	-
기정	소로	3	-	6	-	-	-	-	-	-	-	-
변경	중로	3	A	12	집산 도로	262	창신동 570-3	창신동 107-1	일반 도로	-	-	시점변경(연장축소)
신설	중로	3	C	12	집산 도로	257 (53)	창신동 627-179	창신동 23-878	일반 도로	-	-	창신길, 낙산5길, 낙산근린공원과 일부

구분	규 모				기 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유별	번호	폭원(m)								
							(창신동 627-179)	(창신동 627-19)				중복결정
신설	소로	3	A	6	국지 도로	28	창신동 570-14	창신동 684	일반 도로	-	-	-
신설	소로	3	B	6	국지 도로	92	창신동 675	창신동 570-4	일반 도로	-	-	-
신설	소로	3	C	6~50	국지 도로	105	창신동 572-1	창신동 536-2	일반 도로	-	-	-
신설	소로	3	D	7	국지 도로	51	창신동 570-4	창신동 561-5	일반 도로	-	-	-
신설	소로	3	F	6	국지 도로	35	창신동 634-2	창신동 634-2	일반 도로	-	-	-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329호 따라 창신 · 숭인재정비촉진지구 해제에 따라 환원된 도로 반영

※ 사업시행자 조성 후 기부채납

※ ( )는 구역 내 사항임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 사유
변경 전	변경 후		
소로 3-8	-	도로 폐지 - B: 4m / L: 114m	· 정비계획 입안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폐지
소로 2-1	중로 1-A	변경: 도로 선형 변경 - B: 8m → 12~20m(15~20) - L: 725m → 1,066m(267m)	· 종로와 낙산길과의 연결 및 교통량 고려한 도로 연장 및 폭원 확장 · 낙산근린공원과 중복결정
-	소로 2-A	변경: 도로 선형 변경 - B: 8m - L: 725m → 380m	· 단지 내 접근성 및 종로의 교통량을 고려하여 일방통행 계획 결정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329호 따라 창신 · 숭인재정비촉진지구 해제에 따라 환원된 도로 반영
소로 3-	중로 3-A	변경: 도로 선형 변경 - B: -m → 12m - L: -m → 262m	· 창신길, 지봉로와의 연결 및 창신시장 이용자의 안전한 접근 위해 도로 연장 및 폭원 확장 ※ 창신동 23-606 연결도로로 연장축소(시점변경)
-	중로 3-C	도로 신설 - B: 12m / L: 257m(53m)	· 교통량 분산 및 동서방향 연결(율곡로~지봉로)을 통한 접근성 향상을 위해 지하도로 신설 * 인접 지역 개발시 구간별 노선 확장 추진 - 도로(안): 충신동 53-22 ~ 창신동 23-815
-	소로 3-A	도로 신설 - B: 6m / L: 28m	· 종로변 상업지역과의 연계성 및 이면부의 원활한 교통처리 고려해 도로 신설
-	소로 3-B	도로 신설 - B: 6m / L: 92m	· 종로변 상업지역과의 연계성 및 이면부의 원활한 교통처리 고려해 도로 신설
-	소로 3-C	도로 신설 - B: 6~50m / L: 105m	· 종로변 상업지역과의 연계성 및 이면부의 원활한 교통처리 고려해 도로 신설
-	소로 3-D	도로 신설 - B: 7m / L: 51m	· 종로변 상업지역과의 연계성 및 이면부의 원활한 교통처리 고려해 도로 신설
-	소로 3-F	도로 신설 - B: 6m / L: 35m	· 창신제일교회로의 진출입을 위한 도로 신설

※ ( )는 구역 내 사항임

2)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변경	-	주차장	종로구 창신동 641	2,072.4	-	2,072.4	종로구고시 제2015-13호 (2015.2.12.)	선형 변경 청소년수련시설 중복결정

■ 주차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 사유
-	주차장	변경	건축계획에 따른 주차장 부지 정형화로 인한 선형 변경

나. 공간시설

1)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치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경	변경 후		
변경	낙산근린공원	근린 공원	종로구 창신동 615-279 일원	182,191.8 (-)	증) 11,014.9 (증) 5,625.0)	193,206.7 (5,625.0)	총독부 고시 제208호 (1940.3.12.)	중로3-C 및 창신길과 일부 중복결정

※ ( )는 구역 내 사항임

※ 낙산근린공원 변경 면적 중 5,389.9㎡는 창신동 23-606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으로 증가

■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 사유
-	낙산근린공원	변경	기존 낙산공원과의 녹지공간 연계를 위해 공원 면적 및 형태 변경

다. 공공 · 문화체육시설

1) 도시계획시설(청소년수련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변경	-	청소년수련시설	종로구 창신동 641	2,072.4	-	2,072.4	종로구고시 제2015-13호 (2015.2.12.)	선형 변경 주차장 중복결정

■ 청소년수련시설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 사유
-	청소년수련시설	변경	건축계획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부지 정형화로 인한 선형 변경

6.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시설 구분	시설의 종류	법정기준	법정면적(㎡)	계획면적(㎡)	비고
합 계		-	-	10,125	-
주민 공동 시설	소 계	{500㎡+(1,875세대x2㎡)}x1.25	5,312.5 이상	9,775	-
	경로당	1,500세대 이상(서울시 주택조례)	725 이상	1,250	-
	어린이집	1,500세대 이상(서울시 주택조례)	725 이상	800	-
	작은도서관	1,500세대 이상(서울시 주택조례)	298 이상	350	문고 등
	다함께돌봄센터	최소 전용66㎡ 이상(아동복지법)	66.0 이상	1,200	-
	주민운동시설	-	-	1,500	4개소

시설 구분	시설의 종류	법정기준	법정면적(㎡)	계획면적(㎡)	비고
	어린이놀이터	-	-	2,675	4개소
	주민공동시설-1	-	-	1,000	독서실, 헬스, 게스트하우스 등
	주민공동시설-2 (공공개방)	-	-	1,000	도서관, 커뮤니티 등
관리사무소		10㎡+{(1,875세대-50) x 0.05㎡}	101.25 이상	350	경비실 2개소 포함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8조, 제55조의2), 서울특별시 주택조례(제8조의4)

7. 기존 건축물의 정비 · 개량에 관한 계획

구분	구역 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정비개량계획(동)					비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계	존치	개수	철거 후 신축	철거 이주	
신설	창신동 629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92,190.8	획지1	68,680.9	창신동 629번지 일대	609	4	-	605	-	-

8. 건축물에 관한 계획

가. 획지 및 주택규모 등에 관한 계획

구분	구역 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주된 용도	건폐율 (%)	정비계획 (상한) 용적률(%)	높이 (m) 최고층수
	명칭	면적(㎡)	명칭	면적(㎡)						
신설	창신동 629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92,190.8	획지1	전체	68,680.9	창신동 629번지 일대	공동주택 및 부대 복리시설	58.7 이하	243.3 이하	해발 125m/ 지상 29층 이하 (영역별 높이 준수)
				2종	59,666.7			60 이하	237.24 이하	
				3종	9,014.2			50 이하	283.23 이하	
			획지2	555.0		창신동 635-9번지 일대	지원기능용지	관련 법규에 의함		
			획지3	1,142.5		창신동 692번지 일대	지원기능용지			
			획지4	374.8		창신동 578-5번지 일대	지원기능용지			
			획지5	1,087.7		창신동 635-2번지 일대	종교용지			
			획지6	148.6		창신동 626-3번지 일대	종교용지			
			획지7	396.4		창신동 640-243번지 일대	종교용지			
			획지8	1,117.5		창신동 670번지 일대	종교용지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주택공급계획 : 1,875세대(분양 1,646세대, 임대 229세대)

- 전체 건립 규모

구분		총 세대수	분양 세대수	임대 세대수	구성비(%)
계		1,875	1,646	229	100.0
공동주택	전용 39.99㎡	350	264	86	18.7
	전용 59.99㎡	867	724	143	46.2
	전용 84.99㎡	658	658	-	35.1

- 임대주택 규모별 건설비율

규모	합계	전용 40㎡ 미만	전용 40㎡ ~50㎡ 미만	전용 50㎡ ~60㎡ 미만
세대수	229	86	-	143
비율(%)	100.0	37.6	-	62.4

※ 주택 확보 관련 규정

- 85㎡ 이하 규모의 주택이 전체 세대수에서 차지하는 비율 : 80% 이상
  → 계획 : 100.0%(1,875세대)
- 임대주택 건설 1) 주택 전체 세대수의 15% 이상 또는 전체 연면적의 10% 이상
  → 계획 : 주택 전체 연면적의 10.0%(24,040.17㎡)
  2) 전체 임대주택 세대수의 30% 이상 또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 이상을 40㎡ 이하로 건설
  → 계획 : 전체 임대주택 세대수의 37.6%(86세대)

국민주택규모 주택(85㎡이하) 건설 : 해당 없음

<table>
<tr><td>심의완화 사항</td><td>기준용적률 완화 : 20%
- 「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전용면적 60㎡ 이하 분양주택 공급하는 경우 최대 20% 이내 기준용적률 완화 적용
<table>
<tr><th>세부내용</th><th>완화기준</th><th>최대 완화량</th><th>적용 완화량</th></tr>
<tr><td>40㎡ 이하
분양주택 공급</td><td>기준용적률 완화량에 해당하는 연면적은
전용면적 40㎡ 이하 주택으로 건설하여야 함</td><td>10%</td><td>10%</td></tr>
<tr><td>40~50㎡ 이하
분양주택 공급</td><td>기준용적률 완화량에 해당하는 연면적은
전용면적 40~50㎡ 이하 주택으로 건설하여야 함</td><td>15%</td><td>-</td></tr>
<tr><td>50~60㎡ 이하
분양주택 공급</td><td>기준용적률 완화량에 해당하는 연면적은
전용면적 50~60㎡ 이하 주택으로 건설하여야 함</td><td>10%</td><td>10%</td></tr>
</table>
「건축법」 제73조에 따라 특별건축구역에 한하여 「건축법」 제61조 및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에 따른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의 완화 적용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어린이집, 개방형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건축법」 제56조에 따른 건축물의 용적률 완화 적용</td></tr>
<tr><td>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td><td>창신길변, 제일교회진입도로변, 이면도로변, 낙산성곽동길변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3m 이상
공공보행통로변 : 공공보행통로변으로부터 2m 이상
연접부지(획지5, 획지7, 획지8, 근린공원, 주차장·청소년수련시설)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 이상</td></tr>
<tr><td>공공보행통로 계획</td><td>공공보행통로① (폭원 8m 이상) : 한양도성(시점) ~ 낙산5길(종점)
공공보행통로② (폭원 12m 이상) : 낙산근린공원 ~ 창신동 629번지 일대 ~ 낙산5길(채석장 전망대)
※ 공공보행통로①은 정비계획 지침도의 기종점을 기준으로 보행 흐름 및 단지의 열린 경관 형성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형 조정 가능
※ 공공보행통로②은 근린공원 내 위치
※ 공공보행통로는 향후 구분지상권을 설정하여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함</td></tr>
</table>

나. 용적률 계획

<table>
<tr><td>구분</td><td colspan="9">산정내용</td></tr>
<tr><td rowspan="3">토지 이용 계획 (㎡)</td><td rowspan="2">계 (구역면적)</td><td rowspan="2">대지면적 (공동주택용지)</td><td colspan="3">신설 정비기반시설 제공 면적 (도로, 공원 등)</td><td rowspan="2">신설 정비기반시설 내 국·공유지</td><td rowspan="2">대지 내 용도폐지되는 기존 기반시설 국·공유지</td><td colspan="2">기반시설 제공 면적</td></tr>
<tr><td>계</td><td>도로</td><td>공원</td><td>토지 (대지지분 포함)</td><td>건축물 (환산부지)</td></tr>
<tr><td>92,190.8</td><td>68,680.9</td><td>16,615.0</td><td>10,990.0</td><td>5,625.0</td><td>4,576.6</td><td>8,735.3</td><td>-</td><td>-</td></tr>
<tr><td>공공시설 등 부지 제공면적 (순부담)</td><td colspan="9">순부담 면적 : 3,303.1㎡
= 정비기반시설 제공 면적 - 신설 정비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 대지 내 용도폐지 되는 기존 기반시설 국·공유지
= 16,615.0㎡ - 4,576.6㎡ - 8,735.3㎡ = 3,303.1㎡
※ 기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중인 “주차장·청소년수련시설(창신소담공영주차장 및 복합시설)” 제외</td></tr>
<tr><td>기 준 용적률</td><td colspan="9">· 기준용적률 : 192.6% 이하
· 기준용적률 완화 적용시 : 212.6% 이하
= 기준용적률 + 소형(분양)주택 인센티브(20.0%)</td></tr>
<tr><td>허 용 용적률</td><td colspan="9">· 허용용적률 : 225.7% 이하
= 기준용적률 +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 사업성 보정계수)</td></tr>
</table>

구분	면적(㎡)	기준용적률(면적 가중평균)		비고
		기준	완화시	
전체	68,680.9	192.6%	212.6%	소형주택 건립에 따른 기준용적률 상향(+20%)
제2종	59,666.7	190.0%	210.0%	
제3종	9,014.2	210.0%	230.0%	

※ 소형(분양)주택 인센티브 = 20.0%

구 분	최대 완화량 기준	분양주택 공급 연면적	적용 완화량
전용 40㎡ 이하	68,680.9㎡×10% = 6,868㎡	57.94㎡×261세대 = 15,122.34㎡	10%
전용 50~60㎡ 이하	68,680.9㎡×10% = 6,868㎡	82.13㎡×727세대 = 59,708.51㎡	10%

구분	면적(㎡)	허용용적률		비고
		산식	값	
전체	68,680.9	면적 가중평균	225.70%	허용인센티브(10%) 사업성보정계수(1.309)
제2종	59,666.7	210%+(10.0%×1.309)	223.09%	
제3종	9,014.2	230%+(10.0%×1.309)	243.09%	

구분	산정내용

※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10% ≒ ① + ② + ③)
- 항목 ① 공공보행통로
  = 기준용적률 X (조성면적 / 대지면적) X a (a=1 이하)
  = 192.6% X (667.3 / 68,680.9) X 1 = 1.87% (최대 10% 적용)
- 항목 ② 열린단지 조성 : 개방공간, 열린단지 조성기준 준수 = 5%
- 항목 ③ 돌봄시설(어린이집, 다함께돌봄센터)
  = 기준용적률 X ((돌봄시설면적 - 돌봄시설 의무면적) / 주민공동시설 의무면적) X a (a=0.1 이하)
  = 192.6% X ((2,000 - 791) / 5,312.5) X 0.1 = 4.38% (최대 5% 적용)

※ 사업성 보정계수
  = 서울시 평균공시지가(2024년 기준) / 대상지 평균공시지가
  = 5,969,319(원) / 4,561,602(원) = 1.309

가중치 산 정

· 가중치
= 공공시설 등 부지의 허용용적률 / 상한 인센티브 적용 사업부지 허용용적률

구 분	공공시설 등 부지의 허용용적률	상한 인센티브 적용 사업부지 허용용적률	가중치
제2종	280.88%	200%	1.40441
제3종		220%	1.27674

※ 공공시설 등 부지의 허용용적률 : 280.88%

$$= \frac{150\% \times 34.3㎡ + 200\% \times (-83.3㎡) + 220\% \times (1,610.9㎡) + 310\% \times (1,289.9㎡) + 410\% \times (451.3㎡)}{3,303.1㎡}$$

구분		면적(㎡) 합계	제1종	제2종	제3종	준주거	일반상업
정비기반시설	① 토지면적	16,615.0	34.9	10,754.1	3,463.9	1,830.2	531.9
	② 계획기반시설 내 기존 국공유지	4,576.6	-	3,250.9	716.6	528.5	80.6
	③ 용도폐지되는 기존 국공유지	8,735.3	0.6	7,586.5	1,136.36	11.79	-
	④ 순부담면적 (= ①-②-③)	3,303.1	34.3	- 83.3	1,610.9	1,289.9	451.3
⑤ 공공시설 등 부지의 허용용적률		280.88%	150%	200%	220%	310%	410%

※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사업부지 허용용적률
= 기준용적률 +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기준용적률 완화 및 사업성 보정계수 미적용)

구 분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사업부지 허용용적률
제2종	190%	10.0%	200%
제3종	210%	10.0%	220%

<table>
<tr><th>구분</th><th>산정내용</th></tr>
<tr><td>상 한
용적률</td><td>
상한용적률 : 243.3% 이하
= 허용용적률 + 상한 인센티브 적용 사업부지 허용용적률 × [(1.3 × 가중치 × α) + (0.7 × β)]
<table>
<tr><th>구 분</th><th>획지면적(㎡)</th><th>α</th><th>β</th><th>공공기여 비율</th><th>상한용적률</th></tr>
<tr><td colspan="5">가중평균</td><td>243.3%</td></tr>
<tr><td>제2종</td><td>59,666.7</td><td>0.0388</td><td>-</td><td>70%</td><td>237.24%
(건축계획용적률 236.01%)</td></tr>
<tr><td>제3종</td><td>9,014.2</td><td>0.1099</td><td>-</td><td>30%</td><td>283.23%
(건축계획용적률 277.50%)</td></tr>
</table>
※ 공공기여 비율 :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에서 정하는 최대 상한용적률 이하 범위에서 안배(추후 사업시행자가 결정)

※ α = (공공시설등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공공기여 비율) / 공공시설등 부지로 제공한 후 대지면적
[2종일반주거지역] = (3,303.1㎡×70%} / 59,666.7㎡ = 0.0388
[3종일반주거지역] = (3,303.1㎡×30%} / 9,014.2㎡ = 0.1099

※ 신속통합기획 높이계획 준수
- 낙산 능선, 절개지 등 지형 현황, 종로변 개발, 문화재(한양도성, 안양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획
· 한양도성 연접부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한양도성) 고려하여 저층(8층 이하)으로 계획
· 공원 연접부(북측) : 급경사 지형 및 채석장절개지 고려 중저층(6~12층 이하)으로 계획
· 성곽 ↔ 채석장절개지 연계부 : 성곽 조망 등 고려하여 중저층(10층 이하) 계획
· 종로 이면부 : 최고 29층 이하로 계획
- 가로변 보행자의 개방감 확보, 주변 지역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대상지 경계부 중저층 계획
</td></tr>
</table>

다. 임대주택 및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 모든 공공주택은 원칙적으로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주택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시 해당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는 그에 따른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 공공주택 등은 세입자 주거대책 및 도시저소득 주민의 입주기회 확대 등 공공목적의 공공주택 용도로 정하며, 서울시에 매각(처분)하여야 한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50% 이상을 공공주택(법적상한용적률 완화)으로 건설하여야 한다.
- 공공주택은 특정 세대 및 평면 타입에 편중되지 않고 분산 배치하며 공공주택과 분양주택이 소셜믹스 되도록 계획 및 시공하여야 한다.

1) 재개발 의무 임대주택 건설계획

구분	내용		
계획 기준	· 주택 전체 세대수의 15% 또는 연면적의 10% 이상 (정비계획으로 정한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함으로써 증가 된 세대수는 제외) · 임대 주택 세대수의 30% 이상 또는 건설하는 주택 세대수의 5% 이상을 주거전용면적이 40㎡이하 규모의 임대주택으로 건설		
건립규모	세대수	전체비율	임대주택비율
합계	229	12.2	100.0
전용 39㎡	86	4.6	37.6
전용 59㎡	143	7.6	62.4

2) 법적상한 용적률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 해당 사항 없음

9. 환경보전,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구분	계 획 내 용	비고
환경보전	환경성 검토를 통해 정비구역 내 정비사업에 의한 환경 영향에 따라 종합적 방재계획 수립	-
재난방지	건축법의 방화에 관한 규정 및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화재에 대한 종합적 방재계획 수립 구역 주변의 우수관망을 충분히 설치토록 하며, 지구 내부로의 유입을 최소한으로 억제하도록 하여, 홍수, 수몰 등에 대한 방재계획 수립 진입로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통문제에 대한 처리방안 계획	-

10. 환경성 검토 결과

검토항목	목표 기준	현황 및 환경영향예측	환경영향 최소화를 위한 저감방안	비고
비오톱 및 동·식물	비오톱 보전 등급 향상 및 동·식물상 보호	· 토지이용현황 : 주거 및 상업시설 · 비오톱유형평가 : 5등급 · 개별비오톱 : 평가제외 · 생태자연도 : 3등급 · 현지조사시 계획지구 및 주변 지역으로 보호할 만한 동·식물은 분포치 않음	· 조경녹지 등 녹지공간의 확보 및 식재 계획 수립 · 녹지 확보를 통한 비오톱 및 생태적 기능 향상 도모 · 체계적인 조경계획 수립을 통한 생물 서식환경 조성	-
녹지 네트워크	녹지 연결성 확보	· 종로구 내 녹지지역 : 46.7% · 종로구 내 개소수 기준 기타공원, 근린공원 등이 대부분의 비중 차지	· 녹지공간 확보 및 식재 계획을 통한 주변과의 녹지 및 생태 단절 예방 · 생태징검돌(Stepping stone) 개념의 녹지 연결성 및 녹지체계 수립 · 생태면적률 30.4% 확보	-
토양	토양오염 최소화	· 공사 시 건설 장비 및 공사 인부에 의한 토양오염 유발 가능성	· 공사시 현장 내 폐유처리 등 금지 및 폐유보관 시설 설치 시 전량 전문 처리업체 위탁 처리 계획	-
지형·지질	지형·지질 영향 최소화	· 건축물 터파기 공사에 의한 절성토 비율 미미	· 현 지형을 고려한 계획 수립 · 발생 사토처리 계획 수립	-

검토항목	목표 기준	현황 및 환경영향예측	환경영향 최소화를 위한 저감방안	비고
물순환	자연물순환 유지	· 대부분 불투수비율이 높은 주거지 및 상업시설	· 사업대상지 내 충분한 녹지를 조성하여 법적 기준 이상 적용 · 저감 효율이 높은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토록 할 계획	-
바람 및 열	바람길 확보	· 주풍향 고려 및 통경축 확보	· 건축물 계획 시 주풍향 고려하여 계획 · 바람 유입을 위한 통풍면적비 확보 · 열환경 개선효과가 있는 수종을 식재	-
대기질	대기오염 최소화	· 사업시행 시 건설장비 가동 등에 따른 대기오염 우려	· 사업시행 시 비산먼지 발생 방지를 위한 저감대책 수립	-
온실가스 · 에너지	에너지 절약 및 효율 극대화	· 사업시행 후 온실가스 및 에너지 배출량 산정	· 녹지공간 확보를 위한 이산화탄소 저장, 흡수가 가능토록 계획 및 신재생 에너지 확보	-
친환경적 자원순환	폐기물 발생량 최소화	· 공사 시 및 운영 시 폐기물 발생 예상됨	· 종로구 폐기물 처리계획에 의거하여 적정 처리	-
소음 · 진동	규제기준 만족	· 공사 시 소음 · 진동 영향 예상됨 · 운영 시 인근 도로 소음 예상됨	· 가설방음판넬 및 이동식방음벽 설치 · 저소음, 저진동 장비 사용	-

11. 정비사업 시행계획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예정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비고
조합방식 내지 지정개발자 방식 등	구역 지정 후 4년 이내	-	현행 1,639세대 계획 1,875세대 (증) 236세대)	-

12.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 해당 사항 없음

13.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계획

정비구역 현황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계획			비고
	추진위/조합 설립 ~ 착공 전	착공 ~ 공사 완료	범죄예방설계 적용	
-	펜스 설치 및 유지 · 관리 1인 오전 · 오후 1회 우범지역 순찰 방범용 CCTV설치 운영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건축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규정 준수 안전 시공 안전관리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공사비 계상	방범용 CCTV는 사각지대에 설치 식재로 인해 밀폐된 공간이 발생되지 않는 식재 계획 수립(자연감시 고려)	-

Ⅱ. 지구단위계획 결정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창신동 629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9번지 일대	-	증) 92,190.8	92,190.8	-

2. 토지이용에 관한 결정

가. 용도지역 · 지구 결정(변경) 조서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면적(㎡)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합 계		92,190.8	-	92,190.8	100.0	-
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377.1	-	377.1	0.4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75,396.8	감) 60,221.7	15,175.1	16.5	-
	제2종일반주거지역	-	증) 60,221.7	60,221.7	65.3	-
	제3종일반주거지역	14,040.2	-	14,040.2	15.2	-
	준주거지역	1,844.8	-	1,844.8	2.0	-
일반상업지역		531.9	-	531.9	0.6	-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	창신동 629번지 일대	제2종 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	제2종 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	15,175.1	노후 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 및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한 제2종일반주거지역 변경
			제2종 일반주거지역	60,221.7	

2) 용도지구 결정 조서 : 해당 사항 없음

3. 기반시설 결정(변경)조서

가. 교통시설

1)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 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유별	번호	폭원(m)								
폐지	소로	3	8	4	국지도로	114	창신동 639-55	창신동 635-1	-	-	서울특별시고시 제92-26호 (1992.01.29.)	-
기정	소로	2	1	8	국지도로	725	창신동 615-263	창신동 570-4	-	-	서울특별시고시 제92-26호 (1992.01.29.)	-
변경	중로	1	A	12~20 (15~20)	집산도로	1,066 (267)	창신동 615-263	창신동 570-4	-	-	서울특별시고시 제92-26호 (1992.01.29.)	낙산근린공원 및 중로3-C와 일부 중복결정
기정	-	-	-	-	-	-	-	-	-	-	-	서울시고시 제2013-329호의 환원도로 반영
변경	소로	2	A	8	국지도로	380	창신동 627-341	창신동 660-138	일반도로	-	-	-
기정	소로	3	-	6	-	-	-	-	-	-	-	-
변경	중로	3	A	12	집산도로	262	창신동 570-3	창신동 107-1	일반도로	-	-	시점변경(연장축소)
신설	중로	3	C	12	집산도로	257 (53)	창신동 627-179 (창신동 627-179)	창신동 23-878 (창신동 627-19)	일반도로	-	-	창신길, 낙산5길, 낙산근린공원과 일부 중복결정
신설	소로	3	A	6	국지도로	28	창신동 570-14	창신동 684	일반도로	-	-	-
신설	소로	3	B	6	국지도로	92	창신동 675	창신동 570-4	일반도로	-	-	-
신설	소로	3	C	6~50	국지도로	105	창신동 572-1	창신동 536-2	일반도로	-	-	-

구분	규 모				기 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유별	번호	폭원(m)								
신설	소로	3	D	7	국지도로	51	창신동 570-4	창신동 561-5	일반도로	-	-	-
신설	소로	3	F	6	국지도로	35	창신동 634-2	창신동 634-2	일반도로	-	-	-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329호 따라 창신·숭인재정비촉진지구 해제에 따라 환원된 도로 반영

※ 사업시행자 조성 후 기부채납

※ ( )는 구역 내 사항임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 사유
변경 전	변경 후		
소로 3-8	-	도로 폐지 - B: 4m / L: 114m	정비계획 입안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폐지
소로 2-1	중로 1-A	변경: 도로 선형 변경 - B: 8m → 12~20m(15~20) - L: 725m → 1,066m(267m)	종로와 낙산길과의 연결 및 교통량 고려한 도로 연장 및 폭원 확장 낙산근린공원과 중복결정
-	소로 2-A	변경: 도로 선형 변경 - B: 8m - L: 725m → 380m	단지 내 접근성 및 종로의 교통량을 고려하여 일방통행 계획 결정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329호 따라 창신 · 숭인재정비촉진지구 해제에 따라 환원된 도로 반영
소로 3-	중로 3-A	변경: 도로 선형 변경 - B: -m → 12m - L: -m → 262m	창신길, 지봉로와의 연결 및 창신시장 이용자의 안전한 접근 위해 도로 연장 및 폭원 확장 ※ 창신동 23-606 연결도로로 연장축소(시점변경)
-	중로 3-C	도로 신설 - B: 12m / L: 257m(53m)	교통량 분산 및 동서방향 연결(율곡로~지봉로)을 통한 접근성 향상을 위해 지하도로 신설 * 인접 지역 개발시 구간별 노선 확장 추진 - 도로(안): 충신동 53-22 ~ 창신동 23-815
-	소로 3-A	도로 신설 - B: 6m / L: 28m	종로변 상업지역과의 연계성 및 이면부의 원활한 교통처리 고려해 도로 신설
-	소로 3-B	도로 신설 - B: 6m / L: 92m	종로변 상업지역과의 연계성 및 이면부의 원활한 교통처리 고려해 도로 신설
-	소로 3-C	도로 신설 - B: 6~50m / L: 105m	종로변 상업지역과의 연계성 및 이면부의 원활한 교통처리 고려해 도로 신설
-	소로 3-D	도로 신설 - B: 7m / L: 51m	종로변 상업지역과의 연계성 및 이면부의 원활한 교통처리 고려해 도로 신설
-	소로 3-F	도로 신설 - B: 6m / L: 35m	창신제일교회로의 진출입을 위한 도로 신설

※ ( )는 구역 내 사항임

2)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변경	-	주차장	종로구 창신동 641	2,072.4	-	2,072.4	종로구고시 제2015-13호 (2015.2.12.)	선형 변경 청소년수련시설과 중복결정

■ 주차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 사유
-	주차장	변경	건축계획에 따른 주차장 부지 정형화로 인한 선형 변경

나. 공간시설

1)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치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경	변경 후		
변경	낙산근린공원	근린 공원	종로구 창신동 615-279 일원	182,191.8 (-)	증) 11,014.9 (증) 5,625.0)	193,206.7 (5,625.0)	총독부 고시 제208호 (1940.3.12.)	종로3-C 및 창신길과 일부 중복결정

※ ( )는 구역 내 사항임

※ 낙산근린공원 변경 면적 중 5,389.9㎡는 창신동 23-606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으로 증가

■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 사유
-	낙산근린공원	변경	기존 낙산공원과의 녹지공간 연계를 위해 공원 면적 및 형태 변경

다. 공공 · 문화체육시설

1) 도시계획시설(청소년수련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변경	-	청소년수련시설	종로구 창신동 641	2,072.4	-	2,072.4	종로구고시 제2015-13호 (2015.2.12.)	선형 변경 주차장과 중복결정

■ 청소년수련시설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 사유
-	청소년수련시설	변경	건축계획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부지 정형화로 인한 선형 변경

4.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가.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 조서

구분	가구	면적(㎡)			비율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획지	합 계	-	증) 73,503.4	73,503.4	100.0	-
	1	-	증) 68,680.9	68,680.9	93.4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2	-	증) 555.0	555.0	0.8	지원기능용지
	3	-	증) 1,142.5	1,142.5	1.6	지원기능용지
	4	-	증) 374.8	374.8	0.5	지원기능용지
	5	-	증) 1,087.7	1,087.7	1.5	종교용지
	6	-	증) 148.6	148.6	0.2	종교용지
	7	-	증) 396.4	396.4	0.5	종교용지
	8	-	증) 1,117.5	1,117.5	1.5	종교용지

나.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관한 결정조서

1)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결정조서

구분		가구	용도	비고
신설	허용용도	획지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주택법」 제2조, 제13호, 제14호에 의한 부대·복리시설	허용용도 외의 용도는 불허
		획지2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별표6]에 따른 용도지역별 건축가능 시설	
		획지3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별표6]에 따른 용도지역별 건축가능 시설	
		획지4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별표6]에 따른 용도지역별 건축가능 시설	
		획지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의 종교시설	
		획지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의 종교시설	
		획지7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의 종교시설	
		획지8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의 종교시설	

2) 건축물 개발밀도(건폐율, 용적률, 높이)

가) 건폐율 계획

구분		지역	건폐율	비고
신설	획지1	제2종일반주거지역	60% 이하	-
		제3종일반주거지역	50% 이하	-

나) 용적률 계획

구분			용적률(%)			비고
			기준	허용	상한	
신설	획지1	전체	212.6 이하	225.7 이하	243.3 이하	소형주택 건립에 따른 기준용적률 상향 적용 등
		2종	210 이하	223.09 이하	237.24 이하	
		3종	230 이하	243.09 이하	283.23 이하	
	획지2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에 의한 용도지역을 따름			-
	획지3					
	획지4					
	획지5					
	획지6					
	획지7					
	획지8					

다) 높이 계획

구분		지역	높이기준	비고
신설	획지1	제2종일반주거지역	29층 이하(125m 이하)	영역별 높이 준수
		제3종일반주거지역	29층 이하(125m 이하)	

※ 신속통합기획 높이계획 준수
- 낙산 능선, 절개지 등 지형 현황, 종로변 개발, 문화재(한양도성, 안양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획
  · 한양도성 연접부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한양도성) 고려하여 저층(8층 이하)으로 계획
  · 공원 연접부(북측) : 급경사 지형 및 채석장절개지 고려 중저층(6~12층 이하)으로 계획
  · 성곽 ↔ 채석장절개지 연계부 : 성곽 조망 등 고려하여 중저층(10층 이하) 계획
  · 종로 이면부 : 최고 29층 이하로 계획
- 가로변 보행자의 개방감 확보, 주변 지역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대상지 경계부 중·저층 계획

다. 건축물 배치 계획

1) 건축선에 관한 계획

구분		적용위치	계획내용	비고
건축한계선	획지1	· 창신길변, 창신제일교회 진입로변, 낙산성곽동길변, 이면도로변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3m 이상	-
		· 공공보행통로변	· 공공보행통로변으로부터 2m 이상	-
		· 연접부지 (획지5, 획지7, 획지8, 근린공원, 주차장, 청소년수련시설)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 이상	-
	획지2	-	-	-
	획지3	-	-	-
	획지4	-	-	-
	획지5	· 창신제일교회 진입로변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1.5m 이상	-
		· 연접부지 (획지1, 획지2, 주차장, 청소년수련시설)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m 이상	-
	획지6	· 창신길변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1.5m 이상	-
		· 연접부지 (근린공원)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m 이상	-
	획지7	· 낙산성곽동길변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3m 이상	-
		· 연접부지 (획지1)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m 이상	-
	획지8	· 이면도로변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1.5m ~ 3m 이상	-
		· 연접부지 (획지1)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m 이상	-
	주차장, 청소년 수련시설	· 창신길변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3m 이상	-
		· 연접부지 (획지1, 획지2, 획지⑤5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m 이상	-
벽면한계선	획지1	· 창신길변 · 낙산성곽동길변	· 건축한계선으로부터 3m 이상	-
근린생활시설	획지1	· 창신길변 · 종로 이면부 도로(대상지 남측)변	· 기존 창신시장의 위치, 주변 개발계획(창신23-606일대)과 연계하고 창신길 가로 활성화 고려하여 우선 배치(권장)	-

2) 가로활성화시설 배치구간

구분		적용위치	계획내용
가로활성화시설 배치구간	연도형상가 배치구간	창신길변 종로이면부	· 가로활성화시설 배치구간은 가로활성화가 필요한 주요 가로로서 가로의 1/2이상 대지안의 공지 또는 건축한계선에 맞추어 건축물의 저층부(도로 레벨 이상)에 가로활성화 시설을 연도형으로 조성 · 가로활성화시설의 권장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라. 경관계획(배치 · 형태포함)

1) 건축물의 배치에 관한 계획

구분	적용위치	계획내용
건축물의 배치	획지1	· 건폐율을 고려한 대상지 내 적절한 통풍, 채광, 개방감 등을 확보하도록 계획 · 한양도성, 흥인지문 문화재 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고려한 문화재와 어우러지며, 기존 창신동의 구릉지와 조화로운 경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형 순응형 배치 계획
건물 진출입구	획지1	· 보행약자의 동선이 단절되지 않도록 단차가 발생하는 지점에 경사로 또는 엘리베이터 계획

2) 건축물 형태 및 외관에 관한 계획

구분	적용위치	계획내용	비고
건축물 외부형태	획지1	· 저층부는 지형, 길 등을 활용하여 커뮤니티 시설 등 가로활성화 및 공동이용시설을 배치하고 지형, 길 등을 고려하여 프라이버시가 침해되지 않도록 계획	-
입면계획	획지1	· 건축물 저층부와 고층부를 구분하여 변화감 있는 입면계획 및 주변 단지와 연계된 디자인 계획	-

3) 경관에 관한 계획

구분	적용위치	계획내용
높이	획지1	능선, 절개지 등 지형 특성과 종로변 개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영역별로 차별화된 유연한 높이계획 적용
스카이라인	획지1	구릉지형에 순응하며 한양도성, 흥인지문 등 주변 지역과 인접한 문화재와 조화로운 도시경관 창출할 수 있도록 스카이라인 계획

마.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 조서

1) 대지 내 공지 등에 관한 결정

구분	적용위치	계획내용	비고
공공보행통로	획지1	· 공공보행통로(폭원 8m 이상)계획 - 한양도성 ~ 대상지 ~ 창신동23-606일대 문화공원 연결	-

※ 공공보행통로는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 관리운영기준 및 매뉴얼'에 따라 지역권 설정하여야 함

- 지역권 : 통행 등 일정목적으로 타인토지를 자기토지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등기로 설정)

2) 환경관리 계획

검토항목	목표 기준	현황 및 환경영향예측	환경영향 최소화를 위한 저감방안	비고
비오톱 및 동·식물	비오톱 보전 등급 향상 및 동·식물상 보호	· 토지이용현황 : 주거 및 상업시설 · 비오톱유형평가 : 5등급 · 개별비오톱 : 평가제외 · 생태자연도 : 3등급 · 현지조사시 계획지구 및 주변 지역으로 보호할 만한 동·식물은 분포치 않음	· 조경녹지 등 녹지공간의 확보 및 식재 계획 수립 · 녹지 확보를 통한 비오톱 및 생태적 기능 향상 도모 · 체계적인 조경계획 수립을 통한 생물 서식환경 조성	-
녹지 네트워크	녹지 연결성 확보	· 종로구 내 녹지지역 : 46.7% · 종로구 내 개소수 기준 기타공원, 근린공원 등이 대부분의 비중 차지	· 녹지공간 확보 및 식재 계획을 통한 주변과의 녹지 및 생태 단절 예방 · 생태징검돌(Stepping stone) 개념의 녹지 연결성 및 녹지체계 수립 · 생태면적률 30.4% 확보	-

검토항목	목표 기준	현황 및 환경영향예측	환경영향 최소화를 위한 저감방안	비고
토양	토양오염 최소화	· 공사 시 건설 장비 및 공사 인부에 의한 토양 오염 유발 가능성	· 공사시 현장 내 폐유처리 등 금지 및 폐유보관 시설 설치 시 전량 전문 처리업체 위탁 처리 계획	-
지형·지질	지형·지질 영향 최소화	· 건축물 터파기 공사에 의한 절성토 비율 미미	· 현 지형을 고려한 계획 수립 · 발생 사토처리 계획 수립	-
물순환	자연물순환 유지	· 대부분 불투수비율이 높은 주거지 및 상업시설	· 사업대상지 내 충분한 녹지를 조성하여 법적 기준 이상 적용 · 저감 효율이 높은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토록 할 계획	-
바람 및 열	바람길 확보	· 주풍향 고려 및 통경축 확보	· 건축물 계획 시 주풍향 고려하여 계획 · 바람 유입을 위한 통풍면적비 확보 · 열환경 개선효과가 있는 수종을 식재	-
대기질	대기오염 최소화	· 사업시행 시 건설장비 가동 등에 따른 대기오염 우려	· 사업시행 시 비산먼지 발생 방지를 위한 저감대책 수립	-
온실가스·에너지	에너지 절약 및 효율 극대화	· 사업시행 후 온실가스 및 에너지 배출량 산정	· 녹지공간 확보를 위한 이산화탄소 저장, 흡수가 가능토록 계획 및 신재생 에너지 확보	-
친환경적 자원순환	폐기물 발생량 최소화	· 공사 시 및 운영 시 폐기물 발생 예상됨	· 종로구 폐기물 처리계획에 의거하여 적정 처리	-
소음·진동	규제기준 만족	· 공사 시 소음·진동 영향 예상됨 · 운영 시 인근 도로 소음 예상됨	· 가설방음판넬 및 이동식방음벽 설치 · 저소음, 저진동 장비 사용	-

3) 임대주택 및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건설에 관한 결정 조서

- 모든 공공주택은 원칙적으로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주택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시 해당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는 그에 따른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 공공주택 등은 세입자 주거대책 및 도시저소득 주민의 입주기회 확대 등 공공목적의 공공주택 용도로 정하며, 서울시에 매각(처분)하여야 한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50% 이상을 공공주택(법적상한용적률 완화)으로 건설하여야 한다.
- 공공주택은 특정 세대 및 평면 타입에 편중되지 않고 분산 배치하며 공공주택과 분양주택이 소셜믹스 되도록 계획 및 시공하여야 한다.

구분	내용		
계획 기준	· 주택 전체 세대수의 15% 또는 연면적의 10% 이상 (정비계획으로 정한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함으로써 증가 된 세대수는 제외) · 임대 주택 세대수의 30% 이상 또는 건설하는 주택 세대수의 5% 이상을 주거전용면적이 40㎡이하 규모의 임대주택으로 건설		
건립규모	세대수	전체비율	임대주택비율
합계	229	12.2	100.0
전용 39㎡	86	4.6	37.6
전용 59㎡	143	7.6	62.4

4) 교통처리에 관한 결정

구 분	적용지역	계 획 내 용
차량출입 불허구간	창신길변	·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한 차량출입불허구간 지정
	남측 이면도로변	
	서측 이면도로변	
차량출입구	창신길변 2개소	· 단지 내 출입을 위한 차량출입구 개설

Ⅲ. 2025년 제7차(’ 25.07.18) 도시계획 수권분과위원회 심의결과 : 수정가결

구분	심의의견	조치계획	비고
수정 사항	• 구역면적, 획지면적, 용적률 계획, 건폐율 계획, 높이 계획, 공공기여계획, 순부담 면적 및 주택공급계획은 구청장 수정가결 요청(안) 반영	• 구청장 수정가결 요청사안 정비계획(안) 반영	반영
조건 사항	• 을곡로 ~ 지봉로를 연결하는 대상지 내외부 지하터널계획을 정비계획 고시 전까지 도로 관련 부서 및 자치구와 협의를 통해 실현가능성, 단계별 실행 방안 및 비용 분담 방안 등 정리할 것	• (대상지 내부) 대상지 동-서 연결도로(창신동 23-606~창신동 629) 근린공원 하부 도로(약 100m)는 해당 정비사업 시행 과정에서 사업시행자(조합 등)의 비용부담으로 설치 • (대상지 외부) 대상지 동-서 연결도로(창신동 23-606~창신동 629)와 을곡로를 연결하는 대상지 외부 지하터널 계획(약 160m)은 해당 정비구역의 사업시행 계획인가 시점에서 추진하는 교통영향평가 결과를 토대로 실현 가능성 및 실행방안 구체화 검토 - 대상지 동~서 연결도로와 주변도로 연결시 발생할 수 있는 교통수요 및 교통분산량 등을 예측하고 지하터널에 대한 경제성 분석(B/C) 등으로 도로 연결 필요성 및 사업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실행방안 검토 추진 - 대상지 외부 지하터널은 인접 대상지 재개발사업 추진시 정비계획 수립 시점과 연계하여 실행방안 검토 추진	반영

Ⅳ. 관련도면 : 붙임 참조

1. 정비구역 결정도(신설)
2. 정비계획 결정도(신설)
3. 용도지역 · 지구 결정도(기정/변경)
4. 도시계획시설 결정도(기정/변경)
5. 영역별 높이계획도(신설)
6.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신설)

※ 첨부된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등(그 외 세부관계도면은 첨부 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Ⅴ.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도서 : 생략

Ⅵ. 열람장소 :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주거정비과(☎02-2133-7208), 종로구 도시개발과(☎02-2148-2682)에 관계도서를 비치 및 열람하고 있습니다.

■ 정비구역 결정도(신설)

■ 정비계획 결정도(신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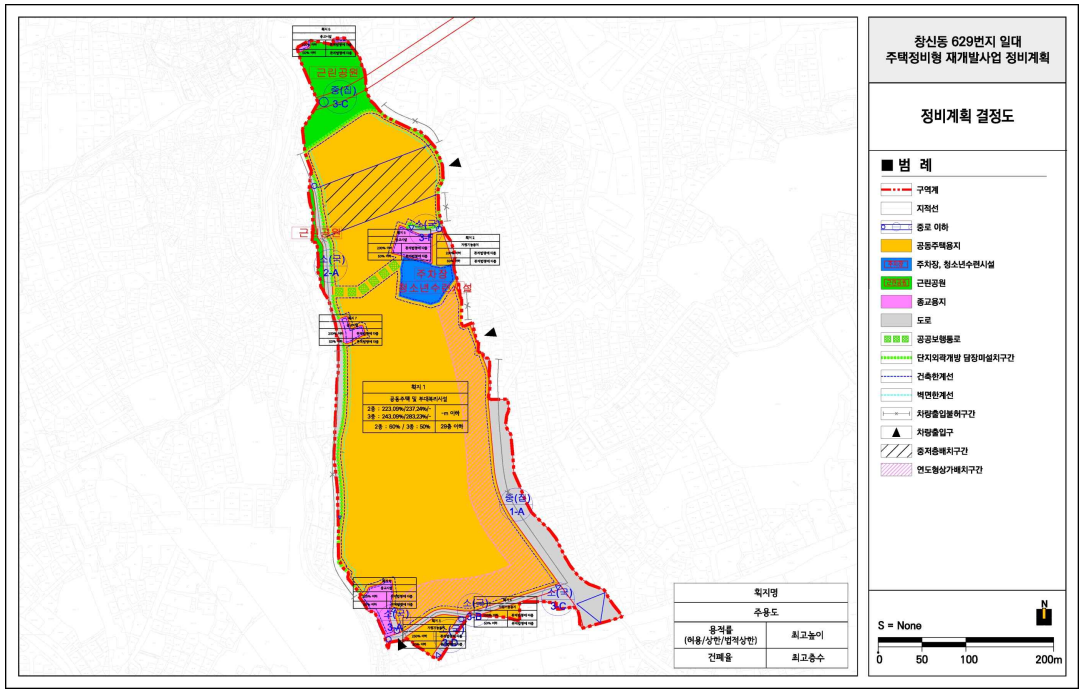

■ 용도지역 결정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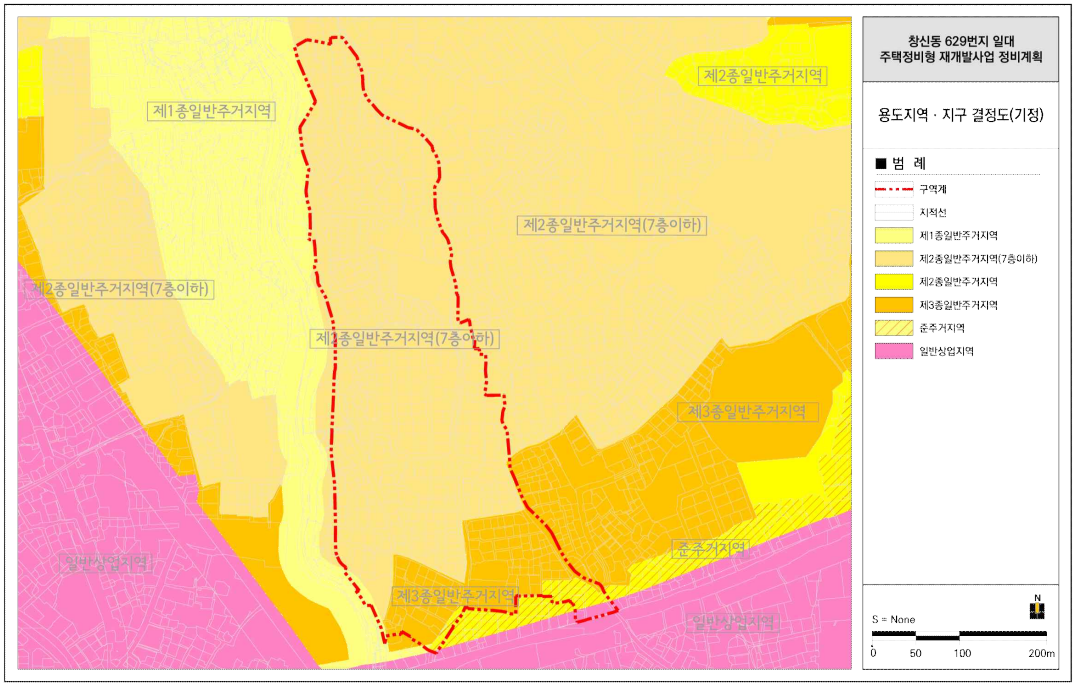

■ 용도지역 결정도(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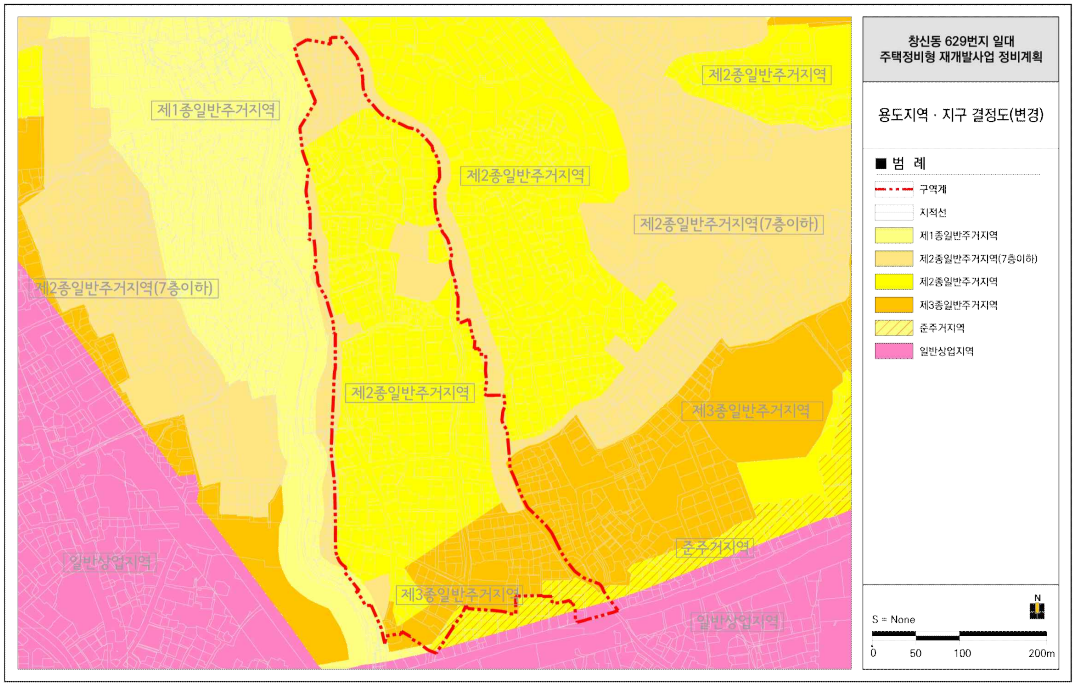

■ 도시계획시설 결정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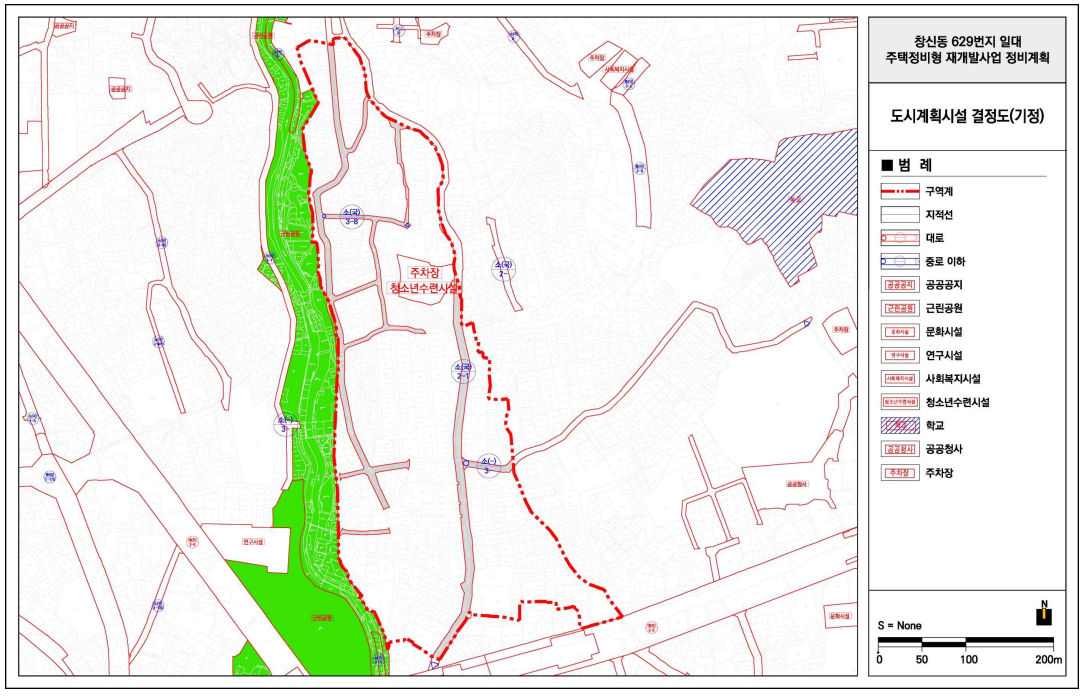

■ 도시계획시설 결정도(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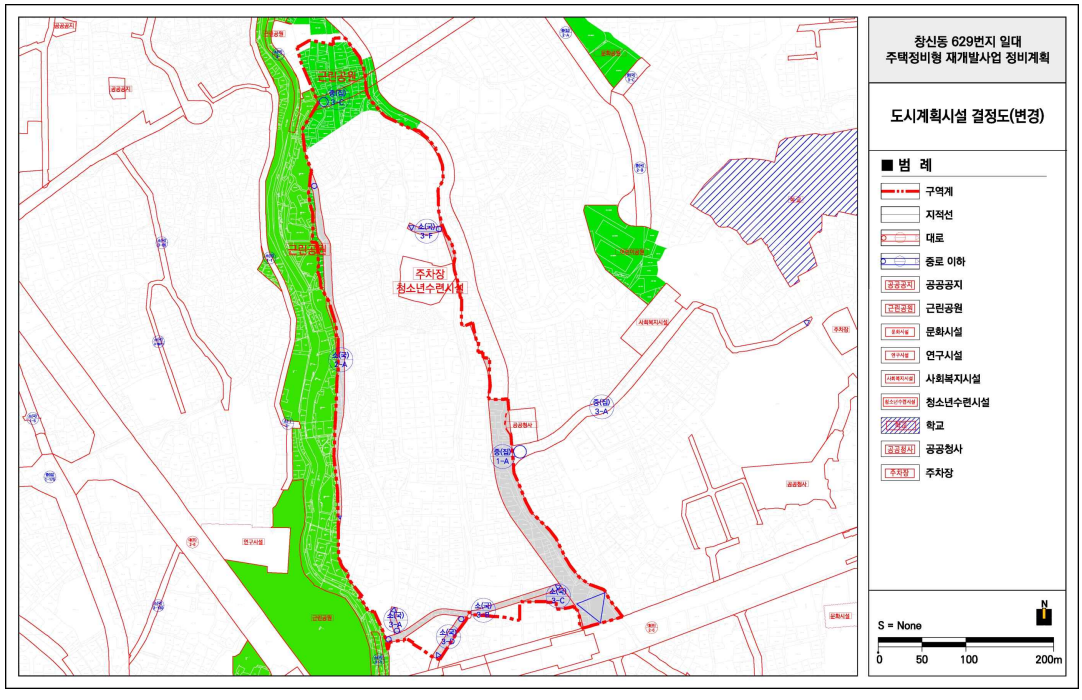

■ 영역별 높이계획도(신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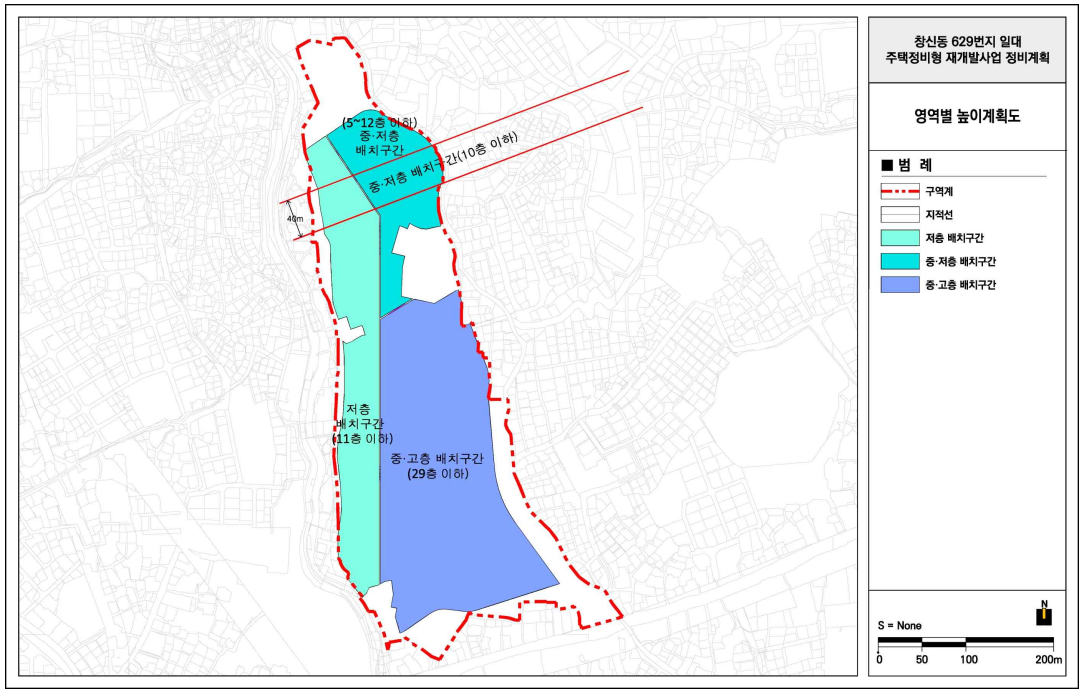

■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신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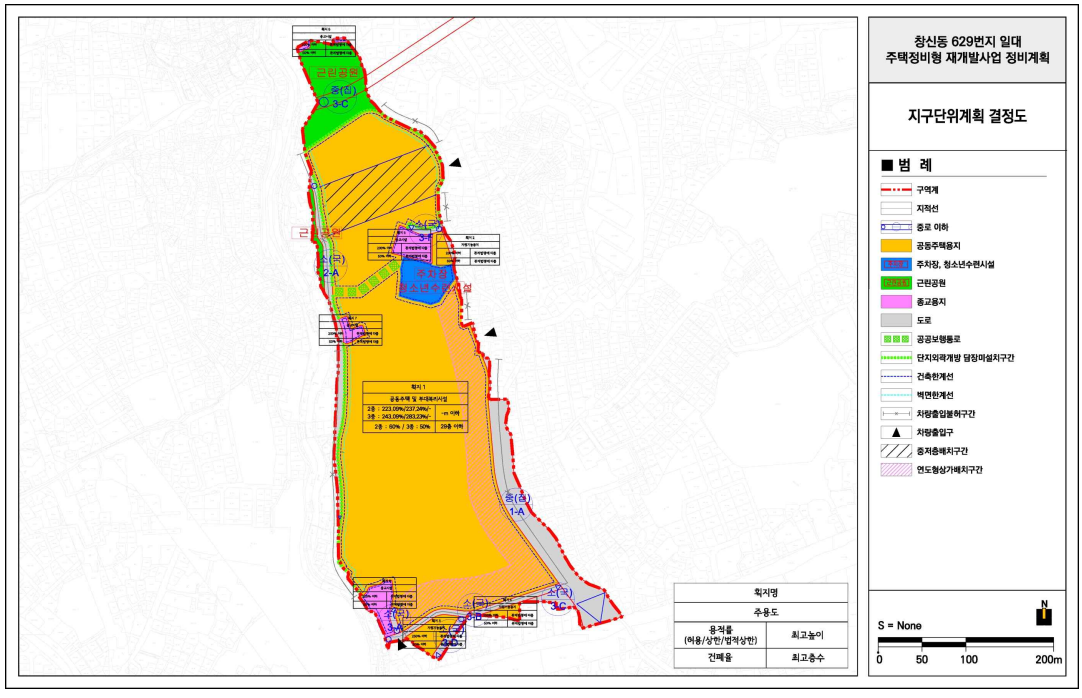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631호

도곡우성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경미한)변경 결정, 지구단위계획(경미한)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301호(2023.07.20.)로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강남구 도곡동 934-10번지 일대 도곡우성아파트 재건축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및 제16조,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제11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정비계획(경미한)변경을 고시하고, 같은 법 제1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경미한)변경 결정·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13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

1. 정비사업 명칭 : 변경없음

2. 정비구역 지정 조서 : 변경없음

구 분	정비사업 명칭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 정	도곡우성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강남구 도곡동 934-10번지 일대	20,970.0	-	20,970.0	-

3. 토지이용계획 : 변경없음

구 분	명 칭	면 적(㎡)	비 율(%)	비 고
합 계		20,970.00	100.00	-
정비기반 시설 등	소 계	28.00	0.13	-
	공 원	28.00	0.13	-
획 지	소 계	20,942.00	99.87	-
	획지1	20,942.00	99.87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4.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가. 추산액

<table>
<tr><td>추정
비례율</td><td>• 추정비례율 산정방식 : (총 수입 - 총 지출) / 총자산 총액 X 100%
• 추정비례율 : 95.11%
⇒ (10,855.5억 - 3,429.4억) / 7,426.1억 X 100 = 100.06%
- 총 수입 추정 : 10,855.5억
- 총 지출 추정 : 3,429.4억
- 종전자산총액 추정 : 7,807.98억</td></tr>
<tr><td>개별 종전
자산 추정액</td><td>• 도곡우성아파트 공동주택 소유자 = 공동주택 공시가격 X 보정률 (1.742)
※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토지평가액 포함하며, 상기 보정률은 본건 공동주택 공시가격과 실거래가격과의 비율임
※ 개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확인
• 도곡우성아파트 상가 소유자 = 대지권 또는 지분과 건물을 일체로 각각의 집합건물을 본건 및 인근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가격을 추정(공급면적당 단가 X 공급면적)</td></tr>
<tr><td>추정
분담금
산출</td><td>• 추정분담금 산정방식 = 권리자 분양가 추정액 - (종전자산 추정액 X 추정비례율)
<table><tr><th colspan="2">권리자 분양가 추정액(a)</th><th>추정 권리가액(b)</th><th>추정분담금(a-b)</th></tr><tr><td>전용59㎡형</td><td>15.64억</td><td rowspan="6">개별 종전자산 추정액
X 추정비례율
(95.11%)</td><td rowspan="6">권리자 분양가 추정액 - 추정 권리가액
(+ : 부담 / - : 환급)</td></tr><tr><td>전용84㎡형</td><td>21.55억</td></tr><tr><td>전용110㎡형</td><td>27.12억</td></tr><tr><td>전용113㎡(Pent)형</td><td>34.50억</td></tr><tr><td>전용143㎡(Pent)형</td><td>43.65억</td></tr><tr><td>상가전체</td><td>228.88억</td></tr></table></td></tr>
</table>

※ 관리처분계획인가 시 개별 물건에 대한 종전자산 감정평가 및 분양가격 확정 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산출근거

• 비례율 = (종후 대지 및 건축물 총 추산액(총수입) - 총사업비(총지출액)) / 종전토지 및 건축물의 총가액(조합원 총재산)

= (A - B) / C

= 95.11%

• 총수입 : A

구분	공급 세대	공급면적 (타입)	공급 면적 (㎡)	분양가		총분수입용 (천원)	분양 타입별 분양가 (천원)	비고
				㎡	평			
합계		-	-	-	-	1,154,196,986	-	-
일반	54	81.36(59)	4,393.46	21,359	70,607	93,839,580	1,737,770	상가는 전체 조합원 기준
	30	114.368(84)	3,431.04	20,940	69,223	71,845,800	2,394,860	
조합원	326	114.368(84)	37,283.94	19,223	63,550	702,530,000	2,155,000	
	58	148.341(110)	8,603.78	18,846	62,300	157,296,000	2,712,000	
	2	152.551(113P)	305.10	18,281	60,430	6,900,000	3,450,000	
	4	193.035(143P)	772.14	22,615	74,760	17,460,000	4,365,000	
공공	81	81.36(59)	6,590.18	-	-	11,584,100	143,014	
	6	114.368(84)	686.21	-	-	1,208,500	201,412	
상가	1	-	1201	-	-	22,888,058	22,888,058	
합계						1,085,552,038	-	-

※ 상조합원분양가는 일반분양 대비 90% 수준을 적용하였으며, 총 분양수입은 일반분양가와 조합원분양가의 합산액임.

• 총사업비 : B

구분	내용	비고
연면적	103,504.8575㎡	-
공사비(원/㎡)	2,510,000	평당 8,300,000원
공사비(원)	259,797,000,000	-
기타 사업비(원)	73,289,655,817	-
기타 예비비(원)	9,850,944,749	공사비의 3.5%
총사업비(원)	342,937,600,567	-

• 조합원 종전자산가격 및 추정분담금

– 조합원 종전자산가격 : 도곡우성아파트 및 상가 종전자산가격

= 780,798,000천원

5. 용도지역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계		20,970.0	-	20,970.0	100.0	-
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20,970.0	-	20,970.0	100.0	-

6.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 : 변경없음

■ 공원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 분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기 정	-	싸리고개 공원	근린공원	도곡동 555번지	5,471.8	-	5,471.8	서고시 제82호 '97.03.31.	-

7.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 변경

시설구분	시설의종류	법정기준	법정면적 (㎡)	계획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근린생활 시설	근린생활시설	-	-	800	-	800	-
주민 공동 시설	경로당	500~1,000세대, 330㎡ 이상	330	230	증) 105	335	-
	작은도서관	500~1,000세대, 158㎡ 이상	158	160	-	160	-
	운동시설	-	-	820	-	820	옥내 : 340㎡ 옥외 : 480㎡
	어린이놀이터	200㎡ + 세대수	761	760	증) 10	770	-
	어린이집	500~1,000세대, 330㎡ 이상	330	340	감) 5	335	-
	다함께돌봄센터	500세대 이상	66	150		150	-
	커뮤니티시설	-	-	280		280	-
	주민공동시설	-	-	-	증) 4,440	4,440	-
부대시설	경비실	-	60	60	-	60	-
	관리사무소	10 + (세대수 - 50) × 0.05	35.8	90	-	90	-
	저수조	(세대수 × 0.6) + 소방용수	366.6	400	-	400	-
	MDF/방재/	-	-	500	-	500	-

시설구분	시설의종류	법정기준	법정면적(㎡)	계획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계/전기실						
기타시설	지하주차장	-	-	32,121	증) 10,427	42,548	-

8. 기존 건축물의 정비 · 개량 계획 : 변경없음

구 분	구 역 구 분		위 치	정 비 개 량 계 획(동)					비 고
	명 칭	면 적(㎡)		계	존 치	개 수	철거후 신축	철거 이주	
기 정	도곡우성아파트 재건축정비구역	20,970.0	도곡동 934-10번지 일원	3	-	-	3	-	-

9. 건축시설계획 : 변경

■ 획지 및 주택규모 등에 관한 계획(변경)

<table>
<tr><th rowspan="2">구 분</th><th colspan="2">구 역 구 분</th><th colspan="2">가구 또는 획지 구분</th><th rowspan="2">위 치</th><th rowspan="2">주 된 용 도</th><th rowspan="2">건폐율(%)</th><th colspan="2">용적률(%)</th><th rowspan="2">높이(m)/층수</th></tr>
<tr><th>명 칭</th><th>면 적(㎡)</th><th>명 칭</th><th>면 적(㎡)</th><th>정비계획</th><th>예정 법정 상한</th></tr>
<tr><td>기정</td><td rowspan="2">도곡우성 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td><td rowspan="2">20,970.0</td><td rowspan="2">획지1</td><td rowspan="2">20,942.0</td><td rowspan="2">도곡동 934-10번지 일대</td><td rowspan="2">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td><td rowspan="2">50% 이하</td><td rowspan="2">230.39% 이하</td><td>299.53% 이하</td><td>최고 26층이하 (80m 이하)</td></tr>
<tr><td>변경</td><td>299.86% 이하</td><td>최고 26층이하 (85m 이하)</td></tr>
<tr><td>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td><td>기정</td><td colspan="9">• 주택공급계획
<table>
<tr><th colspan="3">구 분</th><th>세대수</th><th>비 율(%)</th><th>비 고</th></tr>
<tr><td colspan="3">계</td><td>548</td><td>100.00</td><td rowspan="6"></td></tr>
<tr><td rowspan="5">공동주택</td><td rowspan="2">임 대</td><td>60㎡이하</td><td>59㎡형</td><td>82</td><td>14.96</td></tr>
<tr><td>60㎡~85㎡이하</td><td>84㎡형</td><td>6</td><td>1.09</td></tr>
<tr><td rowspan="3">분 양</td><td>60㎡이하</td><td>59㎡형</td><td>58</td><td>10.58</td></tr>
<tr><td>60㎡~85㎡이하</td><td>84㎡형</td><td>270</td><td>49.27</td></tr>
<tr><td>85㎡초과</td><td>110㎡형</td><td>132</td><td>24.10</td></tr>
</table>
- 85㎡이하 규모의 주택이 전체 세대수에서 차지하는 비율 : 75.90%</td></tr>
<tr><td>변경</td><td colspan="9">• 주택공급계획</td></tr>
</table>

<table>
<tr><th rowspan="2">구 분</th><th colspan="2">구 역 구 분</th><th colspan="2">가구 또는
획지 구분</th><th rowspan="2">위 치</th><th rowspan="2">주 된
용 도</th><th rowspan="2">건폐율
(%)</th><th colspan="2">용적률(%)</th><th rowspan="2">높이(m)
/층수</th></tr>
<tr><th>명 칭</th><th>면 적
(㎡)</th><th>명 칭</th><th>면 적
(㎡)</th><th>정비
계획</th><th>예정
법정
상한</th></tr>
<tr><td></td><td></td><td colspan="9">
<table>
<tr><th colspan="4">구 분</th><th>세대수</th><th>비 율(%)</th><th>비 고</th></tr>
<tr><td colspan="4">계</td><td>561</td><td>100.00</td><td rowspan="8"></td></tr>
<tr><td rowspan="8">공동
주택</td><td rowspan="2">임 대</td><td>60㎡이하</td><td>59㎡형</td><td>81</td><td>14.44</td></tr>
<tr><td>60㎡~85㎡이하</td><td>84㎡형</td><td>6</td><td>1.06</td></tr>
<tr><td rowspan="6">분 양</td><td>60㎡이하</td><td>59㎡형</td><td>54</td><td>9.63</td></tr>
<tr><td>60㎡~85㎡이하</td><td>84㎡형</td><td>356</td><td>63.46</td></tr>
<tr><td rowspan="3">85㎡초과</td><td>110㎡형</td><td>58</td><td>10.34</td></tr>
<tr><td>113㎡형</td><td>2</td><td>0.36</td></tr>
<tr><td>143㎡형</td><td>4</td><td>0.71</td></tr>
</table>
- 85㎡이하 규모의 주택이 전체 세대수에서 차지하는 비율 : 88.59%
</td></tr>
<tr><td colspan="2" rowspan="2">심의완화 사항</td><td>기정</td><td colspan="9">• 예정법적상한용적률 : 299.53%</td></tr>
<tr><td>변경</td><td colspan="9">• 예정법적상한용적률 : 299.86%</td></tr>
<tr><td colspan="2">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td><td colspan="9">
<table>
<tr><th>구 분</th><th>계획내용</th><th>계획목표</th></tr>
<tr><td>획지 및 도로 연접</td><td>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 이격</td><td>개방감 확보 및 도로·보행환경 개선</td></tr>
</table>
</td></tr>
</table>

■ 개발가능용적률 산정(기정)

<table>
<tr><th>구 분</th><th colspan="6">산정내용</th><th>비 고</th></tr>
<tr><td rowspan="2">토지이용
계획
(㎡)</td><td rowspan="2">구역면적</td><td rowspan="2">획 지</td><td colspan="2">계획 정비기반시설 등</td><td rowspan="2">신설 정비기반
시설 내 국·공유지</td><td rowspan="2">대지 내 용도
폐지되는 기존
기반시설 국·공유지</td><td rowspan="2">-</td></tr>
<tr><td>소 계</td><td>토 지(지분)
공 원</td></tr>
<tr><td>20,970.0㎡</td><td>20,942.0㎡</td><td>28.0㎡</td><td>28.0㎡</td><td>-</td><td>-</td><td>-</td></tr>
<tr><td>공공시설 부지
제공면적
(순부담)</td><td colspan="6">• 계획 정비기반시설 등 면적 - 계획 정비기반시설 내 기존 국공유지 면적 - 용도폐지되는
기존 기반 시설 국공유지 면적
= 28.0㎡ - 0㎡ - 0㎡ = 28.0㎡ (구역 면적 대비 0.13%)</td><td>-</td></tr>
<tr><td>토지 기부채납</td><td colspan="6">• 토지 기부채납 : 28.0㎡</td><td>-</td></tr>
<tr><td>기준용적률</td><td colspan="6">• 기준용적률 = 210%
-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상의 정비예정구역 계획용적률 210% 적용</td><td>-</td></tr>
</table>

<table>
<tr><th>구 분</th><th colspan="3">산정내용</th><th>비 고</th></tr>
<tr><td rowspan="5">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적용기준</td><td>구 분</td><td>인센티브</td><td>비 고</td><td>-</td></tr>
<tr><td>합계</td><td>24%</td><td rowspan="4">총 24%중
최대 20%적용

※녹색건축물 12%중 의무비율 4%를 제외한
8% 완화적용</td><td rowspan="4">-</td></tr>
<tr><td>장수명주택(우수)</td><td>10%</td></tr>
<tr><td>녹색건축물(최우수)</td><td>12%</td></tr>
<tr><td>지능형건축물(4등급)</td><td>6%</td></tr>
<tr><td>상한용적률
산정</td><td colspan="3">• 상한용적률 = 허용용적률 x (1 + 1.3 X 가중치 X a [토지])
= 230% x (1 + 1.3 X 1.0 X 0.001337026)
= 230.39%
a [토지] = 공공시설제공면적(토지)÷공공시설부지 제공(토지)후 대지면적
= (28.0㎡) ÷ {20,970.0㎡-28.0㎡} = 0.001337026</td><td>-</td></tr>
<tr><td>법적상한
용적률</td><td colspan="3">• 299.53% 이하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에 의거 소형주택(60㎡이하) 건설 및 공급에 따른
용적률 완화 적용</td><td>-</td></tr>
<tr><td>국민주택규모 주택
건립 용적률</td><td colspan="3">• 34.57% 이상 (계획 : 34.01%)
(299.53% - 230.39%) X 0.5 = 34.57%</td><td>-</td></tr>
</table>

■ 개발가능용적률 산정(변경)

<table>
<tr><th>구 분</th><th colspan="6">산정내용</th><th>비 고</th></tr>
<tr><td rowspan="2">토지이용
계획
(㎡)</td><td rowspan="2">구역면적</td><td rowspan="2">획 지</td><td colspan="2">계획 정비기반시설 등</td><td rowspan="2">신설 정비기반
시설 내 국·공유지</td><td rowspan="2">대지 내 용도
폐지되는 기존
기반시설 국·공유지</td><td rowspan="2">-</td></tr>
<tr><td rowspan="2">소 계</td><td>토 지(지분)
공 원</td></tr>
<tr><td>20,970.0㎡</td><td>20,942.0㎡</td><td>28.0㎡</td><td>28.0㎡</td><td>-</td><td>-</td><td>-</td></tr>
<tr><td>공공시설 부지
제공면적
(순부담)</td><td colspan="6">• 계획 정비기반시설 등 면적 - 계획 정비기반시설 내 기존 국공유지 면적 - 용도폐지되는
기존 기반 시설 국공유지 면적
= 28.0㎡ - 0㎡ - 0㎡ = 28.0㎡ (구역 면적 대비 0.13%)</td><td>-</td></tr>
<tr><td>토지 기부채납</td><td colspan="6">• 토지 기부채납 : 28.0㎡</td><td>-</td></tr>
<tr><td>기준용적률</td><td colspan="6">• 기준용적률 = 210%
-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상의 정비예정구역 계획용적률 210% 적용</td><td>-</td></tr>
<tr><td rowspan="5">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적용기준</td><td colspan="2">구 분</td><td colspan="2">인센티브</td><td colspan="2">비 고</td><td>-</td></tr>
<tr><td colspan="2">합계</td><td colspan="2">24%</td><td colspan="2" rowspan="4">총 21.6%중
최대 20%적용

※녹색건축물 12%중 의무비율 4%를 제외한
8% 완화적용</td><td rowspan="4">-</td></tr>
<tr><td colspan="2">장수명주택(우수)</td><td colspan="2">10%</td></tr>
<tr><td colspan="2">녹색건축물(최우수)</td><td colspan="2">12%</td></tr>
<tr><td colspan="2">지능형건축물(4등급)</td><td colspan="2">3.6%</td></tr>
<tr><td>상한용적률
산정</td><td colspan="6">• 상한용적률 = 허용용적률 x (1 + 1.3 × 가중치 × a [토지])
= 230% x (1 + 1.3 × 1.0 × 0.001337026)
= 230.39%
a [토지] = 공공시설제공면적(토지)÷공공시설부지 제공(토지)후 대지면적
= (28.0㎡) ÷ {20,970.0㎡-28.0㎡} = 0.001337026</td><td>-</td></tr>
<tr><td>법적상한
용적률</td><td colspan="6">• 299.86% 이하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에 의거 국민주택규모 주택(85㎡이하) 건설 및 공급에 따른
용적률 완화 적용</td><td>-</td></tr>
<tr><td>국민주택규모 주택
건립 용적률</td><td colspan="6">• 34.57% 이상 (계획 : 34.74%)
(299.86% - 230.39%) × 0.5 = 34.735%</td><td>-</td></tr>
</table>

10. 공공주택(법적상한용적률 완화)건설에 관한 계획

1) 공공주택 공급계획

구 분			총 세대수	공공기여 공공주택						법적상한용적률 완화 공공주택					
				소계	40㎡ 이하	40~50㎡	50~60㎡	60~85㎡	85㎡ 초과	소계	40㎡ 이하	40~50㎡	50~60㎡	60~85㎡	85㎡ 초과
주택공급계획	기정	세대수	88	-	-	-	-	-	-	88	-	-	82	6	-
		비율(%)	100.0	-	-	-	-	-	-	100.0	-	-	93.2	6.8	-
	변경	세대수	87	-	-	-	-	-	-	87	-	-	81	6	-
		비율(%)	100.0	-	-	-	-	-	-	100.0	-	-	93.1	6.9	-
		공급유형		-						장기전세주택 87세대					

※ 공공주택의 규모별 건설비율은 통합심의 및 사업시행인가 시 변경될 수 있음

※ 공동주택 단지 내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은 동일(유사)한 규모와 적절한 비율로 혼합하여 특정 동·층라인에 집중되지 않고 분산되도록 건설하고, 임대주택의 선정은 공개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함

※ 공공기여 및 용적률 완화로 공급되는 공공주택 중 전용면적 40㎡를 초과하는 공공주택은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며, 장기전세주택의 50%는 미리내집으로 활용

2) 공공주택(법적상한용적률 완화) 산정 내역

■ 기정

법적상한용적률		• 299.53%				
상한용적률(정비계획용적률)		• 230.39%				
공공주택(법적상한 용적률 완화 산출근거)	용적률 증가분	• 69.14%				
	증가 용적률의 50%	• 69.14% × 0.5 = 34.57% • 20,942.0㎡ × 34.57% = 7,239.65㎡				
	의무 연면적	• 7,239.65㎡이상				
	공공주택(공공임대/분양확보계획)	전용면적	세대수	공급면적	연면적	비고
		합계	88	-	7,287.8758㎡	>7,239.65㎡(의무)
		59㎡형	82	80.5882㎡	6,608.2324㎡	-
		84㎡형	6	113.2739㎡	679.6434㎡	-

■ 변경

<table>
<tr><td colspan="2">법적상한용적률</td><td colspan="5">• 299.86%</td></tr>
<tr><td colspan="2">상한용적률(정비계획용적률)</td><td colspan="5">• 230.39%</td></tr>
<tr><td rowspan="5">공공주택
(법적상한
용적률 완화
산출근거)</td><td>용적률 증가분</td><td colspan="5">• 69.47%</td></tr>
<tr><td>증가 용적률의 50%</td><td colspan="5">• 69.47% × 0.5 = 34.735%
• 20,942.0㎡ × 34.735% = 7,274.20㎡</td></tr>
<tr><td>의무 연면적</td><td colspan="5">• 7,274.20㎡이상</td></tr>
<tr><td rowspan="4">공공주택
(공공임대/
분양확보계획)</td><td>전용면적</td><td>세대수</td><td>공급면적</td><td>연면적</td><td colspan="2">비고</td></tr>
<tr><td>합계</td><td>87</td><td>-</td><td>7,276.38㎡</td><td colspan="2">>7,274.20㎡(의무)</td></tr>
<tr><td>59㎡형</td><td>81</td><td>81.3603㎡</td><td>6,590.18㎡</td><td colspan="2">-</td></tr>
<tr><td>84㎡형</td><td>6</td><td>114.3679㎡</td><td>686.20㎡</td><td colspan="2">-</td></tr>
</table>

11.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가.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환경보전	자연환경	• 절·성토의 균형을 고려하여 지형변화를 최소화하는 토공계획 수립 • 기존구역 내 녹지율을 향상시키는 녹지면적 확보 • 차폐 및 조경녹지의 확보로 비오톱(biotop) 공간 확장	-
	생활환경	• 도시가스 등 청정연료사용(LNG)과 에너지 절약형 주거단지 조성	
	사업시행시 환경영향	• 대기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건설공사장, 소음관리요령 등에 의거 저감대책 마련	
재난방지	수재해	• 우수유역을 검토하여 대상지 주변의 우수관망을 충분히 설치토록 하며, 대상지 내부로의 유입을 최소한으로 억제하여 홍수, 수몰 등에 대한 방재계획 수립 • 자연토양 유지 및 공공보행통로, 공원, 전면공지 등 녹지조경면적의 확대로 토양포장률을 억제하고, 불가피할 경우 가급적 투수포장재를 사용하여 우수유출량을 최대한 억제	-
	수해	• 대상지내 화재발생을 대비한 방재계획은 건축법의 방화에 관한 규정 및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종합적 방재 계획을 수립 • 대상지내 모든 아파트에 대하여 스프링클러와 자동식 소화기를 모든 층에 비치 • 인화성 건축내장재 사용을 규제하고, 사업완료 후 지속적으로 관리 • 소방도로의 기능 수행이 가능하도록 진입로 및 내부동선체계 구축	

나. 환경성 검토결과

검토항목		목표기준	준수 여부	현황 및 검토결과	계획에의 반영사항	비고
자연환경	생태 면적률	30% (공동주택)	○	• 기 시가화 지역으로 대부분 포장상태 지역	• 계획대상지내 자연지반녹지, 인공지반녹지 조성하여 생태면적률 30%이상 계획	
	녹지 네트워크	녹지평가지표 I	○	• 기존 시가지로 주변 녹지여건을 고려하여 조경녹지 계획	• 공원 및 녹지계획에 반영	
	지형변동	절·성토균형	○	• 건축물 터파기 공사에 의한 토공량 발생	• 발생 사토처리 대책 수립	
	비오톱 및 동식물상	4등급	○	• 비오톱유형평가 대상지는 4등급과 북측 싸리고개공원 주변 1등급, 개별 비오톱 제외등급이며, 북측 싸리고개공원 주변은 2등급에 해당	• 조경녹지 등 녹지공간의 확보 및 비오톱 기능강화 도시생태기능 복원 및 강화	
	물순환	우수관리	○	• 우수유출의 변화를 파악	• 우수배제계획 수립	
생활환경 추가	일조	총일조4시간 또는 연속일조2시간 이상확보	○	• 사업지구를 포함한 주변지역이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	• 건축법 및 관련조례 검토하여 적정수준으로 계획	
	바람 및 미기후	바람길 확보	○	• 주풍향 고려 및 통경축 확보	• 건축물 계획 시 주풍향 고려 계획	
	대기질	대기환경기준	○	• PM-2.5, SO2을 제외한 전항목 대기환경기준만족	• 공사시 장비운행에 따른 대기 오염물질 발생량 저감방안 수립	
	경관	Skyline 보전	○	• 신축건물에 의해 인공스카이라인 상승할 것으로 예상	• 주변 환경과 연계한 자연스러운 스카이라인이 형성되도록 층수계획 수립	
		가로녹시율 35% 이상	○	• 사업지구 주변 크고 작은 규모의 녹지시설이 다수 분포함	• 보도 및 차도에서 가로녹시율이 25% 이상 확보되도록 계획	
	폐기물	폐기물 성상별 분리처리	○	• 공사시 및 운영시 폐기물 발생 예상	• 구 폐기물 처리계획에 의거 처리	
	소음·진동	규제기준 만족	○	• 공사시 소음 진동영향이 예상	• 가설방음판넬 설치 • 저소음, 저진동 장비사용	
	에너지	에너지절약 계획 수립	○	• 향후 에너지사용량 추정 • 에너지 절약 설비 및 계획 고려	• 에너지절약형 설비기기 도입 및 청정연료 사용	
	여가 및 휴식공간	휴식 및 여가공간 최대확보	○	• 경로당 1개소가 있음	• 사업지구내 어린이놀이터, 운동시설 등 주민공동시설을 조성하여 거주민 및 지역 주민의 여가 및 휴식공간으로 제공	

12. 정비사업 시행계획

구분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예정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감예상 세대수	비 고
기정	관리처분	구역지정 후 4년 이내	도곡우성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	•현황 : 390세대 •변경 : 548세대 증) 158세대	-
변경			도곡우성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	•현황 : 390세대 •변경 : 561세대 증) 171세대	

13. 교통 및 동선처리계획

구 분	지 점	개선방안
주변가로 및 교차로	-	• 주변 분석대상 교차로 최적신호운영방안 제시 : 3개소
진출입 동선	-	• 사업지 진출입구 교차로 운영계획 수립
		- 비신호교차로(점멸신호)
	-	• 방문자, 입주자 진입차로 분리
	-	• 사업지 진출입구 회전반경 확보 : R=8.0m
대중교통 및 보행, 자전거	-	• 보행동선 단절지점 횡단보도 설치 : 2개소
	-	• 자전거이용자를 위한 자전거보관소 설치
주차	-	• 계획주차대수 : 1,967대(자주식)
	-	• 법정주차대수 : 637대
	-	• 주차수요대수(2030년) : 696대
		- 법정의 151.8%, 수요의 138.9% 확보
	-	• 어린이보호차량 정차공간(Drop-zone) 확보
교통안전 및 기타	-	•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 차량경고등 : 1개소

14.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table>
<tr><th>구 분</th><th colspan="2">적용범위</th><th>내 용</th><th>비 고</th></tr>
<tr><td rowspan="3">용도제한을
통한 교육
환경보호</td><td colspan="2">정비구역
전체</td><td>• 불허용도계획을 통한 유흥업소(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안마원)등
교육환경 위해시설 입지금지</td><td>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td></tr>
<tr><td rowspan="2">교육
환경
보호
구역</td><td rowspan="2">상대
보호
구역</td><td>• 설정기준 : 학교경계등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인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td><td rowspan="2">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9조</td></tr>
<tr><td>•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에
해당되는 행위 및 시설은 금지함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4호부터 29호까지에
해당되는 행위 및 시설 중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td></tr>
<tr><td rowspan="2">통학권
보행안전
대책</td><td colspan="2" rowspan="2">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및 운영</td><td>• 지정기준 : 초등학교 주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의 도로 중 일정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td><td rowspan="2">어린이 ·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td></tr>
<tr><td>• 신호기 · 안전표지 설치, 도로부속물 설치, 노상주차장 설치 금지 등</td></tr>
</table>

15.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계획

구 분	내 용
분명한 시야선 확보	• 건축물 설계나 도시계획 시 부명한 시야선을 확보하고, 숨을 수 있는 장소 최소화 • 산책길을 따라 관목을 식재하고, 안으로 교목을 식재하여 시야 확보 • 수목 식재 형태 및 크기의 일관성 유지로 은닉장소를 없앰
적합한 조명의 사용	• 적절한 조명은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제거하고,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므로 어둠이 없는 적합한 조명설계
고립지역 개선	• 시야선이 닿지 않거나 자연적 감시가 어려운 곳, 사람의 통행이 적거나 도로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유사시 구조 요청 또는 구조가 어려운 지역을 과감히 없애는 설계
사각지대의 개선	• 감시가 곤란한 지역은 주변 환경을 개선하여 사각지대를 없애는 설계
대지의 복합적 사용증진	• 다양한 복합시설 배치로 활용도를 높여 시설이용을 증진시키고, 주민에 의한 자연적인 감시로 안전성 확보
활동인자 증대	• 일정지역에 모여 활동하도록 하여 도로나 공간에 생동감을 부여함으로써 범죄 기회를 감소
영역성 강화	• 특정지역에 대한 소유감·영역성 부여로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제3자에게는 허가받지 않은 영역 침법에 불안심리를 증폭시켜 범죄를 예방
정확한 표시로 정보제공	• 표지판은 적절한 위치에 설치하여 주민이나 방문객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
쾌적한 공간설계 지향	• 보안장비 설치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환경이 메말라 오히려 공포감을 조장할 수 있으므로 아름다운 환경을 만들어 사용자에게 안락감을 제공

16.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

구 분	가 구	면 적(㎡)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	
기 정	획지1	20,942.0	도곡동 934-10번지 일원	20,942.0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Ⅱ.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결정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구 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기 정	도곡우성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강남구 도곡동 934-10번지 일대	20,970.0	-	20,970.0	-	-

2. 토지이용계획

구 분		명 칭	면 적(㎡)	비 율(%)	비 고
합 계			20,970.00	100.00	-
정비기반 시설 등		소 계	28.00	0.13	-
		공 원	28.00	0.13	-
획 지		소 계	20,942.00	99.87	-
		획지1	20,942.00	99.87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3. 용도지역 결정 사항

구 분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제3종일반주거지역	20,970.0	-	20,970.0	-

4.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

가) 공원

1) 공원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 정	-	싸리고개 공원	근린공원	도곡동 555번지	5,471.8	-	5,471.8	서고시 제82호 '97.03.31	-

5.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가)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조서

구 분	가 구	면 적(㎡)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			
				기정	변경	변경후	
기 정	획지1	20,942.0	도곡동 934-10번지 일원	20,942.0	-	20,942.0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나) 건축물에 관한 결정조서

1)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결정조서

구 분		가 구	전 층	비 고
기 정	허용용도	획지1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근린생활시설	허용용도 외의 용도는 불허

2) 건폐율에 관한 결정조서

구 분		지역	건폐율	비 고
기 정	획지1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 이하	-

3) 용적률에 관한 결정조서

구 분		기존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비 고
기 정	획지1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210%	• 230.00%이하	• 299.53%이하 (법적상한용적률)	-
변 경				• 299.86%이하 (법적상한용적률)	

※ 법적상한용적률 적용대상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시 결정된 예정법적상한용적률은 건축위원회심의를 통해 확정됨

4) 높이에 관한 결정조서

구 분	위 치	지 역	최고높이	비 고
기 정	획지1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제3종일반주거지역	• 최고층수 26층 이하(80m 이하)	-
변 경			• 최고층수 26층 이하(85m 이하)	

다)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1)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구 분	적용위치	계획내용	비 고
기 정	획지1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 이격	-

2) 교통처리에 관한 계획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차량진출입구	도곡로14길 및 남부순환로363길에서 진출입	-

Ⅴ. 관련도면 : 붙임 참조

1. 정비구역 결정도(변경없음)
2. 용도지역·지구 결정도(변경없음)
3. 도시계획시설 결정도(변경없음)
4. 정비계획 결정(기정/변경)도
5. 지구단위계획 결정(기정/변경)도

※ 첨부된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등(그 외 세부 관계도면은 첨부 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Ⅵ.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도서 : 생략

Ⅶ. 열람장소 :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과(02-2133-7139), 강남구 재건축사업과(02-3423-6073)에 관계서류를 비치 및 열람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정비구역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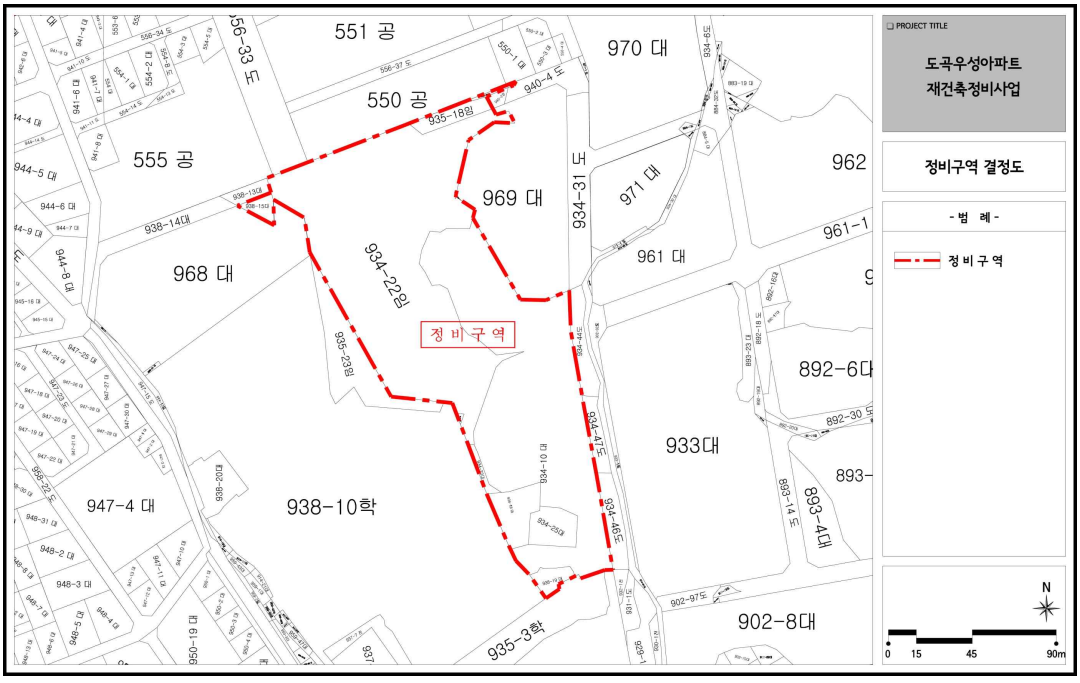
551 공
970 대
550 공
555 공
969 대
962
971 대
961-1
961 대
968 대
934-22임
정비구역
892-6대
933대
947-4 대
938-10학
893-
893-4대
902-8대
935-3학
PROJECT TITLE
도곡우성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결정도
- 범 례 -
정비구역
N
0 15 45 90m

■ 용도지역 · 지구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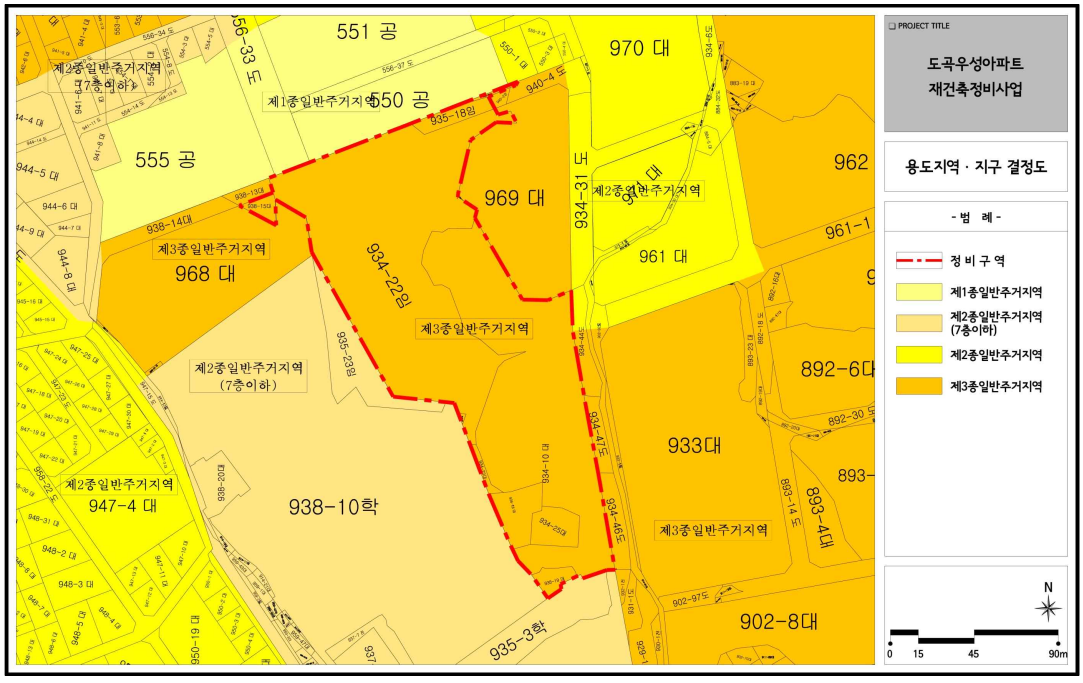

■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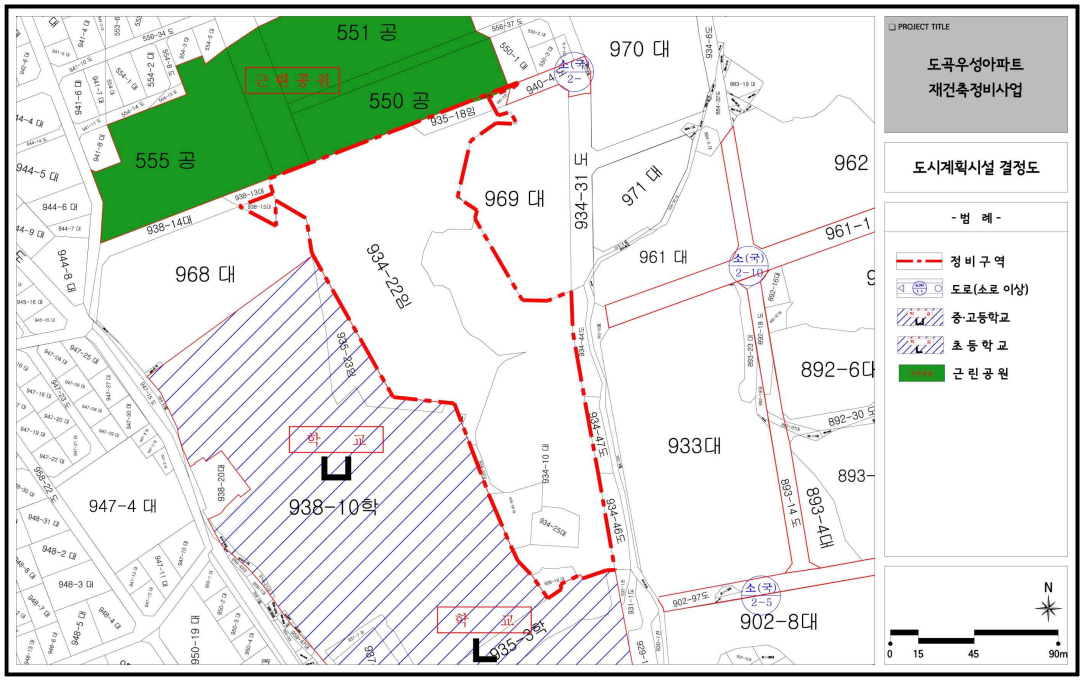

■ 정비계획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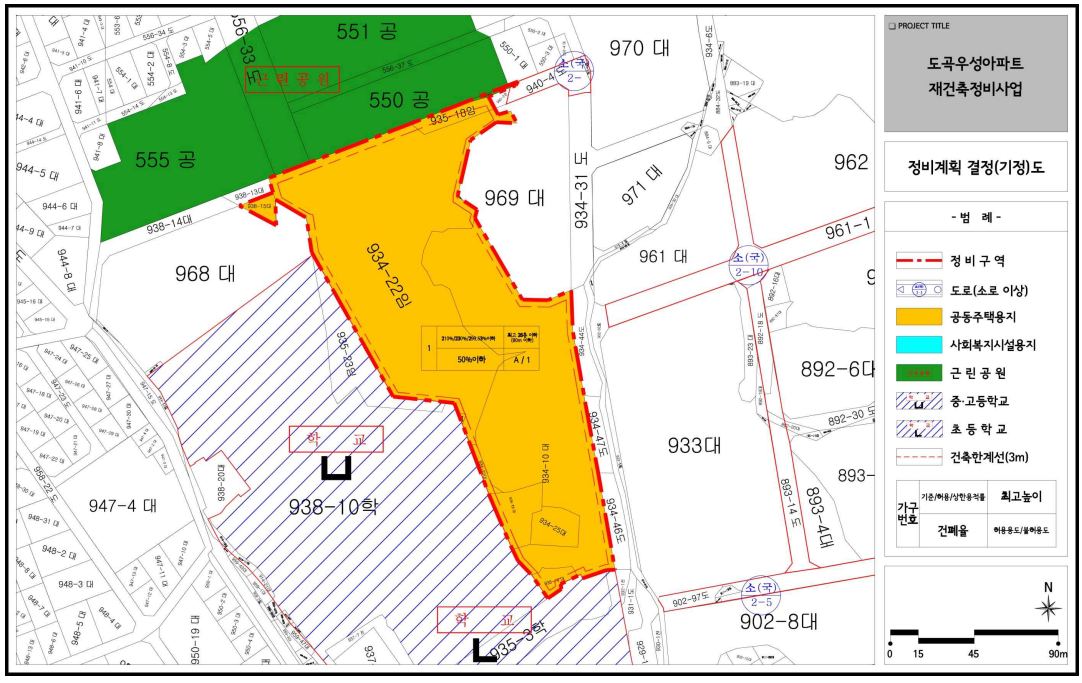

■ 정비계획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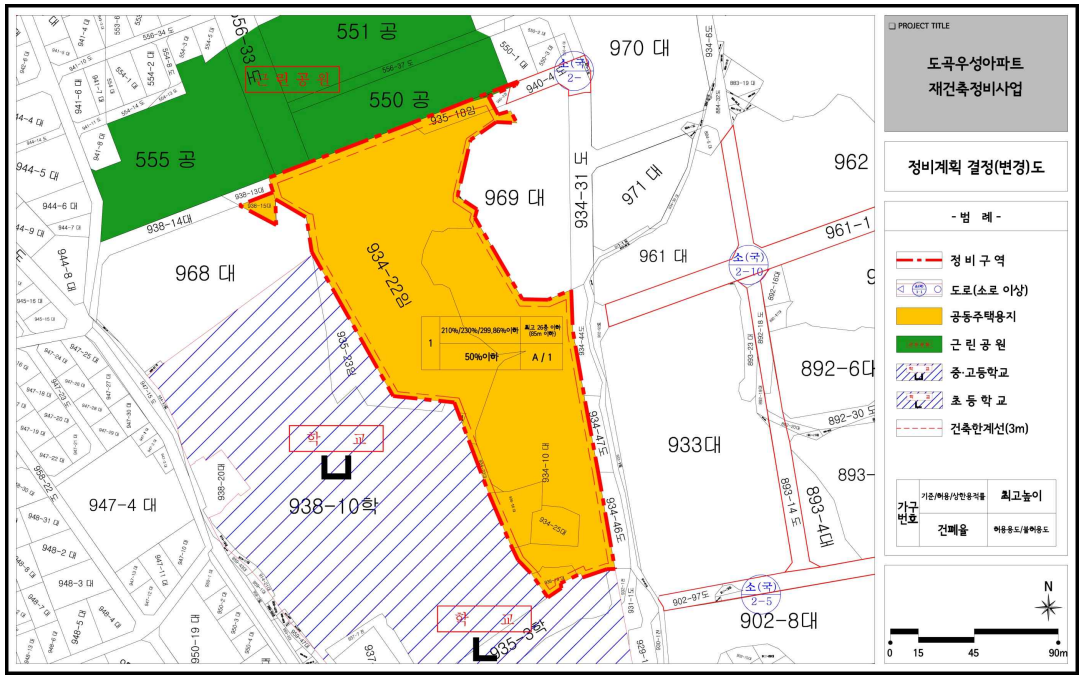

■ 지구단위계획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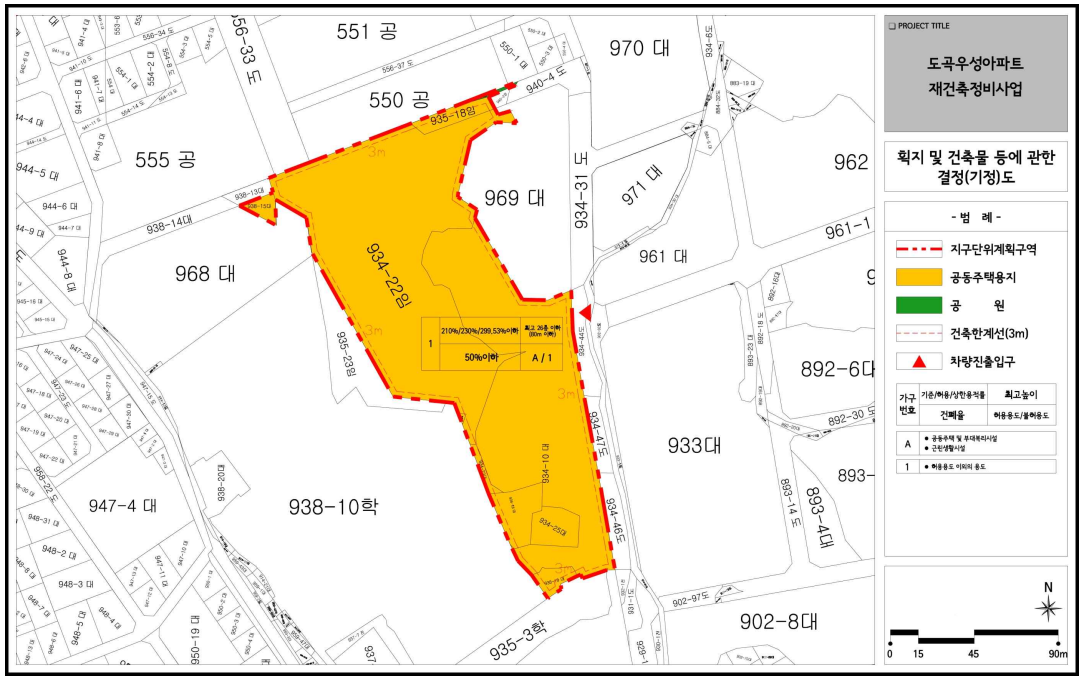

■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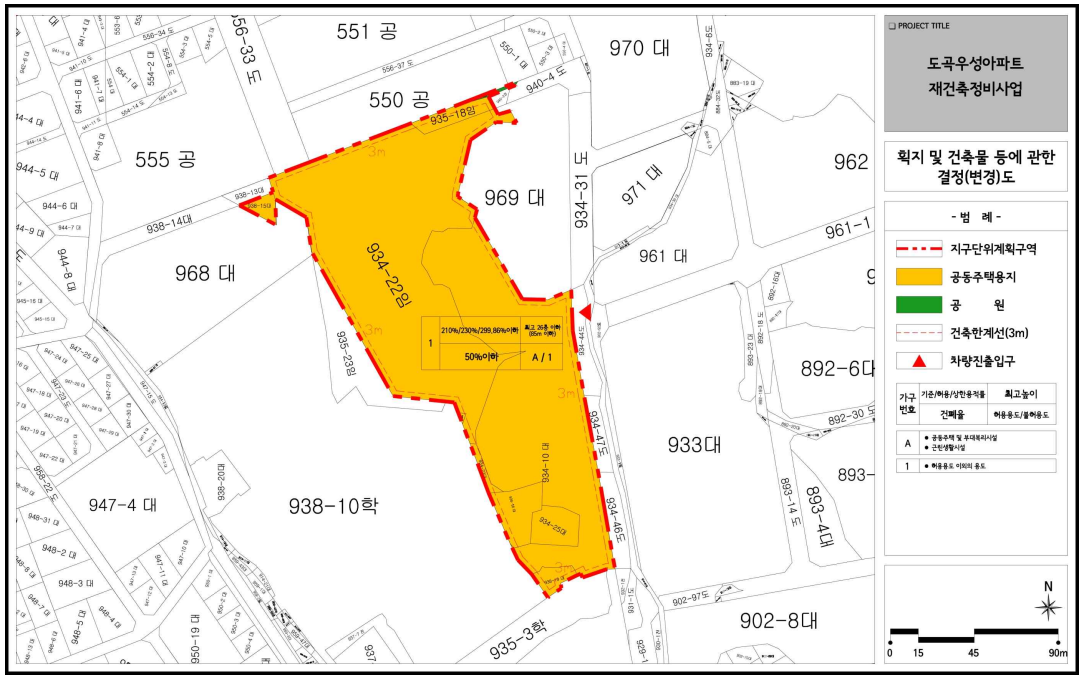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632호

신반포19차 · 25차 아파트 (통합)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변경)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 도시관리계획(반포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건설부고시 제131호(1976.8.21.)로 아파트지구 최초 지정, 건설부 건축4441-6149(1977.3.29.)호로 반포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승인되어,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418호(2018.12.27.)로 신반포19차 아파트 정비계획 결정(변경)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100호(2022.3.3.)로 신반포25차 아파트 일대 정비계획 결정(변경) 고시된 이후,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422호(2023.9.21.)로 반포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된 반포아파트지구 내 정비구역 2개소를 정비구역 통합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라 2025년 제7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 25.7.18.) 심의 등을 거쳐 정비구역 지정(변경)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반포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13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반포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반포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서초구 반포동, 잠원동 일대	2,841,838.2 (26,937.2)	-	2,841,838.2 (26,937.2)	서고 제2023-422호 (2023.9.21.)	-

※ ( )는 신반포19차 · 25차 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을 위한 특별계획구역11 면적임

2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1. 용도지역 · 지구 결정조서 (변경없음)

가. 용도지역 결정 조서 (변경없음)

구분			면적(㎡)			비율(%)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2,841,838.2	-	2,841,838.2	100.0	-
주거지역	소계		2,813,000.4	-	2,813,000.4	99.0	-
	일반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188,683.3	-	188,683.3	6.6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271,580.8	-	271,580.8	9.6	-
		제2종일반주거지역	38,847.0	-	38,847.0	1.4	-
		제3종일반주거지역	2,313,889.3	-	2,313,889.3	81.4	-
녹지지역	소계		28,837.8	-	28,837.8	1.0	-
	자연녹지지역		28,837.8	-	28,837.8	1.0	-

나. 용도지구 결정 조서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치	면적(㎡)			연장(m)	폭원(m)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	미관지구	역사문화미관지구	올림픽대로	559,642.8	-	559,642.8	93,657.3	12	2010.03.04.	-
기정	-	아파트지구(저밀)	-	서초구 반포동 잠원동 일대	149,097.1	-	149,097.1	-	-	건고 제131호(1976.08.21.)	-
기정	-	아파트지구(고밀)	-	서초구 반포동 잠원동 일대	110,333.7	-	110,333.7	-	-	건고 제131호(1976.08.21.)	-

※ ( )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해당사항임

2.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

가. 교통시설

1) 도로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정	광로	3	35	40~64	주간선 도로	6,600 (620)	서초구 서초동 (남부순환도로)	용산구 서빙고동 (반포대교북단)	일반 도로	2010.04.22	지하도로1 (면적:322.5㎡) (지하공공보도시설)
기정	대로	1	67	34.6 ~44.8	주간선 도로	16,647 (230)	방화 874	반포동 115-1	자동차 전용도로	서고제169호 (1991.6.10)	문화공원2 중복결정 (11,757㎡) 도로 중복결정 (중로3-)
기정	대로	2	29	37~ 43.5	주간선 도로	3,500 (2,960)	서초구 반포동 (이수교차로)	서초구 반포동 (강남대로)	일반 도로	건고제503호 (1969.8.27)	지하도로3 (지하공공보도시설) 중복결정(면적:228.9㎡)
기정	대로	2	a	30~44	주간선 도로	2,400 (2,208)	강남대로	사평대로	일반 도로	-	잠원로
기정	대로	3	a	25	보조 간선	400 (138)	사평로	신반포로	일반 도로	-	-
기정	중로	1	145	23.5 ~43.5	집산 도로	400	중로1-136	대로2-29	일반 도로	건고제282호 (1972.7.11)	문화공원1(291.0㎡) 중복결정 도로 중복결정(중로3-) 문화시설 중복결정 범위 - 길이 : 14.0m - 폭 : 34.0m - 높이(해발고도) : +59.4m~+74.9m(15.5m) 공간적범위 결정
기정	중로	1	466	23.5	집산 도로	82	반포동 1166	반포동 1153	일반 도로	서고 제2017-152호 (2017.4.27)	-
기정	중로	1	467	20	집산 도로	86	반포동 1190	반포동 1179	일반 도로	서고 제2017-152호 (2017.4.27)	-
기정	중로	1	468	20	집산 도로	475	반포동 1-21	반포동 116-1	일반 도로	서고 제2004-419호 (2004.12.27)	신반포로19길
기정	중로	1	A	20~26	집산 도로	1,386	잠원동 84	잠원동 104	일반 도로	2008.11.13	나루터로4길
기정	중로	1	a	8~20	집산 도로	570	반포동 128-1	반포동 2-14	일반 도로	서고 제2005-69호 (2005.3.17)	중복결정(공공공지) 1,233.8㎡
기정	중로	1	e	20	집산 도로	440	잠원동 103	잠원동 100	일반 도로	-	중복결정 (철도5)
기정	중로	1	h	12	국지 도로	62	잠원동 102	잠원동 70-2	일반 도로	서고 제2024-421호 (2024.8.22.)	-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정	중로	1	-	20	특수도로	103	반포동 1-13	반포동 115-2	지하도로	서고 제2017-192호 (2017.6.1)	지하도로1 (지하공공보도시설) 광로3-35(322.5㎡), 소공원5(1,604.5㎡) 완충녹지1(76.6㎡)와 중복결정
기정	소로	1	-	10	특수도로	92	반포동 115-4	반포동 115-6	지하도로	서고 제2017-192호 (2017.6.1)	지하도로2 (지하공공보도시설) 완충녹지1(309.5㎡)와 중복결정
기정	중로	2	4	20	국지도로	378	잠원동 100-1	잠원동 78	일반도로	서고 제2012-102호 (2012.4.19)	잠원로8길
기정	중로	2	515	15~18	국지도로	363	반포동 1155	반포동 815	일반도로	서고 제2017-152호 (2017.4.27)	-
기정	중로	2	516	18~44	국지도로	90	반포동 815	소로 2-	일반도로	서고 제2017-152호 (2017.4.27)	-
기정	중로	2	a	15~20	집산도로	219	반포동 752	반포동 15-2	일반도로	서고 제2002-397호 (2002.11.11)	-
기정	중로	3	5	12	국지도로	253	반포동 4-14	반포동 1-1	일반도로	-	-
기정	중로	3	16	10	국지도로	247	반포동 2-8	반포동 1-1	일반도로	-	-
기정	중로	-	-	14	집산도로	280	대로1-67	중로1-145	지하도로	서고 제2014-152호 (2017.4.27.)	도로 중복결정 (대로1-67,중로1-145) 문화시설 중복결정 - 길이 : 14.0m - 폭 : 14.0m - 높이(해발고도) : +59.4m~+74.9m(15.5m) 공원중복결정(108.9㎡), 공간적범위 결정
기정	소로	1	1	10	특수도로	105	잠원동 116	잠원동 122-2	보행자전용도로	서고 제2024-350호 (2024.7.11)	한강공원 연결 나들목 (입체보행로)
기정	소로	1	g	10	일반도로	74	잠원동 78	잠원동 49-8	일반도로	-	-
기정	소로	2	A	8~10	국지도로	92	잠원동 104-8	잠원동 103	일반도로	2008.11.13	-
기정	소로	2	B	9.5	국지도로	298	소로2-A	완충녹지㉘	일반도로		-
기정	소로	2	-	8	특수도로	59	중로2-516	대로2-29	보행자전용도로	서고 제2022-272호 (2022.6.23)	-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정	소로	2	m	8	특수도로	36	잠원동 113-5	잠원동 113	보행자전용도로	-	-
기정	소로	2	n	8	특수도로	36	잠원동 69-25	잠원동 111	보행자전용도로	-	-
기정	소로	3	d	6~12	특수도로	1,096	잠원동 49-17	잠원동 117	보행자전용도로	-	-
기정	소로	3	-	6	국지도로	85	반포동 752	반포동 1193	일반도로	서고 제2017-152호 (2017.4.27)	-
기정	소로	3	-	6	국지도로	55	반포동 1192	반포동 1192	일반도로	서고 제2017-152호 (2017.4.27)	-
기정	소로	3	-	7.5	특수도로	17	반포동 1-11	반포동 1-12	지하도로	서고 제2017-192호 (2017.6.1)	지하도로3 (지하공공보도시설) 대로2-29(228.9㎡)와 중복결정, 일부구간 (185.9㎡)입체적결정
기정	소로	3	-	8	국지도로	124	잠원동 61-1	대로 2-a	일반도로	서고 제2022-100호 (2022.3.3)	도로선형 변경
변경	소로	3	-	8	국지도로	124	잠원동 61-1	대로 2-a	일반도로	-	
기정	-	-	-	28.3	특수도로	871.85	강남고속버스터미널	강남고속버스터미널	지하도로	서고제1977-345호 (1977.10.21)	대로2-29, 소로3-d, 광장b(4,374㎡), 철도3, 철도5와 중복결정
기정	중로 및 소로	-	-	2~30	-	-	-	-	일반도로	-	기타도로시설*
기정	중로	1	b	20	집산도로	405	잠원동 75-24	잠원동 78-1	일반도로	-	중복결정 (철도3)
기정	중로	1	C	20~30	집산도로	444	잠원동 78-1	잠원동 102	일반도로	-	-
기정	중로	1	d	20	국지도로	424	잠원동 112	잠원동 102	일반도로	-	-
기정	중로	1	f	20~30	보조간선도로	616	잠원동 102	잠원동 104-8	일반도로	-	중복결정 (철도7)
기정	중로	1	g	20	집산도로	485 (474)	잠원동 86-9	잠원동 78	일반도로	-	-
기정	중로	2	b	18~21	집산도로	288	잠원동 78	잠원동 100	일반도로	-	-
기정	중로	3	a	12	국지도로	221	잠원동 101	잠원동 113	일반도로	-	-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정	중로	3	b	12	국지 도로	326	잠원동 69-22	잠원동 69	일반 도로	-	-
기정	중로	3	c	2~10	국지 도로	147	잠원동 70	잠원동 111	일반 도로	-	-
기정	소로	1	b	10	국지 도로	36	잠원동 113-6	잠원동 113	일반 도로	-	-
기정	소로	1	h	10	국지 도로	145	잠원동 113-1	잠원동 76-11	일반 도로	-	-
기정	소로	2	a	8	국지 도로	60	대로2-a	소로(특) 3-d	일반 도로	-	-
기정	소로	2	b	8	국지 도로	204	잠원동 100-1	잠원동 61-2	일반 도로	-	-
기정	소로	2	c	8	국지 도로	87	잠원동 100-1	잠원동 107-1	일반 도로	-	-
기정	소로	2	d	8	국지 도로	139	잠원동 100-1	잠원동 61-17	일반 도로	-	-
기정	소로	3	d	6	특수 도로	63	잠원동 111-7	잠원동 70	보행자 전용도로	-	-
기정	소로	3	e	6	국지 도로	385 (347)	잠원동 49-37	잠원동 49-17	일반 도로	-	-
기정	소로	3	f	4	국지 도로	60	대로2-a	소로(특) 3-d	일반 도로	-	-
기정	소로	3	g	6	국지 도로	61	잠원동 113	잠원동 113-4	일반 도로	-	-
기정	소로	3	h	2~3	국지 도로	115	잠원동 74-2	잠원동 73-1	일반 도로	-	-
기정	소로	2	e	8	국지 도로	48	중로3-16	소로2-f	보행자 우선도로	서고제2023-422호 (2023.9.21.)	-
기정	소로	2	f	4~8	국지 도로	136	중로1-a	반포동 3-1	보행자 우선도로	서고제2023-422호 (2023.9.21.)	-
기정	소로	2	g	8	국지 도로	61	잠원동 102	잠원동 157	일반 도로	서고제2023-422호 (2023.9.21.)	-
기정	소로	2	h	8	국지 도로	62	잠원동 102	잠원동 157	일반 도로	서고제2023-422호 (2023.9.21.)	-
기정	소로	2	i	8	국지 도로	145	중로1-A	중로1-e	일반 도로	서고제2023-422호 (2023.9.21.)	-
기정	소로	2	j	8	국지 도로	157	잠원동 78	잠원동 82-4	일반 도로	서고제2023-422호 (2023.9.21.)	-
기정	소로	2	k	8	국지 도로	40	대로2-a	잠원동 49-11	일반 도로	서고제2023-422호 (2023.9.21.)	-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정	소로	3	i	6	국지도로	46	잠원동 113-1	잠원동 76-16	일반도로	서고제2023-422호 (2023.9.21.)	-
기정	소로	3	j	6	국지도로	150	대로2-a	잠원동 71-24	일반도로	서고제2023-422호 (2023.9.21.)	-
기정	소로	3	k	4	특수도로	88	잠원동 63-33	잠원동 63-34	보행자전용도로	서고제2023-422호 (2023.9.21.)	-
기정	소로	3	l	4	국지도로	103	잠원동 63-33	잠원동 63-34	일반도로	서고제2023-422호 (2023.9.21.)	-
기정	소로	3	m	6	국지도로	101	잠원동 107	잠원동 107-1	일반도로	서고제2023-422호 (2023.9.21.)	-
기정	소로	3	n	6	국지도로	44	잠원동 100	잠원동 62-7	일반도로	서고제2023-422호 (2023.9.21.)	-
기정	소로	3	o	6	국지도로	64	잠원동 60-72	잠원동 60-85	일반도로	서고제2023-422호 (2023.9.21.)	-
기정	소로	3	p	6	국지도로	358	대로2-a	중로1-g	보행자우선도로	서고제2023-422호 (2023.9.21.)	-
기정	소로	3	q	6	국지도로	37	잠원동 82-7	잠원동 53	일반도로	서고제2023-422호 (2023.9.21.)	-
기정	소로	3	r	6	국지도로	32	잠원동 82-2	잠원동 82-2	일반도로	서고제2023-422호 (2023.9.21.)	-
기정	소로	3	s	6	국지도로	52	잠원동 82-1	잠원동 82-1	보행자우선도로	서고제2023-422호 (2023.9.21.)	-
기정	소로	3	t	6	국지도로	190	대로2-a	중로1-A	일반도로	서고제2023-422호 (2023.9.21.)	-
기정	소로	3	u	4~6	국지도로	102	잠원동 82	잠원동 49-11	일반도로	서고제2023-422호 (2023.9.21.)	-
기정	소로	3	v	6	국지도로	183	중로1-g	중로2-4	일반도로	서고제2023-422호 (2023.9.21.)	-
기정	소로	3	w	6	국지도로	97	소로2-h	소로2-g	일반도로	서고제2023-422호 (2023.9.21.)	-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결정(변경) 사유
소로 3-	소로 3-	• 도로 선형 변경	• 도로 직선화를 위한 도로 선형 변경 (차도형 전면공지 → 도로)

2) 도로 공간적 범위 결정

■ 공간적 범위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구분	규모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①	도로	반포동 804일대	길이	16.0m이하	서울시고시 제2022-272호 (2022.6.23)	[설치구조물] 위치 : 2층 높이 : 6m 길이 : 10m
				폭	34.0m이하		
				높이 (해발고도기준)	+18.0m ~ +29.0m이하 (11.0m)		
기정	②	도로	반포동 815일대	길이	16.0m이하	서울시고시 제2022-272호 (2022.6.23)	[설치구조물] 위치 : 2층 높이 : 6m 길이 : 10m
				폭	23.5m이하		
				높이 (해발고도기준)	+18.0m ~ +29.0m이하 (11.0m)		
기정	③	도로	반포동 805일대	길이	28.0m이하	서울시고시 제2022-272호 (2022.6.23)	[설치구조물] 위치 : 지하3,4층 층고 : 7.1m (3층:3.4m, 4층:3.7m) 길이 : 14m (2차로 양방향)
				폭	28.0m이하		
				높이 (해발고도기준)	-2.55m ~ +8.0m이하 (10.55m)		
기정	①	도로 (중로 1-A)	잠원동 104-8 일원	길이	20m	2008.11.13	보행브릿지
				폭	20m		
				면적	400㎡		

■ 입체적 도시계획도로(도로 : 지하도로)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구분	규모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a	도로 (지하도로)	반포동 1-11 일대	면적(㎡)	185.9	-	-
				길이(m)	4.0 ~ 17.6		
				폭(m)	4.6 ~ 7.7		
				높이 (m, 해수면기준+)	0.6 ~ 15.4		
세부사항	입체결정 범위 지상부 : A=127.7㎡, H=해수면기준(+)11.0m~15.4m 지하부 : A=185.9㎡, H=해수면기준(+)0.6m~11.0m						

3) 철도 결정조서 (변경없음)

나. 공간시설

1) 공원

■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공원	문화공원	반포동 1214일대	5,288.0	-	5,288.0	서고제2017-152호 (2017.4.27)	중복결정(도로) 291㎡
기정	②	공원	문화공원	반포동 1335-3일대	45,209.0	-	45,209.0	서고제2017-152호 (2017.4.27)	중복결정(도로) 11,757㎡
기정	①	공원	문화공원	잠원동 73	8,460.0	-	8,460.0	서고제2024-350호 (2024.7.11.)	신반포2차 재건축정비구역
기정	③	공원	근린공원	반포동 2-1일대	4,697.0	-	4,697.0	-	-
기정	a	공원	근린공원	반포동 972일대	5,780.0	-	5,780.0	-	반포3주구 재건축정비구역
기정	b	공원	근린공원	반포동 16-8	1,803.0	-	1,803.0	-	-
기정	c	공원	근린공원	반포동 18-5	11,803.8	-	11,803.8	-	-
기정	d	공원	근린공원	잠원동 62-5	2,373.5	-	2,373.5	-	잠원공원
기정	f	공원	근린공원	잠원동 50-4	4,822.4	-	4,822.4	-	명주공원
기정	g	공원	근린공원	잠원동 58-14	4,938.6	-	4,938.6	-	신동공원
기정	h	공원	근린공원	잠원동 20-46일대	1,500.0	-	1,500.0	-	-
기정	i	공원	근린공원	잠원동 20-47	5,381.1	-	5,381.1	-	-
기정	j	공원	근린공원	잠원동 20-49일대	3,060.6	-	3,060.6	-	-
기정	a	공원	어린이공원	반포동 4-2	4,188.3	-	4,188.3	-	파랑새공원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b	공원	어린이 공원	잠원동 72-1일대	5,904.2	-	5,904.2	-	반원공원
기정	c	공원	어린이 공원	잠원동 72-4일대	1,743.4	-	1,743.4	-	코아공원
기정	①	공원	소공원	반포동 1200일대	2,202	-	2,202	서고제2017-152호 (2017.4.27)	반포1,2,4주구 재건축정비구역
기정	⑤	공원	소공원	반포동 1-1일대	3,939.1	-	3,939.1	서고제2004-419호 (2004.12.27)	지하도로1 (지하공공 보도시설) 중복결정 (면적1,604.5㎡)
기정	㉗	공원	소공원	잠원동 58-24일대	5,033.5	-	5,033.5	서고 제1685호 (1995.5.20)	신반포4지구 재건축정비구역
기정	㉙	공원	소공원	잠원동 60-6일대	1,600.0	-	1,600.0	서고 제1685호 (1995.5.20)	
기정	㉚	공원	소공원	잠원동 60-3일대	2,529.2	-	2,529.2	서고 제1685호 (1995.5.20)	
기정	A	공원	소공원	잠원동 70일대	5,500.0	-	5,500.0	서고제2024-412호 (2024.8.22)	신반포4차 재건축정비구역
기정	a	공원	소공원	잠원동 74-2	2,000.0	-	2,000.0	-	-
기정	c	공원	소공원	잠원동 159-1	3,912.0	-	3,912.0	-	
기정	d	공원	소공원	잠원동 65-32	1,600.0	-	1,600.0	-	-
기정	e	공원	소공원	잠원동 65-33	481.6	-	481.6	서고 제2017-75호 (2017.3.2)	-
기정	f	공원	소공원	잠원동 160-3	1,720.0	-	1,720.0	-	-
변경	h	공원	소공원	잠원동 61-1일대	842.6	증)1,100.0	1,942.6	건고 제131호 (1976.08.21.)	신반포25차 재건축정비구역 (공원3-6)
폐지	i	공원	소공원	잠원동 61-2	1,100.0	감)1,100.0	-	서고 제2017-91호 (2017.3.16)	신반포19차 재건축정비구역
기정	j	공원	소공원	잠원동 57일대	1,500.0	-	1,500.0	-	-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k	공원	소공원	잠원동 52-1일대	2,000.1	-	2,000.1	-	-
기정	l	공원	소공원	잠원동 51-3	4,141.9	-	4,141.9	-	중복결정 (방수설비ⓐ) 2,442.0㎡

■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공원명	변경내용	결정(변경) 사유
변경	소공원	• 소공원 2개소 통합	• 신반포 19차, 25차 아파트 일대 개별 정비구역에 결정되어 있는 소공원을 정비구역 통합에 따라 시설 통합하고, 공원 선형 변경(폭 30m)
폐지	소공원	• 폐지 (소공원 1,100㎡)	• 시설 통합으로 인한 소공원 폐지

2) 녹지 결정조서 (변경없음)

3) 광장 결정조서 (변경없음)

4) 공공공지 결정조서 (변경없음)

다. 공공 · 문화체육시설 (변경없음)

라. 유통 및 공급시설 (변경없음)

마. 방재시설 (변경없음)

3 건축계획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가. 가구 및 획지설정 기준 (변경없음)

나. 가구에 관한 결정조서 (변경없음)

다. 공동개발에 관한 결정조서 (변경없음)

라.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가구		필지 또는 획지					비 고
구분	번호	번호	위치		면적(㎡)	대지면적(㎡)	
기정	K	K5	잠원동	63대	441.6	12,291.6	특별계획구역11 (한신신일빌라트, 뉴코아신반포25차 APT) 도로(413.9㎡)확보 공원(842.6㎡)확보
				63-13대	62.7		
				63-14대	105.4		
				63-15대	173.1		
				63-16도	616.0		
				61대	1,325.3		
				61-1대	10,630.0		
				61-20대	194.0		
		K6	잠원동	61-2대	13,389.1	12,289.1	특별계획구역12 (신반포19차 재건축정비구역) 공원(1,100.0㎡)확보
변경	K	K5	잠원동	63대	441.6	24,476.7	특별계획구역11 (신반포19차 · 25차아파트 재건축정비구역) 도로(517.9㎡)확보 공원(1,942.6㎡)확보
				63-13대	62.7		
				63-14대	105.4		
				63-15대	173.1		
				63-16도	616.0		
				61대	1,325.3		
				61-1대	10,630.0		
				61-20대	194.0		
				61-2대	13,389.1		

■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변경내용	결정(변경) 사유
변경	획지 K5, K6 통합	신반포 19차, 25차 아파트 일대 개별 정비구역 통합에 따른 획지 변경

2. 건축물 용도 결정조서 (변경없음)

3. 건축물 건폐율 · 용적률 · 높이에 관한 결정조서 (변경없음)

4. 건축물 배치 · 형태 및 경관계획에 관한 결정조서 (변경없음)

5. 특별계획(가능)구역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가.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유형구분
				기정	변경	변경후	
가구 K	변경	특별계획구역 11	잠원동 61-1번지 일대	13,548.1	증) 13,389.1	26,937.2	유형 1
	폐지	특별계획구역 12	잠원동 61-2번지	13,389.1	감) 13,389.1	-	유형 1

■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변경내용	결정(변경) 사유
변경 및 폐지	특별계획구역 11,12 통합	신반포 19차, 25차 아파트 일대 개별 정비구역 통합에 따른 특별계획구역 변경 및 폐지

나. 특별계획가능구역에 관한 결정조서 (변경없음)

다. 특별계획구역 및 특별계획가능구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내용 (변경)

1) 유형 Ⅰ : 정비계획수립 완료형 (변경)

■특별계획구역 1 ~ 10 (변경없음)

■특별계획구역 11(신반포25차 APT, 한신 진일빌라트, 잠원CJ빌리지) (기정)

구분			계획내용	비고
위 치			•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 61-1대 일대	-
특별계획구역 면적(㎡)			• 13,548.1㎡	-
용도지역·지구			• 제3종일반주거지역	-
획지계획			• 획지 K5	-
공공시설 등 계획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100호(2022.3.3.)에 따른 공공시설계획 준용 • 도로(413.9㎡) - 소로3- 기존도로와의 연계를 위한 도로 확보(폭 : 8m, 연장 : 124m) - 중로2-4 교차로 가각확보(폭 : 20m, 연장 : 278m) • 소공원(842.6㎡) • 공공주택(대지지분 580.0㎡, 건축물 환산면적 58.8㎡)	-
용도계획	허용용도	K5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구분			계획내용	비고
밀도 계획	건폐율		• 50% 이하	-
	용적률	획지 K5	• 기준(허용)용적률 : 230% 이하 • 상한용적률: 300% 이하(공공기여량에따른 완화범위에 한함) • 예정법적상한용적률: 300% 이하	예정법적상한 용적률은 건축위원회 심의시 확정
	높이	획지 K5	•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및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기준을 따름	-
건축선 및 대지내 공지	건축선	획지 K5	• 건축한계선 - 잠원로8길변 대지경계로부터 5m - 그 외 도로 및 공원변 : 도로, 대지경계로부터 3m (소로3-호선 측 건축한계선 도면 참조) • 고층부벽면한계선(15층이상 건축물의 경우 11층 이상부터 적용) • 잠원로8길변 건축한계선으로부터 3m	지침도에 따름
	대지 내 공지		• 전면공지 - 건축한계선으로 조성되는 전면공지는 보도형 전면공지로 조성 - 소로3- 호선측 일부는 차도형 전면공지로 조성 ※ 향후 청구아파트 재건축시 도로 직선화 방안 검토 • 공공보행통로(소로3-호선~소공원)(24시간 개방) - 신반포19차 재건축사업정비구역 연접부 대지경계로부터 3m 공공보행통로 지정	지침도에 따름
건축물 배치 및 형태	배치 및 형태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100호(2022.3.3.)에 따라 결정된 건축물 배치 및 형태계획에 따름 • 공동주택 - 광역통경축 또는 지구통경축변의 건축선(건축한계선, 고층부 벽면한계선 등) 및 배치의 경우 「한강변 관리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에 따름. 이 경우 건축선(또는 구역경계선)으로부터 공원 또는 녹지시설 등 개방형 시설(기부채납)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시설 폭원만큼 이격한 것으로 본다. - 건축물 배치 시 「주변과 소통하는 열린 생활공간」 조성을 위한 아파트단지 조성기준(2020.01, 서울시)에 따라 배치계획 수립 - 도로변은 프라이버시 보호 및 소음저감을 위한 공간 확보 - 단지 내부 배치는 타워형, 판상형, 혼합형의 혼합 배치로 일률적인 판상형태의 이미지 탈피 - 주거지로서의 차분한 분위기와 안정감을 저해하지 않도록 조성하되, 미관적으로 단조롭지 않고 세련되게 연출 -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범죄예방형 환경설계(CPTED) 가이드라인 및 기준 준용하여 계획 - 방범용CCTV는 사각지대 1개소 이상 설치 및 수목의 식재로 사각지대나 고립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수목의 간격을 적정하게 유지하여 계획 • 부대 및 복리시설 - 전면도로를 향하여 전면부 및 주출입구 계획 - 「주택법」에 의한 주민공동시설 법적 면적의 1/3이상은 개방형 커뮤니티시설로 확보하고 외부에서 접근이 가능하도록 지상1층 ~ 지상3층에 설치하는 것을 권장	-

구분		계획내용	비고
건축물 배치 및 형태	기타 외관요소	• 옥외설비 – 에어컨 실외기가 외벽면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차폐가능한 별도의 설치공간 계획 • 담장의 설치 – 원칙적으로 금지, 필요시 높이 1m 이하의 투시형 목재 또는 식재 등의 마운딩 가능 • 광고물 설치제한 – 판루형 간판 설치 금지하고 입체형으로 설치 – 건물 신축 시 간판설치 및 교체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간판게시틀 등의 입면디자인 도입	–
교통처리계획		• 차량출입구 및 차량출입불허구간 – 잠원로8길변 차량출입구 조성 – 잠원로변 간선도로에서의 직접적인 차량출입 불허 • 단지내 주차 및 차량동선 – 비상차량을 제외한 단지내 지상주차를 금지 – 단지내 도로는 아스팔트 포장을 지양하고 가급적 보도와 같은 형태로 조성 – 단지내 보행동선과 차량동선이 교차하는 구간은 보행우선 통행구조로 조성 • 단지내 보행동선 – 학교, 공원 등 보행다발 시설과 연계되는 곳에 단지내 보행자도로 조성 – 보행자도로는 인접단지의 보행자도로와 연계하여 조성 – 보행축상에 조경시설 및 주민휴게시설, 커뮤니티시설 설치	지정위치는 결정도를 따름
기타에 관한사항		• 본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 전 정비계획이 결정고시 되거나, 개발기본계획에 따라 사업시행인가된 구역은 해당 고시된 사항으로 세부개발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보며, 세부개발계획 변경 시 본 지침을 따름.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100호(2022.03.03.) • 정비계획(개발기본계획 포함)이 수립된 단지가 경미한 변경사항(「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경미한 사항의 범위에서 변경)으로 정비계획(개발기본계획 포함)을 변경할 경우 본 지침을 적용하지 아니 할 수 있음 • 인구 및 주택수용에 관한 사항 – 임대주택은 분양주택과 외관, 마감 등을 동일하게 계획하고 동별 · 동내 · 층별 혼합될 수 있도록 함 – 임대주택을 확보할 경우 다양한 규모로 맞춤형 주거유형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함 – 인구 및 주택계획의 적정성, 공공임대주택의 규모는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구체적 건축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 •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계획 및 기존 건축물의 정비, 개량 및 건축시설 계획 등은 세부개발계획 수립을 통해 결정	–

■특별계획구역 12(신반포19차) (폐지 → 특별계획구역 11과 통합)

구분			계획내용	비고
위 치			•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 61-2번지	-
특별계획구역 면적(㎡)			• 13,389.1㎡	-
용도지역·지구			• 제3종일반주거지역	-
획지계획			• 획지 K6	-
공공시설 등 계획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418호(2018.12.27.)에 따른 공공시설계획 준용 • 소공원(1,100.0㎡) • 현금 기부채납(환산부지 면적 239.0㎡)	-
용도 계획	허용 용도	K6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주택용지
밀도 계획	건폐율		• 50% 이하	-
	용적률	획지K6	• 기준(허용)용적률 : 230% 이하 • 상한용적률: 300% 이하(공공기여량에따른 완화범위에 한함) • 예정법적상한용적률: 300% 이하	예정법적상한 용적률은 건축위원회 심의시 확정
	높이	획지K6	•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및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기준을 따름	-
건축선 및 대지내 공지	건축선	획지K6	• 건축한계선 - 잠원로8길변(20m) : 10m - 그 외 도로변 : 관련 법령의 건축선 규정에 따름	지침도에 따름
	대지 내 공지		• 공공보행통로 5m (24시간 개방) - 대상지 북서측(신반포25차 인접)에 위치하여 소공원과 연결하여 보행로 조성 • 공공보행통로 3m (24시간 개방) - 대상지 북동측(학교예정용지 인접)에 위치하여 보행로 조성	지침도에 따름
건축물 배치 및 형태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418호(2018.12.27.)에 따라 결정된 건축물 배치 및 형태계획에 따름 • 공동주택 - 광역통경축 또는 지구통경축변의 건축선(건축한계선, 고층부 벽면한계선 등) 및 배치의 경우 「한강변 관리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에 따름. 이 경우 건축선(또는 구역경계선)으로부터 공원 또는 녹지시설 등 개방형 시설(기부채납)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시설 폭원만큼 이격한 것으로 본다. - 건축물 배치 시 「주변과 소통하는 열린 생활공간」 조성을 위한 아파트단지 조성기준(2020.01, 서울시)에 따라 배치계획 수립 - 도로변은 프라이버시 보호 및 소음저감을 위한 공간 확보 - 단지 내부 배치는 타워형, 판상형, 혼합형의 혼합 배치로 일률적인 판상형태의 이미지 탈피 - 주거지로서의 차분한 분위기와 안정감을 저해하지 않도록 조성하되, 미관적으로 단조롭지 않고 세련되게 연출 -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범죄예방형 환경설계 (CPTED) 가이드라인 및 기준 준용하여 계획 - 방범용CCTV는 사각지대 1개소 이상 설치 및 수목의 식재로 사각지대나 고립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수목의 간격을 적정하게 유지하여 계획 - 대상지 주위의 주요 조망축에서의 경관 및 주변지역과의 부조화 방지를 고려하여 스카이라인 등 계획	-

구분	계획내용	비고
건축물 배치 및 형태	• 부대 및 복리시설 - 전면도로를 향하여 전면부 및 주출입구 계획 - 「주택법」에 의한 주민공동시설 법적 면적의 1/3이상은 개방형 커뮤니티시설로 확보하고 외부에서 접근이 가능하도록 지상1층 ~ 지상3층에 설치하는 것을 권장	-
기타 외관요소	• 옥외설비 - 에어컨 실외기가 외벽면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차폐가능한 별도의 설치공간 계획 • 담장의 설치 - 원칙적으로 금지, 필요시 높이 1m 이하의 투시형 목재 또는 식재 등의 마운딩 가능 • 광고물 설치제한 - 판루형 간판 설치 금지하고 입체형으로 설치 - 건물 신축 시 간판설치 및 교체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간판게시틀 등의 입면디자인 도입	-
교통처리계획	• 단지내 주차 및 차량동선 - 비상차량을 제외한 단지내 지상주차를 금지 - 단지내 도로는 아스팔트 포장을 지양하고 가급적 보도와 같은 형태로 조성 - 단지내 보행동선과 차량동선이 교차하는 구간은 보행우선 통행구조로 조성 - 재해 시 소방도로의 기능이 유지될 수 있는 단지 내 동선체계 구축 • 단지내 보행동선 - 학교, 공원 등 보행다발 시설과 연계되는 곳에 단지내 보행자도로 조성 - 보행자도로는 인접단지의 보행자도로와 연계하여 조성 - 보행축상에 조경시설 및 주민휴게시설, 커뮤니티시설 설치 - 비상시 보행자 동선이 비상도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계획	-
기타사항	• 본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 전 정비계획이 결정고시 되거나, 개발기본계획에 따라 사업시행인가된 구역은 해당 고시된 사항으로 세부개발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보며, 세부개발계획 변경 시 본 지침을 따름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418호(2018.12.27.) • 정비계획(개발기본계획 포함)이 수립된 단지가 경미한 변경사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경미한 사항의 범위에서 변경)으로 정비계획(개발기본계획 포함)을 변경할 경우 본 지침을 적용하지 아니 할 수 있음 • 인구 및 주택수용에 관한 사항 - 임대주택은 분양주택과 외관, 마감 등을 동일하게 계획하고 동별 · 동내 · 층별 혼합될 수 있도록 함 - 임대주택을 확보할 경우 다양한 규모로 맞춤형 주거유형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함 - 인구 및 주택계획의 적정성, 공공임대주택의 규모는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구체적 건축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 •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계획 및 기존 건축물의 정비, 개량 및 건축시설 계획 등은 세부개발계획 수립을 통해 결정	-

■특별계획구역 11(신반포19차 · 25차아파트(통합) 재건축 정비구역) (변경)

구분			계획내용	비고
위 치			•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 61-1대 일대	-
특별계획구역 면적(㎡)			• 26,937.2㎡	-
용도지역 · 지구			• 제3종일반주거지역	-
획지계획			• 획지 K5	-
공공시설 등 계획			• 도로(517.9㎡) - 이면부 직선화를 위한 도로 계획(폭 : 8m, 연장 : 124m) - 중로2-4 교차로 가각확보(폭 : 20m, 연장 : 378m) • 소공원(1,942.6㎡) • 공공주택(대지지분 583.3㎡, 건축물 환산부지 면적 153.1㎡)	-
용도 계획	허용 용도	K5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밀도 계획	건폐율		• 50% 이하	-
	용적률	획지K5	• 기준(허용)용적률 : 230% 이하 • 상한용적률: 300% 이하(공공기여량에따른 완화범위에 한함) • 예정법적상한용적률: 300% 이하	예정법적상한 용적률은 건축위원회 심의시 확정
	높이	획지K5	•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및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기준을 따름	-
건축선 및 대지내 공지	건축선	획지K5	• 건축한계선 - 잠원로8길변 : 대지경계로부터 6m - 그 외 도로변 : 대지경계로부터 3m • 고층부벽면한계선(15층이상 건축물의 경우 11층 이상부터 적용) - 잠원로8길변 대지경계로부터 8m	지침도에 따름
	대지 내 공지		• 전면공지 - 건축한계선으로 조성되는 전면공지는 보도형 전면공지로 조성 • 공공보행통로 6m(24시간 개방) (※지역권 설정) - (중앙부)도로 ~ 소공원 연계	지침도에 따름
건축물 배치 및 형태			• 공동주택 - 광역통경축 또는 지구통경축변의 건축선(건축한계선, 고층부 벽면한계선 등) 및 배치의 경우 「한강변 관리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에 따름. 이 경우 건축선(또는 구역경계선)으로부터 공원 또는 녹지시설 등 개방형 시설(기부채납)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시설 폭원만큼 이격한 것으로 본다. - 건축물 배치 시 「주변과 소통하는 열린 생활공간」 조성을 위한 아파트단지 조성기준(2020.01, 서울시)에 따라 배치계획 수립 - 도로변은 프라이버시 보호 및 소음저감을 위한 공간 확보 - 단지 내부 배치는 타워형, 판상형, 혼합형의 혼합 배치로 일률적인 판상형태의 이미지 탈피 - 주거지로서의 차분한 분위기와 안정감을 저해하지 않도록 조성하되, 미관적으로 단조롭지 않고 세련되게 연출 -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범죄예방형 환경설계 (CPTED) 가이드라인 및 기준 준용하여 계획 - 방범용CCTV는 사각지대 1개소 이상 설치 및 수목의 식재로 사각지대나 고립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수목의 간격을 적정하게 유지하여 계획 - 대상지 주위의 주요 조망축에서의 경관 및 주변지역과의 부조화 방지를 고려하여 스카이라인 등 계획	-

구분	계획내용	비고
건축물 배치 및 형태	• 부대 및 복리시설 - 전면도로를 향하여 전면부 및 주출입구 계획 - 「주택법」에 의한 주민공동시설 법적 면적의 1/3이상은 개방형 커뮤니티시설로 확보하고 외부에서 접근이 가능하도록 지상1층 ~ 지상3층에 설치하는 것을 권장	-
기타 외관요소	• 옥외설비 - 에어컨 실외기가 외벽면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차폐가능한 별도의 설치공간 계획 • 담장의 설치 - 원칙적으로 금지, 필요시 높이 1m 이하의 투시형 목재 또는 식재 등의 마운딩 가능 • 광고물 설치제한 - 판루형 간판 설치 금지하고 입체형으로 설치 - 건물 신축 시 간판설치 및 교체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간판게시틀 등의 입면디자인 도입	-
교통처리계획	• 차량출입구 및 차량출입불허구간 - 잠원로8길변 차량출입구 조성 - 잠원로변 간선도로에서의 직접적인 차량출입 불허 • 단지내 주차 및 차량동선 - 비상차량을 제외한 단지내 지상주차를 금지 - 단지내 도로는 아스팔트 포장을 지양하고 가급적 보도와 같은 형태로 조성 - 단지내 보행동선과 차량동선이 교차하는 구간은 보행우선 통행구조로 조성 • 단지내 보행동선 - 학교, 공원 등 보행다발 시설과 연계되는 곳에 단지내 보행로 조성 - 보행자도로는 인접단지의 보행자도로와 연계하여 조성 - 보행축상에 조경시설 및 주민휴게시설, 커뮤니티시설 설치	지정위치는 결정도를 따름
기타에 관한 사항	• 인구 및 주택수용에 관한 사항 - 임대주택은 분양주택과 외관, 마감 등을 동일하게 계획하고 동별·동내·층별 혼합될 수 있도록 함 - 임대주택을 확보할 경우 다양한 규모로 맞춤형 주거유형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함 - 인구 및 주택계획의 적정성, 공공임대주택의 규모는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구체적 건축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 •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계획 및 기존 건축물의 정비, 개량 및 건축시설 계획 등은 세부개발계획 수립을 통해 결정	-

■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변경내용	결정(변경) 사유
변경 및 폐지	특별계획구역 11,12 통합	신반포 19차, 25차 아파트 일대 개별 정비구역 통합에 따른 특별계획구역11 계획지침 변경 및 특별계획구역12 폐지

2) 유형 Ⅱ : 정비구역 지정대상(전환)형 (변경없음)

3) 유형 Ⅲ : 일부 세부개발계획 수립형 (변경없음)

4) 유형 Ⅳ : 정비계획 수립 간주형 (변경없음)

5) 유형 Ⅴ : 특별계획가능구역 (변경없음)

라. 특별계획(가능)구역 해제 시 지구단위계획 내용 (변경없음)

4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조서 (변경없음)

Ⅱ. 특별계획구역11 세부개발계획 결정

1. 특별계획구역11 결정(변경) 조서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유형구분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특별계획구역 11	잠원동 61-1번지 일대	13,548.1	증) 13,389.1	26,937.2	유형 1
폐지	특별계획구역 12	잠원동 61-2번지	13,389.1	감) 13,389.1	-	유형 1

※ 반포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 및 시행지침 제49조에 의거 본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기 전 정비계획이 고시된 단지는 해당 고시된 사항으로 세부개발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변경내용	결정(변경) 사유
변경	특별계획구역 11,12 통합	신반포 19차, 25차 아파트 일대 개별 정비구역 통합에 따른 특별계획구역 변경 및 폐지

2.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가. 교통시설

1)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소로	2	4	20	국지도로	378	잠원동 100-1	잠원동 78	일반도로	-	서고제2012-102호 (12.4.19.)	-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소로	3	-	8	국지도로	124	잠원동 61-1	대로 2-a	일반 도로	-	서고제2022-100호 (22.3.3.)	도로선형 변경
변경	소로	3	-	8	국지도로	124	잠원동 61-1	대로 2-a	일반 도로	-	-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결정(변경) 사유
소로 3-	소로 3-	도로 선형 변경	도로 직선화를 위한 도로 선형 변경 (차도형 전면공지 → 도로)

나. 공간시설

1)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소공원	서초구 잠원동 61-1일대	842.6	증) 1,100.0	1,942.6	건고제131호 (76.8.21.)	25차 (19차 공원과 통합)
폐지	소공원	서초구 잠원동 61-2	1,100.0	감) 1,100.0	-	건고제131호 (76.8.21.)	19차

■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공원명	변경내용	결정(변경) 사유
변경	소공원	• 소공원 2개소 통합	• 신반포 19차, 25차 아파트 일대 개별 정비구역에 결정되어 있는 소공원을 정비구역 통합에 따라 시설 통합하고, 공원 선형 변경 (폭 30m)
폐지	소공원	• 폐지 (소공원 1,100㎡)	• 시설 통합으로 인한 소공원 폐지

3. 건축계획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고
획지계획			• 획지 K5	(좌동)	-
공공시설 등 계획			• 도로(517.9㎡) - 이면도로 직선화를 위한 도로 계획 (폭 : 8m, 연장 : 124m) - 중로2-4 교차로 가각확보 (폭 : 20m, 연장 : 378m) • 소공원(1,942.6㎡) • 공공주택 (대지지분 583.3㎡, 건축물 환산부지 면적 153.1㎡)	(좌동)	-
용도 계획	허용 용도	획지 K5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좌동)	-
밀도 계획	건폐율		• 50% 이하	(좌동)	-
	용적률	획지K5	• 기준(허용)용적률 : 230% 이하 • 상한용적률 : 300%이하(공공기여량에 따른 완화범위에 한함) • 예정법적상한용적률: 300% 이하	• (좌동) • 정비계획용적률 : 263.26% 이하 • (좌동)	예정법적상한 용적률은 건축위원회 심의시 확정
	높이	획지K5	•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및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기준을 따름	• 최고높이 180m 이하 (49층 이하)	-

구분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고
건축선 및 대지내 공지	건축선	획지K5	• 건축한계선 – 잠원로8길변 : 대지경계로부터 6m – 그 외 도로변 : 대지경계로부터 3m • 고층부벽면한계선(15층이상 건축물의 경우 11층 이상부터 적용) – 잠원로8길변 대지경계로부터 8m	(좌동)	지침도에 따름
	대지 내 공지		• 전면공지 – 건축한계선으로 조성되는 전면공지는 보도형 전면공지로 조성 • 공공보행통로 6m(24시간 개방) (※지역권 설정) – 중앙부(도로~소공원) 연계	(좌동)	지침도에 따름
건축물 배치 및 형태			• 공동주택 – 광역통경축 또는 지구통경축변의 건축선(건축한계선, 고층부벽면한계선 등) 및 배치의 경우 「한강변 관리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에 따름. 이 경우 건축선 (또는 구역경계선)으로부터 공원 또는 녹지시설 등 개방형 시설(기부채납)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시설 폭원만큼 이격한 것으로 본다. – 건축물 배치 시 「주변과 소통하는 열린 생활공간」 조성을 위한 아파트단지 조성기준 (2020.01, 서울시)에 따라 배치계획 수립 – 도로변은 프라이버시 보호 및 소음저감을 위한 공간 확보 – 단지 내부 배치는 타워형, 판상형, 혼합형의 혼합 배치로 일률적인 판상형태의 이미지 탈피 – 주거지로서의 차분한 분위기와 안정감을 저해하지 않도록 조성하되, 미관적으로 단조롭지 않고 세련되게 연출 –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범죄예방형환경설계(CPTED) 가이드라인 및 기준 준용하여 계획 – 방범용CCTV는 사각지대 1개소 이상 설치 및 수목의 식재로 사각지대나 고립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수목의 간격을 적정하게 유지하여 계획 – 대상지 주위의 주요 조망축에서의 경관 및 주변지역과의 부조화 방지를 고려하여 스카이라인 등 계획 • 부대 및 복리시설 – 전면도로를 향하여 전면부 및 주출입구 계획 – 「주택법」에 의한 주민공동시설 법정 면적의 1/3이상은 개방형 커뮤니티시설로 확보하고 외부에서 접근이 가능하도록 지상1층 ~ 지상3층에 설치하는 것을 권장	(좌동)	-

구분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고
기타 외관요소	• 옥외설비 – 에어컨 실외기가 외벽면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차폐가능한 별도의 설치공간 계획 • 담장의 설치 – 원칙적으로 금지, 필요시 높이 1m이하의 투시형 목재 또는 식재 등의 마운딩가능 • 광고물 설치제한 – 판루형 간판 설치 금지하고 입체형으로 설치 – 건물 신축 시 간판설치 및 교체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간판게시틀 등의 입면디자인 도입	(좌동)	–
교통처리계획	• 차량출입구 및 차량출입불허구간 – 잠원로8길변 차량출입구 조성 – 잠원로변 간선도로에서의 직접적인 차량출입 불허 • 단지내 주차 및 차량동선 – 비상차량을 제외한 단지내 지상주차를 금지 – 단지내 도로는 아스팔트 포장을 지양하고 가급적 보도와 같은 형태로 조성 – 단지내 보행동선과 차량동선이 교차하는 구간은 보행우선 통행구조로 조성 • 단지내 보행동선 – 학교,공원 등 보행다발 시설과 연계되는 곳에 단지내 보행자도로 조성 – 보행자도로는 인접단지의 보행자도로와 연계하여 조성 – 보행축상에 조경시설 및 주민휴게시설, 커뮤니티시설 설치	(좌동)	지정위치는 결정도를 따름
기타에 관한 사항	• 인구 및 주택수용에 관한 사항 – 임대주택은 분양주택과 외관, 마감 등을 동일하게 계획하고 동별 · 동내 · 층별 혼합될 수 있도록 함 – 임대주택을 확보할 경우 다양한 규모로 맞춤형 주거유형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함 – 인구 및 주택계획의 적정성, 공공임대주택의 규모는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구체적 건축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 •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계획 및 기존 건축물의 정비, 개량 및 건축시설 계획 등은 세부개발계획 수립을 통해 결정	(좌동)	–

※ 해당 조서는 신반포 19차 · 25차 아파트 재건축정비구역 내 사항임

Ⅲ. 정비계획 결정(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

1. 정비구역 지정(변경) 조서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신반포 19차 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서초구 잠원동 61-2번지	13,389.1	-
	신반포 25차 아파트 일대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서초구 잠원동 61-1번지	13,548.1	-
변경	신반포 19차·25차 아파트 재건축정비구역	서초구 잠원동 61-1번지 일대	26,937.2	2개의 정비구역 통합

■ 지정(변경) 사유서

구분	변경내용	지정(변경) 사유
변경	정비구역 통합	신반포 19차, 25차 아파트 일대의 개별 정비구역 통합에 따른 정비구역 변경

2. 토지등소유자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추정 비례율	• 추정비례율 산정방식 : (구역 내 분양대상 대지 및 건축물 등 총 추산액 - 총 사업비) ÷ 종전 토지 및 건축물 총 가액 X 100% • 추정 비례율 : 87.31% ⇒ (1,819,293,421천원 - 476,450,394천원) ÷ 1,538,050,000천원 X 100% = 87.31%
종전·종후 토지 및 건축물 총 추산액	• 종전자산 추정가치는 본건 단지 및 인근지역의 본건단지와 지리적 위치, 건축년도, 단지규모 등이 유사한 단지 등의 최근(2025년도)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조회를 통한 실거래 사례, 공동주택 공시가격, KB부동산 시세 평균, 한국부동산원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추정 • 신반포19차, 25차 아파트의 경우 주택형별 건물면적, 대지지분 면적 등이 상이하고, 층별·향별· 위치별 격차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감정평가기관의 약식감정평가를 통하여 세대별 가격 형성 요인을 적용하여 종전자산 가격 산정 • 아파트 종전자산 추정가액 = 1,538,050,000천원 • 종후자산 분양가 수준은 인근지역의 신촉단지 실거래가격, 최근 분양사례, KB부동산 시세, 한국부동산원 시세, 공동주택 공시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25년 9월 기준으로 본건 단지의 특성을 감안하여 추정
추정 분담금	• 추정분담금 산정방식 = 조합원공급가 - 권리가액(종전자산평가액 X 추정비례율)

산출	조합원공급가		권리가액	추정분담금
	전용 59㎡	2,425,738천원	종전자산평가액 X 추정비례율(87.31%)	권리가액 조합원공급가 (+ : 부담 / - : 환급)
	전용 84㎡	3,148,571천원		
	전용 102㎡	3,661,276천원		
	전용 115㎡	4,067,647천원		

3. 정비계획 결정(변경)

가.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적(㎡)			비율(%)
		기정	변경	변경 후	
합 계		26,937.2	-	26,937.2	100.0
정비기반시설등	소 계	2,356.5	증) 104.0	2,460.5	9.1
	도 로	413.9	증) 104.0	517.9	1.9
	공 원	1,942.6	-	1,942.6	7.2
획 지		24,580.7	감) 104.0	24,476.7	90.9

나. 용도지역 · 지구 결정 조서 (변경없음)

1) 용도지역 결정 조서

구분		면적(㎡)			비율(%)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주거지역	소 계	26,937.2	-	26,937.2	100.0	-
	제3종일반주거지역	26.937.2	-	26.937.2	100.0	-

2) 용도지구 결정 조서 : 해당없음

다.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1) 교통시설

가)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소로	2	4	20	국지도로	378	잠원동 100-1	잠원동 78	일반도로	-	서고제2012-102호 (12.4.19.)	-
기정	소로	3	-	8	국지도로	124	잠원동 61-1	대로 2-a	일반도로	-	서고제2022-100호 (22.3.3.)	도로선형 변경
변경	소로	3	-	8	국지도로	124	잠원동 61-1	대로 2-a	일반도로	-	-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결정(변경) 사유
소로 3-	소로 3-	도로 선형 변경	도로 직선화를 위한 도로 선형 변경 (차도형 전면공지 → 도로)

2) 공간시설

가)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소공원	서초구 잠원동 61-1일대	842.6	증) 1,100.0	1,942.6	건고제131호 (76.8.21.)	25차 (19차 공원과 통합)
폐지	소공원	서초구 잠원동 61-2	1,100.0	감) 1,100.0	-	건고제131호 (76.8.21.)	19차

■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공원명	변경내용	결정(변경) 사유
변경	소공원	• 소공원 2개소 통합	• 신반포 19차, 25차 아파트 일대 개별 정비구역에 결정되어 있는 소공원을 정비구역 통합에 따라 시설 통합하고, 공원 선형 변경 (폭 30m)
폐지	소공원	• 폐지 (소공원 1,100㎡)	• 시설 통합으로 인한 소공원 폐지

라.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변경)

구분	시설의 종류	위치	면 적(㎡)	비고
관리사무소		획지	160.0	지하
경비실			30.0	지상
주민공동시설	소계		3,070.0	-
	경로당		330.0	지상
	어린이집		580.0	지상
	실내어린이놀이터		150.0	지상
	작은도서관		180.0	지상
	다함께돌봄센터		80.0	지상
	어린이놀이터		350.0	옥외
	주민운동시설		1,400.0	지하

※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에 따라 1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의 경우 주민공동시설을 세대당 2.5㎡ 더한 면적의 1.25배 이상 확보 = 613세대 X 2.5 X 1.25 = 1,915.63㎡ 이상 < 3,070.0㎡ 계획
※ 통합계획으로 통합 세대수 규모에 따른 변경 면적만 기재

마. 기존 건축물의 정비 · 개량에 관한 계획 (변경)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정비개량계획(동)					비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축	철거 이주	
기정	신반포19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13,389.1	획지	12,289.1	잠원동 61-2	2	-	-	2	-	-
	신반포25차아파트 일대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13,548.1	획지	12,291.6	잠원동 61-1일대	4	-	-	4	-	-
변경	신반포19차 · 25차 아파트 재건축정비구역	26,937.2	획지	24,476.7	잠원동 61-1일대	6	-	-	6	-	-

바. 건축물에 관한 계획(변경)

1) 획지 및 주택규모 등에 관한 계획(변경)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구분		위치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최고 층수)	비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기준	정비계획	법적상한		
기정	신반포19차 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13,389.1	획지	12,289.1	서초구 잠원동 61-2	공동주택	50 이하	230 이하	263.22 이하	299.99 이하	110m (35층 이하)	-

<table>
<tr><th rowspan="2">구분</th><th colspan="2">구역구분</th><th colspan="2">가구 또는
획지구분</th><th rowspan="2">위치</th><th rowspan="2">주용도</th><th rowspan="2">건폐율
(%)</th><th colspan="3">용적률(%)</th><th rowspan="2">높이
(최고
층수)</th><th rowspan="2">비고</th></tr>
<tr><th>명칭</th><th>면적(㎡)</th><th>명칭</th><th>면적(㎡)</th><th>기준</th><th>정비
계획</th><th>법적
상한</th></tr>
<tr><td></td><td>신반포25차
아파트 일대
재건축사업
정비구역</td><td>13,548.1</td><td>획지</td><td>12,291.6</td><td>서초구
잠원동
61-1일대</td><td rowspan="2"></td><td>50
이하</td><td>230
이하</td><td>265.0
이하</td><td>300.0
이하</td><td>112m
(35층
이하)</td><td>-</td></tr>
<tr><td>변경</td><td>신반포
19차 · 25차
아파트재건축정비구
역</td><td>26,937.2</td><td>획지</td><td>24,476.7</td><td>서초구
잠원동
61-1일대</td><td>50
이하</td><td>230
이하</td><td>263.26
이하</td><td>300.0
이하</td><td>180m
(49층
이하)</td><td>통합</td></tr>
<tr><td colspan="2" rowspan="3">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td><td colspan="12">기정
(19차)
총 세대수 : 352세대
국민주택규모(85㎡이하) 주택이 전체세대수의 60% 이상 건립(90.34%)
<table>
<tr><th rowspan="2">구 분</th><th colspan="6">세대수</th></tr>
<tr><th colspan="2">소계</th><th colspan="2">분양</th><th colspan="2">임대</th></tr>
<tr><td>합 계</td><td>352</td><td>(100.0%)</td><td>319</td><td>(90.6%)</td><td>33</td><td>(9.4%)</td></tr>
<tr><td>60㎡이하</td><td>120</td><td>(34.1%)</td><td>87</td><td>(24.7%)</td><td>33</td><td>(9.4%)</td></tr>
<tr><td>60~85㎡이하</td><td>198</td><td>(56.3%)</td><td>198</td><td>(56.3%)</td><td colspan="2">-</td></tr>
<tr><td>85㎡초과</td><td>34</td><td>(9.6%)</td><td>34</td><td>(9.6%)</td><td colspan="2">-</td></tr>
</table></td></tr>
<tr><td colspan="12">기정
(25차)
총 세대수 : 312세대
국민주택규모(85㎡이하) 주택이 전체세대수의 60% 이상 건립(68.3%)
<table>
<tr><th rowspan="2">구 분</th><th colspan="6">세대수</th></tr>
<tr><th colspan="2">소계</th><th colspan="2">분양</th><th colspan="2">임대</th></tr>
<tr><td>합 계</td><td>312</td><td>(100.0%)</td><td>272</td><td>(87.2%)</td><td>40</td><td>(12.8%)</td></tr>
<tr><td>60㎡이하</td><td>48</td><td>(15.4%)</td><td>26</td><td>(8.3%)</td><td>22</td><td>(7.1%)</td></tr>
<tr><td>60~85㎡이하</td><td>165</td><td>(52.9%)</td><td>147</td><td>(47.2%)</td><td>18</td><td>(5.7%)</td></tr>
<tr><td>85㎡초과</td><td>99</td><td>(31.7%)</td><td>99</td><td>(31.7%)</td><td colspan="2">-</td></tr>
</table></td></tr>
<tr><td colspan="12">변경
(통합)
총 세대수 : 613세대
국민주택규모(85㎡이하) 주택이 전체세대수의 60% 이상 건립(60.8%)
<table>
<tr><th rowspan="2">구 분</th><th colspan="6">세대수</th></tr>
<tr><th colspan="2">소계</th><th colspan="2">분양</th><th colspan="2">임대</th></tr>
<tr><td>합 계</td><td>613</td><td>(100.0%)</td><td>538</td><td>(87.8%)</td><td>75</td><td>(12.2%)</td></tr>
<tr><td>60㎡이하</td><td>112</td><td>(18.2%)</td><td>37</td><td>(6.0%)</td><td>75</td><td>(12.2%)</td></tr>
<tr><td>60~85㎡이하</td><td>261</td><td>(42.6%)</td><td>261</td><td>(42.6%)</td><td colspan="2">-</td></tr>
</table></td></tr>
</table>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구분		위치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최고층수)	비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기준	정비계획	법적상한		

구 분	세대수					
	소계		분양		임대	
85㎡초과	240	(39.2%)	240	(39.2%)	-	

구 분			계획내용
심의완화사항			•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에 따른 법적상한용적률 완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 : 법적상한용적률 300% 이하 (완화용적률 36.74%)
건축물의 건축선등에 관한 계획	기정	(19차)	• 잠원로8길변(20m) : 10m • 그 외 도로변 : 관련 법령의 건축선 규정에 따름
		(25차)	• 건축한계선 : - (잠원로8길변) 대지경계로부터 5m, - (그 외 도로 및 공원변) 도로, 대지경계로부터 3m (※신설 소로3-호선 측 건축한계선 도면 참조) • 고층부벽면한계선 : (잠원로8길변) 건축한계선으로부터 3m
	변경(통합)		• 건축한계선 : - (잠원로8길변) 대지경계로부터 6m, - (그 외 도로변) 대지경계로부터 3m • 고층부벽면한계선 : (잠원로8길변) 대지경계로부터 8m
기타사항	기정	(19차)	• 공공보행통로 5m : 대상지 북서측(신반포25차 인접)에 위치하여 소공원과 연결하여 보행로 조성 • 공공보행통로 3m : 대상지 북동측(학교예정용지 인접)에 위치하여 보행로 조성
		(25차)	• 공공보행통로 : 인접필지변(소로3-호선~소공원) 공공보행통로 3m
	변경(통합)		• 공공보행통로 : - (중앙부) 도로 ~ 소공원 연계 폭원 6m

2) 용적률 계획

■ 기정(19차)

구 분	산정내용						
토지이용계획	합 계 (구역면적)	획지 (공동주택)	새로 설치하는 공공시설등			새로 설치할 정비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획지 내 용도폐지 되는 정비기반시설 국공유지
			소계	토지 (부속토지)	현금·건축물 (환산부지)		
	13,389.1㎡	12,289.1㎡	1,339.0㎡	1,100.0㎡	239.0㎡	-	-
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 (순부담)	• 새로 설치하는 공공시설등 제공면적 - 새로 설치할 정비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 획지 내 용도폐지 되는 정비기반시설 국공유지 = (1,100.0㎡ + 239.0㎡) - 0.0㎡ - 0.0㎡ = 1,339.0㎡ (구역대비10.00%)						
공공시설등 부지(토지)면적	• 1,100.0㎡ - 공원 1,100.0㎡						
공공시설 설치에 대한 환산부지면적	• 239.0㎡ - 현금 기부채납(약 48억원) 환산부지 면적 = 현금 기부채납 비용 ÷ 부지가액 = 4,856,480,000원 ÷ 20,320,000원/㎡ = 239.0㎡ ※ 부지가액(원/㎡) = 공시지가 가중평균 2배 적용 ('18.1.1. 기준)						
상한용적률	• 상한용적률 = 기준용적률 × (1 + 1.3 × a) = 230% × (1 + 1.3 × 0.1111) = 263.22% ⇒ 정비계획 용적률 263.22% 이하 ※ a : 공공시설등 제공면적 / 공공시설등 제공 후 부지면적 = 1,339.0㎡ / 12,050.1㎡ = 0.1111						

■ 기정(25차)

구 분	산정내용						
토지이용계획	합 계 (구역면적)	획지 (공동주택)	새로 설치하는 공공시설등			새로 설치할 정비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획지 내 용도폐지 되는 정비기반시설 국공유지
			소계	토지 (부속토지)	현금·건축물 (환산부지)		
	13,548.1㎡	12,291.6㎡	1,895.3㎡	1,836.5㎡	58.8㎡	87.2㎡	409.0㎡
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 (순부담)	• 새로 설치하는 공공시설등 제공면적 - 새로 설치할 정비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 획지 내 용도폐지 되는 정비기반시설 국공유지 = (413.9㎡ + 842.6㎡ + 580.0㎡ + 58.8㎡) - 87.2㎡ - 409.0㎡ = 1,399.1.0㎡ (구역대비10.33%)						
공공시설등 부지(토지)면적	• 1,836.5㎡ - 도로 413.9㎡, 공원 842.6㎡, 건축물 기부채납(공공기여 임대주택) 부속토지 580.0㎡						
공공시설 설치에 대한 환산부지면적	• 58.8㎡ - 건축물 기부채납(공공기여 임대주택) 환산부지 면적 (공급연면적 1,729.76㎡ / 전용59㎡ 14세대, 전용84㎡ 5세대)						

구 분	산정내용
상한용적률	• 상한용적률 = 기준용적률 × (1 + 1.3 × 가중치 × a(토지) + 0.7 × a(건축물)) = 230% × (1 + 1.3 × 1 × 0.1144 + 0.7 × 0.0050) = 265.03% ⇒ 정비계획 용적률 265.0% 이하 ※ a(토지) : 공공시설등 부지(토지)제공면적 / 공공시설등 부지(토지)제공 후 부지면적 = 1,340.3㎡ / 11,711.6㎡ = 0.1144 ※ a(건축물) : 공공시설등 부지(건축물 환산부지) / 공공시설등 제공 후 부지면적 = 58.8㎡ / 11,711.6㎡ = 0.0050

■ 변경(통합)

<table>
<tr><th colspan="2">구 분</th><th colspan="7">산정내용</th></tr>
<tr><td colspan="2" rowspan="2">토지이용계획</td><td rowspan="2">구역면적</td><td rowspan="2">획지
(공동주택)</td><td colspan="3">새로 설치하는 공공시설 등</td><td rowspan="2">새로 설치할
정비기반시설
내 국공유지</td><td rowspan="2">획지 내 용도폐지 되는
정비기반시설
국공유지</td></tr>
<tr><td>소계</td><td>토지
(부속토지)</td><td>현금 · 건축물
(환산부지)</td></tr>
<tr><td colspan="2"></td><td>26,937.2㎡</td><td>24,476.7㎡</td><td>3,196.9㎡</td><td>3,043.8㎡</td><td>153.1㎡</td><td>95.4㎡</td><td>407.6㎡</td></tr>
<tr><td colspan="2">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
(순부담)</td><td colspan="7">• 순부담 면적 = 공공시설등 제공 면적(새로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등 + 건축물 기부채납 · 현금) - 새로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 획지 내 용도폐지 되는 정비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 (3,043.8㎡ + 153.1㎡) - 95.4㎡ - 407.6㎡ = 2,693.9㎡ (구역대비 10.00%)</td></tr>
<tr><td></td><td>정비기반시설</td><td colspan="7">• 2,460.5㎡
- 도로 517.9㎡, 공원 1,942.6㎡</td></tr>
<tr><td></td><td>공공시설등
대지지분</td><td colspan="7">• 583.3㎡ (제공 세대수 21세대)
- 건축물 기부채납(공공기여 임대주택) 부속토지 583.3㎡</td></tr>
<tr><td></td><td>공공시설등 건축물
면적 (환산부지)</td><td colspan="7">• 건축물 기부채납(공공주택 21세대) 환산부지 면적 : 153.1㎡ (※연면적 3,640.51㎡)
- 지상층 : 105.4㎡
(설치비용)2,192,727원주1) × (연면적)1,748.67㎡ ÷ (부지가액)36,412,661원주3) = 105.4㎡
- 지하층 : 47.7㎡
(설치비용)917,273원주2) × (연면적)1,891.84㎡ ÷ (부지가액)36,412,661원주3) = 47.7㎡
주1)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 및 가산비용」 지상층 건축비(국토교통부고시 2024-497호)
: 50㎡ 초과~ 60㎡ 이하(46 ~ 49층 이하) 2,412,000원의 부가세 10% 제외 금액
주2)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 및 가산비용」 지하층 건축비(국토교통부고시 2024-497호)
: 1,009,000원의 부가세 10% 제외 금액
주3) 부지가액 : 2024년 평균 공시지가 18,206,330원/㎡ 2배 적용</td></tr>
</table>

구 분	산정내용
기준용적률	• 기준 230%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기준용적률) -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항목 : 공공보행통로(5%), 돌봄시설(5%), 층간소음 해소(3%), 친환경건축물(7.5%) 총 20% 적용 *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전환지침」(행정2부 시장 방침 제31호,' 21.3.)에 따라 허용용적률 20%에 상응하는 인센티브 계획
정비계획용적률 (상한용적률)	• 상한용적률 = 기준용적률 × (1 + 1.3×가중치×a(토지) + *1.0×a(건축물)) (*임대주택 적용계수 1.0) = 230% × (1 + 1.3×1×0.1063 + 1.0×0.0064) = 263.26% ⇒ 정비계획 용적률 263.26%이하 ※ a(토지) : 공공시설등 부지(토지)제공면적 / 공공시설등 부지(토지)제공 후 부지면적 = 2,540.8㎡ / 23,893.4㎡ = 0.1063 ※ a(건축물) : 공공시설등 부지(건축물 환산부지) / 공공시설등 부지(토지)제공 후 부지면적 = 153.1㎡ / 23,893.4㎡ = 0.0064
법적상한용적률	• 300.0% (건축계획 용적률 299.99%)

■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계획(신설)

구분		인센티브량		적용	비고
보행중심 생활공간 조성	공공보행 통로	• 주변 가로망 연계를 위한 공공보행통로 등 조성(지역권 설정) = 230% × (548.3㎡ ÷ 24,476.7㎡) × 1 = 5.2% ※ 기준용적률 × (조성면적 ÷ 대지면적) × a (※a=1이하) * 지역권 : 통행 등 일정 목적으로 타인토지를 자기토지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등기로 설정) (수변친화 중복적용 불가)	10% 이내	5.0%	-
세대 맞춤형 생활환경 개선	돌봄시설	• 지역에 필요한 놀이 · 돌봄시설* 설치 및 제공(무상임대) = 230% × (414.0㎡ ÷ 1,915.63㎡) × 0.1 = 5.0% ※ 기준용적률 × (조성면적(의무면적 제외) ÷ 주민공동시설 면적(의무면적)) × a (※a=0.1이하)	5% 이내	5.0%	조성면적 414.0㎡ (의무제외)
	층간소음 해소	• 바닥(중량)충격음 차단성능 2등급 이상 (1등급 5%, 2등급 3%)	5% 이내	3.0%	-
환경친화 안전한 주거지	친환경 건축물	① 에너지효율등급 및 ZEB 인증 - ZEB1 7.5%(15%), ZEB2 7%(14%), ZEB3 6.5%(13%), ZEB4 6%(12%), ZEB5 5.5%(11%), 에너지효율 1++ 3%(6%), 에너지효율 1+ 1.5%(3%)	7.5% 이내 (15%p	7.5%	-

구분		인센티브량		적용	비고
조성		② 녹색건축인증 - 최우수 등급 3%(6%), 우수 등급 1.5%(3%)	이내)		
합계		최대 20% 이내		20% 적용	-

※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전환지침」(행정2부 시장 방침 제31호, ' 21.3.)에 따라 허용용적률 20%에 상응하는 인센티브 계획 필요

사. 교통 및 동선처리계획

구 분	지점	개선방안
주변가로 및 교차로	- -	• 주변 교차로 최적신호운영방안 제시(4개소) • 「신반포27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교통성검토서, ' 2023.03.」 개선(안) 반영 - 차량진출입구 계획(안) 및 도로운영계획(안) 반영
진출입 동선	- -	• 잠원로8길변 차량진출입구 설치(1개소) - 진입 · 진출 각 2개 차로 • 사업지 진출입구 가각부 회전반경 확보(R=6.0m)
대중교통 및 보행	- - -	• 사업지 주변 보도부속형 전면공지 확보(B=3.0 ~ 6.0m) • 보행동선 단절지점 횡단보도 설치(2개소) - 일반식 1개소, 고원식 1개소 • 사업지내 공공보행통로 설치(B=6.0m)
주 차 시 설	- - -	• 주차계획수립 - 법정주차대수 : 771대 - 주차수요대수 : 799대(원단위법, 2030년) - 계획주차대수 : 1,226대(법정주차대비 159.0%, 수요주차대비 153.4%) • 주차차단기 설치 - 입주자 및 방문자 차량 분리 • 통학차량 정차공간 설치
교통안전 및 기타	- - -	• 차량 진출입구 차량경고등 설치(1개소) • 잠원로8길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시설물 추가 설치 - 유색포장 추가 설치 - 어린이보호구역 내 서행표시(지그재그 차선) 설치 • 남서측 이면도로 내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 과속방지턱 설치(1개소) - ③ 사업지입구 교차로 주정차금지대 설치(1개소)

아. 환경보전,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및 환경성 검토결과

1)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구분		계획내용	비고
환경보전		• 현재 지형을 최대한 고려 실시계획 수립시 절성토 균형이 되도록 계획하여 외부 유출, 내부유입을 최소화 • 주차장의 지하화를 통해 지상부의 오픈스페이스, 녹지공간 등을 최대한 확보 • 도시생태계 회복을 위해 주변 자연환경과 어울리는 수목 식재 • 공사 및 운영시 오염원에 대한 저감대책 수립하여 환경오염 최소화	-
재난방지	화재	• 공동주택 부지 내에 소방차가 진입, 진압활동을 벌일 수 있는 공간을 확보토록 의무화 • 인화성 건축내장재 사용을 규제하고 사업완료 후 지속적으로 관리	-
	수해	• 자연토양유지 및 공원 등 녹지·조경 면적의 확대로 토양포장율을 억제하고 불가피할 경우 가급적 투수포장재를 사용하여 우수유출량을 최대한 억제	
	교통	• 진입로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통문제에 대한 처리방안 계획	

2) 환경성 검토결과

검토항목		목표기준	준수 여부	현황 및 검토결과	계획에의 반영사항	비고
1	수질	수질오염 방지	○	• 주변 하천 및 지하수 수질 현황 조사, 공사중 토사유출 및 오수 발생	• 공사 중 수질저감 계획 수립 • 우수, 하수 처리방안 계획	-
2	물순환, 수리 · 수문	생태면적률 30% 자연물순환 유지	○	• 대지, 주차장, 도로 등으로 일부 조경수 외 녹지 없음	• 생태면적률 35.48% 목표, 획지 내 조경녹지 확보	-
3	토지이용	종합적인 토지이용계획	○	• 토지이용 현황 및 용도지역 조사	• 정비기반시설(도로)을 포함한 종합적 토지이용계획을 수립	-
4	토양	토양오염 최소화	-	• 토양오염 발생하지 않음	-	-
5	지형 · 지질	지형 · 지질 변동 최소화	○	• 표고 15.00m, 경사도 0° 의 평탄한 지형	• 평지 형태로 지형변화는 경미하며, 공동주택 건축에 따른 지하터파기 공사계획에 따라 부분적인 지형 변화가 예상됨	-

검토항목		목표기준	준수 여부	현황 및 검토결과	계획에의 반영사항	비고
6	생태 네트워크	녹지연결성 확보	○	• 인공적으로 조성된 녹지	• 획지 내 공원 및 조경 녹지계획을 통해 연결성 확보	-
7	동·식물상	동·식물상 보호	-	• 도심지(대지)로 해당사항 없음	-	-
8	자연환경 자산	자연환경 보전	-	• 해당 사항 없음	-	-
9	비오톱	비오톱보전 등급 향상	○	• 비오톱유형평가도 4등급, 개별 비오톱평가도 평가제외	• 획지 내 조경녹지확보로 친환경적 단지 조성	-
10	바람 및 미기후	바람길 및 미기후 개선	○	• 서울기상대 기상현황 조사 분석, 주풍향 등 검토	• 향후 세부 계획시 바람방향을 고려한 건축물 배치, 녹지에 수목 식재를 통한 미기후 개선	-
11	대기질·미세먼지	대기오염 최소화	○	• 공사장 장비가동 시 비산먼지 및 배기가스 배출 영향	• 세륜측면살수시설, 방진망 설치, 주기적인 살수 등 저감, 환경정화수종 식재	-
12	악취	악취공해 해결	-	• 해당 사항 없음	-	-
13	온실가스	온실가스 저감	○	• 난방, 취사연료 사용과 차량 이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 계획지구 내 청정연료 사용, 에너지 절감, 녹지 계획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 검토	-
14	친환경적 자원순환	폐기물발생량 최소화	○	• 공사장 건설폐기물 발생 및 운영시 생활 및 분뇨폐기물 발생	• 분리수거 및 재활용을 통한 폐기물 발생 감량	-
15	에너지	에너지절약/ 효율 극대화	○	• 지역 에너지 소비현황 조사, 난방, 취사, 전력 사용으로 인한 에너지 이용량 증가	• 향후 에너지 절약형 설비기기 도입, 신재생에너지 검토 예정	-
16	소음·진동	소음·진동 최소화	○	• 공사시 장비투입에 따른 공사장 소음 유발, 운영시 교통소음으로 인한 영향	• 공사중 가설방음판넬, 저소음 저진동 장비 사용, 녹지 완충공간 조성	-
17	경관	주변경관과의 조화 (가로녹시율 30%)	○	• 도심지역 인공경관 형성지역으로 가로녹시율 28.73%~38.65% • 대상지 외곽 조경녹지(선형) 녹시율은 높으나, 전체적인 녹시율은 낮게 나타남	• 49층 이하의 고층으로 계획 • 인근 주거지와 조화로운 스카이라인 형성을 유도 • 인접 주거지와 연결되는 안전한 가로환경을 조성	-

검토항목		목표기준	준수 여부	현황 및 검토결과	계획에의 반영사항	비고
18	휴식 및 여가공간	양질의 휴식, 여가공간 확보	○	• 일부 조경수 외 녹지 없음	• 단지 내 공원조성으로 계획지구주변 공원녹지와 연결되는 녹지네트워크 조성	-
19	일조	일조 침해 최소화	○	• 연평균 및 월별, 계절별 일조 시간 검토 • 주변에 대한 일조장해 없음	• 49층 이하의 고층으로 사업계획 수립, 일조권 침해 수인한도 준수	-
20	보행 친화공간	보행친화형 도시 조성	○	• 인공적으로 조성된 공원녹지가 대부분임 • 학교를 고려한 보행공간의 확충이 필요	• 인근 공원과 연계한 보행네트워크 구축 • 주요 통학로변 보행환경 개선	-
21	전파장해	전파장해 영향 저감	-	• 해당 사항 없음	-	-
22	인구	인구 동태를 고려한 계획 수립	-	• 해당 사항 없음	-	-
23	주거	주거 환경을 고려한 계획 수립	-	• 해당 사항 없음	-	-
24	산업	산업 동태를 고려한 계획 수립	-	• 해당 사항 없음	-	-

자.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정비구역 주변현황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비고
• 대상지 200m 이내에 하나유치원, 학교예정부지(고등학교) 위치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에 의건 정비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에 교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 • 정비계획 · 건축계획 검토 시 하나유치원의 교육환경보호를 위하여 건축배치 시 일조영향 등을 고려한 층수계획 • 향후, 동법 제30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의거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시 협의사항을 반영하여 사업시행인가를 득하겠음	-

차.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계획

정비구역 현황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계획			비고
	착공 전	착공 ~ 공사완료	범죄예방설계 적용	
• 현재 조합이 설립되어 사업 추진중으로 주민들 거주중	• 펜스 설치 및 유지·관리 • 1일 오전·오후 1회 우범지역 순찰 • 방범용 CCTV 설치운영	•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건축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규정 준수 안전 시공 • 안전관리비 및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공사비 계상	• 방법용 CCTV는 사각지대 1개소 이상 설치 • 수목의 식재로 사각지대나 고립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수목의 간격을 적정하게 유지하여 계획	-

카.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계획(변경)

구분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예정자	정비사업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비고
기정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변경) 고시가 있는날부터 4년 이내	신반포19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	현황) 447세대 증감) 166세대 계획) 613세대	19차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변경) 후 4년 이내	신반포25차 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25차
변경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지정(변경) 후 4년 이내	신반포19차·25차(아) 재건축정비사업조합		-

타.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변경)

구분		가구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기정	-	-	12,289.1	서초구 잠원동 61-2번지	12,289.1	공동주택(19차)
	1	-	12,291.6	서초구 잠원동 61-1일대	12,291.6	공동주택(25차)
변경	1	-	*75,036.7	서초구 잠원동 61-1일대	24,476.7	공동주택(통합)

* 반포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서고 제2023-422호,' 23.9.21.) 가구 면적 반영

파. 공공주택(기부채납/법적상한용적률 완화) 건설에 관한 계획

○ 모든 공공주택은 원칙적으로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주택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필요 시, 해당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는 그에 따른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공공주택 등은 세입자 주거대책 및 도시저소득 주민의 입주기회 확대 등 공공목적의 공공주택 용도로 정하며, 서울시에 매각(처분)하여야 한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따라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은 뺀 용적률의 50% 이상을 공공주택 (국민주택규모 주택)으로 건설하여야 한다.

1) 공공주택(임대) 공급계획(변경)

구분			총 세대수	공공기여 공공주택					국민주택규모 주택 (법적상한용적률 완화 공공주택)				
				소계	40㎡ 이하	40 ~ 50㎡	50 ~ 60㎡	60 ~ 85㎡	소계	40㎡ 이하	40 ~ 50㎡	50 ~ 60㎡	60 ~ 85㎡
주택 공급 계획	기정	세대수	73	19	-	-	14	5	54	-	33	8	13
		비율(%)	100.0	26.0	-	-	19.2	6.8	74.0	-	45.2	11.0	17.8
	변경	세대수	75	21	-	-	21	-	54	-	-	54	-
		비율(%)	100.0	28.0	-	-	28.0	-	72.0	-	-	72.0	-
		공급유형		장기전세주택 21세대					장기전세주택 54세대				

※ 공공주택의 규모별 건설비율은 통합심의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변경될 수 있음
※ 공동주택 단지 내 분양주택과 공공주택은 동일(유사)한 규모와 적절한 비율로 혼합하여 특정 동·층 라인에 집중되지 않고 분산되도록 건설하고, 임대주택의 선정은 공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함
※ 공공기여(기부채납) 및 용적률 완화로 공급되는 공공주택(임대) 중 전용면적 40㎡을 초과하는 공공주택은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며, 장기전세주택의 50%는 미리내집으로 활용

2) 정비계획용적률 완화를 위한 기부채납 공공임대주택(변경)

구분	건립위치	부지면적 (㎡)	세대수		세대규모		비고 (제공 연면적)
					전용면적	공급면적	
기정 (25차)	획지	12,291.6	소계	19	-		1,729.76㎡
			전용 59㎡	14	59.90㎡	82.14㎡	1,149.96㎡
			전용 84㎡	5	84.98㎡	115.96㎡	579.80㎡
변경	획지	24,476.7	소계	21	-		1,748.67㎡
			전용 59㎡	21	59.80㎡	83.27㎡	1,748.67㎡

※ 기정은 서고 제2022-100호('22.3.3.) 신반포 25차 기결정 시 공공기여 임대주택에 해당함(신반포 19차 기결정 시 공공기여 임대주택 없음)

3) 법적상한용적률 완화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변경)

■ 기정(19차)

<table>
<tr><td colspan="2">예상법적상한용적률
(건축계획)</td><td colspan="5">• 299.99% 이하 (※ 건축심의에서 최종결정)</td></tr>
<tr><td colspan="2">정비계획용적률
(상한용적률)</td><td colspan="5">• 263.22% 이하</td></tr>
<tr><td rowspan="5">공공주택
(법적상한 용적률 완화)
산출근거</td><td>용적률 증가분</td><td colspan="5">• 299.99% - 263.22% = 36.77%</td></tr>
<tr><td>증가된 용적률의 50%</td><td colspan="5">• 36.77% × 50% = 18.39%</td></tr>
<tr><td>의무 연면적</td><td colspan="5">• 12,289.1㎡(대지면적) × 18.39% = 2,259.97㎡ 이상</td></tr>
<tr><td rowspan="3">공공주택
(법적상한 용적률 완화)
확보계획</td><td colspan="2">세대규모</td><td rowspan="2">세대수</td><td rowspan="2">연면적</td><td rowspan="2">비고</td></tr>
<tr><td>전용면적</td><td>공급면적</td></tr>
<tr><td colspan="2">합계</td><td>33</td><td>2,285.58㎡</td><td>(의무) 2,259.97㎡
이상 확보</td></tr>
<tr><td>49.96㎡</td><td>69.26㎡</td><td>33</td><td>2,285.58㎡</td><td>획지</td></tr>
</table>

■ 기정(25차)

<table>
<tr><td colspan="2">예상법적상한용적률
(건축계획)</td><td>• 300.0% 이하 (※ 건축심의에서 최종결정)</td></tr>
<tr><td colspan="2">정비계획용적률
(상한용적률)</td><td>• 265.0% 이하</td></tr>
<tr><td rowspan="3">공공주택
(법적상한 용적률 완화)
산출근거</td><td>용적률 증가분</td><td>• 300.0% - 265.0% = 35.0%</td></tr>
<tr><td>증가된 용적률의 50%</td><td>• 35.0% × 50% = 17.5%</td></tr>
<tr><td>의무 연면적</td><td>• 12,291.6㎡(대지면적) × 17.5% = 2,151.03㎡ 이상</td></tr>
</table>

	공공주택 (법적상한 용적률 완화) 확보계획	세대규모		세대수	연면적	비고
		전용면적	공급면적			
		합계		21	2,164.60㎡	(의무) 2,259.97㎡ 이상 확보
		59.90㎡	82.14㎡	8	657.12㎡	획지
		84.98㎡	115.96㎡	13	1,507.48㎡	획지

■ 변경(통합)

예상법적상한용적률 (건축계획)		• 300.00% 이하 (※ 건축심의에서 최종결정)				
정비계획용적률 (상한용적률)		• 263.26% 이하				
공공주택 (법적상한 용적률 완화) 산출근거	용적률 증가분	• 300.00% - 263.26% = 36.74%				
	증가된 용적률의 50%	• 36.74% × 50% = 18.37%				
	의무 연면적	• 24,476.7㎡(대지면적) × 18.37% = 4,496.37㎡ 이상				
	공공주택 (법적상한 용적률 완화) 확보계획	세대규모		세대수	연면적	비고
		전용면적	공급면적			
		합계		54	4,496.58㎡	(의무) 4,496.37㎡ 이상 확보
		59.80㎡	83.27㎡	54	4,496.58㎡	획지

Ⅳ. 2025년 제7차 서울특별시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 개최결과 : 수정가결

구분	심의의견	조치계획	비고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	▶ 수정사항		
	• 획지면적, 용적률 계획, 건폐율 계획, 건축선, 공공보행통로, 공공기여계획, 순부담 면적 및 주택공급계획 등은 구청장 수정가결 요청(안) 반영		반영
	▶ 조건사항		
	• 향후 건축계획시 대칭형 스카이라인 및 배치계획의 적정성을 재검토할 것	• 향후 통합(건축)심의 시, 대칭형 스카이라인 및 배치계획 등 종합적으로 재검토하도록 하겠음	추후 반영
	• 공원 면적은 1,942.6㎡로 하고, 공원의 형태는 대상지 일대 보행 연결성, 공원 기능 및 공원 조성 기준 등을 고려한 장단점을 비교 분석하여 대상지 성격에 적합한 공원 형태로 조성	• 기결정 면적(1,942.6㎡)을 반영하고, 반포아파트지구(공원조성 패턴등) 연계성 및 적정 공원시설 배치를 고려하여 단변 30m 정방향 형태로 조정하였음	반영
	• 공원에 연접하여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최대한 배치하여 상호 활용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할 것	• 공원 연계성을 고려하여 공동이용시설 배치를 검토하였으며, 향후 통합(건축·공원) 심의 시 배치 적정성을 재검토하겠음	추후 반영

Ⅴ. 열람장소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시민의 열람 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과 (☎02-2133-7145) 및 서초구 재건축사업과(☎02-2155-7341)에 관계도서를 비치 및 열람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반포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관련도면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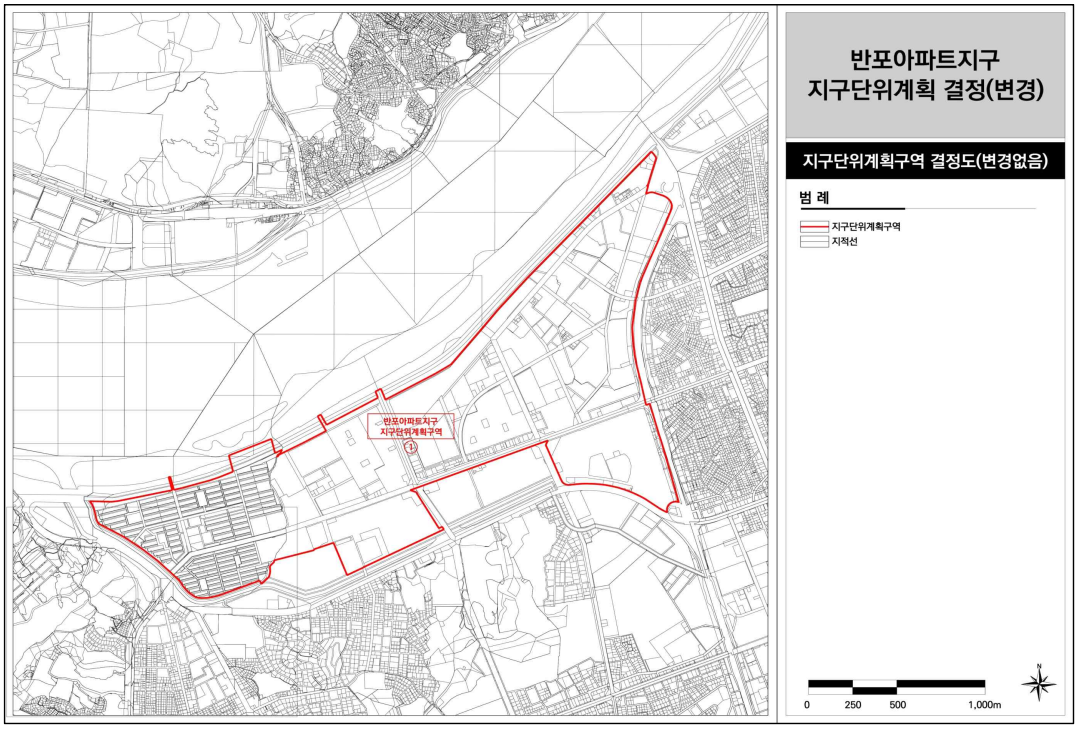

용도지역 및 지구에 관한 결정도(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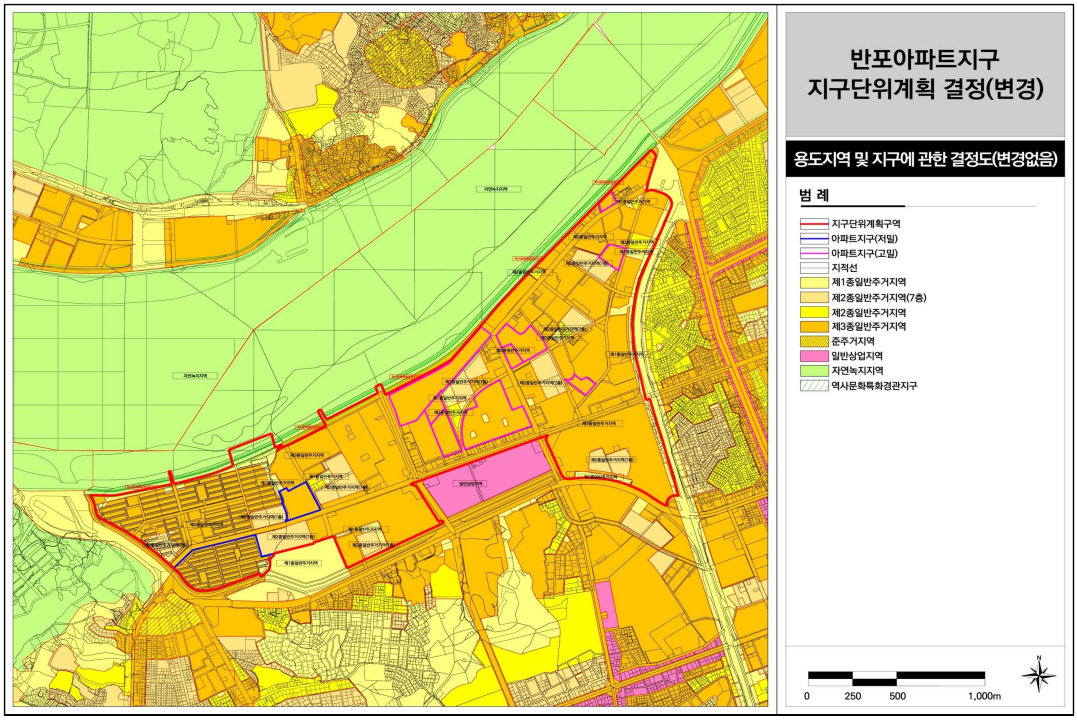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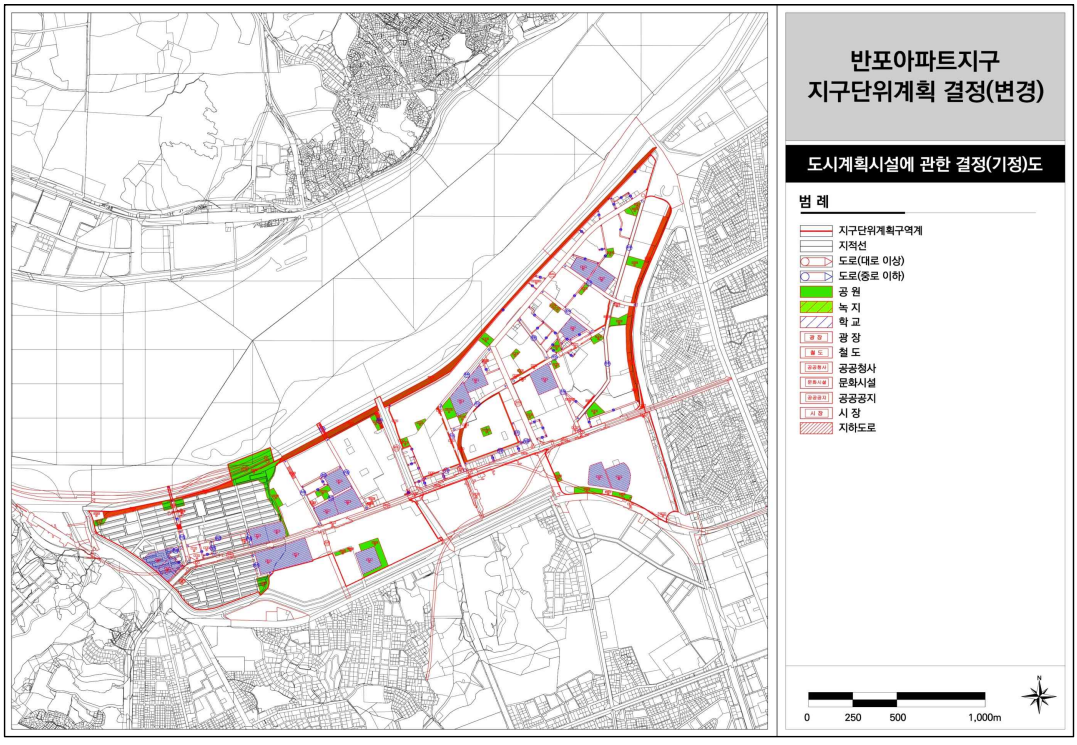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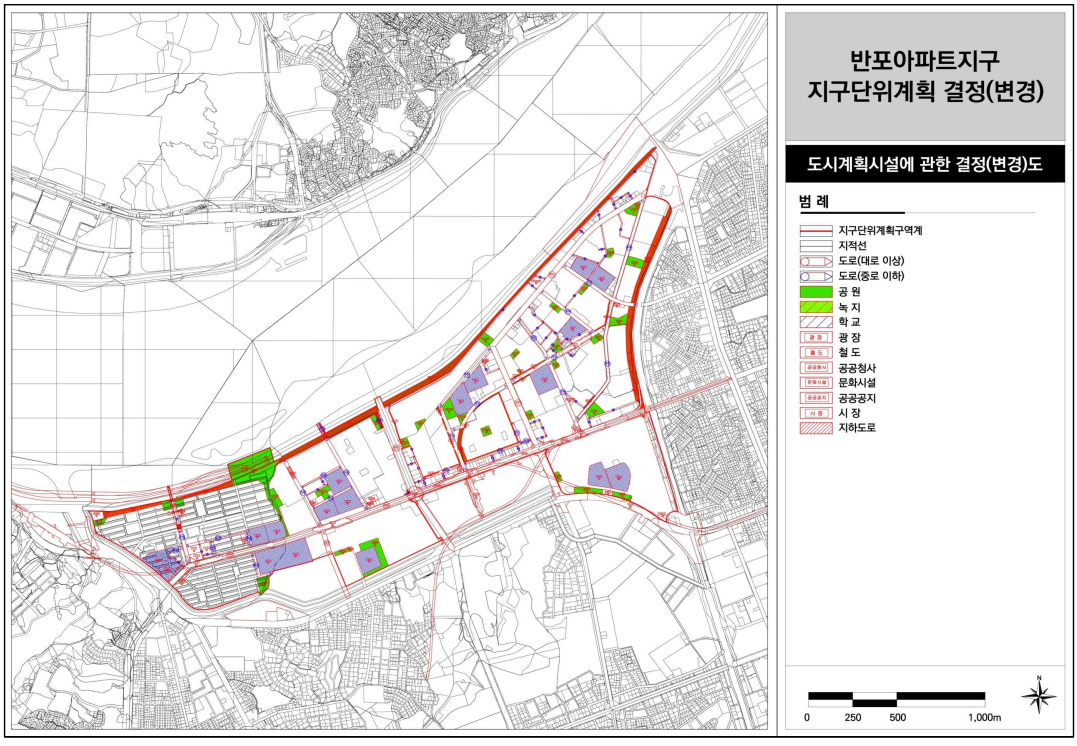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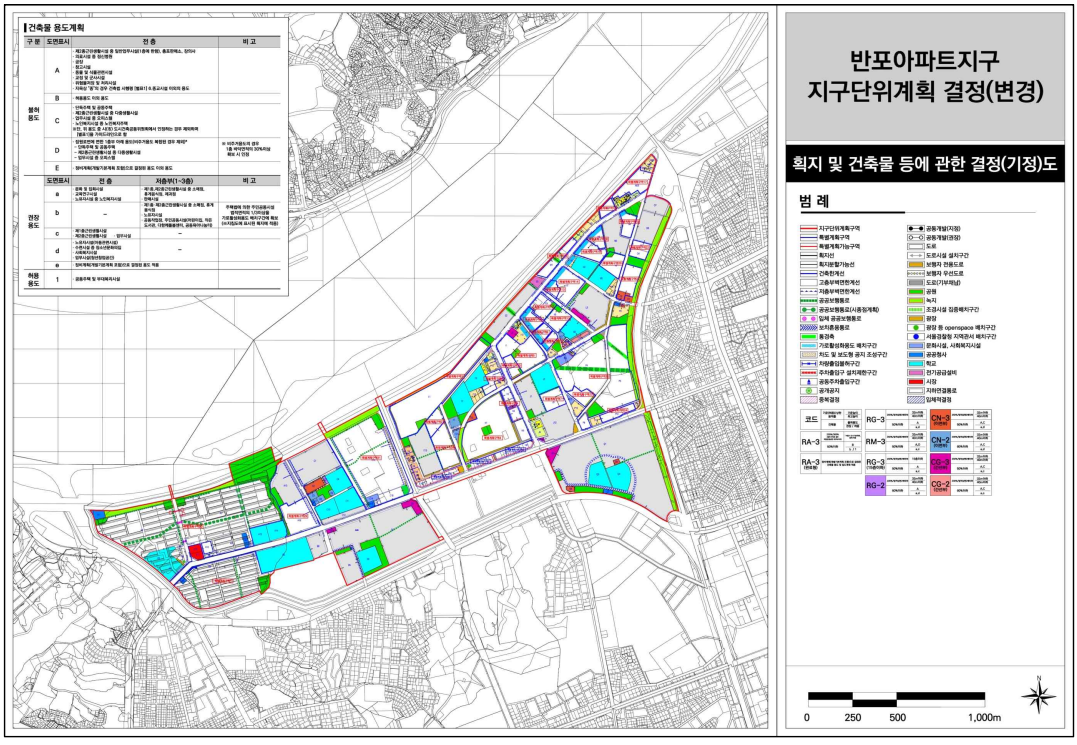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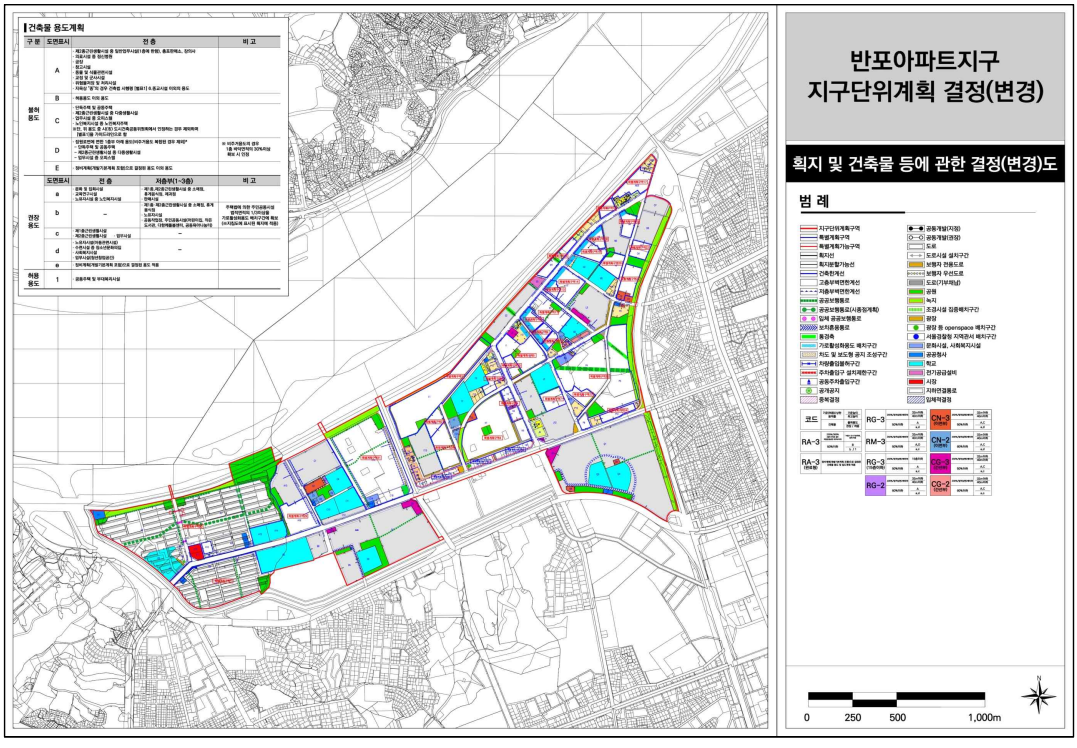

특별계획구역 11 · 12 계획지침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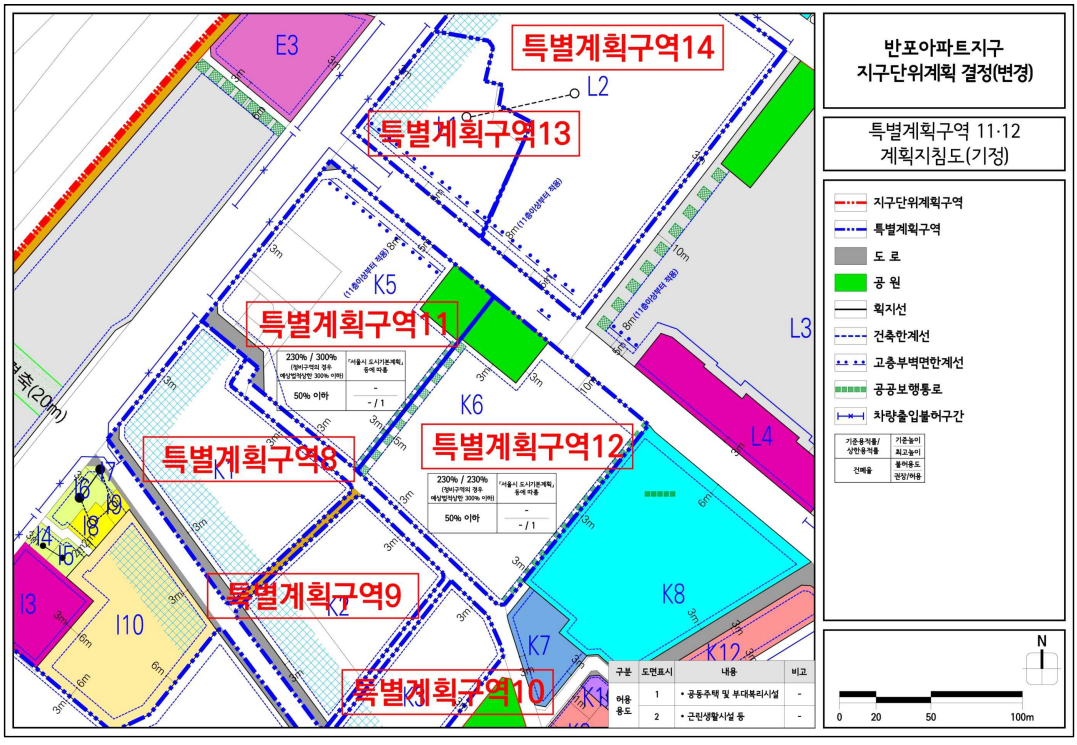

특별계획구역 11 계획지침도(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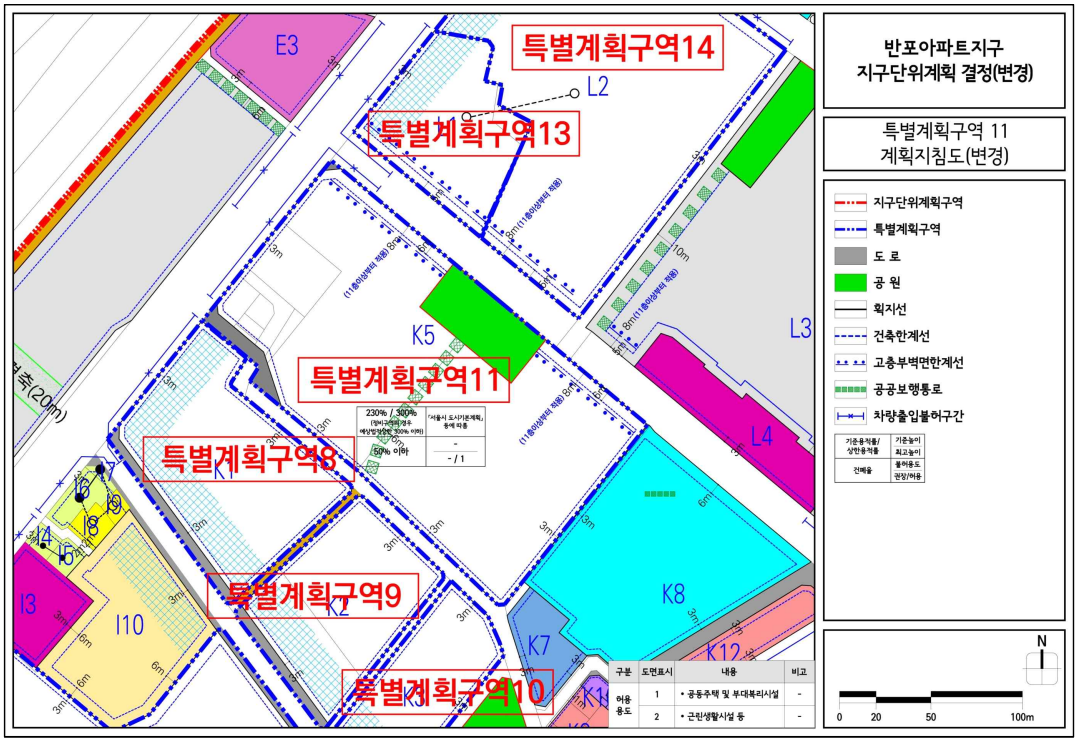

<붙임2> 특별계획구역11 세부개발계획 결정 관련도면

세부개발계획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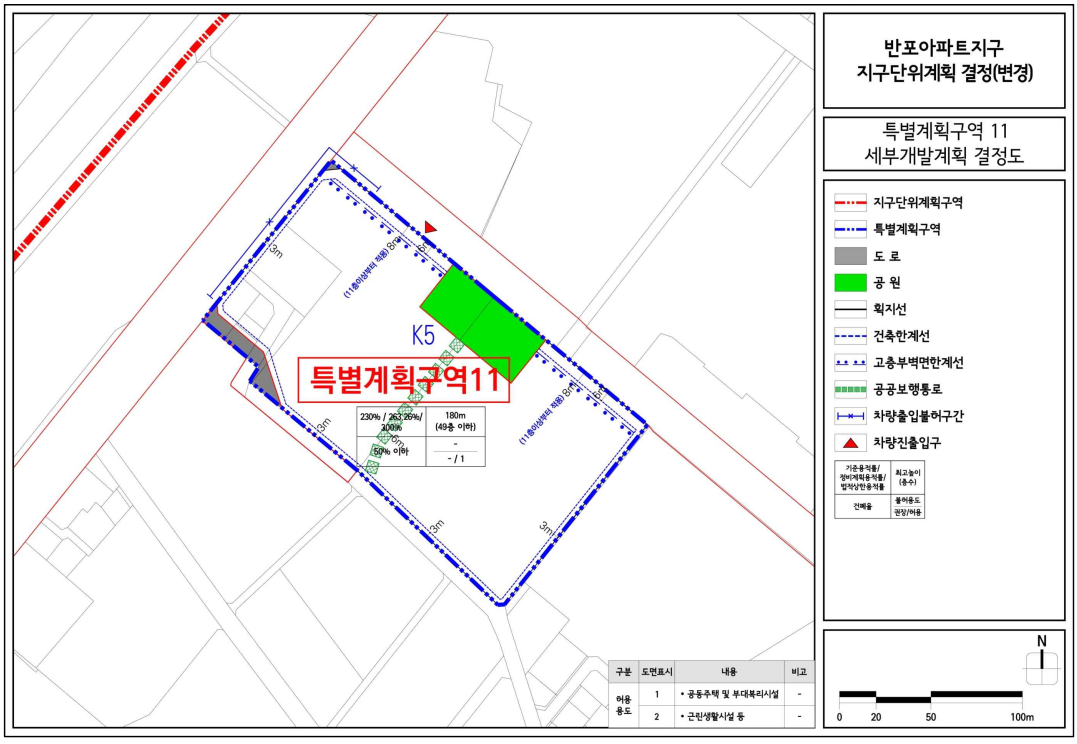

<붙임3> 신반포19차 · 25차 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변경)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 관련도면

정비구역 결정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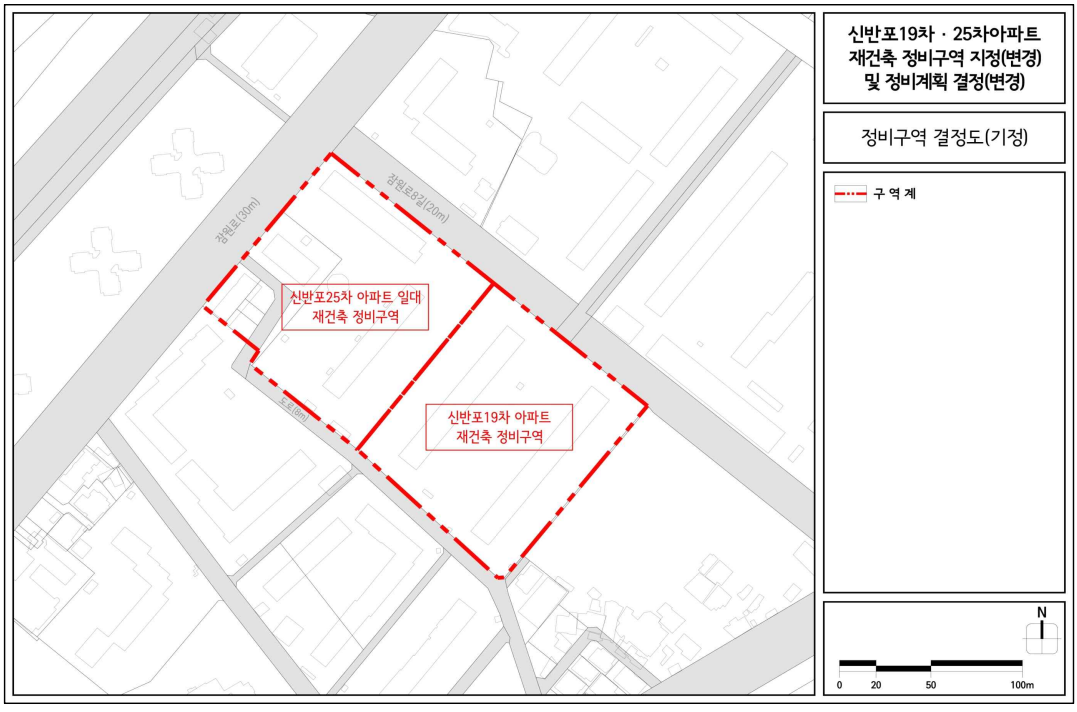

정비구역 결정도(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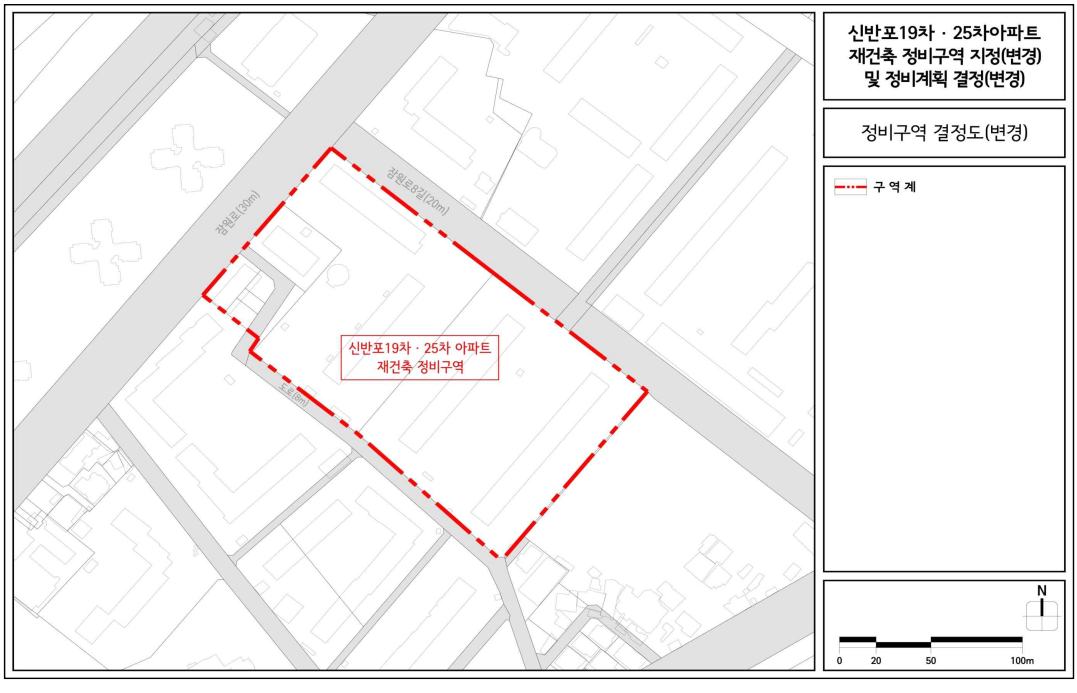

용도지역 · 지구 결정도(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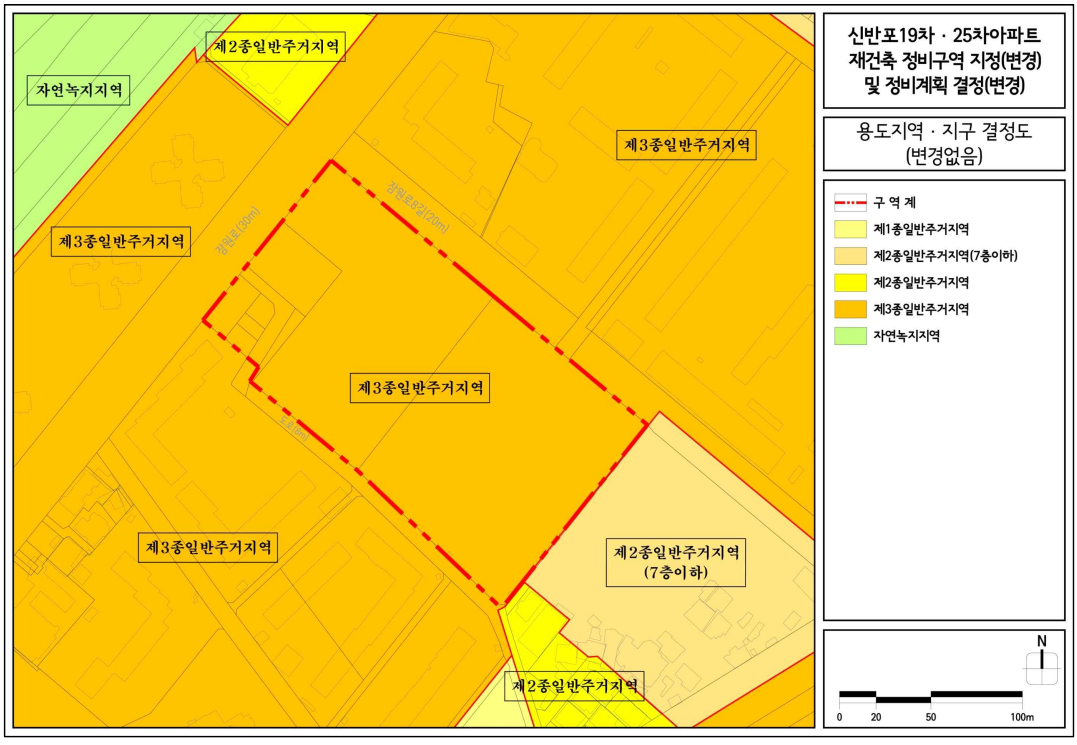

도시계획시설 결정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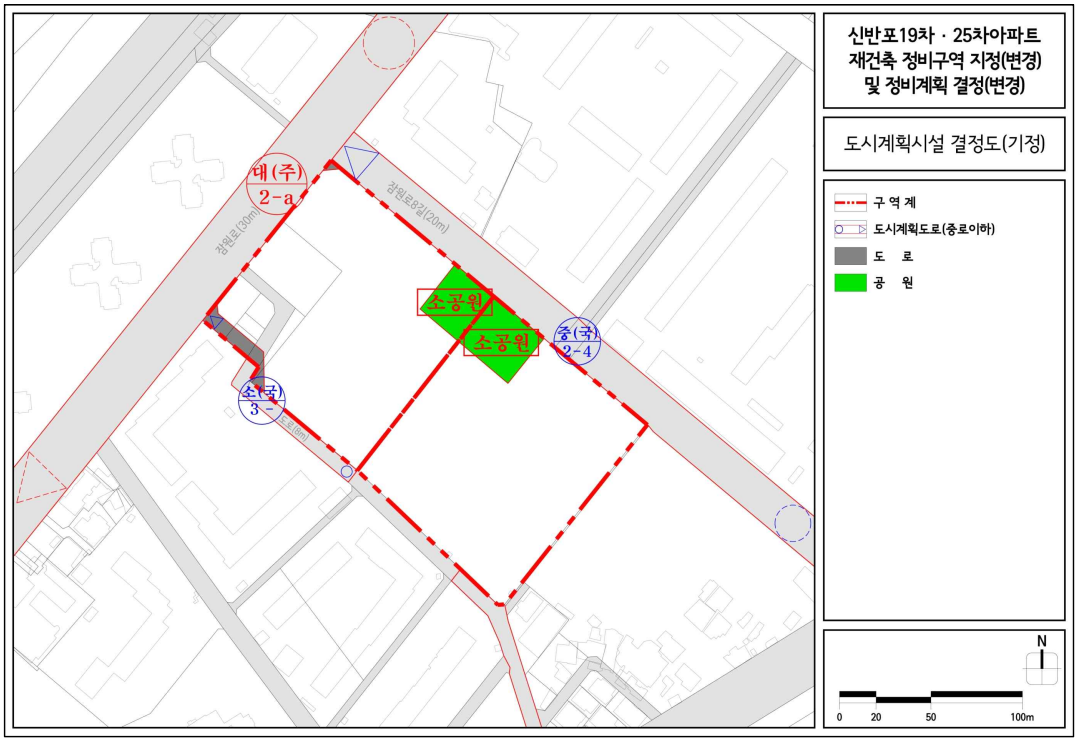

도시계획시설 결정도(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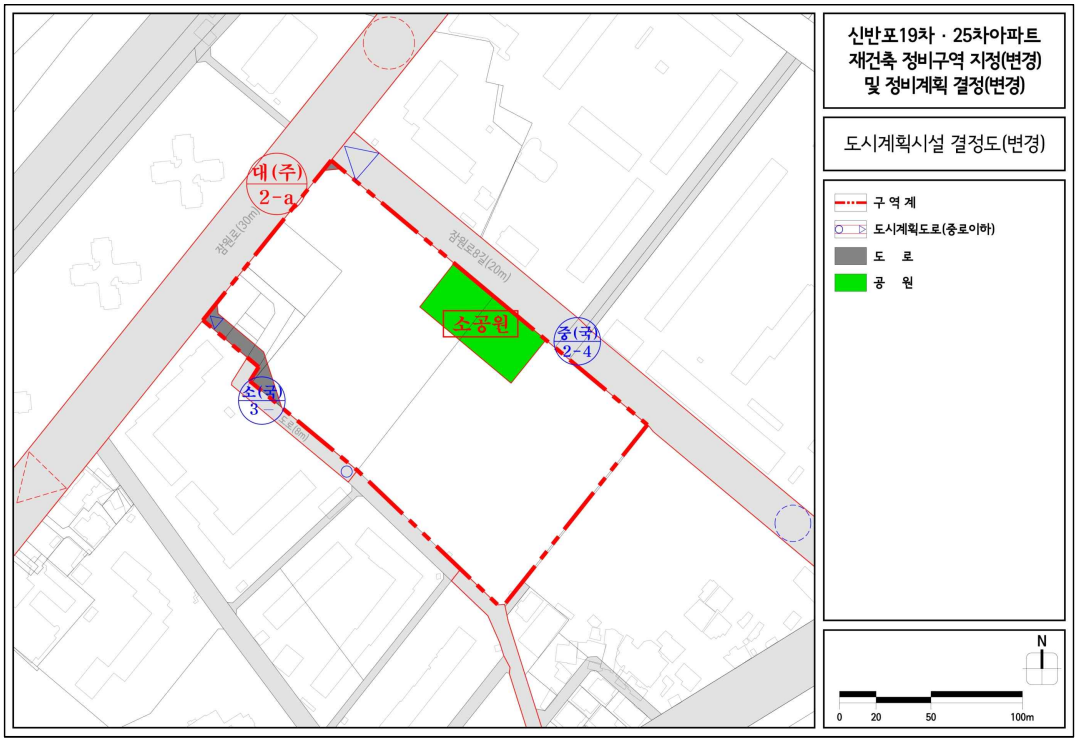

정비계획 결정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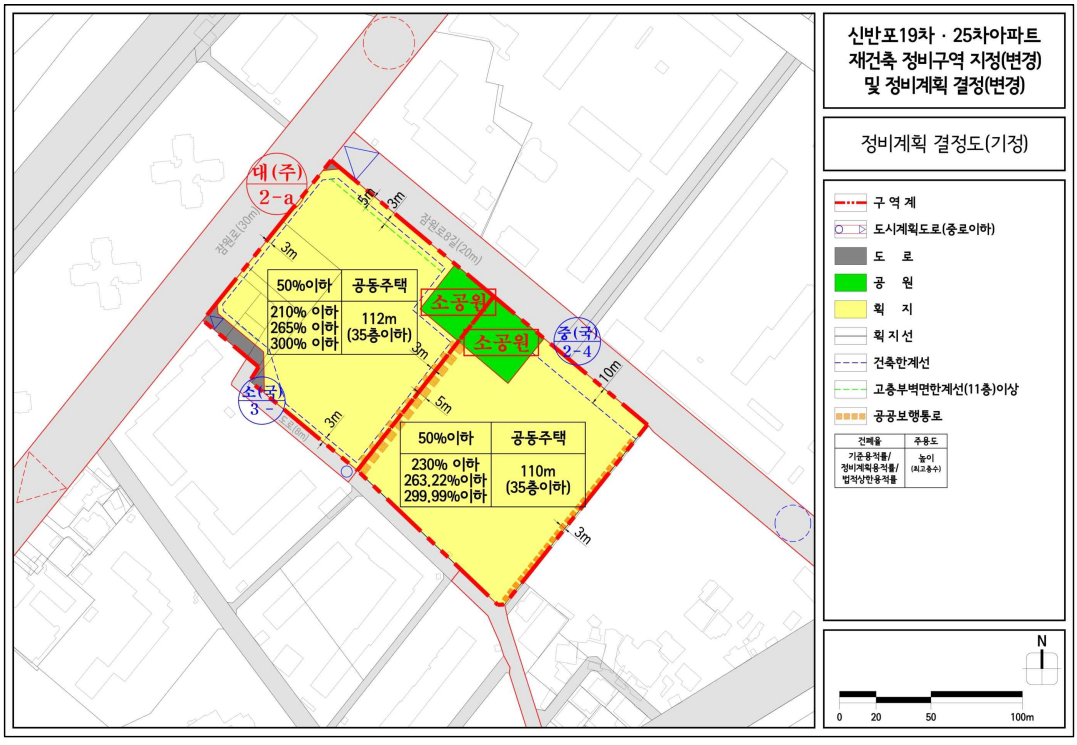

정비계획 결정도(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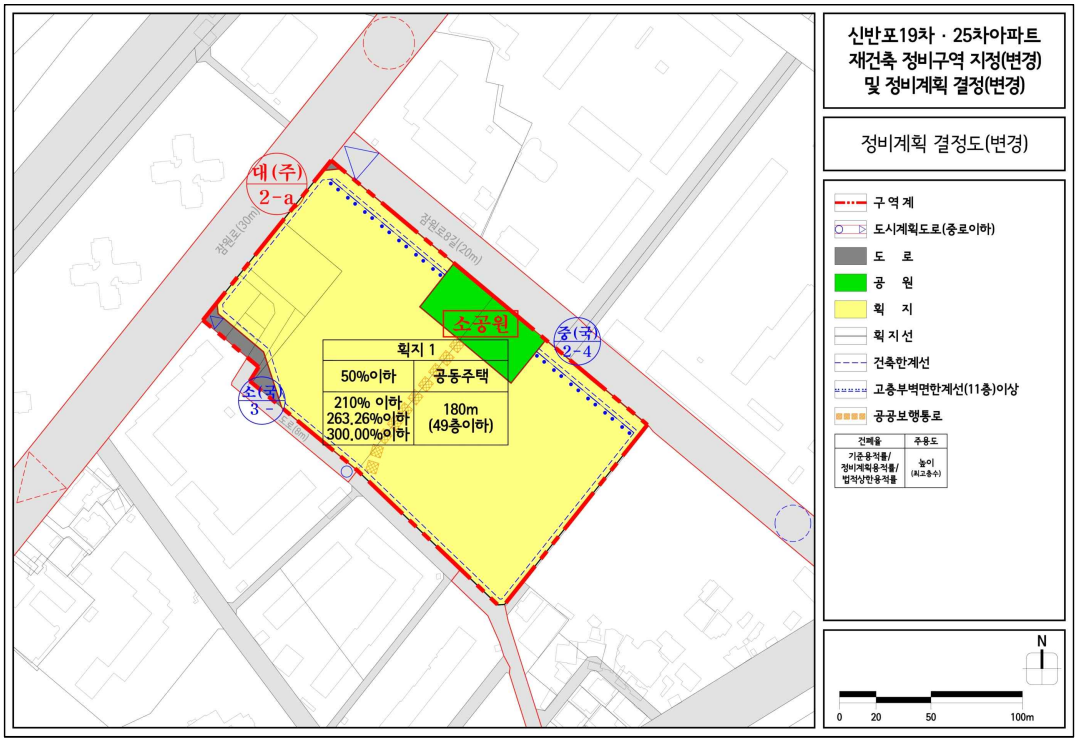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634호

서초구 서초동 1673-3 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청년안심주택)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50호(2021.01.28.)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 관련 도시관리계획(서초로 지구단위계획) 결정 승인된 서초구 서초동 1673-3 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청년안심주택)에 대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및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청년안심주택)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13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청년주택안심주택 사업개요 및 결정(변경)

- 위치 : 서초구 서초동 1673-3 일원
- 면적 : 382.7㎡
- 결정(변경)취지 : 대상지는 지하철 2호선 및 3호선 역세권으로서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과 더불어 계획적인 개발을 위해 도시관리계획(서초로 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고자 함.

Ⅱ. 도시·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사항(변경없음)

구 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서초로 지구단위계획구역	서초역~강남역	540,698 (382.7)	서울시공고 제53호 (87,2,3)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사항(변경없음)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사항
 가.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사항(변경없음)
 나.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사항
  1) 건축물의 용도계획(변경없음)
  2) 건축물의 밀도계획(변경없음)
  3) 용적률 적용기준(의무사항)(변경)

[기정]

구분		적용기준	계획내용	완화내용	비고
공공기여율	공공시설등 설치제공비율	• 공공기여율 : 부지면적의 14% 이상 53.58㎡ 이상	• 공공임대주택 부속토지 면적 55.18㎡ (14.42%)	기본 용적률 1,000% 부여	모든 항목을 충족해야함 서초구 서초동 1673-3 일월 역세권 청년주택에 한함
건축물 용도 구분	비주거비율	• 10%이상 20%이하 (가로변□비주거□설치□의무)	• 비주거비율(용적률 기준) - 10.39%(390.80㎡)		
주택 건설 비중	주택규모	• 공공임대주택 : 전용면적 45㎡ 이하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 전용면적 60㎡ 이하	• 공공임대 : 공공지원민간임대 = 15.79% : 84.21% (세대수 비율) • 공공임대주택 : 12세대 - 전용 19A Type(5), 19C Type(5), 39A Type(1), 39B Type(1) 계획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 64세대 - 전용 19A Type(11), 19B Type(14), 19C Type(9), 19D Type(14), 19E Type(14), 39A Type(1), 39B Type(1) 계획		
건축물 형태	21세기 미래형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주요정책	• 2가지 이상 의무 이행 -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 커뮤니티 지원시설의 설치계획 - 에너지효율 건축물 - 친환경 건축물	• 에너지 효율 건축물 • 친환경 건축물		
주민공동시설 (커뮤니티시설)		-100세대 미만 : 100㎡ 이상 -100세대 이상~300세대 미만: 150㎡ 이상 -300세대 이상 :200㎡ 이상	• 지상 4층 : 160.73㎡ 계획		

[변경]

구분		적용기준	계획내용	완화내용	비고
공공기여율	공공시설등 설치제공비율	• 공공기여율 : 부지면적의 14% 이상 53.58㎡ 이상	• 공공임대주택 부속토지 면적 55.18㎡ (14.42%)	기본 용적률 1,000% 부여	모든 항목을 충족해야함 서초구 서초동 1673-3 일월 역세권 청년주택에 한함
건축물 용도 구분	비주거비율	• 10%이상 20%이하 (가로변□비주거□설치□의무)	• 비주거비율(용적률 기준) - 10.39%(390.80㎡)		

구분		적용기준	계획내용	완화내용	비고
주택 건설 비중	주택규모	• 공공임대주택 : 전용면적 45㎡ 이하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 전용면적 60㎡ 이하	• 공공임대 : 공공지원민간임대 = 15.79% : 55.26% : 28.95%(세대수 비율) • 공공임대 : 공공지원민간임대 : SH선매입 = 17.49% : 52.58% : 29.93%(연면적비율) • 공공임대주택 : 12세대 - 전용 19A Type(5), 19C Type(5), 39A Type(1), 39B Type(1)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 42세대 - 전용 19B Type(14), 19C Type(9), 19D Type(14), 19E Type(5) • SH선매입 : 22세대 - 전용 19A Type(11), 19E Type(9), 39A Type(1), 39B Type(1)		
건축물 형태	21세기 미래형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주요정책	• 2가지 이상 의무 이행 -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 커뮤니티 지원시설의 설치계획 - 에너지효율 건축물 - 친환경 건축물	• 에너지 효율 건축물 • 친환경 건축물		
주민공동시설 (커뮤니티시설)		-100세대 미만 : 100㎡ 이상 -100세대 이상~300세대 미만: 150㎡ 이상 -300세대 이상 :200㎡ 이상	• 지상 4층 : 160.73㎡ 계획		

[기정] 공공임대 12세대, 공공지원민간임대 64세대

구 분		세대수(세대)	세대수 비율(%)	계약면적(㎡)	주택연면적비율(%)	비 고
공공임대	19A Type	5	6.58	46.62	-	-
	19C Type	5	6.58	46.72	-	-
	39A Type	1	1.32	93.72	-	-
	39B Type	1	1.32	96.20	-	-
	소계	12	15.79	656.63	17.49	-
공공지원 민간임대	19A Type	11	14.47	46.62	-	-
	19B Type	14	18.42	45.93	-	-
	19C Type	9	11.84	46.72	-	-
	19D Type	14	18.42	48.28	-	-
	19E Type	14	18.42	46.75	-	-
	39A Type	1	1.32	93.72	-	-
	39B Type	1	1.32	96.20	-	-
	소계	64	84.21	3,096.7	82.51	-
합 계		76	100.00	3,753.33	100	-

[변경] 공공임대 12세대, 공공지원민간임대 42세대, SH선매입 22세대

구 분		세대수(세대)	세대수 비율(%)	계약면적(㎡)	주택연면적비율(%)	비 고
공공임대	19A Type	5	6.58	46.62	-	-
	19C Type	5	6.58	46.72	-	-
	39A Type	1	1.32	93.72	-	-
	39B Type	1	1.32	96.20	-	-
	소계	12	15.79	656.63	17.49	-
공공지원 민간임대	19B Type	14	18.42	45.93	-	
	19C Type	9	11.84	46.72	-	-
	19D Type	14	18.42	48.28	-	-
	19E Type	5	6.58	46.75	-	-
	소계	42	55.26	1,973.17	52.58	-
SH선매입	19A Type	11	14.47	46.62	-	-
	19E Type	9	11.84	46.75	-	-
	39A Type	1	1.32	93.72	-	-
	39B Type	1	1.32	96.20	-	-
	소계	22	28.95	1,123.53	29.93	-
합 계		76	100.00	3,753.33	100	-

4.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없음)

5. 인센티브 운영계획(변경없음)

공 고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5-3134호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

수도법 제68조,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9조 및 지방세 징수법 제33조에 의거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부동산)압류예고서를 소유자에게 송달해야하나 폐문부재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④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 ①항 3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3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공고기간 : 2025.11.13 ~ 2025.11.27

2. 공시송달 내역

가.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고객번호	급수설비 소재지	납 기				비고
		과목	납 기	횟수	금 액	
004741879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32길 40-3(예장동 1-20)	수도요금	2024. 2납기 등 9납기	9회	5,925,530원	

나. 압류 내역

압류구분	압류물건	물건소유자			압류금액	압류일
		성 명	주민번호 (불가사유)	주 소		
부동산	서울특별시 중구 예장동 1-20 토지,건물	백민석	541012-1****** (등기번호1152112000461 폐문부재) (등기번호115211200073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32길 **-*(예장동)	5,925,530원	2025.11.28이후

3.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4. 이 공고문에 대해 의견제출을 하고자 하는 경우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동 법 제27조에 따라 공고기간 내에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서면 혹은 유선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 의견제출기관 : 중부수도사업소 요금과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 88)

5.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중부수도사업소 요금과 김정규(☎02-3146-2094)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5-3138호

녹색교통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부과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30조(자동차 운행의 제한)를 위반한 차량의 소유주에게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독촉)에 따라 과태료 납부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과태료 고지서 교부(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니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11월 13일
서 울 특 별 시 장

1.건 명 : 녹색교통지역 자동차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근 거 :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30조(자동차 운행의 제한),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자동차의 운행의 제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독촉),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3. 공시송달 대상 : 붙임 내역서 참조
4. 공고기간 : 2025.11.13. ~ 2025.11.27.
5. 공고내용
   가. 공고 대상자는 공고 기간 내 서울특별시청 주차계획과 교통지도단속반에서 독촉고지서를 발부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공고대상자는 납부기한내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납부기한이 경과 한 날로부터 매 1개월이 경과 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2%의 중가산금이 가산되며, 아울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관허사업제한, 신용정보제공, 감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공고기간 만료일부터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6. 납부안내
   가. 납부기한 : 2025.11.30.
   나. 납부방법 : 서울특별시청 교통지도단속반에서 고지서(가상계좌)를 발부받아 은행(인터넷뱅킹 포함), 무인공과금기 및 현금인출기(CD/ATM기) 등으로 납부
   다. 인터넷 납부 : https://etax.seoul.go.kr (*공인인증서 필요, 신용카드 납부가능)
7. 공고 확인 및 안내 : 서울특별시청 교통지도단속반(☎02-2133-4621~46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1부.

순번	고지구분	납세자명	주소		세목명	과세년월	과세구분	과세번호	차량번호	과세금액	부과일자	납기일자	단속일자	단속장소
1	독촉고지	남*현	경기도	고양시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2025-06	수시분	000308	33너74**	100,000	2025-06-02	2025-10-31	2022-04-18	혜화문(창경궁로, 진입)
2	독촉고지	남*현	경기도	고양시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2025-06	수시분	000309	33너74**	200,000	2025-06-02	2025-10-31	2022-04-19	혜화문(창경궁로, 진입)
3	독촉고지	김*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2025-06	수시분	000310	04우68**	200,000	2025-06-09	2025-10-31	2025-01-31	흥인지문(종로, 진입)
4	독촉고지	(*)*송*	서울특별시	중구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2025-06	수시분	000311	서울31더12**	200,000	2025-06-09	2025-10-31	2025-02-02	자하문터널 남측(자하문로)
5	독촉고지	김*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2025-06	수시분	000314	04우68**	200,000	2025-06-09	2025-10-31	2025-02-07	흥인지문(종로, 진입)
6	독촉고지	김*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2025-06	수시분	000315	04우68**	200,000	2025-06-09	2025-10-31	2025-02-12	경희궁(새문안로)
7	독촉고지	(*)*동*성	서울특별시	강동구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2025-06	수시분	000319	80누79**	200,000	2025-06-09	2025-10-31	2025-02-21	남산1호터널(삼일대로)
8	독촉고지	함*옥	서울특별시	중구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2025-06	수시분	000320	01나44**	200,000	2025-06-09	2025-10-31	2025-02-22	경희궁(새문안로)
9	독촉고지	한*미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2025-06	수시분	000327	78서86**	100,000	2025-06-09	2025-10-31	2025-04-11	시청역 2호선(서소문로, 진입)
10	독촉고지	(*)*니*	경기도	용인시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2025-06	수시분	000312	89다70**	200,000	2025-06-09	2025-10-31	2025-02-03	시청역 2호선(서소문로, 진입)
11	독촉고지	김*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2025-06	수시분	000313	04우68**	200,000	2025-06-09	2025-10-31	2025-02-05	흥인지문(종로, 진입)
12	독촉고지	김*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2025-06	수시분	000323	04우68**	200,000	2025-06-09	2025-10-31	2025-02-26	흥인지문(종로, 진입)

순번	고지구분	납세자명	주소		세목명	과세년월	과세구분	과세번호	차량번호	과세금액	부과일자	납기일자	단속일자	단속장소
13	독촉고지	(*)*니*	경기도	용인시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2025-06	수시분	000316	89다70**	200,000	2025-06-09	2025-10-31	2025-02-14	사직터널 북측(사직로, 진입)
14	독촉고지	이*식*이*섭	인천광역시	서구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2025-06	수시분	000322	28버10**	200,000	2025-06-09	2025-10-31	2025-02-25	흥인지문(종로, 진입)
15	독촉고지	한*미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2025-06	수시분	000326	78서86**	100,000	2025-06-09	2025-10-31	2025-04-10	남산2호터널 북측(녹사평대로58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5-3139호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과태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수취인 불명, 이사, 주소불명, 폐문부재 등 송달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3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건 명 :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30조(자동차 운행의 제한),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자동차의 운행의 제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3. 공시송달 대상 : <붙임> 참조
4. 공고기간 : 2025.11.13.~2025.11.27.(15일간)
5. 의견제출 안내 : 위 공고대상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사실에 대하여 의견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가. 의견제출기간 : 2025.11.13.~2025.12.12.
 나. 의견제출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서식은 별첨 '의견진술서 작성예시' 참조), 의견제출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울특별시 주차계획과 교통지도단속반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간 내에 의견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됩니다.
다. 의견제출처 및 의견제출방법
 (의견제출 첩수처)
  - 주 소 :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동 4층 주차계획과 교통지도단속반 과태료과징팀)
  - 전화번호 : 02-2133-4621~4622
 (의견제출 방법)
  - 팩스제출 : 02-2133-1446 / 이메일 제출 : green5@seoul.go.kr
6. 유의사항
 가. 사전의견제출기한내 과태료를 자진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서울특별시청 주차계획과 교통지도단속반에서 사전통지서를 발부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사전통지서에 고지된 과태료 금액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부과될 과태료에서 100분에 20이 감경된 금액입니다.
 다. 공고기간 만료일부터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7. 과태료 자진 납부
- 납부기한 : 2025.12.12.
- 납부방법 : 공고대상자는 서울특별시청 주차계획과 교통지도단속반에서 고지서(가상계좌)를 발부받아 은행(인터넷뱅킹 포함), 무인공과금기 및 현금인출기(CD/ATM기) 등으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납부: https://etax.seoul.go.kr. (*공인인증서 필요, 신용카드 납부가능)

※ 의견제출, 납부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청 교통지도단속반(☎02-2133-4621~46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1부.
2. 주요 의견제출대상 및 의견제출서 작성서식 1부.

연번	과태료	차량번호	납세자명	발송일자	납부기한	본세금액	주소	단속일자	단속장소
1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81로49**	김*명	2025-09-08	2025-10-05	80000	경기도 파주시	2025-09-05 13:52	시청역 2호선(서소문로, 진입)
2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89다70**	(*)*니*	2025-09-08	2025-10-07	160000	경기도 용인시	2025-09-05 14:09	시청역 2호선(서소문로, 진입)
3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89구39**	박*봉	2025-09-08	2025-10-08	160000	경기도 남양주시	2025-09-06 20:10	남산1호터널(삼일대로)
4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28버42**	최*우	2025-09-08	2025-10-08	80000	경기도 고양시	2025-09-07 16:55	반얀트리(장충단로, 진입)

주요 의견제출 대상 및 의견제출서 작성서식

□ 주요 의견제출 대상(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준거)

구 분	증빙서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 또는 제18호에 해당하는 저공해 조치를 취한 차량	인증시험 확인서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소방차, 구급차, 혈액공급차량, 생명이 위급한 환자 또는 부상자나 수혈을 위한 혈액을 운송중인 자동차)	긴급자동차 지정증
「장애인복지법」 제39조에 따라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임을 알아볼 수 있는 표지를 발급받은 자동차	복지카드(장애인증명서) 장애인사용자동차 표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보철용(補綴用)·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다.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관련법령에 따른 증명서 (국가유공자 확인서 등) 국가유공자사용자동차 표지
경찰·소방·군용 및 경호업무용 등 국가의 특수한 공용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자동차	기관장 확인서 (해당기관 공문)
주한 외국공관 또는 외교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사람이 공용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자동차로서 외교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자동차	기관장 확인서 (해당기관 공문)
주한 외국군대의 구성원이 공용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자동차	기관장 확인서 (해당기관 공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중 같은 조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및 연료전지자동차	기관장 확인서 (해당기관 공문)
그 밖에 운행 제한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 정하는 자동차	기관장 확인서 (해당기관 공문)
2019.10.31일까지 저공해 조치를 신청한 자동차(2020.6.30일까지 적용 보류) ※ '저공해 조치를 신청한 자동차'라 함은 각 지자체의 저공해 사업 지침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 저공해 조치 신청 완료를 통보받은 차량을 의미함	기관장 확인서 (해당기관 공문)
배출가스 저감장치 또는 저공해 엔진이 인증·보급되지 않은 자동차와 저감장치 장착불가확인서를 발급받은 자동차는 2020.12.31.일까지 적용보류(단,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적용을 보류하지 않는다.) ※ '저감장치 장착불가확인서'이라 함은 저감장치 제작사가 발급하는 확인서를 의미함	기관장 확인서 (해당기관 공문)

□ 의견제출서 작성서식(예시)

의 견 제 출 서		
차량번호	**위반일시**	**위반장소**
	20 년 월 일 시 분	
제출의견 (단속된 사안 및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내용을 기재)		
※의견제출방법 1. 팩스 2133-1446 2. 이메일 green5@seoul.go.kr		
제 출 자		
○ 성 명 : ○ 주 소 : ○ 연락처(휴대전화번호) : ○ 제출일 :		

서울특별시장 귀하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 제외)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동의함 □ 동의안함 □)

귀하로부터 취득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으며 변경시에는 사전동의를 구할 것입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5-3140호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과태료 부과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 부과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수취인 불명, 이사, 주소불명, 폐문부재 등 송달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3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건　명 :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과태료 부과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법 제30조(자동차 운행의 제한),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자동차의 운행의 제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이의제기), 지방세기본법 제31조(송달지연으로 인한 납부기한의 연장), 같은 법 제33조(공시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붙임> 참조
4. 공고기간 : 2025.11.13.~2025.11.27.
5. 공고내용
   가. 이의제기기간 : 과태료 부과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까지
   나. 이의제기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서식은 별첨 '이의제기 작성예시' 참조), 의견제출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울특별시 주차계획과 교통지도단속반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간 내에 의견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 이의제기 접수처 및 이의제기 방법
   (이의제기 접수처)
   - 주　소 :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동 4층 주차계획과 교통지도단속반 과태료과징팀)
   - 전화번호 : 02-2133-4621~4622
   (이의제기 방법)
   - 팩스 제출 : 02-2133-1446
   - 이메일 제출 : green5@seoul.go.kr
6. 유의사항
   - 공고대상자는 납부기한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3%의 가산금이 발생하고 매 1개월이 경과 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2%의 중가산금이 가산되며, 아울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재산에 대한 압류 등)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납부기한 : 2025.12.31.
  - 공고대상자는 서울특별시청 주차계획과 교통지도단속반에서 고지서(가상계좌)를 발부받아 은행(인터넷뱅킹 포함), 무인공과금기 및 현금인출기(CD/ATM기) 등으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납부 : https://etax.seoul.go.kr. (*공인인증서 필요, 신용카드 납부가능)

  ※ 납부기한, 체납금액 등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청 교통지도단속반(☎02-2133-4621~46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1부.
2. 주요 이의제기 대상 및 이의제기 작성서식 1부.

순번	상태	성명	주소		세목명	과세년월	과세구분	과세번호	차량번호	과세금액	부과일자	납기일자	단속일	단속장소
1	부과	주*회* *른*테*어	인천광역시	연수구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2025-09	수시분	000459	86소64**	100,000	2025-09-04	2025-10-31	2025-05-14	사직터널 북측(사직로, 진입)
2	부과	(*)*송*	서울특별시	중구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2025-09	수시분	000463	서울31더12**	200,000	2025-09-04	2025-10-31	2025-05-18	사직터널 북측(사직로, 진입)
3	부과	윤*섭	경기도	평택시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2025-09	수시분	000464	84더20**	100,000	2025-09-04	2025-10-31	2025-05-19	장충체육관(동호로, 진입)
4	부과	기*개*(*)	인천광역시	부평구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2025-09	수시분	000468	20오15**	200,000	2025-09-04	2025-10-31	2025-05-28	혜화문(창경궁로, 진입)
5	부과	이*식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2025-09	수시분	000475	90나83**	100,000	2025-09-04	2025-10-31	2025-07-22	숭례문 서측(세종대로, 진입)
6	부과	박*덕	부산광역시	남구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2025-09	수시분	000447	19주11**	100,000	2025-09-04	2025-10-31	2025-05-03	장충체육관(동호로, 진입)
7	부과	전*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2025-09	수시분	000458	92너42**	200,000	2025-09-04	2025-10-31	2025-05-13	남산2호터널 북측(녹사평대로58길)
8	부과	한*희	충청남도	천안시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2025-09	수시분	000465	95두98**	200,000	2025-09-04	2025-10-31	2025-05-20	숭례문 서측(세종대로, 진입)
9	부과	박*화	경기도	성남시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2025-09	수시분	000466	86서49**	200,000	2025-09-04	2025-10-31	2025-05-24	남산1호터널(삼일대로)
10	부과	박*하	충청남도	천안시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2025-09	수시분	000467	93누99**	200,000	2025-09-04	2025-10-31	2025-05-25	남산1호터널(삼일대로)
11	부과	함*옥	서울특별시	중구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2025-09	수시분	000446	01나44**	200,000	2025-09-04	2025-10-31	2025-05-03	사직터널 북측(사직로, 진입)
12	부과	(*)*니*	경기도	용인시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2025-09	수시분	000450	89다70**	200,000	2025-09-04	2025-10-31	2025-05-05	사직터널 북측(사직로, 진입)
13	부과	(*)*동*성	서울특별시	강동구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2025-09	수시분	000451	80누79**	200,000	2025-09-04	2025-10-31	2025-05-06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을지로, 진입)
14	부과	박*하	충청남도	천안시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2025-09	수시분	000453	93누99**	200,000	2025-09-04	2025-10-31	2025-05-10	남산1호터널(삼일대로)
15	부과	전*우	대구광역시	달서구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2025-09	수시분	000456	88어34**	100,000	2025-09-04	2025-10-31	2025-05-11	흥인지문(종로, 진입)
16	부과	김*열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2025-09	수시분	000457	85도01**	200,000	2025-09-04	2025-10-31	2025-05-12	흥인지문(청계천로, 진입)

순번	상태	성명	주소		세목명	과세년월	과세구분	과세번호	차량번호	과세금액	부과일자	납기일자	단속일	단속장소
17	부과	(*)*니*	경기도	용인시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2025-09	수시분	000461	89다70**	200,000	2025-09-04	2025-10-31	2025-05-16	사직터널 북측(사직로, 진입)
18	부과	한*희	서울특별시	중구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2025-09	수시분	000469	서울45도17**	200,000	2025-09-04	2025-10-31	2025-05-29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퇴계로, 진입)
19	부과	권*준	경기도	파주시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2025-09	수시분	000473	84소33**	200,000	2025-09-04	2025-10-31	2025-07-03	회현역(퇴계로)
20	부과	가* *엔*(*)	경기도	화성시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2025-09	수시분	000454	10주29**	200,000	2025-09-04	2025-10-31	2025-05-11	혜화문(창경궁로, 진입)
21	부과	정*자*1*안*민*	대구광역시	달서구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2025-09	수시분	000455	38오78**	200,000	2025-09-04	2025-10-31	2025-05-11	혜화문(창경궁로, 진입)
22	부과	이*구	경기도	광주시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2025-09	수시분	000474	47수26**	100,000	2025-09-04	2025-10-31	2025-07-03	장충체육관(동호로, 진입)
23	부과	(*)*일*엔*	서울특별시	서초구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2025-09	수시분	000449	83구63**	200,000	2025-09-04	2025-10-31	2025-05-05	남산1호터널(삼일대로)
24	부과	(*)*일*엔*	서울특별시	서초구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2025-09	수시분	000445	83구63**	200,000	2025-09-04	2025-10-31	2025-05-03	남산1호터널(삼일대로)
25	부과	(*)*일*엔*	서울특별시	서초구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2025-09	수시분	000448	83구63**	200,000	2025-09-04	2025-10-31	2025-05-04	남산1호터널(삼일대로)
26	부과	가* *엔*(*)	경기도	화성시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2025-09	수시분	000452	10주29**	200,000	2025-09-04	2025-10-31	2025-05-07	혜화문(창경궁로, 진입)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신청 안내

□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의거 과태료 부과 행정청(서울시 주차계획과 교통지도단속반)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접수된 이의제기 신청서는 당사자 주소지의 관할법원으로 이송되며, 관련 당사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8조에 의거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받습니다.

○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법원에 통보하고 당사자에게 그 처리사실을 통보해 드립니다.

□ 제출서류

○ 이의제기 신청서(아래붙임), 과태료고지서, 이의제기 관련 적법·타당성을 증명할만한 자료

□ 제출방법

○ 우편(등기), 팩스, 이메일을 통해 제출 가능합니다. 다만, 팩스로 접수하신 민원인께서는 반드시 접수여부를 유선을 통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편주소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 별관 1동 4층 주차계획과 교통지도단속반(과태료과징팀)
- 팩스번호 : 02-2133-1446, 전화번호 : 02-2133-4621~2
- Email 주소 : green5@seoul.go.kr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서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30조 위반 과태료 처분에 대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1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이의를 제기합니다.

<table>
<tr><td rowspan="2">신 청 인</td><td>성 명
※ 법인일 경우 법인명 또는 사업자명</td><td></td><td>주 민 번 호
※ 법인일 경우 법인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td><td colspan="2"></td></tr>
<tr><td>주 소</td><td colspan="2">(Email)</td><td>연락처</td><td></td></tr>
<tr><td rowspan="2">위반차량</td><td>차량번호</td><td></td><td>차 종</td><td colspan="2"></td></tr>
<tr><td>소 유 자</td><td colspan="4">(신청인과의 관계)</td></tr>
<tr><td rowspan="3">과 태 료
처 분</td><td>처분근거</td><td colspan="4">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30조, 시행령 제48조,시행규칙 제7조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0-458호(녹색교통진흥특별대책지역 자동차 운행제한 공고)</td></tr>
<tr><td>납부번호
(부과일자)</td><td>(년 월 일)</td><td>과태료 금액</td><td colspan="2"></td></tr>
<tr><td>위반일시</td><td></td><td>처분사유</td><td colspan="2">서울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td></tr>
<tr><td>과 태 료
처 분
불복사유</td><td colspan="5">※ 내용이 많을 경우 요약 기재후 별지에 작성

※ 증빙자료 1. 과태료 부과 고지서
2. 이의제기에 대한 증빙자료 등</td></tr>
</table>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 제외)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동의함 □ 동의안함 □

귀하로부터 취득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으며 변경시에는 사전동의를 구할 것입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5-3145호

종합건설사업자 처분 사전통지(청문)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항에 의거, 처분 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를 법인의 본점 소재지 및 대표이사 주소지로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2025년 11월 13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공고기간 : 2025. 11. 13. ~ 2025. 11. 27.(14일간)

2. 처분사전통지 사항

업 체 명 (대표)	업종 및 등록번호	소 재 지	위반내용	예정된 처분내용	청문실시		처분 근거
					일시 및 장소	주재자	
성훈건설주식회사 (이용석)	건축공사업 18-0762	서울특별시 은평구 서오릉로 6, 203호(녹번동, 거장카운티)	등록기준미달(보증가능금액) 보증가능금액 실효(2024.7.25.)로 영업정지 후 영업정지 종료일(2025.4.30.)까지 보증가능금액 미보완	등록말소	2025.11.28.(금) 09:00 건설혁신담당관 청문실	담당 사무관 김문수	법 제83조 제3호의2

3.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에 응하지 않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우리시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건설혁신담당관 ☏02)2133-8105로 문의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5-3148호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

「수도법」 제68조,「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제49조 및「지방세징수법」 제33조에 근거하여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부동산)압류예고서를 소유자 거주지(주민등록표 등·초본상) 및 본점소재지(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에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3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공고기간 : 2025. 11. 13. ~ 2025. 11. 28.(공고일로부터 14일간)

2. 공시송달 공고사항 : 체납내역 및 압류에 관한 사항

※「지방세기본법」상 서류의 송달 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행정절차법」 제14조 제5항을 준용하여 송달받을 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는 마스킹 처리.

고객번호	급수설비 소재지	체납내역					등기우편 송달내역	비 고
		과 목	체납납기	체납횟수	체납액	예고서상 납부기간		
00602480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아현로 32-1(북아현동)	수도요금	2023.07.31. 외 11 납기	12회	4,238,420원	2025.10.28. ~ 2025.11.14. / 2025.11.17. ~ (당초 압류예정일)	‣등기번호 : 11050-0600-0954 ‣반송사유 : 수취인불명	

압류물건	압류물건 소재지	압류물건 소유자			압류액	공시송달 이후 압류예정일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주소지		
부동산 (건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아현로 32-1(북아현동)	장*분	32092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아현로 32-1(북아현동)	4,238,420원	2025.12.01. ~

3.「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재산압류예고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고,「같은 법」 제31조 제2항에 "고지서가 납부기한이 지난 후에 도달한 경우에는 고지서가 도달한 날"을 납부기한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송달의 효력 발생일(2025.11.28.)이 납부기한임을 알려드립니다.

※ 압류예정일 전 체납액을 납부하실 의사가 있으신 경우 서부수도사업소 요금과 한동수 주무관(☎ 02-3146-3588)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끝.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5-3149호

자동차번호판 영치 사전안내서 공시송달 공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번호판 영치대상 자동차 소유주에게 『자동차번호판 영치 사전안내서』를 발송하였으나, 본인 외 우편수취, 수취인 불명, 주소불명, 수취거부, 송달곤란 등의 사유로 반송된 송달불능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3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건　　명 : 자동차번호판 영치 사전안내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14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주*임 외 3,834건 ※ 붙임1. 참조
4. 공고기간 : 2025년 11월 13일 ~ 2025년 11월 27일
5. 유의사항 : 공고 대상자는 공고기간 이후 10일 이내에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의거 자동차번호판이 영치됨을 알려드립니다.

※ 자동차번호판 영치관련 과태료 체납 내역 확인 및 납부는 자동차 번호판영치 간편민원 서비스(http://youngchi.seoul.go.kr)에서 가능합니다.

※ 체납된 과태료는 매월 중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납부 시 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1부.
2. 의견서(서식) 1부. 끝.

등록연번	차량번호	성 명	기본 주소	과태료체납 건수	과태료 금액	발송회차
1	20버1783	주*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7	339,280	47
2	23로1585	송*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1	646,800	47
3	250가9705	최*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6	302,400	47
4	28머0622	이*숙	서울특별시 송파구	1	711,450	47
5	20가3766	(주)**먼트	서울특별시 성동구	2	781,920	47
6	21거7183	주식회**학원	서울특별시 노원구	1	632,400	47
7	22오8519	신*경	서울특별시 강남구	10	477,600	47
8	238가4946	송*진	경기도 하남시	6	345,440	47
9	23소1617	김*리	서울특별시 강남구	2	1,415,910	47
10	259나9378	주식회**플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1	300,130	47
11	288모8744	삼경운**주)	서울특별시 강동구	1	624,940	47
12	29너0299	주식회**너스	서울특별시 구로구	2	675,040	47
13	290오8693	김*혜	경기도 이천시	3	301,840	47
14	31너9805	신*수	경기도 고양시	4	329,760	47
15	320서3369	주식회**아이	서울특별시 송파구	1	632,400	47
16	38버0468	(주)**신문	서울특별시 강동구	1	639,600	47
17	03부1966	제이케**회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1	632,400	47
18	08거3076	주식회**리퀸	서울특별시 강남구	7	327,360	47
19	09머0216	김*희	서울특별시 강북구	1	632,400	47
20	104가7454	김*석	서울특별시 성북구	1	632,400	47
21	96러6598	JIN**HU	경상북도 영천시	7	317,680	47
22	96마1201	(주)**랙벅	경기도 포천시	1	646,800	47
23	서울88아2351	우성상**주)	서울특별시 양천구	2	703,700	47
24	125호4954	(주)**알씨	서울특별시 강동구	2	702,880	47
25	128하1316	(주)**트카	경기도 부천시	6	347,520	47
26	12거4825	(주)**맥스	서울특별시 강남구	1	646,800	47
27	113저2176	주식회**퍼니	서울특별시 강남구	3	719,120	47
28	141저3789	유한회**닛시	서울특별시 강남구	4	833,830	47
29	15두9000	주식회**엔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5	575,790	47

등록연번	차량번호	성 명	기본 주소	과태료체납 건수	과태료 금액	발송회차
30	15서9853	(주)**사람	경상남도 거제시	6	333,600	47
31	16머2186	(주)**어링	서울특별시 중랑구	6	1,201,880	47
32	164거9756	주식회**U)	서울특별시 강남구	2	713,900	47
33	16가2196	김*주	서울특별시 은평구	4	326,970	47
34	38마1438	정*경	경기도 남양주시	1	646,800	47
35	38마4869	박*헌	충청북도 제천시	6	320,640	47
36	65주3005	사단법**흥원	서울특별시 송파구	7	321,020	47
37	서울90바8535	(유)**운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1	632,400	47
38	51거5769	와이알**회사	서울특별시 금천구	1	632,400	47
39	54노2058	원*업	서울특별시 노원구	5	300,030	47
40	55머4395	주식회** C	서울특별시 강서구	1	1,002,600	47
41	56라6485	이*언	경기도 부천시	6	417,460	47
42	58구5530	전*희	서울특별시 도봉구	12	531,840	47
43	60도8868	조*원	경기도 안산시	7	335,440	47
44	55나6987	박*규	서울특별시 강남구	1	639,600	47
45	64노0398	박*현	경기도 평택시	7	326,640	47
46	58라7165	세움종**회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	677,550	47
47	708우2675	이*훈	서울특별시 서초구	4	882,680	47
48	66오6100	오*석	서울특별시 양천구	1	892,230	47
49	69구1577	길*미	경기도 부천시	4	303,840	47
50	69도5799	이*재	서울특별시 서초구	2	689,440	47
51	서울90바2000	(주)**레스	서울특별시 용산구	1	463,760	47
52	152구5601	김*철	경기도 파주시	9	395,760	47
53	106구7028	제*미	서울특별시 양천구	1	639,600	47
54	123머9037	김*훈	경기도 평택시	5	307,260	47
55	12저4435	이*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1	632,400	47
56	146조6067	이*숙	서울특별시 송파구	4	324,940	47
57	167너1325	JIN**JI	경기도 광명시	10	311,680	47
58	38누9662	김*호	서울특별시 노원구	6	302,400	47

등록연번	차량번호	성 명	기본 주소	과태료체납 건수	과태료 금액	발송회차
59	38더3535	김*민	서울특별시 노원구	1	632,400	47
60	38더3069	이*영	경기도 김포시	24	1,033,920	47
61	38두3406	DUR**EL	경기도 평택시	8	420,060	47
62	38다1988	주식회**앤콤	서울특별시 은평구	1	646,800	47
63	서울90바2446	(주)**지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6	421,300	47
64	서울90바2776	(유)**지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1	337,280	47
65	38머2437	권*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3	1,071,660	47
66	38로4330	차*민	서울특별시 강남구	5	1,197,120	47
67	38루6790	주식회**퍼니	서울특별시 송파구	1	668,400	47
68	82소5728	최*영	서울특별시 송파구	10	428,800	47
69	82우4397	곽*인	서울특별시 구로구	6	334,560	47
70	22나8321	이*정	서울특별시 서초구	1	646,800	47
71	22너3541	이*옥	서울특별시 서초구	1	527,000	47
72	25머8364	유*지	서울특별시 노원구	1	445,830	47
73	25모7069	CRE**NN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1	639,600	47
74	25무0776	안*훈	서울특별시 강남구	7	379,910	47
75	25무1485	황*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2	1,599,000	47
76	228우4559	주식회**엔티	서울특별시 서초구	8	346,400	47
77	229나5350	이*철	인천광역시 서구	6	304,500	47
78	229오4670	주식회**싱크	서울특별시 성동구	1	960,490	47
79	22가1981	(주)**용)	서울특별시 강서구	15	1,050,800	47
80	22거4795	주식회**리아	서울특별시 강동구	4	575,370	47
81	22나3474	유*현	서울특별시 은평구	5	304,240	47
82	82조1820	(주)**루션	서울특별시 송파구	7	364,220	47
83	17보3011	김*란	인천광역시 남동구	4	307,200	47
84	17보5553	최*한	경기도 양평군	10	442,720	47
85	17소6475	김*종	경기도 남양주시	13	569,200	47
86	17소6860	김*희	경기도 광주시	8	356,480	47
87	227마5774	신*섭	서울특별시 금천구	6	302,400	47

등록연번	차량번호	성 명	기본 주소	과태료체납 건수	과태료 금액	발송회차
88	227보8449	주식회**람들	인천광역시 서구	5	311,120	47
89	228너9206	김*희	경기도 고양시	17	658,280	47
90	228노5934	남솔**남솔	서울특별시 양천구	1	639,600	47
91	228버7081	ADA**EL	경기도 평택시	11	577,560	47
92	134모2334	이*우	서울특별시 강동구	1	300,610	47
93	153주7524	주식회**비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1	632,400	47
94	130저1309	김*건	서울특별시 강동구	1	654,000	47
95	243부4223	송*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5	333,740	47
96	41라8661	이*연	서울특별시 구로구	2	647,170	47
97	88마9693	김*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1	399,750	47
98	88마3268	(주)**개발	서울특별시 용산구	6	351,200	47
99	88마3294	유*수	서울특별시 성북구	3	1,088,600	47
100	88마4944	유*우	서울특별시 중랑구	6	330,290	47
101	88모1352	주*상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1	632,400	47
102	88모6257	(주)**건설	경기도 하남시	17	1,718,180	47
103	88보2077	강*아	경기도 남양주시	5	301,500	47
104	88보7086	주식회**건설	서울특별시 송파구	8	334,770	47
105	88오0781	한*필	서울특별시 은평구	3	427,470	47
106	88오6127	한*희	충청남도 천안시	5	302,480	47
107	06가8783	임*옥	서울특별시 강동구	1	639,600	47
108	06거4539	장*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5	305,680	47
109	06구1301	주식회**앤피	서울특별시 강남구	3	1,090,150	47
110	06구1475	이*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2	1,606,200	47
111	06누3754	나*세	서울특별시 도봉구	1	646,800	47
112	88조3938	이*용	서울특별시 노원구	1	646,800	47
113	01보3560	KHA**AD	경기도 안산시	7	317,680	47
114	02구4920	김*태	서울특별시 마포구	1	639,600	47
115	01다1547	안*아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4	792,960	47
116	01수7434	이*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4	1,044,540	47

등록연번	차량번호	성 명	기본 주소	과태료체납 건수	과태료 금액	발송회차
117	02소2424	장*용	서울특별시 관악구	4	607,080	47
118	02수3790	음*태	서울특별시 강서구	1	462,430	47
119	02도0671	LIM**AN	서울특별시 금천구	8	341,120	47
120	03나5960	진*경	경기도 김포시	5	307,600	47
121	02너7104	BAE**LA	광주광역시 북구	10	428,800	47
122	02더3021	오*식	서울특별시 관악구	1	323,400	47
123	803모2375	(주)**앤씨	서울특별시 서초구	7	915,600	47
124	80구5819	김*흥	서울특별시 송파구	2	1,019,400	47
125	72서6978	유한책**니즈	서울특별시 강남구	1	632,400	47
126	73수5248	김*남	전라남도 순천시	25	1,372,100	47
127	76소6614	DUO**NH	서울특별시 노원구	4	1,987,680	47
128	79조9992	주식회**엔씨	서울특별시 서초구	1	646,800	47
129	131서9960	김*희	경기도 김포시	8	379,810	47
130	91보9779	이*안	전라남도 구례군	7	318,160	47
131	92모8080	권*수	서울특별시 양천구	2	311,590	47
132	97조2997	정*수	경기도 광주시	9	391,440	47
133	05우2339	황*희	서울특별시 양천구	6	304,800	47
134	07두6183	이*승	서울특별시 도봉구	3	1,037,050	47
135	12우3663	최*솔	경기도 양주시	3	301,520	47
136	178서1039	이*현	서울특별시 송파구	1	713,130	47
137	31부7225	민족통**회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3	322,220	47
138	36루1527	YIB**AN	서울특별시 성북구	5	1,867,080	47
139	371버5305	SEO**UK	서울특별시 강남구	1	632,400	47
140	67고3366	장*림	서울특별시 구로구	2	498,110	47
141	20더2231	최*성	경기도 양평군	6	305,280	47
142	254라2856	한*욱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1	339,570	47
143	04도6036	김*실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3	1,188,680	47
144	03나7181	CHE**XU	서울특별시 강서구	6	303,860	47
145	03루2692	정*철	서울특별시 동작구	6	300,480	47

등록연번	차량번호	성 명	기본 주소	과태료체납 건수	과태료 금액	발송회차
146	03버0612	정*우	서울특별시 광진구	2	734,850	47
147	04도3391	이*영	서울특별시 동작구	1	639,600	47
148	04도3740	김*식	서울특별시 중랑구	14	570,020	47
149	04무6405	GOR**AM	서울특별시 서초구	7	316,240	47
150	06로5387	박*성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4	831,840	47
151	06마3092	신*경	서울특별시 구로구	2	331,140	47
152	06무1014	김*석	경기도 의정부시	12	530,980	47
153	04수0264	AZI**LI	서울특별시 중구	4	727,180	47
154	341저6067	주식회**이블	서울특별시 마포구	9	393,840	47
155	38두7780	KEL**LE	경기도 평택시	7	376,700	47
156	88머0290	조*식	인천광역시 계양구	5	342,560	47
157	152러9375	이*용	서울특별시 서초구	4	766,560	47
158	서울89자7922	(주)**지스	서울특별시 강서구	1	646,800	47
159	88마3216	신흥대**회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2	711,040	47
160	50구9633	김*웅	서울특별시 서초구	1	639,600	47
161	03모1169	윤*선	서울특별시 양천구	1	970,200	47
162	25모4981	정*섭	서울특별시 강북구	1	639,600	47
163	80라7774	안*석	서울특별시 중랑구	4	301,300	47
164	324라8590	노*영	경기도 의정부시	5	328,240	47
165	88머0337	김*태	서울특별시 강북구	6	391,900	47
166	06누6100	김*옥	서울특별시 도봉구	10	430,720	47
167	01가8759	백*용	충청남도 부여군	5	1,465,640	47
168	01무8783	이*기	서울특별시 동작구	7	328,720	47
169	05두2144	최*빈	서울특별시 성동구	1	578,110	47
170	05무4103	최*철	서울특별시 동작구	1	948,600	47
171	05오6337	강*엽	서울특별시 용산구	7	317,200	47
172	04버6911	이*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	1,030,120	47
173	05우2690	이*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1	614,400	47
174	06고8039	서*식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9	654,000	47

등록연번	차량번호	성 명	기본 주소	과태료체납 건수	과태료 금액	발송회차
175	06누0238	HUA**HU	서울특별시 동작구	1	646,800	47
176	06도0195	MUL**KH	인천광역시 연수구	5	315,280	47
177	06두4949	안*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7	413,040	47
178	96소4990	박*선	서울특별시 송파구	1	539,000	47
179	96소6638	김*숙	서울특별시 송파구	2	699,040	47
180	96소9558	(주)**건설	서울특별시 서초구	1	632,400	47
181	96소9566	(주)**트루	서울특별시 마포구	1	632,400	47
182	96오5488	(주)**앤씨	서울특별시 강남구	1	646,800	47
183	96오8127	서*석	경기도 남양주시	5	308,460	47
184	96저0155	에이앤**회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5	1,211,780	47
185	07노6281	이*열	서울특별시 강서구	14	1,444,000	47
186	96소0570	김*범	서울특별시 송파구	5	351,230	47
187	96저0592	예술불**주)	서울특별시 중구	1	632,400	47
188	서울81배6036	유*록	서울특별시 구로구	6	341,600	47
189	서울81배6908	진*범	서울특별시 도봉구	1	654,000	47
190	93소0621	(주)**에스	경기도 양주시	9	504,080	47
191	93어0693	박*식	서울특별시 구로구	4	301,440	47
192	93오2752	신*호	서울특별시 구로구	5	935,850	47
193	93오4047	주식회**케어	경기도 성남시	7	435,460	47
194	93우0173	정*하	경기도 의정부시	4	307,200	47
195	93우0460	동흥개**주)	서울특별시 서초구	1	632,400	47
196	93조6437	홍*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4	310,960	47
197	서울80자9368	한*주	서울특별시 송파구	1	740,870	47
198	서울81배2285	차*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1	447,720	47
199	서울81배2392	김*철	서울특별시 양천구	7	305,200	47
200	서울81배3959	허*욱	경기도 양주시	1	1,220,570	47
201	서울81배4860	양*훈	서울특별시 노원구	20	909,920	47
202	서울81배7284	양*주	서울특별시 구로구	1	573,040	47
203	서울81배5182	한*근	서울특별시 은평구	12	523,680	47

등록연번	차량번호	성 명	기본 주소	과태료체납 건수	과태료 금액	발송회차
204	서울81배5449	황*섭	서울특별시 강동구	8	349,760	47
205	서울85바6946	오케이**회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11	470,960	47
206	서울85바7412	주식회**먼트	서울특별시 서초구	1	668,400	47
207	94모5577	추*태	서울특별시 노원구	3	818,250	47
208	94소2241	이*희	서울특별시 중랑구	25	1,241,200	47
209	94어0719	유*록	서울특별시 노원구	6	330,240	47
210	95누3720	주식회**자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1	654,000	47
211	서울83바6525	주식회**운수	서울특별시 강동구	3	2,631,440	47
212	서울83바7394	주식회**설팅	서울특별시 강동구	3	489,990	47
213	서울83사3088	강*규	서울특별시 도봉구	1	646,800	47
214	서울83사5854	임*연	서울특별시 중랑구	5	301,180	47
215	94두1198	주식회**다미	서울특별시 강남구	2	676,000	47
216	94두7188	박*석	경기도 하남시	4	301,440	47
217	서울82바8010	주식회**닷컴	서울특별시 관악구	3	354,080	47
218	서울82바8020	주식회**지스	서울특별시 관악구	7	318,240	47
219	95더9801	오티스**회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1	632,400	47
220	95두2799	(주)**웨이	서울특별시 구로구	1	632,400	47
221	95라2660	김*운	서울특별시 구로구	1	661,200	47
222	95무0646	고*아	경기도 남양주시	11	479,600	47
223	95버1809	박*량	경기도 파주시	5	319,260	47
224	94거4591	정*수	서울특별시 성북구	2	848,480	47
225	95다2315	(주)**디어	서울특별시 서초구	1	632,400	47
226	서울83다2576	송*홍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5	329,680	47
227	서울83바6262	안신물**회사	서울특별시 양천구	1	646,800	47
228	서울83사6925	박*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4	383,900	47
229	서울84사5857	황*순	서울특별시 양천구	7	392,300	47
230	서울83사7718	주식회**맥스	서울특별시 종로구	9	391,440	47
231	서울83자3964	(주)**한진	서울특별시 금천구	7	303,280	47
232	서울83자7731	에스에**회사	서울특별시 송파구	1	646,800	47

등록연번	차량번호	성 명	기본 주소	과태료체납 건수	과태료 금액	발송회차
233	서울84사4464	윤*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3	305,240	47
234	서울84사5909	엄*혁	서울특별시 양천구	7	301,360	47
235	95주4887	주식회**직스	서울특별시 금천구	2	698,130	47
236	95조2175	이*희	서울특별시 양천구	1	639,600	47
237	95조2487	김*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3	849,600	47
238	96거0942	(주)**우스	충청남도 서산시	8	355,040	47
239	서울84사7640	강*규	서울특별시 노원구	5	381,840	47
240	서울84자3305	김*열	서울특별시 성북구	5	317,340	47
241	서울81배4267	남*욱	서울특별시 강북구	1	646,800	47
242	94머2544	주식회**셔날	서울특별시 노원구	1	646,800	47
243	95거2960	전*찬	서울특별시 은평구	4	773,760	47
244	서울85구1195	안*옥	서울특별시 구로구	1	639,600	47
245	서울85바1625	오케이**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9	402,960	47
246	서울85자4163	(주)**한진	서울특별시 금천구	5	387,600	47
247	96거4678	박*봉	서울특별시 동작구	8	421,500	47
248	서울86바1852	주식회**지스	서울특별시 서초구	1	646,800	47
249	서울86바2448	성우운**주)	서울특별시 강동구	1	632,400	47
250	서울86바2673	(주)**운수	서울특별시 양천구	3	735,440	47
251	96구8225	고*윤	서울특별시 강북구	8	325,730	47
252	96누0197	김*진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5	309,200	47
253	서울81배8090	쿠팡로**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1	639,600	47
254	서울81배8440	이*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8	358,400	47
255	서울81배9857	이*우	서울특별시 성북구	8	349,280	47
256	서울81사5194	대동화**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7	390,960	47
257	서울82두5731	전*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2	1,581,000	47
258	서울82바7987	주식회**닷컴	서울특별시 관악구	1	323,400	47
259	95어9498	심*경	서울특별시 강동구	2	303,360	47
260	서울82바9467	택수물**회사	서울특별시 양천구	12	422,510	47
261	서울82바9994	스마일**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1	694,570	47

등록연번	차량번호	성 명	기본 주소	과태료체납 건수	과태료 금액	발송회차
262	서울82배1642	박*영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11	465,680	47
263	서울82사1256	(주)**운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1	639,600	47
264	94러1248	주식회**퍼니	서울특별시 강남구	1	646,800	47
265	94나3859	더이글**회사	서울특별시 금천구	6	304,320	47
266	94라9398	이*우	서울특별시 은평구	2	1,027,480	47
267	96누8653	김*현	서울특별시 은평구	5	308,570	47
268	96누8743	주식회**그룹	서울특별시 강남구	2	796,220	47
269	96다8310	오성포**회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1	639,600	47
270	96더0461	(주)**냉동	경기도 시흥시	5	302,960	47
271	96더8951	주식회**사업	서울특별시 강동구	1	661,200	47
272	96더9952	남창농**주)	서울특별시 송파구	3	442,610	47
273	서울86바4172	주식회**물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1	644,930	47
274	서울86바5483	주식회**운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1	1,370,200	47
275	서울86바5535	(주)**화물	서울특별시 은평구	1	632,400	47
276	서울86바5907	영특수**주)	서울특별시 구로구	2	719,200	47
277	서울86바6127	영특수**주)	서울특별시 구로구	1	646,800	47
278	서울86자8742	박*순	서울특별시 마포구	5	319,200	47
279	서울87아2737	제일상**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1	527,000	47
280	96두2950	한*우	경기도 의정부시	5	340,820	47
281	서울87아4769	동일실**주)	서울특별시 양천구	11	1,092,700	47
282	서울87아7970	주식회**특송	서울특별시 송파구	1	646,800	47
283	96두9366	권*수	서울특별시 은평구	6	647,950	47
284	서울86바3422	(주)**아이	서울특별시 송파구	1	639,600	47
285	05수5891	성*연	서울특별시 송파구	1	632,400	47
286	서울88바2907	정*우	서울특별시 구로구	1	639,600	47
287	서울88아1144	신흥상**주)	서울특별시 양천구	6	331,340	47
288	114라7137	김*현	서울특별시 성북구	1	306,710	47
289	114서2664	투어스**회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5	848,560	47
290	114수5855	PIA**AO	경기도 김포시	5	350,320	47

등록연번	차량번호	성 명	기본 주소	과태료체납 건수	과태료 금액	발송회차
291	114저2949	(주)**셔널	서울특별시 송파구	1	646,800	47
292	115너7768	(주)**유통	서울특별시 송파구	6	913,280	47
293	115루7655	윤*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3	1,025,850	47
294	115소9149	트웰브**회사	서울특별시 중구	6	797,350	47
295	05저3349	권*현	서울특별시 서초구	1	948,600	47
296	05주3655	조*제	경기도 용인시	6	351,320	47
297	06가1522	최*식	서울특별시 양천구	10	400,780	47
298	06가4424	김*환	충청남도 당진시	1	894,830	47
299	149다6781	위*환	서울특별시 성북구	7	318,640	47
300	113저3608	JIA**HE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8	340,820	47
301	149저1238	이*경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1	383,760	47
302	115주6723	최*천	서울특별시 송파구	4	1,541,710	47
303	116로6963	김*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11	560,720	47
304	116모8187	(주)**링스	인천광역시 서구	6	308,160	47
305	148나3731	조*철	서울특별시 강북구	6	310,540	47
306	148누4303	(주)**타인	경기도 남양주시	5	302,000	47
307	148더9700	이*섭	서울특별시 은평구	1	319,800	47
308	148로5298	강*경	서울특별시 양천구	1	639,600	47
309	148주8453	도**덕	서울특별시 은평구	4	302,400	47
310	서울89자7341	심*보	서울특별시 강남구	4	309,350	47
311	114고8140	송*철	서울특별시 송파구	1	809,070	47
312	149저5305	조*화	서울특별시 양천구	1	948,600	47
313	14거7215	박*호	서울특별시 강서구	5	337,190	47
314	52서8165	김*신	서울특별시 구로구	2	854,790	47
315	52수6960	양*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5	301,840	47
316	52수7015	SUN**AN	경기도 수원시	5	328,860	47
317	52수9199	JIN**UA	경기도 안성시	8	534,240	47
318	14구3282	최*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4	693,430	47
319	179도7344	이*범	서울특별시 은평구	7	305,740	47

등록연번	차량번호	성 명	기본 주소	과태료체납 건수	과태료 금액	발송회차
320	179루1970	주식회**조경	경기도 평택시	8	381,060	47
321	45두9830	박*영	서울특별시 노원구	2	339,810	47
322	52저4288	아카시**회사	서울특별시 강서구	2	1,699,800	47
323	59노4320	강*우	서울특별시 강동구	2	1,015,240	47
324	59노9028	유*름	서울특별시 양천구	8	343,520	47
325	59누4946	(주)**너즈	서울특별시 강남구	1	639,600	47
326	45서8621	김*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5	303,920	47
327	38머7911	이*재	인천광역시 계양구	12	492,180	47
328	45소7118	한*수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7	321,620	47
329	59구0219	이*엽	서울특별시 강남구	2	967,470	47
330	59구7602	이석**이석	서울특별시 강남구	1	639,600	47
331	45소9056	서*룡	경기도 용인시	5	327,400	47
332	45수6211	강*술	서울특별시 노원구	3	723,920	47
333	52버8129	김*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2	1,721,400	47
334	45우0689	LIA**RT	경기도 광주시	9	391,920	47
335	45우2244	유정**유정	서울특별시 송파구	2	703,840	47
336	52마5221	주식회**앤씨	경기도 화성시	6	389,120	47
337	52무4965	최지웅**식)	서울특별시 구로구	1	948,600	47
338	52보5549	차*민	전라남도 목포시	4	309,200	47
339	45라2218	김*형	서울특별시 양천구	9	404,400	47
340	45러8699	주식회**에이	서울특별시 강남구	5	475,760	47
341	45로8913	주식회**스트	서울특별시 송파구	1	632,400	47
342	45마2738	(주)**테크	경기도 화성시	9	398,640	47
343	45무5820	배*근	서울특별시 강서구	6	327,840	47
344	45부8751	윤*규	서울특별시 노원구	2	978,270	47
345	59너5633	명*철	서울특별시 송파구	2	743,600	47
346	25노8563	신*식	서울특별시 양천구	6	317,760	47
347	225다8115	김*헌	경기도 양주시	1	948,600	47
348	225버8565	주식회**앤씨	서울특별시 송파구	2	674,560	47

등록연번	차량번호	성 명	기본 주소	과태료체납 건수	과태료 금액	발송회차
349	225저6008	박*훈	서울특별시 종로구	3	306,800	47
350	225조8383	김*수	서울특별시 노원구	6	370,140	47
351	226라3866	허*정	서울특별시 강남구	1	646,800	47
352	227가8962	주식회**엔티	인천광역시 남동구	4	307,200	47
353	227도8820	박*아	경기도 광명시	14	614,220	47
354	17도5903	(주)**산업	충청남도 서산시	33	1,415,280	47
355	225구8028	하*홍	인천광역시 강화군	9	441,080	47
356	25고6495	한*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6	346,400	47
357	25노0583	서*현	서울특별시 노원구	2	1,114,910	47
358	179머1738	(주)**개발	서울특별시 관악구	6	301,920	47
359	179저9304	주식회**앤코	서울특별시 마포구	2	686,300	47
360	17너7126	민*롬	서울특별시 성북구	1	646,800	47
361	17노7051	박*정	서울특별시 도봉구	7	324,400	47
362	17노8169	주식회**파워	서울특별시 마포구	1	632,400	47
363	17다3122	주식회**머스	서울특별시 구로구	1	632,400	47
364	33무1438	두*술	서울특별시 송파구	7	328,240	47
365	33무9075	신*연	서울특별시 강남구	8	362,340	47
366	34도1872	최*상	경기도 하남시	8	354,560	47
367	65저0389	이*환	서울특별시 송파구	2	678,880	47
368	162거7450	김웅**김웅	서울특별시 송파구	2	300,670	47
369	16노9860	주식회**앤티	서울특별시 광진구	3	807,670	47
370	33거9663	이*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1	959,400	47
371	34구8387	이*현	서울특별시 송파구	1	646,800	47
372	15라1648	이*찬	경기도 남양주시	5	302,000	47
373	15오2463	KIM**NG	서울특별시 용산구	1	646,800	47
374	35나2019	(주)**뮤직	경기도 양평군	8	371,700	47
375	41누9618	김건**김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19	1,140,710	47
376	49부9309	NIU**AN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8	967,360	47
377	51오6152	이*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2	433,960	47

등록연번	차량번호	성 명	기본 주소	과태료체납 건수	과태료 금액	발송회차
378	63서5270	KAM**LI	충청북도 청주시	1	1,067,400	47
379	66노3862	LIY**NG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3	836,830	47
380	93구9003	서울중**조합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5	1,832,760	47
381	99다8399	(주)**클럽	서울특별시 강서구	1	632,400	47
382	170머9872	최혁**최혁	서울특별시 도봉구	8	1,234,050	47
383	188노7703	오*대	서울특별시 양천구	1	639,600	47
384	18도0413	(주)**퍼즐	서울특별시 강동구	1	646,800	47
385	197루9106	정*식	인천광역시 서구	10	458,200	47
386	19너5808	김은엽**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6	675,100	47
387	333가4991	노*건	서울특별시 구로구	10	482,150	47
388	122서5932	임*만	서울특별시 강서구	8	360,320	47
389	123거5783	윤*균	서울특별시 관악구	7	304,240	47
390	124너3775	김*규	서울특별시 관악구	5	382,320	47
391	124러6131	이*단	서울특별시 중랑구	4	851,390	47
392	125구9524	지*호	서울특별시 관악구	5	821,190	47
393	128가1778	정*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3	733,980	47
394	12모8865	REG**IL	서울특별시 용산구	10	406,760	47
395	12어4364	이*규	서울특별시 중랑구	3	1,144,120	47
396	133주7673	이*남	서울특별시 동작구	12	546,240	47
397	297도7155	ABD**LI	경상북도 경산시	1	602,190	47
398	299어5570	모*환	서울특별시 관악구	8	322,820	47
399	29나1139	임*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4	2,095,190	47
400	29무5749	박*배	경기도 김포시	6	301,440	47
401	29부0186	우*태	서울특별시 강서구	7	354,370	47
402	29소1415	장*억	서울특별시 마포구	1	646,800	47
403	29우6063	유*람	경기도 고양시	7	323,440	47
404	304머4895	유빈**유빈	서울특별시 관악구	8	365,600	47
405	305거1565	김*연	서울특별시 강서구	2	1,581,000	47
406	306거2358	임*성	서울특별시 마포구	4	927,170	47

등록연번	차량번호	성 명	기본 주소	과태료체납 건수	과태료 금액	발송회차
407	30라7394	김*진	경기도 광주시	6	309,600	47
408	30모3405	김*태	서울특별시 마포구	78	3,351,900	47
409	52러6053	류*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5	834,700	47
410	52버6434	김*지	서울특별시 금천구	8	1,285,430	47
411	52보2426	이*영	서울특별시 송파구	4	321,120	47
412	52수3905	LI **UI	서울특별시 금천구	6	1,008,260	47
413	52수6114	이*규	인천광역시 남동구	3	703,940	47
414	53거5873	김*희	서울특별시 관악구	4	438,150	47
415	53노8088	홍*식	서울특별시 관악구	1	632,400	47
416	53두7195	정*순	서울특별시 중랑구	6	976,700	47
417	53마7889	FAN**NG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2	1,789,800	47
418	53마8181	정*훈	서울특별시 성동구	2	690,400	47
419	53머5694	김*석	서울특별시 금천구	6	306,240	47
420	53수6858	이*훈	서울특별시 마포구	2	705,280	47
421	54더5489	정진철**애)	서울특별시 용산구	6	341,680	47
422	66나7311	YER**ME	충청남도 아산시	8	516,000	47
423	66다0458	이*환	경기도 수원시	11	540,560	47
424	66다5835	송*여	경기도 시흥시	11	477,980	47
425	66도5308	이*재	서울특별시 용산구	1	959,400	47
426	66도9895	정*용	경기도 고양시	6	307,180	47
427	66라2609	나*용	경기도 평택시	7	321,200	47
428	66마6771	김*철	경기도 화성시	14	580,220	47
429	66서1930	신*재	서울특별시 종로구	7	338,800	47
430	66서7227	김*식	경기도 안산시	7	301,000	47
431	66조0444	오*욱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1	646,800	47
432	67나2829	임*숙	서울특별시 동작구	2	1,599,000	47
433	67머3442	김*배	서울특별시 구로구	1	661,200	47
434	67부6413	박철**박철	경기도 김포시	4	310,800	47
435	81도7988	신*호	서울특별시 구로구	9	392,880	47

등록연번	차량번호	성 명	기본 주소	과태료체납 건수	과태료 금액	발송회차
436	81어5729	문*식	인천광역시 서구	2	714,880	47
437	81오3520	이*순	서울특별시 중랑구	11	484,880	47
438	81저3664	명*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3	707,350	47
439	822오1099	한*차	서울특별시 광진구	7	422,160	47
440	82거7153	김*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1	344,960	47
441	82누5471	조*원	서울특별시 관악구	23	752,720	47
442	82무8661	남*희	경기도 의정부시	4	394,970	47
443	82소0999	이*희	서울특별시 용산구	1	661,200	47
444	58너6950	이*신	서울특별시 강서구	7	305,680	47
445	59저6652	김*호	경기도 포천시	5	389,680	47
446	61보9735	PIA**NG	서울특별시 금천구	7	356,960	47
447	62나2644	FUL**UN	경기도 양평군	5	306,800	47
448	64머6450	오*철	서울특별시 중랑구	5	870,640	47
449	64저4203	이*자	서울특별시 관악구	13	1,717,060	47
450	68라1302	이*규	서울특별시 용산구	1	433,190	47
451	71수7793	이*령	인천광역시 서구	5	334,900	47
452	72소8979	BUI**OC	경기도 김포시	4	375,650	47
453	74더3984	JIA**AO	서울특별시 금천구	11	592,900	47
454	76부2785	이헌**이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6	1,649,560	47
455	79더1020	김*덕	서울특별시 중랑구	3	322,200	47
456	80나4044	QUA**NG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	655,950	47
457	80소7557	서*조	서울특별시 금천구	8	358,400	47
458	814노5826	김*묵	서울특별시 금천구	2	1,609,800	47
459	85라0963	(주)**지텍	경기도 군포시	1	305,200	47
460	86무0435	소*원	경기도 오산시	13	670,280	47
461	87더8362	주식회**드림	서울특별시 노원구	3	736,400	47
462	87어8428	주식회**엘엠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5	302,180	47
463	87오8756	문일**문일	서울특별시 관악구	5	849,340	47
464	89도8486	정*수	서울특별시 강서구	1	639,600	47

등록연번	차량번호	성 명	기본 주소	과태료체납 건수	과태료 금액	발송회차
465	89소4065	주식회**플랫	서울특별시 금천구	1	970,200	47
466	90너2909	김*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5	332,080	47
467	375다3248	주식회**짓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1	431,200	47
468	90마1241	주식회**건설	서울특별시 서초구	1	639,600	47
469	90우8374	박*영	광주광역시 북구	7	307,120	47
470	90저5516	최*헌	서울특별시 용산구	1	639,600	47
471	93라1686	홍*기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1	650,010	47
472	37구4529	(주)**디씨	서울특별시 강남구	4	1,146,120	47
473	37머4714	문*영	서울특별시 강북구	3	740,240	47
474	37보5055	주식회**디폰	서울특별시 구로구	1	639,600	47
475	380머8097	(주)**프라	서울특별시 서초구	3	816,400	47
476	388수7243	이*경	서울특별시 중랑구	6	350,240	47
477	393마3225	(주)**랜드	경기도 이천시	5	303,920	47
478	97두2793	강*중	서울특별시 송파구	8	359,360	47
479	29저8734	최*환	서울특별시 금천구	26	2,171,250	47
480	321거8004	HUA**NG	서울특별시 광진구	5	554,720	47
481	33다3505	강*선	경기도 양주시	11	586,480	47
482	33소7240	안*우	서울특별시 광진구	1	959,400	47
483	35로3373	장*식	서울특별시 금천구	8	712,960	47
484	36보3837	JIN**IE	서울특별시 금천구	1	948,600	47
485	138가6646	최*영	충청북도 청주시	6	924,110	47
486	139더4036	김*수	서울특별시 금천구	3	1,085,670	47
487	13거0349	KIM**II	경기도 안성시	5	303,920	47
488	13라9655	박*혁	서울특별시 중랑구	2	664,980	47
489	13머1916	주*노	서울특별시 은평구	12	514,560	47
490	13저1895	박*문	서울특별시 광진구	1	646,800	47
491	141고7257	서*진	서울특별시 용산구	8	478,940	47
492	141모3978	강*윤	서울특별시 용산구	38	1,971,700	47
493	30오9774	최*기	서울특별시 관악구	6	300,960	47

등록연번	차량번호	성 명	기본 주소	과태료체납 건수	과태료 금액	발송회차
494	310로6712	오*민	서울특별시 강서구	3	318,160	47
495	315우6945	방*주	서울특별시 중구	3	863,830	47
496	319부5995	WU **UA	서울특별시 동작구	1	654,000	47
497	31구8001	REG**EG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6	302,400	47
498	31다4774	박*동	서울특별시 강서구	4	448,810	47
499	31더0153	송*우	서울특별시 광진구	2	665,670	47
500	31두7449	신*용	경기도 안양시	5	342,840	47
501	327너2742	엄*화	서울특별시 용산구	8	309,740	47
502	328버9323	김*원	경기도 부천시	6	337,440	47
503	329서6668	이*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1	433,190	47
504	32소3388	송*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	664,240	47
505	32소3493	조*경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1	632,400	47
506	54부8663	김*선	서울특별시 성동구	6	311,470	47
507	54어0368	ZHA**AN	서울특별시 광진구	8	378,550	47
508	54우0213	박*연	서울특별시 강서구	5	1,552,110	47
509	55너0569	장*이	서울특별시 마포구	1	632,400	47
510	55두3344	김*일	서울특별시 동작구	2	683,680	47
511	55러5037	손*모	서울특별시 은평구	1	1,002,600	47
512	55무7410	LIY**AO	경기도 안산시	5	303,420	47
513	55보6793	김*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4	804,000	47
514	55부3358	강*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1	948,600	47
515	55수1622	천*욱	서울특별시 금천구	8	343,620	47
516	55어5514	진원**진원	서울특별시 강서구	4	326,820	47
517	68고6306	김*겸	서울특별시 동작구	1	369,950	47
518	68구9177	박*우	서울특별시 강서구	7	444,240	47
519	68모3679	김*환	서울특별시 금천구	4	717,380	47
520	68버1604	서*순	서울특별시 노원구	26	1,091,760	47
521	69구8283	정*란	서울특별시 금천구	1	393,330	47
522	69두7553	NGU**EP	서울특별시 광진구	2	1,024,630	47

등록연번	차량번호	성 명	기본 주소	과태료체납 건수	과태료 금액	발송회차
523	70라7068	HAN**NG	경기도 부천시	6	351,000	47
524	70로4939	최*훈	서울특별시 금천구	4	316,320	47
525	70모5738	최*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3	321,260	47
526	71나9785	박*홍	서울특별시 마포구	1	675,600	47
527	71라9592	NAN**XI	서울특별시 관악구	3	751,600	47
528	82수6811	박*환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8	363,200	47
529	82오2844	유*윤	서울특별시 강서구	1	646,800	47
530	82주1187	신*헌	서울특별시 마포구	1	639,600	47
531	83고7024	NWA**NK	서울특별시 용산구	5	1,011,860	47
532	83구7736	홍*천	서울특별시 용산구	1	632,400	47
533	83노2271	KHA**ER	경기도 안산시	6	301,440	47
534	83로2682	KHA**LD	인천광역시 남동구	8	1,100,050	47
535	83루4409	윤*빈	서울특별시 마포구	2	1,732,600	47
536	83마3767	이*범	서울특별시 강서구	7	346,700	47
537	83버7295	JIN**YI	서울특별시 동작구	1	300,390	47
538	83부0298	박*규	서울특별시 용산구	5	303,440	47
539	83서6222	임*식	경상남도 함안군	8	437,920	47
540	83소6858	위*욱	서울특별시 중구	6	390,480	47
541	40무0320	유*심	서울특별시 마포구	1	959,400	47
542	40서1944	장*환	서울특별시 성동구	6	314,880	47
543	42구9152	박*자	충청남도 아산시	5	343,500	47
544	46주5043	김*광	서울특별시 동작구	13	580,320	47
545	55모0660	이*숙	서울특별시 광진구	6	315,440	47
546	55서9287	정*규	서울특별시 동작구	5	364,140	47
547	66어3930	박*의	서울특별시 금천구	9	371,090	47
548	67고7489	김*춘	서울특별시 중랑구	2	1,606,200	47
549	67우3070	구*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	318,360	47
550	98누5875	주식회**아이	서울특별시 강동구	1	639,600	47
551	398노7505	삼덕물**회사	충청남도 천안시	11	453,500	47

등록연번	차량번호	성 명	기본 주소	과태료체납 건수	과태료 금액	발송회차
552	39노5305	주식회**보코	서울특별시 성북구	5	1,220,680	47
553	39누1887	SEO**ON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	1,008,760	47
554	40부5236	임*수	서울특별시 성북구	1	503,400	47
555	41도1908	고*민	서울특별시 송파구	3	737,840	47
556	41머3232	신*림	서울특별시 종로구	1	682,800	47
557	41소1821	강*석	서울특별시 강서구	1	959,400	47
558	경기82바9181	조이로**회사	경기도 성남시	10	421,600	47
559	서울31아5414	차*민	서울특별시 강동구	3	1,612,570	47
560	서울55다2255	(주)**타일	서울특별시 서초구	6	300,800	47
561	서울70자2202	주식회**이트	서울특별시 송파구	1	632,400	47
562	46루9462	김*수	경기도 안산시	4	317,380	47
563	07버1773	황*경	서울특별시 마포구	1	654,000	47
564	07루6047	박*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1	718,800	47
565	07모3801	권*록	서울특별시 강서구	2	540,990	47
566	07저0648	이*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5	308,720	47
567	143저8550	정*규	인천광역시 서구	7	326,320	47
568	143주9211	김*경	서울특별시 강서구	4	796,320	47
569	145더2530	전*만	서울특별시 강서구	1	639,600	47
570	145마2606	이*석	서울특별시 관악구	1	632,400	47
571	148수9062	차*우	서울특별시 금천구	2	301,360	47
572	149거4129	최*성	서울특별시 강남구	6	305,280	47
573	14가0772	서*혁	서울특별시 강서구	4	783,290	47
574	14거7044	노*수	서울특별시 은평구	6	343,200	47
575	14루9083	이*민	인천광역시 서구	6	429,440	47
576	14보7272	최*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5	304,880	47
577	14저0274	PAR**LI	서울특별시 성북구	47	2,556,780	47
578	150두1582	박*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7	325,360	47
579	32수2976	김*균	서울특별시 강서구	4	1,175,480	47
580	32저0941	정*욱	서울특별시 강동구	9	513,760	47

등록연번	차량번호	성 명	기본 주소	과태료체납 건수	과태료 금액	발송회차
581	32주5236	박*택	서울특별시 마포구	1	646,800	47
582	333너6009	JIN**NG	경기도 시흥시	7	322,960	47
583	333노6608	JIN**YU	서울특별시 구로구	34	1,496,500	47
584	333보3418	김*운	경기도 부천시	11	491,340	47
585	334고3780	김*연	경기도 구리시	8	368,480	47
586	338조1843	김창**김창	서울특별시 광진구	1	959,400	47
587	33무4817	전*영	서울특별시 금천구	10	495,920	47
588	33무9217	전*윤	서울특별시 관악구	3	720,080	47
589	56너3067	나*선	경기도 부천시	7	321,220	47
590	56도5116	한*준	서울특별시 구로구	13	549,580	47
591	56도9800	이*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7	328,720	47
592	56두4609	ALQ**DA	서울특별시 용산구	4	425,480	47
593	56로6223	이*은	경기도 김포시	13	585,520	47
594	56마3614	라*학	서울특별시 금천구	7	975,460	47
595	56서8134	임*우	서울특별시 중구	4	782,400	47
596	57로0421	권*구	서울특별시 강서구	17	730,640	47
597	57소4922	박*준	대전광역시 유성구	6	307,680	47
598	57수6445	김*훈	서울특별시 광진구	4	368,480	47
599	58모5962	석*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7	308,740	47
600	71무6453	강*준	서울특별시 관악구	1	646,800	47
601	71주1914	이*섭	경기도 화성시	5	301,180	47
602	72구5334	김*영	서울특별시 관악구	8	599,960	47
603	72나9429	SUN**IN	경기도 부천시	6	331,800	47
604	72누6059	유*욱	서울특별시 강서구	6	316,200	47
605	72수4117	김*열	서울특별시 용산구	9	474,300	47
606	73도5777	박*선	경기도 군포시	5	312,700	47
607	73무7397	강*정	서울특별시 중랑구	2	749,370	47
608	73주2219	이*진	서울특별시 중랑구	16	1,014,120	47
609	84누3929	한*욱	서울특별시 강서구	2	500,410	47

등록연번	차량번호	성 명	기본 주소	과태료체납 건수	과태료 금액	발송회차
610	84어6706	이*석	서울특별시 마포구	6	308,160	47
611	84저3910	김*범	경기도 화성시	7	317,300	47
612	85나0589	고*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2	1,015,720	47
613	85서7136	최*혁	서울특별시 용산구	5	1,261,000	47
614	70나3087	권*규	서울특별시 관악구	1	646,800	47
615	71거3352	박*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2	388,670	47
616	73어6837	ALI**AT	서울특별시 강북구	5	314,300	47
617	78우2253	성*영	충청남도 공주시	6	329,400	47
618	813저8481	김*정	경기도 성남시	8	348,320	47
619	81나1174	김*도	서울특별시 광진구	1	632,400	47
620	82무9786	LI **HE	서울특별시 중구	1	970,200	47
621	83서2803	전*웅	서울특별시 관악구	9	386,160	47
622	152가1097	김*종	서울특별시 강서구	3	749,360	47
623	152고3062	김*영	서울특별시 중구	9	383,760	47
624	152노3570	김*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9	393,360	47
625	152노9139	김*태	경기도 용인시	7	319,100	47
626	152머4880	김*솔	서울특별시 관악구	15	728,260	47
627	152부7702	김*현	서울특별시 용산구	5	321,500	47
628	152어8924	XUX**AN	경기도 부천시	15	700,560	47
629	75보8511	LOR**ID	서울특별시 용산구	6	328,800	47
630	76무9092	김*섭	경기도 안산시	12	655,200	47
631	76오1179	김*자	서울특별시 중구	3	301,220	47
632	77가7502	문*혁	서울특별시 중랑구	7	370,700	47
633	77거2063	이*연	서울특별시 은평구	14	1,106,400	47
634	77무9247	NGU**NH	경상남도 양산시	8	463,000	47
635	77보3346	LIK**NA	서울특별시 관악구	2	701,300	47
636	78구3897	남*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6	334,800	47
637	78누6380	김*빈	서울특별시 금천구	11	496,810	47
638	78부3930	WUR**HE	서울특별시 금천구	5	300,270	47

등록연번	차량번호	성 명	기본 주소	과태료체납 건수	과태료 금액	발송회차
639	79오2649	JIN**AO	서울특별시 금천구	3	321,600	47
640	79조9522	송*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1	639,600	47
641	800가5373	이*문	서울특별시 금천구	8	1,849,500	47
642	86노2494	최*식	서울특별시 금천구	1	661,200	47
643	86노3854	김*연	서울특별시 구로구	8	380,200	47
644	86다6299	박*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1	948,600	47
645	86부7565	김*현	서울특별시 성동구	10	471,520	47
646	86서8841	최*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4	304,800	47
647	86우4063	SHA**LI	서울특별시 용산구	3	1,079,100	47
648	87거6270	최*덕	서울특별시 마포구	1	533,000	47
649	87거6357	이*철	경기도 양평군	6	305,280	47
650	87두7826	JIA**UN	서울특별시 동작구	4	1,139,150	47
651	87머9204	최*철	서울특별시 중랑구	7	345,580	47
652	87모5128	김*희	인천광역시 연수구	8	368,960	47
653	87모6760	서*준	경기도 남양주시	6	307,660	47
654	298주4106	윤*호	서울특별시 강서구	9	389,040	47
655	359너7654	JIN**UN	서울특별시 강서구	2	694,240	47
656	380노5187	JIN**AN	충청남도 서산시	12	514,080	47
657	80우9621	XIN**HE	서울특별시 강서구	4	1,699,300	47
658	83누6557	김*용	서울특별시 강서구	4	673,620	47
659	65노7333	양*석	서울특별시 강서구	4	313,270	47
660	252가6574	김*정	서울특별시 도봉구	3	881,810	47
661	15노2193	송*흡	서울특별시 성북구	18	822,090	47
662	15조4486	김*진	서울특별시 용산구	1	948,600	47
663	16머5759	이*선	서울특별시 동작구	3	736,400	47
664	179서5131	조*윤	서울특별시 금천구	1	639,600	47
665	33우8305	고*미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5	302,960	47
666	35로3673	어*용	서울특별시 송파구	1	639,600	47
667	156고8919	PIA**AN	인천광역시 부평구	7	332,560	47

등록연번	차량번호	성 명	기본 주소	과태료체납 건수	과태료 금액	발송회차
668	156조8571	김*경	대구광역시 달서구	8	372,660	47
669	157수6690	박*현	서울특별시 용산구	5	917,520	47
670	158가7505	이*규	서울특별시 용산구	5	342,160	47
671	159부3573	조*미	경기도 부천시	3	305,200	47
672	15구8180	이*성	서울특별시 관악구	4	783,360	47
673	15구9177	MUH**MI	서울특별시 용산구	3	1,633,610	47
674	15너6805	오*열	서울특별시 중랑구	4	319,540	47
675	15루2557	FLO**NG	서울특별시 용산구	1	970,200	47
676	15마9221	박*서	경상북도 영양군	8	306,680	47
677	161거2579	김*빈	서울특별시 송파구	21	856,260	47
678	161노8453	남*자	서울특별시 중랑구	19	850,960	47
679	801소5993	박*학	서울특별시 광진구	1	646,800	47
680	88거1455	김*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6	361,280	47
681	88다2582	한*동	서울특별시 관악구	9	529,300	47
682	89두0331	송*진	경기도 광주시	7	337,840	47
683	89루2701	정*채	인천광역시 강화군	3	1,033,100	47
684	89우3239	정*훈	서울특별시 금천구	2	1,606,200	47
685	90거2203	조*행	경기도 고양시	13	568,780	47
686	90노9908	박*재	충청남도 논산시	9	347,820	47
687	90다2939	김*택	서울특별시 중랑구	1	661,200	47
688	90도0415	김진**김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3	318,010	47
689	90로2066	권*구	서울특별시 광진구	1	502,750	47
690	90머7583	이*길	서울특별시 용산구	1	632,400	47
691	35부6717	JIN**AN	서울특별시 구로구	8	374,240	47
692	19라2529	곽*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	801,260	47
693	239다6512	이*승	서울특별시 중랑구	5	313,360	47
694	254누9088	류*현	서울특별시 중랑구	1	639,600	47
695	25노2518	조*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5	307,280	47
696	26루4852	HAN**HI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	1,003,960	47

등록연번	차량번호	성 명	기본 주소	과태료체납 건수	과태료 금액	발송회차
697	27오6911	황*현	서울특별시 용산구	1	639,600	47
698	29우9229	곽*봉	서울특별시 마포구	7	417,750	47
699	311나8521	김*숙	서울특별시 용산구	1	646,800	47
700	163조9313	오*훈	경기도 남양주시	7	356,020	47
701	167머9056	이슬**이슬	서울특별시 동작구	1	646,800	47
702	16도2980	정*일	서울특별시 마포구	1	632,400	47
703	16두0368	이*연	서울특별시 용산구	2	1,617,000	47
704	16루5923	임*정	서울특별시 강서구	1	639,600	47
705	16마1363	이*기	서울특별시 강서구	1	970,200	47
706	16저6804	이*민	서울특별시 성동구	1	639,600	47
707	173어2477	김*희	경기도 의정부시	7	303,280	47
708	174두3865	김*근	서울특별시 강남구	5	636,480	47
709	175우9580	김*림	서울특별시 용산구	7	361,360	47
710	90서9058	김*일	서울특별시 동작구	9	382,490	47
711	90소4443	조*주	서울특별시 강서구	1	981,000	47
712	90수6715	석*수	서울특별시 금천구	2	664,050	47
713	91노5514	이*복	경기도 고양시	2	687,570	47
714	91러0489	고*성	경기도 수원시	1	959,400	47
715	91모3003	주*종	서울특별시 관악구	11	510,420	47
716	91무8488	하*욱	서울특별시 마포구	3	764,240	47
717	91보2487	장*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1	948,600	47
718	91우5372	한*현	경기도 부천시	5	304,880	47
719	91주2076	장*수	서울특별시 성동구	4	381,160	47
720	92다5375	김*택	서울특별시 성북구	6	300,210	47
721	92로0170	김*주	충청북도 청주시	7	362,320	47
722	92로5172	안*민	경기도 안산시	5	300,440	47
723	106로5192	윤*희	서울특별시 동작구	3	664,380	47
724	13나9297	이*주	서울특별시 관악구	5	919,340	47
725	151소5008	TAN**AN	서울특별시 은평구	8	347,820	47

등록연번	차량번호	성 명	기본 주소	과태료체납 건수	과태료 금액	발송회차
726	152루4155	정*진	광주광역시 광산구	6	364,380	47
727	155로5201	송*솔	서울특별시 성동구	1	639,600	47
728	177어8995	황*성	경기도 부천시	7	319,300	47
729	17고0167	김*오	경기도 양주시	6	360,960	47
730	17루8250	하*용	서울특별시 성동구	4	915,300	47
731	17서0205	윤*수	경기도 파주시	6	322,560	47
732	17서1351	석*홍	경상남도 함양군	5	300,560	47
733	17소5755	김*수	서울특별시 용산구	1	639,600	47
734	182무5589	유*철	서울특별시 동작구	1	489,270	47
735	340저3544	정*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1	316,200	47
736	92버7155	박*진	서울특별시 서초구	6	303,840	47
737	92어6544	서*호	경기도 안양시	5	1,739,160	47
738	93고4136	진*령	서울특별시 은평구	5	322,640	47
739	93너9990	이*민	서울특별시 강서구	1	646,800	47
740	94누3733	이훈**이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1	639,600	47
741	52도7333	유*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8	532,320	47
742	53러3517	임*심	서울특별시 금천구	7	317,670	47
743	53무0969	PIA**EN	경기도 안산시	2	310,560	47
744	57거5548	곽*일	경기도 부천시	4	307,200	47
745	61구6042	김*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6	321,600	47
746	61라6523	오*식	서울특별시 관악구	7	304,410	47
747	18두2583	박*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7	320,080	47
748	191누2728	JIN**HU	서울특별시 구로구	16	863,940	47
749	348오2138	최*만	서울특별시 양천구	5	319,600	47
750	34구0706	이*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1	378,370	47
751	34누8453	유*헌	서울특별시 관악구	1	661,200	47
752	34모9402	정*진	서울특별시 강서구	6	560,510	47
753	34무2224	김*재	서울특별시 강서구	1	632,400	47
754	352라4543	민*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12	662,010	47

등록연번	차량번호	성 명	기본 주소	과태료체납 건수	과태료 금액	발송회차
755	355도3809	XUY**JI	경기도 부천시	7	317,680	47
756	35마0486	권*영	경기도 의정부시	7	314,800	47
757	94보0280	권*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8	1,989,720	47
758	95다2213	안*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6	860,480	47
759	95다4193	구*필	경기도 김포시	7	352,640	47
760	95우8425	정*철	서울특별시 강서구	16	1,082,880	47
761	96나0308	우*우	서울특별시 마포구	1	639,600	47
762	96더8815	이*주	서울특별시 중구	10	469,340	47
763	96마2798	문*원	인천광역시 서구	7	319,600	47
764	96버8030	이*신	서울특별시 강서구	9	376,190	47
765	97소1473	민*진	서울특별시 양천구	7	314,800	47
766	97조6792	박*성	경기도 광주시	7	327,280	47
767	경기49도5006	원*상	경기도 구리시	4	335,200	47
768	경기84배5415	배*완	경기도 광명시	7	340,240	47
769	67버7426	송*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12	516,000	47
770	71거8175	엽*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	679,840	47
771	74도6982	진*용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14	1,398,940	47
772	78누8333	이*균	서울특별시 관악구	4	939,640	47
773	816누4226	팽*식	서울특별시 동작구	7	696,140	47
774	82너1296	QUA**NG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	648,750	47
775	87주7670	이*화	서울특별시 중구	8	380,000	47
776	91소7329	이*미	서울특별시 광진구	2	693,830	47
777	97도8646	권*록	경기도 안산시	5	304,860	47
778	경기84고8416	김*규	서울특별시 동작구	3	1,238,400	47
779	40어2906	이*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9	625,890	47
780	45수6156	임*민	서울특별시 은평구	8	348,800	47
781	47수3567	문*욱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10	466,070	47
782	199다5158	진*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8	367,210	47
783	19노1000	배*진	경기도 동두천시	7	330,640	47

등록연번	차량번호	성 명	기본 주소	과태료체납 건수	과태료 금액	발송회차
784	19도3600	박*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4	300,080	47
785	19모9165	강*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1	632,400	47
786	19오9079	JIN**HE	경기도 시흥시	3	549,140	47
787	201머9885	유*찬	서울특별시 강서구	8	342,080	47
788	202무6418	안*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7	321,000	47
789	205오3098	JIN**NG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2	846,690	47
790	20거2851	강*민	서울특별시 양천구	5	319,280	47
791	20로5727	송순**송순	서울특별시 중구	1	948,600	47
792	35마1022	김*숙	서울특별시 송파구	5	305,500	47
793	35오0477	권*영	서울특별시 광진구	1	646,800	47
794	360로9979	JIN**HU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12	517,990	47
795	362가5788	김*곤	서울특별시 광진구	2	720,090	47
796	367도1440	BAZ**AT	경기도 여주시	6	305,280	47
797	36고2335	김*경	서울특별시 중랑구	6	326,220	47
798	36로7063	소*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1	646,800	47
799	36보0702	이*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9	407,120	47
800	36수7140	신*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1	632,400	47
801	경기88배3459	이*수	경기도 남양주시	4	300,480	47
802	경기98바9256	정*헌	경기도 부천시	11	504,260	47
803	서울31바8519	김*연	서울특별시 강서구	3	904,960	47
804	서울81배5798	김*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19	814,000	47
805	서울85자5794	정*환	서울특별시 양천구	7	335,440	47
806	183누2692	강*일	경기도 의정부시	2	501,650	47
807	26조8544	이*경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1	639,600	47
808	32보8821	주식회**도비	경기도 수원시	5	317,520	47
809	33보4535	(주)**기획	경기도 파주시	7	363,860	47
810	35버0457	주식회**이텍	인천광역시 중구	8	395,360	47
811	362너4352	박*미	서울특별시 양천구	9	391,440	47
812	49두0744	권*하	서울특별시 양천구	7	578,530	47

등록연번	차량번호	성 명	기본 주소	과태료체납 건수	과태료 금액	발송회차
813	53머2496	윤*규	서울특별시 양천구	12	327,710	47
814	54주2975	한*구	경기도 수원시	4	310,560	47
815	62가4796	고*석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1	639,600	47
816	63두7647	이*정	경기도 시흥시	9	400,560	47
817	64오6496	박철**박철	경기도 부천시	5	342,160	47
818	71보2691	박*도	경상북도 구미시	5	316,900	47
819	78고7084	CAO**AN	경기도 시흥시	12	675,000	47
820	80로2823	전*은	경상북도 안동시	2	1,667,400	47
821	81부1570	김*길	경기도 수원시	5	306,780	47
822	07조2049	유*자	경기도 고양시	6	301,920	47
823	20머3768	황*웅	서울특별시 중랑구	2	688,000	47
824	20무2000	CHO**AN	서울특별시 용산구	9	407,140	47
825	20우8899	문*철	서울특별시 용산구	7	934,000	47
826	20조2444	LI **HU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4	439,500	47
827	210가7491	이*우	서울특별시 강서구	6	1,246,040	47
828	214어1548	채*기	서울특별시 관악구	1	632,400	47
829	36우2688	염*경	세종특별자치시 보듬3로	16	2,019,680	47
830	371더6488	하*원	인천광역시 중구	8	429,900	47
831	374서6647	정*호	서울특별시 관악구	1	632,400	47
832	377거2302	고*성	경기도 수원시	1	959,400	47
833	377조1860	하*민	서울특별시 관악구	2	811,830	47
834	37가0123	이*늘	서울특별시 강서구	8	2,900,620	47
835	37두3588	유**녀	경기도 고양시	4	1,082,210	47
836	37러0917	이*윤	서울특별시 용산구	1	311,480	47
837	37마9330	김*천	서울특별시 강서구	6	320,360	47
838	37보5120	권*식	서울특별시 마포구	1	646,800	47
839	37수4230	박*준	서울특별시 중랑구	7	343,120	47
840	서울81배9664	안*진	서울특별시 중랑구	3	725,840	47
841	서울82마6746	박*구	서울특별시 성동구	1	661,200	47

등록연번	차량번호	성 명	기본 주소	과태료체납 건수	과태료 금액	발송회차
842	서울85더7394	김*수	서울특별시 구로구	1	767,410	47
843	서울85자2958	이*권	서울특별시 성동구	10	436,960	47
844	서울86자3881	오*동	서울특별시 중구	8	380,700	47
845	서울98사3992	김*진	서울특별시 관악구	5	305,500	47
846	106마4834	백*호	서울특별시 관악구	5	475,660	47
847	86고1780	백*철	경기도 김포시	5	301,040	47
848	90더2925	배*숙	경기도 시흥시	7	356,080	47
849	84노9193	손*수	경기도 시흥시	6	313,280	47
850	34가4278	하*성	서울특별시 은평구	5	303,440	47
851	08가8167	황*모	경상북도 예천군	7	304,240	47
852	21부8162	이*길	경기도 안산시	4	308,160	47
853	21어1108	YIN**AN	서울특별시 구로구	7	317,420	47
854	221어7100	김*곤	서울특별시 동작구	4	584,080	47
855	225라1296	진*수	서울특별시 관악구	7	320,080	47
856	226저9222	알림마**흐징	인천광역시 중구	18	765,740	47
857	227거8006	이*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1	948,600	47
858	227조5149	나*민	서울특별시 광진구	3	786,800	47
859	380루4180	박*준	서울특별시 동작구	8	350,970	47
860	383라6167	NAN**FU	경기도 성남시	7	329,200	47
861	38구9504	윤*오	경기도 파주시	6	368,000	47
862	38누8777	이*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8	362,940	47
863	38라2970	윤*희	서울특별시 동작구	1	421,600	47
864	38어1739	MUH**MI	서울특별시 용산구	2	649,290	47
865	390라4513	김*채	서울특별시 중랑구	13	526,180	47
866	249도3061	박*혜	경기도 포천시	5	323,440	47
867	259무7838	이*우	경기도 수원시	10	495,880	47
868	26서6139	신*철	서울특별시 노원구	7	313,340	47
869	30거1364	NAN**UA	경기도 시흥시	1	970,200	47
870	397구5414	이*미	서울특별시 강서구	7	321,040	47

등록연번	차량번호	성 명	기본 주소	과태료체납 건수	과태료 금액	발송회차
871	40더5861	이*균	경기도 하남시	5	354,640	47
872	49라4697	박*성	서울특별시 동작구	5	333,520	47
873	51러5499	황*영	서울특별시 관악구	6	423,930	47
874	844구3887	유*숙	서울특별시 중랑구	3	327,760	47
875	85누8545	안*권	경기도 고양시	2	1,656,600	47
876	87나0342	박*생	서울특별시 성동구	3	1,287,980	47
877	90누4909	OZO**BI	서울특별시 용산구	12	1,231,330	47
878	90로3884	이*범	경기도 의정부시	7	301,840	47
879	91오8575	천*현	경상남도 사천시	9	505,520	47
880	92나5947	김*홍	서울특별시 광진구	1	527,000	47
881	99가4403	최*화	서울특별시 중랑구	1	639,600	47
882	서울32자2332	전*식	서울특별시 강서구	6	384,800	47
883	서울38아5648	권*철	서울특별시 양천구	6	370,070	47
884	22더4484	이*업	인천광역시 남동구	7	325,840	47
885	22두8621	박*형	서울특별시 용산구	1	639,600	47
886	22라4747	박*상	서울특별시 강서구	14	532,400	47
887	22머9900	박*섭	서울특별시 강서구	6	688,110	47
888	230노5384	신*호	충청북도 진천군	4	342,560	47
889	230더8041	ZHA**NG	서울특별시 광진구	5	818,800	47
890	230오6241	박찬**박찬	서울특별시 강동구	7	356,560	47
891	236두3731	정*수	서울특별시 관악구	1	639,600	47
892	23누4260	CHU**UI	서울특별시 용산구	1	632,400	47
893	23로2140	방*랑	서울특별시 광진구	8	316,380	47
894	23마2116	김*주	서울특별시 금천구	8	348,320	47
895	397더7268	이*진	서울특별시 금천구	6	367,520	47
896	39너7256	WUY**AN	인천광역시 부평구	6	327,840	47
897	39노9706	ZHA**XI	서울특별시 금천구	1	1,002,600	47
898	39노9917	조*현	서울특별시 강서구	5	331,600	47
899	39보9723	조*화	서울특별시 마포구	1	646,800	47

등록연번	차량번호	성 명	기본 주소	과태료체납 건수	과태료 금액	발송회차
900	39수4647	서*석	서울특별시 중구	9	422,640	47
901	40너3681	송*경	서울특별시 성동구	4	344,590	47
902	40도7716	정*훈	경기도 남양주시	6	895,250	47
903	40모2111	YUM**AN	서울특별시 동작구	7	316,240	47
904	40서0701	함*훈	인천광역시 중구	6	344,480	47
905	40우4548	박*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1	354,690	47
906	57루2448	SON** I	경상북도 청도군	1	639,600	47
907	57소6829	임*승	서울특별시 금천구	2	302,600	47
908	62무4379	박*주	서울특별시 관악구	8	346,100	47
909	62우3299	이*하	서울특별시 마포구	9	398,560	47
910	09너6978	도*자	서울특별시 강서구	5	838,000	47
911	100라7070	노*현	서울특별시 관악구	11	482,480	47
912	109고2297	전*희	서울특별시 마포구	10	1,369,740	47
913	10주3431	임*섭	서울특별시 용산구	7	309,980	47
914	112저4553	박*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	1,016,200	47
915	11누4888	박*순	서울특별시 금천구	13	532,340	47
916	122버5961	심*규	서울특별시 중구	4	327,960	47
917	81누8530	조*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8	645,080	47
918	81소7764	윤*용	서울특별시 성동구	5	302,450	47
919	82부6517	정*하	서울특별시 강서구	9	746,120	47
920	83무2604	심*수	경기도 화성시	6	331,200	47
921	840러3381	이*주	서울특별시 용산구	3	308,560	47
922	84누0898	김*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7	339,760	47
923	86보0762	김*길	서울특별시 금천구	10	517,440	47
924	87나1145	이*민	서울특별시 강서구	2	341,210	47
925	87조7623	한*동	서울특별시 관악구	7	304,240	47
926	91모8227	김*영	경기도 남양주시	7	323,020	47
927	92고0199	임*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7	342,160	47
928	92보2372	최*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8	352,160	47

등록연번	차량번호	성 명	기본 주소	과태료체납 건수	과태료 금액	발송회차
929	23머6516	명*희	경기도 의정부시	5	306,780	47
930	23버2775	NGU**AN	경상북도 경산시	14	660,660	47
931	23수8699	김*희	충청남도 아산시	2	667,830	47
932	240다3243	QUA**NG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6	1,253,600	47
933	242부8347	오*택	서울특별시 광진구	7	508,910	47
934	243무8045	송*현	서울특별시 강서구	1	948,600	47
935	244로9902	정*용	서울특별시 금천구	7	313,840	47
936	244소4974	박*희	서울특별시 양천구	10	470,080	47
937	248누2546	김*윤	서울특별시 강서구	1	616,590	47
938	24거6334	권*환	서울특별시 금천구	1	639,600	47
939	40우7260	여*민	경기도 광주시	9	382,800	47
940	40조9313	서*수	경기도 고양시	6	306,420	47
941	41고2561	이*민	서울특별시 관악구	1	630,630	47
942	41고8742	윤*분	서울특별시 중랑구	7	301,840	47
943	41두1821	오*상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1	970,200	47
944	42구3807	권*성	서울특별시 용산구	3	832,060	47
945	42수5947	정*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1	662,970	47
946	43러1016	송*종	서울특별시 금천구	2	1,024,600	47
947	43버3056	최*영	인천광역시 중구	5	332,080	47
948	132가9951	조*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	1,027,480	47
949	135다6704	MYA**OJ	서울특별시 중랑구	6	854,240	47
950	13구7292	최*화	서울특별시 강서구	4	307,200	47
951	145노6976	예수사**진)	서울특별시 관악구	2	651,810	47
952	14누4806	이*범	서울특별시 성동구	24	2,110,880	47
953	151머3324	지*원	서울특별시 양천구	7	332,080	47
954	158도9603	박*준	충청북도 음성군	10	333,820	47
955	15더8039	김*구	경기도 군포시	6	304,320	47
956	15도9868	박*우	서울특별시 동작구	6	302,880	47
957	164머7412	CUI**NG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1	607,200	47

등록연번	차량번호	성 명	기본 주소	과태료체납 건수	과태료 금액	발송회차
958	16두3920	안*준	서울특별시 금천구	3	758,000	47
959	172두3921	전*진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10	949,560	47
960	17머6885	LIG**NG	경기도 부천시	7	322,960	47
961	198서8475	NAN**NG	서울특별시 광진구	6	364,160	47
962	19버4459	김*식	인천광역시 서구	6	339,360	47
963	94어0704	김*배	서울특별시 중랑구	8	367,520	47
964	95저3364	김*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2	998,430	47
965	96부4665	오*익	서울특별시 관악구	2	644,060	47
966	서울34머3699	박*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1	646,800	47
967	12조4115	김*곤	서울특별시 양천구	8	518,210	47
968	299거8825	임*영	서울특별시 강서구	1	646,800	47
969	53무0256	구*원	서울특별시 중랑구	1	449,510	47
970	323더4837	PIA**UO	서울특별시 구로구	13	643,920	47
971	83서4769	김*두	충청북도 청주시	4	539,040	47
972	14서3434	주*경	서울특별시 양천구	2	462,850	47
973	33모0284	NOR**AT	경기도 광주시	16	714,960	47
974	84오1602	이*현	서울특별시 동작구	4	1,103,330	47
975	156부5331	박*희	서울특별시 용산구	8	354,080	47
976	89러8201	전*례	서울특별시 용산구	25	1,103,750	47
977	164머7418	NAN**JI	서울특별시 용산구	1	948,600	47
978	08노2383	JIN**NG	경기도 시흥시	9	402,540	47
979	08누5676	이*석	서울특별시 강서구	3	980,130	47
980	08도3341	임*용	서울특별시 금천구	7	318,640	47
981	08루0860	김*근	경기도 광명시	8	387,200	47
982	24다2293	박*희	서울특별시 성동구	4	424,840	47
983	24라6600	이*정	경기도 광주시	8	435,520	47
984	24모1786	신율**신율	서울특별시 강동구	2	1,031,230	47
985	24주2499	김*경	서울특별시 동작구	8	384,800	47
986	251로4589	김*배	경기도 양주시	7	324,880	47

등록연번	차량번호	성 명	기본 주소	과태료체납 건수	과태료 금액	발송회차
987	254노5997	이*숙	서울특별시 도봉구	8	427,050	47
988	256구9473	신*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6	883,720	47
989	257주1636	강*모	서울특별시 중랑구	9	349,380	47
990	25두0505	엽*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1	959,400	47
991	25마3291	서*기	경기도 고양시	5	336,480	47
992	25머9914	배*일	서울특별시 강서구	2	891,420	47
993	45구8192	정*호	서울특별시 관악구	3	735,920	47
994	45더1761	이*현	경상북도 영주시	17	498,500	47
995	45더2081	나*식	경기도 고양시	3	305,840	47
996	45머0186	YU **AN	경기도 고양시	1	959,400	47
997	45저0276	강*하	서울특별시 용산구	3	1,039,520	47
998	46머1966	박*희	경기도 고양시	8	428,700	47
999	46모4616	추*민	경기도 안양시	10	443,680	47
1000	46무2530	김*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1	646,800	47
1001	46버2051	백*수	서울특별시 중랑구	37	2,097,600	47
1002	58부4889	전*학	인천광역시 부평구	5	313,520	47
1003	58오5100	BAK**AA	인천광역시 부평구	6	326,950	47
1004	59버4539	김*범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6	307,680	47
1005	59버8458	김*진	충청북도 음성군	8	413,120	47
1006	60구1638	김*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6	799,490	47
1007	60무5720	최*권	서울특별시 마포구	7	308,080	47
1008	19부9150	다**밋	서울특별시 마포구	2	1,617,000	47
1009	206거8917	김*채	서울특별시 중랑구	1	959,400	47
1010	20어3877	NOR**LI	경기도 성남시	15	726,820	47
1011	21거0780	장*원	서울특별시 관악구	5	417,740	47
1012	223누2639	ZHA**RI	서울특별시 구로구	9	323,550	47
1013	22더5584	박*관	서울특별시 구로구	5	316,880	47
1014	22모4196	임*운	서울특별시 동작구	11	364,090	47
1015	234두4699	이*빈	경기도 김포시	10	440,800	47

등록연번	차량번호	성 명	기본 주소	과태료체납 건수	과태료 금액	발송회차
1016	23노8748	김*숙	서울특별시 중랑구	5	476,610	47
1017	23모4924	최*희	서울특별시 중구	3	301,610	47
1018	244나3099	이*진	서울특별시 성동구	3	817,840	47
1019	24고8062	최훈**최훈	서울특별시 관악구	2	727,870	47
1020	24다6337	최*원	서울특별시 관악구	1	632,400	47
1021	260루3398	서*주	인천광역시 중구	8	315,620	47
1022	276고2242	박*엽	서울특별시 강서구	23	1,481,490	47
1023	27저0550	양*혁	서울특별시 송파구	2	1,617,000	47
1024	28더7192	윤*현	서울특별시 강서구	3	738,290	47
1025	91러0971	김*형	서울특별시 중랑구	4	475,030	47
1026	187마9883	ZHE**FU	경상남도 밀양시	14	609,440	47
1027	95버1201	윤*구	경기도 남양주시	5	331,700	47
1028	서울34라2312	김*석	서울특별시 광진구	2	977,730	47
1029	37보6256	최*선	경기도 부천시	5	312,400	47
1030	396수3149	신*현	서울특별시 관악구	10	1,062,700	47
1031	230우5384	신*철	서울특별시 중랑구	4	330,240	47
1032	252오6263	LIU**JI	서울특별시 광진구	1	632,400	47
1033	60구1658	이*주	경기도 평택시	5	389,520	47
1034	106서4195	임솔**임솔	서울특별시 마포구	7	572,080	47
1035	266버3612	송*민	서울특별시 강서구	1	632,400	47
1036	114라6344	강산**강산	서울특별시 용산구	11	510,900	47
1037	281노6777	BAB**LI	서울특별시 중구	6	426,830	47
1038	64소3635	조*안	서울특별시 중구	1	632,400	47
1039	09가7549	이준**이준	경기도 의정부시	5	304,880	47
1040	09너9332	박*우	서울특별시 관악구	7	1,384,960	47
1041	09다2780	김*분	서울특별시 동작구	1	632,400	47
1042	09다7982	박*예	서울특별시 동작구	9	450,230	47
1043	09오8973	고*설	인천광역시 연수구	6	324,000	47
1044	101소3268	ZHE**WU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7	315,280	47

등록연번	차량번호	성 명	기본 주소	과태료체납 건수	과태료 금액	발송회차
1045	101어6383	양*걸	서울특별시 동작구	3	1,068,920	47
1046	103고6350	정*규	서울특별시 금천구	8	399,600	47
1047	104두2195	김*순	경기도 양평군	8	309,260	47
1048	107거3911	김*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6	300,880	47
1049	107라4599	김*란	서울특별시 중랑구	3	362,280	47
1050	108부6887	김*석	경상북도 포항시	7	355,120	47
1051	10가3607	임*택	서울특별시 마포구	1	639,600	47
1052	10구7655	정*공	광주광역시 북구	7	386,160	47
1053	25서7517	박*현	서울특별시 중랑구	14	623,360	47
1054	263서5068	문*순	서울특별시 용산구	12	522,240	47
1055	265서5063	소*준	서울특별시 강서구	6	305,280	47
1056	269서4123	황*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7	313,360	47
1057	26고3243	김*준	서울특별시 마포구	7	322,960	47
1058	26고8932	차*옥	서울특별시 강서구	7	346,480	47
1059	26나6479	송*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3	714,820	47
1060	26모6854	김*중	경기도 이천시	6	320,160	47
1061	26무3303	LIA**NG	서울특별시 성북구	7	300,860	47
1062	270라6174	엄*진	서울특별시 강서구	1	639,600	47
1063	271수2372	임*숙	광주광역시 동구	6	305,280	47
1064	47루0465	김*철	서울특별시 금천구	5	1,158,040	47
1065	47부1579	NAB**LI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8	355,620	47
1066	47소2222	김*환	서울특별시 광진구	4	1,140,700	47
1067	48다0577	BIA**UO	서울특별시 금천구	3	1,054,280	47
1068	48라2200	NEI**ID	서울특별시 용산구	2	1,750,200	47
1069	48모0519	HUA**ZE	서울특별시 구로구	10	533,280	47
1070	48보7801	장*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9	390,000	47
1071	48부8136	김*규	인천광역시 서구	1	639,600	47
1072	48주9245	임*걸	서울특별시 관악구	3	727,760	47
1073	49너3100	김*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5	301,720	47

등록연번	차량번호	성 명	기본 주소	과태료체납 건수	과태료 금액	발송회차
1074	49로8327	고*성	경기도 수원시	1	366,930	47
1075	61보3549	김*찬	서울특별시 강서구	2	677,440	47
1076	61부2865	김*희	서울특별시 용산구	8	929,250	47
1077	61소6597	PHA**UY	충청남도 천안시	14	698,220	47
1078	61소9557	JIN**NG	경기도 부천시	7	335,920	47
1079	62고3639	김*원	서울특별시 관악구	9	914,190	47
1080	63너2406	양*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2	419,200	47
1081	63서6543	서*환	서울특별시 강서구	1	939,110	47
1082	63수8117	김*진	서울특별시 강서구	4	788,160	47
1083	802머8335	배*석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6	442,530	47
1084	805두9184	이*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7	728,240	47
1085	808도7468	장*수	경기도 안산시	4	307,580	47
1086	808보5808	최*환	서울특별시 강북구	7	335,440	47
1087	80다0258	배*환	인천광역시 서구	4	303,360	47
1088	291어3810	JIN**UN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7	866,550	47
1089	31구0209	BAI**NG	서울특별시 금천구	4	1,220,210	47
1090	32마0993	최*호	서울특별시 관악구	5	872,190	47
1091	32오4658	천*옥	경기도 광주시	6	301,920	47
1092	331루3317	김*일	경기도 부천시	4	428,800	47
1093	33가7791	이*희	서울특별시 광진구	1	991,800	47
1094	33소0355	고*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2	525,470	47
1095	34조4856	CUI**HE	서울특별시 구로구	37	1,544,730	47
1096	35구5399	구*환	경기도 남양주시	5	305,840	47
1097	35버0906	김*수	충청북도 충주시	7	320,080	47
1098	36루5213	박*숙	서울특별시 금천구	7	315,760	47
1099	370주9821	김*진	서울특별시 중랑구	5	973,610	47
1100	37소0132	박*훈	서울특별시 강서구	3	844,250	47
1101	397러2773	신*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1	646,800	47
1102	39루7834	이*연	서울특별시 성동구	3	766,260	47

등록연번	차량번호	성 명	기본 주소	과태료체납 건수	과태료 금액	발송회차
1103	41우6722	조*섭	경기도 구리시	4	346,400	47
1104	47저6823	김*애	서울특별시 마포구	1	323,400	47
1105	176조6893	신*섭	서울특별시 광진구	2	1,028,440	47
1106	19러0542	이*숙	서울특별시 성동구	8	976,960	47
1107	32도7097	성*훈	서울특별시 중구	9	362,460	47
1108	33라7705	황**욱	서울특별시 중랑구	1	319,800	47
1109	11거7643	구*근	서울특별시 강서구	1	339,570	47
1110	136저3635	김*성	경기도 시흥시	5	361,100	47
1111	151더6620	이*민	경기도 안양시	9	387,600	47
1112	50오3324	황*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8	1,132,640	47
1113	55수7454	장*일	서울특별시 강서구	1	632,400	47
1114	56라3161	김*민	경기도 양주시	6	305,860	47
1115	110가6664	MAD**AR	충청북도 충주시	11	446,300	47
1116	110노5916	박*애	서울특별시 중랑구	8	554,400	47
1117	110머8136	이*영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1	911,430	47
1118	111구8845	LI **NG	서울특별시 중구	7	765,800	47
1119	113러4692	PAK**CH	서울특별시 중구	1	307,410	47
1120	115너6169	DOS**IY	경기도 김포시	5	306,160	47
1121	115서4218	ZHA**XU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5	451,490	47
1122	120나7950	김*준	서울특별시 광진구	12	484,140	47
1123	120도9738	최*철	서울특별시 마포구	9	402,960	47
1124	276더8828	SHE**AN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7	397,680	47
1125	27거0880	신*수	인천광역시 서구	7	322,960	47
1126	27부5969	JIN**UA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1	646,800	47
1127	27오8446	최*정	서울특별시 금천구	6	303,200	47
1128	282저5203	신*래	경기도 하남시	5	407,860	47
1129	286두4695	JIN**HU	서울특별시 성동구	5	307,600	47
1130	28고1040	박*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1	668,400	47
1131	28두2329	최*성	서울특별시 중랑구	2	813,600	47

등록연번	차량번호	성 명	기본 주소	과태료체납 건수	과태료 금액	발송회차
1132	28오4511	곽*균	서울특별시 마포구	5	1,271,880	47
1133	28오8401	노*정	경기도 파주시	7	308,080	47
1134	49루8376	이*용	서울특별시 중랑구	1	632,400	47
1135	49우1159	MIR**ZI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7	320,080	47
1136	50다4085	김*희	서울특별시 강서구	2	316,460	47
1137	50도8413	박*훈	서울특별시 중랑구	7	341,200	47
1138	50어0558	양*경	경기도 포천시	6	836,460	47
1139	51두2810	김*수	서울특별시 강서구	2	1,005,400	47
1140	51버3946	김*수	서울특별시 광진구	1	646,800	47
1141	51부4123	배*정	인천광역시 남동구	1	805,250	47
1142	64다7737	박*호	경기도 파주시	10	426,880	47
1143	64라8579	송*석	서울특별시 금천구	7	320,080	47
1144	64모2328	홍*영	서울특별시 성동구	2	362,920	47
1145	64모2648	박*섭	서울특별시 용산구	1	322,980	47
1146	64어5111	김*형	서울특별시 성동구	1	915,190	47
1147	65구2599	하*호	충청남도 당진시	29	1,364,180	47
1148	80소8458	박*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1	959,400	47
1149	80우6450	장*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11	561,520	47
1150	812두8303	김*진	서울특별시 광진구	9	345,760	47
1151	814서2274	김*현	서울특별시 중구	1	639,600	47
1152	81거2421	서*철	서울특별시 중랑구	3	307,550	47
1153	81나7567	김*용	서울특별시 동작구	3	795,920	47
1154	81누0947	김*파	충청남도 당진시	5	303,280	47
1155	40라0835	박*수	울산광역시 중구	8	456,360	47
1156	40조5770	최*산	경기도 김포시	3	312,560	47
1157	41모0417	반*용	서울특별시 송파구	6	300,740	47
1158	42두9964	조*환	서울특별시 성동구	5	339,090	47
1159	43저8655	배*우	서울특별시 강남구	6	346,150	47
1160	45누2911	TAH**NG	대전광역시 동구	6	326,020	47

등록연번	차량번호	성 명	기본 주소	과태료체납 건수	과태료 금액	발송회차
1161	46가0955	천*섭	경기도 구리시	5	301,930	47
1162	48라0827	한*화	서울특별시 마포구	1	392,400	47
1163	49저9447	강*배	서울특별시 광진구	10	469,600	47
1164	51가0755	이*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8	1,237,030	47
1165	51서0666	LIY**EN	서울특별시 금천구	10	379,280	47
1166	52조3709	배*이	서울특별시 강서구	1	632,400	47
1167	53루5354	조*농	서울특별시 관악구	1	632,400	47
1168	53우4208	이*훈	서울특별시 관악구	2	709,600	47
1169	55모1008	김*중	서울특별시 강서구	1	521,250	47
1170	55서5974	이*선	서울특별시 용산구	7	342,640	47
1171	56누4463	손*달	서울특별시 동작구	1	959,400	47
1172	56로8673	김*람	서울특별시 마포구	4	1,151,160	47
1173	58머6636	문*환	서울특별시 용산구	1	646,800	47
1174	61서3936	채*병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7	320,560	47
1175	67수8594	김*수	전라남도 강진군	3	301,040	47
1176	72더8947	AHM**IM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7	401,880	47
1177	80로4890	김*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1	646,800	47
1178	81다5260	전*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7	342,640	47
1179	81러8875	서광종**주)	서울특별시 종로구	1	639,600	47
1180	822두3008	(주)**세기	서울특별시 은평구	5	839,920	47
1181	82너3071	주식회**이클	서울특별시 마포구	8	347,360	47
1182	83마8612	(주)**건설	서울특별시 강서구	1	970,200	47
1183	84루4327	황*철	서울특별시 도봉구	6	391,040	47
1184	84무4758	서광종**주)	서울특별시 종로구	1	639,600	47
1185	84오8024	이*우	경기도 광주시	1	639,600	47
1186	84우3471	우*아	서울특별시 중랑구	6	305,760	47
1187	855라3734	함*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2	1,045,720	47
1188	11나1810	오*석	서울특별시 강서구	8	380,270	47
1189	11조4572	문*민	서울특별시 중랑구	3	1,431,060	47

등록연번	차량번호	성 명	기본 주소	과태료체납 건수	과태료 금액	발송회차
1190	161누9185	김*민	서울특별시 성동구	28	2,440,950	47
1191	172마7414	ABD**AY	서울특별시 중구	2	1,116,280	47
1192	229보6026	정*성	서울특별시 동작구	3	1,150,760	47
1193	27수6856	이*숙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4	300,760	47
1194	281루3367	케이에**회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5	392,000	47
1195	53주5130	주식회**에스	서울특별시 강남구	3	1,069,160	47
1196	55더7545	주식회**토건	서울특별시 서초구	7	402,380	47
1197	63거1008	김*웅	서울특별시 서초구	6	849,920	47
1198	66다8656	주식회**도현	인천광역시 연수구	6	348,960	47
1199	76러5876	LIX**IN	서울특별시 강남구	4	305,200	47
1200	83우7464	장*범	경기도 성남시	4	327,840	47
1201	서울34아2480	시티택**주)	서울특별시 서초구	1	639,600	47
1202	서울37바2075	시티택**주)	서울특별시 서초구	1	639,600	47
1203	서울98사2810	(주)**틱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7	387,160	47
1204	63구9746	장*성	서울특별시 은평구	8	407,840	47
1205	63너2599	김*진	서울특별시 은평구	2	702,400	47
1206	63너7617	조*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1	639,600	47
1207	63도7777	윤*원	서울특별시 강북구	6	310,080	47
1208	63러0188	신*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1	632,400	47
1209	63로0505	배*선	서울특별시 은평구	3	582,640	47
1210	70더9871	방*철	서울특별시 도봉구	5	1,005,760	47
1211	70두5616	유*희	서울특별시 구로구	4	426,580	47
1212	70두7502	LIG**NG	서울특별시 구로구	5	867,800	47
1213	70로7701	주식회**플컴	서울특별시 서초구	1	632,400	47
1214	70로9030	(주)**프씨	서울특별시 송파구	3	734,810	47
1215	70소4352	이*길	서울특별시 구로구	6	369,000	47
1216	70소8230	김*일	경기도 오산시	22	1,415,000	47
1217	70어3526	박*기	경기도 하남시	6	356,400	47
1218	80무7943	김*님	인천광역시 부평구	4	320,480	47

등록연번	차량번호	성 명	기본 주소	과태료체납 건수	과태료 금액	발송회차
1219	80버9685	조*범	서울특별시 성북구	2	351,430	47
1220	80보0459	이*훈	서울특별시 강북구	5	512,980	47
1221	80부0528	JIN**UN	서울특별시 구로구	1	455,970	47
1222	80서8238	원*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4	307,940	47
1223	80소9662	주식회**베어	서울특별시 구로구	1	632,400	47
1224	80수5708	박*훈	인천광역시 계양구	7	663,120	47
1225	80수5999	유*우	서울특별시 강동구	2	1,012,840	47
1226	80어8876	박*채	서울특별시 강남구	1	639,600	47
1227	80오3284	길*현	서울특별시 강북구	5	300,100	47
1228	80오9991	이현**이현	서울특별시 양천구	6	353,120	47
1229	84어8702	문*학	경기도 고양시	1	639,600	47
1230	84오4764	윤*성	경기도 부천시	6	305,760	47
1231	84오8716	주식회**플랜	서울특별시 서초구	6	600,800	47
1232	84우2672	동흥개**주)	서울특별시 서초구	2	667,560	47
1233	41부3062	김*민	경기도 연천군	5	305,840	47
1234	41소8545	트러스**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6	1,171,430	47
1235	41수8915	김*철	경기도 평택시	6	303,760	47
1236	41오6442	한*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7	330,160	47
1237	41우0515	곽*진	서울특별시 관악구	34	1,603,870	47
1238	41우9697	문*연	서울특별시 강동구	7	301,360	47
1239	41주4461	주식회**유통	서울특별시 성북구	1	632,400	47
1240	42고0667	서*학	서울특별시 강남구	1	646,800	47
1241	49수1836	이*현	서울특별시 종로구	1	697,200	47
1242	49우3163	주식회**오티	서울특별시 마포구	1	632,400	47
1243	49우3481	주)에**션즈	서울특별시 강남구	1	632,400	47
1244	49저3939	(주)**엠씨	서울특별시 강남구	4	304,920	47
1245	49조8711	(주)**이션	서울특별시 강서구	1	970,200	47
1246	49하6461	주식회**니아	서울특별시 마포구	1	632,400	47
1247	49호7513	롯데렌**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1	646,800	47

등록연번	차량번호	성 명	기본 주소	과태료체납 건수	과태료 금액	발송회차
1248	50가7901	이*석	서울특별시 은평구	3	327,760	47
1249	50거3092	이*찬	전라남도 순천시	16	702,400	47
1250	50고2522	고*호	인천광역시 강화군	4	378,560	47
1251	50고9154	신*만	서울특별시 강북구	6	302,880	47
1252	50구5620	김*희	서울특별시 중랑구	9	462,880	47
1253	56누0569	(주)**리아	서울특별시 강남구	7	1,253,990	47
1254	56누4255	(주)**련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2	650,550	47
1255	56두6762	주식회**쥬얼	서울특별시 강서구	2	308,710	47
1256	56라1351	김*진	서울특별시 도봉구	5	465,680	47
1257	56라2053	(주)**모토	서울특별시 용산구	2	1,599,000	47
1258	56라2717	(주)**건설	서울특별시 관악구	2	1,311,840	47
1259	64무3307	김*만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14	599,360	47
1260	64소0370	김*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1	632,400	47
1261	73조6058	LIH**NG	서울특별시 구로구	5	342,100	47
1262	73주3672	PEI**AO	서울특별시 구로구	5	325,360	47
1263	73주8129	(주)**크린	서울특별시 은평구	5	897,300	47
1264	81어9782	김*철	서울특별시 은평구	6	314,400	47
1265	81오1160	삼이홀**-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1	646,800	47
1266	81우2313	(주)**너스	서울특별시 마포구	2	594,700	47
1267	81우2913	신*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2	324,150	47
1268	81저4594	엄*식	서울특별시 도봉구	1	646,800	47
1269	81조0805	서*춘	경기도 광명시	5	308,720	47
1270	81주4560	구*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4	2,693,060	47
1271	820가5154	이*민	서울특별시 종로구	8	340,030	47
1272	820마2640	주식회**리아	서울특별시 강남구	2	684,160	47
1273	820저6682	삼일건**주)	경기도 시흥시	9	400,560	47
1274	822너8953	조*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7	317,200	47
1275	86서5673	정*영	서울특별시 노원구	1	948,600	47
1276	86어3841	이*남	서울특별시 서초구	6	319,860	47

등록연번	차량번호	성 명	기본 주소	과태료체납 건수	과태료 금액	발송회차
1277	86오2034	유혁**유혁	인천광역시 계양구	7	321,520	47
1278	86우0675	협동조**밥통	경기도 안산시	6	301,440	47
1279	86저9975	주식회**대산	경기도 김포시	5	302,480	47
1280	86주6404	김*석	경기도 성남시	15	738,480	47
1281	87너8275	극동자**용*	서울특별시 성동구	8	354,560	47
1282	87노0935	최*헌	서울특별시 강동구	1	632,400	47
1283	03로1784	ZHE**NG	서울특별시 송파구	2	1,003,960	47
1284	03루8170	GRO**ES	경기도 평택시	6	325,200	47
1285	03머3302	주식회**시스	서울특별시 중구	5	358,000	47
1286	03모8027	김*근	서울특별시 강서구	9	391,920	47
1287	03무9556	이*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1	632,400	47
1288	03보2431	이*준	서울특별시 광진구	7	314,420	47
1289	03보3823	PRO**ES	경기도 평택시	5	308,500	47
1290	03소9059	(주)**해경	경기도 남양주시	6	332,700	47
1291	03오7904	박*람	서울특별시 서초구	6	850,750	47
1292	05두7347	(주)**테크	서울특별시 강남구	7	353,200	47
1293	05두9311	이*진	경기도 파주시	5	333,040	47
1294	111다3426	(주)**터카	서울특별시 강남구	3	430,280	47
1295	111도8142	주식회**뮤직	경기도 양평군	5	315,760	47
1296	111두5556	금*흠	서울특별시 강남구	1	632,400	47
1297	111모1662	박*성	서울특별시 도봉구	4	372,800	47
1298	111조6059	이*재	서울특별시 양천구	2	712,960	47
1299	112다5924	장*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14	608,000	47
1300	112라4733	정*영	서울특별시 양천구	1	632,400	47
1301	112로2714	이*민	서울특별시 중랑구	4	379,520	47
1302	113서4378	태한홀**회사	경기도 용인시	7	309,520	47
1303	113수1776	장*자	서울특별시 송파구	4	680,020	47
1304	144두2233	황*환	서울특별시 광진구	10	368,800	47
1305	144로7770	윤*필	서울특별시 강남구	8	867,160	47

등록연번	차량번호	성 명	기본 주소	과태료체납 건수	과태료 금액	발송회차
1306	145더5849	전*윤	서울특별시 강남구	5	319,600	47
1307	145루6867	JIN**HE	서울특별시 구로구	1	639,600	47
1308	145오4798	김*성	서울특별시 성북구	1	948,600	47
1309	146구2318	이*호	경기도 성남시	6	301,440	47
1310	146버3011	(주)**커스	서울특별시 강북구	8	344,380	47
1311	147루4285	고*정	서울특별시 강남구	2	676,000	47
1312	175노3559	지평케**주)	서울특별시 은평구	1	646,800	47
1313	175누7692	주*철	서울특별시 광진구	5	305,280	47
1314	175러8461	세기산**회사	서울특별시 금천구	2	527,140	47
1315	176저4684	주식회**트리	서울특별시 송파구	1	521,250	47
1316	177노5203	장*완	광주광역시 남구	9	444,500	47
1317	177더8218	박*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6	312,020	47
1318	177루1899	정*수	서울특별시 강남구	1	948,600	47
1319	178노6137	박*세	서울특별시 강동구	4	366,510	47
1320	서울70바9300	다우관**주)	서울특별시 서초구	9	480,300	47
1321	서울36바1910	서*기	서울특별시 은평구	1	646,800	47
1322	서울37다7062	김*희	서울특별시 성북구	1	639,600	47
1323	서울38아3415	신*식	경기도 성남시	6	341,900	47
1324	서울39거2451	권*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4	334,100	47
1325	서울3어2909	김*곤	서울특별시 은평구	2	1,599,000	47
1326	92무1856	주-한**물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	877,560	47
1327	92무2140	김*영	경기도 의정부시	7	356,560	47
1328	92무3899	이*용	경기도 안양시	7	407,380	47
1329	92버4749	이*남	충청남도 보령시	1	632,400	47
1330	92보3874	최*세	서울특별시 강북구	6	1,193,200	47
1331	92어6574	김*화	서울특별시 서초구	1	661,200	47
1332	92어6587	장*민	서울특별시 양천구	1	948,600	47
1333	92우0819	황*남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8	362,240	47
1334	92저4605	안*한	경기도 광주시	8	766,080	47

등록연번	차량번호	성 명	기본 주소	과태료체납 건수	과태료 금액	발송회차
1335	92조4832	이*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1	393,000	47
1336	93가3818	김*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8	385,760	47
1337	서울40바1153	(주)**여객	서울특별시 동작구	1	668,400	47
1338	서울44나6350	이*규	서울특별시 은평구	3	406,120	47
1339	서울44나6574	이*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3	788,400	47
1340	서울44도9244	김*기	서울특별시 양천구	1	948,600	47
1341	서울48모7300	김선국**애)	서울특별시 구로구	1	948,600	47
1342	서울55너3200	유)동**건설	서울특별시 강서구	1	959,400	47
1343	서울55다5882	(주)**건영	서울특별시 강남구	2	1,065,840	47
1344	서울55더4512	임*환	서울특별시 송파구	3	899,580	47
1345	서울56다4176	주-삼**설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1	668,400	47
1346	08도1573	(주)**더스	서울특별시 서초구	2	656,670	47
1347	08도7850	주식회**고향	서울특별시 광진구	2	1,591,800	47
1348	08라6000	(주)**에프	서울특별시 강남구	1	632,400	47
1349	125호3506	주식회**트카	서울특별시 강서구	2	697,600	47
1350	125호3566	주식회**트카	서울특별시 강서구	2	676,000	47
1351	125호6067	주식회**터카	서울특별시 송파구	4	324,170	47
1352	125호7455	(주)**코아	서울특별시 광진구	1	319,800	47
1353	126더8242	주식회**까롯	서울특별시 강남구	8	926,190	47
1354	126어9674	곽*문	전라남도 고흥군	7	346,960	47
1355	127두3067	주식회**솔라	서울특별시 강북구	1	632,400	47
1356	127라8766	JIN**AN	서울특별시 구로구	3	1,049,960	47
1357	127루1844	최*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8	345,440	47
1358	155가3488	조란**조란	서울특별시 관악구	7	323,440	47
1359	155너1268	다흠(**주)	서울특별시 송파구	4	637,830	47
1360	156오8772	양*희	경기도 군포시	15	643,500	47
1361	157구1561	고*현	서울특별시 마포구	6	308,160	47
1362	157마5136	(주)**먼트	서울특별시 강남구	2	648,570	47
1363	157주2756	(주)**물산	충청남도 예산군	6	438,880	47

등록연번	차량번호	성 명	기본 주소	과태료체납 건수	과태료 금액	발송회차
1364	158너9453	주식회**스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1	306,800	47
1365	18보2659	손*임	충청남도 서산시	2	354,300	47
1366	18서7103	이*연	서울특별시 서초구	6	304,800	47
1367	18어5961	(주)**마트	서울특별시 강남구	8	348,350	47
1368	18어6325	정*철	충청남도 보령시	6	334,560	47
1369	18어6371	김*기	서울특별시 강동구	1	646,800	47
1370	18저7736	이*민	대구광역시 달성군	1	632,400	47
1371	190마9181	최*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1	959,400	47
1372	84저0498	이*익	전라남도 강진군	3	477,330	47
1373	84저5344	문*영	서울특별시 구로구	4	854,040	47
1374	84조0894	임*돈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1	668,400	47
1375	84조3996	(주)**스템	경기도 성남시	2	707,200	47
1376	84조7408	이*봉	서울특별시 구로구	1	639,600	47
1377	84조8984	이*강	서울특별시 강동구	7	304,230	47
1378	91거8937	김*수	경기도 하남시	2	353,030	47
1379	91노3050	김*철	서울특별시 송파구	1	341,120	47
1380	91누4659	배*필	서울특별시 도봉구	6	687,920	47
1381	91다5172	임*성	서울특별시 강북구	1	632,400	47
1382	91도9057	유*균	서울특별시 은평구	1	730,410	47
1383	91라4204	강*란	서울특별시 양천구	1	948,600	47
1384	91루1310	최*윤	서울특별시 은평구	1	646,800	47
1385	91마1123	송*종	서울특별시 강북구	8	326,990	47
1386	09노6675	주식회**리어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7	382,960	47
1387	09누6899	(주)**일산	경기도 용인시	5	319,600	47
1388	09더3135	김*덕	경기도 성남시	3	303,920	47
1389	09머4426	박*철	서울특별시 구로구	1	639,600	47
1390	09머8393	김*옥	경기도 의정부시	7	359,540	47
1391	09보8987	황*열	서울특별시 강남구	6	342,720	47
1392	09부4544	투어바**회사	서울특별시 중구	1	639,600	47

등록연번	차량번호	성 명	기본 주소	과태료체납 건수	과태료 금액	발송회차
1393	09부6101	주식회**꼬맹	서울특별시 관악구	1	639,600	47
1394	12무3772	오*선	서울특별시 성북구	1	300,390	47
1395	12무7268	최*경	서울특별시 서초구	1	639,600	47
1396	12보0426	권*상	서울특별시 송파구	1	582,120	47
1397	12보3240	YUY**RI	서울특별시 구로구	8	346,820	47
1398	12부5840	(사)**함께	서울특별시 노원구	8	364,640	47
1399	12수3216	유준**유준	서울특별시 관악구	9	390,960	47
1400	12수6104	임*훈	서울특별시 양천구	5	477,450	47
1401	64수0451	박*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1	646,800	47
1402	64수0952	이*은	충청남도 천안시	8	319,100	47
1403	64어0859	(주)**통신	서울특별시 구로구	5	862,960	47
1404	64오1698	이*한	서울특별시 강동구	8	351,200	47
1405	64저6451	김*수	서울특별시 송파구	2	707,200	47
1406	64저9956	김*조	서울특별시 성북구	3	305,680	47
1407	64조4267	BUI**OC	경기도 김포시	7	317,200	47
1408	72너9631	유*원	서울특별시 은평구	2	356,810	47
1409	72러2611	하*준	경기도 이천시	5	337,300	47
1410	72로9529	(주)**루션	서울특별시 강서구	2	399,520	47
1411	72루2570	SUN**ZE	서울특별시 구로구	1	948,600	47
1412	72모8300	이엑스**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8	1,134,100	47
1413	72무1571	노*란	서울특별시 강동구	1	301,840	47
1414	72보2626	심*동	경기도 성남시	8	501,400	47
1415	72보4138	BAI**AO	서울특별시 구로구	4	301,840	47
1416	72부5351	이*영	서울특별시 송파구	4	308,760	47
1417	72부9634	주식회**센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5	303,100	47
1418	81나7933	김*근	경기도 남양주시	5	323,920	47
1419	81누3962	김*화	경기도 수원시	7	310,480	47
1420	81두8113	최*찬	서울특별시 강북구	2	716,800	47
1421	81두9850	안*형	서울특별시 은평구	5	1,133,800	47

등록연번	차량번호	성 명	기본 주소	과태료체납 건수	과태료 금액	발송회차
1422	81라1901	이*근	서울특별시 은평구	11	460,030	47
1423	81라7608	이*만	서울특별시 강북구	3	1,151,030	47
1424	85소0538	김*봉	서울특별시 도봉구	5	322,380	47
1425	85어1093	주식회**너스	서울특별시 중랑구	1	981,000	47
1426	85어4993	서*원	서울특별시 은평구	7	394,480	47
1427	85어6255	주식회**케이	서울특별시 중구	1	632,400	47
1428	03주6395	데라온**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1	646,800	47
1429	109나7814	정*남	서울특별시 성북구	8	1,310,040	47
1430	109수5793	김*완	경기도 의정부시	4	344,650	47
1431	109저2035	(주)**딩스	서울특별시 마포구	1	654,000	47
1432	109호1025	초이스**주)	경기도 성남시	6	308,640	47
1433	10고8621	강*영	서울특별시 강남구	4	1,104,590	47
1434	10너0989	(주)**카사	경기도 포천시	5	303,920	47
1435	10도0707	노*우	서울특별시 도봉구	4	793,060	47
1436	10머8110	이*환	서울특별시 성북구	3	767,600	47
1437	10모3493	이*욱	충청남도 논산시	8	342,080	47
1438	10무6048	장*백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3	477,200	47
1439	10버8927	우*희	충청남도 천안시	8	395,680	47
1440	13머1403	주식회**러리	서울특별시 서초구	1	632,400	47
1441	13보6071	한*성	인천광역시 남동구	17	708,120	47
1442	13서2391	이*람	광주광역시 동구	16	653,780	47
1443	13소2233	(주)**너스	서울특별시 강남구	3	1,615,170	47
1444	13수5293	명*현	서울특별시 강북구	6	313,760	47
1445	13수8139	최*석	서울특별시 구로구	6	319,680	47
1446	13우1555	(주)**먼트	서울특별시 마포구	2	737,910	47
1447	13주5485	이*숙	서울특별시 강남구	1	344,650	47
1448	140노5319	주식회**상사	경기도 의정부시	9	401,960	47
1449	16머6411	신*용	서울특별시 은평구	6	300,000	47
1450	16머9536	조*현	충청남도 아산시	8	423,440	47

등록연번	차량번호	성 명	기본 주소	과태료체납 건수	과태료 금액	발송회차
1451	16저0459	주식회**윈드	서울특별시 강남구	8	446,080	47
1452	16저2716	장*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6	330,720	47
1453	16조6084	지*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1	632,400	47
1454	16주3305	TUR**AN	서울특별시 도봉구	10	848,360	47
1455	170가5927	임*호	서울특별시 노원구	1	959,400	47
1456	21오2208	서*석	서울특별시 서초구	5	847,120	47
1457	21조6754	박*익	서울특별시 강동구	6	325,440	47
1458	21주5669	이*늘	서울특별시 강북구	6	452,540	47
1459	223러6075	이*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1	444,510	47
1460	223로2897	YAN**NG	서울특별시 구로구	1	339,570	47
1461	223마3209	이*길	서울특별시 구로구	1	639,600	47
1462	223머1587	유*선	서울특별시 은평구	1	948,600	47
1463	223어3837	이*일	서울특별시 송파구	8	391,520	47
1464	224거7234	김*용	서울특별시 은평구	1	533,000	47
1465	224구2961	신*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2	676,000	47
1466	224더1738	박*효	서울특별시 강남구	1	660,850	47
1467	257가3971	황*식	경기도 남양주시	12	536,640	47
1468	257루8188	정*현	서울특별시 송파구	1	981,000	47
1469	257수5632	최*수	서울특별시 은평구	5	305,840	47
1470	258거1517	유*근	서울특별시 강남구	2	362,240	47
1471	258거5566	이*자	경기도 성남시	3	322,000	47
1472	258다5608	YAN**UN	서울특별시 구로구	2	1,595,400	47
1473	258무9350	장원**장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2	1,008,890	47
1474	259가9743	김*인	경기도 남양주시	3	777,490	47
1475	25거3429	이*길	충청북도 청주시	6	330,160	47
1476	25거5530	김*수	서울특별시 구로구	1	639,600	47
1477	300우5332	김*훈	전라남도 목포시	47	2,055,480	47
1478	301다7397	주식회**세대	경기도 광주시	7	373,220	47
1479	302모9525	노*섭	서울특별시 노원구	1	687,570	47

등록연번	차량번호	성 명	기본 주소	과태료체납 건수	과태료 금액	발송회차
1480	304어7112	이*복	서울특별시 구로구	7	426,000	47
1481	305가4987	김*수	서울특별시 도봉구	9	471,440	47
1482	305주1736	이*덕	서울특별시 양천구	4	437,040	47
1483	307머4884	BAY**AV	서울특별시 성북구	7	522,010	47
1484	93나6501	박*희	서울특별시 강북구	5	556,240	47
1485	93도3429	이*묵	서울특별시 양천구	5	1,866,280	47
1486	93로4649	(주)**리아	경기도 화성시	6	330,240	47
1487	93루0589	바른탑**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15	667,920	47
1488	93루0681	김*옥	인천광역시 부평구	7	307,600	47
1489	93루3955	(주)**토리	서울특별시 강서구	3	301,840	47
1490	93마5532	김*숙	서울특별시 도봉구	1	959,400	47
1491	93버0443	한*석	서울특별시 은평구	1	646,800	47
1492	93버7100	강*우	서울특별시 구로구	4	978,650	47
1493	서울71사1202	하이상**주)	서울특별시 강북구	6	336,600	47
1494	서울71사1209	하이상**주)	서울특별시 강북구	6	334,800	47
1495	서울71사1210	하이상**주)	서울특별시 강북구	7	386,300	47
1496	서울71사1214	하이상**주)	서울특별시 강북구	9	418,180	47
1497	서울72바8377	(주)**관광	서울특별시 송파구	8	942,160	47
1498	서울73바1933	이*수	서울특별시 송파구	5	348,620	47
1499	서울80배3655	강*론	서울특별시 서초구	1	632,400	47
1500	서울80배4379	윤*금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3	495,500	47
1501	서울80배6449	씨제이**주)	서울특별시 종로구	3	379,440	47
1502	서울80배6608	(주)**한진	서울특별시 중구	1	639,600	47
1503	서울80배6613	(주)**한진	서울특별시 중구	1	517,440	47
1504	서울80배6778	이*수	서울특별시 중구	15	741,840	47
1505	267수9667	양*진	경기도 고양시	9	407,280	47
1506	268고7991	김*웅	인천광역시 부평구	21	1,329,220	47
1507	268너4351	주식회**푸드	경기도 남양주시	12	655,420	47
1508	191노6123	바른탑**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12	510,240	47

등록연번	차량번호	성 명	기본 주소	과태료체납 건수	과태료 금액	발송회차
1509	233다9053	유림**유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7	317,680	47
1510	233더6628	류*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1	991,800	47
1511	233수7237	주식회**유통	경기도 남양주시	4	304,420	47
1512	234러8478	이*주	서울특별시 강동구	6	850,510	47
1513	235거5890	김*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2	674,560	47
1514	235어3019	김*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1	646,800	47
1515	236보9234	문*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2	369,080	47
1516	237보3601	황*원	경기도 하남시	9	360,180	47
1517	270로6765	이*성	경상남도 거창군	8	425,300	47
1518	270어7938	(주)**엔씨	서울특별시 강남구	7	324,880	47
1519	271나5390	주식회**이엠	서울특별시 양천구	1	646,800	47
1520	271어4700	김*호	서울특별시 구로구	6	334,080	47
1521	272고6376	김*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5	320,070	47
1522	272노7597	구*민	충청남도 천안시	7	349,620	47
1523	272저2733	이*현	경기도 고양시	4	1,120,440	47
1524	273고7990	구*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7	349,360	47
1525	275서9015	이*현	서울특별시 송파구	1	639,600	47
1526	276도2279	정*현	경기도 과천시	6	330,340	47
1527	276오5452	최*규	경기도 양주시	8	393,440	47
1528	31도3989	정*권	경기도 포천시	7	322,000	47
1529	31도4631	황*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1	959,400	47
1530	31두1544	이*현	서울특별시 구로구	7	345,520	47
1531	31두2247	김*진	서울특별시 마포구	5	356,460	47
1532	31라6065	최*석	서울특별시 송파구	1	632,400	47
1533	31모0409	이*현	인천광역시 부평구	5	301,960	47
1534	12우7726	(주)**복들	서울특별시 용산구	2	764,130	47
1535	12우8502	모*성	서울특별시 강동구	1	646,800	47
1536	15어6315	디자인**회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3	1,608,870	47
1537	15어6437	최*진	서울특별시 종로구	5	1,742,040	47

등록연번	차량번호	성 명	기본 주소	과태료체납 건수	과태료 금액	발송회차
1538	15저0367	김*건	서울특별시 동작구	1	646,800	47
1539	15저1725	최*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2	577,550	47
1540	15주0443	유*재	서울특별시 강남구	1	632,400	47
1541	15주6401	갈보리**찬)	서울특별시 중구	2	726,070	47
1542	15주8782	표*규	서울특별시 강북구	7	320,560	47
1543	160마6666	김*종	서울특별시 은평구	8	348,800	47
1544	160버7844	정*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2	684,160	47
1545	19머2795	강*수	서울특별시 은평구	2	581,760	47
1546	19머4104	김*수	경기도 광명시	2	363,550	47
1547	19모7189	이*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4	317,720	47
1548	19무6889	조*현	경상남도 거제시	11	472,880	47
1549	19보6179	홍*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4	305,970	47
1550	19부8042	주식회**먼트	서울특별시 마포구	1	632,400	47
1551	19부8062	(주)**에스	서울특별시 구로구	2	1,591,800	47
1552	19소7674	박*웅	경기도 오산시	9	438,000	47
1553	23소8036	시티택**주)	서울특별시 서초구	2	693,280	47
1554	23수2186	문*기	경기도 오산시	1	305,800	47
1555	23어5615	조*연	경기도 안양시	8	351,680	47
1556	23어6569	최*희	경기도 고양시	1	959,400	47
1557	23어6791	윤*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5	387,080	47
1558	23오2631	FOZ**LI	서울특별시 성북구	18	1,713,130	47
1559	23우5151	조*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13	612,260	47
1560	23우5198	이*현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11	540,080	47
1561	23주8368	김*람	서울특별시 강남구	1	632,400	47
1562	85어9694	이*석	경기도 남양주시	7	321,040	47
1563	85오8268	주*정	서울특별시 강북구	3	1,624,470	47
1564	85조7196	소돈 **회사	서울특별시 중구	1	668,400	47
1565	85주4174	(주)**오텍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5	429,360	47
1566	86가1230	송*범	서울특별시 도봉구	5	808,240	47

등록연번	차량번호	성 명	기본 주소	과태료체납 건수	과태료 금액	발송회차
1567	86가5225	김*훈	서울특별시 서초구	14	624,800	47
1568	86거0543	권*수	서울특별시 양천구	1	632,400	47
1569	86거2381	투어바**회사	서울특별시 중구	2	687,040	47
1570	86구9305	장*균	인천광역시 남동구	7	386,320	47
1571	170버4777	윤*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4	300,630	47
1572	171구9586	이*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7	659,480	47
1573	172노1245	가*환	서울특별시 송파구	1	310,200	47
1574	20호6074	(주)**터카	서울특별시 강남구	1	798,000	47
1575	210너4622	진*태	경기도 김포시	3	351,950	47
1576	210주1179	전*자	서울특별시 양천구	2	992,200	47
1577	211주6706	신*휘	서울특별시 송파구	7	909,360	47
1578	214두2305	주식회**이션	서울특별시 성북구	1	639,600	47
1579	215머9059	이*연	서울특별시 구로구	18	824,640	47
1580	219나7912	주식회**너스	서울특별시 마포구	1	847,470	47
1581	21가6091	이*동	서울특별시 양천구	5	300,080	47
1582	24수3791	DUO**NG	경기도 성남시	7	425,100	47
1583	24수7319	김*원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1	637,090	47
1584	24어6245	박*현	서울특별시 구로구	18	1,438,260	47
1585	24우2836	주식회**쳐스	서울특별시 마포구	1	646,800	47
1586	250구5471	MIN**JI	서울특별시 구로구	6	836,750	47
1587	251라9369	김*우	서울특별시 용산구	7	324,400	47
1588	251라9372	주식회**설팅	서울특별시 서초구	3	808,350	47
1589	251러3544	아바쿠**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4	798,700	47
1590	251러7672	정*규	서울특별시 강북구	1	948,600	47
1591	299도2226	최*룡	서울특별시 구로구	20	1,162,640	47
1592	299도7978	주식회**무역	서울특별시 송파구	1	639,600	47
1593	29나4815	나*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4	1,683,250	47
1594	29누0289	김*운	서울특별시 은평구	4	895,240	47
1595	29누4742	TSE**YA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6	2,546,880	47

등록연번	차량번호	성 명	기본 주소	과태료체납 건수	과태료 금액	발송회차
1596	29더5582	김*수	서울특별시 서초구	1	632,400	47
1597	29러8257	배*옥	경기도 부천시	4	300,080	47
1598	29루0880	박*경	경기도 안양시	6	314,320	47
1599	29머6649	김*영	서울특별시 성북구	3	495,700	47
1600	308도2268	(주)**설팅	서울특별시 종로구	1	632,400	47
1601	308두2994	유*영	서울특별시 종로구	6	887,360	47
1602	348주7451	주식회**비즈	서울특별시 송파구	4	814,520	47
1603	349거4883	유한회**마켓	광주광역시 북구	5	390,000	47
1604	34구0251	주식회**구독	서울특별시 강서구	1	469,040	47
1605	34누8642	김*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2	682,240	47
1606	34도7684	이*석	서울특별시 강서구	4	339,840	47
1607	34라8288	정*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3	1,674,760	47
1608	34루0179	최관**최관	서울특별시 은평구	1	959,400	47
1609	384나6923	김*영	서울특별시 양천구	3	1,034,840	47
1610	384도7121	이*림	서울특별시 송파구	1	646,800	47
1611	384라7793	김*기	서울특별시 서초구	1	632,400	47
1612	385두9468	주식회**구독	서울특별시 강서구	2	655,770	47
1613	385조5187	김*아	서울특별시 노원구	4	674,710	47
1614	386부4263	유한회**개발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6	340,200	47
1615	387주3325	최*희	경기도 평택시	4	311,020	47
1616	388가3266	이*주	서울특별시 송파구	15	895,840	47
1617	389구9401	주식회**에스	서울특별시 강남구	5	504,760	47
1618	389루6675	유*성	서울특별시 양천구	14	679,360	47
1619	38노3414	최*령	서울특별시 강동구	2	441,130	47
1620	45너1579	김*호	경기도 남양주시	5	305,360	47
1621	45노1788	류*영	경기도 부천시	13	652,240	47
1622	45노2563	금*봉	서울특별시 구로구	2	956,430	47
1623	45누1914	마*민	서울특별시 강남구	2	686,080	47
1624	45누8439	주식회**엔씨	서울특별시 종로구	1	397,750	47

등록연번	차량번호	성 명	기본 주소	과태료체납 건수	과태료 금액	발송회차
1625	45다5000	(주)**동양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3	303,900	47
1626	45도1109	정*호	경기도 시흥시	11	810,420	47
1627	268더8822	남*아	대구광역시 수성구	1	631,650	47
1628	268주5060	김*자	경기도 양주시	4	311,860	47
1629	269러2725	주식회**무역	서울특별시 강남구	1	632,400	47
1630	26가3184	박*자	경기도 고양시	4	382,020	47
1631	26구0717	장*세	서울특별시 관악구	8	365,120	47
1632	30버9897	(주)**앤씨	서울특별시 양천구	9	1,137,910	47
1633	30보1981	씨앤지**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2	768,320	47
1634	30서1220	오*봉	서울특별시 구로구	11	725,840	47
1635	30어0445	신*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2	666,390	47
1636	30오1904	임*환	경기도 성남시	5	387,240	47
1637	30우0105	최*우	서울특별시 양천구	1	405,080	47
1638	30우2388	권*진	서울특별시 성북구	7	321,930	47
1639	30우2446	최*호	경기도 고양시	8	309,860	47
1640	30우4389	동흥개**주)	서울특별시 서초구	1	632,400	47
1641	30우8808	BIJ**AS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2	734,850	47
1642	357모4776	세림종**주)	서울특별시 중구	4	791,040	47
1643	357조9932	(주)**셔널	서울특별시 강남구	1	316,200	47
1644	358거5652	이더리**회사	서울특별시 구로구	6	337,840	47
1645	358더6491	(주)**우징	서울특별시 강남구	1	632,400	47
1646	358수3999	신*우	인천광역시 남동구	8	337,220	47
1647	359구7857	주식회**크놀	서울특별시 성북구	2	665,850	47
1648	359누7416	주식회**선영	경기도 의정부시	9	385,680	47
1649	35가0444	이*재	서울특별시 강동구	1	632,400	47
1650	35가7006	장*구	서울특별시 강동구	1	948,600	47
1651	35고6403	최*욱	서울특별시 서초구	1	639,600	47
1652	35너0643	주식회**드림	서울특별시 광진구	6	1,208,440	47
1653	393보5257	(주)**드림	경기도 안양시	5	306,320	47

등록연번	차량번호	성 명	기본 주소	과태료체납 건수	과태료 금액	발송회차
1654	393부5144	임*환	인천광역시 부평구	1	547,010	47
1655	31무4862	주식회**차빈	서울특별시 강서구	3	731,600	47
1656	31보2710	이*준	서울특별시 관악구	2	761,070	47
1657	35소0383	(주)**건설	서울특별시 구로구	1	632,400	47
1658	35소1089	김*홍	서울특별시 성북구	6	370,400	47
1659	35저1046	JIN**AN	서울특별시 구로구	6	345,440	47
1660	35저3864	현대자**주)	서울특별시 서초구	1	632,400	47
1661	35저4494	(주)**셔날	서울특별시 송파구	1	301,840	47
1662	35조0560	(주)**엔디	경기도 김포시	5	303,280	47
1663	35조9168	박*철	서울특별시 강남구	6	305,760	47
1664	360주9054	신*삭	서울특별시 노원구	7	483,340	47
1665	361수1553	김*라	서울특별시 서초구	6	309,340	47
1666	362나2068	최*수	서울특별시 도봉구	1	436,590	47
1667	40거3532	박*혜	서울특별시 노원구	8	360,180	47
1668	40구6745	박*수	서울특별시 은평구	1	646,800	47
1669	40나0992	박*종	경기도 김포시	12	555,540	47
1670	40나1381	홍*우	서울특별시 서초구	8	345,920	47
1671	40너5282	안*근	경기도 광주시	6	305,280	47
1672	40노3079	백*기	서울특별시 강남구	2	2,124,000	47
1673	40누6258	씨앤에**회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	1,606,200	47
1674	40다0624	서*원	서울특별시 은평구	1	630,630	47
1675	40더0420	김*규	서울특별시 서초구	1	654,000	47
1676	40더2109	(주)**셔널	서울특별시 금천구	2	705,760	47
1677	23주8886	에이아**유)	서울특별시 강남구	3	319,600	47
1678	02마5750	안*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1	667,170	47
1679	02머2933	SHE**AO	서울특별시 구로구	3	644,020	47
1680	29모5251	유벰스**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6	322,560	47
1681	33버1705	정*숙	서울특별시 강남구	5	341,590	47
1682	33오2004	노*우	서울특별시 양천구	4	368,990	47

등록연번	차량번호	성 명	기본 주소	과태료체납 건수	과태료 금액	발송회차
1683	33오3593	최*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2	1,602,600	47
1684	33오3751	최*아	서울특별시 강남구	1	341,120	47
1685	33우2313	정*훈	서울특별시 은평구	5	434,640	47
1686	33우6666	주식회**디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11	481,520	47
1687	33우7500	사단법**회의	서울특별시 중구	7	395,010	47
1688	33저5068	전*수	서울특별시 구로구	1	646,800	47
1689	37모3676	(주)**퍼니	서울특별시 강남구	1	639,600	47
1690	37모5384	김*애	서울특별시 송파구	1	639,600	47
1691	37무1167	김*주	서울특별시 강동구	5	1,249,560	47
1692	37버0310	(주)**셀러	경상남도 창원시	7	350,880	47
1693	37보5127	KIM**NG	서울특별시 강남구	4	1,818,060	47
1694	37서3806	서*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7	347,440	47
1695	37서8007	주식회**테크	서울특별시 노원구	2	373,480	47
1696	37서8586	주식회**코스	서울특별시 강남구	4	464,400	47
1697	37소0145	박*현	서울특별시 용산구	5	322,120	47
1698	43도2238	이*원	경기도 양주시	3	905,200	47
1699	43러0444	김*재	서울특별시 양천구	8	379,000	47
1700	43러1637	KIM**NG	서울특별시 양천구	1	646,800	47
1701	43러1910	(주)**엔티	서울특별시 강남구	5	404,400	47
1702	43머4692	김*진	경기도 수원시	5	303,440	47
1703	43모1479	이*우	대구광역시 남구	8	350,720	47
1704	43모8814	주식회**리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10	452,320	47
1705	45도1633	정*빈	경기도 고양시	2	649,290	47
1706	45도1963	박*철	서울특별시 강동구	4	859,200	47
1707	45두4033	국*현	서울특별시 노원구	1	639,600	47
1708	45두9104	에이에**주)	서울특별시 금천구	6	309,490	47
1709	51조4752	주식회**이츠	서울특별시 성동구	8	441,390	47
1710	52가0532	유림도**회사	경기도 성남시	10	479,680	47
1711	52노4457	정*훈	서울특별시 송파구	1	970,200	47

등록연번	차량번호	성 명	기본 주소	과태료체납 건수	과태료 금액	발송회차
1712	52더7122	주식회**타운	서울특별시 강서구	5	300,610	47
1713	52더7402	홍*균	서울특별시 강북구	9	395,280	47
1714	52도0873	최*칠	서울특별시 관악구	6	310,080	47
1715	52루4972	조*익	서울특별시 강남구	1	646,800	47
1716	52마0711	사단법**합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3	730,160	47
1717	58모6843	고*섭	경기도 성남시	3	300,080	47
1718	395루6666	주식회**어링	전라남도 영암군	4	351,680	47
1719	396두5470	이*진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12	580,400	47
1720	398서6686	주식회**리아	서울특별시 서초구	6	304,800	47
1721	398소4945	박*정	경기도 김포시	17	881,900	47
1722	46두7541	주식회**메틱	서울특별시 구로구	2	940,750	47
1723	46루9963	윤*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7	396,240	47
1724	46마1259	이*권	대구광역시 서구	4	308,740	47
1725	46머1323	이*민	인천광역시 서구	7	320,300	47
1726	46버3464	(주)**퍼니	서울특별시 구로구	7	321,520	47
1727	46부1731	한*진	광주광역시 광산구	9	415,540	47
1728	46부5748	장비**장비	서울특별시 송파구	8	356,480	47
1729	46서1238	김*홍	서울특별시 송파구	1	445,830	47
1730	46서2183	(주)**웨이	서울특별시 구로구	4	300,480	47
1731	53로6243	주식회**장품	서울특별시 동작구	3	306,380	47
1732	53루5959	조*경	서울특별시 중랑구	7	317,680	47
1733	53머4888	문*진	서울특별시 서초구	2	688,100	47
1734	53모6905	최*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6	350,720	47
1735	53보9878	한국코**주)	서울특별시 송파구	1	632,400	47
1736	53보9917	이*수	서울특별시 강북구	4	805,440	47
1737	53부3633	노윤**노윤	서울특별시 도봉구	3	368,550	47
1738	53서6671	강*봉	서울특별시 은평구	8	347,360	47
1739	60서7555	류*선	서울특별시 구로구	1	646,800	47
1740	60소5150	MA **NG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6	422,640	47

등록연번	차량번호	성 명	기본 주소	과태료체납 건수	과태료 금액	발송회차
1741	60어1618	삼중지**회사	서울특별시 송파구	2	872,410	47
1742	60오7780	이*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2	523,930	47
1743	60조9742	박*빈	서울특별시 양천구	1	970,200	47
1744	61고0455	이*헌	경기도 광주시	1	632,400	47
1745	47서8629	이*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19	873,980	47
1746	47소5955	김*민	인천광역시 서구	7	349,740	47
1747	47어4936	손*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4	1,110,360	47
1748	47조3029	함*승	서울특별시 강남구	1	301,920	47
1749	47주1581	전*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2	1,581,000	47
1750	48거8200	최*화	서울특별시 강남구	5	1,153,480	47
1751	48더9810	한*필	서울특별시 강남구	2	613,240	47
1752	240두3986	김*우	서울특별시 강남구	1	646,800	47
1753	240버3600	(주)**기업	경기도 화성시	8	390,000	47
1754	240수7468	주식회**리점	서울특별시 종로구	2	684,640	47
1755	27우0928	BEL**UT	전라남도 목포시	14	734,540	47
1756	27우4892	오*진	서울특별시 노원구	6	353,680	47
1757	27우9081	김*정	서울특별시 양천구	1	301,840	47
1758	27우9671	정*원	서울특별시 양천구	4	778,550	47
1759	27조8264	LAB**MI	서울특별시 강북구	54	2,605,280	47
1760	280노2697	주식회**부품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1	639,600	47
1761	281구1341	(사)**흥협	서울특별시 종로구	7	409,660	47
1762	281구2197	양*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1	444,510	47
1763	282두5430	이*규	충청북도 충주시	7	322,480	47
1764	327서2583	(주)**트카	경기도 양주시	7	311,440	47
1765	328나7759	김*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1	319,350	47
1766	329노2678	서*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11	449,780	47
1767	32구2925	이*연	서울특별시 양천구	5	549,040	47
1768	32구3599	최*윤	경기도 양주시	6	310,860	47
1769	32구6288	김*진	서울특별시 송파구	2	402,550	47

등록연번	차량번호	성 명	기본 주소	과태료체납 건수	과태료 금액	발송회차
1770	32나0151	주식회**구독	서울특별시 강서구	2	1,599,000	47
1771	32누2202	동운디**주)	서울특별시 은평구	13	550,480	47
1772	32러6418	양*자	서울특별시 강북구	1	489,270	47
1773	36러2862	김*준	서울특별시 서초구	1	646,800	47
1774	36마3238	주식회**루스	서울특별시 강서구	1	639,600	47
1775	36머1921	이*환	경기도 안양시	3	304,400	47
1776	58무9907	김*현	서울특별시 양천구	3	364,180	47
1777	58부2899	김*중	서울특별시 성북구	8	344,900	47
1778	58소5744	(주)**어링	서울특별시 성동구	5	832,240	47
1779	58소8674	백*복	서울특별시 송파구	4	856,990	47
1780	58어3314	조*준	서울특별시 구로구	2	696,640	47
1781	58저0598	(주)**컴즈	서울특별시 강남구	6	327,400	47
1782	58조0299	주식회**개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	676,000	47
1783	59고2431	김*윤	경상북도 구미시	6	308,160	47
1784	66저0456	나*기	서울특별시 강북구	1	632,400	47
1785	66조4009	이*훈	서울특별시 송파구	1	639,600	47
1786	66조7632	민*기	서울특별시 강서구	1	948,600	47
1787	66주1952	홍*경	서울특별시 도봉구	3	391,440	47
1788	67고1952	조*성	서울특별시 강북구	11	310,500	47
1789	67구1950	양*휘	경상남도 양산시	15	656,940	47
1790	67너7561	(주)**상진	서울특별시 종로구	1	736,730	47
1791	67너8556	정*조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6	326,880	47
1792	76보7261	박*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2	874,100	47
1793	76서6562	최*진	경기도 하남시	3	348,940	47
1794	76수3632	김*식	서울특별시 양천구	1	668,400	47
1795	77고5220	이*현	경기도 용인시	4	304,400	47
1796	77라5991	주식회**리온	경기도 하남시	6	347,400	47
1797	82라7470	황*순	전라남도 여수시	5	303,440	47
1798	82러6034	(주)**물산	경기도 안산시	5	349,360	47

등록연번	차량번호	성 명	기본 주소	과태료체납 건수	과태료 금액	발송회차
1799	61너7726	(주)**드씨	서울특별시 성동구	4	669,420	47
1800	61너7771	주식회**러퍼	서울특별시 서초구	1	639,600	47
1801	67주5957	주식회**앤비	경기도 파주시	8	350,240	47
1802	68가4313	이*빈	서울특별시 강남구	3	701,590	47
1803	68가4692	주식회**더스	서울특별시 서초구	2	686,300	47
1804	68가5192	김*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6	319,890	47
1805	68너2632	박*민	서울특별시 성북구	2	662,130	47
1806	68더4651	최*혁	서울특별시 강북구	7	300,880	47
1807	68두8555	한*훈	서울특별시 강동구	7	305,680	47
1808	68러1705	(주)**이처	서울특별시 강남구	2	1,006,600	47
1809	79라7829	PHA**OC	서울특별시 성북구	3	696,560	47
1810	79모8262	정*임	경기도 성남시	7	383,900	47
1811	79모8385	박*용	경기도 시흥시	6	319,800	47
1812	79보6555	오*숙	경기도 남양주시	3	301,240	47
1813	79보6947	장*혜	서울특별시 송파구	1	469,600	47
1814	79소7285	(주)**리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4	338,440	47
1815	79오9574	(주)**페이	경기도 양주시	6	334,800	47
1816	79조8837	황*환	충청북도 충주시	5	346,640	47
1817	801무7275	김*규	서울특별시 노원구	4	361,130	47
1818	83두8020	동흥개**주)	서울특별시 서초구	1	646,800	47
1819	83라4385	(주)**탁해	경기도 김포시	8	382,840	47
1820	83러0969	(주)**건설	충청남도 천안시	7	474,800	47
1821	83러1646	최*주	서울특별시 강동구	1	646,800	47
1822	83러6943	신*주	서울특별시 은평구	8	392,220	47
1823	83루8132	(주)**금속	경기도 광주시	7	310,000	47
1824	48도9462	김*준	서울특별시 강서구	4	978,970	47
1825	48두2329	김*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7	471,920	47
1826	48두4373	배*희	서울특별시 서초구	6	302,880	47
1827	54버3827	김*경	서울특별시 강남구	1	380,550	47

등록연번	차량번호	성 명	기본 주소	과태료체납 건수	과태료 금액	발송회차
1828	54버6336	(주)**에듀	서울특별시 금천구	3	1,762,670	47
1829	54보4069	최*길	서울특별시 광진구	6	306,720	47
1830	54어5383	TUY**CH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2	965,850	47
1831	54어9473	LIN**AO	서울특별시 구로구	1	632,400	47
1832	54오9663	하*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6	311,010	47
1833	54우2608	송*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1	632,400	47
1834	54우7479	주식회**에잇	서울특별시 송파구	4	326,670	47
1835	54저7466	마히인**회사	서울특별시 마포구	2	693,760	47
1836	54저7627	(주)**물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6	303,360	47
1837	62구0420	이*하	서울특별시 송파구	1	639,600	47
1838	62나8221	오*근	서울특별시 강서구	4	304,400	47
1839	62누7494	TUR**IF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5	494,420	47
1840	62도1871	류*성	서울특별시 송파구	2	701,920	47
1841	62도5316	맑은물**센터	서울특별시 구로구	5	414,000	47
1842	62두8584	김*자	경기도 화성시	7	329,300	47
1843	62로0193	김*정	서울특별시 강북구	5	312,400	47
1844	62로4314	홍*훈	경기도 고양시	7	340,640	47
1845	62마1363	주식회**동차	서울특별시 강동구	5	1,429,840	47
1846	62모4638	양*동	서울특별시 송파구	3	700,810	47
1847	69다7906	(주)**씽크	서울특별시 강남구	2	688,480	47
1848	69도1627	주식회**리아	서울특별시 성북구	1	948,600	47
1849	36머7169	이*일	서울특별시 중구	7	445,200	47
1850	36모3266	농업회**레스	전라남도 담양군	6	327,100	47
1851	36모4829	CHA**NG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1	557,680	47
1852	36보9350	(주)**신화	서울특별시 송파구	2	1,043,340	47
1853	36소9784	주식회**퍼니	서울특별시 강남구	6	369,440	47
1854	36수0974	강*원	서울특별시 양천구	1	981,000	47
1855	36어2589	정*린	서울특별시 구로구	1	639,600	47
1856	40주5697	JON**ID	서울특별시 용산구	1	970,200	47

등록연번	차량번호	성 명	기본 주소	과태료체납 건수	과태료 금액	발송회차
1857	41고2000	주식회**앤씨	서울특별시 용산구	1	632,400	47
1858	41고5903	박*미	경기도 남양주시	7	312,020	47
1859	41고8735	주식회**엔씨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8	371,360	47
1860	41구0130	(주)**레콤	서울특별시 양천구	4	807,840	47
1861	41구8819	주식회**해산	서울특별시 광진구	6	356,000	47
1862	41나6026	이*숙	서울특별시 송파구	1	711,450	47
1863	41너8810	김*혜	인천광역시 중구	13	553,540	47
1864	41누4103	김*수	서울특별시 송파구	4	364,160	47
1865	41더5962	주*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1	959,400	47
1866	49나0546	이*예	경기도 하남시	12	537,120	47
1867	49나7817	이*준	서울특별시 은평구	1	380,550	47
1868	49너3281	김*녀	경기도 구리시	5	327,760	47
1869	49누3094	장*인	경기도 광주시	6	372,320	47
1870	49누4127	김*우	서울특별시 서초구	9	436,000	47
1871	49다0855	이*영	서울특별시 노원구	7	344,180	47
1872	49다6933	조*민	경기도 하남시	4	313,440	47
1873	49더0163	주식회**구독	서울특별시 강서구	1	447,720	47
1874	49도0353	최*일	서울특별시 송파구	1	600,000	47
1875	55모9400	장*정	서울특별시 강동구	2	341,230	47
1876	02무9600	주식회**지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	1,012,360	47
1877	02버3610	박병숙**종근	서울특별시 노원구	1	970,200	47
1878	02보4355	(주)**일내	서울특별시 동작구	1	991,800	47
1879	02서3168	정*영	경기도 고양시	8	469,060	47
1880	02서6809	신*석	서울특별시 은평구	6	445,770	47
1881	02수2071	주식회**엔씨	서울특별시 강남구	1	639,600	47
1882	02수4244	중부기**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1	418,920	47
1883	82로5443	오앤피**주)	경기도 과천시	9	414,480	47
1884	82로9000	주식회**버킷	서울특별시 서초구	2	648,930	47
1885	82루1889	주식회**건설	서울특별시 관악구	1	646,800	47

등록연번	차량번호	성 명	기본 주소	과태료체납 건수	과태료 금액	발송회차
1886	82마6083	유한회**푸드	서울특별시 송파구	11	479,120	47
1887	82머0759	성*권	경기도 수원시	1	646,800	47
1888	82모2818	주식회**자인	서울특별시 강서구	7	342,470	47
1889	82무2231	김*석	서울특별시 양천구	5	305,360	47
1890	82버0728	오*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7	335,440	47
1891	82버0801	주식회**자인	서울특별시 광진구	4	325,840	47
1892	82버7994	주식회**개발	경기도 김포시	10	448,000	47
1893	87주0129	김*용	서울특별시 강남구	1	639,600	47
1894	88너9093	주식회**자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7	338,860	47
1895	88노8091	이*준	서울특별시 종로구	6	313,300	47
1896	88노8851	주식회**리다	경기도 남양주시	6	304,740	47
1897	88도1813	주식회**레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5	733,800	47
1898	88도8223	안*무	서울특별시 강동구	3	1,058,600	47
1899	88두0427	에이스**주)	경기도 김포시	9	409,200	47
1900	88두0479	박*진	서울특별시 용산구	8	619,500	47
1901	88러7522	키친케**회사	서울특별시 관악구	1	639,600	47
1902	05마3847	(주)**개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	1,660,200	47
1903	05무5983	신*화	서울특별시 강북구	2	1,017,160	47
1904	05버2102	주식회**아이	서울특별시 성동구	1	300,130	47
1905	05부0195	안*숙	서울특별시 강남구	1	527,000	47
1906	89도7572	정원**정원	서울특별시 성북구	2	652,960	47
1907	89두0859	(주)**한농	서울특별시 강서구	7	319,600	47
1908	89두2929	장*군	서울특별시 양천구	1	632,400	47
1909	89루3935	양*민	서울특별시 구로구	6	666,080	47
1910	89마0412	수이주**회사	경기도 용인시	10	431,380	47
1911	89마6584	정*호	경기도 용인시	5	305,460	47
1912	89마7130	주식회**앤씨	서울특별시 도봉구	1	646,800	47
1913	89모4554	정*민	경기도 성남시	9	474,320	47
1914	89모9249	(주)**크윈	서울특별시 구로구	1	981,000	47

등록연번	차량번호	성 명	기본 주소	과태료체납 건수	과태료 금액	발송회차
1915	06조8864	주식회**먼트	서울특별시 강남구	2	703,840	47
1916	07거0887	주식회**랙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1	970,200	47
1917	07고7141	(주)**엔지	서울특별시 성동구	1	661,200	47
1918	07나4285	한*애	서울특별시 노원구	1	632,400	47
1919	07누1865	주-소**항공	서울특별시 종로구	2	1,022,440	47
1920	07더8014	(주)**무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	651,450	47
1921	07라4391	(주)**큐브	서울특별시 금천구	1	639,600	47
1922	07라7918	박*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3	964,570	47
1923	07러5647	주식회**산업	경기도 시흥시	7	324,880	47
1924	07마1098	(주)**에듀	서울특별시 금천구	1	646,800	47
1925	07마9886	주식회**딩스	서울특별시 중구	6	339,200	47
1926	11주2550	정*현	서울특별시 강남구	1	306,710	47
1927	11주2586	(주)**엔씨	서울특별시 강서구	3	300,470	47
1928	120너2078	CHU**AE	서울특별시 중구	7	300,940	47
1929	120소9999	주식회**무역	서울특별시 중구	2	463,680	47
1930	120우9419	주식회**슈왕	서울특별시 강북구	1	629,230	47
1931	122마7402	황*영	경기도 광주시	8	345,920	47
1932	122소1896	주식회**로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4	777,220	47
1933	123두4730	HEM**RU	경기도 안산시	16	819,320	47
1934	151나2990	김*순	경기도 고양시	5	307,600	47
1935	69루3902	김*우	서울특별시 서초구	1	639,600	47
1936	69무2896	조*희	서울특별시 동작구	7	309,040	47
1937	69무7996	최*숙	경기도 고양시	3	835,890	47
1938	69보9562	에스디**주)	서울특별시 마포구	1	632,400	47
1939	69서2339	장*준	서울특별시 도봉구	6	300,960	47
1940	69서6291	유*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7	317,370	47
1941	69어3882	(주)**프트	서울특별시 서초구	3	786,800	47
1942	69어5899	송*용	서울특별시 양천구	7	349,360	47
1943	69오6051	김*근	서울특별시 양천구	1	632,400	47

등록연번	차량번호	성 명	기본 주소	과태료체납 건수	과태료 금액	발송회차
1944	69우5593	모*상	경기도 용인시	3	304,080	47
1945	809더7867	(주)**푸드	경기도 포천시	12	507,360	47
1946	809루5454	주식회**코트	서울특별시 서초구	1	632,400	47
1947	809부9713	김*범	서울특별시 송파구	7	304,050	47
1948	80가5813	송*창	경기도 고양시	5	303,640	47
1949	80고1665	주식회**드림	서울특별시 노원구	3	1,643,800	47
1950	80고2591	사단법**합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3	1,668,760	47
1951	80구2934	주-모**재텍	서울특별시 종로구	1	639,600	47
1952	80나7647	김*심	서울특별시 은평구	2	318,360	47
1953	80다5885	박*래	서울특별시 송파구	6	396,020	47
1954	84고0771	(주)**사내	서울특별시 강남구	4	308,160	47
1955	84구5383	김*식	경기도 양주시	5	300,900	47
1956	84구7482	김*수	경기도 성남시	6	300,420	47
1957	84너2845	나훈**나훈	경기도 의정부시	5	390,120	47
1958	84노6837	주식회**앤디	서울특별시 금천구	1	632,400	47
1959	84누6757	(주)**티알	서울특별시 강남구	1	646,800	47
1960	84두7043	오*율	서울특별시 양천구	2	520,910	47
1961	84두7763	주식회**오토	서울특별시 성동구	1	639,600	47
1962	84러0339	(주)**앤비	서울특별시 강남구	1	970,200	47
1963	84루0856	함*훈	경기도 하남시	10	405,280	47
1964	90누7607	(주)**포스	서울특별시 강남구	2	689,920	47
1965	55모9526	김*완	서울특별시 관악구	15	669,360	47
1966	55무9208	정*권	서울특별시 강남구	2	449,050	47
1967	55보3952	TUR**DI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2	1,854,600	47
1968	55부1083	유*연	서울특별시 도봉구	2	1,018,120	47
1969	55서8679	YIN**UO	경기도 시흥시	7	308,560	47
1970	55서9952	이*율	서울특별시 도봉구	7	303,590	47
1971	55소6129	김*성	경기도 안산시	5	304,400	47
1972	63로6473	김*영	경기도 광주시	8	351,680	47

등록연번	차량번호	성 명	기본 주소	과태료체납 건수	과태료 금액	발송회차
1973	63루4715	심*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1	632,400	47
1974	63루5445	그린팜**회사	서울특별시 송파구	16	666,220	47
1975	63모8356	이*훈	서울특별시 은평구	6	317,280	47
1976	63버5536	주식회**딩스	서울특별시 서초구	2	872,610	47
1977	63수1280	주식회**랜드	서울특별시 성동구	1	668,400	47
1978	63어9498	PIA**NG	서울특별시 구로구	1	970,200	47
1979	63오7431	이*용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4	312,590	47
1980	70우5079	서*선	서울특별시 양천구	2	303,680	47
1981	70우9973	주식회**포츠	대구광역시 동구	6	384,600	47
1982	70조3780	이*우	서울특별시 강남구	1	646,800	47
1983	70호2348	주식회**이카	서울특별시 성동구	5	885,800	47
1984	71가4777	박*우	서울특별시 은평구	1	654,000	47
1985	71고4307	이*오	서울특별시 강남구	2	697,080	47
1986	71고9204	오*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6	319,800	47
1987	71고9463	이*훈	서울특별시 강북구	1	646,800	47
1988	71노7472	박*래	서울특별시 은평구	1	632,400	47
1989	71더7168	박*화	서울특별시 구로구	5	359,780	47
1990	80우4150	김*오	서울특별시 성동구	8	376,640	47
1991	80우7762	박*홍	서울특별시 성북구	6	383,400	47
1992	80조0991	오*환	경기도 고양시	4	300,880	47
1993	80조9227	안동김**종중	서울특별시 노원구	2	717,600	47
1994	02오3095	고*경	서울특별시 강남구	8	370,020	47
1995	104서1088	백*나	서울특별시 강남구	1	959,400	47
1996	105고9634	김*채	서울특별시 성북구	1	632,400	47
1997	105구6306	주식회**무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1	323,400	47
1998	106보2679	(주)**크넷	서울특별시 강북구	5	848,560	47
1999	106서3333	(주)**루션	서울특별시 강남구	1	639,600	47
2000	106서3456	엘림종**회사	인천광역시 서구	6	317,280	47
2001	137오3164	김*훈	서울특별시 성북구	1	959,400	47

등록연번	차량번호	성 명	기본 주소	과태료체납 건수	과태료 금액	발송회차
2002	138고6509	허*현	경기도 안양시	7	340,340	47
2003	138머8131	강*경	경기도 고양시	7	306,640	47
2004	139노8476	송*기	서울특별시 송파구	1	639,600	47
2005	139두9592	(주)**남방	서울특별시 구로구	1	646,800	47
2006	139버1489	박*성	경기도 고양시	8	362,240	47
2007	139조4360	전*석	서울특별시 강서구	1	959,400	47
2008	13가7327	NGU**AI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3	1,837,350	47
2009	13고1820	이*영	서울특별시 성동구	6	390,080	47
2010	13구2406	서*래	인천광역시 연수구	8	381,440	47
2011	167어3296	손*주	서울특별시 노원구	12	1,507,880	47
2012	167저6980	최*주	서울특별시 중랑구	5	323,060	47
2013	168구8739	조*호	전라남도 강진군	9	411,120	47
2014	168너2005	주식회**건설	서울특별시 관악구	1	646,800	47
2015	168라7988	오*지	서울특별시 강서구	27	2,541,310	47
2016	169러7720	이*문	서울특별시 중구	9	392,880	47
2017	16가3562	(주)**용)	부산광역시 사상구	9	319,800	47
2018	16고4943	김*영	서울특별시 양천구	1	632,400	47
2019	16노9600	위브파**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3	775,420	47
2020	151너7734	이*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8	356,960	47
2021	152두5593	현*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11	340,640	47
2022	152라3715	CHE**YU	서울특별시 성북구	4	709,430	47
2023	183무7154	인터내**회사	서울특별시 광진구	5	313,000	47
2024	183소6627	CHO**IK	경기도 남양주시	7	397,320	47
2025	184너6288	주식회**전력	서울특별시 종로구	1	632,400	47
2026	184누2622	(주)**써클	서울특별시 성동구	1	639,600	47
2027	184누4291	주식회**루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4	795,360	47
2028	184수4805	김*현	서울특별시 구로구	2	826,930	47
2029	184주8364	주식회**터스	경기도 화성시	5	317,680	47
2030	185구7933	전*용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2	691,360	47

등록연번	차량번호	성 명	기본 주소	과태료체납 건수	과태료 금액	발송회차
2031	185머3255	정*정	서울특별시 은평구	8	515,110	47
2032	187두9654	박*찬	서울특별시 서초구	4	371,030	47
2033	187루3595	(주)**이딩	인천광역시 연수구	22	958,460	47
2034	187수1703	케이에**회사	서울특별시 송파구	2	685,120	47
2035	188구8087	주식회**보이	서울특별시 중구	8	1,058,400	47
2036	22모4849	NGU**HO	전라남도 무안군	7	328,200	47
2037	22버1957	주식회**시홈	서울특별시 서초구	3	890,580	47
2038	22부2232	안*영	경기도 의정부시	7	359,920	47
2039	22수9425	주식회**리어	서울특별시 서초구	7	483,920	47
2040	22오7025	(주)**설팅	서울특별시 종로구	7	325,840	47
2041	22오8331	진*령	서울특별시 도봉구	1	970,200	47
2042	22저8096	마*진	서울특별시 구로구	12	1,531,480	47
2043	22저9321	주식회**올래	서울특별시 성동구	5	301,800	47
2044	22조7681	정*혁	경기도 성남시	3	305,680	47
2045	22주8100	인정토**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3	729,240	47
2046	26노8728	김*연	서울특별시 양천구	1	646,800	47
2047	26더4630	김*우	경기도 성남시	8	353,760	47
2048	90더4873	김*형	서울특별시 양천구	1	948,600	47
2049	90더9702	주식회**앤씨	경기도 남양주시	7	317,680	47
2050	90도8828	정*진	경기도 하남시	8	382,400	47
2051	90두1419	노*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7	316,240	47
2052	90두7445	황*철	서울특별시 구로구	1	490,360	47
2053	90로1428	신*진	서울특별시 강동구	1	460,790	47
2054	90루2917	이*찬	서울특별시 구로구	1	970,200	47
2055	90루8873	사회복**우회	서울특별시 송파구	1	632,400	47
2056	08로9393	(주)**아이	서울특별시 용산구	2	1,011,640	47
2057	08루5086	박*원	경기도 부천시	4	353,120	47
2058	08마0425	김*기	서울특별시 구로구	7	532,000	47
2059	08마4335	조*구	서울특별시 노원구	10	435,520	47

등록연번	차량번호	성 명	기본 주소	과태료체납 건수	과태료 금액	발송회차
2060	08마5034	양*석	인천광역시 강화군	7	359,920	47
2061	08머4339	주식회**로벌	서울특별시 금천구	2	806,030	47
2062	08모4054	김*숙	서울특별시 강남구	10	669,120	47
2063	08무6036	조형문**민이	서울특별시 양천구	1	639,600	47
2064	08버7345	주식회**너스	서울특별시 송파구	1	632,400	47
2065	08소1173	강*헌	서울특별시 노원구	3	792,950	47
2066	08소2156	김*옥	서울특별시 양천구	6	303,770	47
2067	127모4935	PIA**기	서울특별시 구로구	14	556,640	47
2068	127부8502	(주)**먼트	서울특별시 광진구	2	648,210	47
2069	127오4814	최*식	서울특별시 성북구	8	1,355,320	47
2070	128라6349	고*옥	경기도 광명시	17	915,100	47
2071	128마5949	주식회**앤디	서울특별시 마포구	1	970,200	47
2072	129고6401	주식회**지오	서울특별시 광진구	1	646,800	47
2073	129더2439	최*규	경기도 광명시	6	366,080	47
2074	129두2281	정*태	서울특별시 노원구	1	646,800	47
2075	129두4816	홍*기	경기도 의정부시	17	748,140	47
2076	12가8563	서*훈	서울특별시 은평구	1	495,880	47
2077	810도7410	한*우	인천광역시 계양구	2	682,720	47
2078	811너1297	삼성유**법인	서울특별시 중랑구	2	1,617,000	47
2079	812노4242	장*원	서울특별시 노원구	2	701,920	47
2080	812서7807	구*미	서울특별시 종로구	4	904,200	47
2081	812우4621	문*환	서울특별시 성북구	5	873,000	47
2082	84주0372	배인**배인	경기도 광주시	8	393,440	47
2083	84주6500	심*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1	646,800	47
2084	85거0806	정*영	경기도 시흥시	20	857,120	47
2085	85거4986	장*갑	경기도 성남시	6	328,220	47
2086	85고9502	강토건**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6	303,360	47
2087	85나9456	이*란	서울특별시 강동구	7	340,720	47
2088	85노8406	태평양**회사	서울특별시 구로구	4	319,000	47

등록연번	차량번호	성 명	기본 주소	과태료체납 건수	과태료 금액	발송회차
2089	85더0890	주식회**무루	서울특별시 노원구	3	795,130	47
2090	85두0183	여*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1	632,400	47
2091	01머7544	윤*철	서울특별시 금천구	12	562,080	47
2092	01버8888	유한회**굴비	서울특별시 송파구	1	632,400	47
2093	01부4190	임*혁	경기도 김포시	4	1,331,870	47
2094	01오2287	손*빈	서울특별시 구로구	8	432,640	47
2095	01저1692	주식회**럭스	서울특별시 강남구	6	834,610	47
2096	01저7235	(주)**기술	경기도 구리시	4	384,400	47
2097	01주7700	(주)**우징	서울특별시 강북구	6	304,300	47
2098	09서5570	오케이**회사	서울특별시 중구	1	970,200	47
2099	09어5108	윤*준	경기도 김포시	15	764,880	47
2100	09우6934	이*주	서울특별시 송파구	1	646,800	47
2101	09조9134	천*식	서울특별시 송파구	6	300,480	47
2102	20누1169	김*진	경기도 의정부시	5	301,840	47
2103	20누2835	김*규	서울특별시 강북구	7	336,880	47
2104	20누7914	람젯파**회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2	686,560	47
2105	20누9577	박*주	서울특별시 양천구	8	442,870	47
2106	20다3813	가*환	서울특별시 송파구	1	310,200	47
2107	20다7732	주식회**퍼니	서울특별시 강서구	1	639,600	47
2108	20더1799	장산종**회사	인천광역시 남동구	5	303,840	47
2109	20도0114	김*성	서울특별시 강북구	4	891,960	47
2110	20도8335	차*철	서울특별시 강서구	8	337,870	47
2111	20두9616	주식회**셔널	경기도 김포시	6	308,160	47
2112	20라1444	주식회**엠오	서울특별시 중구	1	642,780	47
2113	20라1521	김*안	경기도 화성시	9	391,440	47
2114	20러0224	이*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1	959,400	47
2115	24너8664	박*자	서울특별시 강동구	8	427,710	47
2116	24노8805	주식회**이드	서울특별시 중구	1	639,600	47
2117	24노8951	전*현	서울특별시 서초구	1	369,950	47

등록연번	차량번호	성 명	기본 주소	과태료체납 건수	과태료 금액	발송회차
2118	24다4271	이*지	서울특별시 송파구	1	469,040	47
2119	24다4669	김*열	서울특별시 강남구	3	315,640	47
2120	24더0970	주식회**엔씨	서울특별시 강동구	1	736,730	47
2121	24도8868	이*민	서울특별시 용산구	5	822,640	47
2122	28모4034	박*수	광주광역시 서구	2	304,400	47
2123	28모6068	김*윤	서울특별시 양천구	7	347,440	47
2124	28무9810	한국자**주)	서울특별시 구로구	1	959,400	47
2125	28부5690	전*준	서울특별시 강동구	9	440,880	47
2126	28소0210	창득설**주)	서울특별시 용산구	1	639,600	47
2127	28소8994	박*석	경기도 고양시	27	1,317,780	47
2128	28수4674	이*석	서울특별시 송파구	1	632,400	47
2129	26도5587	무진어**주)	서울특별시 종로구	3	307,120	47
2130	26도9690	정*구	서울특별시 강남구	1	1,315,800	47
2131	26두1249	LIL**AN	서울특별시 구로구	3	706,450	47
2132	26두1835	박*성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1	313,030	47
2133	26로5469	강*림	서울특별시 서초구	3	730,160	47
2134	26마7452	(주)**개발	서울특별시 금천구	6	305,760	47
2135	26모4479	(주)**지엔	서울특별시 강남구	7	951,600	47
2136	26모6628	장*완	서울특별시 강북구	1	959,400	47
2137	30저4678	주식회**더스	경기도 여주시	5	305,340	47
2138	30주2466	전*영	서울특별시 성북구	4	1,105,560	47
2139	30주6008	이*호	경기도 남양주시	4	348,800	47
2140	310어7163	엠앤제**회사	인천광역시 연수구	7	343,600	47
2141	310조5992	신*록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4	302,400	47
2142	311머3946	노석**노석	서울특별시 강남구	1	639,600	47
2143	312나6990	권*미	서울특별시 성북구	1	681,150	47
2144	312두2169	주식회**템즈	서울특별시 송파구	8	1,010,080	47
2145	312라7751	황*현	경기도 안산시	25	1,308,620	47
2146	312머7272	권*분	서울특별시 은평구	1	745,110	47

등록연번	차량번호	성 명	기본 주소	과태료체납 건수	과태료 금액	발송회차
2147	313고6358	박*영	경기도 안산시	9	445,400	47
2148	314나5341	김*조	경상북도 포항시	7	324,400	47
2149	35너4019	(주)**구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2	673,400	47
2150	35노4251	하*기	경기도 의정부시	13	815,440	47
2151	35노5495	박*복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1	313,030	47
2152	35더4263	박*복	대전광역시 동구	10	528,580	47
2153	35도0983	주식회**리아	경기도 고양시	5	301,040	47
2154	35도5469	주식회**피오	서울특별시 송파구	1	632,400	47
2155	35러8984	설*진	서울특별시 강북구	5	335,780	47
2156	39너6457	이*우	경기도 고양시	9	406,800	47
2157	39더3029	윤*현	서울특별시 은평구	6	312,960	47
2158	39도4003	김*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6	325,850	47
2159	159나1394	박*열	서울특별시 동작구	9	431,280	47
2160	159도9730	신*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3	1,617,870	47
2161	159모4936	엄*빈	서울특별시 도봉구	7	336,400	47
2162	159수6534	주식회**라드	서울특별시 강남구	2	682,720	47
2163	159주8498	최*영	서울특별시 강동구	7	313,840	47
2164	15거7140	이*식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9	481,520	47
2165	15구9640	정*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1	632,400	47
2166	15너5313	(주)**건설	경기도 광주시	7	351,280	47
2167	15누2094	주식회**너스	경기도 성남시	9	500,320	47
2168	194루4215	주식회**크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3	734,000	47
2169	194부6908	PIA**HE	서울특별시 구로구	4	659,470	47
2170	195로8446	한*이	서울특별시 노원구	1	948,600	47
2171	195조3543	도*성	서울특별시 강남구	6	439,940	47
2172	196다1051	주식회**딩스	전라남도 여수시	8	337,760	47
2173	196루1868	이*훈	서울특별시 성북구	4	1,696,040	47
2174	198더1607	오*준	서울특별시 종로구	4	807,840	47
2175	198머5782	방*석	서울특별시 송파구	9	358,070	47

등록연번	차량번호	성 명	기본 주소	과태료체납 건수	과태료 금액	발송회차
2176	199머1730	김*건	서울특별시 양천구	78	5,523,600	47
2177	199머9744	한*민	서울특별시 성동구	15	2,266,170	47
2178	238나3008	최*수	경기도 수원시	12	776,540	47
2179	238서6685	이*규	서울특별시 성북구	1	632,400	47
2180	239거8046	이*린	서울특별시 송파구	4	393,920	47
2181	239너1289	장*철	서울특별시 강남구	1	431,730	47
2182	239오8649	최*환	서울특별시 구로구	1	646,800	47
2183	23거0145	주식회**에프	서울특별시 강남구	2	649,290	47
2184	276저7636	(주)**리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1	426,400	47
2185	100로2699	정*욱	서울특별시 성북구	6	919,990	47
2186	100무1373	(주)**엔엘	서울특별시 마포구	1	639,600	47
2187	100버6942	지닝스**회사	서울특별시 구로구	3	1,322,210	47
2188	101누1814	이*근	서울특별시 강남구	5	1,189,960	47
2189	12저5600	신*재	서울특별시 강남구	1	639,600	47
2190	12조0605	최*숙	전라남도 광양시	5	322,640	47
2191	12조1953	조*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6	350,020	47
2192	12조4150	조*랑	서울특별시 서초구	4	341,120	47
2193	12주1028	엄*일	경기도 군포시	8	380,000	47
2194	12주8480	함*진	서울특별시 구로구	8	313,220	47
2195	130가9086	(주)**디컬	서울특별시 구로구	25	1,215,820	47
2196	130보7812	최*우	경기도 안산시	8	376,160	47
2197	132서9965	김*영	서울특별시 구로구	1	970,200	47
2198	161러8583	주식회**기현	서울특별시 은평구	11	443,410	47
2199	161수3372	이*준	서울특별시 은평구	1	405,080	47
2200	161주5275	강*자	서울특별시 도봉구	8	372,320	47
2201	161호2391	(주)**트카	경기도 하남시	7	305,200	47
2202	162라9466	허*영	경기도 광주시	19	870,540	47
2203	162어8000	권*성	서울특별시 강남구	1	654,000	47
2204	162오8896	김*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7	328,240	47

등록연번	차량번호	성 명	기본 주소	과태료체납 건수	과태료 금액	발송회차
2205	163너7856	주식회**개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1	591,790	47
2206	163루9051	최*태	서울특별시 강북구	9	994,920	47
2207	163머7362	주식회**마켓	서울특별시 구로구	3	1,047,230	47
2208	163부1187	최*훈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1	959,400	47
2209	28어5315	정*샘	서울특별시 강북구	2	652,660	47
2210	334조5155	이*준	경기도 남양주시	1	632,400	47
2211	335버7719	양*수	서울특별시 강서구	6	316,800	47
2212	336너5241	조*훈	서울특별시 강남구	1	639,600	47
2213	336버1206	성*희	경기도 부천시	7	323,440	47
2214	338러5206	NIT**AO	서울특별시 성동구	45	1,970,820	47
2215	339수3928	에이치**주)	서울특별시 강서구	1	632,400	47
2216	33구7645	주식회**건설	경기도 성남시	8	448,580	47
2217	33나0696	박*아	인천광역시 연수구	7	327,760	47
2218	33노0691	(주)**우성	경기도 성남시	8	443,640	47
2219	379도7196	김*림	경기도 여주시	5	302,320	47
2220	379주8210	이*영	서울특별시 강남구	1	970,200	47
2221	37가0219	이*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3	734,030	47
2222	37거5980	이*우	서울특별시 강북구	6	303,100	47
2223	37고0195	(주)**러벌	서울특별시 구로구	6	825,140	47
2224	37고2331	조*희	서울특별시 양천구	1	948,600	47
2225	37고3145	김*수	경기도 파주시	3	318,640	47
2226	37고7896	강윤**강윤	서울특별시 강서구	8	392,000	47
2227	37구6489	전*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13	536,880	47
2228	37구7432	홍*성	서울특별시 도봉구	1	970,200	47
2229	42구4831	오*혁	경기도 의정부시	6	305,280	47
2230	42너2870	김*영	경기도 고양시	6	324,000	47
2231	42너2911	오*승	서울특별시 송파구	1	632,400	47
2232	42노1781	전*희	서울특별시 구로구	1	970,200	47
2233	42노7566	주식회**물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	678,400	47

등록연번	차량번호	성 명	기본 주소	과태료체납 건수	과태료 금액	발송회차
2234	42더0656	최*선	서울특별시 양천구	4	422,720	47
2235	43무9664	최*영	서울특별시 송파구	1	639,600	47
2236	43보5669	엔젤워**주)	서울특별시 송파구	2	1,022,000	47
2237	43서3134	주식회**블유	서울특별시 관악구	5	312,880	47
2238	51더2643	김*현	서울특별시 노원구	7	318,980	47
2239	51러3845	이*수	서울특별시 강동구	1	632,400	47
2240	51러5139	이*수	서울특별시 구로구	3	806,570	47
2241	51러5720	이*문	서울특별시 종로구	2	1,581,000	47
2242	51러5901	표*균	경기도 남양주시	9	397,200	47
2243	51로7074	정*희	경기도 화성시	7	323,440	47
2244	51머4908	조*희	서울특별시 성북구	7	347,920	47
2245	51머7335	이*태	서울특별시 서초구	3	998,850	47
2246	57루0582	박*주	서울특별시 도봉구	1	959,400	47
2247	57어2048	최*복	경기도 파주시	10	460,960	47
2248	57어7433	주식회**우징	서울특별시 마포구	5	316,240	47
2249	57우5508	박*규	서울특별시 성북구	7	334,430	47
2250	57저2481	김*실	서울특별시 양천구	2	997,480	47
2251	57저5462	김*희	서울특별시 성북구	1	632,400	47
2252	57조2687	주식회**틱스	서울특별시 마포구	2	978,450	47
2253	57주9900	주식회**의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3	440,200	47
2254	58가1456	이*송	서울특별시 강남구	34	1,349,080	47
2255	66노0452	한*성	서울특별시 양천구	7	305,200	47
2256	39라3036	김*진	경기도 용인시	7	331,120	47
2257	39러8239	주식회**이션	서울특별시 마포구	8	321,860	47
2258	39루1003	LE **CH	서울특별시 성북구	2	1,725,000	47
2259	39모0360	국*일	경기도 하남시	5	311,600	47
2260	46소9104	도*준	서울특별시 구로구	5	311,010	47
2261	46오3337	이*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7	336,880	47
2262	46우6442	주식회**어텍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10	456,160	47

등록연번	차량번호	성 명	기본 주소	과태료체납 건수	과태료 금액	발송회차
2263	46저5656	권*진	서울특별시 강북구	3	698,170	47
2264	46조9468	서*진	서울특별시 송파구	4	1,099,560	47
2265	46주1147	최*수	서울특별시 노원구	7	326,800	47
2266	46주8879	(주)**자인	서울특별시 강서구	1	414,210	47
2267	47거4524	농업회**머스	경기도 광주시	3	305,840	47
2268	47고5132	주식회**먼트	서울특별시 강남구	1	353,730	47
2269	47나1754	민*미	서울특별시 성북구	1	661,200	47
2270	47너0322	김*배	서울특별시 강북구	1	639,600	47
2271	53서7629	최*택	서울특별시 강동구	13	581,680	47
2272	53서9556	리첼패**트론	서울특별시 양천구	5	401,040	47
2273	53어0946	이*훈	서울특별시 강북구	6	625,390	47
2274	53어1894	(주)**피탈	서울특별시 마포구	2	314,880	47
2275	53어8702	조*행	경기도 파주시	6	335,020	47
2276	53오4746	박*현	서울특별시 강남구	2	386,990	47
2277	53우8950	김*연	서울특별시 강북구	5	898,000	47
2278	53주0471	김*주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7	317,200	47
2279	54가5127	주) **리아	서울특별시 강남구	1	361,350	47
2280	54거2885	(주)**실업	서울특별시 서초구	7	340,720	47
2281	54고7477	주식회**딩스	서울특별시 성동구	6	309,940	47
2282	61라0307	주식회**건설	서울특별시 강남구	1	632,400	47
2283	61러6425	이*진	경기도 김포시	6	305,690	47
2284	61로1182	김*수	서울특별시 강동구	6	307,760	47
2285	277너6886	주식회**개발	서울특별시 서초구	1	632,400	47
2286	277서3331	주*복	서울특별시 양천구	8	362,720	47
2287	277어1440	WAN**IN	서울특별시 구로구	4	496,770	47
2288	279무7006	양*미	서울특별시 서초구	1	632,400	47
2289	279수5606	이*이	서울특별시 종로구	9	436,560	47
2290	27거5898	송*영	서울특별시 은평구	3	300,080	47
2291	27거7470	원*상	경기도 하남시	6	310,080	47

등록연번	차량번호	성 명	기본 주소	과태료체납 건수	과태료 금액	발송회차
2292	27구5407	김*순	서울특별시 구로구	2	661,710	47
2293	27노2849	이*심	서울특별시 광진구	5	300,560	47
2294	27도3112	주식회**웨어	서울특별시 금천구	2	361,960	47
2295	27도7998	(주)**에스	경기도 연천군	6	319,680	47
2296	27라9259	이*용	경기도 오산시	3	1,082,840	47
2297	27로9065	오제이**주)	서울특별시 서초구	2	747,450	47
2298	31부8020	임*성	서울특별시 성북구	1	646,800	47
2299	31서5849	(주)**범화	인천광역시 서구	7	302,860	47
2300	31수4351	정*봉	서울특별시 금천구	8	317,810	47
2301	31어6453	배*호	서울특별시 노원구	9	403,440	47
2302	31어7600	이*완	서울특별시 송파구	1	352,490	47
2303	31우2143	주식회**리어	서울특별시 강남구	4	358,330	47
2304	31우2680	서*원	경기도 오산시	7	346,480	47
2305	31우5613	백*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11	343,560	47
2306	320보9245	한*희	서울특별시 도봉구	4	373,260	47
2307	320소8905	김*호	경기도 파주시	4	463,770	47
2308	362조9945	보라개**회사	충청남도 보령시	7	348,400	47
2309	363무5441	(주)**아샤	서울특별시 강남구	2	362,160	47
2310	365어7982	주식회**씨엠	서울특별시 강남구	3	762,320	47
2311	365오7080	신*연	서울특별시 강서구	6	303,360	47
2312	366보1964	주식회**까롯	서울특별시 강남구	6	1,203,560	47
2313	366수3170	최*운	경기도 구리시	2	896,950	47
2314	163서2702	주식회**건설	서울특별시 강동구	1	632,400	47
2315	19우0498	(주)**포스	서울특별시 강남구	1	668,400	47
2316	19우5269	주식회**이치	서울특별시 서초구	2	691,360	47
2317	19저7408	강*천	서울특별시 강동구	1	646,800	47
2318	19조4924	김*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21	974,320	47
2319	200나9556	주식회**구독	서울특별시 강서구	1	362,440	47
2320	200조9252	김*진	서울특별시 강남구	1	632,400	47

등록연번	차량번호	성 명	기본 주소	과태료체납 건수	과태료 금액	발송회차
2321	202거8279	서진에**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2	767,520	47
2322	203누2625	나*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3	572,670	47
2323	203무6323	김*훈	경기도 광주시	12	560,640	47
2324	203버8751	서*호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6	301,440	47
2325	241부2653	하*훈	충청북도 영동군	7	305,200	47
2326	244고1694	함*철	서울특별시 성동구	6	322,000	47
2327	244보4365	주식회**티엠	경기도 군포시	7	347,440	47
2328	245고7968	환경에**조합	서울특별시 마포구	1	330,600	47
2329	245라9396	조*진	서울특별시 구로구	7	320,080	47
2330	245마9757	박*성	서울특별시 은평구	7	306,160	47
2331	245서5827	이매진**회사	서울특별시 광진구	1	736,730	47
2332	245어3862	이*지	경기도 안양시	5	312,400	47
2333	283노3416	최*민	서울특별시 성북구	7	322,000	47
2334	284구7852	인프라**회사	서울특별시 송파구	5	792,150	47
2335	285수5609	명*환	서울특별시 양천구	1	632,400	47
2336	286두3720	이*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2	689,440	47
2337	288보9274	주식회**트리	경기도 오산시	6	424,480	47
2338	289루2564	황*호	충청남도 논산시	9	560,720	47
2339	28거4919	장*희	서울특별시 노원구	6	307,060	47
2340	28거9737	정*화	서울특별시 양천구	1	646,800	47
2341	28나1579	박*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3	864,600	47
2342	28너9004	선*배	서울특별시 양천구	6	824,940	47
2343	42더6568	성*경	서울특별시 은평구	5	490,640	47
2344	42도0622	조*석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5	859,580	47
2345	50누6382	배*석	대전광역시 유성구	5	303,920	47
2346	50다8211	윤*은	경기도 수원시	4	356,480	47
2347	50두0419	홍*정	서울특별시 성북구	5	379,620	47
2348	50로4453	다나넥**주)	서울특별시 서초구	5	850,960	47
2349	50루6099	(주)**물류	인천광역시 중구	6	327,840	47

등록연번	차량번호	성 명	기본 주소	과태료체납 건수	과태료 금액	발송회차
2350	50루7526	배*하	서울특별시 서초구	8	353,600	47
2351	50루8731	신*철	서울특별시 성북구	2	697,600	47
2352	50모8464	허*호	경기도 동두천시	3	302,480	47
2353	50무2849	조*섭	서울특별시 은평구	2	1,034,900	47
2354	50무3355	이*정	서울특별시 양천구	9	343,680	47
2355	56로9223	(주)**상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1	639,600	47
2356	56마1044	온유농**회사	충청남도 아산시	7	321,700	47
2357	56버4297	주식회**앤씨	서울특별시 노원구	3	675,900	47
2358	56부9143	임*택	경기도 화성시	8	308,640	47
2359	56서9203	주식회**블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1	348,570	47
2360	56소2323	김*균	서울특별시 서초구	2	710,080	47
2361	56소8896	김*민	서울특별시 서초구	6	312,480	47
2362	56소9193	주식회**건설	서울특별시 관악구	2	820,080	47
2363	56수9988	김*화	서울특별시 서초구	1	646,800	47
2364	56우4434	로그인**주)	서울특별시 용산구	1	682,800	47
2365	64조4971	주식회**딩스	서울특별시 서초구	11	1,072,590	47
2366	64주9962	주식회**정민	서울특별시 종로구	6	851,840	47
2367	65거9043	정*성	인천광역시 강화군	6	1,195,200	47
2368	65고4231	(주)**텐션	서울특별시 강남구	1	646,800	47
2369	65구9082	정*국	서울특별시 노원구	7	352,440	47
2370	65도4115	김*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4	306,720	47
2371	66노1043	(주)**벅스	서울특별시 강서구	7	347,720	47
2372	66누1700	주*정	전라남도 여수시	5	304,880	47
2373	66라4931	문*찬	서울특별시 서초구	4	798,220	47
2374	66러4810	한*금	경기도 시흥시	4	1,738,280	47
2375	66루1727	조*정	서울특별시 강북구	1	439,510	47
2376	66루4234	김*선	경기도 포천시	4	330,560	47
2377	74거4998	NGU**EN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10	534,800	47
2378	74거7611	삼다개**회사	서울특별시 강동구	5	305,500	47

등록연번	차량번호	성 명	기본 주소	과태료체납 건수	과태료 금액	발송회차
2379	74너6032	신*주	서울특별시 서초구	1	639,600	47
2380	74두6493	신*자	서울특별시 노원구	4	371,400	47
2381	74모8617	황*현	경기도 의정부시	6	349,200	47
2382	74서1078	형*진	서울특별시 강남구	2	1,135,550	47
2383	74서2418	조*훈	서울특별시 종로구	4	313,800	47
2384	74소9316	김*천	서울특별시 도봉구	1	383,760	47
2385	74조3388	김*태	서울특별시 종로구	3	1,268,290	47
2386	75고4602	이*우	서울특별시 강북구	2	774,720	47
2387	823러3139	이*석	서울특별시 강남구	2	676,480	47
2388	824오3347	정*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9	464,880	47
2389	824주8166	홍*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6	300,480	47
2390	825조3350	유한회**처스	서울특별시 송파구	1	639,600	47
2391	825주9927	김*식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2	685,600	47
2392	827마6345	이*도	서울특별시 양천구	1	632,400	47
2393	827마8565	원*성	서울특별시 양천구	2	448,890	47
2394	828나4949	박*석	서울특별시 강북구	1	639,600	47
2395	82가9771	거성축**주)	대구광역시 달성군	2	307,680	47
2396	61로5886	이*행	서울특별시 강남구	2	702,400	47
2397	61로9795	장*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1	639,600	47
2398	61모7442	강*옥	대전광역시 동구	7	337,840	47
2399	61무0302	홍*진	서울특별시 은평구	2	1,253,410	47
2400	61버1497	손*훈	서울특별시 송파구	6	847,600	47
2401	61버8135	(주)**6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1	319,800	47
2402	61보4665	주식회**룩스	서울특별시 중구	1	632,400	47
2403	68러4083	김*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12	522,240	47
2404	68로4338	농업회**회사	경기도 화성시	9	394,320	47
2405	68루4261	송*호	서울특별시 노원구	1	661,200	47
2406	68모4145	SHA**AM	서울특별시 양천구	2	649,650	47
2407	68버8381	박*희	서울특별시 구로구	5	301,840	47

등록연번	차량번호	성 명	기본 주소	과태료체납 건수	과태료 금액	발송회차
2408	68서3731	LIJ**YU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5	325,840	47
2409	68소4294	정*훈	경기도 안산시	6	303,460	47
2410	68수3515	이*화	서울특별시 서초구	1	632,400	47
2411	68어8399	비엔엠**주)	경기도 김포시	10	452,320	47
2412	802거6399	워너비**회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2	689,730	47
2413	802나7433	김*희	서울특별시 구로구	4	432,690	47
2414	804누1078	서*화	서울특별시 노원구	6	301,480	47
2415	804누6560	이*범	서울특별시 노원구	1	646,800	47
2416	804다3534	황*호	인천광역시 계양구	3	389,520	47
2417	804더5907	백오토**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1	639,600	47
2418	804저8254	정*영	충청남도 부여군	7	304,720	47
2419	805나3581	(주)**성영	경기도 김포시	6	309,600	47
2420	805버4037	이*준	충청남도 당진시	6	310,560	47
2421	83모9521	이*환	서울특별시 은평구	10	444,640	47
2422	83무7255	이*춘	경기도 하남시	21	1,841,200	47
2423	83버7167	박*훈	서울특별시 강동구	2	316,600	47
2424	368루1780	동익개**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1	639,600	47
2425	368무8675	KHI**RA	경기도 평택시	7	397,360	47
2426	368조1074	김*우	인천광역시 남동구	6	301,920	47
2427	369고7927	김*린	서울특별시 구로구	1	632,400	47
2428	369누6618	조*원	서울특별시 중랑구	6	302,340	47
2429	40러4048	한*태	서울특별시 강남구	5	1,787,500	47
2430	40루8738	변*미	경기도 화성시	5	300,700	47
2431	40마0167	슈미드**회사	서울특별시 송파구	1	632,400	47
2432	40머0374	(주)**엠씨	서울특별시 서초구	2	369,250	47
2433	40모3388	최*섭	서울특별시 송파구	4	839,660	47
2434	40보7296	NGU**EU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5	524,790	47
2435	40부0216	주식회**대일	경상남도 통영시	5	309,040	47
2436	40소9019	박*준	서울특별시 성북구	2	974,070	47

등록연번	차량번호	성 명	기본 주소	과태료체납 건수	과태료 금액	발송회차
2437	48러1182	하*우	경기도 평택시	7	365,200	47
2438	48러1254	최*수	서울특별시 구로구	3	695,940	47
2439	48러1840	김*애	경기도 수원시	1	323,400	47
2440	48마8055	(주)**지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	1,019,320	47
2441	48머4303	홍*원	경기도 시흥시	7	312,400	47
2442	48모5002	정*구	서울특별시 구로구	2	668,230	47
2443	48부2383	CHU**UL	인천광역시 부평구	2	444,230	47
2444	48소3099	김*윤	서울특별시 강동구	1	632,400	47
2445	48소8105	문*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5	1,753,080	47
2446	55고5952	주식회**에스	서울특별시 강남구	3	397,120	47
2447	55구9145	(주)**투어	서울특별시 마포구	2	689,920	47
2448	55나1094	(사)**협회	서울특별시 중구	4	377,550	47
2449	55나1222	민*영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3	915,070	47
2450	55너6847	케이아**주)	서울특별시 동작구	3	1,067,550	47
2451	55노6479	김*생	서울특별시 강남구	2	1,023,880	47
2452	55더2553	김*술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6	305,960	47
2453	55도2880	곽*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1	384,830	47
2454	32러9953	류*일	서울특별시 강서구	5	300,560	47
2455	32무6600	이*리	서울특별시 강동구	1	639,600	47
2456	32버5302	장*웅	서울특별시 강동구	3	2,000,680	47
2457	32버6021	김*정	경기도 고양시	4	300,100	47
2458	32부7187	김*선	경기도 파주시	6	304,800	47
2459	32서5836	황*현	서울특별시 노원구	6	304,420	47
2460	32서8200	최*선	서울특별시 은평구	2	1,609,800	47
2461	32우4148	주식회**어링	경기도 안양시	7	316,720	47
2462	36우2121	김*평	충청북도 음성군	6	344,300	47
2463	36저5311	VAK**BO	서울특별시 성북구	3	731,120	47
2464	36하7091	알라딘**회사	경기도 화성시	6	309,120	47
2465	36호2362	(주)**지점	경기도 양주시	10	411,820	47

등록연번	차량번호	성 명	기본 주소	과태료체납 건수	과태료 금액	발송회차
2466	370나9390	이*진	경기도 고양시	1	793,650	47
2467	370더5629	이*진	경기도 의정부시	5	312,560	47
2468	371나4517	(주)**랙트	서울특별시 노원구	20	1,246,240	47
2469	373누4110	장*영	서울특별시 중구	1	970,200	47
2470	373로1836	김*희	경기도 고양시	7	355,600	47
2471	374가6577	김*림	서울특별시 구로구	1	632,400	47
2472	374가8101	주식회**트카	서울특별시 금천구	3	505,110	47
2473	374거3163	노*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7	323,920	47
2474	41더6887	민*홍	서울특별시 송파구	2	765,410	47
2475	41도5075	황*정	경기도 광주시	7	333,520	47
2476	41도8936	노*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4	854,650	47
2477	41라7016	황*령	서울특별시 은평구	1	970,200	47
2478	41라8058	한*희	서울특별시 강남구	3	806,520	47
2479	41러0606	강*남	서울특별시 강동구	5	323,440	47
2480	41러1037	정*교	서울특별시 강남구	10	1,073,550	47
2481	41마0931	김*민	서울특별시 노원구	2	1,073,080	47
2482	41머3086	주식회**위드	서울특별시 강남구	7	892,080	47
2483	65라1972	(주)**밀리	서울특별시 강남구	1	639,600	47
2484	65루2912	이*희	서울특별시 송파구	1	646,800	47
2485	65모5802	주식회**피알	서울특별시 강남구	1	646,800	47
2486	72소8620	(주)**개발	서울특별시 송파구	1	668,400	47
2487	72수5158	김*선	서울특별시 은평구	2	716,900	47
2488	72주2611	김*기	경기도 용인시	3	854,260	47
2489	72주9657	김*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6	303,370	47
2490	72허5620	주식회**머스	서울특별시 성동구	1	646,800	47
2491	73고5885	경남투**주)	부산광역시 동래구	5	310,900	47
2492	73고8335	(주)**유엘	서울특별시 구로구	1	639,600	47
2493	73구5749	최*철	인천광역시 부평구	1	948,600	47
2494	73너9864	(주)**조단	서울특별시 동작구	8	466,220	47

등록연번	차량번호	성 명	기본 주소	과태료체납 건수	과태료 금액	발송회차
2495	73누6932	윤*성	서울특별시 송파구	3	751,620	47
2496	73누7113	(주)**엔지	인천광역시 남동구	4	305,800	47
2497	81라7631	주식회**너스	서울특별시 중랑구	5	817,870	47
2498	81러8094	(주)**앤오	경상남도 창원시	8	341,600	47
2499	81로5550	주식회**유통	서울특별시 은평구	9	724,680	47
2500	81로5709	(주)**단열	인천광역시 남동구	3	309,040	47
2501	81마4534	윤*운	서울특별시 양천구	1	639,600	47
2502	81머6509	라*현	서울특별시 양천구	2	329,640	47
2503	81무1780	황*문	경기도 성남시	5	476,340	47
2504	81버9974	(주)**기술	서울특별시 성동구	4	300,560	47
2505	82거2055	곽*원	서울특별시 송파구	1	646,800	47
2506	87노9437	한성대**회사	서울특별시 성북구	3	733,520	47
2507	87다7529	김*옥	경기도 성남시	5	300,560	47
2508	87더8881	주식회**드윤	경기도 의정부시	10	435,500	47
2509	87두5881	(주)**앤씨	경기도 군포시	5	300,340	47
2510	87두6667	백*현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7	303,760	47
2511	87라6127	주식회**올팩	서울특별시 동작구	3	729,680	47
2512	87러8294	오*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4	375,900	47
2513	87루8231	정*영	서울특별시 종로구	3	728,720	47
2514	87루8363	도원환**주)	서울특별시 도봉구	1	639,600	47
2515	87마0332	주식회**점)	서울특별시 성동구	1	646,800	47
2516	87마4471	김*환	서울특별시 노원구	9	1,007,120	47
2517	04가1404	안*군	서울특별시 성북구	8	344,000	47
2518	04거1665	박*표	서울특별시 송파구	1	632,400	47
2519	04고0941	김민**김민	경기도 수원시	4	308,160	47
2520	04너2299	이*일	서울특별시 노원구	7	318,160	47
2521	04다0649	(주)**웍스	서울특별시 금천구	2	692,320	47
2522	04도3376	JIN**AN	서울특별시 구로구	2	654,150	47
2523	04두6994	(주)**산업	서울특별시 은평구	2	649,830	47

등록연번	차량번호	성 명	기본 주소	과태료체납 건수	과태료 금액	발송회차
2524	04마4340	조*수	서울특별시 구로구	2	967,470	47
2525	04보2527	지*연	서울특별시 성북구	1	726,000	47
2526	10보4545	이*미	서울특별시 은평구	3	733,040	47
2527	10보8555	주식회**산업	서울특별시 강남구	1	646,800	47
2528	10소2599	문*석	서울특별시 강남구	1	639,600	47
2529	10주4384	정*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27	1,160,400	47
2530	10주6157	이엽**이엽	경기도 성남시	8	392,200	47
2531	10호2373	초이스**주)	경기도 성남시	19	820,720	47
2532	110거8830	임*영	서울특별시 노원구	7	328,720	47
2533	110고3835	임*숙	광주광역시 북구	5	339,760	47
2534	110누7508	천*득	서울특별시 중랑구	3	755,700	47
2535	111가5843	김*영	서울특별시 노원구	1	632,400	47
2536	141너6210	윤*진	서울특별시 강남구	2	429,650	47
2537	83버7770	서*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5	300,080	47
2538	83보7313	(주)**테일	경기도 부천시	35	485,000	47
2539	83부2961	손혁**손혁	서울특별시 성북구	2	458,460	47
2540	83소4347	정*환	서울특별시 송파구	7	303,510	47
2541	83소6026	(주)**니처	서울특별시 관악구	1	639,600	47
2542	83소8508	박*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7	334,480	47
2543	89수3541	티엔지**회사	경기도 화성시	5	302,960	47
2544	89저3069	이*윤	서울특별시 구로구	3	738,800	47
2545	89저7593	주식회**물산	경기도 화성시	21	901,680	47
2546	90나3965	유*환	서울특별시 송파구	1	639,600	47
2547	90노0869	김*순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6	309,600	47
2548	90누1725	(주)**건설	서울특별시 마포구	4	844,800	47
2549	90누3118	주식회**기업	서울특별시 성동구	1	639,600	47
2550	07무9690	DO **이	대구광역시 북구	1	305,270	47
2551	07버0141	서초제**금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1	632,400	47
2552	07우0482	(주)**전기	서울특별시 성동구	4	765,350	47

등록연번	차량번호	성 명	기본 주소	과태료체납 건수	과태료 금액	발송회차
2553	07조4069	이*관	충청북도 영동군	3	323,760	47
2554	07주0908	한*길	경기도 용인시	7	340,720	47
2555	08가0193	김*근	서울특별시 강동구	7	310,110	47
2556	123보4678	김*선	서울특별시 강동구	1	866,640	47
2557	123우2103	송*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1	948,600	47
2558	124도8830	주식회**먼트	서울특별시 용산구	1	363,630	47
2559	124라4777	주식회**더직	서울특별시 성동구	2	689,920	47
2560	124어1668	CUI**IE	경기도 시흥시	10	558,640	47
2561	124오9666	(주)**앤씨	서울특별시 성북구	9	355,500	47
2562	55도4718	진*희	경기도 의정부시	7	373,820	47
2563	55도7084	임*남	서울특별시 구로구	2	684,160	47
2564	55도9458	주식회**스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3	781,640	47
2565	55두5525	최*열	서울특별시 동작구	7	398,400	47
2566	62버0595	최*용	서울특별시 종로구	2	703,360	47
2567	62버7250	임*수	서울특별시 송파구	2	309,920	47
2568	62버8543	노*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5	302,960	47
2569	62서0700	이*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12	527,980	47
2570	62소0485	(주)**스팜	서울특별시 서초구	5	731,460	47
2571	62수2636	주식회**에스	서울특별시 강남구	5	1,191,260	47
2572	62어4266	김*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6	345,120	47
2573	62우4574	주식회**엔티	서울특별시 송파구	2	689,440	47
2574	69저6753	세기산**회사	서울특별시 금천구	1	959,400	47
2575	700하2901	성원렌**주)	서울특별시 중구	5	309,120	47
2576	701노7556	주식회**시블	서울특별시 강남구	1	639,600	47
2577	704오7378	바스그**회사	서울특별시 송파구	10	587,660	47
2578	705어1074	박*락	서울특별시 강북구	3	769,460	47
2579	70가2539	이*수	서울특별시 강남구	2	1,057,700	47
2580	70고8598	예스드**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3	1,096,600	47
2581	70구9034	최*규	서울특별시 양천구	7	354,930	47

등록연번	차량번호	성 명	기본 주소	과태료체납 건수	과태료 금액	발송회차
2582	70누5459	윤*근	서울특별시 은평구	2	1,581,000	47
2583	70더3620	이*섭	서울특별시 노원구	1	502,750	47
2584	70더8096	김*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1	632,400	47
2585	80라6361	주식회**토건	서울특별시 양천구	3	1,049,000	47
2586	80러2029	박*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2	669,810	47
2587	80러2569	주-한**환경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1	603,680	47
2588	80로2667	안*현	서울특별시 은평구	3	497,500	47
2589	49라7078	최*주	서울특별시 서초구	14	687,020	47
2590	49로3266	우*제	서울특별시 강동구	1	534,370	47
2591	49루2032	(주)**딩스	서울특별시 강남구	1	639,600	47
2592	49머6095	LIM**JI	서울특별시 구로구	17	1,863,830	47
2593	49버7903	주식회**이트	서울특별시 송파구	2	666,210	47
2594	49부5557	김*희	서울특별시 강북구	1	301,840	47
2595	49부9147	김*정	서울특별시 성북구	3	304,280	47
2596	49부9901	주식회**앤티	서울특별시 서초구	4	792,000	47
2597	49서4202	장*희	서울특별시 노원구	2	383,370	47
2598	55소9745	이*성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2	744,500	47
2599	55어3228	김*현	서울특별시 강남구	4	519,450	47
2600	55오0747	박*훈	서울특별시 송파구	1	668,400	47
2601	55주8552	송*현	경기도 수원시	7	311,920	47
2602	56가6599	안*구	서울특별시 강남구	3	1,687,480	47
2603	56고8300	오*선	경기도 고양시	2	300,480	47
2604	56구4190	HUW**EI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8	362,240	47
2605	56구7055	최*문	경기도 성남시	6	351,320	47
2606	56너2969	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1	305,140	47
2607	63저4394	(주)**토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8	393,440	47
2608	63조2664	최*희	경기도 하남시	2	300,480	47
2609	64가1809	백*진	서울특별시 강남구	2	991,720	47
2610	64구4663	주식회**한랩	경기도 의정부시	8	446,660	47

등록연번	차량번호	성 명	기본 주소	과태료체납 건수	과태료 금액	발송회차
2611	64라0171	오*현	서울특별시 양천구	1	639,600	47
2612	64머0265	이*연	경기도 시흥시	8	341,120	47
2613	71라9788	퍼**단	서울특별시 광진구	7	471,340	47
2614	71머5407	JIN**EN	서울특별시 구로구	1	639,600	47
2615	71버0683	주식회**테크	경기도 수원시	10	543,800	47
2616	81부7361	양*우	서울특별시 강북구	3	316,240	47
2617	81소1140	세원정**주)	서울특별시 관악구	4	811,520	47
2618	86너0269	홍*연	서울특별시 강동구	1	639,600	47
2619	86너5518	팔방건**열)	서울특별시 양천구	1	948,600	47
2620	86노0822	조*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1	646,800	47
2621	86마0372	오*석	서울특별시 노원구	1	646,800	47
2622	86모3808	주식회**유통	서울특별시 강북구	4	301,920	47
2623	86모5769	주식회**앤씨	서울특별시 강남구	3	325,950	47
2624	02오5432	김*락	서울특별시 양천구	1	639,600	47
2625	02저6244	어스민**회사	서울특별시 용산구	8	349,280	47
2626	03고1899	비마에**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49	5,108,680	47
2627	03구1000	임*현	경기도 성남시	9	449,520	47
2628	03노2592	(주)**이데	인천광역시 남동구	8	452,800	47
2629	03다3373	박*주	서울특별시 성북구	1	632,400	47
2630	03더6904	(주)**현대	서울특별시 강남구	1	646,800	47
2631	03두8803	노*성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3	762,320	47
2632	03라8854	박*태	서울특별시 강남구	1	302,430	47
2633	03러8723	강*동	경기도 양평군	2	331,890	47
2634	106어7034	이*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1	948,600	47
2635	107노5036	지음종**주)	서울특별시 서초구	3	768,080	47
2636	107노8255	JIA**HU	서울특별시 동작구	18	759,950	47
2637	107라7808	주식회**그룹	서울특별시 강서구	1	632,400	47
2638	107버2066	조*혁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6	347,360	47
2639	141다4137	김*원	서울특별시 강동구	4	525,010	47

등록연번	차량번호	성 명	기본 주소	과태료체납 건수	과태료 금액	발송회차
2640	141어4753	JIN**NG	서울특별시 구로구	1	369,950	47
2641	142고1598	대성엘**주)	서울특별시 동작구	1	646,800	47
2642	142도7376	이*인	대전광역시 유성구	8	382,880	47
2643	142라5305	조*희	서울특별시 구로구	2	1,254,840	47
2644	142우6356	서*석	경기도 시흥시	1	654,000	47
2645	142주2744	이*진	서울특별시 송파구	5	879,450	47
2646	143누7423	박*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9	473,520	47
2647	143소3250	강*란	서울특별시 강북구	2	706,240	47
2648	172머7462	용*숙	서울특별시 구로구	12	1,084,820	47
2649	172모2337	김*한	충청북도 제천시	7	326,760	47
2650	173가9117	주식회**닝썬	경기도 안산시	6	556,300	47
2651	173노9339	조*희	서울특별시 강북구	4	300,440	47
2652	173다4157	유*민	서울특별시 강동구	26	1,181,120	47
2653	174누1059	김*래	서울특별시 강남구	6	359,360	47
2654	174마2567	(주)**아이	서울특별시 강서구	1	632,400	47
2655	174무3964	여*진	경기도 부천시	4	355,980	47
2656	174보9397	최*성	서울특별시 성동구	21	1,070,320	47
2657	21두0323	김*영	경기도 광주시	1	632,400	47
2658	21두8449	이*묵	서울특별시 양천구	1	352,490	47
2659	21라5473	장*현	서울특별시 구로구	2	517,790	47
2660	21러0381	주)다**에이	서울특별시 강남구	2	826,650	47
2661	21마2525	주식회**퍼니	서울특별시 강남구	3	390,960	47
2662	21모8005	방*훈	경기도 부천시	5	306,060	47
2663	21무7081	전*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7	328,720	47
2664	서울90바2959	주식회**레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1	646,800	47
2665	서울90바2967	주식회**레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1	646,800	47
2666	서울90바2970	주식회**레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1	639,600	47
2667	서울90바2973	주식회**티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3	744,080	47
2668	서울90바2974	주식회**레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1	646,800	47

등록연번	차량번호	성 명	기본 주소	과태료체납 건수	과태료 금액	발송회차
2669	서울90바3351	에이제**주)	서울특별시 송파구	1	632,400	47
2670	서울90바3738	달리박**회사	서울특별시 마포구	12	508,800	47
2671	124조8444	보람앤**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1	646,800	47
2672	124주5144	김*구	경기도 안양시	1	732,330	47
2673	125더8190	JIN**HI	서울특별시 구로구	11	481,520	47
2674	152버8535	노*석	서울특별시 구로구	4	328,320	47
2675	153머4932	주식회**너스	서울특별시 서초구	1	639,600	47
2676	153머9690	신*식	서울특별시 강남구	10	695,250	47
2677	153서3557	정*교	서울특별시 강동구	1	970,200	47
2678	153오7143	엄*민	경기도 평택시	8	1,328,670	47
2679	153조5147	주식회**엔씨	서울특별시 노원구	5	318,640	47
2680	154보3668	네오쉬**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4	612,210	47
2681	154주3551	주식회**리아	서울특별시 금천구	2	353,600	47
2682	189보2810	이*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1	632,400	47
2683	189어9673	김*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1	332,010	47
2684	18가3899	유*운	서울특별시 강남구	4	381,840	47
2685	18가7139	강*환	서울특별시 관악구	15	575,040	47
2686	18노8852	전*경	서울특별시 강남구	1	774,690	47
2687	18더4041	장*우	광주광역시 남구	4	1,111,560	47
2688	18도2003	복*수	서울특별시 서초구	3	779,600	47
2689	18라0337	김*희	서울특별시 노원구	1	646,800	47
2690	18라8501	주식회**리아	경기도 안양시	6	303,360	47
2691	22주8307	(주)**딩스	서울특별시 강남구	4	302,040	47
2692	230노7642	최*원	서울특별시 강북구	7	314,320	47
2693	230모3814	강*진	경기도 여주시	6	308,160	47
2694	230조7592	이*우	경기도 안산시	1	882,190	47
2695	231무4611	길*숙	경기도 김포시	8	374,720	47
2696	231부2898	김*섭	서울특별시 서초구	1	639,600	47
2697	231조3679	서*휘	서울특별시 종로구	2	737,130	47

등록연번	차량번호	성 명	기본 주소	과태료체납 건수	과태료 금액	발송회차
2698	232로1853	심훈**심훈	서울특별시 송파구	2	1,595,400	47
2699	80머0360	박*환	서울특별시 은평구	1	639,600	47
2700	80무3184	주식회**기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1	948,600	47
2701	80무3255	주식회**네존	서울특별시 금천구	2	680,800	47
2702	80무7340	권*형	경기도 의정부시	6	315,840	47
2703	80무7562	(주)**크린	서울특별시 중랑구	7	312,480	47
2704	80무7569	박*열	서울특별시 강동구	1	632,400	47
2705	84머0900	성*용	경기도 하남시	7	325,360	47
2706	84모4392	주식회**관리	서울특별시 중랑구	1	646,800	47
2707	84무0504	주식회**고움	경기도 양주시	4	304,320	47
2708	84버3785	문*우	서울특별시 양천구	6	301,920	47
2709	84보0917	김*백	서울특별시 양천구	3	776,160	47
2710	84보5677	박*석	서울특별시 성북구	1	639,600	47
2711	84부0902	정*원	경기도 성남시	5	303,920	47
2712	84부5539	주식회**자인	서울특별시 강서구	11	470,960	47
2713	84서4847	송*윤	서울특별시 종로구	2	415,400	47
2714	84소3786	이호산**주)	인천광역시 남동구	6	380,460	47
2715	84소6828	김*민	서울특별시 송파구	3	732,080	47
2716	84수0533	정*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3	350,800	47
2717	90마6480	이지전**회사	경기도 수원시	6	384,320	47
2718	90서6268	이*동	경기도 의정부시	4	311,040	47
2719	90수3233	(주)**공사	경기도 광명시	5	327,280	47
2720	90수8432	주식회**딩스	서울특별시 서초구	1	632,400	47
2721	90어6770	김*숙	서울특별시 금천구	6	310,560	47
2722	90조0392	전*철	서울특별시 강북구	5	763,580	47
2723	90조1236	영농조**이랴	경기도 남양주시	5	305,840	47
2724	91거6342	이*봉	경기도 김포시	13	607,800	47
2725	08어2379	주식회**상제	서울특별시 광진구	2	733,080	47
2726	08오4196	손*락	서울특별시 강남구	4	1,070,150	47

등록연번	차량번호	성 명	기본 주소	과태료체납 건수	과태료 금액	발송회차
2727	71조1279	부동산**회사	서울특별시 송파구	2	312,960	47
2728	727우2418	김*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13	691,700	47
2729	72거4196	서*석	인천광역시 서구	4	339,640	47
2730	72나5919	SHE**HE	서울특별시 구로구	1	632,400	47
2731	815수3457	주식회**아이	서울특별시 중구	7	300,880	47
2732	817구8712	박*신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8	356,480	47
2733	817두9269	주식회**케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2	1,599,000	47
2734	817서3923	김*원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7	319,120	47
2735	819버1528	성*철	경기도 의정부시	3	379,440	47
2736	819부4328	금성유**주)	서울특별시 성동구	10	438,880	47
2737	81거0604	은하건**회사	서울특별시 마포구	6	374,240	47
2738	81거2646	이*선	서울특별시 노원구	2	596,480	47
2739	81고6282	김*기	경기도 안성시	5	303,440	47
2740	81고8089	신*자	서울특별시 강북구	6	389,680	47
2741	85로1021	이*태	서울특별시 강북구	2	308,120	47
2742	85루0191	이*용	서울특별시 송파구	1	661,200	47
2743	85모1973	이*하	서울특별시 도봉구	15	652,080	47
2744	85모3658	(주)**시스	서울특별시 은평구	2	693,760	47
2745	85모4782	김*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8	329,780	47
2746	85보9924	(주)**스타	대전광역시 서구	7	652,080	47
2747	85부0647	김*균	경기도 의왕시	3	386,640	47
2748	85부2902	마오주**회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2	682,720	47
2749	85부3284	주식회**바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1	632,400	47
2750	85부5513	문*수	서울특별시 은평구	6	366,080	47
2751	107버7043	임*선	서울특별시 도봉구	4	311,550	47
2752	108소7328	임*엽	서울특별시 서초구	7	395,560	47
2753	13구5590	큐브산**회사	경기도 고양시	5	349,840	47
2754	13누7701	노*나	경기도 성남시	5	323,120	47
2755	13더3293	주식회**관리	서울특별시 강남구	1	471,130	47

등록연번	차량번호	성 명	기본 주소	과태료체납 건수	과태료 금액	발송회차
2756	13더7393	한*수	서울특별시 동작구	22	942,880	47
2757	13도5633	김*영	서울특별시 구로구	4	797,760	47
2758	13러2187	방*혁	인천광역시 연수구	4	1,119,240	47
2759	13로5665	명*천	서울특별시 강동구	8	943,840	47
2760	16도5611	(주)**그룹	서울특별시 강남구	3	741,680	47
2761	16두7299	이*진	서울특별시 양천구	4	1,691,240	47
2762	16무2071	최*광	서울특별시 강북구	4	1,249,640	47
2763	16버4277	양*석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1	733,200	47
2764	16보8143	주식회**기술	경기도 성남시	4	505,920	47
2765	16소1109	주식회**스트	경기도 김포시	4	303,920	47
2766	20러6874	이*수	서울특별시 강남구	8	362,240	47
2767	20로1565	김*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1	646,800	47
2768	20로3503	이*희	서울특별시 성북구	2	386,250	47
2769	20로9863	조*남	서울특별시 양천구	4	1,240,020	47
2770	20마9684	정*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1	341,120	47
2771	20모5085	오*감	서울특별시 송파구	7	306,640	47
2772	20무0397	윤*배	서울특별시 양천구	1	379,440	47
2773	20버1217	주식회**개발	서울특별시 서초구	2	675,040	47
2774	20보6119	이*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1	1,045,800	47
2775	20서0285	최*훈	경기도 구리시	1	632,400	47
2776	24로2761	전성**전성	서울특별시 도봉구	1	632,400	47
2777	21소0846	김*진	경기도 남양주시	7	323,440	47
2778	21어0252	송*현	서울특별시 강남구	3	1,655,320	47
2779	251마5747	주식회**중개	서울특별시 강동구	2	357,210	47
2780	251소9724	주식회**지오	서울특별시 용산구	1	959,400	47
2781	252마4989	(주)**셔널	경기도 화성시	7	391,440	47
2782	252머3934	이*진	서울특별시 양천구	1	948,600	47
2783	252부9999	임*분	서울특별시 강남구	1	970,200	47
2784	255거6482	최민**최민	서울특별시 양천구	9	449,520	47

등록연번	차량번호	성 명	기본 주소	과태료체납 건수	과태료 금액	발송회차
2785	255소1676	이*희	서울특별시 은평구	4	318,720	47
2786	29무8133	정*훈	경기도 의정부시	5	307,760	47
2787	29보8559	원*복	서울특별시 은평구	2	331,630	47
2788	29부6721	서*숙	서울특별시 중랑구	12	536,160	47
2789	29서5195	여*환	서울특별시 구로구	1	654,000	47
2790	29소3695	최*향	서울특별시 양천구	5	1,055,600	47
2791	29오0248	이*봉	서울특별시 강북구	5	861,040	47
2792	29오5644	박*미	서울특별시 종로구	22	1,071,360	47
2793	29우0238	주식회**스톤	서울특별시 용산구	1	646,800	47
2794	29저9268	김*자	서울특별시 구로구	1	639,600	47
2795	29조2762	석경영**법인	경기도 화성시	5	311,920	47
2796	29호5024	(주)**렌탈	서울특별시 노원구	1	646,800	47
2797	33조7169	CUI**UN	경기도 시흥시	12	513,600	47
2798	340버7700	최*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6	306,240	47
2799	342다2484	주식회**치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1	632,400	47
2800	342다6563	주식회**로벌	서울특별시 강남구	2	658,650	47
2801	343두8641	주식회**30	서울특별시 용산구	1	468,930	47
2802	343머8055	LIZ**HE	경기도 시흥시	6	347,840	47
2803	344구5442	이*경	서울특별시 강동구	7	317,200	47
2804	344다8193	김*태	서울특별시 구로구	9	850,570	47
2805	345더5636	김*진	경기도 파주시	9	392,880	47
2806	345부5903	한*곤	경기도 평택시	15	665,040	47
2807	345수6444	이*영	서울특별시 노원구	6	1,812,760	47
2808	서울90바6961	(주)**로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7	396,720	47
2809	96조7864	이호**이호	서울특별시 성동구	6	327,840	47
2810	97고7122	김*진	서울특별시 은평구	1	632,400	47
2811	97너0324	주식회**엔씨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3	1,099,400	47
2812	97너5097	최*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6	319,200	47
2813	97노7475	문*학	경기도 고양시	2	692,320	47

등록연번	차량번호	성 명	기본 주소	과태료체납 건수	과태료 금액	발송회차
2814	97누4082	노*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7	342,160	47
2815	97누7358	정*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2	710,560	47
2816	97두0402	김*영	서울특별시 도봉구	1	639,600	47
2817	97러8414	JIN**UN	서울특별시 구로구	2	713,920	47
2818	97로7079	김*철	서울특별시 성북구	1	639,600	47
2819	97머0550	주식회**엔씨	경기도 남양주시	4	436,960	47
2820	서울90바7058	주식회**지스	서울특별시 관악구	3	736,400	47
2821	서울90바7070	주식회**지스	서울특별시 관악구	4	578,800	47
2822	서울90바8222	큐런네**회사	서울특별시 강서구	5	321,360	47
2823	서울90바8330	(주)**삼호	서울특별시 중구	1	639,600	47
2824	서울98바5299	김*성	서울특별시 양천구	1	646,800	47
2825	서울98바7218	한민통**주)	서울특별시 양천구	1	400,520	47
2826	서울98바7906	(주)**특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4	623,460	47
2827	서울98사1505	최*우	서울특별시 강북구	3	1,169,090	47
2828	서울98사4589	안*영	서울특별시 강북구	1	318,710	47
2829	서울98사5878	주식회**지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1	409,640	47
2830	서울98사7774	한민통**주)	서울특별시 양천구	1	632,400	47
2831	인천30바3290	박*남	서울특별시 마포구	6	305,140	47
2832	97모5532	임*봉	서울특별시 노원구	3	401,780	47
2833	97보0867	누리종**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1	970,200	47
2834	97보3297	로지포**회사	서울특별시 성동구	1	646,800	47
2835	97보4360	강*훈	서울특별시 송파구	1	646,800	47
2836	232모2201	이*분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6	300,480	47
2837	26무4118	권*진	서울특별시 강북구	1	646,800	47
2838	26버0292	신*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1	632,400	47
2839	26버9712	(주)**이딩	서울특별시 금천구	2	693,280	47
2840	26보0594	강*재	경기도 수원시	7	370,880	47
2841	26저3726	정*모	경기도 파주시	8	373,020	47
2842	26저3817	QUA**HU	서울특별시 성북구	2	678,270	47

등록연번	차량번호	성 명	기본 주소	과태료체납 건수	과태료 금액	발송회차
2843	26조2554	아무주**회사	서울특별시 강동구	10	450,400	47
2844	314더8894	최*례	서울특별시 강북구	30	3,664,690	47
2845	315가1638	양*혜	경기도 하남시	6	351,680	47
2846	315다8116	QIA**NG	서울특별시 성북구	1	803,710	47
2847	316부4254	안*애	서울특별시 양천구	1	646,800	47
2848	317거7241	이*준	서울특별시 강남구	1	991,800	47
2849	317서7411	(주)**바이	서울특별시 송파구	4	394,790	47
2850	319모2262	이*현	서울특별시 강남구	1	337,280	47
2851	31거9333	조*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4	1,199,960	47
2852	35마1712	최*욱	서울특별시 강남구	7	354,970	47
2853	35모0722	박*식	경상북도 경산시	12	544,540	47
2854	35모2521	김*웅	경기도 김포시	11	582,160	47
2855	35무1910	이*연	경기도 동두천시	6	351,200	47
2856	35무1948	이*용	서울특별시 노원구	8	495,340	47
2857	35무6130	한*종	인천광역시 강화군	4	307,680	47
2858	35무9086	이*형	서울특별시 송파구	1	632,400	47
2859	35버3409	주식회**디어	경기도 여주시	6	310,560	47
2860	35부0436	박*준	서울특별시 송파구	2	1,595,400	47
2861	35서6200	김*덕	서울특별시 은평구	9	392,400	47
2862	35서9453	김*연	서울특별시 송파구	1	582,120	47
2863	39모5327	홍*량	서울특별시 강동구	6	303,360	47
2864	08조6893	주식회**섬유	서울특별시 서초구	1	639,600	47
2865	08조7591	(주)**래소	서울특별시 금천구	10	425,440	47
2866	09가1573	주식회**터스	경기도 남양주시	11	482,480	47
2867	09가5740	콘엔터**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4	825,120	47
2868	09가9229	동흥개**주)	서울특별시 서초구	1	639,600	47
2869	09거0189	주식회**루텍	서울특별시 구로구	1	646,800	47
2870	09고2510	우*성	경기도 시흥시	6	311,140	47
2871	09고2881	이*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4	308,140	47

등록연번	차량번호	성 명	기본 주소	과태료체납 건수	과태료 금액	발송회차
2872	09나6025	양*찬	서울특별시 강남구	6	1,041,870	47
2873	09나9272	이*주	서울특별시 동작구	8	352,160	47
2874	09너0810	문화공**회사	서울특별시 종로구	6	327,460	47
2875	09너1927	최상영**세경	서울특별시 송파구	4	834,240	47
2876	12거5202	문*름	서울특별시 강북구	4	799,830	47
2877	12너8642	주식회**비스	서울특별시 강남구	1	646,800	47
2878	12노9005	김*순	서울특별시 강남구	1	646,800	47
2879	12노9022	허*희	서울특별시 강남구	1	632,400	47
2880	12누4488	(주)**레뉴	서울특별시 광진구	1	959,400	47
2881	12더5691	주)트**앤봇	서울특별시 강남구	1	560,560	47
2882	12러3738	하*성	경기도 용인시	1	305,580	47
2883	12로4770	(재)**구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8	378,080	47
2884	12루7178	농업회**기적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6	300,400	47
2885	12마9456	유*동	서울특별시 노원구	5	1,210,190	47
2886	12머6386	이*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7	371,970	47
2887	12모7142	손*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4	361,760	47
2888	12모7901	하*헌	경기도 안산시	8	314,540	47
2889	15도4616	(주)**물류	서울특별시 종로구	1	346,030	47
2890	15라9869	이*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1	646,800	47
2891	15로4497	김*유	서울특별시 성북구	1	639,600	47
2892	85부9500	도*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1	646,800	47
2893	02가2136	위*록	서울특별시 강남구	9	385,200	47
2894	02고2979	박*홍	서울특별시 마포구	7	374,820	47
2895	02구3418	김*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10	454,720	47
2896	02노7600	주식회**리스	서울특별시 용산구	4	644,330	47
2897	02누6570	송*욱	경기도 남양주시	8	321,620	47
2898	02두2382	이*규	전라남도 순천시	5	309,390	47
2899	02러7540	투어바**주)	서울특별시 중구	1	970,200	47
2900	02루3568	백*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9	460,960	47

등록연번	차량번호	성 명	기본 주소	과태료체납 건수	과태료 금액	발송회차
2901	02루8314	곽*섭	서울특별시 관악구	5	323,920	47
2902	101두2987	이*길	서울특별시 송파구	8	361,280	47
2903	101로9949	주식회**그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2	664,050	47
2904	101무4683	노*성	서울특별시 강북구	7	391,740	47
2905	101하8863	주)위**너스	서울특별시 강남구	1	646,800	47
2906	101하8953	굿데이**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1	639,600	47
2907	101호3470	(주)**트카	서울특별시 강동구	5	303,920	47
2908	102구5590	박*혁	서울특별시 은평구	3	872,560	47
2909	102나2060	오*정	서울특별시 강북구	1	632,400	47
2910	103나4659	김*찬	서울특별시 은평구	4	431,660	47
2911	103보5379	한*규	인천광역시 남동구	6	303,360	47
2912	134머6633	김*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5	310,960	47
2913	135누3449	이*선	서울특별시 구로구	5	302,320	47
2914	135서4332	이*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1	681,150	47
2915	135수7399	이*현	경기도 시흥시	5	311,600	47
2916	136고9638	김*혁	서울특별시 양천구	7	314,780	47
2917	136너3711	김*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3	786,240	47
2918	136마5022	장*정	서울특별시 도봉구	1	959,400	47
2919	136어9666	이*숙	경기도 의정부시	10	446,560	47
2920	137구7220	변*옥	서울특별시 노원구	8	390,760	47
2921	24루2058	정*영	경기도 여주시	3	742,740	47
2922	24루2617	황*현	서울특별시 강북구	5	614,520	47
2923	24루6036	ZHA**AO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12	531,840	47
2924	24마6555	박*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4	306,200	47
2925	24마9764	최*학	경기도 고양시	6	506,400	47
2926	24머6760	김*덕	서울특별시 서초구	6	350,720	47
2927	24모3811	왕*자	서울특별시 도봉구	7	571,960	47
2928	24버2204	김*죽	경기도 동두천시	5	301,520	47
2929	24보7671	이*양	서울특별시 강남구	2	335,310	47

등록연번	차량번호	성 명	기본 주소	과태료체납 건수	과태료 금액	발송회차
2930	290소5719	주식회**러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4	705,390	47
2931	290소8109	송*훈	서울특별시 강북구	6	333,650	47
2932	292머7259	박*민	서울특별시 강남구	10	532,320	47
2933	293러1909	주식회**조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9	425,440	47
2934	293루4148	김*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7	334,960	47
2935	294구3754	(주)**리스	서울특별시 용산구	12	856,160	47
2936	296러9228	주식회**앤코	서울특별시 중구	1	632,400	47
2937	298우7777	박*규	서울특별시 강동구	7	305,200	47
2938	299다9714	윤*규	서울특별시 강북구	4	303,840	47
2939	33도3026	김*숙	서울특별시 도봉구	6	325,900	47
2940	33도4382	이*철	서울특별시 은평구	12	452,760	47
2941	33라2233	정*경	인천광역시 연수구	6	306,240	47
2942	33루4540	이*권	서울특별시 송파구	1	970,200	47
2943	33마3249	주식회**모스	서울특별시 중구	1	646,800	47
2944	33모3542	주식회**씨엠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5	335,440	47
2945	33모5062	고*성	서울특별시 강남구	7	442,800	47
2946	33모8716	조*곤	서울특별시 송파구	6	354,850	47
2947	33무9066	(주)**선생	서울특별시 서초구	2	372,760	47
2948	37노8039	(주)**큐어	서울특별시 마포구	3	1,642,600	47
2949	345어1485	영성네**회사	서울특별시 노원구	6	388,160	47
2950	346조9115	아이플**회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8	470,760	47
2951	348라9339	더씨엔**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1	514,860	47
2952	37어0482	여*연	경기도 안산시	8	376,640	47
2953	37어8591	장*수	경기도 용인시	6	308,160	47
2954	37우1767	(주)**이브	서울특별시 금천구	8	367,520	47
2955	380구2174	주)에**딩스	서울특별시 강남구	1	632,400	47
2956	381머7263	박*민	경기도 의정부시	6	308,860	47
2957	381보9205	김*욱	서울특별시 송파구	9	435,120	47
2958	382나6119	주식회**개발	인천광역시 중구	7	385,100	47

등록연번	차량번호	성 명	기본 주소	과태료체납 건수	과태료 금액	발송회차
2959	382나6197	민*영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1	639,600	47
2960	383거8032	송*서	서울특별시 은평구	4	1,809,810	47
2961	383고5530	주식회**구독	서울특별시 강서구	1	511,680	47
2962	383보6838	임*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1	646,800	47
2963	43서6956	김*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1	959,400	47
2964	43소5797	장*지	서울특별시 도봉구	14	647,840	47
2965	43수3307	심*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6	339,860	47
2966	43어2725	권*진	서울특별시 양천구	3	3,133,730	47
2967	43어5425	드림프**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7	323,920	47
2968	43오0850	농업회**람들	경기도 광주시	6	305,760	47
2969	43조5749	주식회**왕터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3	301,260	47
2970	43조9820	배*남	인천광역시 부평구	5	385,900	47
2971	43주2927	김*화	서울특별시 노원구	6	316,320	47
2972	43주4282	조*욱	경기도 화성시	5	301,840	47
2973	45거3071	차*훈	전라남도 완도군	13	552,880	47
2974	45고1918	손*수	서울특별시 구로구	8	368,960	47
2975	51무3919	정*환	서울특별시 송파구	3	758,480	47
2976	51버1447	유*석	경기도 부천시	11	461,120	47
2977	51버8767	황*욱	서울특별시 광진구	13	600,400	47
2978	51소1736	주식회**산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5	820,530	47
2979	51소3926	최*숙	서울특별시 용산구	8	329,540	47
2980	51어0817	서*원	경기도 의정부시	13	1,066,520	47
2981	97서0647	우*성	서울특별시 강북구	1	548,080	47
2982	97서4470	두꺼비**회사	서울특별시 노원구	8	348,800	47
2983	97어6079	강*동	경기도 양평군	4	425,810	47
2984	97어6180	정*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1	632,400	47
2985	97오2955	최*옥	서울특별시 강북구	9	437,500	47
2986	97오6902	남*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3	461,890	47
2987	97오8951	엘케이**회사	경기도 양주시	13	604,680	47

등록연번	차량번호	성 명	기본 주소	과태료체납 건수	과태료 금액	발송회차
2988	97조1257	주식회**유통	서울특별시 구로구	2	682,720	47
2989	인천85배1924	노*용	인천광역시 부평구	2	309,120	47
2990	인천87배1228	김*수	인천광역시 서구	6	304,800	47
2991	전북76바1542	유한회**관광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6	375,000	47
2992	전북92사4842	(주)**특수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14	741,400	47
2993	97조2833	(주)**엔씨	서울특별시 강동구	1	863,210	47
2994	980고7723	정*현	서울특별시 강북구	1	639,600	47
2995	985라2837	(주)**툼캠	서울특별시 서초구	2	721,560	47
2996	986더9891	이*리	서울특별시 강남구	2	311,540	47
2997	989도1999	(주)**셔널	서울특별시 강남구	1	316,200	47
2998	98고1661	김*준	서울특별시 노원구	7	383,300	47
2999	98무5379	청명하**회사	경기도 안성시	5	303,100	47
3000	98소8656	(주)**힉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5	301,880	47
3001	98수1699	박*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1	639,600	47
3002	98오8097	(주)**앤씨	서울특별시 중랑구	2	302,800	47
3003	99도9818	한국공**공사	서울특별시 강서구	1	646,800	47
3004	99수1563	신*환	서울특별시 종로구	1	646,800	47
3005	경기71자7455	(주)**관광	경기도 김포시	6	327,000	47
3006	경기73바7902	주식회**행사	경기도 포천시	6	340,800	47
3007	39버8023	송*자	경상남도 김해시	6	330,940	47
3008	39버9295	유*식	경기도 양주시	3	423,010	47
3009	39보0260	인광개**주)	서울특별시 송파구	1	646,800	47
3010	39부2667	조*준	경기도 하남시	11	492,560	47
3011	39서0153	박*리	서울특별시 송파구	1	639,600	47
3012	39수9808	TAK**JI	서울특별시 강남구	1	639,600	47
3013	39오9445	황*창	인천광역시 남동구	5	305,580	47
3014	39저9228	임*영	경기도 파주시	4	318,320	47
3015	47노1463	주식회**창업	경기도 고양시	4	303,440	47
3016	47로4349	(주)**전자	경기도 평택시	5	312,060	47

등록연번	차량번호	성 명	기본 주소	과태료체납 건수	과태료 금액	발송회차
3017	47루3984	주식회**리에	서울특별시 서초구	3	738,950	47
3018	47마0220	주식회**구독	서울특별시 강서구	1	421,600	47
3019	47머9827	이*철	서울특별시 금천구	5	324,560	47
3020	47모3132	지우주**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5	837,520	47
3021	47버6652	윤*영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23	1,079,740	47
3022	47보2162	우*희	서울특별시 강남구	8	370,500	47
3023	47서4262	오*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2	1,074,690	47
3024	47서5170	김*현	서울특별시 도봉구	2	309,950	47
3025	54구2091	문*우	서울특별시 노원구	1	351,570	47
3026	54나2605	주식회**전스	서울특별시 강남구	3	1,166,510	47
3027	54너7277	박*규	서울특별시 도봉구	1	639,600	47
3028	54노9471	김*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2	1,004,920	47
3029	54누4901	김*경	서울특별시 은평구	1	358,360	47
3030	54다3187	김*경	서울특별시 서초구	1	632,400	47
3031	54다7696	정*진	서울특별시 송파구	2	677,920	47
3032	54더8017	손*철	경기도 성남시	9	447,800	47
3033	54러4304	진*은	경기도 수원시	10	405,220	47
3034	54머5432	(주)**케이	서울특별시 강남구	1	639,600	47
3035	15머2585	최*재	경기도 남양주시	7	315,280	47
3036	15무2117	춘천의**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6	545,550	47
3037	15보0624	(주)**코너	서울특별시 강남구	8	352,260	47
3038	15서0483	최*결	서울특별시 종로구	2	685,120	47
3039	199보2181	김*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6	349,280	47
3040	19가5978	윤*상	서울특별시 마포구	3	301,840	47
3041	19거3970	(주)**렉션	서울특별시 강남구	4	354,640	47
3042	19나4213	지*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3	304,120	47
3043	19너4487	김*관	서울특별시 도봉구	3	673,740	47
3044	19도0270	강*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1	646,800	47
3045	19두8054	TAN**ON	서울특별시 송파구	1	959,400	47

등록연번	차량번호	성 명	기본 주소	과태료체납 건수	과태료 금액	발송회차
3046	19러4407	고*정	서울특별시 도봉구	1	646,800	47
3047	19루2916	주식회**널스	경기도 양주시	5	300,420	47
3048	23로0296	김*상	서울특별시 양천구	2	683,680	47
3049	23로9154	안*근	경기도 광주시	5	303,600	47
3050	23버0401	남*식	서울특별시 중랑구	7	326,320	47
3051	23버2090	JIN**HE	서울특별시 구로구	11	485,360	47
3052	23보0768	주식회**엔디	인천광역시 연수구	10	780,480	47
3053	23보3030	진*훈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1	646,800	47
3054	23서5443	주식회**상생	경기도 광명시	5	303,920	47
3055	27모0931	주식회**투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3	1,088,200	47
3056	27무6516	세림산**주)	경상남도 거제시	5	304,880	47
3057	27부5888	신*민	서울특별시 성북구	2	670,890	47
3058	27소8249	갤러리**주)	서울특별시 서초구	2	695,680	47
3059	27수3650	김*용	서울특별시 은평구	3	323,440	47
3060	137나6327	심*혁	서울특별시 강동구	9	381,760	47
3061	137도2324	전*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4	1,000,170	47
3062	163수2471	최*원	충청남도 천안시	17	838,160	47
3063	163조6105	주식회**등대	경기도 동두천시	7	300,700	47
3064	164가2569	이*연	서울특별시 은평구	1	639,600	47
3065	164노9311	김*진	서울특별시 양천구	4	356,480	47
3066	164두6393	강*규	서울특별시 서초구	6	873,920	47
3067	165너4506	하*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5	327,240	47
3068	165버2962	김*주	광주광역시 광산구	4	317,200	47
3069	166도3117	김*름	서울특별시 강동구	1	574,430	47
3070	166서5925	김*수	서울특별시 송파구	1	575,640	47
3071	167너9402	주식회**서영	서울특별시 강남구	2	444,120	47
3072	204다7559	LIC**NG	경기도 평택시	7	410,160	47
3073	207가8203	이*복	서울특별시 성북구	7	310,000	47
3074	207조7705	윤*우	경기도 고양시	6	313,920	47

등록연번	차량번호	성 명	기본 주소	과태료체납 건수	과태료 금액	발송회차
3075	209머6693	이*재	서울특별시 강남구	1	948,600	47
3076	209무6431	이*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17	795,160	47
3077	20나9413	이*배	서울특별시 서초구	3	898,220	47
3078	20너2532	오*선	서울특별시 강북구	1	959,400	47
3079	20너4148	김*일	서울특별시 노원구	6	304,970	47
3080	246가1604	주식회**티스	서울특별시 중구	5	632,400	47
3081	246서2518	최*철	서울특별시 양천구	7	329,700	47
3082	246서2520	주식회**건설	서울특별시 서초구	1	632,400	47
3083	246조9193	임*천	서울특별시 강남구	13	830,100	47
3084	247너5285	김*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13	591,760	47
3085	247서5065	권*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1	360,330	47
3086	248서1713	박*익	서울특별시 성북구	1	632,400	47
3087	248주7455	신*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7	826,920	47
3088	37더4660	강*영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1	646,800	47
3089	37도1473	이*식	서울특별시 도봉구	1	632,400	47
3090	37두3051	(주)**뮤직	서울특별시 서초구	2	1,040,200	47
3091	37두5680	김*규	서울특별시 양천구	2	682,240	47
3092	37라0944	아이피**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1	639,600	47
3093	37라3889	주식회**유통	경기도 하남시	7	651,760	47
3094	37라9188	임*웅	서울특별시 강남구	1	970,200	47
3095	42로9591	윤*한	경기도 고양시	5	301,040	47
3096	42루0348	민*민	서울특별시 성북구	6	548,650	47
3097	42머2120	전*우	경기도 고양시	5	303,120	47
3098	42무5089	김*진	경기도 시흥시	5	326,320	47
3099	42무6629	김*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2	418,040	47
3100	42보5174	GUI**AN	서울특별시 구로구	2	1,775,400	47
3101	42보6568	LIN**IE	서울특별시 구로구	3	462,800	47
3102	42서5663	유*영	서울특별시 강북구	2	993,610	47
3103	42수5784	이*운	서울특별시 종로구	6	311,520	47

등록연번	차량번호	성 명	기본 주소	과태료체납 건수	과태료 금액	발송회차
3104	42조1629	임*희	서울특별시 강남구	3	309,800	47
3105	42조6607	이*희	경기도 용인시	4	305,880	47
3106	43노8606	주식회**개발	서울특별시 금천구	3	838,860	47
3107	43더9510	주식회**알찬	서울특별시 은평구	1	959,400	47
3108	50무6969	김*도	서울특별시 관악구	18	784,320	47
3109	50무9332	(주)**난발	경기도 양평군	8	344,000	47
3110	50부8366	신*욱	서울특별시 성북구	1	639,600	47
3111	50소5458	서*하	서울특별시 구로구	4	377,220	47
3112	50수8845	범양산**회사	전라남도 해남군	4	337,320	47
3113	50조4803	양*숙	서울특별시 노원구	5	785,930	47
3114	51거7227	이*돈	서울특별시 서초구	4	813,600	47
3115	51구7038	박*현	서울특별시 강동구	5	2,254,940	47
3116	51어1404	윤*수	서울특별시 서초구	2	1,635,000	47
3117	51어3769	이*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6	317,280	47
3118	51오5219	김*현	충청남도 태안군	6	304,800	47
3119	51우6287	주식회**클럽	서울특별시 강남구	2	1,631,400	47
3120	58나8046	김*후	경기도 수원시	15	795,520	47
3121	58노9141	장*호	경기도 용인시	1	1,575,000	47
3122	58누0248	이*섭	경기도 의정부시	5	311,600	47
3123	58누1158	농업회**농원	경기도 파주시	7	334,000	47
3124	58누8636	안*정	서울특별시 서초구	7	348,700	47
3125	58다3419	소*봉	서울특별시 광진구	7	307,600	47
3126	58다5609	임*애	경기도 성남시	6	361,940	47
3127	58다8445	안*현	서울특별시 강북구	6	337,130	47
3128	58루1158	박*순	서울특별시 송파구	1	439,510	47
3129	58모2676	정*문	서울특별시 구로구	7	306,100	47
3130	66루8712	(주)**앤디	서울특별시 강남구	2	555,750	47
3131	66머2766	이*연	경기도 구리시	7	363,280	47
3132	66무3534	(주)**에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7	313,360	47

등록연번	차량번호	성 명	기본 주소	과태료체납 건수	과태료 금액	발송회차
3133	66버4111	CUI**NG	서울특별시 구로구	3	1,748,890	47
3134	66버8163	양*성	서울특별시 종로구	7	346,480	47
3135	66부3775	주식회**서치	서울특별시 강남구	1	546,530	47
3136	66소2294	윤*수	서울특별시 노원구	1	412,530	47
3137	66수6584	대원종**회사	서울특별시 성북구	1	445,830	47
3138	66저0350	김*영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1	639,600	47
3139	75고9576	씨아이**주)	경기도 안양시	4	345,720	47
3140	75더4438	(주)**토랑	서울특별시 용산구	6	325,200	47
3141	75두4337	(주)**트리	서울특별시 강남구	3	943,110	47
3142	76가5875	강*진	서울특별시 도봉구	1	639,600	47
3143	76거4622	큡에너**회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2	303,420	47
3144	76고8610	임*규	서울특별시 강북구	6	339,280	47
3145	76도2591	(주)**도도	서울특별시 서초구	2	688,000	47
3146	76도2909	김*범	서울특별시 강동구	6	2,389,080	47
3147	경기76사5113	주식회**행사	경기도 포천시	6	365,400	47
3148	경기76아3088	주식회**투어	경기도 이천시	6	340,200	47
3149	경기76아8385	주식회**관광	경기도 화성시	9	485,100	47
3150	경기76아8841	케이오**회사	경기도 파주시	6	326,400	47
3151	경기76아8940	(주)**관광	경기도 안산시	5	360,420	47
3152	경기78바2812	모아관**주)	경기도 안산시	6	317,400	47
3153	경기79사3253	모아관**주)	경기도 안산시	7	379,100	47
3154	경기79사4167	케이오**회사	경기도 파주시	15	800,700	47
3155	경기81배2065	조*인	경기도 성남시	9	406,800	47
3156	경기86아4355	박*랑	경기도 안산시	7	321,040	47
3157	경기88사2730	(주)**틱스	경기도 성남시	5	428,080	47
3158	경기88사3008	(주)**레스	경기도 성남시	3	331,120	47
3159	경기94사2717	주식회**운수	경기도 의왕시	17	732,560	47
3160	부산95아7383	흥아운**주)	부산광역시 수영구	8	435,860	47
3161	서울31바3137	김*호	서울특별시 노원구	7	369,220	47

등록연번	차량번호	성 명	기본 주소	과태료체납 건수	과태료 금액	발송회차
3162	서울31바3741	이*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1	661,200	47
3163	서울31바4770	김*영	서울특별시 구로구	6	487,410	47
3164	서울31바4815	김*영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4	303,100	47
3165	서울31바6263	이*용	서울특별시 은평구	9	387,900	47
3166	서울31사4923	오*수	경기도 남양주시	6	333,080	47
3167	서울31사7606	신*원	경기도 의정부시	2	2,579,640	47
3168	01가4103	김*철	서울특별시 송파구	16	709,600	47
3169	01가4170	뉴월드**회사	경기도 시흥시	10	469,120	47
3170	01가8782	신*환	서울특별시 강북구	1	981,000	47
3171	54머6258	(주)**산업	서울특별시 강동구	5	309,660	47
3172	54모1011	최*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2	417,720	47
3173	61보9461	김*란	서울특별시 노원구	5	1,140,040	47
3174	61서5708	주식회**주택	서울특별시 송파구	1	632,400	47
3175	61우3978	전*환	경기도 동두천시	1	632,400	47
3176	61저0795	정*원	서울특별시 성북구	1	639,600	47
3177	61저8297	김*뜸	울산광역시 동구	8	439,360	47
3178	61저8622	박*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5	490,640	47
3179	61조0585	(주)**양천	서울특별시 양천구	6	846,600	47
3180	61조2017	허*성	경기도 화성시	8	327,620	47
3181	68우4134	김*준	서울특별시 강북구	7	308,080	47
3182	68우5964	김억**김억	서울특별시 노원구	6	306,760	47
3183	68조5683	이*덕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8	375,200	47
3184	68주3141	박*모	서울특별시 도봉구	4	346,020	47
3185	69거6515	지*정	서울특별시 양천구	1	639,600	47
3186	69거7220	민*경	서울특별시 송파구	1	646,800	47
3187	69거7351	정*윤	서울특별시 강남구	5	308,080	47
3188	69구2774	최*진	서울특별시 노원구	7	320,560	47
3189	69구6602	김*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2	995,080	47
3190	69노9454	전*주	서울특별시 마포구	8	352,160	47

등록연번	차량번호	성 명	기본 주소	과태료체납 건수	과태료 금액	발송회차
3191	69누3556	김*오	서울특별시 강북구	3	1,641,160	47
3192	805오1667	박*호	서울특별시 구로구	1	646,800	47
3193	805조7200	한*영	서울특별시 구로구	5	890,050	47
3194	806서6805	주식회**공사	서울특별시 구로구	2	656,850	47
3195	806소1651	정*영	서울특별시 강동구	6	368,640	47
3196	807구7872	최*오	경기도 구리시	5	312,400	47
3197	807너6875	박*연	경기도 하남시	11	751,440	47
3198	27어0260	김*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5	788,040	47
3199	27어1770	주식회**스템	서울특별시 금천구	1	948,600	47
3200	27어1775	(주)**앤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3	1,934,600	47
3201	27어3058	진*하	서울특별시 양천구	7	356,560	47
3202	321버2812	박*화	서울특별시 서초구	6	848,590	47
3203	322더9629	이*희	서울특별시 송파구	8	334,220	47
3204	323누3388	주식회**스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2	683,200	47
3205	324거8889	정*승	서울특별시 강동구	6	1,070,080	47
3206	325고2245	강*욱	서울특별시 강북구	11	2,217,240	47
3207	325구5428	(주)**개발	서울특별시 구로구	7	577,840	47
3208	325도3075	오*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6	327,000	47
3209	325마8144	박*수	서울특별시 양천구	4	301,000	47
3210	326거2382	김*숙	서울특별시 노원구	1	632,400	47
3211	326모5506	박*규	서울특별시 강남구	1	981,000	47
3212	369조5936	WEN**AI	서울특별시 구로구	10	528,000	47
3213	36거6304	김*하	경기도 양주시	7	439,440	47
3214	36거8864	김*근	서울특별시 송파구	5	839,900	47
3215	36고0805	트위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3	300,220	47
3216	36노5350	주*은	충청남도 천안시	5	306,060	47
3217	36다5568	최*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6	301,160	47
3218	36다6043	이*희	경기도 수원시	7	319,120	47
3219	36더4224	박*진	경상북도 포항시	10	444,640	47

등록연번	차량번호	성 명	기본 주소	과태료체납 건수	과태료 금액	발송회차
3220	36두3620	오*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2	696,160	47
3221	36두3767	김*경	경기도 고양시	7	335,920	47
3222	36두9762	(주)**앤디	서울특별시 송파구	3	755,120	47
3223	40수2750	이*훈	서울특별시 강남구	2	727,760	47
3224	40어2406	박*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5	356,080	47
3225	40어3698	정*진	서울특별시 관악구	6	323,390	47
3226	40오7110	최*복	서울특별시 강남구	9	469,660	47
3227	40우3535	안*태	서울특별시 강동구	2	987,990	47
3228	249무1394	주식회**스티	서울특별시 송파구	2	727,840	47
3229	249주5049	(주)**이션	서울특별시 광진구	2	648,570	47
3230	24거1812	LIC**AO	서울특별시 구로구	2	306,240	47
3231	28노3992	모*환	서울특별시 구로구	3	359,330	47
3232	28노9301	(주)**동차	서울특별시 성동구	7	365,120	47
3233	28다0770	(주)**포즈	서울특별시 마포구	5	324,480	47
3234	28다4069	이*교	경기도 남양주시	6	353,600	47
3235	28다6050	NGU**NH	서울특별시 성북구	9	399,070	47
3236	28더8616	주식회**만족	서울특별시 강남구	6	316,100	47
3237	28두3503	김*주	광주광역시 광산구	8	354,080	47
3238	28두9217	이*훈	서울특별시 성북구	1	421,600	47
3239	28라0570	박*천	서울특별시 송파구	1	948,600	47
3240	28루0315	(주)**튜트	서울특별시 강남구	1	632,400	47
3241	28루8972	김*름	서울특별시 강남구	3	326,730	47
3242	28루9350	신*영	서울특별시 강동구	7	347,920	47
3243	331가8938	(주)**자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1	639,600	47
3244	331누7497	김*정	서울특별시 강남구	2	344,960	47
3245	333더3932	조*아	서울특별시 강남구	3	1,055,960	47
3246	333두6121	김*배	서울특별시 성북구	1	639,600	47
3247	333머5692	원*희	경기도 의정부시	6	329,760	47
3248	334부3358	주식회**자원	서울특별시 강동구	7	392,910	47

등록연번	차량번호	성 명	기본 주소	과태료체납 건수	과태료 금액	발송회차
3249	374부4220	스틸인**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1	948,600	47
3250	375고4785	조*희	경기도 남양주시	6	336,480	47
3251	375나8512	강*성	인천광역시 부평구	4	1,353,640	47
3252	375마1625	주식회**민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1	646,800	47
3253	376고1491	윤*원	서울특별시 강북구	7	312,400	47
3254	376버4595	심*이	경기도 이천시	1	547,010	47
3255	378로7529	주식회**이씨	서울특별시 송파구	1	639,600	47
3256	378루6675	박*혁	서울특별시 노원구	13	494,800	47
3257	378수6455	SUN**AO	서울특별시 구로구	1	959,400	47
3258	56주0484	박*기	경기도 고양시	6	507,520	47
3259	57거1538	신*헌	경기도 용인시	1	674,760	47
3260	57고1664	우성**우성	충청남도 서산시	3	737,360	47
3261	57나6018	도*환	경기도 시흥시	7	303,280	47
3262	57노3112	김*훈	서울특별시 서초구	1	632,400	47
3263	57노6357	주식회**시아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7	372,340	47
3264	57누8917	한*식	서울특별시 종로구	5	828,880	47
3265	57더1877	서*길	서울특별시 구로구	3	308,530	47
3266	57더2761	주식회**영선	서울특별시 강남구	4	768,000	47
3267	57도6080	김*슬	서울특별시 관악구	5	1,772,520	47
3268	57러3267	김*육	경기도 부천시	8	412,740	47
3269	57러9054	나*민	서울특별시 성북구	1	970,200	47
3270	65모6135	오*신	서울특별시 강서구	4	828,800	47
3271	65버0952	정*윤	서울특별시 성북구	4	362,380	47
3272	65부0135	박*수	서울특별시 성북구	2	704,320	47
3273	65소8097	정*위	서울특별시 강남구	2	965,310	47
3274	65수0765	조*남	인천광역시 옹진군	8	362,720	47
3275	65오2509	고*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6	302,360	47
3276	65저0295	에이비**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1	632,400	47
3277	65주6052	김*태	전라남도 강진군	3	326,640	47

등록연번	차량번호	성 명	기본 주소	과태료체납 건수	과태료 금액	발송회차
3278	66거5567	(주)**트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4	1,198,680	47
3279	66구7521	우*호	서울특별시 관악구	1	575,640	47
3280	66나5451	김*희	경기도 이천시	5	300,780	47
3281	73누8364	주식회**이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11	328,430	47
3282	73라9703	(주)**스알	서울특별시 강북구	1	646,800	47
3283	73로6119	김*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5	320,440	47
3284	73머9908	장*훈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1	632,400	47
3285	73어5267	(주)**이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4	339,040	47
3286	73어5334	MIN**JI	서울특별시 구로구	4	303,640	47
3287	76마3838	한*욱	전라남도 고흥군	10	604,300	47
3288	76마9770	사회복**사회	서울특별시 강서구	1	632,400	47
3289	82거3573	주식회**로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1	596,960	47
3290	82고2396	주식회**택이	서울특별시 광진구	5	920,440	47
3291	82고3163	김*중	서울특별시 송파구	13	641,520	47
3292	82나8659	이*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6	346,400	47
3293	82나9597	정*묵	서울특별시 구로구	1	639,600	47
3294	82누3103	장*옥	경상북도 김천시	6	316,200	47
3295	82다1168	(주)**유통	서울특별시 성동구	1	646,800	47
3296	82더5184	강*원	경기도 여주시	4	305,840	47
3297	82도3568	주식회**한도	서울특별시 서초구	1	632,400	47
3298	82도6775	박*용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9	417,840	47
3299	87머3227	최*진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19	776,260	47
3300	87모0674	김*영	서울특별시 광진구	10	438,880	47
3301	87보1355	최*진	경기도 고양시	7	326,300	47
3302	87소4070	(주)**앤비	서울특별시 강남구	1	970,200	47
3303	87오3009	박*석	서울특별시 구로구	1	560,560	47
3304	87조2786	오*헌	경기도 광주시	6	305,260	47
3305	87조7339	주식회**앤씨	경기도 양평군	5	354,640	47
3306	04어9938	홍*식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9	1,798,930	47

등록연번	차량번호	성 명	기본 주소	과태료체납 건수	과태료 금액	발송회차
3307	04조3783	이*미	서울특별시 강남구	2	687,370	47
3308	04조6689	김*우	서울특별시 강북구	6	861,920	47
3309	05나0794	서*준	경기도 남양주시	7	380,080	47
3310	05나4715	이*민	인천광역시 서구	7	477,200	47
3311	05나4960	박*헌	서울특별시 은평구	13	559,120	47
3312	05노5243	하*수	서울특별시 강남구	1	646,800	47
3313	05두0665	박*라	경기도 남양주시	4	303,600	47
3314	01노1200	이*진	서울특별시 송파구	1	948,600	47
3315	01도0200	박*지	서울특별시 도봉구	29	3,198,360	47
3316	01도3499	최*선	서울특별시 서초구	1	981,000	47
3317	01러3962	KIM**GM	서울특별시 성북구	5	857,040	47
3318	01로1526	주식회**드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7	347,920	47
3319	서울31자3717	차*수	서울특별시 성동구	6	305,600	47
3320	서울31자7441	이*근	서울특별시 도봉구	5	305,350	47
3321	서울32바6260	김*수	경기도 성남시	7	313,340	47
3322	서울32바9088	강*복	서울특별시 성북구	9	468,080	47
3323	서울32사8878	허*오	서울특별시 성동구	9	383,280	47
3324	서울32아2040	변*식	서울특별시 도봉구	6	319,760	47
3325	서울32자5532	박*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7	312,140	47
3326	서울33더5361	김*우	서울특별시 도봉구	6	313,960	47
3327	92누4957	이호산**주)	인천광역시 남동구	3	300,880	47
3328	92다1116	김*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4	322,560	47
3329	92도0496	김*형	경기도 의정부시	4	311,600	47
3330	92도4788	김*남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6	368,960	47
3331	92도5093	이*선	서울특별시 강북구	1	832,130	47
3332	92로0190	주식회**소재	서울특별시 강서구	2	1,617,000	47
3333	92로6154	주식회**푸드	인천광역시 계양구	6	327,080	47
3334	92로8269	김*자	서울특별시 은평구	7	307,180	47
3335	92마5366	이*륜	서울특별시 종로구	1	632,400	47

등록연번	차량번호	성 명	기본 주소	과태료체납 건수	과태료 금액	발송회차
3336	92모8351	손*수	경기도 시흥시	6	301,440	47
3337	서울34아2471	시티택**주)	서울특별시 서초구	1	639,600	47
3338	서울34아2526	시티택**주)	서울특별시 서초구	1	639,600	47
3339	서울34아2527	시티택**주)	서울특별시 서초구	1	639,600	47
3340	807주2427	최*화	인천광역시 서구	7	313,840	47
3341	808서4322	김*이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3	826,000	47
3342	808주5725	주식회**기획	서울특별시 강남구	1	463,710	47
3343	809거6331	(주)**잘딱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8	351,500	47
3344	83어0946	주식회**테크	충청북도 청주시	9	402,000	47
3345	83저2945	주식회**상사	경기도 시흥시	7	362,820	47
3346	83조5666	주식회**이비	서울특별시 종로구	2	719,680	47
3347	83조5989	(주)**앤비	서울특별시 강남구	1	639,600	47
3348	840오6406	(주)**푸드	서울특별시 구로구	1	959,400	47
3349	840우2932	김*현	서울특별시 은평구	3	543,970	47
3350	841라3308	박*영	경기도 남양주시	9	405,360	47
3351	841오6111	이*원	경기도 김포시	7	315,280	47
3352	843두8777	윤*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1	757,920	47
3353	844수7548	하*정	경기도 양주시	3	301,840	47
3354	845구5595	우*성	서울특별시 도봉구	1	639,600	47
3355	845버1107	김*연	서울특별시 노원구	3	729,090	47
3356	91모6861	(주)**농산	경기도 화성시	13	426,400	47
3357	91무0981	정*성	서울특별시 노원구	2	439,160	47
3358	91무8231	송*승	서울특별시 은평구	2	1,631,400	47
3359	91무8314	주식회**푸드	인천광역시 서구	9	416,880	47
3360	91보0750	주식회**쳐스	서울특별시 서초구	1	632,400	47
3361	91보6715	(주)**테크	경기도 고양시	9	428,880	47
3362	91수3851	최*섭	전라남도 무안군	3	668,350	47
3363	91어6964	(주)**진영	서울특별시 서초구	1	632,400	47
3364	91어8837	주식회**마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1	970,200	47

등록연번	차량번호	성 명	기본 주소	과태료체납 건수	과태료 금액	발송회차
3365	91오4589	정*우	서울특별시 도봉구	1	639,600	47
3366	08거3523	박*웅	경기도 고양시	4	307,200	47
3367	08거8962	황*연	서울특별시 강남구	1	646,800	47
3368	08구1688	주식회**이음	서울특별시 구로구	2	318,690	47
3369	08구5880	최*희	서울특별시 강남구	5	1,905,450	47
3370	08나7841	남*경	경기도 고양시	6	312,480	47
3371	08너5629	(주)**타임	서울특별시 강남구	1	646,800	47
3372	08더3892	최*오	서울특별시 강남구	4	324,480	47
3373	40우6085	윤*원	대구광역시 북구	5	340,720	47
3374	40저1935	정*린	서울특별시 성북구	7	1,110,900	47
3375	40조1795	이*순	서울특별시 구로구	1	873,030	47
3376	40조4402	이*용	경기도 의정부시	2	307,680	47
3377	40조5901	이*열	서울특별시 광진구	1	319,800	47
3378	48수3155	김*선	서울특별시 송파구	1	646,800	47
3379	48수7373	(주)**식품	서울특별시 관악구	30	1,328,530	47
3380	48저0234	주식회**구독	서울특별시 강서구	1	362,440	47
3381	48주5663	센텀개**회사	서울특별시 금천구	16	630,280	47
3382	48주9413	(주)**세상	서울특별시 금천구	3	757,520	47
3383	49가0604	정*활	서울특별시 강서구	5	310,120	47
3384	49거0594	장*숙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5	309,200	47
3385	49거2895	주식회**도스	서울특별시 구로구	3	1,209,300	47
3386	49거5227	주식회**엘이	서울특별시 송파구	1	639,600	47
3387	49고4907	주식회**에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1	639,600	47
3388	49구1774	주식회**먼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7	313,840	47
3389	49구1789	ZHA**NG	서울특별시 구로구	6	781,920	47
3390	55두9443	안*미	서울특별시 서초구	6	405,970	47
3391	55라7182	(주)**이션	서울특별시 강북구	2	1,617,000	47
3392	55라8433	리퓨어**회사	서울특별시 금천구	2	563,510	47
3393	55러7198	배*준	서울특별시 서초구	7	323,380	47

등록연번	차량번호	성 명	기본 주소	과태료체납 건수	과태료 금액	발송회차
3394	55로0211	박*규	경상남도 김해시	6	483,520	47
3395	55로4536	박*종	경기도 시흥시	6	305,700	47
3396	55마0383	정*희	서울특별시 서초구	1	632,400	47
3397	55모7319	장*선	서울특별시 강남구	5	300,080	47
3398	62주2210	이*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9	372,900	47
3399	62주6188	정*규	경기도 하남시	4	305,280	47
3400	63고9753	김*호	충청남도 청양군	12	518,400	47
3401	34부0963	피에스**회사	서울특별시 송파구	1	646,800	47
3402	11보8768	이*아	서울특별시 마포구	7	302,800	47
3403	14로3536	(주)**웨딩	서울특별시 강남구	3	1,141,570	47
3404	14오9523	HUA**HU	서울특별시 관악구	17	628,460	47
3405	34호9192	주식회**트카	서울특별시 강서구	1	646,800	47
3406	53두2224	최*엽	경기도 고양시	5	306,280	47
3407	83다8684	심*섭	서울특별시 노원구	4	300,450	47
3408	06무4247	조*숙	서울특별시 은평구	1	527,110	47
3409	25우5963	신*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6	357,540	47
3410	88주0671	박*현	경기도 김포시	4	317,260	47
3411	08러6590	(주)**건설	경기도 평택시	5	307,760	47
3412	25누9357	주*규	서울특별시 성북구	2	494,100	47
3413	25더3422	안*덕	경기도 고양시	9	399,120	47
3414	25도7645	이*중	서울특별시 구로구	1	654,000	47
3415	25러6272	주식회**우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1	646,800	47
3416	25마6959	강*자	충청남도 아산시	6	548,160	47
3417	25마9021	이*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16	629,680	47
3418	25머8328	김*녀	경상북도 구미시	6	1,673,470	47
3419	308소4094	주식회**수미	서울특별시 강남구	10	525,540	47
3420	309서2584	(주)**앤오	경상남도 창원시	6	398,380	47
3421	30구0796	이*수	경상북도 안동시	4	322,910	47
3422	30구9905	김*해	경상북도 영덕군	18	862,800	47

등록연번	차량번호	성 명	기본 주소	과태료체납 건수	과태료 금액	발송회차
3423	30너4972	구*성	인천광역시 남동구	10	504,640	47
3424	30너5142	양*호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9	435,120	47
3425	30너9306	유*윤	서울특별시 송파구	1	632,400	47
3426	30노1758	조*현	서울특별시 강북구	1	421,600	47
3427	30노4895	임*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1	959,400	47
3428	30누1147	장*대	서울특별시 성북구	3	306,420	47
3429	30누4902	정*연	서울특별시 노원구	1	632,400	47
3430	30누6816	LIT**NG	서울특별시 구로구	7	312,400	47
3431	34마8352	이*미	전라남도 나주시	1	646,800	47
3432	34머2510	손*수	서울특별시 구로구	4	402,280	47
3433	34머4490	주식회**유리	서울특별시 구로구	1	646,800	47
3434	34보2531	주식회**에프	서울특별시 서초구	15	1,882,220	47
3435	34보4555	윤*병	서울특별시 성북구	2	304,800	47
3436	34보9303	(주)**이지	서울특별시 금천구	2	685,600	47
3437	34부2098	주식회**월드	서울특별시 종로구	6	903,200	47
3438	34부2252	김*현	서울특별시 서초구	1	639,600	47
3439	34서6471	주식회**기어	서울특별시 성동구	1	468,930	47
3440	34소0346	이*선	서울특별시 강남구	2	1,002,040	47
3441	34어1167	임*수	서울특별시 광진구	10	451,840	47
3442	06더4664	최*희	충청북도 충주시	4	308,740	47
3443	89노6148	주식회**우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6	656,250	47
3444	180수5099	박*윤	서울특별시 송파구	6	328,800	47
3445	34버5566	안*슬	서울특별시 송파구	1	632,400	47
3446	34조6585	변*섭	서울특별시 도봉구	6	1,538,810	47
3447	375루5873	윤*옥	서울특별시 강북구	2	700,480	47
3448	59더1656	윤*희	서울특별시 노원구	7	478,590	47
3449	59마0830	PHA**TU	서울특별시 강북구	13	621,520	47
3450	59무8177	박*용	인천광역시 서구	5	304,380	47
3451	59보2917	오*비	서울특별시 양천구	1	383,760	47

등록연번	차량번호	성 명	기본 주소	과태료체납 건수	과태료 금액	발송회차
3452	59서1804	이*석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1	632,400	47
3453	67누4634	이*욱	서울특별시 송파구	1	405,080	47
3454	67다2391	강*현	서울특별시 송파구	1	632,400	47
3455	67다3286	주식회**기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3	1,058,840	47
3456	67러0554	유*승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1	639,600	47
3457	67러9223	서*미	서울특별시 노원구	6	300,460	47
3458	67로0198	박*준	서울특별시 강남구	4	324,600	47
3459	67로5214	김*영	경기도 수원시	6	306,240	47
3460	67루3514	사단법**협회	서울특별시 송파구	7	417,840	47
3461	67모2349	바른원**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1	639,600	47
3462	67보4126	유*환	경상북도 의성군	6	304,800	47
3463	67보5092	에스디**주)	인천광역시 남동구	5	300,080	47
3464	67부4159	(주)**산업	경상남도 김해시	6	373,760	47
3465	77저8272	NGU**OC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3	716,580	47
3466	77허3087	(주)**행사	충청남도 천안시	6	344,400	47
3467	77허3718	주식회**레저	충청남도 공주시	14	754,600	47
3468	78고5955	양*진	경기도 수원시	4	319,220	47
3469	78나5345	주식회**자인	서울특별시 광진구	4	1,311,000	47
3470	78나8956	장*수	경기도 하남시	6	362,400	47
3471	78누8005	JIN**FU	서울특별시 구로구	3	370,120	47
3472	78더4369	유*민	서울특별시 은평구	5	303,100	47
3473	78도1541	유*순	경기도 파주시	5	328,300	47
3474	82부6755	여*현	경기도 의정부시	6	320,160	47
3475	82서3884	박*용	서울특별시 송파구	7	402,960	47
3476	82서6141	GAN**UR	서울특별시 성북구	4	865,490	47
3477	379로9105	서*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3	300,540	47
3478	37두3998	박*화	서울특별시 노원구	1	948,600	47
3479	19버1473	김*향	서울특별시 노원구	9	382,800	47
3480	204더4185	임*수	서울특별시 강동구	1	431,200	47

등록연번	차량번호	성 명	기본 주소	과태료체납 건수	과태료 금액	발송회차
3481	20도2877	CUI**HE	경기도 용인시	5	305,360	47
3482	20로7574	이*래	경기도 성남시	1	668,400	47
3483	21너9633	최*찬	서울특별시 중구	5	468,080	47
3484	222구3801	LI **YU	서울특별시 구로구	1	948,600	47
3485	22주7684	임*벽	서울특별시 강동구	1	344,650	47
3486	232오1301	서*희	서울특별시 서초구	6	320,990	47
3487	234소1680	김*성	서울특별시 강동구	1	959,400	47
3488	23다2391	윤*숙	서울특별시 관악구	3	422,640	47
3489	06다0304	김*기	서울특별시 노원구	1	313,690	47
3490	06다5617	장*범	서울특별시 성북구	2	699,520	47
3491	116하2222	(주)**트카	서울특별시 강남구	1	587,360	47
3492	117가7537	최*용	서울특별시 은평구	7	1,932,420	47
3493	117너7048	김*형	전라남도 목포시	2	1,064,310	47
3494	117하1065	(주)**터카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8	345,920	47
3495	119나7139	(주)**엔씨	서울특별시 성북구	1	646,800	47
3496	119우7130	(주)**건설	서울특별시 광진구	8	382,400	47
3497	11거5291	LEE**AE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2	1,591,800	47
3498	11거5375	강*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2	676,480	47
3499	11노5085	김*관	경기도 남양주시	7	314,320	47
3500	14너3986	김*회	서울특별시 성북구	7	383,060	47
3501	14누5286	김*회	경기도 김포시	5	372,720	47
3502	14두6040	반*욱	서울특별시 송파구	4	1,132,100	47
3503	14러0955	서울특**주)	서울특별시 양천구	1	646,800	47
3504	14러8415	이*래	서울특별시 구로구	1	959,400	47
3505	14로7446	임*식	서울특별시 강동구	3	1,096,520	47
3506	14마7858	홍*현	서울특별시 은평구	1	948,600	47
3507	14버3451	한*우	서울특별시 강남구	9	427,310	47
3508	14보0476	주)폐**디칼	서울특별시 강남구	1	646,800	47
3509	14보0481	김*희	서울특별시 강남구	2	777,600	47

등록연번	차량번호	성 명	기본 주소	과태료체납 건수	과태료 금액	발송회차
3510	17루4071	정*용	서울특별시 구로구	1	554,320	47
3511	17모2171	JIN**IN	경기도 시흥시	7	303,760	47
3512	17모3640	이*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364	18,465,430	47
3513	17무5241	이*규	서울특별시 종로구	1	444,510	47
3514	242루8202	김*경	서울특별시 강남구	1	636,390	47
3515	247러2784	한*희	서울특별시 강북구	1	426,400	47
3516	24두5663	김*경	서울특별시 마포구	9	358,700	47
3517	250저9285	김*경	서울특별시 양천구	7	316,720	47
3518	255로7548	안*섭	광주광역시 광산구	5	307,980	47
3519	256우1923	퀴드러**회사	서울특별시 구로구	1	300,610	47
3520	25누8123	김*희	인천광역시 계양구	8	353,620	47
3521	25소6956	윤*용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5	332,940	47
3522	263더4898	남*현	서울특별시 강남구	1	948,600	47
3523	26가3201	최*진	서울특별시 서초구	7	339,760	47
3524	272조6796	(주)**우징	서울특별시 은평구	1	646,800	47
3525	278나2841	주식회**우징	서울특별시 서초구	10	370,120	47
3526	27모6436	김*림	서울특별시 성북구	3	822,160	47
3527	28가1394	오*수	서울특별시 도봉구	4	345,440	47
3528	28도5400	(주)**록비	서울특별시 마포구	6	317,080	47
3529	28우1725	배*국	서울특별시 노원구	4	326,760	47
3530	295나7720	전*배	서울특별시 은평구	10	1,352,040	47
3531	25보0608	배*희	서울특별시 종로구	5	304,400	47
3532	25서2815	김*범	인천광역시 서구	7	333,040	47
3533	25오1816	최*석	경기도 부천시	7	393,820	47
3534	25오5180	주식회**세븐	서울특별시 송파구	1	970,200	47
3535	30다0700	(주)**전력	서울특별시 은평구	6	430,240	47
3536	30다1925	이*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1	646,800	47
3537	30다7157	이*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2	694,240	47
3538	30더8104	김*집	서울특별시 양천구	1	970,200	47

등록연번	차량번호	성 명	기본 주소	과태료체납 건수	과태료 금액	발송회차
3539	30두1319	주식회**이블	경기도 김포시	13	486,820	47
3540	30라0122	(주)**리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9	474,080	47
3541	30러9999	비케이**회사	서울특별시 금천구	1	639,600	47
3542	30루6066	이*규	서울특별시 송파구	1	632,400	47
3543	30마7191	손*호	서울특별시 노원구	1	959,400	47
3544	30무3213	MEN**AN	인천광역시 서구	7	300,700	47
3545	30무9512	(주)**엔디	서울특별시 강남구	7	310,960	47
3546	30버0114	박*훈	경기도 양주시	14	530,360	47
3547	30버0495	박*희	서울특별시 양천구	1	632,400	47
3548	34저2811	정*경	서울특별시 은평구	1	639,600	47
3549	351오3758	씨제이**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1	646,800	47
3550	352가5739	주식회**에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1	316,200	47
3551	352마6573	(주)**터스	서울특별시 강남구	2	692,800	47
3552	353가9704	이*찬	서울특별시 강북구	3	1,109,410	47
3553	353러1121	홍*숙	서울특별시 강동구	6	1,882,360	47
3554	355어7928	안*용	대전광역시 대덕구	4	302,400	47
3555	356두7016	김*성	서울특별시 서초구	2	695,200	47
3556	356라2813	원*비	경기도 시흥시	4	877,920	47
3557	357라2826	주식회**이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1	639,600	47
3558	38모7300	이*혜	서울특별시 도봉구	9	890,940	47
3559	38무6762	주식회**우스	서울특별시 송파구	3	382,270	47
3560	390고3037	이*빈	충청북도 청주시	20	856,400	47
3561	302구3753	이*섭	서울특별시 성북구	9	546,500	47
3562	30거1542	김*선	서울특별시 성북구	6	353,600	47
3563	30노5699	안*규	서울특별시 강동구	5	1,922,870	47
3564	30오5640	송*종	서울특별시 광진구	5	404,890	47
3565	311노8364	오*우	서울특별시 강남구	1	632,400	47
3566	31다0280	김*영	서울특별시 송파구	1	405,080	47
3567	31로5979	박*주	서울특별시 성북구	5	378,510	47

등록연번	차량번호	성 명	기본 주소	과태료체납 건수	과태료 금액	발송회차
3568	320모7905	정*화	인천광역시 계양구	10	449,920	47
3569	323어7936	UKA**IS	서울특별시 구로구	1	575,640	47
3570	326수1582	김*수	서울특별시 노원구	8	341,600	47
3571	32거1142	노*수	서울특별시 광진구	7	324,400	47
3572	01어7975	주식회**모드	서울특별시 서초구	1	632,400	47
3573	02라9495	박*선	서울특별시 강남구	3	303,660	47
3574	02주3006	최*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7	311,920	47
3575	03오1186	최*성	서울특별시 강남구	3	349,360	47
3576	05거0841	송*재	서울특별시 종로구	1	639,600	47
3577	05보1750	박*범	서울특별시 강남구	1	639,600	47
3578	07구1213	정*훈	서울특별시 양천구	2	996,040	47
3579	08다9556	NGU**NG	서울특별시 성북구	7	305,360	47
3580	08보4096	허*희	서울특별시 서초구	1	632,400	47
3581	08수3525	(주)**셔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1	1,002,600	47
3582	09더9036	이*훈	서울특별시 노원구	1	646,800	47
3583	101하9258	주식회**퍼니	서울특별시 서초구	5	860,080	47
3584	10보2168	(주)**퍼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2	333,710	47
3585	10보4663	신*원	서울특별시 노원구	5	500,520	47
3586	111소7436	김*동	서울특별시 노원구	8	370,980	47
3587	38부7122	이*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5	1,764,120	47
3588	38오1942	주식회**틱스	서울특별시 구로구	7	340,460	47
3589	38주5682	손*승	서울특별시 강북구	7	310,480	47
3590	390오8625	대*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12	501,240	47
3591	390조7505	정*우	인천광역시 서구	6	399,200	47
3592	391나3628	(주)**채널	서울특별시 성동구	2	704,980	47
3593	392부4298	이*환	서울특별시 용산구	8	383,840	47
3594	393다9771	주식회**더리	서울특별시 마포구	1	646,800	47
3595	45저0293	김*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1	1,002,600	47
3596	45저5472	김*옥	서울특별시 노원구	1	981,000	47

등록연번	차량번호	성 명	기본 주소	과태료체납 건수	과태료 금액	발송회차
3597	45저5978	주식회**린텍	경기도 부천시	7	357,040	47
3598	45조1362	배*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6	325,450	47
3599	46가8196	이*구	서울특별시 서초구	4	410,050	47
3600	46누2131	(주)**웍스	서울특별시 서초구	1	632,400	47
3601	46누3157	이*민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5	302,820	47
3602	46누9027	(주)**웍스	서울특별시 강남구	6	847,450	47
3603	46도1800	박*갑	경기도 부천시	6	303,360	47
3604	46도4036	박*섭	서울특별시 구로구	3	331,600	47
3605	53고0206	김*일	서울특별시 은평구	4	445,000	47
3606	53고5566	김*일	경기도 여주시	1	300,810	47
3607	53노0818	정*선	서울특별시 강남구	7	820,120	47
3608	53다9903	현*우	서울특별시 도봉구	8	322,570	47
3609	53더0131	정*훈	경기도 파주시	4	300,120	47
3610	53더1096	주식회**티스	서울특별시 강남구	3	706,030	47
3611	53라9550	김*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1	690,000	47
3612	59수1334	전*호	서울특별시 구로구	3	728,650	47
3613	59어0424	FUQ**AN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6	1,790,810	47
3614	59어4586	주식회**스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1	959,400	47
3615	59오1105	주식회**렙스	서울특별시 강남구	6	888,020	47
3616	59오1577	박*경	서울특별시 서초구	3	704,290	47
3617	116주3478	유한회**프트	광주광역시 서구	8	356,580	47
3618	124러2013	남*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1	948,600	47
3619	127거4929	주*환	서울특별시 강북구	4	1,100,280	47
3620	12가7615	안*빈	서울특별시 성북구	4	610,400	47
3621	12노9176	강*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6	892,260	47
3622	12부9321	하*기	서울특별시 서초구	1	783,510	47
3623	12조4925	안*상	서울특별시 강남구	1	948,600	47
3624	13가9793	(주)**이스	서울특별시 서초구	3	727,970	47
3625	13두9019	(주)**이딩	서울특별시 용산구	7	338,800	47

등록연번	차량번호	성 명	기본 주소	과태료체납 건수	과태료 금액	발송회차
3626	13어3494	박*규	서울특별시 강남구	7	346,000	47
3627	142모7230	서*주	서울특별시 성북구	8	1,269,930	47
3628	146버4749	마*민	경기도 평택시	10	792,320	47
3629	14무6702	강*철	서울특별시 강동구	7	326,800	47
3630	14허8200	주식회**퍼니	서울특별시 서초구	3	771,440	47
3631	150조7642	유*구	서울특별시 강남구	3	726,800	47
3632	153거5643	최*정	서울특별시 강남구	1	970,200	47
3633	37보5510	ERD**IN	경기도 안산시	1	1,099,800	47
3634	38우7054	주식회**오픈	서울특별시 송파구	1	959,400	47
3635	39더1581	KHU**LI	서울특별시 성북구	1	1,110,600	47
3636	39라8741	정*권	서울특별시 송파구	1	511,680	47
3637	39서3624	황*원	인천광역시 남동구	2	307,680	47
3638	40가6344	고*아	서울특별시 구로구	1	1,045,800	47
3639	59우0995	하*용	서울특별시 은평구	7	383,460	47
3640	59저1829	XU **JI	서울특별시 구로구	1	632,400	47
3641	59조0769	(주)**어링	서울특별시 금천구	3	758,480	47
3642	60구2296	굿인슈**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1	646,800	47
3643	60구4851	주식회**설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8	350,590	47
3644	60노1767	주식회**러퍼	서울특별시 서초구	1	639,600	47
3645	60다1715	권*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7	308,560	47
3646	67부6609	(주)**상신	서울특별시 구로구	2	1,023,880	47
3647	67부7565	NJI**HE	경기도 평택시	6	305,760	47
3648	67서2937	현*혜	서울특별시 노원구	5	331,980	47
3649	67소0600	소*남	서울특별시 양천구	2	942,860	47
3650	67소3923	아이미**부요	서울특별시 구로구	2	678,400	47
3651	67수1470	권*효	서울특별시 노원구	6	348,180	47
3652	67수6274	(주)**엔지	서울특별시 강동구	1	632,400	47
3653	67어0103	정*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3	717,200	47
3654	67어8157	김*현	서울특별시 강남구	1	654,000	47

등록연번	차량번호	성 명	기본 주소	과태료체납 건수	과태료 금액	발송회차
3655	67조2550	김*민	서울특별시 송파구	6	301,410	47
3656	78라6027	안*걸	경기도 용인시	4	300,200	47
3657	78마1751	정*미	경기도 김포시	8	759,280	47
3658	78모0388	박*규	서울특별시 구로구	4	833,360	47
3659	78버5231	고*미	서울특별시 강동구	5	869,000	47
3660	78주4075	대성건**주)	경기도 용인시	6	353,260	47
3661	79도2325	(주)**디컬	서울특별시 중랑구	5	421,900	47
3662	79도2997	주식회**구독	서울특별시 강서구	1	319,800	47
3663	79두1676	LIU**BO	서울특별시 구로구	1	632,400	47
3664	79두9087	석*영	충청남도 홍성군	6	327,000	47
3665	82주5464	(주)**트리	서울특별시 용산구	1	632,400	47
3666	837마8725	송*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6	1,408,070	47
3667	839마9480	이*하	경기도 연천군	8	406,050	47
3668	839수1462	주식회**트카	서울특별시 구로구	7	396,700	47
3669	83거0713	이*형	경기도 성남시	4	302,400	47
3670	53더0627	강원**강원	서울특별시 노원구	4	325,500	47
3671	53머2743	천*규	서울특별시 서초구	8	423,180	47
3672	54다6779	엔유엔**회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7	307,120	47
3673	54소3759	이행**이행	서울특별시 은평구	3	302,480	47
3674	55모9101	정*희	서울특별시 성북구	1	970,200	47
3675	55소3107	김*현	서울특별시 서초구	1	646,800	47
3676	56고9367	윤*선	서울특별시 구로구	3	1,140,280	47
3677	56마7436	너츠소**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1	632,400	47
3678	57더2338	정*선	서울특별시 은평구	5	1,242,120	47
3679	57로4921	권*기	서울특별시 강북구	1	632,400	47
3680	58수2556	김*규	서울특별시 동작구	9	494,480	47
3681	59누6517	이*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9	364,980	47
3682	60거7978	주식회**너스	서울특별시 서초구	8	938,040	47
3683	60저1791	임*욱	서울특별시 강남구	1	1,002,600	47

등록연번	차량번호	성 명	기본 주소	과태료체납 건수	과태료 금액	발송회차
3684	61보8657	송현**송현	서울특별시 중랑구	4	854,720	47
3685	62구7682	윤*희	서울특별시 강남구	7	313,170	47
3686	63나2736	김*협	인천광역시 계양구	7	329,200	47
3687	64무0105	정*우	광주광역시 서구	7	344,080	47
3688	64저9782	김*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3	306,470	47
3689	83고3259	(주)**통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4	1,024,290	47
3690	83구4513	주식회**인롤	경기도 부천시	6	310,560	47
3691	83누0470	원*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1	639,600	47
3692	88조6646	김*권	경기도 남양주시	6	436,300	47
3693	89고3645	주식회**장평	경기도 고양시	5	305,840	47
3694	89고5839	황*재	경기도 수원시	6	315,280	47
3695	89고6301	엄*용	서울특별시 강북구	1	970,200	47
3696	89너0147	정*근	서울특별시 강동구	4	780,480	47
3697	89너8271	김*태	서울특별시 서초구	2	683,200	47
3698	89노2991	서광종**주)	서울특별시 종로구	1	646,800	47
3699	89노7781	하*복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2	837,400	47
3700	89누2854	정*영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5	322,870	47
3701	89더3178	조*구	서울특별시 송파구	1	948,600	47
3702	89도7191	이*복	서울특별시 강남구	1	959,400	47
3703	06루1503	주식회**을지	서울특별시 중구	1	646,800	47
3704	06무6111	박*선	경기도 남양주시	7	356,100	47
3705	06버8243	박*영	서울특별시 성북구	5	389,040	47
3706	06부2429	강*철	서울특별시 강남구	4	849,160	47
3707	06부6549	노*주	서울특별시 은평구	8	1,208,800	47
3708	06수2025	신*욱	울산광역시 중구	1	632,400	47
3709	06어2355	주식회**우징	서울특별시 강남구	1	959,400	47
3710	06우6846	유*영	서울특별시 강북구	10	434,080	47
3711	06조2164	(주)**투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2	1,012,770	47
3712	06조3842	정*영	경기도 고양시	5	303,440	47

등록연번	차량번호	성 명	기본 주소	과태료체납 건수	과태료 금액	발송회차
3713	06조6411	강*훈	서울특별시 구로구	7	303,990	47
3714	11누6954	LIG**UN	경기도 부천시	7	300,880	47
3715	11더3785	김*곤	서울특별시 은평구	2	1,009,700	47
3716	11더6636	애월두**회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3	301,040	47
3717	11도3400	주식회**이콘	서울특별시 중구	8	353,120	47
3718	11도7222	최*현	경기도 광주시	7	455,280	47
3719	65마2882	류*수	서울특별시 광진구	9	416,880	47
3720	66모7405	이*우	서울특별시 종로구	5	438,000	47
3721	67나1914	김*희	서울특별시 은평구	1	632,400	47
3722	67보3453	최*훈	인천광역시 부평구	6	304,800	47
3723	67조2345	장*옥	서울특별시 강남구	1	606,180	47
3724	68가8162	하*곤	인천광역시 서구	7	303,520	47
3725	68수8713	주식회**디오	서울특별시 서초구	4	846,890	47
3726	68우8034	윤*식	서울특별시 동작구	3	1,005,030	47
3727	69누7193	박*영	서울특별시 강동구	3	1,626,040	47
3728	69보8273	이*민	서울특별시 강동구	1	639,600	47
3729	70다1607	아이린** P	서울특별시 용산구	1	948,600	47
3730	70머2938	노*배	서울특별시 성북구	6	321,670	47
3731	70주0369	박*주	경기도 화성시	4	319,140	47
3732	72서6800	이*성	경기도 동두천시	5	321,700	47
3733	73루7216	이*철	서울특별시 은평구	2	302,080	47
3734	74루5256	석준**석준	서울특별시 성북구	1	618,280	47
3735	76다9132	최*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1	348,800	47
3736	800조2597	아이큐**주)	서울특별시 마포구	1	857,010	47
3737	804루9281	이*호	서울특별시 구로구	7	320,080	47
3738	807마4509	노*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1	646,800	47
3739	80구0883	주식회**앤씨	서울특별시 구로구	1	646,800	47
3740	80수3117	조*원	경기도 화성시	2	312,780	47
3741	816로3343	김*진	서울특별시 동작구	7	314,460	47

등록연번	차량번호	성 명	기본 주소	과태료체납 건수	과태료 금액	발송회차
3742	81부2817	주식회**알음	서울특별시 동작구	1	383,760	47
3743	824루1078	최*진	경기도 성남시	4	345,440	47
3744	82부4115	(주)**웍스	서울특별시 광진구	7	321,520	47
3745	11두9376	김*환	경기도 하남시	1	959,400	47
3746	11마0457	하*윤	서울특별시 구로구	1	632,400	47
3747	11모1133	김*열	서울특별시 도봉구	6	306,720	47
3748	11모8621	박*훈	서울특별시 중랑구	3	863,620	47
3749	11무1131	JIN**NG	서울특별시 도봉구	15	789,580	47
3750	11부2046	박*범	경기도 광명시	6	305,280	47
3751	11수7334	오*민	서울특별시 구로구	3	1,899,160	47
3752	11어1443	정*윤	서울특별시 양천구	1	604,260	47
3753	14소3778	(주)**람들	서울특별시 중구	1	668,400	47
3754	14소6548	주식회**에이	서울특별시 강서구	8	357,920	47
3755	14어9863	안*숙	경기도 성남시	5	301,200	47
3756	14조1399	(주)**리아	서울특별시 강남구	1	632,400	47
3757	14주1367	(주)**뮤직	경기도 성남시	17	788,720	47
3758	14주2158	조*주	서울특별시 강서구	4	316,790	47
3759	14주6930	손*훈	서울특별시 은평구	7	1,232,280	47
3760	14허8183	주식회**퍼니	서울특별시 서초구	1	632,400	47
3761	14허8193	주식회**퍼니	서울특별시 서초구	7	939,120	47
3762	150도4861	주식회**건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6	359,100	47
3763	17어5174	(주)**이티	경기도 화성시	8	353,780	47
3764	17주5353	최*준	서울특별시 강남구	1	948,600	47
3765	180다5896	김*옥	서울특별시 성북구	8	406,900	47
3766	181라2992	주식회**도감	서울특별시 강남구	1	632,400	47
3767	181마5183	(주)**엔디	서울특별시 강남구	1	463,760	47
3768	181소5881	허*민	서울특별시 양천구	1	639,600	47
3769	181조8582	(주)**그인	서울특별시 송파구	1	632,400	47
3770	182가8395	LIT**NG	서울특별시 구로구	5	561,520	47

등록연번	차량번호	성 명	기본 주소	과태료체납 건수	과태료 금액	발송회차
3771	182너6182	원*환	서울특별시 강북구	53	2,678,480	47
3772	22너7670	주식회**구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5	922,800	47
3773	82주8194	이*환	서울특별시 구로구	1	639,600	47
3774	83구6168	송*의	서울특별시 은평구	2	815,110	47
3775	846부1186	구*민	서울특별시 은평구	1	428,800	47
3776	84어3737	노*홍	서울특별시 은평구	2	1,440,570	47
3777	84주1825	이*심	서울특별시 서초구	1	527,110	47
3778	85로9373	JIA**NG	서울특별시 종로구	1	661,200	47
3779	85서7360	공*택	경기도 성남시	4	301,300	47
3780	86수8313	안*섭	인천광역시 연수구	3	307,600	47
3781	87로4008	주식회**시안	서울특별시 구로구	2	1,617,000	47
3782	87부8591	최*정	서울특별시 도봉구	7	1,126,800	47
3783	88러5907	주식회**미각	서울특별시 성북구	1	639,600	47
3784	89저8665	이*용	경기도 군포시	14	569,180	47
3785	93거9744	주식회**래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2	1,490,110	47
3786	91다0795	박*경	서울특별시 성북구	8	695,200	47
3787	91머0755	유한회**연합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4	358,880	47
3788	91주7738	박*혁	서울특별시 강남구	1	621,600	47
3789	97머0502	전*영	서울특별시 강동구	2	1,009,770	47
3790	경기92자4284	박*용	경기도 구리시	5	306,160	47
3791	서울31사9781	김*수	인천광역시 계양구	1	904,410	47
3792	서울55너4262	박*진	서울특별시 구로구	4	1,805,400	47
3793	서울72바6515	다우관**주)	서울특별시 서초구	1	315,130	47
3794	40두7559	윤*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1	632,400	47
3795	41누9591	김*권	서울특별시 송파구	1	632,400	47
3796	41무9719	명*현	경기도 하남시	7	313,360	47
3797	42두6684	서*석	서울특별시 강북구	4	873,730	47
3798	22도6949	홍*실	서울특별시 강남구	2	923,140	47
3799	22루0812	황*우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5	322,220	47

등록연번	차량번호	성 명	기본 주소	과태료체납 건수	과태료 금액	발송회차
3800	22마1679	김*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1	632,400	47
3801	22머2060	최*희	서울특별시 송파구	5	418,280	47
3802	22머4905	주식회**리드	서울특별시 송파구	1	948,600	47
3803	22모1068	주식회**베하	서울특별시 강남구	10	425,920	47
3804	22모2848	김*주	서울특별시 강북구	3	461,980	47
3805	25조6925	박훈**박훈	서울특별시 구로구	1	632,400	47
3806	25주2724	주식회**자인	경기도 평택시	7	320,560	47
3807	261마5720	박*은	경상북도 포항시	7	536,720	47
3808	262도7139	이*영	경기도 평택시	1	649,400	47
3809	263루3363	(주)**앙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	344,000	47
3810	263보1917	김*환	서울특별시 은평구	1	970,200	47
3811	264루8208	주식회**이오	경기도 평택시	7	323,440	47
3812	264소4968	국*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1	639,600	47
3813	266조5178	한국금**주)	서울특별시 종로구	2	508,510	47
3814	91주5404	(주)**너지	인천광역시 연수구	8	369,920	47
3815	91주5454	서*준	인천광역시 남동구	8	524,640	47
3816	91주6164	(주)**셔널	서울특별시 중랑구	1	646,800	47
3817	92고7883	(주)**스템	서울특별시 중구	1	632,400	47
3818	92나0464	강*중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6	330,640	47
3819	92너7316	이*렬	서울특별시 강동구	6	373,840	47
3820	92누0352	(주)**산업	서울특별시 송파구	1	639,600	47
3821	92누0589	박*운	서울특별시 구로구	2	677,010	47
3822	42부4666	이*준	서울특별시 마포구	8	366,080	47
3823	43수4197	유민**유민	서울특별시 은평구	1	471,130	47
3824	45구5717	리더스**회사	서울특별시 구로구	1	959,400	47
3825	46노1323	손*일	서울특별시 마포구	7	315,280	47
3826	46서7808	김*진	서울특별시 강동구	5	507,610	47
3827	47너0175	심*준	서울특별시 은평구	1	408,750	47
3828	47무1981	(주)**워크	서울특별시 종로구	1	981,000	47

등록연번	차량번호	성 명	기본 주소	과태료체납 건수	과태료 금액	발송회차
3829	48서1902	안*영	서울특별시 양천구	6	344,960	47
3830	48수7818	이*현	서울특별시 양천구	2	336,100	47
3831	49어0119	이*기	서울특별시 송파구	9	2,148,040	47
3832	50마2221	양*석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7	329,180	47
3833	50조4221	이*희	서울특별시 강북구	15	679,270	47
3834	51라5061	문*환	서울특별시 성북구	1	632,400	47
3835	51무7751	재하건**회사	서울특별시 은평구	2	492,670	47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5-3152호

종합건설사업자 처분 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가 있는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의거 처분 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를 법인의 본점 소재지 및 대표자 주소지 등으로 등기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5년 11월 13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공고기간 : 2025.11.13. ~ 2025.11.27.(14일간)

2. 처분 사전통지 사항

업 체 명 (대표자)	업종 및 등록번호	소 재 지	위반내용	예정된 처분내용	위반 법규	의견제출 통지 기한	처분 근거
㈜대승아키종합건설 (이상철)	건축 공사업 01 - 4750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3길 91, 201호(방배동)	2024년도 건설업 실태조사 자료 미제출(자본금) 「2024년도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실태조사 위탁기관으로 지정된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에 결산 재무제표 등을 제출하지 않음	시정명령	법 제49조 제1항	2025.11. 28.(금)	법 제81조 제4호
㈜지견종합건설 (최여경)	건축 공사업 01-1812	서울특별시 서초구 논현로 79, 1817호(양재동)	2024년도 건설업 실태조사 자료 미제출(자본금) 「2024년도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실태조사 위탁기관으로 지정된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에 결산 재무제표 등을 제출하지 않음	시정명령	법 제49조 제1항	2025.11. 28.(금)	법 제81조 제4호

3. 정당한 사유 없이 「행정절차법」 제2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우리시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건설혁신과 ☎02)2133-8119로 문의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5-3153호

종합건설사업자 처분 사전통지(청문)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가 있는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항에 의거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를 법인의 본점 소재지 및 대표자 주소지 등으로 등기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5년 11월 13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공고기간 : 2025.11.13. ~ 2025.11.27.(14일간)

2. 처분 사전통지 사항

업 체 명 (대표자)	업종 및 등록번호	소 재 지	위반내용	예정된 처분내용	청문실시		처분 근거
					일시 및 장소	주재자	
프르미건설㈜ (안원근)	건축 공사업 01-5251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18길 16-17 201호 (양재동)	등록기준 미달(보증가능금액)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미발급	영업정지	2025.12.16.(화) 11:00 건설혁신담당관 청문실	담당 사무관 김문수	법 제83조 제3호

3.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에 응하지 않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우리시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건설혁신과 ☏02)2133-8119로 문의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5-3165호

도시관리계획((구)서초소방학교 부지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 열람공고

1. (구)서초소방학교 부지 일대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 본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주민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1월 13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가. 열람기간 : 열람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
나.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본청 11층 공공개발담당관(☎02-2133-8364)
서초구청 도시계획과(서초구 강남대로 221 양재역환승주차장 5층 509호, ☎02-2155-6812)
다 열람내용 :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 신설(열람장소 비치도서 참조)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구)서초소방학교 부지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서초구 서초동 391 일원	-	증) 39,989	39,989	-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 변경(열람장소 비치도서 참조)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 신설(열람장소 비치도서 참조)
4.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 신설(열람장소 비치도서 참조)
5.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 : 신설(열람장소 비치도서 참조)

라. 관계도서 : 생략(열람장소 비치도서 참조)
마.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구)서초소방학교 부지 일대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 및 계획결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서울소식 → 공고 → 도시관리계획안 열람공고에서도 확인 가능]
- 열람내용은 확정된 안이 아니므로 추후 도시관리계획 결정 절차 이행 중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공공개발담당관(☎02-2133-836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5-3166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인가 취소 처분 통지 공시송달 공고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82조에 따른 조합 설립인가 취소 처분을 위해, 조합 사업장폐쇄 및 대표자 연락두절, 수취인부재, 폐문부재 등으로 인해 우편송달이 불가한 조합에 대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공시송달)에 따라 아래와 같이 통지합니다.

2025년 11월 13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처분 대상(조합)

연번	인가번호	조합명	조합 소재지	대표자
1	서울특별시 제2011-19호	참소망의료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457, 2층	강병용
2	서울특별시 제2012-8호	서현의료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서울특별시 중랑구 동일로 680	이영미

2. 처분내역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인가 취소

3. 처분사유
- (참소망, 서현)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 정지
- (서현) 보건·의료사업을 하는 조합이 「의료법」 상 의료기관 개설 허가취소에 해당하는 규정을 위반한 경우

※「의료법」 위반 내용 : 정당한 사유없이 「의료법」 제40조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6개월 이상 의료업을 하지 아니한 때(「의료법」 제64조 제1항 제5의2호)

4. 근거법령 :
- (참소망, 서현)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82조(설립인가의 취소) 제1항 제4호
- (서현)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82조(설립인가의 취소) 제1항 제5호

5. 처 분 일 :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 효력 발생(행정절차법 제15조 제3항)

6. 처분행정청 : 서울특별시장
-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15층 서울시청 공정경제과
- 담당자 : 서윤성(전화 02-2133-5364)

7. 행정심판 · 행정소송 및 이의신청 청구절차
- 행정심판의 청구는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서울특별시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행정소송의 제기는 행정법원에 하여야 함.
- 이의신청은 처분 행정청에 문서 제출을 통해 하여야 함.

8. 행정심판 · 행정소송 및 이의신청 청구기간
- 행정심판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 청구(행정심판법 제27조)
- 행정소송 :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등이 있었던 날부터 1년 이내 청구(행정소송법 제20조)
- 이의신청 :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청에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제기가 가능함(행정기본법 제36조)

9. 준수사항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54조에 의거하여 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1개월 이내에 해산등기하여야 하며 등기를 게을리 할 경우 동법 제88조 제3항에 의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됨.
- 해산등기 이후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의 법령에 따라잔여재산 청산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며,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56조에 따라 보건 · 의료사업을 하는 조합은 청산잔여재산을 조합원에게 분배할 수 없음
- 이에 따라, 민법 제80조 제2항에 의거하여 잔여재산 처분방법을 총회 의결을 통해 정하고 해당 사항에 대해 처분행정청의 잔여재산 처분인가를 받은 후 재산 처분하여야 함.(다음 페이지 서식 첨부)

잔여재산 처분인가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10일

신청조합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이 사 장 (이사·청산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처분재산	종류 및 수량
	금액
	처분 방법

처분 사유

「민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잔여재산 처분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신청(신고)인 제출서류	1. 해산 당시의 정관 1부(해산 신고 시의 정관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총회의 회의록(사단법인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해산 신고 시에 제출한 서류만으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서류 확인 및 검토	→	결재	→	결과 통지
신청인				처리기관: 서울특별시 (공정경제과)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신설 2024. 1. 4.>

청산종결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즉시

청산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청산조합·연합회·전국연합회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청산 연월일		
청산 취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12조 및 「민법」 제9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산 종결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청산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신고인(청산인) 제출서류	없 음	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5-3173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공고 (공시송달)

「민법」 제38조 및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9조에 의거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하고 각 당사자에게 처분 사실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 송달이 불가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5년 11월 13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처 분 명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2. 처분이유 : 허가 조건 위반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불이행)
3. 처분근거 : 「민법」 제38조 및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9조
4. 처 분 일 : 2025. 10. 24.(금)
5. 당 사 자 : (사)청년김대중 외 11개 법인 (당사자 일람표 참고)

○ 당사자 일람표

연번	법인명	소재지	대표자
1	(사)청년김대중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4길 20, 714호	이대선
2	(사)드림희망나눔행복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지1길 12, 1층	강수근
3	(사)다른백년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청로10길 12, 2층	이병한
4	(사)국민소통진흥협회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22, 4층	김성윤
5	(사)참여와나눔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로13바길 38-9, 1층	김종원
6	(사)한국자유언론인협회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차산로 110, 403호	김영재
7	(사)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정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53길 22	우일현
8	(사)서울특별시도봉구의정동우회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552, 2층	박승호

연번	법인명	소재지	대표자
9	(사)라이즈업코리아운동협의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551, 1301호	정근모
10	(사)서울특별시중랑구의정회	서울특별시 중랑구 겸재로 263	한팔만
11	(사)서울시민자치센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32길 32, 501호	송인문
12	(사)서울특별시종로구의정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5길 5	정명호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행정국 시민협력과 (02-2133-6329)

이 처분에 관하여 불복하고자 할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두 기간 중 하나라도 도래하면 심판청구를 할 수 없음)에 국민권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두 기간 중에 하나라도 도래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음)에 관할 법원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서울특별시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사항은 관계 법령을 참고바랍니다.

비영리법인 설립허가가 취소되면 「민법」 제77조 제1항에 따라 해산되므로, 동법 제85조 및 제86조에 의거 3주간내에 해산등기 및 해산신고를 해야 합니다. 아울러 동법 제94조에 의거 청산이 종결한 때에는 3주간내에 청산종결 등기를 하고 주무관청(서울특별시청)에 이를 신고 하여야 합니다.

만약 등기를 해태한 경우 「민법」 제97조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음을 양지바랍니다. 아울러 주무관청에 관한 해산신고 및 청산종결 신고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참고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5-3174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3조 규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동법 제78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의거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영업소 소재지 및 대표자 주소지 등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 보관기간 경과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3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건 명: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2. 근 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3조, 제78조제1항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58조 및 별표 10
3. 대 상

연번	상호 (대표자)	소재지	세목	위반내용	부과 예정액 (자진납부액)	위반 일시	반송 사유
1	주식회사 드*링 (전*환)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128길 16-*(논현동)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과태료	정보통신공사업 변경신고 지연 (기술자)	250,000원 (200,000원)	2025.06.30.	이사불명, 보관기간 경과 등

4. 공고 기간: 2025. 11. 13. ~ 2025. 11. 27.(15일간)
5. 의견 제출기한: ~ 2025. 12. 11.
6. 유의사항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처분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서면 또는 구두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단, 당사자가 의견제출 기간 내에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하면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가 종료되어 의견제출 및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의거 의견 제출기한 내에는 자진납부액(부과예정액의 20% 감경)으로 납부가능하며 제출기한 내 의견이 없는 경우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부과예정액으로 부과합니다.
   - 공고 대상자는 서울특별시 정보통신과에서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발급받아 은행(인터넷뱅킹 포함), 무인수납기 등을 통해 납부 가능합니다.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장애인(중증장애인), 국가유공자(상이등급 3급 이상), 미성년자는 의견제출기간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 감경을 위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단,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 감경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의견 제출처: 서울특별시 정보통신과(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02-2133-2897)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정보통신과(☎ 02-2133-289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5-3175호

정보통신공사업 행정처분 공고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2조, 동법 시행령 제55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정보통신공사업 행정처분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3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정보통신공사업 행정처분 내용

연번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처분사유	처분내용
1	203132	주식회사 정이엔지 (김*남)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8길 40 (역삼동)	등록기준 미달 (기술능력)	영업정지 15일 (2025.11.13.~2025.11.27.)
2	200464	㈜나우티앤에스 (김*규)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273, 1302호(구로동, 에이스트윈타워2차)	등록기준 미달 (기술능력)	영업정지 15일 (2025.11.13.~2025.11.27.)
3	203354	주식회사 에이콘컴퍼니 (안*훈)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27, 농수산물유통공사 1302호 (양재동)	등록기준 미달 (기술능력)	영업정지 15일 (2025.11.13.~2025.11.27.)
4	203727	주식회사 인더스웰 (이*숙)	서울 금천구 두산로 70, 에이동 제7층 708호(독산동, 현대지식산업센터)	등록기준 미달 (기술능력)	영업정지 15일 (2025.11.13.~2025.11.27.)
5	203513	주식회사 넷앤시큐어 (김*규)	서울 송파구 백제고분로18길 3, 5층(잠실동)	등록기준 미달 (기술능력)	영업정지 1개월 (2025.11.13.~2025.12.12.)
6	201895	㈜한덕엔지니어링 (한*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운로 138, 6층(서초동, 서초동아타워)	등록기준 미달 (기술능력)	영업정지 1개월 (2025.11.13.~2025.12.12.)

연번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처분사유	처분내용
7	203490	주식회사 소비코시스템 (권*섭)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25길 77, 2층(방배동)	등록기준 미달 (기술능력)	영업정지 1개월 (2025.11.13.~2025.12.12.)
8	203237	주식회사 드웰링 (Dwelling Co., Ltd.) (전*환)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128길 16-2 (논현동)	등록기준 미달 (기술능력)	영업정지 1개월 (2025.11.13.~2025.12.12.)
9	202208	㈜비엠시스솔루션 (김*천)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34길 39, BMS빌딩 2층 (석촌동)	등록기준 미달 (기술능력)	영업정지 1개월 (2025.11.13.~2025.12.12.)

2. 근거법령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66조(영업정지와 등록취소 등), 동법 시행령 제50조(영업정지 등) 및 별표8

3. 내용문의 : 서울특별시 정보통신과 ☎ 02-2133-2897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5-3177호

도시관리계획(필동 일대 지구단위계획 및 장충동2가 191일대 특별계획구역 지정 및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안) 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532호(2021.9.23.)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된 필동 일대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장충동2가 191 일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필동 일대 지구단위계획 및 장충동2가 191 특별계획구역 지정 및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안)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7조에 따라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 기간 내 의견서를 열람 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1월 13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
2.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과(☎ 02-2133-8374)
   중구청 도심정비과(☎ 02-3396-5726)
3. 열람내용

Ⅰ. 결정(변경)취지

○ 필동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장충동2가 191일대 유휴부지를 활용한 관광숙박시설 건립으로 관광진흥 및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필동 일대 지구단위계획 및 장충동2가 191 특별계획구역 지정 및 세부개발계획 수립)을 결정(변경)하는 사항임

Ⅱ. 필동 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 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최초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필동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중구 필동 일대	366,553.9	-	366,553.9 (10,430.8)	2021.09.23. (서울시고시 제2021-532호)	-

※ 면적의 ( )는 장충동2가 191 특별계획구역 면적임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1. 용도지역 · 지구에 관한 결정

가. 용도지역 결정조서

(1) 용도지역 결정조서 : 변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366,533.9	-	366,553.9	100.0	
주거지역	소 계	362,549.8	-	362,549.8	98.9	
	제1종일반주거지역	174,705.4	-	174,705.4	47.7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187,800.3	감) 9,364.3	178,436.0	48.7	
	제3종일반주거지역	44.1	-	44.1	0.0	
	준주거지역	-	증) 9,364.3	9,364.3	2.6	
상업지역	소 계	4,004.1	-	4,004.1	1.1	
	일반상업지역	4,004.1	-	4,004.1	1.1	

나. 용도지구 결정조서

1) 경관지구

(1) 경관지구 결정조서 : 변경없음

(2) 고도지구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치	면적(㎡)	고도제한 내용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①	남산 주변	고도지구	중구 남산동2가 49-49, 예장동 1-1, 용산구 후암동 402-3 일대	343,461 (139,385)	20m 이하	건설부 고시 제174호 ('72.5.8.)	① 건축물 높이 산정 기준 별도참조 ② 〈완화시 기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완화 (별도참조)
기정	②	남산 주변	고도지구	중구 회현동1가 143-4, 남산동2가 32-3, 필동2가 85-1, 신당동 432-106 일대, 용산구 후암동 244-79, 이태원동 729, 한남동 일대	1,021,831 (214,544)	28m 이하		

※ 고도제한 완화사항은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고도지구,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 결정(변경) 고시(서울시고시 제2024-317호))에 따름

※ 면적의 ( )는 필동 일대 지구단위구역내 사항임

① 건축물 높이산정 기준

• 지표면으로부터 건물 최상단까지의 높이[단, 지표면 산정방법은 건축법령을 따르되, 건물 옥상돌출부, 옥상돌출물 및 필로티는 높이에 포함하며, 옥상에 설치되는 높이 3m 이내의 승강기탑·계단탑 및 난간벽(투시형 또는 그 벽면적의 2분의1 이상이 공간으로 되고 높이 1.5m 미만인 것에 한정)은 제외]

② 고도지구 완화기준

• 지형차에 의한 높이완화기준
 - 적용대상 : 북한산 주변, 남산 주변, 구기 · 평창 고도지구
 - 완화범위: 대상지가 인접대지보다 낮은 지역에 대해 완화
 (12m, 16m지역 → 최대20m이하까지 완화 / 20m, 24m지역 → 최대28m이하까지 완화)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도시의 경관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완화

• 정비사업 등 추진 시 경관관리 가이드라인을 통한 높이완화기준
 - 적용대상 : 북한산 주변, 남산 주변, 구기 · 평창 고도지구
 - 완화범위 : 정비사업 등 추진 시 경관관리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市 도시계획 관련 위원회 심의(자문)를 거쳐 최대 45m 범위 등 내에서 완화 가능
 ※ 완화적용 방법, 세부운영기준 등 북한산 주변, 남산 주변, 구기 · 평창 고도지구 경관관리 가이드라인은 서울특별시장이 별도로 정함

• 높이 초과 아파트(공동주택)에 대해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 추진 시 높이기준 완화 가능(신설)
 - 적용대상 : 북한산 주변, 남산 주변, 구기 · 평창 고도지구

• 고도지구 지정 이전 건축으로 높이초과된 관광숙박시설(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1항2호 가, 다목에 따른 호텔업에 한함)의 경우 기존높이까지 완화 가능(신설)
 - 적용대상 : 남산 주변 고도지구

2.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

가. 교통시설

1) 도로 : 변경없음

2) 주차장 : 변경없음

나. 공간시설

1) 공공공지 : 변경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공공 공지	남학동 25-1	373.8	-	373.8	중구고시 제33호 (2001.5.4.)	
기정	②	공공 공지	필동2가 111-2	358.3	-	358.3	중구고시 제51호 (2002.8.16.)	
신설	③	공공 공지	장충동2가 193-65일대	-	증) 1,030.5	1,030.5	-	인접 공공시설과 공동개발 권장

※ 신설되는 공공공지의 건축물은 인접 공공시설과 공동개발 권장 결정을 통해 통합개발 유도

■ 공공공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③	공공공지	• 공공공지 신설	• 공공공지 신설 및 인접 공공시설 (장충복합문화센터, 어린이집)과의 공동 개발을 통해 지역주민을 위한 복합 용도의 공공시설 공급

다. 공공 · 문화체육시설

1) 학교 : 변경없음

2) 문화시설 : 변경없음

(1) 문화시설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

가. 가구 및 획지계획 : 변경

■ 기정

구분	계획내용
가구 및 획지	• 본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는 역사 · 문화자원과 옛 도시조직의 유지를 위하여 별도의 가구 및 획지계획은 없음

■ 변경(안)

구분	계획내용
가구 및 획지	• 본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는 역사 · 문화자원과 옛 도시조직의 유지를 위하여 별도의 가구 및 획지계획은 없음 ※ 특별계획구역 제외
	• 장충동2가 191 특별계획구역 - 특별계획구역 면적 : 10,430.8㎡

■ 변경사유서

구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신설	• 특별계획구역 신규 지정에 따른 획지계획 신설	• 합리적 토지이용을 위하여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수립에 따른 가구 및 획지 계획 수립 • 지번 -장충동2가 191(5,091.9㎡), 장충동2가 191-24(775.0㎡), 장충동2가 191-45(303.8㎡), 장충동2가 193-21(366.9㎡), 장충동2가 193-21(366.9㎡), 장충동2가 193-216(72.4㎡) 장충동2가 193-293(78.8㎡), 장충동2가 193-297(28.5㎡), 장충동2가 193-304(2.3㎡), 장충동2가 193-307(0.3㎡), 장충동2가 193-339(7.0㎡), 장충동2가 193-341(7.8㎡), 장충동2가 193-41(1,273.7㎡), 장충동2가 193-47(310.7㎡), 장충동2가 193-48(209.4㎡), 장충동2가 193-58(90.1㎡), 장충동2가 193-65(693.0㎡), 장충동2가 193-68(288.9㎡), 장충동2가 193-57(74.8㎡), 묵정동 21-11(147.4㎡), 장충동2가 193-493(0.2㎡), 장충동2가 193-28(98.4㎡)

나. 최대개발규모 : 변경

■ 기정

구분		최대개발규모		완화기준
		기준	완화	
최대개발규모	주자1. 주자2. 주자3. 필동3	200㎡ 이하	300㎡ 이하	권장용도 도입 시 최대개발규모 완화면적 적용
	필동1-1, 필동1-2, 필동 1-3	300㎡ 이하	-	
	필동2-1, 필동2-2, 필동2-3, 가로, 장충1-1, 장충1-2, 장충2	300㎡ 이하	400㎡ 이하	

※ 최대개발규모 적용의 예외
- 공동개발 계획(공동개발 지정 또는 권장)이 수립된 대지
- 기존 대지규모가 최대개발규모를 초과하거나, 이미 공동개발이 진행된 대지

※ 건축협정 시 건축협정이 체결된 부지 전체를 최대개발규모 이하로 개발

■ 변경(안)

구분		최대개발규모		완화기준
		기준	완화	
최대개발규모	주자1. 주자2. 주자3. 필동3	200㎡ 이하	300㎡ 이하	권장용도 도입 시 최대개발규모 완화면적 적용
	필동1-1, 필동1-2, 필동 1-3	300㎡ 이하	-	
	필동2-1, 필동2-2, 필동2-3, 가로, 장충1-1, 장충1-2, 장충2	300㎡ 이하	400㎡ 이하	

※ 최대개발규모 적용의 예외
- 공동개발 계획(공동개발 지정 또는 권장)이 수립된 대지
- 기존 대지규모가 최대개발규모를 초과하거나, 이미 공동개발이 진행된 대지, 특별계획구역

※ 건축협정 시 건축협정이 체결된 부지 전체를 최대개발규모 이하로 개발

■ 변경사유서

구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	• 단서 조항 추가	• 특별계획구역 신설에 따른 특별계획구역 최대개발 규모 적용 예외사항 추가

다. 공동개발 : 변경

■ 기정

구분		계획내용	비고
공동개발 지정	• 단독개발이 불가능한 필지 중 맹지	• 29개소	
공동개발 권장	• 단독개발이 곤란한 필지 중 공동개발 시 최대개발규모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정형필지 및 과소필지	• 9개소	

※ 이미 공동개발이 진행된 대지는 공동개발 계획(지정 또는 권장) 수립 대상에서 제외

■ 변경(안)

구분		계획내용	비고
공동개발 지정	• 단독개발이 불가능한 필지 중 맹지	• 28개소	
공동개발 권장	• 단독개발이 곤란한 필지 중 공동개발 시 최대개발규모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정형필지 및 과소필지 • 공공시설 및 공공시설용지 중 서로 연접하여 공동개발을 통해 지역 주민을 위한 통합 공공시설이 조성가능한 공공시설용지	• 9개소	

※ 이미 공동개발이 진행된 대지는 공동개발 계획(지정 또는 권장) 수립 대상에서 제외

1) 공동개발에 관한 결정조서

■ 기정

가구번호	구분	위 치	면 적(㎡)		비고
-	공동개발 지정	묵정동 21-13	33.1	726.1	
		장충동2가 193-65	693.0		
-	공동개발 권장	장충동2가 191-76	1.0	404.1	
		장충동2가 191-78	358.2		
		장충동2가 191-75	25.0		
		장충동2가 191-77	19.9		

※ 금회 변경되는 사항만 명기

■ 변경(안)

가구번호	구분	위 치	면 적(㎡)		비고
-	공동개발 권장	묵정동 21-4	237.6	3,008.7	충무 어린이집
		묵정동 22-1	199.1		장충 공영주차장
		장충동2가 193-39	1,541.5		장충 공영주차장
		장충동2가 193-65 일원	1,030.5		③ 공공공지

※ 금회 변경되는 사항만 명기

■ 변경사유서

구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폐지	• 공동개발 지정, 권장 폐지	• 특별계획구역 지정에 따라 기 결정된 공동개발 지정(묵정동 21-13, 장충동2가 193-65), 공동개발 권장(장충동2가 191-76, 191-78, 191-75, 191-77) 폐지
신설	• 공동개발 권장 신설	• 지역주민을 위한 복합용도의 공공시설 공급을 위한 인접 공공시설(장충복합문화센터, 어린이집), 신규 공공공지 공동개발 권장 결정

2. 건축물에 관한 결정

가. 건축물 용도계획

○ 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각 용도지역·지구별로 도입 가능한 용도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하는 용도지역·지구 안에서 허용할 수 있는 용도 범위 내에서 적용구역 또는 부지 별로 입지 가능한 용도를 별도로 정함

○ 자연경관지구,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로 결정되어 있거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기준에 부합하여야 함

1) 불허용도 : 변경없음

○ 불허용도가 계획된 대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계법령에 의거 각 용도지역ᄌ지구에서 제한되는 건축물 및 시설 등은 입지를 불허하며 관계법령에 의해 도입 가능한 용도인 경우에도 아래 불허용도로 제시된 용도의 입지는 불허함

구 분	적용구역	건축법상 용도분류		비고
		대분류	소분류	
불허4	장충1-1	제1종근린생활시설	변전소, 도시가스배관시설, 통신용 시설, 정수장, 양수장 등	
		제2종근린생활시설	서커스장,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자동차영업소	
			총포판매소	
			장의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문화 및 집회시설	집회장	
			동·식물원	
		판매시설	도매시장	
			소매시장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시설, 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시설,	

구 분	적용구역	건축법상 용도분류		비고
		대분류	소분류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	
		의료시설	병원 중 정신병원	
		자동차 관련 시설	세차장, 차고	
		수련시설,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교정 및 군사 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 장충동2가 191 특별계획구역에 해당하는 적용구역(장충1-1)만 명기

2) 권장용도 : 변경

○ 권장용도가 적용된 구역에서 다음의 용도 도입을 권장함

■ 기정

구 분	적용구역	건축법상 용도분류		비고
		대분류	소분류	
권장4 (전층)	장충1-1	단독주택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다세대주택	「주택법」 제2조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 중 원룸형 주택에 한함
			기숙사	
		문화 및 집회시설	공연장 중 극장, 연예장, 음악당	
			전시장	
		노유자 시설	아동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 장충동2가 191 특별계획구역에 해당하는 적용구역(장충1-1)만 명기
※ 전층 권장용도는 해당 용도가 1층을 포함하여 연면적(용적률 산정용)의 50% 이상 도입 시 인정
※ 1층 권장용도는 1층 가로변 벽면길이 및 1층 바닥면적(주차장제외)의 50% 이상 설치 시 권장용도가 수용된 것으로 봄

■ 변경(안)

구 분	적용구역	건축법상 용도분류		비고
		대분류	소분류	
권장4 (전층)	장충1-1	단독주택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다세대주택	「주택법」 제2조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 중 원룸형 주택에 한함
			기숙사	
		문화 및 집회시설	공연장 중 극장, 연예장, 음악당	
			전시장	
		노유자 시설	아동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및	

구 분	적용구역	건축법상 용도분류		비고
		대분류	소분류	
			근로복지시설	
장충동2가 191 특별계획구역		해당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을 따름		

※ 장충동2가 191 특별계획구역에 해당하는 적용구역(장충1-1)만 명기
※ 전층 권장용도는 해당 용도가 1층을 포함하여 연면적(용적률 산정용)의 50% 이상 도입 시 인정
※ 1층 권장용도는 1층 가로변 벽면길이 및 1층 바닥면적(주차장제외)의 50% 이상 설치 시 권장용도가 수용된 것으로 봄

■ 변경사유서

구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신설	• 적용구역 및 내용 신설	• 장충동2가 191 특별계획구역 신규 지정에 따른 내용 신설

3) 용도 완화계획 : 변경없음

나. 건축물 밀도계획

1) 건폐율 계획 : 변경

■ 기정

구분	건폐율	비고
자연경관지구	30% 이하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34조
제1종일반주거지역	60% 이하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44조
제2종일반주거지역	60% 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50% 이하	
일반상업지역	60% 이하	

※ 자연경관지구 내 건폐율 완화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름

■ 변경(안)

구분	건폐율	비고
자연경관지구	30% 이하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34조
제1종일반주거지역	60% 이하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44조
제2종일반주거지역	60% 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50% 이하	
준주거지역	60% 이하	
일반상업지역	60% 이하	

※ 자연경관지구 내 건폐율 완화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름

■ 변경사유서

구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신설	• 준주거지역 건폐율 기준 신설	• 장충동2가 191 특별계획구역 신규 지정 및 용도지역 변경(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 준주거지역)에 따른 건폐율 기준 명기

2) 용적률 계획

(1) 용적률 계획 : 변경

■ 기정

구분	건폐율			비고
	기준	허용	상한	
제1종일반주거지역 / 자연경관지구	150% 이하	150% 이하	법적용적률의 2배 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200% 이하	200% 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250% 이하	250% 이하		
일반상업지역	600% 이하	800% 이하		

※ 상업지역 내 건축물의 비주거용도(오피스텔 등 준주택 및 생활숙박시설 제외) 비율은 지상부 용적률의 10% 이상으로 함(단, 서울시고시 제2025-248호(2025.5.1.)에 따라 당해 지구단위계획 상 별도 규정에도 불구하고 미적용할 수 있으며, 도시계획조례에 따른 비주거비율은 해당 규정에 따름 등 상세내용은 해당 고시문의 결정 사항 참조)

※ 자연경관지구는 용적률 계획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를 따름

■ 변경(안)

구분	건폐율			비고
	기준	허용	상한	
제1종일반주거지역 / 자연경관지구	150% 이하	150% 이하	법적용적률의 2배 이하	-
제2종일반주거지역	200% 이하	200% 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250% 이하	250% 이하		
준주거지역	200% 이하	330% 이하	400% 이하	변경
일반상업지역	600% 이하	800% 이하	법적용적률의 2배이하	-

※ 상업지역 내 건축물의 비주거용도(오피스텔 등 준주택 및 생활숙박시설 제외) 비율은 지상부 용적률의 10% 이상으로 함(단, 서울시고시 제2025-248호(2025.5.1.)에 따라 당해 지구단위계획 상 별도 규정에도 불구하고 미적용할 수 있으며, 도시계획조례에 따른 비주거비율은 해당 규정에 따름 등 상세내용은 해당 고시문의 결정 사항 참조)
※ 자연경관지구는 용적률 계획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를 따름

■ 변경사유서

구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신설	• 준주거지역 용적률 기준 신설	• 장충동2가 191 특별계획구역 신규 지정 및 용도지역 변경(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 준주거지역)에 따른 용적률 기준 명기

(2)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계획 : 변경

■ 일반상업지역 : 변경없음

■ 장충동2가 191 특별계획구역 : 특별계획구역 지침에 따름

■ 변경사유서

구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신설	•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계획 신설	• 장충동2가 191 특별계획구역 신규 지정에 따른 허용용적률 계획 신설

(3) 상한용적률 완화 : 변경없음

다. 건축물 높이계획 : 변경

■ 기정

- 역사도심기본계획 최고높이계획기준에 따라 자연경관지구,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 고도지구의 현행 높이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고, 원형 옛 길변(퇴계로28길)은 「원형 옛 길 변 건축물의 높이기준」 적용
- 고도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수립된 고도지구 계획(서울시고시 제2024-317호(2024.06.27.))에 따름.
-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은 문화재보호법에서 정한 절차와 기준을 동시에 적용

도면표시	적용구역	위치	최고높이	비고
H-1	제1종일반주거지역	필동1-1, 필동2-2, 장충1-2	용도지구 관련 법령 및 규정 등에 따름	자연경관지구 높이기준
H-2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필동1-2	용도지구 관련 법령 및 규정 등에 따름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 높이기준
				용도지구(고도지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법령 및 규정 등에 따름
H-3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주자3	용도지구 관련 법령 및 규정 등에 따름	용도지구(고도지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법령 및 규정 등에 따름
H-4	제1종일반주거지역	필동1-3	용도지구 관련 법령 및 규정 등에 따름	용도지구(고도지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법령 및 규정 등에 따름
H-5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일반상업지역	주자1, 주자2, 필동2-1, 필동2-3, 필동3, 가로, 장충1-1, 장충2	용도지구 관련 법령 및 규정 등에 따름	용도지구(고도지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법령 및 규정 등에 따름

■ 변경(안)

- 역사도심기본계획 최고높이계획기준에 따라 자연경관지구,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 고도지구의 현행 높이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고, 원형 옛 길변(퇴계로28길)은 「원형 옛 길 변 건축물의 높이기준」 적용
- 고도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수립된 고도지구 계획(서울시고시 제2024-317호(2024.06.27.))에 따름.
-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은 문화재보호법에서 정한 절차와 기준을 동시에 적용

도면표시	적용구역	위치	최고높이	비고
H-1	제1종일반주거지역	필동1-1, 필동2-2, 장충1-2	용도지구 관련 법령 및 규정 등에 따름	자연경관지구 높이기준
H-2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필동1-2	용도지구 관련 법령 및 규정 등에 따름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 높이기준
				용도지구(고도지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법령 및 규정 등에 따름
H-3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주자3	용도지구 관련 법령 및 규정 등에 따름	용도지구(고도지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법령 및 규정 등에 따름

H-4	제1종일반주거지역	필동1-3		용도지구(고도지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법령 및 규정 등에 따름
H-5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일반상업지역	주자1, 주자2, 필동2-1, 필동2-3, 필동3, 가로, 장충1-1, 장충2	용도지구 관련 법령 및 규정 등에 따름	용도지구(고도지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법령 및 규정 등에 따름
H-6	준주거지역	장충동2가 191 특별계획구역	용도지구 관련 법령 및 규정 등에 따름	용도지구(고도지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법령 및 규정 등에 따름

■ 변경사유서

구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신설	• 건축물 높이기준 신설	• 장충동2가 191 특별계획구역 신규 지정 및 용도지역 변경(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 준주거지역)에 따른 높이기준 신설 •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고도지구,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 결정(변경)(서고시 제2024-317호) 적용

라. 건축물 배치 및 형태에 관한 계획

1) 건축물의 배치에 관한 계획 : 변경

○ 건축물의 방향성 및 배치 : 변경없음

○ 건축선 지정 : 변경

■ 기정

구분	계획내용		비고
	위치	제어기준	
건축선지정선	퇴계로28길변	• 대지경계선을 기준으로 지정 - 건축물의 외벽면이 대지전면 폭원의 1/2이상 접해야 함	주요원형옛길 형태보존
건축한계선	필동로변, 서애로변, 퇴계로50길변	• 주요가로에 면한 대지경계선을 기준으로 1m 후퇴	보도부속형 전면공지확보
	동호로변	• 주요가로에 면한 대지경계선을 기준으로 3m 후퇴	

■ 변경(안)

구분	계획내용		비고
	위치	제어기준	
건축선지정선	퇴계로28길변	• 대지경계선을 기준으로 지정 - 건축물의 외벽면이 대지전면 폭원의 1/2이상 접해야 함	주요원형옛길 형태보존
건축한계선	필동로변, 서애로변, 퇴계로50길변	• 주요가로에 면한 대지경계선을 기준으로 1m 후퇴	보도부속형 전면공지확보
	동호로변	• 주요가로에 면한 대지경계선을 기준으로 3m 후퇴	
	동호로25길	• 주요가로에 면한 대지경계선을 기준으로 2m 후퇴	
	동호로27길	• 주요가로에 면한 대지경계선을 기준으로 7~9m 후퇴	차도·보도부속형 전면공지 확보

■ 변경사유서

구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건축한계선	• 건축한계선 : 2m	• 동호로25길의 교통 흐름과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건축한계선 2m
	• 건축한계선 : 7~9m	• 동호로27길의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한 건축한계선 7~9m

2) 건축물 형태 및 색채, 외관 등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3.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

가. 대지 내 공지 및 통로 등에 관한 계획: 변경

■ 기정

구분	계획내용		비고
	위치	제어기준	
전면공지	동호로변, 필동로변, 서애로변, 퇴계로50길변	• 건축한계선을 통한 전면공지 확보 • 보도부속형 전면공지로 조성 • 전면공지는 접하는 보도 또는 차도와 단차를 없애고, 통행이 가능한 구조로 설치 • 전면공지 내 주차장, 통행장애물의 설치 금지	규제
공개공지	구역전체	• 공개공지 설치대상 건축물 및 조성 등에 관한 규정은 「건축법 시행령」 및 「서울특별시 건축조례」의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 조성 • 공개공지 위치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 당해 대지와 접한 도로 중 가장 넓은 도로변 또는 당해도로 가각부, 보행결절점 주변에 설치 • 다만, 인접부지에 공원, 광장, 쌈지형공지, 공개공지 등의 오픈 스페이스가 조성된 경우에는 당해 시설과 연계하여 설치	규제
대지안의 조경	구역전체	• 대지안의 조경의 위치는 전면도로에 인접하여 조성 권장 • 건축선 후퇴 부분에 인접하여 풍성한 조경식재와 인접 담장면의 녹화 권장	권장

■ 변경(안)

구분	계획내용		비고
	위치	제어기준	
전면공지	동호로변, 동호로27길, 동호로25길 필동로변, 서애로변, 퇴계로50길변	• 건축한계선을 통한 전면공지 확보 • 보도부속형 전면공지로 조성 • 전면공지는 접하는 보도 또는 차도와 단차를 없애고, 통행이 가능한 구조로 설치 • 전면공지 내 주차장, 통행방애물의 설치 금지	규제
공개공지	구역전체	• 공개공지 설치대상 건축물 및 조성 등에 관한 규정은 「건축법 시행령」 및 「서울특별시 건축조례」의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 조성 • 공개공지 위치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 당해 대지와 접한 도로 중 가장 넓은 도로변 또는 당해도로 가각부, 보행결절점 주변에 설치 • 다만, 인접부지에 공원, 광장, 쌈지형공지, 공개공지 등의 오픈 스페이스가 조성된 경우에는 당해 시설과 연계하여 설치	규제
대지안의 조경	구역전체	• 대지안의 조경의 위치는 전면도로에 인접하여 조성 권장 • 건축선 후퇴 부분에 인접하여 풍성한 조경식재와 인접 담장면의 녹화 권장	권장
공공보행통로	장충동2가 191 특별계획구역	• 기존 지역주민의 통행로 기능 유지 및 인접한 공공시설 이용 활성화를 위한 공공보행통로 설치	권장

■ 변경사유서

구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전면공지	• 전면공지 위치 추가	• 동호로27길 건축한계선을 통해 차량 및 보도부속형 전면공지 설치 • 동호로25길 건축한계선을 통해 보도부속형 전면공지 설치
공공보행통로	• 공공보행통로 신설 : 6m	• 공공보행통로 조성을 통해 기존 지역주민 통행로 유지 (동호로~퇴계로50길 연계), 저층부 보행 활성화 및 공공시설 이용 활성화

나. 교통처리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다. 경관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라. 환경친화적인 요소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4. 적용의 완화에 관한 사항 결정 : 변경없음

5.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신설)
가.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1) 특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위 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①	장충동2가 191 특별계획구역	장충동2가 191번지 일원	-	증) 10,430.8	10,430.8	-

■ 특별계획구역 결정 사유서

구역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장충동2가 191 특별계획구역	• 특별계획구역 신설 : 10,430.8㎡	• 유휴부지 개발계획 수립 및 관광숙박시설 도입을 통해 남산주변(장충동, 필동 일대)의 관광중심지로의 기능 활성화 • 지역 일대 노후화된 지역 개발을 통해 지역 중심성 강화 및 활성화를 위하여 특별계획구역 지정

2)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 장충동2가 191 주차장부지 특별계획구역(신설)

구 분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비 고
위 치			• 장충동2가 191번지 일원	-
구역면적			• 10,430.8㎡	-
획지면적			• 9,364.3㎡	
용도지역 · 지구			• 준주거지역 / 고도지구	-
건폐율			• 60% 이하	-
용적률		기준	• 200% 이하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25.01.16) 상한용적률 적용체계 반영
		허용	• 330% 이하	
		상한	• 400% 이하 • 상한용적률 완화 산식 : 허용용적률 × (1 + 1.3 × 가중치 × α토지 + 1.0 × α건축물 + 1.0 × α현금) ※ 가중치 : 공공시설 제공 부지 용적률/ 사업부지 용적률 ※ α토지 : 공공시설 등 부지(토지)로 제공하는 면적/ 공공시설(토지) 제공 후 대지면적 ※ α건축물 : 공공시설 등 부지(건축물 설치비용 환산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공공시설(토지) 제공 후 대지면적 ※ α현금 : 공공시설 등 부지(현금 환산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공공시설(토지) 제공 후 대지면적	
높이			• 최고높이 45m 이하 ※ 고도지구 높이기준 및 완화기준 적용	통합개발을 위한 높이계획 재산정
용도	불허용도	전층	[불허4]	-
	권장용도	전층	• 관광숙박시설 ※ 연면적의 50% 이상 계획	-
건축한계선			• 동호로 : 3m • 동호로25길 : 2m • 동호로27길 : 7~9m	-
대지내 공지	공개공지		• 동호로변, 공공보행통로변 공개공지 위치 지정	공개공지 2개소 신설
	전면공지		• 동호로27길 : 7~9m - 차도부속형 전면공지 : 6m - 보도부속형 전면공지 : 1~3m • 동호로25길 : 2m - 보도부속형 전면공지 : 2m	결정도 참조
	공공보행통로		• 동호로27길-퇴계로50길 간 지상부 보행연계를 위한 공공보행통로 지정	-
교통처리계획			• 동호로변 차량출입금지구간 지정	결정도 참조

공공기여에 관한 사항	• 순부담률 25% 이상	-
기타지침	• 인근 호텔과 연계한 지상, 지하 연결통로 조성(도로점용)	-

※ 권장용도는 해당 용도가 연면적의 50% 이상 도입시 인정

4 경미한 사항에 관한 결정 : 변경없음

Ⅲ.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안)

1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1.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신설)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①	장충동2가 191 특별계획구역	장충동2가 191번지 일원	-	증) 10,430.8	10,430.8	-

■ 특별계획구역 결정 사유서

구역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장충동2가 191 특별계획구역	• 특별계획구역 신설 : 10,430.8㎡	• 유휴부지 개발계획 수립 및 관광숙박시설 도입을 통해 남산주변(장충동, 필동 일대)의 관광중심지로의 기능 활성화 • 지역 일대 노후화된 지역 개발을 통해 지역 중심성 강화 및 활성화를 위하여 특별계획구역 지정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조서

1. 용도지역 · 지구에 관한 결정

가. 용도지역 : 변경

구 분	명 칭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10,430.8	-	10,430.8	100.0	
주거 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10,430.8	감) 9,364.3	1,066.5	10.2	
	준주거지역	-	증) 9,364.3	9,364.3	89.8	

나. 용도지구 : 변경없음

1) 경관지구

(1) 경관지구 결정조서 : 변경없음

(2) 고도지구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치	면적(㎡)	고도제한 내용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②	남산 주변	고도지구	중구 회현동1가 143-4, 남산동2가 32-3, 필동2가 85-1, 신당동 432-106 일대, 용산구 후암동 244-79, 이태원동 729, 한남동 일대	1,021,831 (10,430.8)	28m 이하	건설부 고시 제174호 ('72.5.8.)	① 건축물 높이 산정 기준 별도참조 ② 〈완화시 기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완화 (별도참조)

※ 고도제한 완화사항은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고도지구,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 결정(변경) 고시(서울시고시 제2024-317호))에 따름
※ ( )는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수립을 통해 완화되는 ' 장충동2가 191 주차장부지 특별계획구역 ' 면적임

① 건축물 높이산정 기준

• 지표면으로부터 건물 최상단까지의 높이[단, 지표면 산정방법은 건축법령을 따르되, 건물 옥상돌출부, 옥상돌출물 및 필로티는 높이에 포함하며, 옥상에 설치되는 높이 3m 이내의 승강기탑·계단탑 및 난간벽(투시형 또는 그 벽면적의 2분의1 이상이 공간으로 되고 높이 1.5m 미만인 것에 한정)은 제외]

② 고도지구 완화기준

• 지형차에 의한 높이완화기준
 - 적용대상 : 북한산 주변, 남산 주변, 구기 · 평창 고도지구
 - 완화범위: 대상지가 인접대지보다 낮은 지역에 대해 완화
 (12m, 16m지역 → 최대20m이하까지 완화 / 20m, 24m지역 → 최대28m이하까지 완화)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도시의 경관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완화

• 정비사업 등 추진 시 경관관리 가이드라인을 통한 높이완화기준
 - 적용대상 : 북한산 주변, 남산 주변, 구기 · 평창 고도지구
 - 완화범위 : 정비사업 등 추진 시 경관관리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市 도시계획 관련 위원회 심의(자문)를 거쳐 최대 45m 범위 등 내에서 완화 가능
 ※ 완화적용 방법, 세부운영기준 등 북한산 주변, 남산 주변, 구기 · 평창 고도지구 경관관리 가이드라인은 서울특별시장이 별도로 정함

• 높이 초과 아파트(공동주택)에 대해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 추진 시 높이기준 완화 가능(신설)
 - 적용대상 : 북한산 주변, 남산 주변, 구기 · 평창 고도지구

• 고도지구 지정 이전 건축으로 높이초과된 관광숙박시설(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1항2호 가,다목에 따른 호텔업에 한함)의 경우 기존높이까지 완화 가능(신설)
 - 적용대상 : 남산 주변 고도지구

2.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

가. 교통시설 : 변경없음

나. 공간시설

1) 공공공지 : 변경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공공 공지	남학동 25-1	373.8	-	373.8	중구고시 제33호 (2001.5.4.)	
기정	②	공공 공지	필동2가 111-2	358.3	-	358.3	중구고시 제51호 (2002.8.16.)	
신설	③	공공 공지	장충동2가 193-65 일대	-	증) 1,030.5	1,030.5	-	인접 공공시설과 공동개발 권장

※ 신설되는 공공공지의 건축물은 인접 공공시설과 공동개발 권장 결정을 통해 통합개발 유도

■ 공공공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③	공공공지	• 공공공지 신설	• 공공공지 신설 및 인접 공공시설 (장충복합문화센터, 어린이집)과의 공동 개발을 통해 다양한 계층의 지역주민을 위한 쾌적한 공공시설 공급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조서

가. 가구 및 획지 결정조서

가구		획지			비고
도면표시	면적(㎡)	획지 번호	위치	면적(㎡)	
장충동2가 191 특별계획구역	10,430.8	1	장충동2가 191, 장충동2가 191-24, 장충동2가 191-45, 장충동2가 193-21, 장충동2가 193-21, 장충동2가 193-293, 장충동2가 193-297, 장충동2가 193-304, 장충동2가 193-307, 장충동2가 193-339, 장충동2가 193-341, 장충동2가 193-41, 장충동2가 193-47, 장충동2가 193-48, 장충동2가 193-58, 장충동2가 193-68, 장충동2가 193-57, 묵정동 21-11, 장충동2가 193-493, 장충동2가 193-28	9,364.3	

가구		획지			비고
도면표시	면적(㎡)	획지 번호	위치	면적(㎡)	
		2	묵정동 21-11, 묵정동 21-13, 장충동2가 193-56, 장충동2가 193-65, 장충동2가 193-216	1,030.5	공공공지

※ 장충동2가 191 특별계획구역(10,430.8㎡) 중 도로면적(36.0㎡)은 표기제외

2.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조서

가. 건축물의 용도계획

구 분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안)
건축물용도	불허용도	•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변전소, 도시가스배관시설, 통신용 시설, 정수장, 양수장 등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셔커스장,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자동차영업소, 총포판매소, 장의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동·식물원 •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 소매시장,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시설, 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시설,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 •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 자동차관련시설 중 세차장, 차고 • 수련시설,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좌동
	권장용도	• 관광숙박시설 ※ 연면적의 50% 이상 계획	좌동

※ 권장용도는 해당 용도가 연면적의 50% 이상 도입시 인정

나. 건축물 밀도계획

1) 건폐율 계획

구 분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 고
건폐율	• 60% 이하	좌동	-

2) 용적률 계획

구 분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 고
용적률	기준	• 200% 이하	좌동	-
	허용	• 330% 이하	좌동	

	상한	• 400% 이하 • 상한용적률 완화 산식 : 허용용적률 × (1 + 1.3 × 가중치 × α토지 + 1.0 × α건축물 + 1.0 × α현금) ※ 가중치 : 공공시설 제공 부지 용적률/ 사업부지 용적률 ※ α토지 : 공공시설 등 부지(토지)로 제공하는 면적/ 공공시설(토지) 제공 후 대지면적 ※ α건축물 : 공공시설 등 부지(건축물 설치비용 환산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공공시설(토지) 제공 후 대지면적 ※ α현금 : 공공시설 등 부지(현금 환산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공공시설(토지) 제공 후 대지면적	400% 이하	

■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완화항목 및 완화내용(신설)

구분	세부항목		산정식
탄소중립	신재생에너지	서울특별시 녹색설계기준에 따른 재생열 의무기준 이상을 준수하는 경우 (기후환경본부 및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등 관련 방침 연동 적용)	기준용적률 x (설치(연)면적 ÷ 전체(연)면적) x 0.04
녹지생태 도시	개방형 공간 조성	시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대지면적의 일정 비율 이상 조성하는 경우 (공공보행통로는 통행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권을 설정하는 경우)	기준용적률 x (설치(연)면적 ÷ 전체(연)면적) x 3.0
지역맞춤형	전선지중화	가로지장물 · 지상 전주 · 전선 등을 지중화 또는 이전 설치하는 경우	기준용적률 x 0.2
건축물용도	지정 · 권장용도	• 20% 이상 설치 시 (주차장, 기전실 제외)	기준용적률 x (지정 · 권장용도면적/연면적) x 0.25
물환경	빗물이용시설	• 빗물저류 • 이용시설 용량 (ton) 및 빗물침투시설 침투량(ton/hr)의 합≧ 건축면적 x0.05 또는 대지면적 x0.02 이상 설치	기준용적률 x 0.04
	중수도	• 총 사용량의 10% 이상 처리시설 설치 시	기준용적률 x 0.04
	자연지반	• 자연토양 및 투수성 포장 • 지하구조물 미설치시	기준용적률 x (보존면적 /대지면적) x 0.2
	옥상녹화	• 법정 조경으로 산입된 면적 제외 • 녹화면적은 대지면적 30%까지만 허용	기준용적률 x (녹화면적 / 대지면적) x 0.1

구분	세부항목		산정식
대기환경	친환경 자동차	[비주거 : 연면적 1만㎡ 이상] • 전체 주차면수의 5% 이상 전용 주차공간 제공 및 전체 주차면수의 1% 이상 전기차충전기 설치시 ※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등에 따른 의무설치 대상은 제외	기준용적률 x 0.04
	녹색건축자재	• 주요 건축부재 6개 중 2개 이상에 녹색건축자재 제품을 해당부재 총사용량의 50% 이상 사용한 경우 - 콘크리트, 골재, 철근, 형강, 단열재, 창호 등 • 사용승인시 자재 사용승인서 제출 • 녹색건축자재란, 환경부에서 인증하는 제품을 의미 ① 환경성선언제품 (EPD), ② 저탄소자재, ③ 자원순환자재, ④ 유해물질저감자재 등 • 재활용건축자재 인센티브와 중복 적용 불가	기준용적률 x 0.04

3) 건축물 높이 계획

구 분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 고
최고높이	• 45m 이하 ※ 고도지구 높이기준 및 완화기준 적용	45m 이하	-

4) 건축물 배치 계획

구 분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 고
건축선한계선	• 동호로 : 3m • 동호로25길 : 2m • 동호로27길 : 7~9m	좌동	-

3.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 대지 내 공지 및 통로 계획 결정조서

구 분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 고
대지내 공지	공개공지	• 동호로변 공개공지 위치 지정	좌동	-
	전면공지	• 동호로27길 : 7~9m - 차도부속형 전면공지 : 6m - 보도부속형 전면공지 : 1~3m • 동호로25길 : 2m - 보도부속형 전면공지 : 2m	좌동	-
	공공보행통로	• 동호로27길-퇴계로50길 간 지상부 보행연계를 위한 공공보행통로 지정	• 동호로27길-퇴계로50길 간 개방형 구조 : 폭원 6m 이상	-

■ 교통처리에 관한 결정

구 분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 고
교통처리계획	• 차량출입불허구간 외 차량출입허용	좌동	결정도 참조

■ 공공기여에 관한 사항

구 분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 고
공공기여에 관한 사항	• 순부담률 25% 이상	• 공공기여계획 : 2,345.4㎡(25.0%) • 토지 기부채납 : 1,066.5㎡ (11.4%) - 도 로 : 36.0㎡ (0.4%) - 공공공지 : 1,030.5㎡ (11.0%) • 건축물 기부채납 : 1,278.9㎡ (13.6%) ※ 공공시설 제공 연면적 : 9,026.3㎡	-

※ '공공기여계획'은 토지환산면적으로 작성됨('공공시설 제공 연면적' 제외)
※ 향후 확정측량성과 및 감정평가 등에 따라 기부채납면적은 세부개발계획 결정 범위내에서 협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
※ 상기 건축물 기부채납은 장충 공영주차장(노외주차장), 충무 어린이집 및 공공공지를 통합개발(공동개발 권장)하는 연면적과 해당 연면적에 대한 공사비(설계비, 감리비 포함) 환산면적임

4.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종합)

구 분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 고
획지		• 장충동2가 191	좌동	-
면적		• 9,364.3㎡	좌동	-
용도지역·지구		• 준주거지역 / 고도지구	좌동	-
건폐율		• 60% 이하	좌동	-
용적률	기준	• 200% 이하	좌동	-
	허용	• 330% 이하	좌동	-
	상한	• 400% 이하 • 상한용적률 완화 산식 : 허용용적률×(1+1.3×가중치×α토지+1.0× α건축물+1.0×α현금) ※ 가중치 : 공공시설 제공 부지 용적률/ 사업부지 용적률 ※ α토지 : 공공시설 등 부지(토지)로 제공하는 면적/ 공공시설(토지) 제공 후 대지면적 ※ α건축물 : 공공시설 등 부지(건축물 설치비용 환산부지)로 제공하는 면적/공공시설(토지) 제공 후 대지면적 ※ α현금 : 공공시설 등 부지(현금 환산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공공시설(토지) 제공 후 대지면적	좌동	-
높이		• 최고높이 45m 이하 ※고도지구 높이기준 및 완화기준 적용	45m 이하	-
용도	전층	[불허4]	좌동	-
	전층	• 관광숙박시설 ※ 연면적의 50% 이상 계획	좌동	-
건축한계선		• 동호로 : 3m • 동호로25길 : 2m	좌동	-

		• 동호로27길 : 7~9m		
대지 내 공지	공개공지	• 동호로변 공개공지 위치 지정	공개공지 2개소 설치	-
	전면공지	• 동호로27길 : 7~9m - 차도부속형 전면공지 : 6m - 보도부속형 전면공지 : 1~3m • 동호로25길 : 2m - 보도부속형 전면공지 : 2m	좌동	-
	공공보행통로	• 동호로27길-퇴계로50길 간 지상부 보행연계를 위한 공공보행통로 지정	• 동호로27길-퇴계로50길 간 개방형 구조 : 폭원 6m 이상	-
교통처리계획		• 차량출입불허구간 외 차량출입허용	좌동	결정도 참조
공공기여에 관한 사항		• 순부담률 25% 이상	• 공공기여계획: 2,345.4㎡(25.0%) • 토지 기부채납: 1,066.5㎡ (11.4%) - 도 로: 36.0㎡ (0.4%) - 공공공지: 1,030.5㎡ (11.0%) • 건축물 기부채납(토지환산면적: 1,278.9㎡ (13.6%) ※ 공공시설 제공 연면적: 9,026.3㎡	-
기타지침		• 인근 호텔과 연계한 지상, 지하 연결통로 조성(도로점용)	• 인근 호텔과 연계한 지상, 지하 연결통로 각 1개소 조성(도로점용)	-

4. 관계도서 : 생략(열람장소 비치도서 참조)

5. 기타사항

◯ 열람내용은 확정된 안이 아니므로 추후 도시관리계획 결정 절차 이행중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과(☎02-2133-837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5-3181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025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일제점검 결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사항으로 행정처분(업무정지 등) 예정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대하여 의견제출 및 청문을 알리고자, 업체 소재지에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5년 11월 13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공고기간 : 2025. 11. 13. ~ 2024. 11. 27.
2. 처분 전 사전통지 사항

업 체 명 (대표)	업종 (등록번호)	소재지	위반 내용	예정된 처분내용	의견제출 및 청문실시	
					일시 및 장소	주재자
주식회사 호연도시정비 (최호진)	정비사업전문관리업 (2007-10)	서울시 노원구 덕릉로 810-1, 2층(상계동)	등록기준 미달	영업정지 12개월	2025.11.20.(목)까지 서울특별시청 서소문2청사 (중구 서소문로124) 13층 주거정비과로 의견제출	의견제출서 제출
주식회사 동원기술단 (김승완)	정비사업전문관리업 (2015-9)	서울시 중랑구 중랑역로 184, 2층(묵동)	등록기준 미달	등록취소 (2차위반)	2025.11.27.(목) 14시 서울특별시청 서소문2청사(중구 서소문로124) 20층 세미나실 청문실시	변호사 권영상
주식회사 큐리치개발 (이기수)	정비사업전문관리업 (2023-10)	서울시 강동구 진황도로27길 29, 301호(천호동, 우양빌딩)	등록기준 미달	등록취소 (2차위반)	2025.11.27.(목) 14시 서울특별시청 서소문2청사(중구 서소문로124) 20층 세미나실 청문실시	변호사 권영상

- 처분근거 : 「도시정비법」 제106조제1항제2호,「동법 시행령」 제84조[별표5] 2. 개별기준 나목 2차 위반

3.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청문에 응하지 않는 경우 의견제출 및 청문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청문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우리 시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주거정비과 ☏02)2133-7195로 문의 바랍니다.

붙임 의견제출서(양식) 1부. 끝.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5-3182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 통지 공시송달 공고

설립허가 조건 위반 및 소재지 불명 비영리법인에 대하여 「민법」 제38조 및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가유산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설립허가 취소처분 전 청문을 실시하고자 통지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청문실시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3일
서 울 특 별 시 장

<table>
<tr><td>예정된 처분의 제목</td><td colspan="6">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td></tr>
<tr><td rowspan="2">당사자</td><td>성명(명칭)</td><td colspan="5">사단법인 한국아트딜러협회</td></tr>
<tr><td>주 소</td><td colspan="5">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55길 16-6, 4층 (청담동)</td></tr>
<tr><td>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td><td colspan="6">법인 설립허가 조건 위반 및 설립목적 달성 불가능(소재지불명, 연락두절 등)</td></tr>
<tr><td>처분하고자 하는 내용</td><td colspan="6">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td></tr>
<tr><td>법적근거 및 조문내용</td><td colspan="6">[민법 제38조]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을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td></tr>
<tr><td rowspan="5">청문실시</td><td>기관명</td><td colspan="2">서울특별시</td><td>부서명</td><td>문화예술과</td><td>담당자</td><td>이승민</td></tr>
<tr><td>주소</td><td colspan="3">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한국프레스센터 4층</td><td>전화번호</td><td>02-2133-2560</td></tr>
<tr><td>일시</td><td colspan="3">2025년 12월 3일 10시부터 12시까지(2시간)</td><td>장소</td><td>한국프레스센터 4층 소회의실2</td></tr>
<tr><td rowspan="2">주재자</td><td>소속 및 직위</td><td colspan="4">법무법인 한승 소속 변호사</td></tr>
<tr><td>성명</td><td colspan="4">김혜란</td></tr>
</table>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5-3189호

공영주차장 부대시설 사용료 및 변상금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

공영주차장 부대시설(DDP패션몰, 훈련원공원) 공유재산사용료 및 변상금 체납자에 대한 독촉 및 압류예고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한 건에 대하여 「지방세 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3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공 고 명 : 공영주차장 부대시설 공유재산사용료 및 변상금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5. 11. 13. ~ 2025. 11. 27.(15일간)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붙임내역 참조

4. 유의사항
   가.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붙임의 부과금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공고 기간이 지나면, 「행정절차법」 제 14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 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기한 내 체납금액 납부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 97조에 따른 체납처분 등 조치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5.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특별시청 주차계획과(서울시설공단 ☎02-3405-401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공시송달 내역 1부.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연번	공유재산	수허가자	배달시도일	배달결과	발송 주소	미납금액
1	DDP패션몰 F01-032	정*아	2025.10.27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430, ****동 ****호	220,883,820
2	DDP패션몰 F01-091	박*숙	2025.10.27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서울 동대문구 장안벚꽃로 107, ****동 ****호	154,346,620
3	DDP패션몰 F01-039	배*윤	2025.10.27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서울 노원구 섬밭로 229, ****동 ****호	167,158,960
4	DDP패션몰 F03-105	김*봉	2025.10.27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신로 106, ****동 ****호	67,265,110
5	DDP패션몰 F03-002	김*환	2025.10.27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92다길 7-****	20,923,510
6	DDP패션몰 F01-094 F02-059	반*환	2025.10.27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서울 성북구 종암로 167, ****동 ****호	24,887,640
7	DDP패션몰 F02-083	전*오	2025.10.27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서울 성동구 서울숲2길 32-14, ****동 ****호	9,398,990
8	DDP패션몰 F03-012	김*진	2025.10.27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봉로21길 19, ****동 ****호	146,745,160
9	DDP패션몰 F01-020	㈜플랫분엔코 (대표: 강*석)	2025.10.27	반송 (이사불명)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구억중앙로 ****	5,526,020
10	DDP패션몰 F02-053	윤*영	2025.10.27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경기도 하남시 덕풍북로 70, ****동 ****호	22,842,730
11	DDP패션몰F01-063	김*림	2025.10.27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113, ****동 ****호	11,011,280
12	훈련원공원 111	최*매	2025.10.27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인천 서구 검단로 609번길 23, ****동 ****호	9,331,570
13	DDP패션몰F02-129	윤*진	2025.10.27	반송 (수취인불명)	서울 중구 다산로 46길 17, ****동 ****호	54,956,420
14	DDP패션몰F03-003	장*영	2025.10.27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서울 중구 동호로15길 82, ****동 ****호	14,013,020
15	DDP패션몰F01-046 F02-061	㈜유니플랜코리아 (대표: 조*희)	2025.10.27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 258, 리마크빌 ****호	36,028,420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5-3190호

공영주차장 부대시설 사용료 및 변상금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

공영주차장 부대시설(DDP패션몰, 마포유수지) 공유재산사용료 및 변상금 체납자에 대한 독촉 및 압류예고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한 건에 대하여 「지방세 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3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공 고 명 : 공영주차장 부대시설 공유재산사용료 및 변상금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5. 11. 13. ~ 2025. 11. 27.(15일간)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붙임내역 참조

4. 유의사항
   가.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붙임의 부과금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공고 기간이 지나면, 「행정절차법」 제 14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 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기한 내 체납금액 납부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 97조에 따른 체납처분 등 조치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5.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특별시청 주차계획과(서울시설공단 ☎02-3405-401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공시송달 내역 1부.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연번	공유재산	수허가자	배달시도일	배달결과	발송 주소	미납금액
1	DDP패션몰1층 18호	천*석	2025-10-13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경기 고양시 덕양구 오금1로83, ****동 *****호	62,467,940
2	DDP패션몰3층 115호	차*나	2025-09-23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위시티4로45, ****동 ****호	24,590,990
3	DDP패션몰3층 33호	윤*영	2025-10-13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경기 하남시 덕풍북로 70, ****동 ****호 (덕풍동, 휴먼시아 꽃뫼마을 1단지)	16,071,360
4	DDP패션몰2층 94호	최*근	2025-10-13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서울 성동구 독서당로272, ****동 ****호	24,130,740
5	DDP패션몰3층 109호	박*진	2025-10-13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서울 중구 왕십리로407, ****동 ****호	10,603,090
6	DDP패션몰1층 45호	정*이	2025-10-13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경기 성남시 분당구 장안로16번길28, ****호	3,991,810
7	DDP패션몰 1층 65호	윤*중	2025-10-13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서울 중구 다산로32, ****동 ****호	39,918,750
8		홍*규 (홍*기)	2025-10-13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대구 군위군 효령면 수동길19-****	
9	마포유수지 1호, 2호	㈜케센스코리아 (대표: 안*란)	2025-10-10	반송 (이사불명)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1길 ****	1,587,530
10	DDP패션몰 3층 111호	이*진	2025-10-13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서울 강남구 개포로110길50, ****동 ****호	2,793,040
11	DDP패션몰2층 44호	정*주	2025-10-13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서울 동대문구 제기로131, ****동 ****호	1,167,750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5-3198호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

수도법 제68조,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9조 및 지방세 징수법 제33조에 의거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부동산)압류예고서를 소유자에게 2차례 송달하였으나 부재로 인해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④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 ①항 3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3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공고기간 : 2025. 11. 13. ~ 2025. 11. 26.

2. 공시송달 내역
가.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및 압류 내역

고객번호	급수설비 소재지	납 기				비고
		과목	납 기	횟수	금 액	
007774914	서울특별시 노원구 덕릉로115나길 28(상계동)	수도요금	2022. 8월 등 14납기	14회	770,050원	

압류구분	압류물건	물건소유자			압류금액	압류일
		성 명	주민번호 (반송사유)	주 소		
부동산	서울특별시 노원구 덕릉로115나길 28(상계동)	김**	850622-1****** (2회송달 부재)	대전광역시 서구 정림서로 162-15, 125동 103호 (정림동, 우성아파트)	770,050원	2025 11. 26.이후

3.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북부수도사업소 요금과 소재석(☎02-3146-330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5-3201호

2025년 제11차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공고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9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2025년 제11차 서울특별시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3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심의일시: 2025. 11. 4.(화), 14:00

2. 심의장소: 서울시립미술관 1층 회의실

3. 심의대상: 일반안건 8건(11작품)

4. 심의결과:
   - 일반안건: 승인 7작품, 조건부 승인 4작품

5. 작품별 심의결과: 별첨

6.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디자인산업담당관(☎ 02-2133-933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제11차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일반안건 심의결과

연번	건물위치	종류	작품명	심의결과		비고
				승인	부결	
1	서울시 중구 을지로2가 185	회화	새로운 도전-동행	○		
2	구로구 고척동 148-1번지 일대	조각	유연한 정원	○ (조건부)		
		조건 : 바닥에 놓인 조형물 중 하나를 위치변경하여 인물 다리 하단에 배치함으로써 파손 염려와 안전성 확보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할 것 같은 모양 조형물 추가 배치 가능				
3	영등포구 신길동 1300	조각	아름다운 질주	○ (조건부)		
		조건 : 좌우 여백 확보를 위한 스케일 조정 천정부 조명기구 컬러를 흰색으로 조정 조도 낮출 것				
4	동작구 신대방동 377-1외 5필지	조각	Light wave	○ (조건부)		
		조건 : 하단부의 구름들을 안전성(좌측 통행, 발걸림)을 위해 크기나 위치를 변경할 것				

2025년 제11차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일반안건 심의결과

연번	건물위치	종류	작품명	심의결과		비고
				승인	부결	
5-1	도봉구 창동 135-1 외 6필지	조각	해와 달(The Sun and Moon)	○ (조건부)		
		조건 : 유지관리를 위한 계획서 제출(작품 가운데에 들어가는 자연물 혹은 투척된 쓰레기 등 폐기물 제거), 아이들의 끼임이 염려되니 이 부분에 대한 관리계획서 제출				
5-2		미디어	second orbit 2	○		
6	광진구 구의동 592-39번지 일원	조각	Green Bloom	○		
7-1	종로구 우정국로 26	회화	숲-속에서	○		
7-2		회화	진달래-축복	○		

2025년 제11차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일반안건 심의결과

연번	건물위치	종류	작품명	심의결과		비고
				승인	부결	
7-3		회화	Invisible	○		
8	중구 마장로 3	조각	Museum 담기	○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5-3202호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

수도법 제68조,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9조 및 지방세 징수법 제33조에 의거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부동산)압류예고서를 소유자에게 2차례 송달하였으나 부재로 인해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④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 ①항 3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3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공고기간 : 2025. 11. 13. ~ 2025. 11. 26.

2. 공시송달 내역
가.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및 압류 내역

고객번호	급수설비 소재지	납 기				비고
		과목	납 기	횟수	금 액	
007992485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27길 7(상계동)	수도요금	2023. 2월 등 16납기	16회	436,830원	

압류구분	압류물건	물건소유자			압류금액	압류일
		성 명	주민번호 (반송사유)	주 소		
부동산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27길 7(상계동)	유**	620428-1****** (2회송달 부재)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27길 7 (상계동)	436,830원	2025 11. 27.이후

3.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북부수도사업소 요금과 소재석(☎02-3146-330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5-3203호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

수도법 제68조,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9조 및 지방세 징수법 제33조에 의거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부동산)압류예고서를 소유자에게 2차례 송달하였으나 부재로 인해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④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 ①항 3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3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공고기간 : 2025. 11. 13. ~ 2025. 11. 26.

2. 공시송달 내역
가.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및 압류 내역

고객번호	급수설비 소재지	납 기				비고
		과목	납 기	횟수	금 액	
008061960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48길 6, 6동 1507호 (상계동 ,한신2차아파트)	수도요금	2022. 8월 등 17납기	17회	385,970원	

압류구분	압류물건	물건소유자			압류금액	압류일
		성 명	주민번호 (반송사유)	주 소		
부동산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48길 6, 6동 1507호 (상계동 ,한신2차아파트)	문**	920721-1****** (2회송달 부재)	서울특별시 노원구 섬밭로 196, 607동 202호 (하계동 ,장미)	385,970원	2025 11. 27.이후

3.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북부수도사업소 요금과 소재석(☎02-3146-330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5-3212호

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도로교통법 제15조 제3항(전용차로의 설치) 및 제160조 제3항에 따라 전용차로 위반차량 소유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사전통지서(의견진술)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및 부재, 이사, 주소불명,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3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건 명 : 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 도로교통법 제15조 제3항 및 제160조 제3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항, 지방세기본법 제33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정*화 등 542명
4. 공고기간 : 2025. 11. 13. ~ 2025. 12. 03.
5. 의견제출 안내
   가. 의견제출 기한 : 2025. 11. 13. ~ 2025. 12. 03.
   나.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의견제출시 증빙서류와 함께 인터넷(http://cartax.seoul.go.kr)또는 서울특별시 교통지도단속반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됩니다.
   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장애인(3급 이상), 국가유공자(상이등급 3급 이상), 미성년자는 의견제출 기한 내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 감경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 감경(50%)받을 수 있습니다.
   단, 공동명의 및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는 감경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라. 의견제출처
   - 주 소 :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4층 교통지도단속반 과태료과징팀
   - 전화번호 : 02-2133-4570~79 팩스번호 : 02-2133-4904
   ※ 서울시 교통위반단속조회(http://cartax.seoul.go.kr)에서 제출하셔도 됩니다.

붙임 : 1.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1부.
2. 의견제출 대상 및 의견진술서 작성예시 1부.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잔액
1	126호38**	정*화	경기도 평택시	2025-09-02 16:07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2	220하63**	이*근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5-09-02 18:17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50,000
3	383다40**	(*)*음*리*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5-09-01 20:32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50,000
4	191호18**	주*회*호*파*하*오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5-09-16 10:15	반포역~논현역	50,000
5	34호19**	김*우	경기도 용인시	2025-09-16 11:13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6	161하33**	M*K*A*M*D*A*I*V*B*B	경기도 오산시	2025-09-15 19:26	양재동 양재IC 상행	50,000
7	241거88**	주*회*청*에*앤*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09-17 18:11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8	224마83**	김*건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5-09-15 08:31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9	396소40**	배*정	충청남도 당진시	2025-09-17 15:12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10	236노83**	박*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2025-09-18 15:16	압구정로데오역~성수대교	50,000
11	160허12**	T*M*R*Y*M*A*A*	경기도 구리시	2025-09-14 16:44	영등포구 공작아파트 건너편	50,000
12	106가89**	(*)*반*라*티	경기도 화성시	2025-09-18 08:41	양재동 양재IC 하행	50,000
13	176하47**	브*트*스*(*)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09-16 08:53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79 (여의도동, 한양아파트)	50,000
14	106가89**	(*)*반*라*티	경기도 화성시	2025-09-19 08:42	서초동 서초IC 하행	50,000
15	143호89**	정*흥	경기도 구리시	2025-09-22 17:50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16	245버36**	(*)*코*	경기도 의정부시	2025-09-11 17:52	중계동 중계그린아파트 109동	50,000
17	174하54**	주*회*케*에*치*보*신	경기도 김포시	2025-09-19 08:17	고촌IC~ 개화교	50,000
18	193하89**	김*희	경기도 수원시	2025-09-23 08:44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50,000
19	157고89**	주*회*메*스*림*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2025-09-16 16:08	서초동 서초IC 하행	50,000
20	122호21**	이*민	대구광역시 달서구	2025-09-21 14:44	양재동 양재IC 상행	50,000
21	122호21**	이*민	대구광역시 달서구	2025-09-21 14:45	서초동 서초IC 상행	50,000
22	122호95**	신*진	경기도 안양시	2025-09-03 11:58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50,000
23	177호56**	유*현	경기도 남양주시	2025-09-23 20:35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50,000
24	196하40**	플*아*(*희*외*)	서울특별시 관악구	2025-09-24 07:24	개화사거리~김포공항교차로	50,000
25	126호38**	정*화	경기도 평택시	2025-09-02 16:06	서초동 서초IC 상행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잔액
26	193하72**	한*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25-09-15 08:36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79 (여의도동, 한양아파트)	50,000
27	199하55**	주*회*이*종*개*	인천광역시 서구	2025-09-22 13:43	양재동 양재IC 상행	50,000
28	190하91**	로*벤*스*한*사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2025-09-23 10:39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29	226하89**	김*란	서울특별시 강동구	2025-09-23 17:30	신천동 잠실역 중앙정류소(시외방향)	50,000
30	49호89**	윤*경	서울특별시 구로구	2025-09-23 06:57	영등포역교차로~영등포로터리	50,000
31	161하33**	M*K*A*M*D*A*I*V*B*B	경기도 오산시	2025-09-15 19:27	서초동 서초IC 상행	50,000
32	157고89**	주*회*메*스*림*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2025-09-16 16:09	양재동 양재IC 하행	50,000
33	167하33**	천*순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5-09-23 18:12	서초동 서초IC 상행	50,000
34	07호69**	이*지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5-09-23 10:07	잠실동 서울YMCA송파지회	50,000
35	163호60**	안*희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09-14 07:33	양재동 양재IC 하행	50,000
36	106가89**	(*)*반*라*티	경기도 화성시	2025-09-19 08:43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50,000
37	125하17**	정*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5-09-15 06:13	잠원동 현대훼미리아파트	50,000
38	24호36**	(*)*즈*바*스	경기도 고양시	2025-09-15 14:47	남현동 남태령고개(시외방향)	50,000
39	126호38**	정*화	경기도 평택시	2025-09-02 16:05	양재동 양재IC 상행	50,000
40	196하35**	(*)*승*레*	경기도 남양주시	2025-09-10 08:07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41	163호60**	안*희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09-14 07:32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50,000
42	153호39**	장*화	서울특별시 마포구	2025-09-11 20:45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50,000
43	178호53**	L*U*U*H*A	경기도 김포시	2025-09-12 23:48	대신동 이대후문 중앙정류소(시외방향)	50,000
44	60호12**	김*화	서울특별시 도봉구	2025-09-13 14:54	양재동 양재IC 하행	50,000
45	166누11**	신*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2025-09-10 18:52	잠실동 서울YMCA송파지회	50,000
46	184소83**	정*진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5-09-12 19:54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47	190호10**	최*석	경기도 김포시	2025-09-24 07:14	개화동 영신PVC 상사	50,000
48	190나70**	방*자	인천광역시 서구	2025-09-29 09:40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50,000
49	258주98**	함*숙	충청남도 공주시	2025-10-01 20:13	중계동 중계그린아파트 109동	50,000
50	40누52**	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2025-10-08 23:00	서초동 서초IC 상행	50,000
51	53너02**	(*)*아*엔	경기도 고양시	2025-10-09 23:29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50,000
52	351버61**	C*I*E*G*H*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2025-10-10 13:41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잔액
53	27저08**	G*R*I*K*E*N*A*R*C*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5-10-05 19:59	저동 삼일로 영락교회	50,000
54	52보47**	주*회*라*산*	광주광역시 북구	2025-09-30 16:33	잠실동 서울YMCA송파지회	50,000
55	71누94**	강*석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5-10-02 19:08	개화동 영신PVC 상사	60,000
56	12라61**	신*식	서울특별시 강북구	2025-10-10 18:40	방배동 남태령 중앙정류소(시내방향)	50,000
57	인천83바51**	김*인	인천광역시 서구	2025-09-25 13:42	영등포구 롯데캐슬아이비 앞	50,000
58	64러14**	S*U*A*R*M*U*S*	경기도 평택시	2025-10-10 00:08	서초동 서초IC 하행	50,000
59	223허84**	이*섭	서울특별시 은평구	2025-09-24 17:24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50,000
60	252모87**	배*석	경기도 고양시	2025-09-29 13:18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61	52가12**	Z*A*G*H*N*R*	경기도 시흥시	2025-09-29 17:21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62	149우52**	F*N*M*I*I*N*	경기도 시흥시	2025-10-06 11:57	양재동 양재IC 상행	50,000
63	25더63**	N*A*U*A*O*T*N*P*L*K*Y	서울특별시 관악구	2025-10-07 12:58	서초동 서초IC 상행	50,000
64	76무59**	김*자	경기도 남양주시	2025-10-10 19:30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60,000
65	288우79**	Z*A*G*I	경기도 여주시	2025-10-03 15:42	양재동 양재IC 상행	50,000
66	202거25**	정*준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5-10-04 14:21	잠원동 현대훼미리아파트	50,000
67	241저78**	류*석	울산광역시 중구	2025-10-08 23:51	양재동 양재IC 하행	50,000
68	62루89**	M*C*E*S*Y*E*A*F*R*	경기도 오산시	2025-10-08 08:57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50,000
69	69어01**	심*진	경기도 오산시	2025-10-08 22:20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50,000
70	27도83**	J*N*O*X*O*G	서울특별시 광진구	2025-10-10 00:13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50,000
71	270오48**	K*N*V*T*A*A	경기도 안산시	2025-10-10 00:24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50,000
72	08머08**	주*회*에*엠*이*	경기도 성남시	2025-10-09 23:13	서초동 서초IC 하행	50,000
73	35로69**	장*익	서울특별시 성북구	2025-10-10 19:50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50,000
74	123거16**	최*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2025-09-29 08:12	상계동 상계백병원	50,000
75	서울32바71**	현*환	인천광역시 서구	2025-10-09 22:37	서초동 서초IC 하행	50,000
76	43라42**	이*형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10-09 21:35	양재동 양재IC 상행	50,000
77	56보66**	홍*의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5-09-27 20:17	영등포구 롯데캐슬아이비 앞	50,000
78	서울70아14**	이*기	서울특별시 강동구	2025-09-30 07:28	몽촌토성역~잠실역	60,000
79	경기92바87**	이*옥	경기도 광주시	2025-10-05 21:15	양재동 양재IC 하행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잔액
80	384머31**	재*법*세*평*문*교*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25-10-09 08:05	서초동 서초IC 상행	50,000
81	139더66**	K*M*E*G*I	충청남도 아산시	2025-10-08 15:29	저동 삼일로 영락교회	50,000
82	81노16**	김*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25-10-02 20:14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1번출구	50,000
83	201노19**	Z*A*M*I*U*	경기도 안양시	2025-10-05 17:15	서초동 서초IC 하행	50,000
84	42노62**	박*운	대전광역시 동구	2025-10-01 17:12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50,000
85	76루43**	이*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2025-10-06 08:59	서초동 서초IC 하행	60,000
86	71보64**	전*태	서울특별시 도봉구	2025-10-06 11:54	서초동 서초IC 하행	60,000
87	180소99**	현*캐*탈*식*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2025-10-06 12:49	서초동 서초IC 하행	50,000
88	82조73**	최*광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5-09-29 17:17	개화동 영신PVC 상사	50,000
89	서울36바21**	김*선	경기도 남양주시	2025-09-30 17:31	공릉동 태릉(서울방향)	50,000
90	서울85자20**	안*일	서울특별시 노원구	2025-10-01 17:30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50,000
91	28서75**	전*일	서울특별시 강북구	2025-10-10 17:49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50,000
92	63오51**	박*근	충청남도 천안시	2025-09-28 06:12	저동 삼일로 영락교회	50,000
93	41다24**	(*)*스*	경기도 화성시	2025-10-01 09:29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1번출구	50,000
94	288우79**	Z*A*G*I	경기도 여주시	2025-10-03 15:43	서초동 서초IC 상행	50,000
95	11머36**	A*D*K*R*M*V*A*E*Y*	충청남도 논산시	2025-10-06 17:26	양재동 양재IC 하행	50,000
96	392라69**	현*캐*탈*식*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2025-09-26 17:54	영등포구 샛강역 1번출구 앞	50,000
97	171하52**	빅*데*터*식*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5-09-25 18:02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98	07호97**	김*해	경기도 남양주시	2025-09-25 17:15	공릉동 삼육에코팜센터(구리방향)	50,000
99	107수39**	정*찬	서울특별시 성동구	2025-10-06 18:43	서초동 서초IC 상행	50,000
100	158다59**	김*희	경기도 화성시	2025-10-07 20:22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101	198누75**	주*회*화*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25-09-26 13:18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102	24거86**	구*현	인천광역시 서구	2025-10-02 19:50	홍은동 북한산 더샵아파트(시외방향)	50,000
103	서울35아16**	송*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2025-10-09 23:27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50,000
104	334러18**	올*이*컴*니*식*사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5-10-02 20:11	저동 삼일로 영락교회	50,000
105	서울31바31**	박*호	경기도 의정부시	2025-10-10 20:45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50,000
106	서울32바19**	이*규	경기도 남양주시	2025-10-05 00:12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잔액
107	266수80**	김*수	인천광역시 부평구	2025-09-25 15:41	영등포구 한국교직원공제회관 앞	50,000
108	40누52**	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2025-10-08 23:01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109	397오46**	박*현	인천광역시 서구	2025-09-24 19:16	성산동 현대오일뱅크 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50,000
110	서울31자34**	정*화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5-09-30 08:49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111	05조82**	남*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2025-10-02 07:30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50,000
112	247루92**	김*홍	충청남도 아산시	2025-10-02 17:12	성산동 현대오일뱅크 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50,000
113	127더98**	현*캐*탈*식*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2025-10-12 14:28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50,000
114	838도26**	어*선	경기도 고양시	2025-09-30 09:16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115	17다14**	C*A*D*A*Y*O*E*D*A	전라남도 보성군	2025-10-07 14:48	양재동 양재IC 하행	50,000
116	68조94**	A*D*L*I*Z*A*B*N*I*A*I	충청북도 진천군	2025-10-05 18:39	서초동 서초IC 하행	50,000
117	149조27**	여*연	경기도 오산시	2025-10-05 23:20	서초동 서초IC 하행	50,000
118	110서74**	주*회*하*코*아*지*틱*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5-10-09 23:03	양재동 양재IC 하행	50,000
119	125호48**	김*진	광주광역시 서구	2025-09-24 16:37	잠실동 서울YMCA송파지회	50,000
120	41무01**	박*태	서울특별시 구로구	2025-10-04 23:06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121	307부42**	전*민	부산광역시 강서구	2025-10-06 14:53	양재동 양재IC 하행	50,000
122	170조19**	성*실	경기도 수원시	2025-10-05 00:16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123	13나96**	주*회*티*아*인*내*널	서울특별시 마포구	2025-09-30 17:33	공릉동 삼육에코팜센터(구리방향)	50,000
124	28우13**	J*N*O*G*E*G	충청남도 아산시	2025-10-06 15:11	양재동 양재IC 하행	50,000
125	152고39**	김*진	경기도 남양주시	2025-09-29 08:53	공릉동 공릉목공예체험장(구리방향)	50,000
126	245누98**	(*)*스*에*모*스*상*용*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10-04 18:57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50,000
127	144도97**	이*미	경기도 수원시	2025-10-11 10:12	저동 삼일로 영락교회	50,000
128	서울38아57**	오*섭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5-09-25 15:48	LG에클라트 정관장 앞 이정표	50,000
129	392우93**	K*M*A*Y*S*I*	경기도 성남시	2025-09-29 19:23	장지동 장지역 중앙정류소(시내방향)	50,000
130	62어12**	김*성	서울특별시 성동구	2025-10-10 00:08	서초동 서초IC 상행	50,000
131	398라45**	이*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5-10-01 09:23	잠실동 서울YMCA송파지회	50,000
132	24나97**	D*N*N*O*C*I*H	전라남도 완도군	2025-10-02 13:39	양재동 양재IC 상행	50,000
133	368서58**	이*형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10-09 23:37	서초동 서초IC 하행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잔액
134	12소84**	임*영	경기도 성남시	2025-10-10 21:10	저동 삼일로 영락교회	50,000
135	116수90**	서*아	경기도 남양주시	2025-10-10 19:21	공릉동 삼육에코팜센터(구리방향)	50,000
136	16소44**	양*태	서울특별시 구로구	2025-10-09 14:06	개봉동 우리은행 고척동지점	50,000
137	326너68**	전*성	인천광역시 서구	2025-10-01 08:16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138	54모94**	D*N*A*K	경기도 시흥시	2025-10-02 19:56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50,000
139	202소33**	박*숙	경기도 파주시	2025-10-05 00:33	서초동 서초IC 상행	50,000
140	819버15**	김*겸	서울특별시 성북구	2025-10-09 19:25	서초동 서초IC 상행	50,000
141	207우13**	Z*A*G*I*G*U*	경기도 부천시	2025-10-03 09:56	개봉동 우리은행 고척동지점	50,000
142	서울31바40**	우*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2025-10-05 12:34	중화동 중랑역 메디렌느산부인과	50,000
143	43보81**	최*호	경기도 의정부시	2025-10-01 11:32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144	서울32사63**	이*철	서울특별시 강동구	2025-10-01 15:02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145	25노82**	강*현	경기도 군포시	2025-10-02 15:59	고척동 구로성심병원 버스정류소(시외방향)	50,000
146	171로52**	김*권	경기도 남양주시	2025-10-10 11:23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147	18도64**	최*숙	경상북도 경주시	2025-10-08 23:07	저동 삼일로 영락교회	50,000
148	230조59**	강*득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5-10-08 00:00	서초동 서초IC 상행	50,000
149	146호14**	심*별	인천광역시 남동구	2025-09-26 17:57	공릉동 공릉목공예체험장(구리방향)	50,000
150	33우33**	B*T*U*H*U*K*B*Y*R	서울특별시 도봉구	2025-09-29 08:11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151	64러14**	S*U*A*R*M*U*S*	경기도 평택시	2025-10-10 00:10	양재동 양재IC 하행	50,000
152	107모88**	최*주	경기도 김포시	2025-10-01 20:34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50,000
153	서울32자52**	어*우	서울특별시 성동구	2025-10-04 23:52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50,000
154	197하94**	황*현	경기도 용인시	2025-09-24 16:30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50,000
155	181하35**	주*회*리*타*즈	서울특별시 동작구	2025-09-20 14:06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7길 22 (여의도동)	50,000
156	서울32자52**	어*우	서울특별시 성동구	2025-10-04 23:51	서초동 서초IC 하행	50,000
157	248고95**	김*나	경기도 화성시	2025-10-06 21:00	서초동 서초IC 상행	50,000
158	서울38아89**	김*식	경기도 부천시	2025-10-01 16:25	서초동 서초IC 상행	50,000
159	50도50**	이*옥	인천광역시 강화군	2025-10-11 12:33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50,000
160	323누33**	주*회*바*코*아*베*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2025-10-10 00:05	서초동 서초IC 상행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잔액
161	143호65**	김*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5-09-26 15:59	잠실동 서울YMCA송파지회	50,000
162	서울32아38**	이*우	경기도 남양주시	2025-10-09 21:49	양재동 양재IC 하행	50,000
163	359너19**	J*L*L*V*I*O*E*K*N*G*I	경상남도 거제시	2025-10-04 12:22	경문교교교차로~이수역사거리	50,000
164	30버60**	김*석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5-10-01 08:59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165	112서19**	이*훈	서울특별시 중랑구	2025-10-07 23:36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166	22누76**	유*회*디*이*설	전라남도 신안군	2025-09-29 16:50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167	서울31아51**	함*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2025-10-01 10:26	잠실동 서울YMCA송파지회	50,000
168	04나79**	차*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2025-10-06 23:29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169	30버69**	방*용	서울특별시 성북구	2025-10-06 23:57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170	서울35아16**	송*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2025-10-09 23:28	양재동 양재IC 하행	50,000
171	경기37바52**	이*돈	경기도 부천시	2025-10-02 17:27	개화동 영신PVC 상사	50,000
172	164조76**	남*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5-10-09 00:53	서초동 서초IC 하행	50,000
173	817우23**	B*I*A*G*A*G	경기도 성남시	2025-09-30 11:23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174	61가80**	고*식	경상북도 경산시	2025-10-05 21:36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50,000
175	69조27**	전*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2025-10-04 22:42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176	57조19**	박*화	경기도 의정부시	2025-10-08 23:18	서초동 서초IC 하행	50,000
177	07수74**	주*회*새*	경기도 남양주시	2025-10-07 17:43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50,000
178	160보86**	유*숙	대구광역시 달성군	2025-10-10 00:35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50,000
179	113주51**	박*혁	서울특별시 중구	2025-10-05 00:39	양재동 양재IC 하행	50,000
180	107수39**	정*찬	서울특별시 성동구	2025-10-06 18:44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181	16보22**	Y*N*U*G*O*	경기도 성남시	2025-10-09 21:12	서초동 서초IC 하행	50,000
182	180무39**	김*우	경기도 파주시	2025-10-09 21:49	서초동 서초IC 하행	50,000
183	356어79**	이*연	경기도 성남시	2025-10-10 18:01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184	47저01**	조*희	경기도 수원시	2025-10-05 00:25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50,000
185	354보11**	장*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2025-10-06 11:50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50,000
186	서울31사95**	김*환	서울특별시 구로구	2025-09-24 13:09	LG에클라트 정관장 앞 이정표	50,000
187	22노44**	안*호	경기도 안산시	2025-10-02 15:53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잔액
188	812나99**	네*텍	경기도 부천시	2025-09-26 08:48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1번출구	50,000
189	12로40**	C*N*U*M*L*C*R*A*	경기도 평택시	2025-10-05 00:48	서초동 서초IC 상행	50,000
190	31가84**	문*목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5-10-08 23:30	서초동 서초IC 하행	50,000
191	225주50**	이*섭	서울특별시 도봉구	2025-09-23 15:45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330 (신사동)	50,000
192	서울32자10**	윤*헌	서울특별시 도봉구	2025-10-10 19:47	공릉동 삼육에코팜센터(구리방향)	50,000
193	142더82**	Y*N*H*A*M*N*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25-09-29 21:23	저동 삼일로 영락교회	50,000
194	352더56**	윤*운	서울특별시 광진구	2025-09-30 19:53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1번출구	50,000
195	68두81**	(*)*르*하*	경기도 구리시	2025-10-02 08:20	공릉동 오일뱅크 화랑대주유소(서울방향)	50,000
196	114마75**	원*희	경기도 군포시	2025-10-07 00:34	서초동 서초IC 상행	50,000
197	56노88**	이*호	경기도 용인시	2025-10-10 07:46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198	223허84**	이*섭	서울특별시 은평구	2025-09-24 17:33	성산동 현대오일뱅크 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50,000
199	14오86**	이*희	경기도 수원시	2025-09-29 05:24	저동 삼일로 영락교회	50,000
200	서울31바65**	이*갑	서울특별시 중랑구	2025-10-01 12:08	잠실동 서울YMCA송파지회	50,000
201	334어94**	유*원	경기도 파주시	2025-10-04 21:01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202	서울31사70**	차*학	서울특별시 성동구	2025-10-04 23:51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50,000
203	724러85**	주*회*이*에*응*환*이*센*	서울특별시 마포구	2025-10-02 19:44	서초동 서초IC 상행	60,000
204	27나80**	A*D*M*J*D*V*A*R*T*I*L*L*T*U*L*U*L*	경기도 안성시	2025-10-05 23:09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50,000
205	20소35**	X*A*G*A*G*I*G	서울특별시 구로구	2025-09-29 17:24	공릉동 태릉(서울방향)	50,000
206	11머36**	A*D*K*R*M*V*A*E*Y*	충청남도 논산시	2025-10-06 17:25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50,000
207	225하61**	안*리	경기도 용인시	2025-09-27 11:39	양재동 양재IC 상행	50,000
208	경기92바31**	롯*글*벌*지*(*)	경기도 광주시	2025-09-29 07:36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209	37누04**	이*은	부산광역시 북구	2025-10-06 16:58	양재동 양재IC 상행	50,000
210	288우79**	Z*A*G*I	경기도 여주시	2025-10-03 15:44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211	63부83**	공*환	경상북도 포항시	2025-10-08 22:11	서초동 서초IC 하행	50,000
212	326소73**	듀*코*아*식*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5-09-29 18:09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213	24거37**	안*희	경기도 양평군	2025-09-29 18:03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50,000
214	23무01**	장*욱	경기도 과천시	2025-10-05 21:45	서초동 서초IC 하행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잔액
215	20부25**	형*준	인천광역시 중구	2025-10-04 23:37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50,000
216	307부42**	전*민	부산광역시 강서구	2025-10-06 14:52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50,000
217	서울89자52**	김*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2025-10-10 17:32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50,000
218	367서82**	K*M*G*R	경기도 시흥시	2025-10-01 15:57	양재동 양재IC 상행	50,000
219	서울35바83**	박*만	서울특별시 관악구	2025-10-02 20:47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50,000
220	35조92**	이*수	경기도 화성시	2025-10-08 22:13	서초동 서초IC 하행	50,000
221	69어01**	심*진	경기도 오산시	2025-10-08 22:19	서초동 서초IC 하행	50,000
222	147누11**	임*택	인천광역시 서구	2025-10-08 17:50	수색동 경의중앙선 수색역1번출구 공영주차장	50,000
223	81더76**	엘*이*드*스*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5-09-30 09:27	중계동 중계그린아파트 109동	50,000
224	29오23**	김*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2025-10-04 23:41	양재동 양재IC 상행	50,000
225	60보12**	임*애	서울특별시 성북구	2025-10-04 21:05	양재동 양재IC 상행	50,000
226	47고19**	루*유*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5-09-29 19:16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50,000
227	서울32자18**	최*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2025-10-08 23:33	서초동 서초IC 하행	50,000
228	303수64**	이*섭	서울특별시 강북구	2025-10-07 21:43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50,000
229	181무87**	임*우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5-10-10 18:09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230	108라78**	주*회*세*코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5-10-10 16:27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50,000
231	서울31사75**	최*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2025-10-10 01:26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50,000
232	55노51**	고*훈	서울특별시 성북구	2025-10-10 00:31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50,000
233	64러14**	S*U*A*R*M*U*S*	경기도 평택시	2025-10-10 00:09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50,000
234	156호12**	주*회*에*앤*이*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2025-09-25 15:55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235	58저81**	김*숙	경기도 성남시	2025-10-08 21:30	양재동 양재IC 하행	50,000
236	서울32바72**	정*석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2025-09-27 15:32	영등포구 한국교직원공제회관 앞	50,000
237	77루59**	정*란	세종특별자치시	2025-09-29 18:03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60,000
238	11머36**	A*D*K*R*M*V*A*E*Y*	충청남도 논산시	2025-10-06 16:24	서초동 서초IC 상행	50,000
239	354보11**	장*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2025-10-06 11:49	서초동 서초IC 하행	50,000
240	160보86**	유*숙	대구광역시 달성군	2025-10-10 00:34	서초동 서초IC 하행	50,000
241	101하98**	김*기	경기도 김포시	2025-09-24 17:43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잔액
242	29소77**	(*)*로*라*프	경기도 성남시	2025-09-29 13:46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243	249두62**	조*이비드	경기도 평택시	2025-10-06 00:20	양재동 양재IC 하행	50,000
244	경기83사28**	문*희	경기도 고양시	2025-09-23 15:38	LG에클라트 정관장 앞 이정표	50,000
245	49버12**	문*순	경기도 김포시	2025-09-23 16:31	LG에클라트 정관장 앞 이정표	50,000
246	161우13**	차*광	경기도 용인시	2025-10-09 21:46	서초동 서초IC 하행	50,000
247	166무31**	유*회*비*라*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09-23 07:06	LG에클라트 정관장 앞 이정표	50,000
248	383너60**	김*준	경기도 수원시	2025-10-05 00:50	서초동 서초IC 상행	50,000
249	서울31아30**	송*석	서울특별시 마포구	2025-10-08 23:00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50,000
250	141어81**	김*순	인천광역시 부평구	2025-09-29 16:31	홍제동 홍제삼거리 중앙정류소(시내방향)	50,000
251	15수41**	박*용	경기도 고양시	2025-09-29 20:24	성산동 현대오일뱅크 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50,000
252	19로80**	김*식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25-10-06 08:54	서초동 서초IC 하행	50,000
253	139서91**	임*민	경기도 화성시	2025-10-04 23:45	서초동 서초IC 하행	50,000
254	31가84**	문*목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5-10-08 23:31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50,000
255	81가19**	주*두	경기도 성남시	2025-10-02 09:43	공릉동 태릉(서울방향)	50,000
256	166무31**	주*회*우*록*엔*테*먼*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5-10-04 08:01	양재동 양재IC 하행	50,000
257	149우52**	F*N*M*I*I*N*	경기도 시흥시	2025-10-06 11:58	서초동 서초IC 상행	50,000
258	서울31사38**	김*수	서울특별시 중랑구	2025-10-10 23:24	중화동 중랑역 메디렌느산부인과	50,000
259	275누90**	W*N*Y*F*N	경기도 성남시	2025-09-30 17:59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260	89너63**	문*완	인천광역시 서구	2025-10-01 08:35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261	43라42**	이*형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10-09 21:37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262	12무12**	O*I*O*A*B*S*E*R*S*L*O*U*L*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2025-10-04 21:04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50,000
263	서울31사73**	고*성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5-09-30 09:36	개화동 영신PVC 상사	50,000
264	경기81자86**	유*주	경기도 성남시	2025-10-02 09:31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265	209나86**	S*N*C*A*G*H*N	경기도 성남시	2025-10-02 18:28	고척동 구로성심병원 버스정류소(시내방향)	50,000
266	24나97**	D*N*N*O*C*I*H	전라남도 완도군	2025-10-02 18:03	서초동 서초IC 하행	50,000
267	33나93**	주*회*케*엠*이*코*레*션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5-09-29 17:10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268	08다81**	이*	서울특별시 노원구	2025-09-30 17:59	상계동 상계백병원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잔액
269	41구28**	김*욱	경기도 의정부시	2025-10-05 23:52	서초동 서초IC 상행	50,000
270	175하15**	푸*솔*광*주*	인천광역시 계양구	2025-09-30 14:06	잠실동 서울YMCA송파지회	50,000
271	09머73**	이*진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5-10-02 15:13	서초동 서초IC 하행	50,000
272	02누06**	김*숙	서울특별시 성북구	2025-10-10 02:30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50,000
273	42저60**	청*월*동*중*법*주*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5-10-06 13:21	상봉동 중랑역 가나안교회 건너편 GS25상봉사랑점	50,000
274	101호31**	장*희	경기도 양평군	2025-09-25 17:52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50,000
275	115오87**	장*현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2025-10-04 10:56	서초동 서초IC 하행	50,000
276	서울89자12**	김*국	경상북도 봉화군	2025-10-01 18:28	공릉동 태릉(서울방향)	50,000
277	서울32사52**	김*미	경기도 수원시	2025-10-04 21:49	잠원동 현대훼미리아파트	50,000
278	334어94**	유*원	경기도 파주시	2025-10-04 21:00	서초동 서초IC 상행	50,000
279	14노88**	서*도	경기도 광명시	2025-10-03 12:31	잠원동 현대훼미리아파트	50,000
280	11머36**	A*D*K*R*M*V*A*E*Y*	충청남도 논산시	2025-10-06 17:24	서초동 서초IC 하행	50,000
281	226라38**	허*정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5-10-05 20:00	잠원동 현대훼미리아파트	50,000
282	166무31**	주*회*우*록*엔*테*먼*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5-10-04 08:00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50,000
283	230조59**	강*득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5-10-07 23:59	양재동 양재IC 상행	50,000
284	서울32자43**	양*석	서울특별시 구로구	2025-09-22 15:36	LG에클라트 정관장 앞 이정표	50,000
285	40가61**	김*린	대전광역시 중구	2025-10-11 12:40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286	경기76사50**	주*회*케*라*투*	경기도 김포시	2025-09-26 20:26	LG에클라트 정관장 앞 이정표	60,000
287	서울31바89**	김*우	경기도 구리시	2025-09-30 09:34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1번출구	50,000
288	30버41**	성*경	경기도 광주시	2025-10-01 16:03	방배동 남태령 중앙정류소(시내방향)	50,000
289	05다40**	강*성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2025-10-03 14:19	중화동 중랑역 메디렌느산부인과	50,000
290	17조09**	류*우	경기도 평택시	2025-10-09 00:41	양재동 양재IC 하행	50,000
291	11라02**	조*민	경기도 평택시	2025-10-09 23:55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50,000
292	819오34**	임*대	서울특별시 노원구	2025-10-02 09:51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293	149우52**	F*N*M*I*I*N*	경기도 시흥시	2025-10-06 11:59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294	64우22**	심*구	경기도 화성시	2025-10-09 22:47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50,000
295	68구08**	설*훈	경기도 고양시	2025-10-09 22:51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잔액
296	서울31사29**	정*우	인천광역시 계양구	2025-10-09 21:08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50,000
297	서울31사95**	송*섭	서울특별시 도봉구	2025-10-09 21:02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50,000
298	64우22**	심*구	경기도 화성시	2025-10-09 22:46	서초동 서초IC 하행	50,000
299	05구51**	김*남	경기도 남양주시	2025-10-09 00:09	양재동 양재IC 상행	50,000
300	서울54도23**	노*남	서울특별시 관악구	2025-09-29 13:58	남현동 남태령고개(시외방향)	50,000
301	24나97**	D*N*N*O*C*I*H	전라남도 완도군	2025-10-02 18:05	양재동 양재IC 하행	50,000
302	75오61**	(*)*럴*뉴*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5-10-07 10:39	양재동 양재IC 하행	60,000
303	92부09**	진*우	경기도 남양주시	2025-09-27 08:28	영등포구 한국교직원공제회관 앞	50,000
304	11무40**	유*환	서울특별시 노원구	2025-10-02 08:58	중계동 중계그린아파트 109동	50,000
305	51마68**	최*윤	경기도 광주시	2025-10-05 21:19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50,000
306	48러06**	김*민	경기도 남양주시	2025-09-30 19:58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1번출구	50,000
307	83더84**	김*만	경기도 고양시	2025-10-03 19:44	양재동 양재IC 하행	50,000
308	250수39**	정*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2025-10-05 00:21	서초동 서초IC 하행	50,000
309	80도34**	주*회*지*창*시*템	서울특별시 노원구	2025-10-02 07:20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50,000
310	서울31사95**	송*섭	서울특별시 도봉구	2025-10-09 21:01	서초동 서초IC 하행	50,000
311	서울32사70**	강*천	서울특별시 성동구	2025-10-09 23:56	서초동 서초IC 하행	50,000
312	83더84**	김*만	경기도 고양시	2025-10-03 19:43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50,000
313	200호62**	현*캐*탈*식*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2025-10-10 00:48	양재동 양재IC 상행	50,000
314	384머31**	재*법*세*평*문*교*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25-10-09 08:06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315	170조19**	성*실	경기도 수원시	2025-10-09 19:38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316	225하61**	안*리	경기도 용인시	2025-09-27 11:40	서초동 서초IC 상행	50,000
317	984나87**	안*영	서울특별시 노원구	2025-10-01 09:09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60,000
318	41우95**	이*레	서울특별시 종로구	2025-10-02 07:10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50,000
319	서울35아23**	김*식	경기도 용인시	2025-10-08 23:32	양재동 양재IC 하행	50,000
320	28오31**	김*철	경기도 평택시	2025-10-09 21:58	양재동 양재IC 하행	50,000
321	서울31사29**	정*우	인천광역시 계양구	2025-10-09 21:09	양재동 양재IC 하행	50,000
322	385수96**	박*배	경기도 화성시	2025-10-09 21:12	서초동 서초IC 하행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잔액
323	24너96**	D*K*V*L*N*I*A	경기도 안산시	2025-10-10 11:06	대신동 이대후문 중앙정류소(시외방향)	50,000
324	17나04**	한*희	경기도 수원시	2025-09-29 17:40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325	36나64**	정*현	경기도 남양주시	2025-09-30 20:31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50,000
326	198루18**	장*재	경기도 군포시	2025-10-09 00:51	서초동 서초IC 하행	50,000
327	246무62**	김*주	경기도 시흥시	2025-09-30 15:26	대신동 이대후문 중앙정류소(시외방향)	50,000
328	25더63**	N*A*U*A*O*T*N*P*L*K*Y	서울특별시 관악구	2025-10-07 12:57	양재동 양재IC 상행	50,000
329	171조53**	천*준	서울특별시 강북구	2025-10-02 20:24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50,000
330	819버15**	김*겸	서울특별시 성북구	2025-10-09 22:53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331	29호45**	비*프*빌*티*식*사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5-09-25 17:16	LG에클라트 정관장 앞 이정표	50,000
332	267우45**	S*N*U*J*A*G	경기도 시흥시	2025-10-06 00:43	서초동 서초IC 하행	50,000
333	55노27**	조*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25-10-07 21:45	서초동 서초IC 상행	50,000
334	27거20**	박*희	서울특별시 노원구	2025-10-10 20:38	공릉동 삼육에코팜센터(구리방향)	50,000
335	399로26**	주*회*폴*피*	경기도 화성시	2025-10-03 19:02	서초동 서초IC 상행	50,000
336	29나09**	김*일	서울특별시 노원구	2025-10-04 21:31	서초동 서초IC 하행	50,000
337	304루33**	M*K*M*D*V*K*T*M*M*I*L*E*I*H	충청남도 아산시	2025-10-07 23:30	서초동 서초IC 하행	50,000
338	83주07**	이*연	대전광역시 서구	2025-09-29 17:19	중계동 중계그린아파트 109동	50,000
339	46너58**	민*훈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2025-09-29 09:20	공릉동 공릉목공예체험장(구리방향)	50,000
340	59주85**	송*훈	서울특별시 노원구	2025-09-25 18:27	서울 노원구 화랑로 653 (공릉동)	50,000
341	40보47**	K*A*I*O*A*I*S*O*H*A*I*J*N*V*C*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2025-10-09 14:06	신천동 잠실역 중앙정류소(시외방향)	50,000
342	45부83**	김*식	경상남도 거창군	2025-10-06 21:25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343	47저01**	조*희	경기도 수원시	2025-10-05 00:26	양재동 양재IC 하행	50,000
344	52마73**	유*경	경기도 용인시	2025-10-01 14:36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345	196호21**	(*)*뉴*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5-09-25 10:18	잠실3사거리~잠실새내역교차로	50,000
346	172호63**	유*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2025-09-24 20:26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347	22고93**	T*R*U*O*U*A*D*L*O*H*A*I*J*N*G*I	경상남도 진주시	2025-10-03 14:10	신천동 잠실역 중앙정류소(시외방향)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잔액
348	서울32아38**	이*우	경기도 남양주시	2025-10-09 22:48	서초동 서초IC 상행	50,000
349	서울35아23**	김*식	경기도 용인시	2025-10-08 23:31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50,000
350	313가40**	강*수	전라남도 순천시	2025-10-10 00:20	양재동 양재IC 하행	50,000
351	243구29**	이*량	경기도 파주시	2025-10-04 22:49	서초동 서초IC 상행	50,000
352	51노89**	김*울	충청남도 천안시	2025-10-04 23:48	서초동 서초IC 하행	50,000
353	331나85**	김*영	경기도 시흥시	2025-10-09 23:53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354	서울31바31**	박*호	경기도 의정부시	2025-10-10 20:43	상계동 마들역 7번출구	50,000
355	14저74**	제*원*지*어*(*)	경기도 의왕시	2025-09-29 17:06	남현동 남태령고개(시외방향)	50,000
356	서울31바39**	정*해	서울특별시 노원구	2025-10-01 09:35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50,000
357	334나77**	박*형	경기도 의정부시	2025-10-01 09:41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50,000
358	13무61**	B*A*N*A*E*R*B*R*S*N	서울특별시 노원구	2025-10-02 17:17	상계동 마들역 7번출구	50,000
359	193하42**	안*우	서울특별시 중구	2025-09-26 20:16	상계동 상계백병원	50,000
360	07마06**	강*대*컨*팅*식*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5-10-01 20:39	대치동 개포우성2차아파트 12동	50,000
361	79조68**	한*항*기*케*에*티*식*사	경상남도 밀양시	2025-10-03 13:33	서초동 서초IC 상행	60,000
362	56모62**	김*명	경기도 성남시	2025-10-05 00:48	서초동 서초IC 상행	50,000
363	257더13**	박*준	경기도 성남시	2025-10-05 00:13	서초동 서초IC 하행	50,000
364	239마49**	최*범	서울특별시 성북구	2025-10-05 00:24	서초동 서초IC 하행	50,000
365	258버68**	강*숙	경기도 광주시	2025-10-05 21:51	서초동 서초IC 하행	50,000
366	서울32자52**	어*우	서울특별시 성동구	2025-10-04 23:53	양재동 양재IC 하행	50,000
367	49소74**	장*우	서울특별시 강북구	2025-10-05 00:20	양재동 양재IC 상행	50,000
368	40주65**	T*S*T*M*R*V*H*K*R*T*E*G*U*A*V*C*	충청북도 진천군	2025-10-05 22:28	양재동 양재IC 상행	50,000
369	102노34**	W*C*E*G*O*G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25-10-05 22:42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50,000
370	196구15**	인*환	경기도 안성시	2025-10-06 22:26	서초동 서초IC 하행	50,000
371	54고66**	최*용	경기도 광주시	2025-10-07 20:22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372	167하42**	김*민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5-09-26 15:50	잠실동 서울YMCA송파지회	50,000
373	84구74**	주*회*농*산*유*	경기도 구리시	2025-09-30 09:48	공릉동 공릉목공예체험장(구리방향)	50,000
374	12어87**	L*S*N*H*	충청북도 충주시	2025-10-05 07:37	양재동 양재IC 상행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잔액
375	서울31자49**	이*호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5-10-04 23:18	서초동 서초IC 하행	50,000
376	17다14**	C*A*D*A*Y*O*E*D*A	전라남도 보성군	2025-10-07 14:47	서초동 서초IC 하행	50,000
377	16두08**	유*민	서울특별시 종로구	2025-10-08 00:23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378	서울35아23**	김*식	경기도 용인시	2025-10-08 23:30	서초동 서초IC 하행	50,000
379	서울38아84**	김*현	서울특별시 노원구	2025-10-08 23:44	서초동 서초IC 하행	50,000
380	65주47**	박*욱	경기도 고양시	2025-10-09 22:26	양재동 양재IC 하행	50,000
381	43루12**	문*진	경기도 용인시	2025-10-09 23:37	서초동 서초IC 하행	50,000
382	241도47**	임*정	경기도 고양시	2025-10-09 23:40	서초동 서초IC 하행	50,000
383	서울31사70**	차*학	서울특별시 성동구	2025-10-04 23:50	서초동 서초IC 하행	50,000
384	354도79**	황*성	경기도 김포시	2025-09-29 08:14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385	69조20**	B*N*I*A*I*E	충청남도 천안시	2025-09-29 18:26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386	10부93**	방*원	서울특별시 강북구	2025-10-01 17:39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387	60두61**	주*회*마*앤*랑*자*하*스	경기도 고양시	2025-10-09 23:30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50,000
388	61머16**	전*희	인천광역시 연수구	2025-10-09 23:51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50,000
389	232도79**	현*캐*탈*식*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2025-09-25 08:51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7길 22 (여의도동)	50,000
390	46도90**	유*선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5-10-10 15:38	방배동 남태령 중앙정류소(시내방향)	50,000
391	12마77**	김*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2025-10-10 08:48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50,000
392	충남80자62**	김*수	충청남도 천안시	2025-10-10 06:26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50,000
393	348거88**	Z*A*R*I	서울특별시 중구	2025-10-10 19:45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50,000
394	110서74**	주*회*하*코*아*지*틱*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5-10-10 00:31	양재동 양재IC 상행	50,000
395	경기47바12**	우*미*협*조*	경기도 과천시	2025-10-10 00:40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50,000
396	서울32아45**	고*천	서울특별시 관악구	2025-10-10 00:42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50,000
397	363우53**	H*N*Z*U*H*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5-10-11 09:50	신천동 잠실역 중앙정류소(시외방향)	50,000
398	16무37**	최*원	인천광역시 서구	2025-10-10 19:54	성산동 현대오일뱅크 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50,000
399	187무71**	이*의	서울특별시 동작구	2025-10-10 00:05	서초동 서초IC 상행	50,000
400	841머48**	박*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25-09-23 13:04	영등포구 롯데캐슬아이비 앞	50,000
401	89모31**	주*회*밝*건*	경기도 의왕시	2025-10-11 10:34	방배동 남태령 중앙정류소(시내방향)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잔액
402	129주83**	김*우	대전광역시 서구	2025-09-29 17:36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403	28조84**	김*롱	충청남도 아산시	2025-10-11 18:31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404	13버04**	장*남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5-10-11 20:18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405	147가82**	하*수	서울특별시 노원구	2025-09-30 09:39	상계동 상계백병원	50,000
406	73보58**	최*주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5-09-30 09:26	개봉동 우리은행 고척동지점	60,000
407	30노61**	B*I*O*G*A*G	경기도 시흥시	2025-10-05 16:10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408	68구08**	설*훈	경기도 고양시	2025-10-09 23:41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409	서울32아32**	심*균	경기도 광주시	2025-10-10 00:15	양재동 양재IC 하행	50,000
410	170주76**	박*연	서울특별시 관악구	2025-10-01 09:02	남현동 남태령고개(시외방향)	50,000
411	서울31자49**	박*석	경기도 남양주시	2025-09-30 19:38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50,000
412	102고38**	최*남	경기도 양주시	2025-10-01 09:30	공릉동 오일뱅크 화랑대주유소(서울방향)	50,000
413	38누82**	양*원	경기도 의정부시	2025-10-01 17:16	공릉동 오일뱅크 화랑대주유소(서울방향)	50,000
414	48주07**	이*형	서울특별시 노원구	2025-10-01 19:06	공릉동 태릉(서울방향)	50,000
415	115오87**	장*현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2025-10-04 10:57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50,000
416	서울38아49**	이*성	경기도 파주시	2025-10-02 17:33	개화동 영신PVC 상사	50,000
417	50저71**	김*기	인천광역시 부평구	2025-09-29 19:45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50,000
418	20나55**	옥*철	부산광역시 동래구	2025-10-01 15:17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419	69라10**	송*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25-09-25 13:31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7길 22 (여의도동)	50,000
420	서울31사51**	홍*협	서울특별시 구로구	2025-09-25 16:52	LG에클라트 정관장 앞 이정표	50,000
421	서울31바57**	이*우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5-10-01 19:59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422	12다66**	이*우	서울특별시 도봉구	2025-10-01 18:04	중계동 중계그린아파트 109동	50,000
423	14소33**	이*동	서울특별시 도봉구	2025-10-04 18:29	양재동 양재IC 상행	50,000
424	75오61**	(*)*럴*뉴*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5-10-09 11:03	양재동 양재IC 하행	60,000
425	서울31자61**	손*식	경기도 광주시	2025-10-05 00:00	서초동 서초IC 하행	50,000
426	19도79**	박*실	서울특별시 종로구	2025-10-05 23:39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427	41구28**	김*욱	경기도 의정부시	2025-10-05 23:53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428	01어29**	이*석	경기도 화성시	2025-10-05 00:04	서초동 서초IC 하행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잔액
429	50거33**	홍*기	경기도 화성시	2025-10-05 00:02	서초동 서초IC 하행	50,000
430	17고07**	권*광	경기도 부천시	2025-10-09 00:15	서초동 서초IC 상행	50,000
431	819버15**	김*겸	서울특별시 성북구	2025-10-09 19:26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432	67마41**	M*S*E*A*I*E*	인천광역시 연수구	2025-10-09 21:28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433	07어63**	김*현	광주광역시 북구	2025-10-10 18:55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50,000
434	14우10**	(*)*스*케*앤*퍼*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5-09-29 07:50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435	63부83**	공*환	경상북도 포항시	2025-10-08 22:12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50,000
436	130호22**	(*)*재*퍼*	경기도 파주시	2025-09-24 08:01	둔촌고교입구교차로~생태공원앞교차로	50,000
437	51더15**	박*윤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5-10-05 21:27	서초동 서초IC 상행	50,000
438	31가50**	이*석	경기도 용인시	2025-10-05 23:32	서초동 서초IC 하행	50,000
439	49버05**	고*주	경기도 화성시	2025-10-05 00:33	서초동 서초IC 하행	50,000
440	서울35바49**	원*동	경기도 남양주시	2025-10-05 00:40	서초동 서초IC 하행	50,000
441	26저40**	김*기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2025-10-08 22:53	서초동 서초IC 하행	50,000
442	809머49**	안*열	충청북도 음성군	2025-09-29 09:06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1번출구	50,000
443	14수01**	주*회*와*컴*케*그*	서울특별시 종로구	2025-09-29 08:12	중계동 중계그린아파트 109동	50,000
444	43저24**	박*기	서울특별시 성북구	2025-09-29 09:10	성산동 현대오일뱅크 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50,000
445	160머65**	M*R*P*V*A*L*V*N*O*A*D*R*K*I*O*I*H	서울특별시 중구	2025-10-04 22:52	서초동 서초IC 상행	50,000
446	816어38**	백*주	경기도 고양시	2025-09-30 17:28	개화동 영신PVC 상사	50,000
447	경기35사12**	동*협*조*	경기도 안양시	2025-09-30 18:46	개화동 영신PVC 상사	50,000
448	56조36**	김*경	전라남도 담양군	2025-10-01 11:44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50,000
449	48무19**	A*I*A*U*E*A*A*J*R*A*	경기도 수원시	2025-10-04 22:44	서초동 서초IC 하행	50,000
450	서울31아30**	송*석	서울특별시 마포구	2025-10-08 22:59	서초동 서초IC 하행	50,000
451	23보32**	김*영	경기도 의정부시	2025-10-09 21:25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452	54다01**	김*중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5-09-30 07:40	상계동 상계백병원	50,000
453	82러93**	(*)*보*슈	경기도 고양시	2025-10-01 08:42	개화동 영신PVC 상사	50,000
454	90보29**	현*농*서*스*식*사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5-10-02 10:13	남현동 남태령고개(시외방향)	50,000
455	55루39**	김*미	서울특별시 노원구	2025-09-29 18:21	공릉동 오일뱅크 화랑대주유소(서울방향)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잔액
456	45부83**	김*식	경상남도 거창군	2025-10-06 21:24	서초동 서초IC 상행	50,000
457	58더85**	임*식	경기도 평택시	2025-10-09 22:21	양재동 양재IC 하행	50,000
458	21루68**	송*연	서울특별시 노원구	2025-10-02 17:52	공릉동 오일뱅크 화랑대주유소(서울방향)	50,000
459	09머73**	이*진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5-10-02 15:14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50,000
460	24나97**	D*N*N*O*C*I*H	전라남도 완도군	2025-10-02 18:04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50,000
461	199루42**	이*현	서울특별시 중랑구	2025-10-02 17:33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50,000
462	40서90**	주*회*일*개*	경기도 성남시	2025-10-01 07:14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463	46두04**	주*회*다*원	서울특별시 도봉구	2025-10-01 22:17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50,000
464	11머36**	A*D*K*R*M*V*A*E*Y*	충청남도 논산시	2025-10-06 16:23	양재동 양재IC 상행	50,000
465	267우45**	S*N*U*J*A*G	경기도 시흥시	2025-10-06 00:44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50,000
466	55거50**	임*림	충청북도 진천군	2025-10-04 23:20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50,000
467	33가02**	채*우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5-10-10 17:38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468	11어92**	권*미	서울특별시 성북구	2025-09-25 19:17	잠원동 현대훼미리아파트	50,000
469	82도16**	김*근	경기도 남양주시	2025-09-29 20:02	공릉동 삼육에코팜센터(구리방향)	50,000
470	30버69**	방*용	서울특별시 성북구	2025-10-06 23:56	서초동 서초IC 상행	50,000
471	경기47바12**	우*미*협*조*	경기도 과천시	2025-10-10 00:39	서초동 서초IC 하행	50,000
472	200호20**	현*개*탈*식*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2025-09-30 07:30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473	51거54**	특*법*주*케*알*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5-09-30 08:57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474	18두39**	손*식	충청북도 청주시	2025-10-01 20:04	개화동 영신PVC 상사	50,000
475	83더84**	김*만	경기도 고양시	2025-10-03 19:42	서초동 서초IC 하행	50,000
476	13조02**	안*용	경기도 안양시	2025-10-07 21:36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50,000
477	25머41**	파*이*씨*식*사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5-10-04 22:23	서초동 서초IC 상행	50,000
478	346거39**	임*선	서울특별시 마포구	2025-10-09 21:26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479	04가40**	김*옥	경기도 안성시	2025-10-05 19:35	양재동 양재IC 하행	50,000
480	11머36**	A*D*K*R*M*V*A*E*Y*	충청남도 논산시	2025-10-06 16:25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481	53주77**	S*I*A*R*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5-10-10 17:45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482	821나80**	주*회*동*	경기도 하남시	2025-09-29 09:00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1번출구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잔액
483	201노19**	Z*A*M*I*U*	경기도 안양시	2025-10-05 17:17	양재동 양재IC 하행	50,000
484	59러37**	신*식	경기도 남양주시	2025-10-02 20:05	공릉동 태릉(서울방향)	50,000
485	142구37**	서*원	경기도 평택시	2025-09-29 15:50	남현동 남태령고개(시외방향)	50,000
486	39소28**	이*리	경기도 이천시	2025-10-10 20:29	저동 삼일로 영락교회	50,000
487	82더53**	조*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2025-10-10 18:43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50,000
488	서울36바17**	손*호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5-10-10 09:49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50,000
489	185노68**	황*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2025-10-09 22:38	서초동 서초IC 하행	50,000
490	62모24**	전*표	충청북도 진천군	2025-10-10 00:14	양재동 양재IC 상행	50,000
491	346수80**	박*빈	서울특별시 은평구	2025-09-23 16:05	서울 서대문구 거북골로 176 (북가좌동)	50,000
492	163가59**	최*영	경기도 이천시	2025-10-05 00:41	서초동 서초IC 하행	50,000
493	41두04**	이*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2025-10-05 21:47	양재동 양재IC 하행	50,000
494	166무31**	주*회*우*록*엔*테*먼*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5-10-04 07:59	서초동 서초IC 하행	50,000
495	39누84**	박*희	경기도 광주시	2025-10-02 22:07	상봉동 중랑역 가나안교회 건너편 GS25상봉사랑점	50,000
496	828나56**	김*석	인천광역시 계양구	2025-09-30 10:03	잠실동 서울YMCA송파지회	50,000
497	147노53**	김*래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5-10-02 09:47	개화동 영신PVC 상사	50,000
498	189주67**	유*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2025-10-06 19:12	저동 삼일로 영락교회	50,000
499	24나97**	D*N*N*O*C*I*H	전라남도 완도군	2025-10-02 13:40	서초동 서초IC 상행	50,000
500	서울32자13**	김*태	서울특별시 중랑구	2025-10-02 17:23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50,000
501	35더08**	전*근	충청남도 아산시	2025-10-08 23:46	양재동 양재IC 하행	50,000
502	35조92**	이*수	경기도 화성시	2025-10-08 22:15	양재동 양재IC 하행	50,000
503	03누86**	김*정	대구광역시 서구	2025-10-09 21:17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50,000
504	60소50**	유*희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5-10-10 18:26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505	28너57**	건*한*부*회*협*조*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5-09-29 17:15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50,000
506	53서17**	주*회*제*비*스*퍼*	경기도 고양시	2025-09-29 18:57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50,000
507	201노19**	Z*A*M*I*U*	경기도 안양시	2025-10-05 17:16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50,000
508	서울31자30**	박*규	서울특별시 강동구	2025-10-08 00:07	서초동 서초IC 하행	50,000
509	16보22**	Y*N*U*G*O*	경기도 성남시	2025-10-09 21:13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잔액
510	16오51**	신*민	서울특별시 성동구	2025-10-09 21:05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50,000
511	186노28**	류*	경기도 양주시	2025-09-30 07:13	공릉동 공릉목공예체험장(구리방향)	50,000
512	27루55**	한*진	경기도 화성시	2025-10-04 23:22	서초동 서초IC 하행	50,000
513	153거24**	이*수	경기도 화성시	2025-10-04 23:22	서초동 서초IC 하행	50,000
514	34도62**	황*걸	경기도 수원시	2025-10-05 14:54	상봉동 중랑역 가나안교회 건너편 GS25상봉사랑점	50,000
515	312마16**	주*회*킹*류*타	경기도 김포시	2025-09-29 19:52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50,000
516	129구22**	창*건*(*)	경기도 하남시	2025-10-05 21:10	양재동 양재IC 상행	50,000
517	36다46**	이*근	대전광역시 대덕구	2025-10-06 00:33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50,000
518	300도28**	정*자	경기도 수원시	2025-10-04 22:51	양재동 양재IC 하행	50,000
519	22노44**	안*호	경기도 안산시	2025-10-02 15:52	서초동 서초IC 상행	50,000
520	270오48**	K*N*V*T*A*A	경기도 안산시	2025-10-09 23:20	서초동 서초IC 상행	50,000
521	61머16**	전*희	인천광역시 연수구	2025-10-09 23:50	서초동 서초IC 하행	50,000
522	08머08**	주*회*에*엠*이*	경기도 성남시	2025-10-09 23:14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50,000
523	212수74**	P*A*V*N*H*N*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2025-10-10 14:23	양재동 양재IC 하행	50,000
524	82오63**	김*관	경기도 안양시	2025-09-29 09:17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525	220다18**	주*회*다*요	경기도 의정부시	2025-10-10 15:03	신천동 잠실역 중앙정류소(시외방향)	50,000
526	323누33**	주*회*바*코*아*베*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2025-10-10 00:04	양재동 양재IC 상행	50,000
527	313가40**	강*수	전라남도 순천시	2025-10-10 00:19	서초동 서초IC 하행	50,000
528	50수08**	J*N*H*N*Y*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2025-10-05 22:00	서초동 서초IC 하행	50,000
529	169로43**	임*현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10-09 21:07	양재동 양재IC 상행	50,000
530	819버15**	김*겸	서울특별시 성북구	2025-10-09 22:52	서초동 서초IC 상행	50,000
531	14가05**	이*창	서울특별시 동작구	2025-10-09 21:26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532	경기87배43**	오*진	경기도 고양시	2025-09-22 16:37	영등포구 신송빌딩 앞	50,000
533	198하84**	현*캐*탈*식*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2025-10-04 05:48	중화동 중랑역 메디렌느산부인과	50,000
534	06마71**	박*기	경기도 용인시	2025-10-10 06:10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50,000
535	66고77**	엄*아	서울특별시 은평구	2025-10-12 12:15	진관동 구파발역 중앙정류소(시내방향)	50,000
536	296주90**	O*Z*E*I*Y*S	인천광역시 남동구	2025-09-30 15:42	양재동 양재IC 상행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잔액
537	381서33**	박*연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2025-10-01 08:14	잠실동 서울YMCA송파지회	50,000
538	152어39**	김*영	경기도 성남시	2025-10-05 00:19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50,000
539	197버63**	주*희*오*아*	인천광역시 부평구	2025-10-01 18:01	잠실동 서울YMCA송파지회	50,000
540	13소79**	황*연	경기도 광주시	2025-10-05 10:07	서초동 서초IC 상행	50,000
541	157소50**	홍*현	경기도 화성시	2025-10-09 23:04	서초동 서초IC 하행	50,000
542	140서10**	윤*정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5-10-01 17:19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과태료 부과처분 관련 의견제출서 제출 안내

- 귀하의 차량이 전용차로 통행 위반으로 단속되어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에 의거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임을 통지하며 부과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주요의견제출 대상(**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 준거**)

구 분	증 빙 서 류
범죄의 예방 · 진압이나 그 밖에 긴급한 사건 · 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	기관장확인서(해당 기관 공문)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	공사계약서, 기관장 확인서(해당 기관 공문)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	병명이 기재된 응급환자 진료확인서(의료기관 발행)
화재 · 수해 · 재해 등의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	기관장확인서(해당 기관 공문)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승 · 하차를 돕는 경우	복지카드 및 장애인증명서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를 증명 가능한 증빙서류

- 의견제출서는 사실을 입증할 서류를 첨부하여 의견제출기한 내에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의견을 심의하여 결과를 별도 통보하여드립니다.
- 의견제출서는 앞면의 우편물 발송기관 주소 또는 팩스로 발송하거나,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팩스 제출 시 수신여부 확인)
- 서울시 교통위반 단속조회 서비스(https://cartax.seoul.go.kr)를 통해서 방문 없이 의견제출서를 바로 작성 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일부 의견제출 항목은 증빙서류의 적정여부 및 관련 법에 의한 운전자 의무(조치)사항 이행여부도 심의대상이 됩니다.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급~3급), 미성년자는 의견 제출기한 내에 과태료 감경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의거 과태료의 50%를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자동차 공동명의자 중 일부만 감경대상인 경우,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 과태료 감경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의견제출서 작성 서식(예시)

의 견 제 출 서

차 량 번 호	위 반 일 시	위 반 장 소
○○가○○○○	**○○○○년 ○○월 ○○일 ○○시 ○○분**	**○○로 ○○길 ○○주변 ○○○○앞**

- 제출의견 기재 : (단속된 사안 및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내용을 기재합니다)
- 제출자 성명 : ○○○ - 제출자 주소 : ○○시 ○○구 ○○로 ○○, **상세주소 입력** - 제출자 전화번호 : ○○○-○○○○-○○○○

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납부 안내

-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고자 하면 앞면에 기재된 입금계좌 또는 은행 창구·ATM기, 이택스(https://etax.seoul.go.kr)에서 의견 제출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면 해당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가 종료되어 의견제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부과된 과태료는 납부기한 경과시 첫달에 3%의 가산금이 붙고 이후 1개월마다 1.2% 가산금이 60개월 동안 가산되어 최고 75%까지 가산된 과태료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차 종	이 륜 자 동 차	승 용 자 동 차	승 합 자 동 차
과태료	40,000원	50,000원	60,000원
체납시 최대 과태료	70,000원	87,500원	105,000원

자동차 대여사업자의 임대자동차 운행자정보 제출 안내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 대여사업자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가 대여한 자동차로서 자동차만을 임대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에 임대한 자동차의 운행자 정보를 과태료 부과기관에 제출하기 바랍니다.
- 문서24(https://docu.gdoc.go.kr)를 통해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 : 차량임대계약서 사본, 기타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 면허증 사본 등)
- 의견진술 기한까지 자동차 운행자 정보를 제출하지 않으면 자동차 대여사업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구 고 시

◈ 종로구고시 제2025-171호

- 창신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내 소단위관리지구 - 개발행위허가 제한 연장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206호(2022. 4. 28.)로 정비구역 지정(변경)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 되고 종로구 고시 제2023-137호(2023. 11. 16.)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창신동 464-6 일대 창신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내 소단위관리지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 연장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13일
종 로 구 청 장

가. 제한지역(변경없음)
- 구역명 : 창신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내 소단위관리지구
- 위 치 : 창신동 464-6 및 390-12 일대 (세부위치는 지형도면 참조)
- 면 적 : 18,932.5㎡

나. 제한사유(변경없음)
- 제한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 이 일대는 창신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내 소단위관리지구로 현재 정비계획 수립(변경) 중에 있어, 비경제적인 건축행위와 무분별한 투기수요의 유입 등을 방지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함.

다. 제한기간
- 기정: 행위제한 고시일(2023. 11. 16.)로부터 2년
- 연장: 2027. 11. 15. 까지
  [도시 · 군관리계획 결정 등에 따라 행위를 제한할 사유가 없어질 경우, 행위제한 즉시 해제]

라. 제한대상행위(변경없음)
- 건축물의 건축 및 공작물의 설치 (※자세한 내용은 하단 참조)

구분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허용 여부	불허	일부 허용	일부 허용	허용	허용	허용	불허

※ 세부내용
① 증축(일부), 개축(일부), 재축 : 건축위원회(건축계획전문위원회 자문) 거쳐 허가 여부 결정
· 설계서, 주변과 어울림, 구조안전, 옥외간판 등 제시
② 증축(일부) 허용범위
· 건축물의 기능향상(비상계단, 연결통로, 에스컬레이터, 경사로 및 휠체어리프트 엘리베이터 등)이 필요한 경우 (단, 단층건축물은 건폐율 범위 내에서 증축 허용)
· 위생시설 개선명령을 받은 화장실, 조리장 등
③ 개축(2층 이하) 허용구조 : 철거가 용이한 구조(조적조 등)

마. 관계도서(변경없음)

– 개발행위허가 제한 지형도면 (종로구청 미래도시추진과에 비치, 문의 ☎02-2148-24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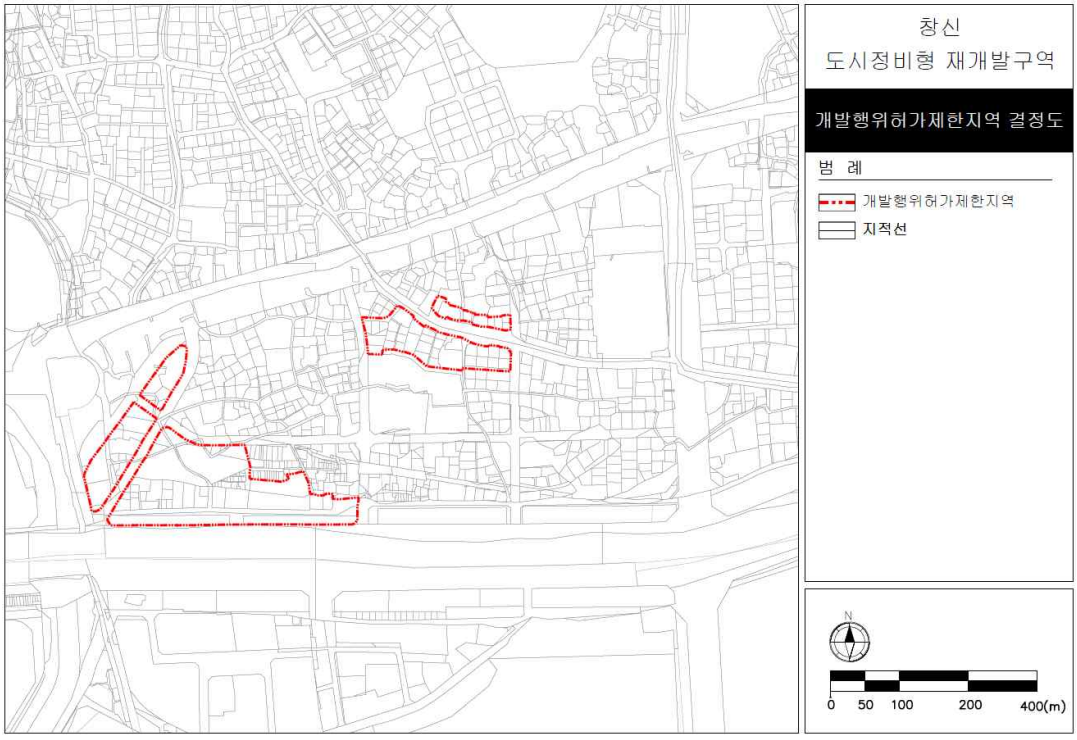

◈ 종로구고시 제2025-172호

익선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
- 건축물 불허용도에 관한 결정(변경)-

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8-142호(2018.5.10.)호로 최초 결정된, 「익선 지구단위계획구역」 건축물 불허용도에 관한 결정(변경)하는 사항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7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13일
종 로 구 청 장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2. 건축물에 관한 용도 결정조서 : 변경
   1) 불허용도 : 변경
   ■ 불허용도 결정(변경)조서

도면 표시번호	적용 구역	위치	변 경 사 유
불허3	돈화문로 구역	1층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해당하는 용도 중**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 (돈화문로 변에서 점포깊이 6m 까지 불허, 단 한옥 건축시에는 전체 허용)
		전층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해당하는 용도 중** • 공동주택 •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목욕탕, 세탁소, 탁구장, 체육도장, 변전소, 도시가스배관시설, 통신용시설, 양수장, 정수장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자동차영업소, 총포판매소, 청소년게임제공업소,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인터넷검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등, 장의사, 다중생활시설, 제조업소·수리점 등 물품의 제조·가공·수리 등을 위한 시설(국악기, 공예품, 생활한복관련 제외)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 공연장(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제외) 및 전시장을 제외한 문화및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생활권수련시설을 제회한 수련시설, 운동시설, 관광숙박시설을 제외한 숙박시설, 위락시설,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주차장을 제회한 자동차관련시설, 교정및군사시설, 발전시설, 관광휴게시설, 장례식장, 야영장시설

도면 표시번호	적용 구역	위치	변 경 사 유
불허4	태화 관길 구역	전층	•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해당하는 용도 중 • 공동주택 •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목욕탕, 세탁소, 탁구장, 체육도장, 변전소, 도시가스배관시설, 통신용시설, 양수장, 정수장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자동차영업소, 총포판매소, 청소년게임제공업소,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등, 장의사, 다중생활시설, 제조업소 · 수리점 등 물품의 제조 · 가공 · 수리 등을 위한 시설(국악기, 공예품, 생활한복관련 제외)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 공연장(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제외) 및 전시장을 제외한 문화및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생활권수련시설을 제회한 수련시설, 운동시설, 관광숙박시설을 제외한 숙박시설, 위락시설,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주차장을 제회한 자동차관련시설, 교정및군사시설, 발전시설, 관광휴게시설, 장례식장, 야영장시설

■ 불허용도 결정(변경)도 : 변경 없음

■ 불허용도 결정(변경)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불허3 불허4	• 기 존 불허 3 : 태화관길 구역 불허 4 : 돈화문로 구역 • 변 경 불허 3 : 돈화문로 구역 불허 4 : 태화관길 구역	• 도시관리계획(익선 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 내 건축물의 불허 용도 관련 정정 사항이 있어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변경한 사항으로, •돈화문로 지구단위계획의 돈화문로변의 계획(1층 불허용도)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기존 결정도의 내용을 따라 변경내용과 같이 결정(변경)

마. 기타 사항

○ 궁금한 사항은 종로구 건축과(☎02-2148-28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광진구고시 제2025-53호

도시관리계획(중곡역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275호(2012.9.27.)로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62호(2024.2.1.)로 변경 결정된 중곡역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13일
광 진 구 청 장

Ⅰ. 결정(변경) 취지

▮ 광진구 중곡동 271-4번지와 176-125번지는 중곡역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외의 토지로서 공동개발을 통한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을 확장하여 토지이용의 합리화를 도모하고자 함.

Ⅱ.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변경	중곡역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광진구 중곡역 일대	404,434.9	증)58.0	404,492.9	2012.09.27.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257호)	-

▮ 변경사유서

구역명	결정(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중곡역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 면적 : 404,434.9㎡→404,492.9㎡ 증) 58.0㎡	•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중곡동 271-4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연접한 필지인 중곡동 176-125의 공동개발을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 확장

2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결정(변경없음)

1. 용도지역 · 지구에 관한 결정조서(변경없음)

2.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조서(변경없음)

3 건축계획에 관한 결정(변경)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가. 가구 결정(변경) 조서

▮ 주거지역(기정)

가구번호	위 치	가구면적(㎡)	지 번	지 목	면 적(㎡)	용도지역	비고
GR-27	중곡동 271-1 일대	2,723.8	150-23	대	81.4	제1종일반주거지역	
			150-24	대	195.0	제1종일반주거지역	
			150-25	대	301.0	제1종일반주거지역	
			150-27	대	314.0	제1종일반주거지역	
			150-28	대	317.0	제1종일반주거지역	
			150-29	대	258.0	제1종일반주거지역	
			150-30	대	237.4	제1종일반주거지역	
			150-31	대	88.0	제1종일반주거지역	
			271-1	대	204.0	제1종일반주거지역	
			271-2	대	196.4	제1종일반주거지역	
			271-3	대	269.8	제1종일반주거지역	
			271-4	대	176.2	제1종일반주거지역	
			150-286	대	77.6	제1종일반주거지역	
			150-422	대	8.0	제1종일반주거지역	

▮ 주거지역(변경)

가구번호	위 치	가구면적(㎡)	지 번	지 목	면 적(㎡)	용도지역	비고
GR-27	중곡동 271-1 일대	2,723.8	150-23	대	81.4	제1종일반주거지역	
			150-24	대	195.0	제1종일반주거지역	
			150-25	대	301.0	제1종일반주거지역	
			150-27	대	314.0	제1종일반주거지역	
			150-28	대	317.0	제1종일반주거지역	
			150-29	대	258.0	제1종일반주거지역	
			150-30	대	237.4	제1종일반주거지역	
			150-31	대	88.0	제1종일반주거지역	
			271-1	대	204.0	제1종일반주거지역	
			271-2	대	196.4	제1종일반주거지역	
			271-3	대	269.8	제1종일반주거지역	
			271-4	대	176.2	제1종일반주거지역	
			176-125	임	58.0	제1종일반주거지역	구역 확장 지역
			150-286	대	77.6	제1종일반주거지역	
			150-422	대	8.0	제1종일반주거지역	

– 가구 변경사유서

가구번호		위치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전	변경후			
GR-27	GR-27	중곡동 271-1 일대	가구 면적 증가(58㎡)	중곡동 271-4와의 공동개발을 위해 구역 인접 필지인 중곡동 176-125를 편입하여 가구 면적 증가

나. 획지 결정(변경) 조서

▮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변경)

– 기정

가구번호	연번	위치	필지면적(㎡)	획지면적(㎡)	계획내용	비고
GR-27	1	150-23대	81.4	2,723.8	공동개발(특별지정) 가능구역	-
		150-24대	195.0			
		150-25대	301.0			
		150-27대	314.0			
		150-28대	317.0			
		150-29대	258.0			
		150-30대	237.4			
		150-31대	88.0			
		150-286대	77.6			
		150-422대	8.0			
		271-1대	204.0			
		271-2대	196.4			
		271-3대	269.8			
		271-4대	176.2			

– 변경

가구번호	연번	위치	필지면적(㎡)	획지면적(㎡)	계획내용	비고
GR-27	1	150-23대	81.4	2,781.8	공동개발(특별지정) 가능구역	
		150-24대	195.0			
		150-25대	301.0			
		150-27대	314.0			
		150-28대	317.0			
		150-29대	258.0			
		150-30대	237.4			
		150-31대	88.0			
		150-286대	77.6			
		150-422대	8.0			
		271-1대	204.0			
		271-2대	196.4			

가구번호	연번	위치	필지면적(㎡)	획지면적(㎡)	계획내용	비고
		271-3대	269.8			
		271-4대	176.2			
		176-125임	58.0			구역 확장 지역

- 획지 변경사유서

가구번호	위치	변경내용	변경사유
GR-27	중곡동 271-1 일대	획지 면적 증가(58㎡)	중곡동 271-4와의 공동개발을 위해 구역 인접 필지인 중곡동 176-125를 편입하여 획지 면적 증가

다. 대지규모 결정조서(변경없음)

2. 건축물에 관한 결정조서(변경 없음)
3. 특별계획(가능)구역에 관한 결정조서(변경없음)

4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조서(변경없음)
1. 교통처리에 관한 결정조서(변경없음)
2. 공공주택(법적상한용적률 완화) 건설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3.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사항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Ⅲ. 관계도면 :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도 및 지형도면 고시도
※ 첨부된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Ⅳ. 고시 관련 세부내용에 대한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 도시계획과(☎ 450-7684)에 관련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기정) - 중곡동 271-4, 176-1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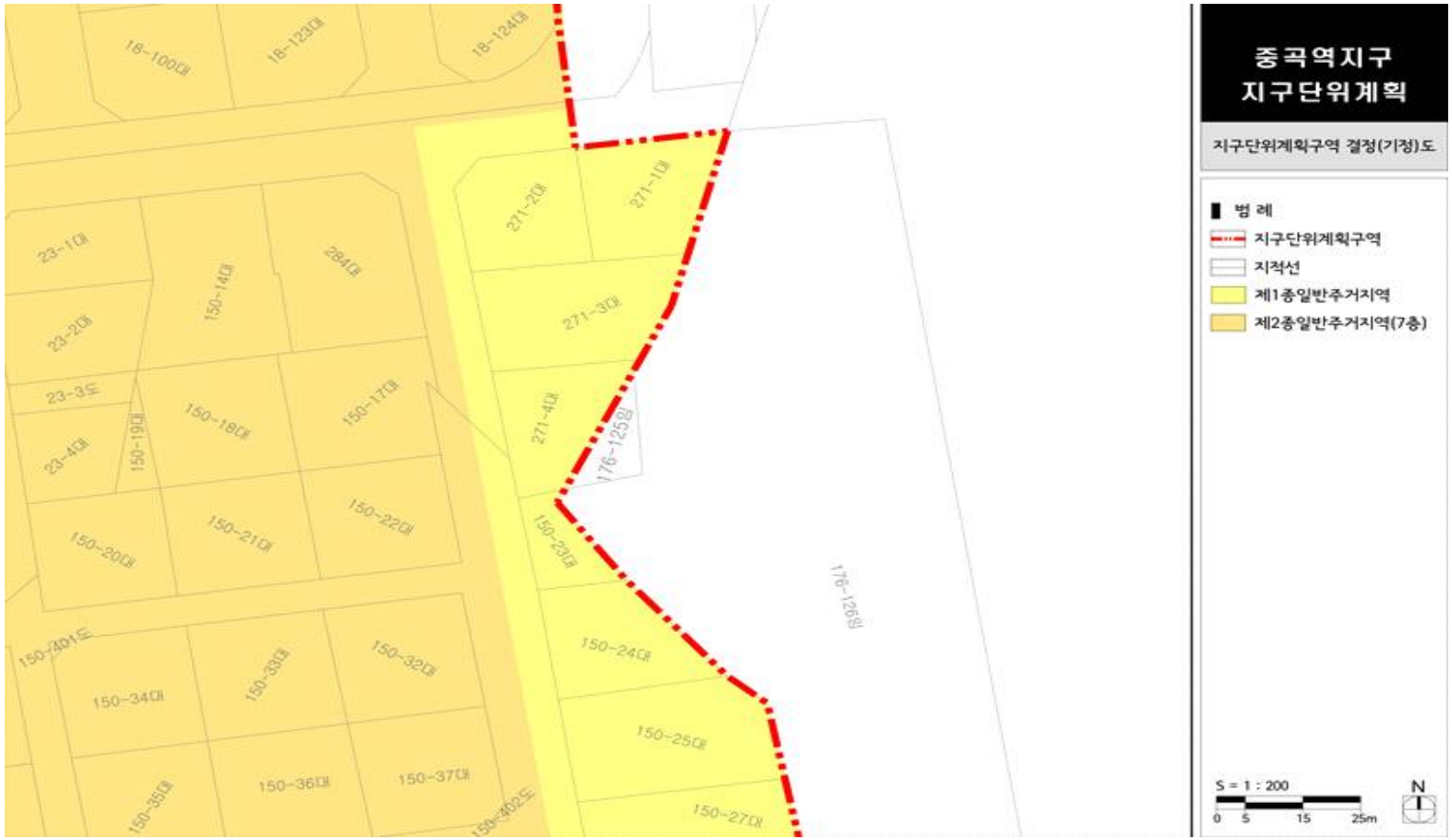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변경) - 중곡동 271-4, 176-1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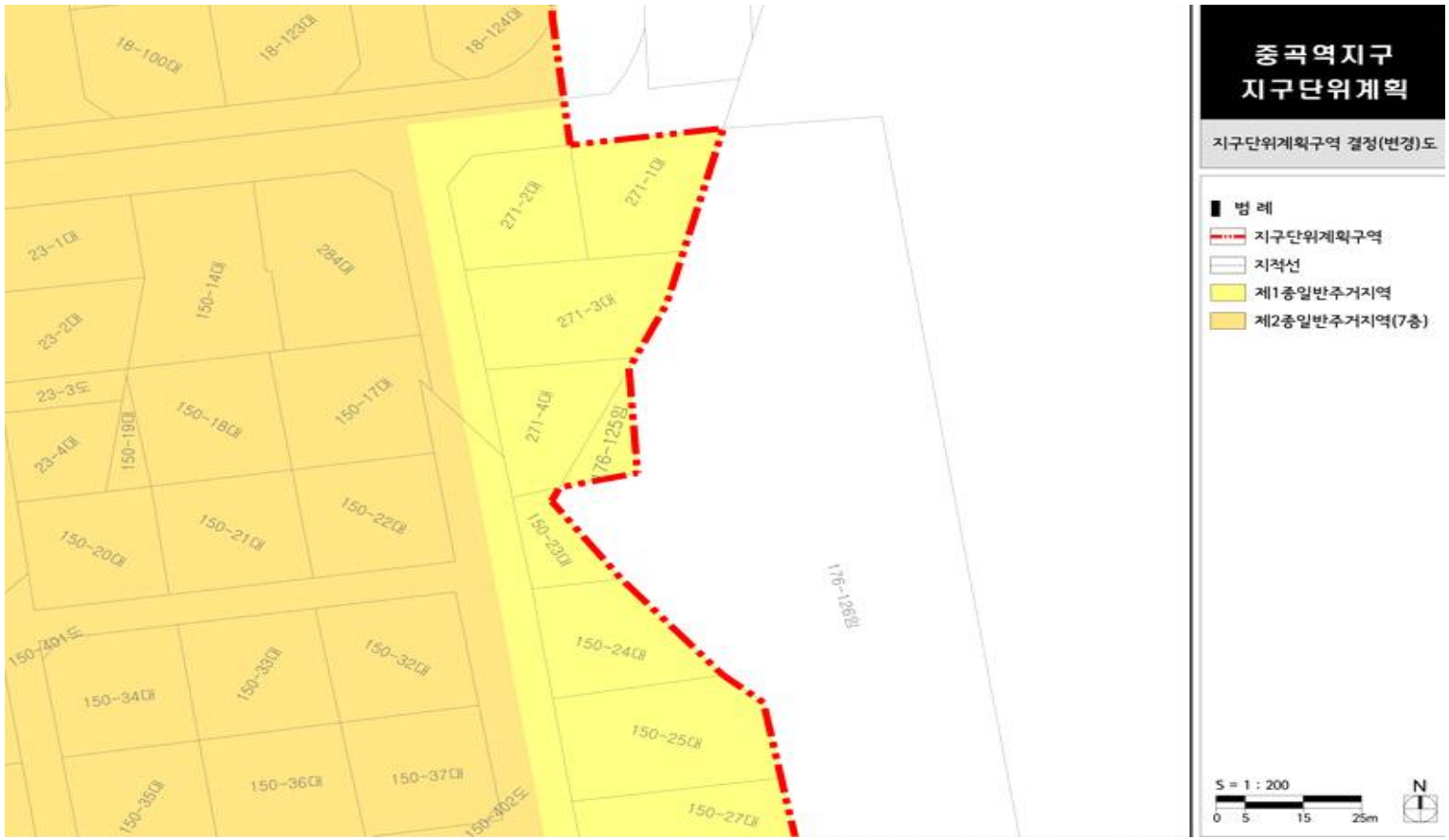

■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기정) - 중곡동 271-4, 176-1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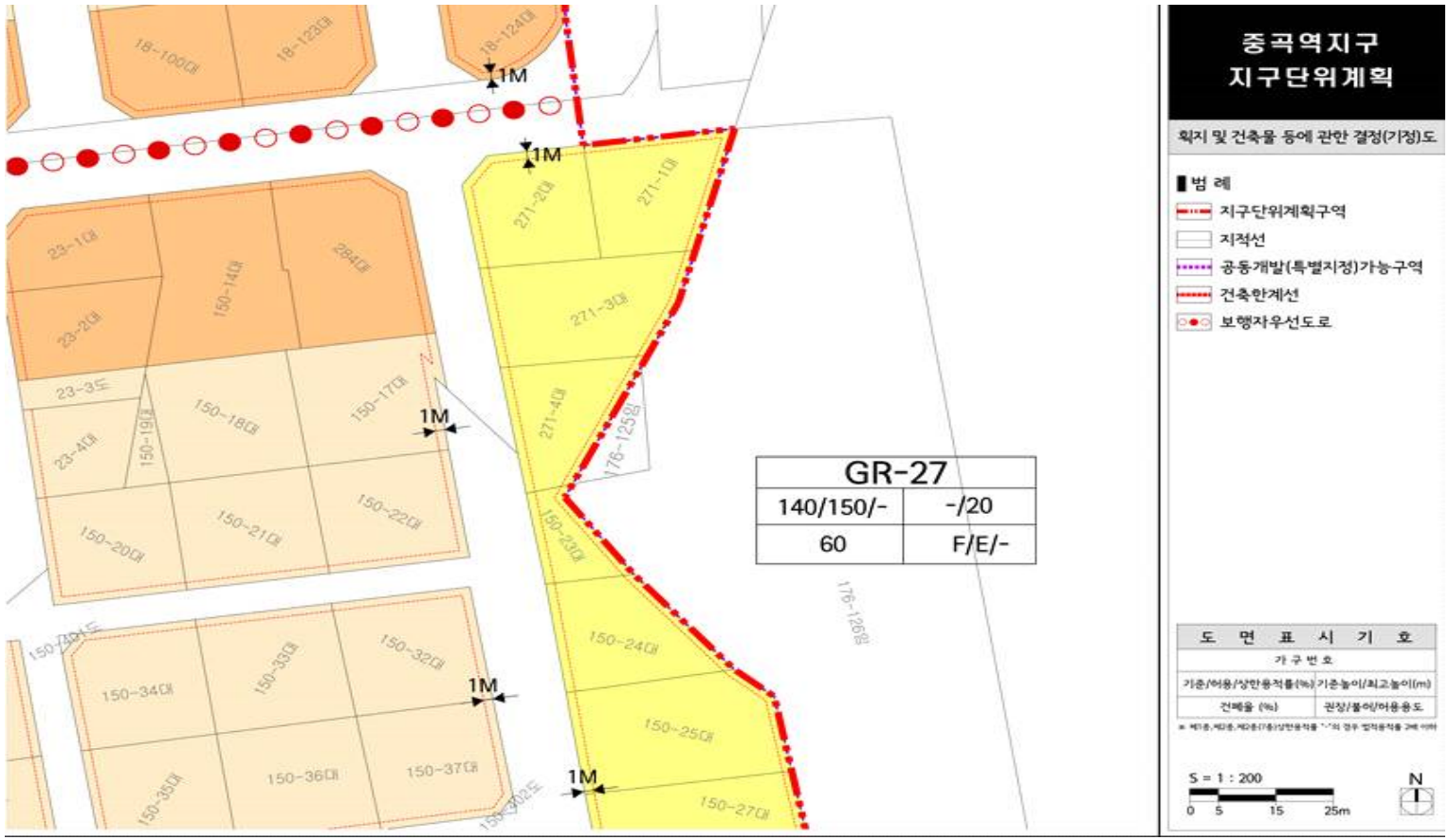

■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변경) - 중곡동 271-4, 176-1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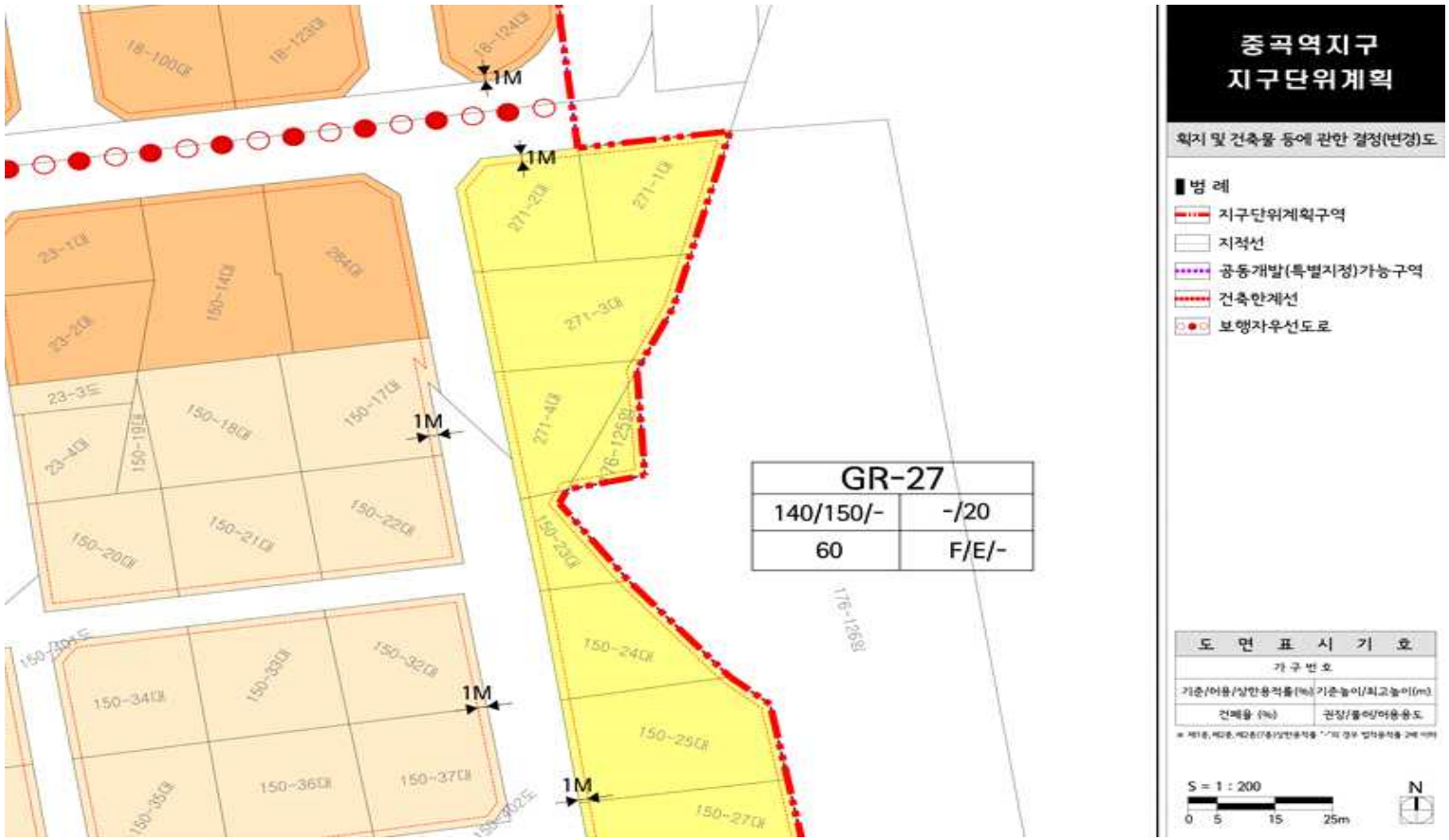

◈ 성북구고시 제2025-169호

도시관리계획(석관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1996-275호(1996.10.08.)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02-212호(2002.06.15.),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234호(2014.06.26.)로 결정고시된 석관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변경사항이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본 고시 관련 세부내용에 대한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청 도시계획과(☏ 2241-2683)에 관련도서를 비치하고 열람하고 있습니다.

2025년 11월 13일
성 북 구 청 장

가. 변경 취지 : 합리적 토지이용을 위하여 주민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제안에 의거 공동개발(지정)을 해제하는 사항임

나. 도시관리계획(석관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조서 : 공동개발(지정) 해제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위 치	면적(㎡)	위 치	면적(㎡)	
SR5	석관동 220-15	165	석관동 220-15	165	공동개발(지정) 해제
	석관동 220-32	188	석관동 220-32	188	공동개발(지정) 해제

※ 면적은 지적측량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다.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도

변경 전	변경 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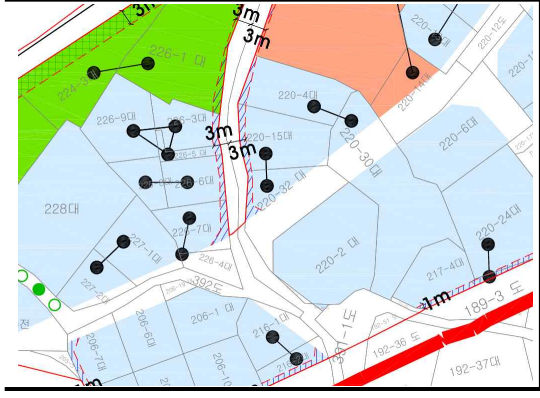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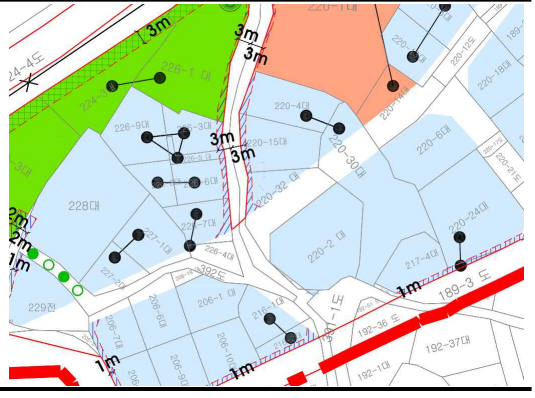

◈ 강북구고시 제2025-140호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도로)사업 실시계획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362호(2025.07.03.)로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하고 강북구공고 제2025-1205호(2025.09.11.)로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도로) 사업 실시계획 작성(인가)을 위하여 열람공고한 아래 사업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13일
강 북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동 192-59 일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도로)사업
- 명 칭: 강북구 신청사 건립 및 진입도로 개설사업

다. 사업면적 및 규모
- 공공청사

시설면적	대지면적	용적률	건폐율	층 수	연면적
8,443㎡	7,347.41㎡	556.91%	56.90%	지하6층/지상17층	68,530.41㎡

- 도 로

도로명	규 모			비 고
	폭(m)	연장(m)	면적(㎡)	
중로 2-284	2.5	60	151.5	
소로 3-37	6	61.6	366.6	
소로 2-다	8	59	477.4	
소로 3-라	5	78	399.5	

라.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 성 명: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 주 소: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89길 13(수유동)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 고시일로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물건 등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

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 · 권리자의 성명 · 주소 : 붙임 참고

사. 기타 상세한 사항은 강북구청 신청사건립추진단(☎02-901-635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토지조서

○ 사업명: 강북구 신청사 건립 및 진입도로 개설사업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이용 현황)	지적 면적 (㎡)	편입면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공공청사 (도로중복 결정포함)	도로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권리 관계	
1	강북구 수유동	142	도로 (도로)	14,674.2	351.3		강북구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89길 13	1				
2	강북구 수유동	190-8	대 (대)	656.9	656.9		강북구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89길 13	1				
3	강북구 수유동	190-9	대 (대)	358	340	18	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천호대로	1	강북구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89길 13	소유권이전 청구권가등기	
4	강북구 수유동	190-11	주차장 (주차장)	1,307.2	1,307.2		강북구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89길 13	1				
5	강북구 수유동	190-14	대 (대)	157.4	157.4		강**	경기도 파주시 범벅들길	1/2	강북구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89길 13	소유권이전 청구권가등기	
							김**	서울특별시 성북구 솔샘로	1/2				
6	강북구 수유동	190-45	대 (대)	150.4	150.4		송**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3/9				
							이**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2/9				
							이**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4/9				
7	강북구 수유동	190-46	대 (도로)	45	45		강북구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89길 13	1				
8	강북구 수유동	190-49	대 (대)	313	313		구**	서울특별시 도봉구 덕릉로	2/4				
							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빙타운로	1/4				
							전**	서울특별시 강북구 덕릉로	1/4				
9	강북구 수유동	192-59	대 (대)	5,100.2	5,100.2		강북구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89길 13	1				
10	강북구 수유동	192-60	도로 (도로)	593.4	6		강북구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89길 13	1				
11	강북구 수유동	190-84	대 (주차장)	15.6	15.6		강북구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89길 13	1				

물건조서

○ 사업명: 강북구 신청사 건립 및 진입도로 개설사업

연번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면적 (㎡)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권리 관계	
1	수유동 190-8	건물	경량철골구조	1,702.39	강북구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89길 13	1				
2	수유동 190-9	건물	철근 콘크리트조	867.8	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천호대로	1	강북구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89길 13	소유권이전 청구권가등기	
3	수유동 190-14	건물	연와조	257.21	강**	경기도 파주시 범벅들길	1/2	강북구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89길 13	소유권이전 청구권가등기	
					김**	서울특별시 성북구 솔샘로	1/2				
4	수유동 190-45	건물	철근 콘크리트조	505.52	송**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3/9				
					이**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2/9				
					이**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4/9				
5	수유동 190-49	건물	철근 콘크리트조, 벽돌조	708.39	구**	서울특별시 도봉구 덕릉로	2/4				
					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웰빙타운로	1/4				
					전**	서울특별시 강북구 덕릉로	1/4				
6	수유동 192-59	건물	철근 콘크리트조	10,511.94	강북구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89길 13	1				

◈ 강서구고시 제2025-100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주차장) 중복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5호(1987.2.17.)로 결정된 강서구 화곡동 24-266번지 화곡초등학교에 관한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7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학교, 주차장) 중복결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13일
강 서 구 청 장

가. 결정취지: 공영주차장을 확보하여 열악한 주차환경을 개선하고, 주택 지역의 교통 여건 개선 및 학생들의 보행 안전 확보에 기여하고자 도시계획시설(학교, 주차장)을 중복결정하려는 사항임.

나.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1)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신설	-	주차장	화곡동 24-266번지	-	증) 3,600.0	3,600.0	-	학교시설 중복결정 (A=3,600㎡)

■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안) 사유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신설	-	주차장	• 주차장(신설) - 면적 증) 3,600.0㎡	• 공영주차장을 확보하여 열악한 주차환경을 개선하고, 주택지역의 교통 여건 개선 및 학생들의 보행 안전 확보에 기여하고자 도시계획시설(학교, 주차장)을 중복결정하려는 사항임

2)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기정	-	학교 (화곡초)	화곡동 24-266번지	14,921.0	-	14,921.0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고시 제5호 (1987.02.21.)	-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변경	-	학교 (화곡초)	화곡동 24-266번지	14,921.0	-	14,921.0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고시 제5호 (1987.02.21.)	주차장 중복결정 (A=3,600㎡)

■ 학교의 건축범위 결정 조서(변경없음)

건폐율 (%)		용적률 (%)		높이(층,m)		건축제한완화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30	-	120	-	-	5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김포공항주변고도지구

다. 관계도면: 붙임 참조

※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라. 주민의 열람 편의를 위하여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청 도시계획과(☎02-2600-6692)에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 등은 서울도시계획포털(http://urban.seoul.go.kr) 및 토지이음(https://www.eu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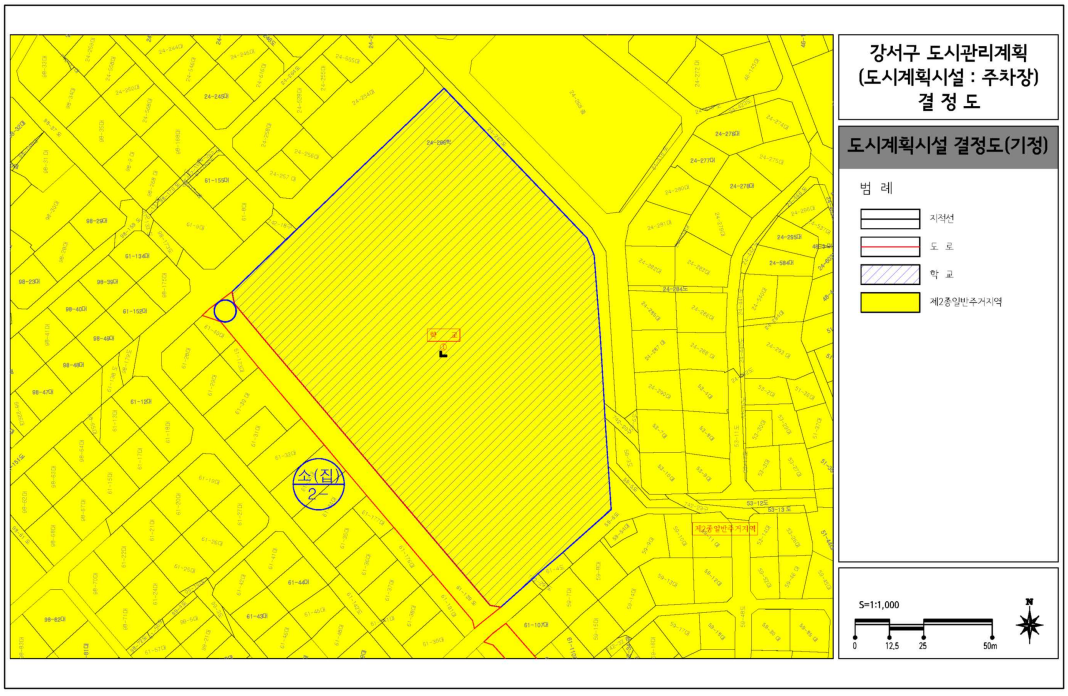

□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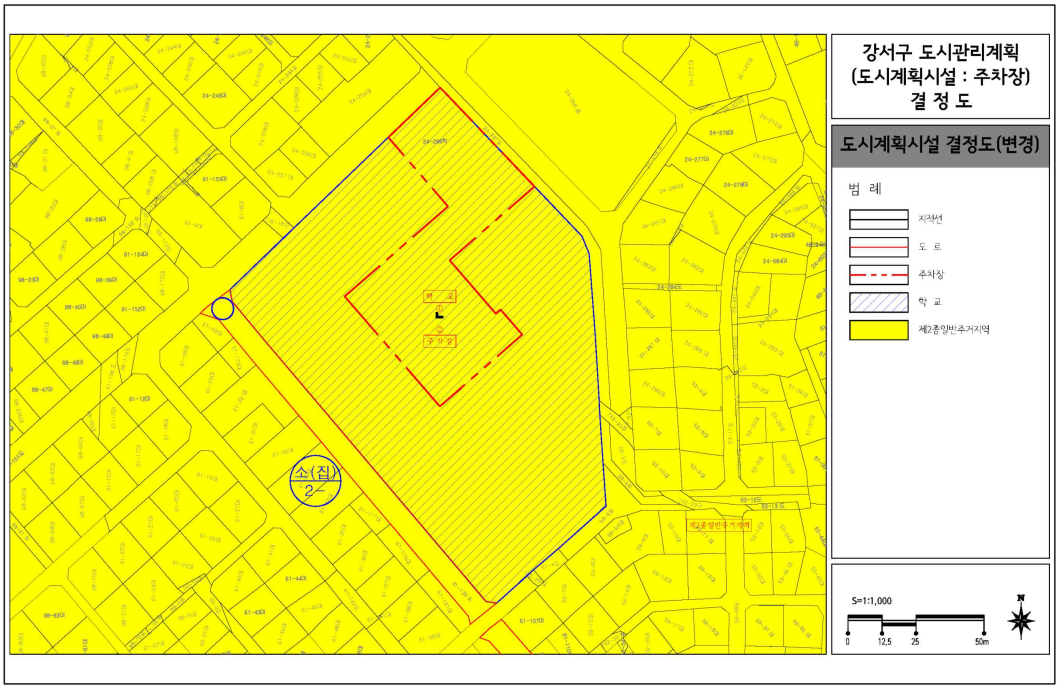

◈ 구로구고시 제2025-184호

도시관리계획(개봉역 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고시
- 구로구 개봉동 170-33일원 개봉역 역세권 활성화사업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607호(2023.12.28.)로 결정(변경)된 도시관리계획(개봉역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개봉역 역세권 활성화사업 공공기여 계획을 변경하고자 2025년 제3차 구로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2025.10.31.)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7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개봉역 지구단위계획)을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13일
구 로 구 청 장

Ⅰ. 변경결정 취지

○ 구로구 개봉동 170-33번지 일원 역세권 활성화사업의 공공기여 계획 중 공공기여 총량 범위 내 공공기여 계획(용도, 규모 등)을 변경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개봉역 지구단위계획)을 결정(경미한 변경)하는 사항임.

Ⅱ. 도시관리계획(개봉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 변경없음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1.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2.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3. 공공기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

가. 개봉동 170-33번지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 공공기여 계획

■ 공공기여 계획(기정)

구 분	기준(허용) 용적률	상한 용적률	공공 기여율	공공기여면적					비고 (구성비)
				구 분	구성비	총면적	부지제공	환산부지	
제3종일반 주거지역 → 근린 상업지역	250%	600%	부지면적의 29.17% 이상 (788.09㎡)	합 계	29.20%	789.00㎡	378.21㎡	410.79㎡	100.0%
				공공주택	8.62%	232.98㎡	232.98㎡	-	
				지역필요시설	20.58%	556.02㎡	145.23㎡	410.79㎡	
				기준 788.09㎡(29.17%) ≤ 계획 789.00㎡(29.20%)					

주1) 「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 운영기준」 4-1-1에 따라 증가하는 용적률의 50%를 부지면적 환산함
주2) 공공주택의 경우 토지는 기부채납, 건축물은 표준건축비로 매입하며, 그 외 공공기여시설(기반시설 포함)은 토지, 건물 모두 기부채납 하되 필요한 경우 건축물을 매입할 수 있음(기부채납만 공공기여율로 산정)
주3) 공공기여시설은 서울시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기준」 을 따르며,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는 건축허가 시점에 관할 관리청과 사업자가 각각 선정한 2개의 감정평가한 단위면적 당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값으로 산정하여 확정하되, 토지가치산정 기준은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 시점으로 함
주4) 공공기여시설은 세부건축계획 성능수준, 설비 등 조성계획을 관할 관리청과 협의 후 건축 인·허가 시 확정하여 준공 시 기부채납함
주5)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결과를 반영한 도로(중로3-4) 가각부의 기부채납 부분은 공공기여 산정에서 제외

■ 공공기여 계획(변경)

구 분	기준(허용) 용적률	상한 용적률	공공 기여율	공공기여면적					비고 (구성비)
				구 분	구성비	총면적	부지제공	환산부지	
제3종일반 주거지역 → 근린 상업지역	250%	600%	부지면적의 29.17% 이상 (788.09㎡)	합 계	29.20%	789.02㎡	182.13㎡	606.89㎡	100.0%
				공공주택	-	-	-	-	
				지역필요시설 (공공산후조리원)	29.20%	789.02㎡	182.13㎡	606.89㎡	
				기준 788.09㎡(29.17%) ≤ 계획 789.02㎡(29.20%)					

주1) 「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 운영기준」 4-1-1에 따라 증가하는 용적률의 50%를 부지면적 환산함
주2) 공공기여시설은 서울시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기준」 을 따르며,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는 건축허가 시점에 관할 관리청과 사업자가 각각 선정한 2개의 감정평가한 단위면적 당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값으로 산정하여 확정하되, 토지가치산정 기준은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 시점으로 함
주3) 공공기여시설은 세부건축계획 성능수준, 설비 등 조성계획을 관할 관리청과 협의 후 건축 인·허가 시 확정하여 준공 시 기부채납함
주4)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결과를 반영한 도로(중로3-4) 가각부의 기부채납 부분은 공공기여 산정에서 제외

■ 공공기여시설 세부내역(기정)

구 분	총 공공 기여면적	부지 제공면적	환산 부지면적	공공기여율 (비 율)	지상 연면적	지하 연면적	연면적 계	비고 (관리청)
공공주택	232.98㎡	232.98㎡	-	8.62% (29.50%)	1,468.89㎡	949.93㎡	2,418.82㎡	서울특별시
지역필요시설	556.02㎡	145.23㎡	410.79㎡	20.58% (70.50%)	679.76㎡	828.09㎡	1,507.85㎡	구로구
계	789.00㎡	378.21㎡	410.79㎡	29.20% (100.0%)	2,148.65㎡	1,778.02㎡	3,926.67㎡	-

■ 공공기여시설 세부내역(변경)

구 분	총 공공 기여면적	부지 제공면적	환산 부지면적	공공기여율 (비 율)	지상 연면적	지하 연면적	연면적 계	비고 (관리청)
공공주택	-	-	-	-	-	-	-	-
지역필요시설 (공공산후조리원)	789.02㎡	182.13㎡	606.89㎡	29.20% (100.0%)	1,017.33㎡	661.77㎡	1,679.10㎡	구로구
계	789.02㎡	182.13㎡	606.89㎡	29.20% (100.0%)	1,017.33㎡	661.77㎡	1,679.10㎡	-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1. 가구 및 획지규모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2.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조서(용도· 건폐율·용적률·높이계획): 변경없음
3.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4.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5.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6. 인센티브에 관한 사항 : 변경

가. 기준용적률의 완화항목 및 완화내용 : 변경없음

나. 용적률 유형별 인센티브 계획 기준 : 변경없음

다. 개봉동 170-33번지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 용적률 적용기준(의무사항) : 변경

■ 기정

구 분		적용기준	계획내용	완화 내용	비고
공공기여에 관한 계획	공공기여율	• 부지면적의 29.17% 이상	• 부지면적의 29.20% 계획	기준 용적률 250% 상한 용적률 600% 부여	모든 항목을 충족 하여야함
	공공기여시설 설치기준	• 공공주택 30% 이상 권장 • 한가지 유형의 시설이 50%를 초과하여 설치하지 않는 것을 권장	• 공공주택 8.62%(29.50%) • 지역필요시설 20.58%(70.50%)		
건축물 용도구분	비주거비율	• 지상 용적률 10% 이상	• 주거 : 비주거 = 83.31% : 16.69%		
		• 전체 연면적 20% 이상	• 주거 : 비주거 = 79.98% : 20.02%		
	주거비율	• 「도시계획조례」 별표3 적용	• 주거용적률 499.41%		
주택건설 기준	주택규모	• 공공주택 : 전용 85㎡ 이하	• 공공주택 : 전용 46.91㎡ (12세대), 59.85㎡(7세대) 계획		
		• 민간주택(분양) : 기준 없음	• 공동주택(아파트): 전용 46.91㎡, 59.85㎡, 84.90㎡ 계획		
건축물 형태	서울형 주거환경 정책	• 3가지 의무적 이행 적용 - 지속가능형 공동주택 - 친환경 건축물 - 역사문화 보전(해당 시)	• 2가지 이행적용(역사문화 해당없음) - 지속가능형 공동주택 - 친환경 건축물		
주민 공동시설		• 관련규정에 따라 주민공동시설 설치대상이 아닌 100세대 미만인 경우 : 100㎡ 이상	• 158세대 -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주민공동시설 150㎡ 이상 계획 - 용도 : 라운지, 기타주민공동시설		

주1) 「서울특별시 역세권활성화사업 운영기준」 준용
주2) 향후, 건축계획 및 인허가 등에 따라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기준 내에서 계획내용의 면적 및 비율은 변경될 수 있음

■ 변경

구 분		적용기준	계획내용	완화 내용	비고
공공기여에 관한 계획	공공기여율	• 부지면적의 29.17% 이상	• 부지면적의 29.20% 계획	기준 용적률 250% 상한 용적률 600% 부여	모든 항목을 충족 하여야함
	공공기여시설 설치기준	• 공공주택 30% 이상 권장 • 한가지 유형의 시설이 50%를 초과하여 설치하지 않는 것을 권장	• 지역필요시설 29.20%(100.0%)		
건축물 용도구분	비주거비율	• 지상 용적률 10% 이상	• 주거 : 비주거 = 83.33% : 16.67%		
		• 전체 연면적 20% 이상	• 주거 : 비주거 = 79.86% : 20.14%		
	주거비율	• 「도시계획조례」 별표3 적용	• 주거용적률 499.96%		
주택건설 기준	주택규모	• 공공주택 : 전용 85㎡ 이하	• 공공임대주택(LH매입임대주택) - 전용 29㎡(299세대)		
		• 민간주택(분양) : 기준 없음	-		
건축물 형태	서울형 주거환경 정책	• 3가지 의무적 이행 적용 - 지속가능형 공동주택 - 친환경 건축물 - 역사문화 보전(해당 시)	• 2가지 이행적용(역사문화 해당없음) - 지속가능형 공동주택 - 친환경 건축물		
주민 공동시설		• 관련규정에 따라 주민공동시설 설치대상이 아닌 100세대 미만인 경우 : 100㎡ 이상	• 세대당 1.5㎡이상 확보 -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주민공동시설 510.46㎡ 이상 계획 - 용도 : 도서실		

주1) 「서울특별시 역세권활성화사업 운영기준」 준용
주2) 향후, 건축계획 및 인허가 등에 따라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기준 내에서 계획내용의 면적 및 비율은 변경될 수 있음

Ⅲ. 관계도면 : 붙임참조
※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Ⅳ. 열람장소 : 관계도서는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구로구청 도시계획과(☏02-860-2280)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은 토지이음 (http://www.eum.go.kr) 및 서울도시공간포털 (http://urban.seoul.go.kr) 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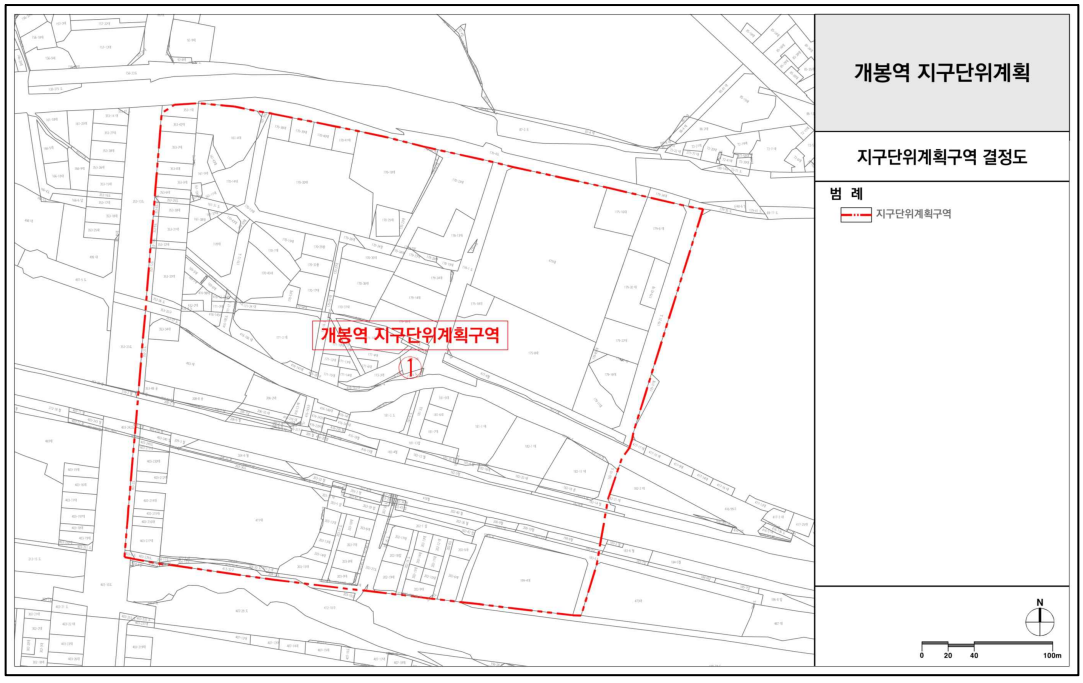

■ 용도지역·지구 결정도(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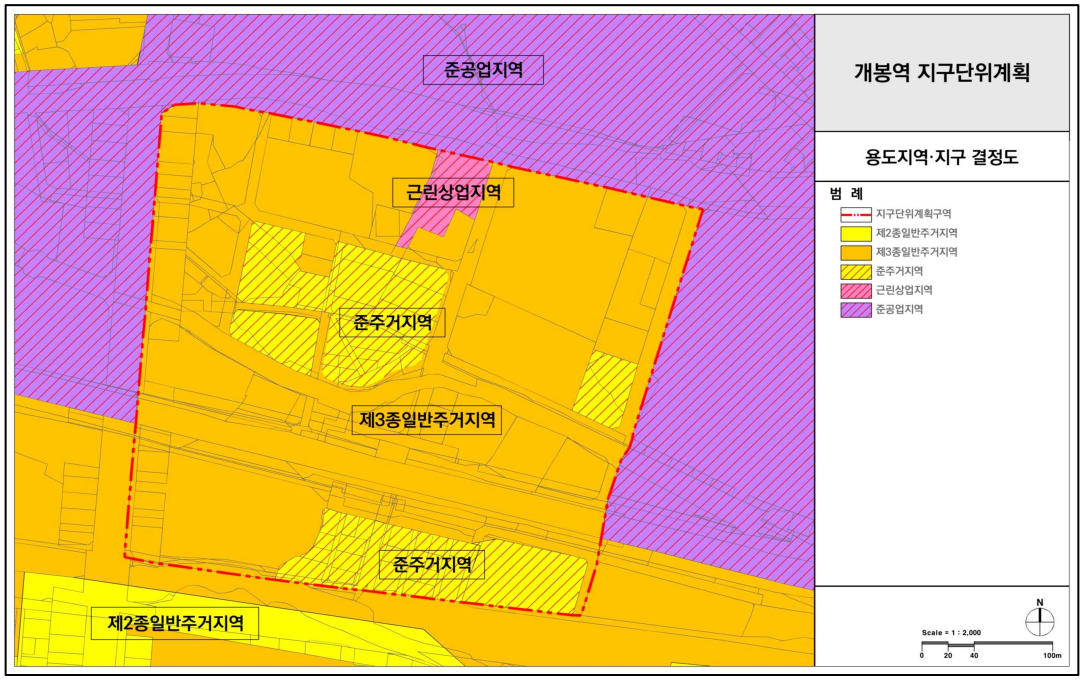

■ 도시계획시설 결정도(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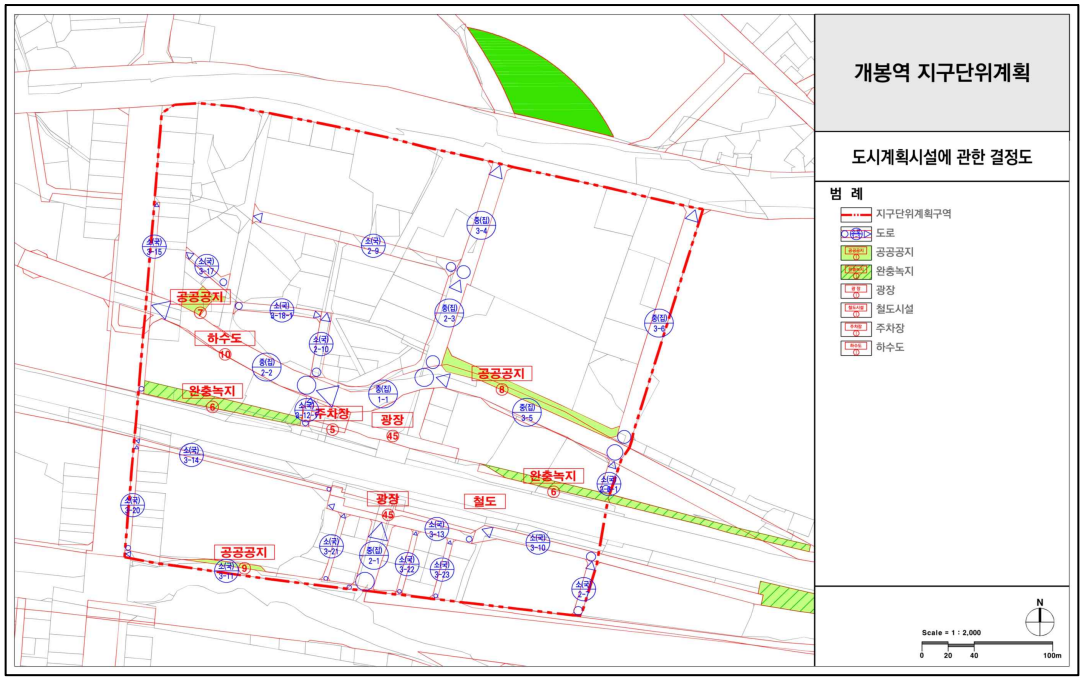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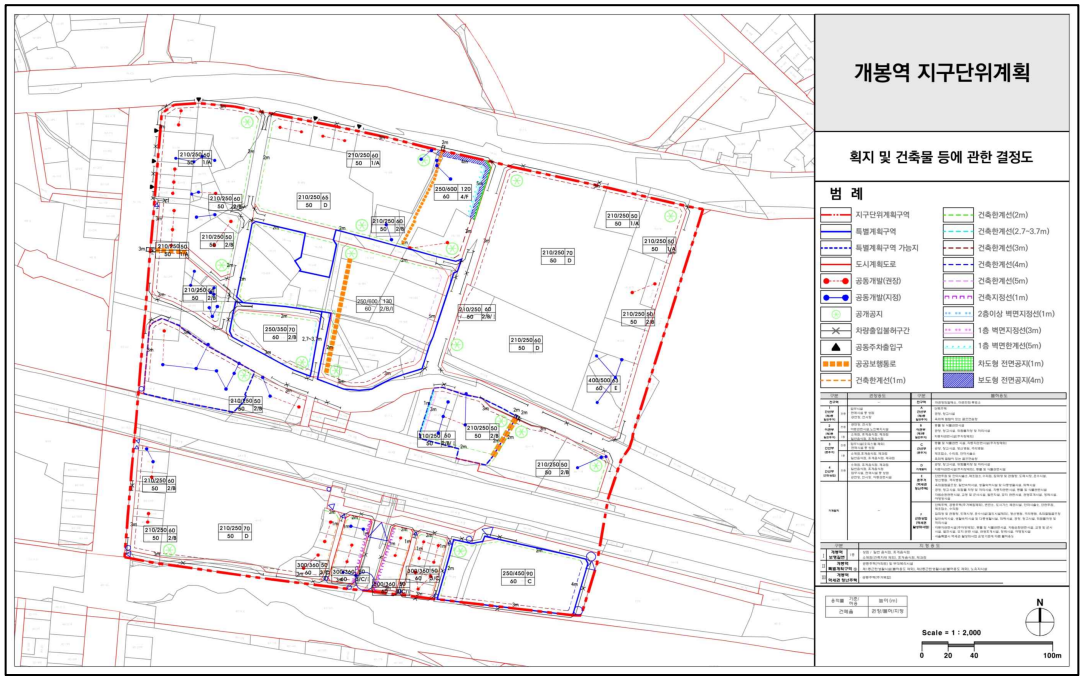

◈ 동작구고시 제2025-155호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23-42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에 대하여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하며,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13일
동 작 구 청 장

1. 사업의 명칭 : 동작하이팰리스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립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2. 사업주체(변경없음)
 가. 성명 : 동작하이팰리스 지역주택조합 조합장 윤명석
 나. 주소 : 서울시 동작구 상도로 315, 상정빌딩 4층(상도1동 261)
 ※ 공동사업주체 : 현대건설(주) 윤영준(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3. 사업시행자의 위치 · 면적 및 규모
 가. 위치 :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23-42번지 일원
 나. 면적 및 규모

구분	용도	규 모			대지면적 (㎡)	건축 연면적 (㎡)	건폐율 (%)	용적률 (%)	조경면적 (㎡)	사업비 (천원)	사업기간 (사용검사 예정일)
		층수 (지상/지하)	동	세대수							
기정	아파트	35/6	4	608	13,851.80	90,394.18	28.06	398.25	4,544.11	541,343,887	2026.10
변경						90,426.08		398.32			

4. 사업시행기간 : 2020.12. ~ 2026.11.

5. 주택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되는 사항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의 결정
 ※ 기타 의제 사항 표기 생략

6. 관계도서 : 생략[동작구청 도시정비2과(☎02-820-1999)에 비치함]

▣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Ⅰ.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 변경없음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

가.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 : 변경없음

나.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1) 교통시설 : 변경없음

2) 공공·문화체육시설

가) 공공청사

■ 입체적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시설명	위치	구분		기정	변경	변경후	최초결정일	비고
변경	①	공공청사	상도동 23-42번지 일원	면적(㎡)		1,279.47	감)0.02	1,279.45	동작구고시 제2020-130호	-
				연면적	계	2,239.22	감)0.58	2,238.64		
					지상3층	29.16	-	29.16		
					지상2층	218.94	-	218.94		
					지상1층	1,222.28	감)0.25	1,222.53		
					지하1층	607.77	감)1.85	605.92		
					지하2층	73.17	증)0.54	73.71		
					지하3층	87.90	증)0.47	88.37		
				높이		지하3~1층 지상1~3층	-	지하3~1층 지상1~3층		

주) 입체적 결정하는 공공청사 면적은 수평투영 면적이며, 공공청사 연면적은 전용·공용·부대시설을 합한 면적이고 향후 건축계획에 따라 기반시설 순부담률 기준 범위에서 조정될 수 있음

주) 공공청사 제공위치, 성능수준, 설비, 세부용도 등은 관할 관리청과 협의하여 사업계획승인 시 확정하여 준공 시 기부채납

■ 입체적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사유서

구분	위치	면적(㎡)	변경사유
변경	상도동 23-42번지 일원	1,279.45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변경에 따른 변경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

가.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 : 변경없음

나.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 변경없음

다. 비주거시설에 관한 계획(변경)

■ 기정

도면 표시	운영기준	계획내용
①	◦ 주택과 주택외의 시설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여 지상1층과 2층은 비주거로 설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이 경우 지상층 주택연면적 합계의 비율이 90%미만으로 지상층에 건축하고 주택외의 시설은 지상층에 다음기준에 따라 건축을 권장한다. ◦ 지상층 연면적 10%이상의 비주거시설의 설치를 권장한다. ◦ 자치구청장이 입지여건을 고려하여 요청하는 경우 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입지여건을 고려 지하층에 설치 가능하다. 단, 지상층 비주거시설이 입지하는 건물의 지상1층과 2층에 비주거 설치를 권장한다.	◦ 지상층 연면적 : 55,164.90㎡ ◦ 법정 비주거시설 면적 : 5,516.49㎡이상 ◦ 비주거시설 확보면적 : 7,214.66㎡ - 지상층 비주거시설 : 1,470.37㎡ - 지하층 비주거시설 : 5,744.29㎡ ∴5,516.49㎡(10.0%) < 7,214.66㎡(13.56%)

주) 계획내용은 사업계획승인 기준이며, 향후 건축계획 등이 변경될 경우에는 운영기준 내에서 변경될 수 있음

■ 변경

도면 표시	운영기준	계획내용
①	◦ 주택과 주택외의 시설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여 지상1층과 2층은 비주거로 설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이 경우 지상층 주택연면적 합계의 비율이 90%미만으로 지상층에 건축하고 주택외의 시설은 지상층에 다음기준에 따라 건축을 권장한다. ◦ 지상층 연면적 10%이상의 비주거시설의 설치를 권장한다. ◦ 자치구청장이 입지여건을 고려하여 요청하는 경우 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입지여건을 고려 지하층에 설치 가능하다. 단, 지상층 비주거시설이 입지하는 건물의 지상1층과 2층에 비주거 설치를 권장한다.	◦ 지상층 연면적 : 55,174.45㎡ ◦ 법정 비주거시설 면적 : 5,517.46㎡이상 ◦ 비주거시설 확보면적 : 7,252.17㎡ - 지상층 비주거시설 : 1,470.63㎡ - 지하층 비주거시설 : 5,781.54㎡ ∴5,516.46㎡(10.0%) < 7,251.17㎡(13.62%)

주) 계획내용은 사업계획승인 기준이며, 향후 건축계획 등이 변경될 경우에는 운영기준 내에서 변경될 수 있음

라. 공공임대주택 건립관련 계획 : 변경없음

도면표시	운영기준	계획내용
①	◦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공공임대주택은 전용 60㎡ 이하 주택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하는 의무 용적률을 임대주택으로 공급되는 세대수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비율로 공급하여야 한다. 전용면적 45㎡ 이하 : 60%~80% 전용면적 45㎡ 초과 60㎡ 이하 : 20%~40%	◦ 전용면적 45㎡ 이하 - 72.5%(131세대) ◦ 전용면적 45㎡ 초과 60㎡ 이하 - 27.5%(51세대)

주) 계획내용은 사업계획승인 기준이며, 향후 건축계획 등이 변경될 경우에는 운영기준 내에서 변경될 수 있음

마. 허용용적률에 관한 계획

■ 기정

구분		운영기준	계획내용	비고
필수항목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건축법 제8조에 의한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 각 세대는 인접한 세대와 수직 또는 수평방향으로 통합하거나 분할 할 수 있을 것 - 구조체에서 건축설비, 내부 마감재료 및 외부 마감재료를 분리할 수 있을 것 - 개별 세대 안에서 구획된 실의 크기, 개수 또는 위치 등을 변경할 수 있을 것	철근콘크리트 라멘조(무량판구조) 리모델링이 가능한 비내력벽체 부분설치	건축위원회 결정사항
	커뮤니티 지원시설	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 주택수가 300세대 이상인 경우 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 지상층 공동주택 연면적의 3%(최소 450㎡)이상	◦ 지상층 공동주택 연면적 : 53,694.53㎡ ◦ 법정 커뮤니티면적 : 1,610.83㎡ 이상 ◦ 커뮤니티 확보면적 : 1,619.07㎡ ∴1,610.84㎡(3.0%)<1,619.07㎡(3.0%)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시 이행
	에너지 효율 건축물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 의한 에너지 성능지표 검토서의 평점합계가 86점 이상이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건물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기준」에 의한 "에너지효율 2등급" 이상 인증	에너지효율 1등급 이상 인증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시 이행
	친환경 건축물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및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인센티브를 받는 환경영향평가 대상 건축·주택사업은 최우수 등급, 기타 건축주택사업은 우수등급 이상의 친환경 예비인증	우수 등급 이상 인증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시 이행
선택항목	신재생에너지 사용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에 따라 공동주택은 표준건축공사비의 1% 이상을 일반건축물은 3%이상을 설치	표준건축공사비의 1%이상 설치	1개 항목 선택 적용
	공공기여 방안	공공기여방안을 지구단위계획 및 건축설계에 반영한 경우로서 위원회(또는 건축위원회)에서 공공에 기여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구분		운영기준	계획내용	비고
	역사문화보전계획	사업대상지가 문화재보호법상 지정 및 등록문화재 또는 역사문화 보전이 필요한 지구 등에 포함된 경우 보전 계획을 준수하여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건축계획에 반영한 경우	-	

주) 계획내용은 사업계획승인 기준이며, 향후 건축계획 등이 변경될 경우에는 운영기준 내에서 변경될 수 있음

■ 변경

구분		운영기준	계획내용	비고
필수항목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건축법 제8조에 의한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 각 세대는 인접한 세대와 수직 또는 수평방향으로 통합하거나 분할 할 수 있을 것 - 구조체에서 건축설비, 내부 마감재료 및 외부 마감재료를 분리할 수 있을 것 - 개별 세대 안에서 구획된 실의 크기, 개수 또는 위치 등을 변경할 수 있을 것	철근콘크리트 라멘조(무량판구조) 리모델링이 가능한 비내력벽체 부분설치	건축위원회 결정사항
	커뮤니티 지원시설	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 주택수가 300세대 이상인 경우 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 지상층 공동주택 연면적의 3%(최소 450㎡)이상	지상층 공동주택 연면적 : 53,703.83㎡ ◦ 법정 커뮤니티면적 : 1,611.12㎡ 이상 ◦ 커뮤니티 확보면적 : 1,619.07㎡ ∴1,611.12㎡(3.0%)<1,619.07㎡(3.0%)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시 이행
	에너지 효율 건축물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 의한 에너지 성능지표 검토서의 평점합계가 86점 이상이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건물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기준」에 의한 "에너지효율 2등급" 이상 인증	에너지효율 1등급 이상 인증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시 이행
	친환경 건축물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및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인센티브를 받는 환경영향평가 대상 건축주택사업은 최우수 등급, 기타 건축주택사업은 우수등급 이상의 친환경 예비인증	우수 등급 이상 인증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시 이행

구분		운영기준	계획내용	비고
선택항목	신재생에너지 사용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에 따라 공동주택은 표준건축공사비의 1% 이상을 일반건축물은 3%이상을 설치	표준건축공사비의 1%이상 설치	1개 항목 선택 적용
	공공기여 방안	공공기여방안을 지구단위계획 및 건축설계에 반영한 경우로서 위원회(또는 건축위원회)에서 공공에 기여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역사문화 보전 계획	사업대상지가 문화재보호법상 지정 및 등록문화재 또는 역사문화 보전이 필요한 지구 등에 포함된 경우 보전 계획을 준수하여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건축계획에 반영한 경우	-	

주) 계획내용은 사업계획승인 기준이며, 향후 건축계획 등이 변경될 경우에는 운영기준 내에서 변경될 수 있음

바. 공공시설 부담계획(변경)

■ 기정

구분		합계	제2종일반 주거지역(7층)	제3종일반 주거지역	비고
면적		14,477.0㎡	12,503.1㎡	1,973.9㎡	국공유지 131㎡ 제외
공공시설부담율		-	25%	15%	
공공시설의무면적		3,421.9㎡	3,125.8㎡	296.1㎡	
공공시설 확보면적	도로	625.20㎡	539.20㎡	86.00㎡	12.78%
	공공청사	1,224.63㎡	306.89㎡	917.74㎡	
	소계	1,849.83㎡	846.09㎡	1,003.74㎡	

세대수 및 면적	구분	합계	60㎡ 이하	60㎡~85㎡	대지면적(㎡)
	합계(세대)	608 (100.0%)	441 (72.5%)	167 (27.5%)	12,253.13 (100.00%)
	분양(세대)	426 (100.0%)	259 (60.8%)	167 (39.2%)	9,409.42 (76.79%)
	공공임대주택(세대)	182 (100.0%)	182 (100.0%)	-	2,843.71 (23.21%)

구분	합계	제2종일반 주거지역(7층)	제3종일반 주거지역	비고
공공시설 부담률 산정	◦ 공공시설 부담률을 산정함에 있어 임대사업자에게 무상으로 양여하는 공공임대주택 부속토지 면적의 1/2을 부담률로 갈음할 수 있음			전체 기부채납 면적 : 1,849.83㎡ (순부담율 : 12.78%) + 2,843.71㎡ (공공임대주택 : 19.64%) = 4,693.54㎡ (계획 : 32.42%)
	◦ 공공시설 부담률 산정 - 순부담 확보면적 : 공공시설 의무면적의 1/2 이상 ⇒ 3,421.9㎡의 ½ = 1,710.9㎡(11.82%) ≤ 1,849.83㎡(12.78%) - 공공임대주택 확보면적 : 공공시설 부담율의 1/2 갈음 ⇒ 확보면적 : 2,843.71㎡(19.64%) 확보 ◦ 본 사업대상지는 공공시설 의무면적의 1/2이상으로 도로(625.20㎡), 공공청사 건축물기부채납(1,224.63㎡) 등의 순부담 면적(1,849.83㎡)을 설치하였으며, ◦ 공공시설 의무면적의 1/2은 무상양여한 공공임대주택의 부속토지(2,843.71㎡)를 확보함으로서 공공시설 의무면적 이상으로 계획하였음			

■ 변경

구분		합계	제2종일반 주거지역(7층)	제3종일반 주거지역	비고
면적		14,477.0㎡	12,503.1㎡	1,973.9㎡	국공유지 131㎡ 제외
공공시설부담율		-	25%	15%	
공공시설의무면적		3,421.9㎡	3,125.8㎡	296.1㎡	
공공시설 확보면적	도로	625.20㎡	539.20㎡	86.00㎡	12.80%
	공공청사	1,227.30㎡	307.56㎡	919.74㎡	
	소계	1,852.50㎡	846.76㎡	1,005.74㎡	

세대수 및 면적	구분	합계	60㎡ 이하	60㎡~85㎡	대지면적(㎡)
	합계(세대)	608 (100.0%)	441 (72.5%)	167 (27.5%)	12,260.80 (100.00%)

구분	합계	제2종일반 주거지역(7층)	제3종일반 주거지역	비고
	분양(세대)	426 (100.0%)	259 (60.8%)	167 (39.2%)	9,415.78 (76.79%)
	공공임대주택 (세대)	182 (100.0%)	182 (100.0%)	-	2,845.63 (23.21%)
공공시설 부담률 산정	◦ 공공시설 부담률을 산정함에 있어 임대사업자에게 무상으로 양여하는 공공임대주택 부속토지 면적의 1/2을 부담률로 갈음할 수 있음			전체 기부채납 면적 : 1,852.50㎡ (순부담율 : 12.80%) + 2,845.63㎡ (공공임대주택 : 19.66%) = 4,698.13㎡ (계획 : 32.45%)
	◦ 공공시설 부담률 산정 - 순부담 확보면적 : 공공시설 의무면적의 1/2 이상 ⇒ 3,421.9㎡의 ½ = 1,710.9㎡(11.82%) ≤ 1,852.50㎡(12.80%) - 공공임대주택 확보면적 : 공공시설 부담율의 1/2 갈음 ⇒ 확보면적 : 2,845.63㎡(19.66%) 확보 ◦ 본 사업대상지는 공공시설 의무면적의 1/2이상으로 도로(625.20㎡), 공공청사 건축물기부채납(1,227.30㎡) 등의 순부담 면적(1,852.50㎡)을 설치하였으며, ◦ 공공시설 의무면적의 1/2은 무상양여한 공공임대주택의 부속토지(2,845.63㎡)를 확보함으로서 공공시설 의무면적 이상으로 계획하였음			

사. 상한용적률 산정(변경)

■ 기정

구분	산출결과	산출내역	비고
공공시설 제공면적	1,849.83㎡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 846.09㎡ ◦ 제3종일반주거지역 : 1,003.74㎡	
가중치	1.019	= 공공시설 제공부지 용적률 / 사업부지 용적률 = 440.85% / 432.72% = 1.019	
α토지	0.072	= 공공시설 제공부지 면적 / 공공시설 제공 후의 대지면적 = 976.34㎡ / 13,500.66㎡ = 0.072	
α건축물	0.065	= 공공시설 제공 면적 / 공공시설 제공 후의 대지면적 = 873.49㎡ / 13,500.66㎡ = 0.065	
기준용적률	206.81%	= [(2종일반주거(7층)×200%)+(3종일반주거×250%)] / 구역면적 = [(11,963.9㎡×200%)+(1,887.9㎡×250%)]/13,851.8㎡=206.815%	
허용용적률Ⅱ	400.0%	= [(2종일반주거(7층)×430%)+(3종일반주거×450%)] / 구역면적 = [(11,963.9㎡×430%)+(1,887.9㎡×450%)]/13,851.8㎡=432.72% ⇒ 400.0% 이하 적용	

구분	산출결과	산출내역	비고
상한용적률	400.0%	= 432.72%×(1+1.3×1.019×0.072+0.7×0.065)=493.77% ⇒ 400% 이하 적용	
설계용적률	398.25%	-	
공공임대 주택용적률	96.20%	= (설계용적률 - 기준용적률) × 1/2 이상 = (398.25% - 206.81%) × 1/2 = 95.71% 이상	

주) 용적률 및 순부담률 산정시 국공유지 131㎡ 제외

■ 변경

구분	산출결과	산출내역	비고
공공시설 제공면적	1,852.50㎡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 846.76㎡ ◦ 제3종일반주거지역 : 1,005.74㎡	
가중치	1.019	= 공공시설 제공부지 용적률 / 사업부지 용적률 = 440.86% / 432.72% = 1.019	
α토지	0.073	= 공공시설 제공부지 면적 / 공공시설 제공 후의 대지면적 = 979.18㎡ / 13,497.82㎡ = 0.073	
α건축물	0.065	= 공공시설 제공 면적 / 공공시설 제공 후의 대지면적 = 873.32㎡ / 13,497.82㎡ = 0.065	
기준용적률	206.81%	= [(2종일반주거(7층)×200%)+(3종일반주거×250%)] / 구역면적 = [(11,963.9㎡×200%)+(1,887.9㎡×250%)]/13,851.8㎡=206.815%	
허용용적률	400.0%	= [(2종일반주거(7층)×430%)+(3종일반주거×450%)] / 구역면적 = [(11,963.9㎡×430%)+(1,887.9㎡×450%)]/13,851.8㎡=432.72% ⇒ 400.0% 이하 적용	
상한용적률	400.0%	= 432.72%×(1+1.3×1.019×0.073+0.7×0.065)=493.90% ⇒ 400% 이하 적용	
설계용적률	398.32%	-	
공공임대 주택용적률	96.21%	= (설계용적률 - 기준용적률) × 1/2 이상 = (398.32% - 206.81%) × 1/2 = 95.76% 이상	

주) 용적률 및 순부담률 산정시 국공유지 131㎡ 제외

4.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 : 변경없음

가. 대지 내 공지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나. 차량 동선 계획 : 변경없음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도 : 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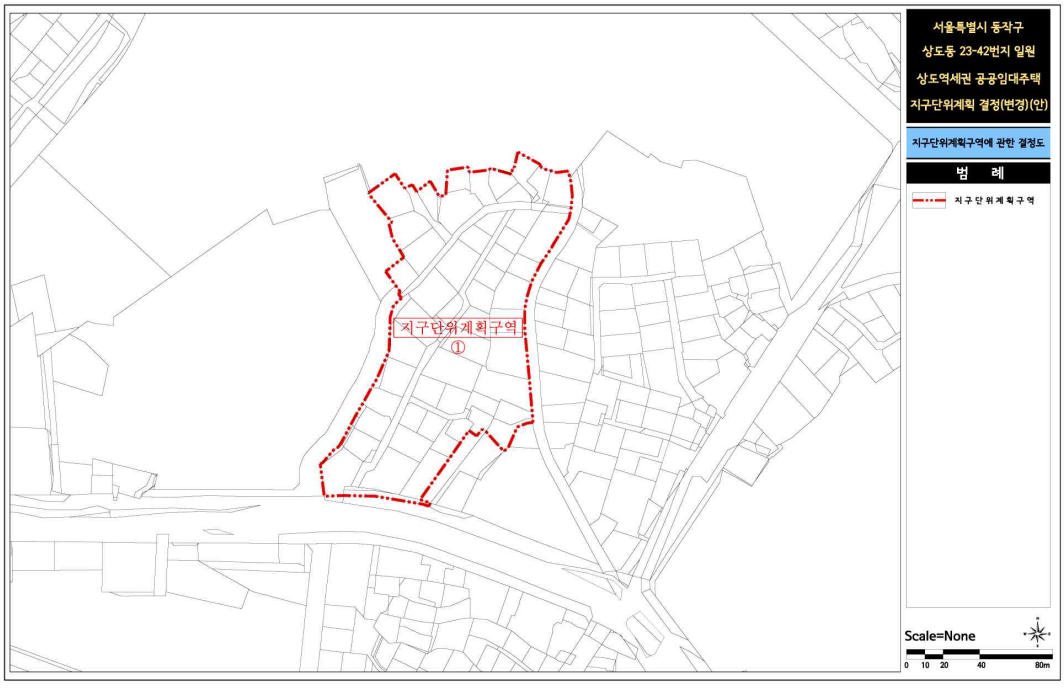

■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도 : 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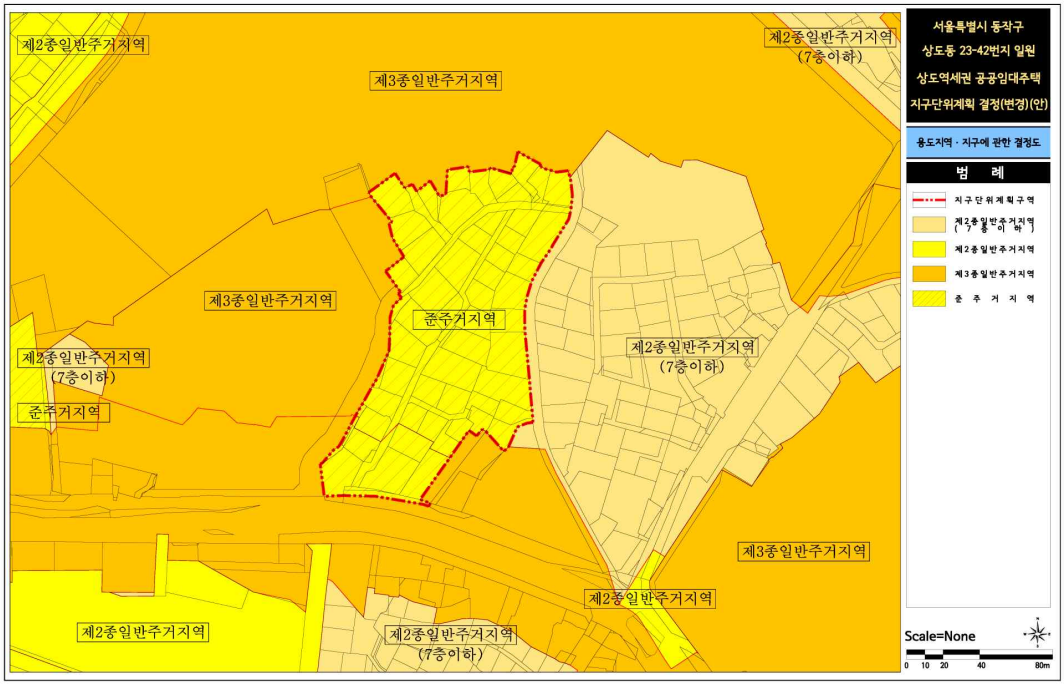

■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도 : 변경없음

■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결정도 : 변경없음

■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기정)도(세부시설계획-지하2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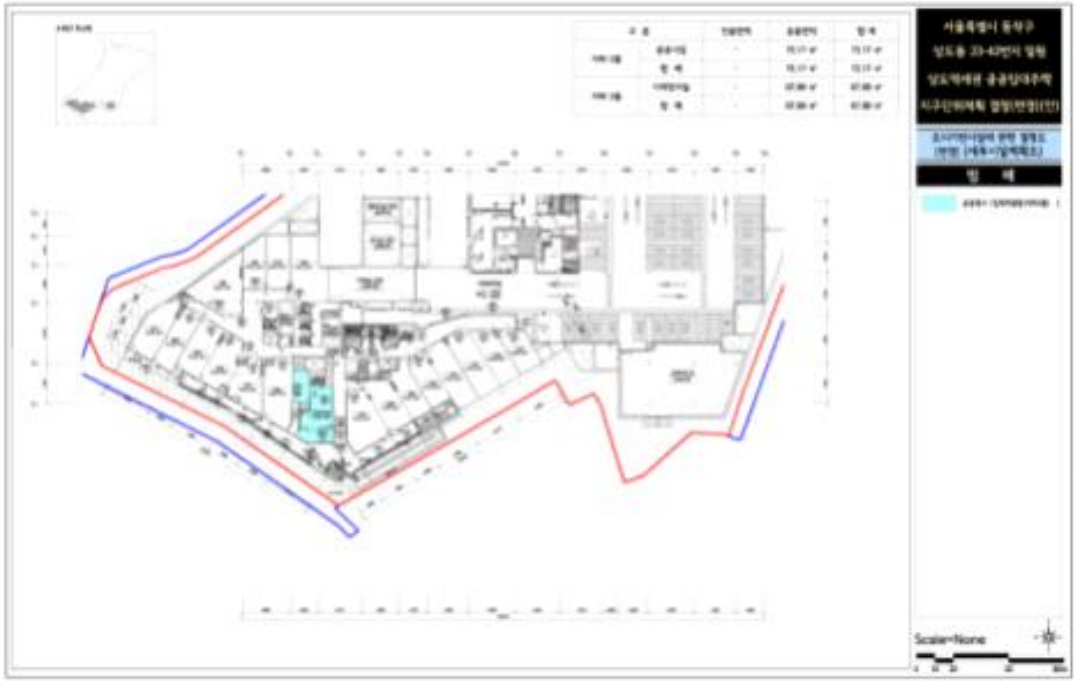

■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변경)도(세부시설계획-지하2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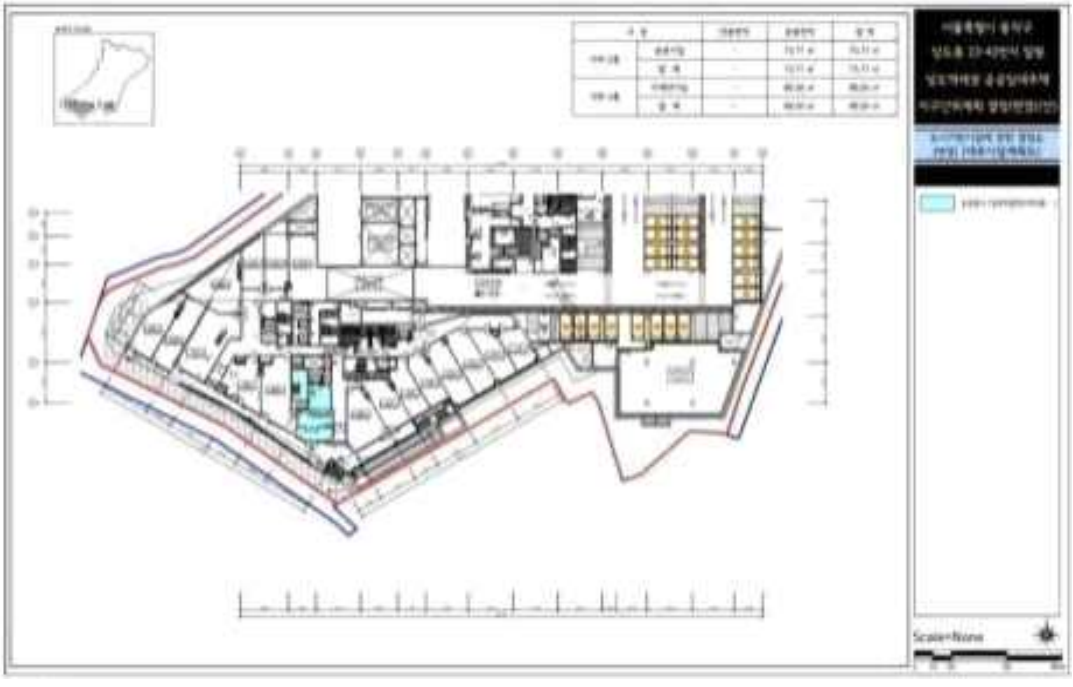

■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기정)도(세부시설계획-지하1층)

■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변경)도(세부시설계획-지하1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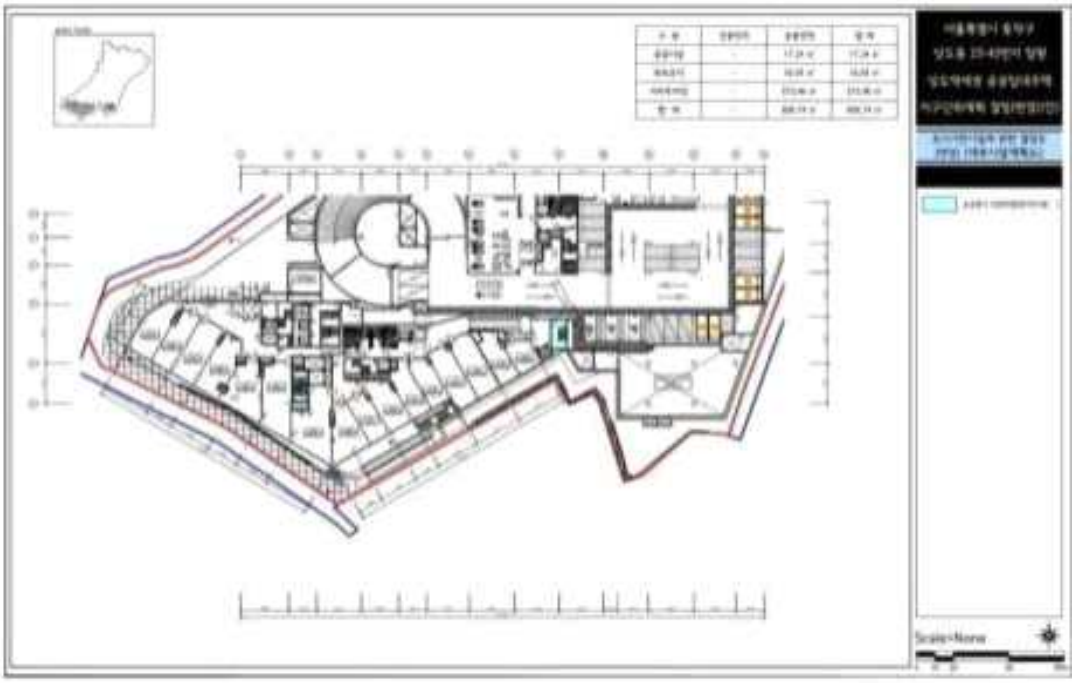

■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기정)도(세부시설계획-지상1층)

■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변경)도(세부시설계획-지상1층)

■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기정)도(세부시설계획-지상2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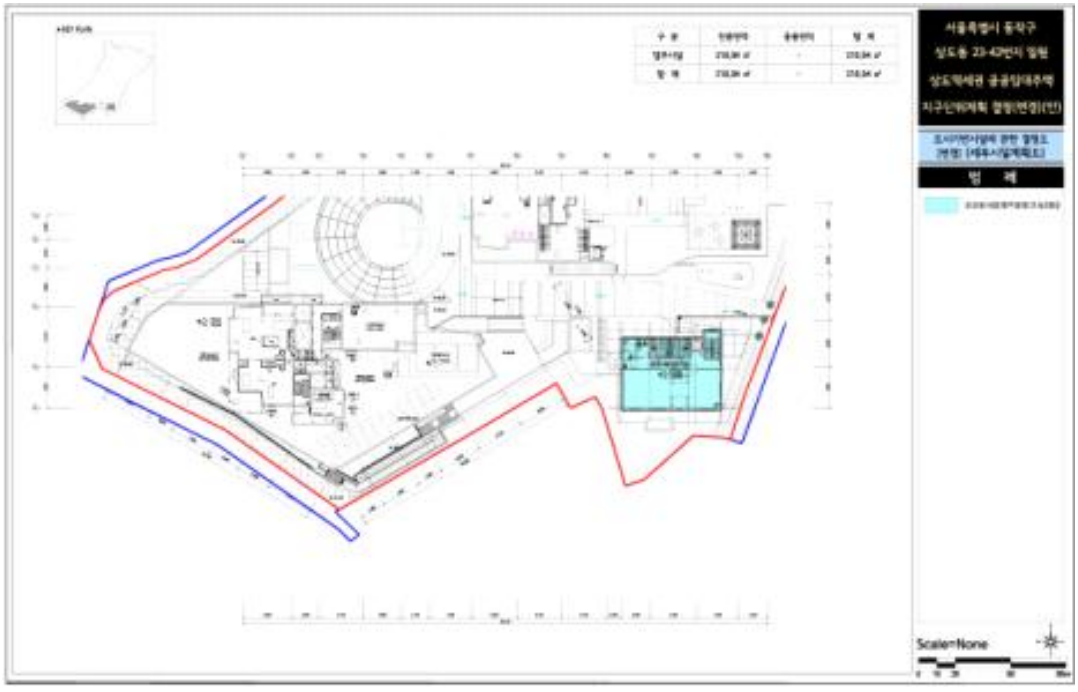

■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변경)도(세부시설계획-지상2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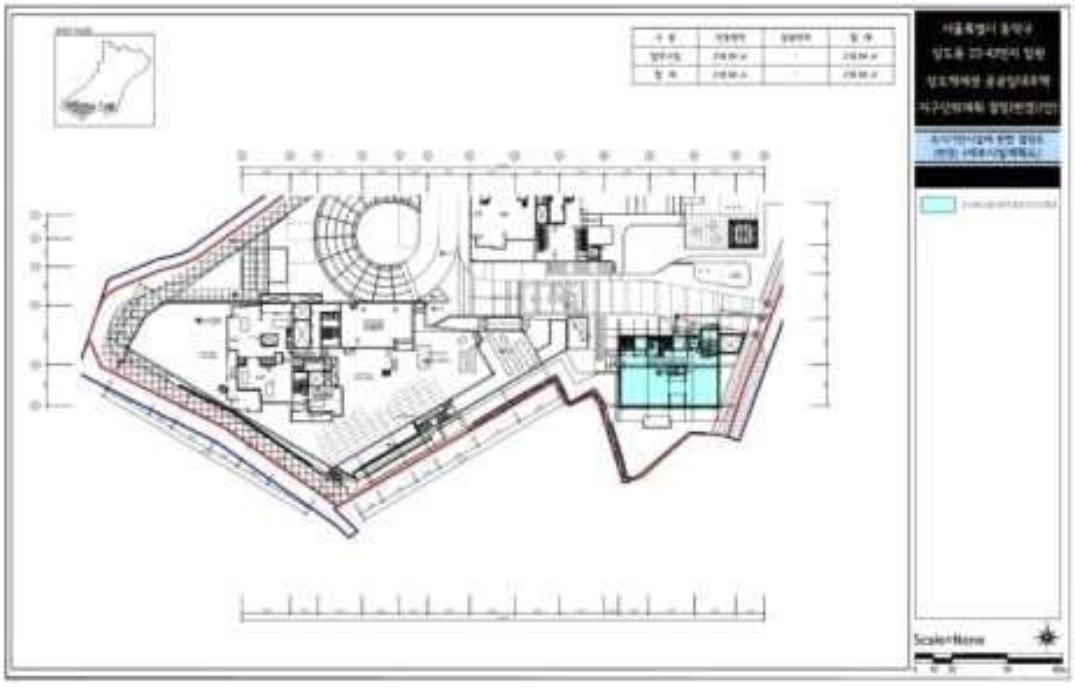

■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기정)도(세부시설계획-지상3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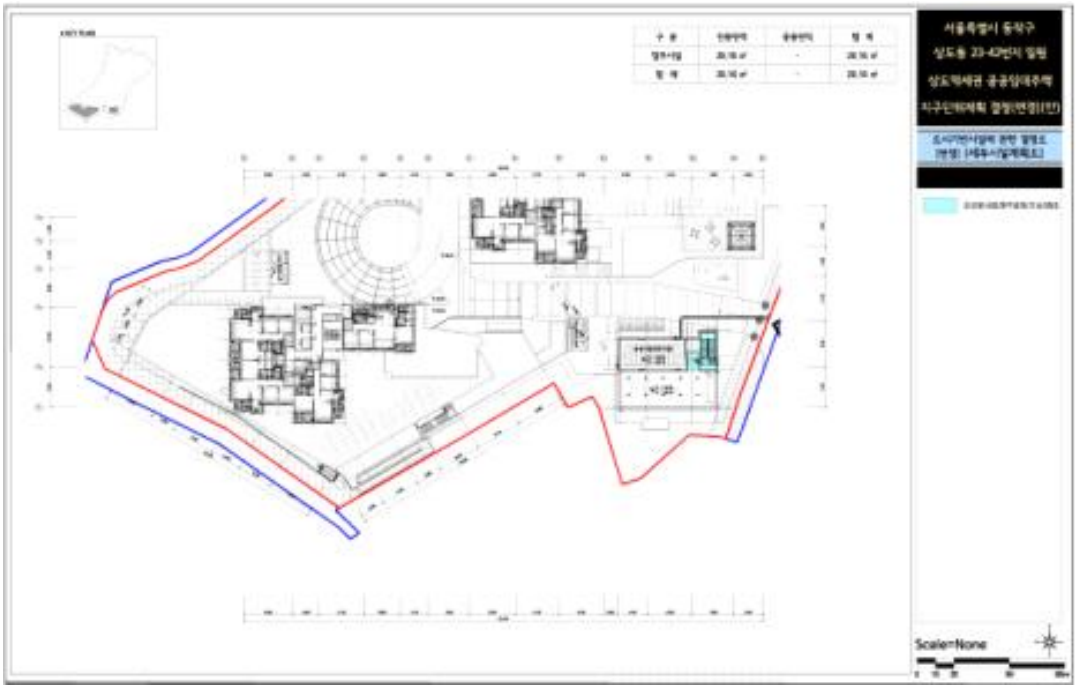

■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변경)도(세부시설계획-지상3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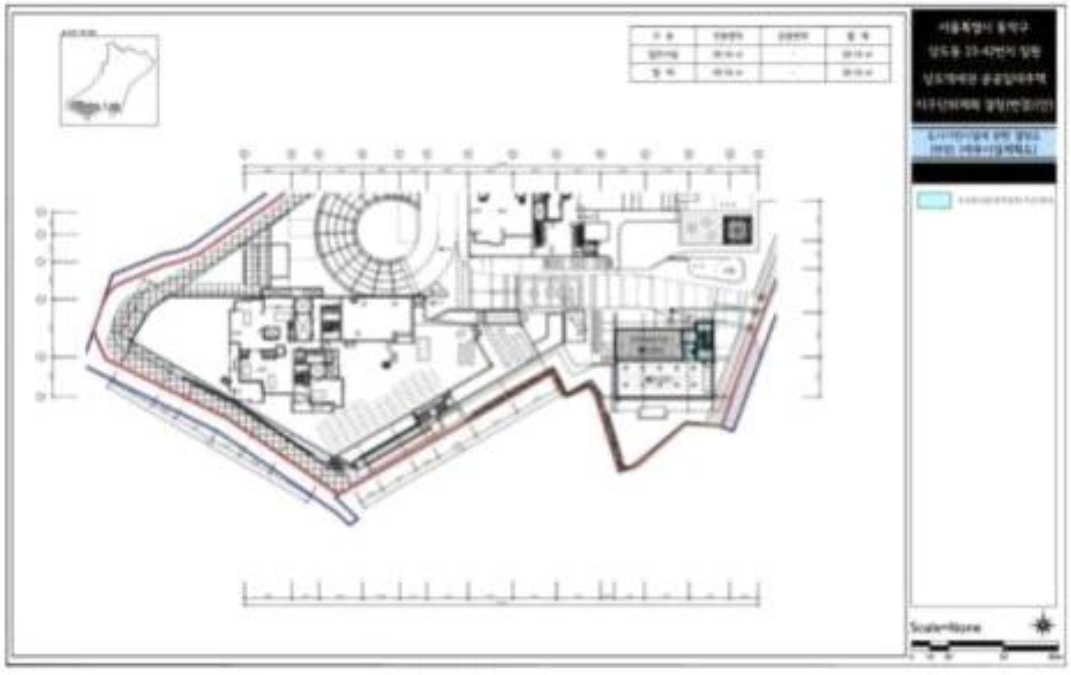

◈ 동작구고시 제2025-157호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23-42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에 대하여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하며,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13일
동 작 구 청 장

1. 사업의 명칭 : 동작하이팰리스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립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2. 사업주체(변경없음)
 가. 성명 : 동작하이팰리스 지역주택조합 조합장 윤명석
 나. 주소 : 서울시 동작구 상도로 315, 상정빌딩 4층(상도1동 261)
 ※ 공동사업주체 : 현대건설(주) 윤영준(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3. 사업시행자의 위치 · 면적 및 규모
 가. 위치 :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23-42번지 일원
 나. 면적 및 규모

구분	용도	규 모			대지면적 (㎡)	건축 연면적 (㎡)	건폐율 (%)	용적률 (%)	조경면적 (㎡)	사업비 (천원)	사업기간 (사용검사 예정일)
		층수 (지상/지하)	동	세대수							
기정	아파트	35/6	4	608	13,851.80	90,394.18	28.06	398.25	4,544.11	541,343,887	2026.10
변경						90,426.08		398.32			

4. 사업시행기간 : 2020.12. ~ 2026.11.

5. 주택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되는 사항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의 결정
 ※ 기타 의제 사항 표기 생략

6. 관계도서 : 생략[동작구청 도시정비2과(☎02-820-1999)에 비치함]

▣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Ⅰ.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 변경없음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

가.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 : 변경없음

나.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1) 교통시설 : 변경없음

2) 공공·문화체육시설

가) 공공청사

■ 입체적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시설명	위치	구분		기정	변경	변경후	최초결정일	비고
변경	①	공공청사	상도동 23-42번지 일원	면적(㎡)		1,279.47	감)0.02	1,279.45	동작구고시 제2020-130호	-
				연면적	계	2,239.22	감)0.58	2,238.64		
					지상3층	29.16	-	29.16		
					지상2층	218.94	-	218.94		
					지상1층	1,222.28	감)0.25	1,222.53		
					지하1층	607.77	감)1.85	605.92		
					지하2층	73.17	증)0.54	73.71		
					지하3층	87.90	증)0.47	88.37		
				높이		지하3~1층 지상1~3층	-	지하3~1층 지상1~3층		

주) 입체적 결정하는 공공청사 면적은 수평투영 면적이며, 공공청사 연면적은 전용·공용·부대시설을 합한 면적이고 향후 건축계획에 따라 기반시설 순부담률 기준 범위에서 조정될 수 있음

주) 공공청사 제공위치, 성능수준, 설비, 세부용도 등은 관할 관리청과 협의하여 사업계획승인 시 확정하여 준공 시 기부채납

■ 입체적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사유서

구분	위치	면적(㎡)	변경사유
변경	상도동 23-42번지 일원	1,279.45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변경에 따른 변경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

가.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 : 변경없음

나.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 변경없음

다. 비주거시설에 관한 계획(변경)

■ 기정

도면 표시	운영기준	계획내용
①	◦ 주택과 주택외의 시설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여 지상1층과 2층은 비주거로 설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이 경우 지상층 주택연면적 합계의 비율이 90%미만으로 지상층에 건축하고 주택외의 시설은 지상층에 다음기준에 따라 건축을 권장한다. ◦ 지상층 연면적 10%이상의 비주거시설의 설치를 권장한다. ◦ 자치구청장이 입지여건을 고려하여 요청하는 경우 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입지여건을 고려 지하층에 설치 가능하다. 단, 지상층 비주거시설이 입지하는 건물의 지상1층과 2층에 비주거 설치를 권장한다.	◦ 지상층 연면적 : 55,164.90㎡ ◦ 법정 비주거시설 면적 : 5,516.49㎡이상 ◦ 비주거시설 확보면적 : 7,214.66㎡ - 지상층 비주거시설 : 1,470.37㎡ - 지하층 비주거시설 : 5,744.29㎡ ∴5,516.49㎡(10.0%) < 7,214.66㎡(13.56%)

주) 계획내용은 사업계획승인 기준이며, 향후 건축계획 등이 변경될 경우에는 운영기준 내에서 변경될 수 있음

■ 변경

도면 표시	운영기준	계획내용
①	◦ 주택과 주택외의 시설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여 지상1층과 2층은 비주거로 설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이 경우 지상층 주택연면적 합계의 비율이 90%미만으로 지상층에 건축하고 주택외의 시설은 지상층에 다음기준에 따라 건축을 권장한다. ◦ 지상층 연면적 10%이상의 비주거시설의 설치를 권장한다. ◦ 자치구청장이 입지여건을 고려하여 요청하는 경우 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입지여건을 고려 지하층에 설치 가능하다. 단, 지상층 비주거시설이 입지하는 건물의 지상1층과 2층에 비주거 설치를 권장한다.	◦ 지상층 연면적 : 55,174.45㎡ ◦ 법정 비주거시설 면적 : 5,517.46㎡이상 ◦ 비주거시설 확보면적 : 7,252.17㎡ - 지상층 비주거시설 : 1,470.63㎡ - 지하층 비주거시설 : 5,781.54㎡ ∴5,516.46㎡(10.0%) < 7,251.17㎡(13.62%)

주) 계획내용은 사업계획승인 기준이며, 향후 건축계획 등이 변경될 경우에는 운영기준 내에서 변경될 수 있음

라. 공공임대주택 건립관련 계획 : 변경없음

도면표시	운영기준	계획내용
①	◦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공공임대주택은 전용 60㎡ 이하 주택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하는 의무 용적률을 임대주택으로 공급되는 세대수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비율로 공급하여야 한다. 전용면적 45㎡ 이하 : 60%~80% 전용면적 45㎡ 초과 60㎡ 이하 : 20%~40%	◦ 전용면적 45㎡ 이하 - 72.5%(131세대) ◦ 전용면적 45㎡ 초과 60㎡ 이하 - 27.5%(51세대)

주) 계획내용은 사업계획승인 기준이며, 향후 건축계획 등이 변경될 경우에는 운영기준 내에서 변경될 수 있음

마. 허용용적률에 관한 계획

■ 기정

구분		운영기준	계획내용	비고
필수항목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건축법 제8조에 의한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 각 세대는 인접한 세대와 수직 또는 수평방향으로 통합하거나 분할 할 수 있을 것 - 구조체에서 건축설비, 내부 마감재료 및 외부 마감재료를 분리할 수 있을 것 - 개별 세대 안에서 구획된 실의 크기, 개수 또는 위치 등을 변경할 수 있을 것	철근콘크리트 라멘조(무량판구조) 리모델링이 가능한 비내력벽체 부분설치	건축위원회 결정사항
	커뮤니티 지원시설	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 주택수가 300세대 이상인 경우 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 지상층 공동주택 연면적의 3%(최소 450㎡)이상	◦ 지상층 공동주택 연면적 : 53,694.53㎡ ◦ 법정 커뮤니티면적 : 1,610.83㎡ 이상 ◦ 커뮤니티 확보면적 : 1,619.07㎡ ∴1,610.84㎡(3.0%)<1,619.07㎡(3.0%)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시 이행
	에너지 효율 건축물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 의한 에너지 성능지표 검토서의 평점합계가 86점 이상이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건물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기준」에 의한 "에너지효율 2등급" 이상 인증	에너지효율 1등급 이상 인증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시 이행

구분		운영기준	계획내용	비고
	친환경 건축물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및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인센티브를 받는 환경영향평가 대상 건축·주택사업은 최우수 등급, 기타 건축·주택사업은 우수등급 이상의 친환경 예비인증	우수 등급 이상 인증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시 이행
선택항목	신재생에너지 사용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에 따라 공동주택은 표준건축공사비의 1% 이상을 일반건축물은 3%이상을 설치	표준건축공사비의 1%이상 설치	1개 항목 선택 적용
	공공기여 방안	공공기여방안을 지구단위계획 및 건축설계에 반영한 경우로서 위원회(또는 건축위원회)에서 공공에 기여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역사문화 보전계획	사업대상지가 문화재보호법상 지정 및 등록문화재 또는 역사문화 보전이 필요한 지구 등에 포함된 경우 보전 계획을 준수하여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건축계획에 반영한 경우	-	

주) 계획내용은 사업계획승인 기준이며, 향후 건축계획 등이 변경될 경우에는 운영기준 내에서 변경될 수 있음

■ 변경

구분		운영기준	계획내용	비고
필수항목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건축법 제8조에 의한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 각 세대는 인접한 세대와 수직 또는 수평방향으로 통합하거나 분할 할 수 있을 것 - 구조체에서 건축설비, 내부 마감재료 및 외부 마감재료를 분리할 수 있을 것 - 개별 세대 안에서 구획된 실의 크기, 개수 또는 위치 등을 변경할 수 있을 것	철근콘크리트 라멘조(무량판구조) 리모델링이 가능한 비내력벽체 부분설치	건축위원회 결정사항
	커뮤니티 지원시설	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 주택수가 300세대 이상인 경우 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 지상층 공동주택 연면적의 3%(최소 450㎡)이상	지상층 공동주택 연면적 : 53,703.83㎡ ◦법정 커뮤니티면적 : 1,611.12㎡ 이상 ◦커뮤니티 확보면적 : 1,619.07㎡ ∴1,611.12㎡(3.0%)<1,619.07㎡(3.0%)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시 이행

구분		운영기준	계획내용	비고
	에너지 효율 건축물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 의한 에너지 성능지표 검토서의 평점합계가 86점 이상이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건물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기준」에 의한 "에너지효율 2등급" 이상 인증	에너지효율 1등급 이상 인증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시 이행
	친환경 건축물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및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인센티브를 받는 환경영향평가 대상 건축·주택사업은 최우수 등급, 기타 건축·주택사업은 우수등급 이상의 친환경 예비인증	우수 등급 이상 인증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시 이행
선택항목	신재생 에너지 사용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에 따라 공동주택은 표준건축공사비의 1% 이상을 일반건축물은 3%이상을 설치	표준건축공사비의 1%이상 설치	1개 항목 선택 적용
	공공 기여 방안	공공기여방안을 지구단위계획 및 건축설계에 반영한 경우로서 위원회(또는 건축위원회)에서 공공에 기여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역사 문화 보전 계획	사업대상지가 문화재보호법상 지정 및 등록문화재 또는 역사문화 보전이 필요한 지구 등에 포함된 경우 보전 계획을 준수하여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건축계획에 반영한 경우	-	

주) 계획내용은 사업계획승인 기준이며, 향후 건축계획 등이 변경될 경우에는 운영기준 내에서 변경될 수 있음

바. 공공시설 부담계획(변경)

■ 기정

<table>
<tr><th colspan="2">구분</th><th>합계</th><th>제2종일반
주거지역(7층)</th><th>제3종일반
주거지역</th><th>비고</th></tr>
<tr><td colspan="2">면적</td><td>14,477.0㎡</td><td>12,503.1㎡</td><td>1,973.9㎡</td><td>국공유지
131㎡ 제외</td></tr>
<tr><td colspan="2">공공시설부담율</td><td>-</td><td>25%</td><td>15%</td><td></td></tr>
<tr><td colspan="2">공공시설의무면적</td><td>3,421.9㎡</td><td>3,125.8㎡</td><td>296.1㎡</td><td></td></tr>
<tr><td rowspan="3">공공시설
확보면적</td><td>도로</td><td>625.20㎡</td><td>539.20㎡</td><td>86.00㎡</td><td rowspan="3">12.78%</td></tr>
<tr><td>공공청사</td><td>1,224.63㎡</td><td>306.89㎡</td><td>917.74㎡</td></tr>
<tr><td>소계</td><td>1,849.83㎡</td><td>846.09㎡</td><td>1,003.74㎡</td></tr>
</table>

<table>
<tr><th rowspan="4">세대수
및 면적</th><th>구분</th><th>합계</th><th>60㎡ 이하</th><th>60㎡~85㎡</th><th>대지면적(㎡)</th></tr>
<tr><td>합계(세대)</td><td>608
(100.0%)</td><td>441
(72.5%)</td><td>167
(27.5%)</td><td>12,253.13
(100.00%)</td></tr>
<tr><td>분양(세대)</td><td>426
(100.0%)</td><td>259
(60.8%)</td><td>167
(39.2%)</td><td>9,409.42
(76.79%)</td></tr>
<tr><td>공공임대주택
(세대)</td><td>182
(100.0%)</td><td>182
(100.0%)</td><td>-</td><td>2,843.71
(23.21%)</td></tr>
</table>

<table>
<tr><td rowspan="2">공공시설
부담률 산정</td><td>◦ 공공시설 부담률을 산정함에 있어 임대사업자에게 무상으로 양여하는 공공임대주택 부속토지 면적의 1/2을 부담률로 갈음할 수 있음</td><td rowspan="2">전체
기부채납 면적
: 1,849.83㎡
(순부담율
: 12.78%)
+
2,843.71㎡
(공공임대주택
: 19.64%)
= 4,693.54㎡
(계획
: 32.42%)</td></tr>
<tr><td>◦ 공공시설 부담률 산정
- 순부담 확보면적 : 공공시설 의무면적의 1/2 이상
⇒ 3,421.9㎡의 ½
= 1,710.9㎡(11.82%) ≤ 1,849.83㎡(12.78%)
- 공공임대주택 확보면적 : 공공시설 부담율의 1/2 갈음
⇒ 확보면적 : 2,843.71㎡(19.64%) 확보

◦ 본 사업대상지는 공공시설 의무면적의 1/2이상으로 도로(625.20㎡), 공공청사 건축물기부채납(1,224.63㎡) 등의 순부담 면적(1,849.83㎡)을 설치하였으며,
◦ 공공시설 의무면적의 1/2은 무상양여한 공공임대주택의 부속토지(2,843.71㎡)를 확보함으로서 공공시설 의무면적 이상으로 계획하였음</td></tr>
</table>

■ 변경

<table>
<tr><th colspan="2">구분</th><th>합계</th><th>제2종일반
주거지역(7층)</th><th>제3종일반
주거지역</th><th>비고</th></tr>
<tr><td colspan="2">면적</td><td>14,477.0㎡</td><td>12,503.1㎡</td><td>1,973.9㎡</td><td>국공유지
131㎡ 제외</td></tr>
<tr><td colspan="2">공공시설부담율</td><td>-</td><td>25%</td><td>15%</td><td></td></tr>
<tr><td colspan="2">공공시설의무면적</td><td>3,421.9㎡</td><td>3,125.8㎡</td><td>296.1㎡</td><td></td></tr>
<tr><td rowspan="3">공공시설
확보면적</td><td>도로</td><td>625.20㎡</td><td>539.20㎡</td><td>86.00㎡</td><td rowspan="3">12.80%</td></tr>
<tr><td>공공청사</td><td>1,227.30㎡</td><td>307.56㎡</td><td>919.74㎡</td></tr>
<tr><td>소계</td><td>1,852.50㎡</td><td>846.76㎡</td><td>1,005.74㎡</td></tr>
<tr><td colspan="2">세대수
및 면적</td><td colspan="4"><table>
<tr><th>구분</th><th>합계</th><th>60㎡ 이하</th><th>60㎡~85㎡</th><th>대지면적(㎡)</th></tr>
<tr><td>합계(세대)</td><td>608
(100.0%)</td><td>441
(72.5%)</td><td>167
(27.5%)</td><td>12,260.80
(100.00%)</td></tr>
<tr><td>분양(세대)</td><td>426
(100.0%)</td><td>259
(60.8%)</td><td>167
(39.2%)</td><td>9,415.78
(76.79%)</td></tr>
<tr><td>공공임대주택
(세대)</td><td>182
(100.0%)</td><td>182
(100.0%)</td><td>-</td><td>2,845.63
(23.21%)</td></tr>
</table></td></tr>
<tr><td colspan="2">공공시설
부담률 산정</td><td colspan="3">◦ 공공시설 부담률을 산정함에 있어 임대사업자에게 무상으로 양여하는 공공임대주택 부속토지 면적의 1/2을 부담률로 갈음할 수 있음

◦ 공공시설 부담률 산정
- 순부담 확보면적 : 공공시설 의무면적의 1/2 이상
⇒ 3,421.9㎡의 ½
= 1,710.9㎡(11.82%) ≤ 1,852.50㎡(12.80%)
- 공공임대주택 확보면적 : 공공시설 부담율의 1/2 갈음
⇒ 확보면적 : 2,845.63㎡(19.66%) 확보

◦ 본 사업대상지는 공공시설 의무면적의 1/2이상으로 도로(625.20㎡), 공공청사 건축물기부채납(1,227.30㎡) 등의 순부담 면적(1,852.50㎡)을 설치하였으며,
◦ 공공시설 의무면적의 1/2은 무상양여한 공공임대주택의 부속토지(2,845.63㎡)를 확보함으로서 공공시설 의무면적 이상으로 계획하였음</td><td>전체
기부채납 면적
: 1,852.50㎡
(순부담율
: 12.80%)
+
2,845.63㎡
(공공임대주택
: 19.66%)
= 4,698.13㎡
(계획
: 32.45%)</td></tr>
</table>

사. 상한용적률 산정(변경)

■ 기정

구분	산출결과	산출내역	비고
공공시설 제공면적	1,849.83㎡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 846.09㎡ ◦ 제3종일반주거지역 : 1,003.74㎡	
가중치	1.019	= 공공시설 제공부지 용적률 / 사업부지 용적률 = 440.85% / 432.72% = 1.019	
α토지	0.072	= 공공시설 제공부지 면적 / 공공시설 제공 후의 대지면적 = 976.34㎡ / 13,500.66㎡ = 0.072	
α건축물	0.065	= 공공시설 제공 면적 / 공공시설 제공 후의 대지면적 = 873.49㎡ / 13,500.66㎡ = 0.065	
기준용적률	206.81%	= [(2종일반주거(7층)×200%)+(3종일반주거×250%)] / 구역면적 = [(11,963.9㎡×200%)+(1,887.9㎡×250%)]/13,851.8㎡=206.815%	
허용용적률Ⅱ	400.0%	= [(2종일반주거(7층)×430%)+(3종일반주거×450%)] / 구역면적 = [(11,963.9㎡×430%)+(1,887.9㎡×450%)]/13,851.8㎡=432.72% ⇒ 400.0% 이하 적용	
상한용적률	400.0%	= 432.72%×(1+1.3×1.019×0.072+0.7×0.065)=493.77% ⇒ 400% 이하 적용	
설계용적률	398.25%	-	
공공임대 주택용적률	96.20%	= (설계용적률 - 기준용적률) × 1/2 이상 = (398.25% - 206.81%) × 1/2 = 95.71% 이상	

주) 용적률 및 순부담률 산정시 국공유지 131㎡ 제외

■ 변경

구분	산출결과	산출내역	비고
공공시설 제공면적	1,852.50㎡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 846.76㎡ ◦ 제3종일반주거지역 : 1,005.74㎡	
가중치	1.019	= 공공시설 제공부지 용적률 / 사업부지 용적률 = 440.86% / 432.72% = 1.019	
α토지	0.073	= 공공시설 제공부지 면적 / 공공시설 제공 후의 대지면적 = 979.18㎡ / 13,497.82㎡ = 0.073	
α건축물	0.065	= 공공시설 제공 면적 / 공공시설 제공 후의 대지면적 = 873.32㎡ / 13,497.82㎡ = 0.065	
기준용적률	206.81%	= [(2종일반주거(7층)×200%)+(3종일반주거×250%)] / 구역면적 = [(11,963.9㎡×200%)+(1,887.9㎡×250%)]/13,851.8㎡=206.815%	

구분	산출결과	산출내역	비고
허용용적률	400.0%	= [(2종일반주거(7층)×430%)+(3종일반주거×450%)] / 구역면적 = [(11,963.9㎡×430%)+(1,887.9㎡×450%)]/13,851.8㎡=432.72% ⇒ 400.0% 이하 적용	
상한용적률	400.0%	= 432.72%×(1+1.3×1.019×0.073+0.7×0.065)=493.90% ⇒ 400% 이하 적용	
설계용적률	398.32%	-	
공공임대 주택용적률	96.21%	= (설계용적률 - 기준용적률) × 1/2 이상 = (398.32% - 206.81%) × 1/2 = 95.76% 이상	

주) 용적률 및 순부담률 산정시 국공유지 131㎡ 제외

4.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 : 변경없음

가. 대지 내 공지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나. 차량 동선 계획 : 변경없음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도 : 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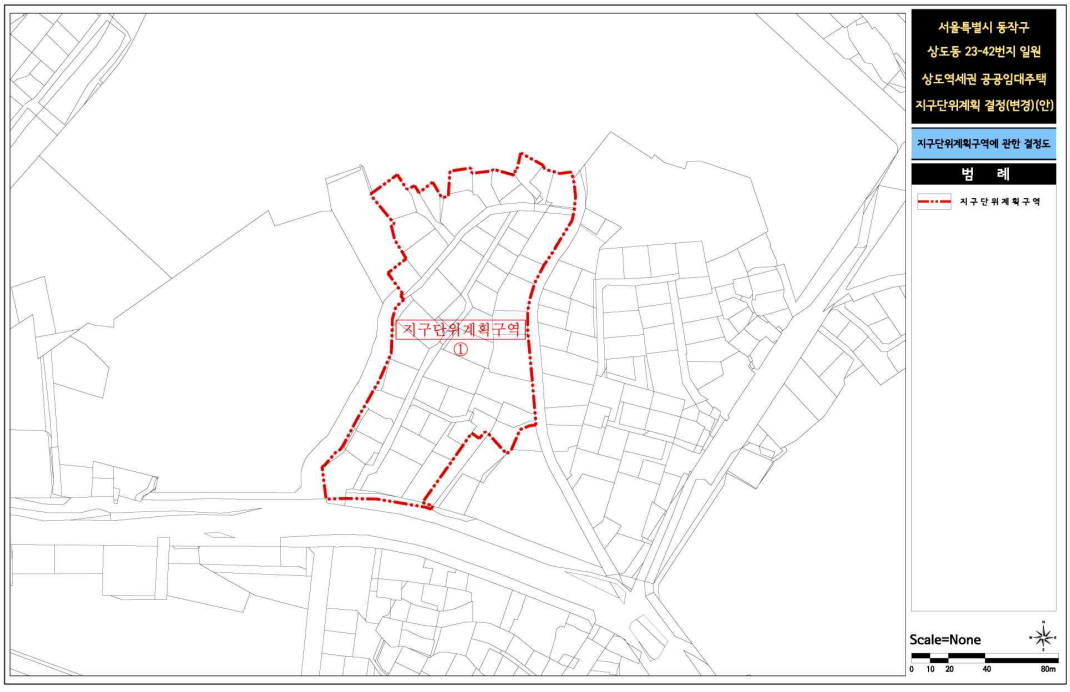

■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도 : 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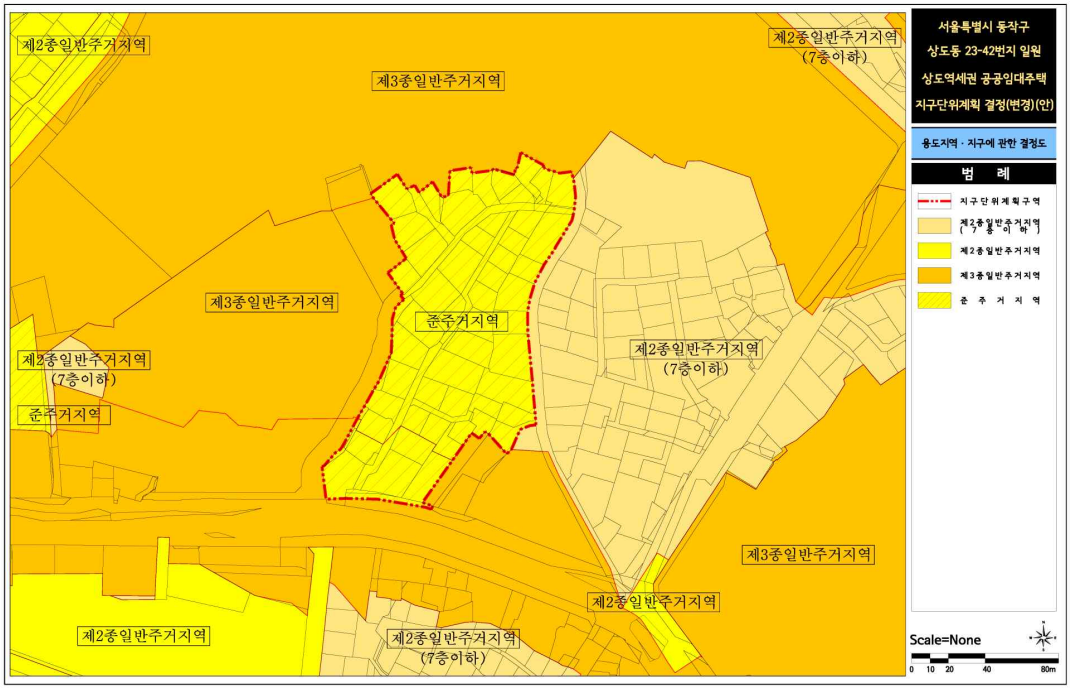

■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도 : 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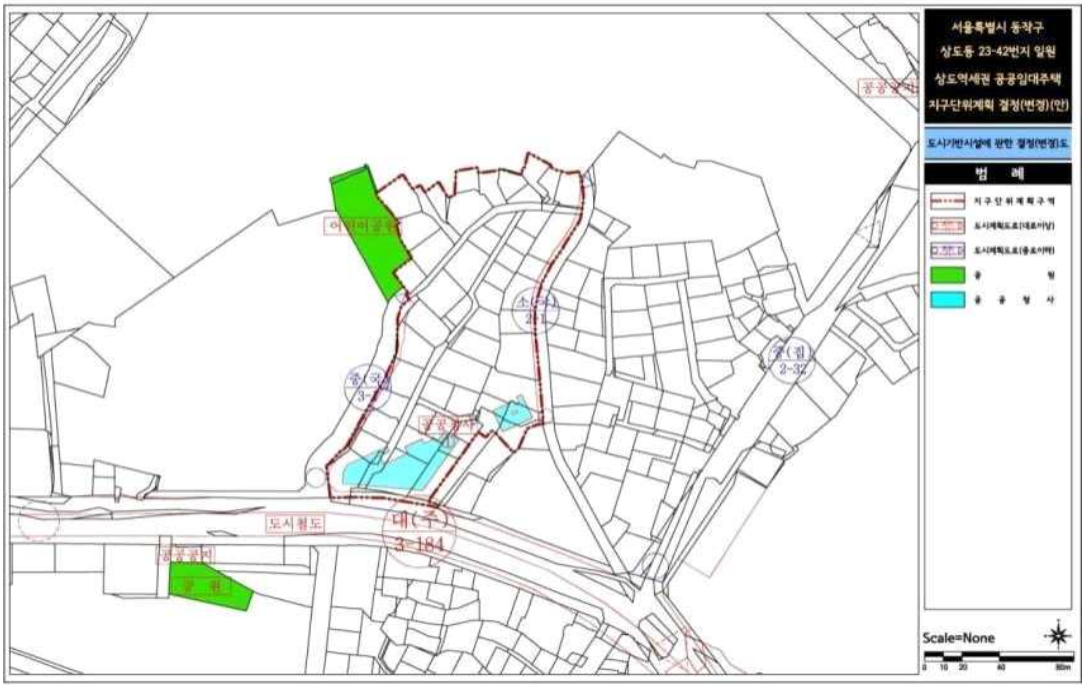

■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결정도 : 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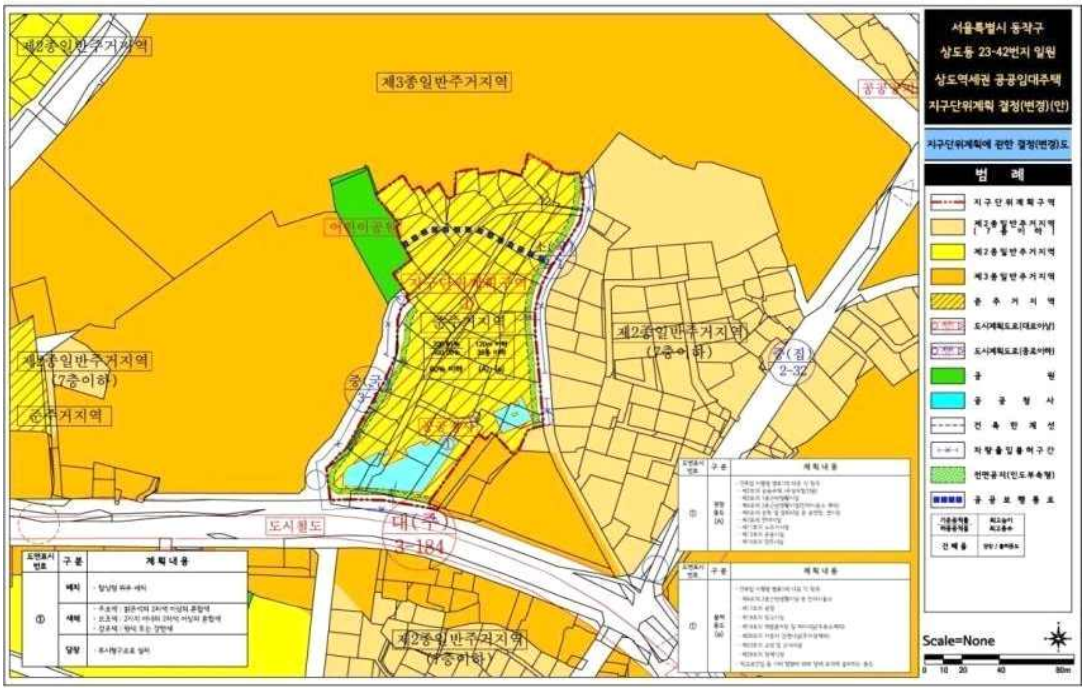

■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기정)도(세부시설계획-지하2층)

■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변경)도(세부시설계획-지하2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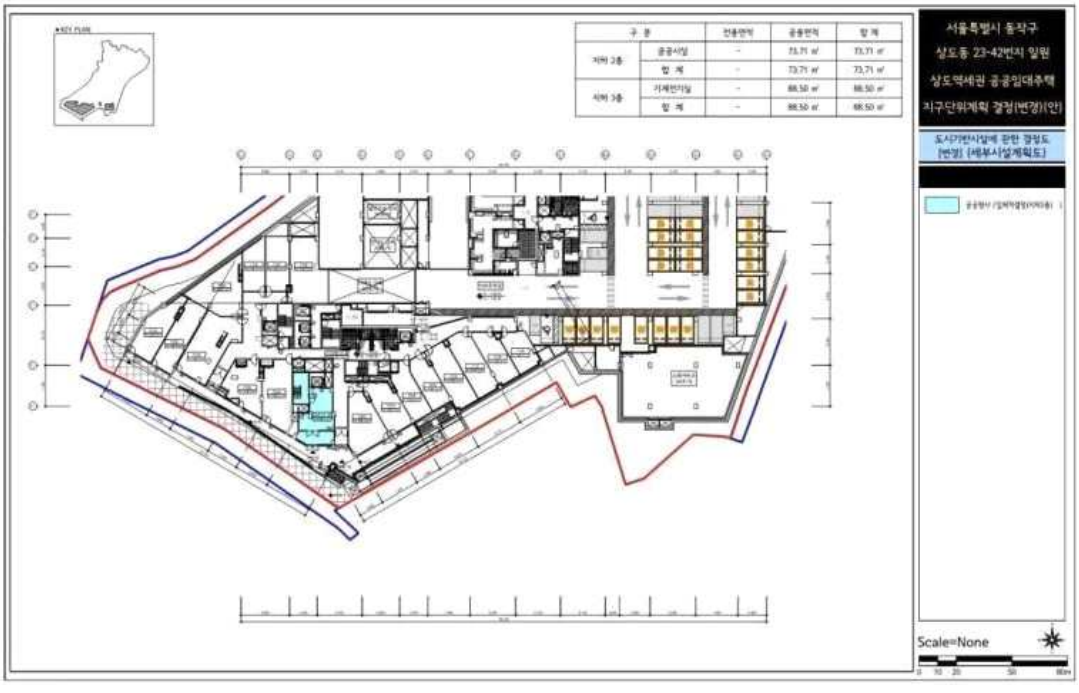

■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기정)도(세부시설계획-지하1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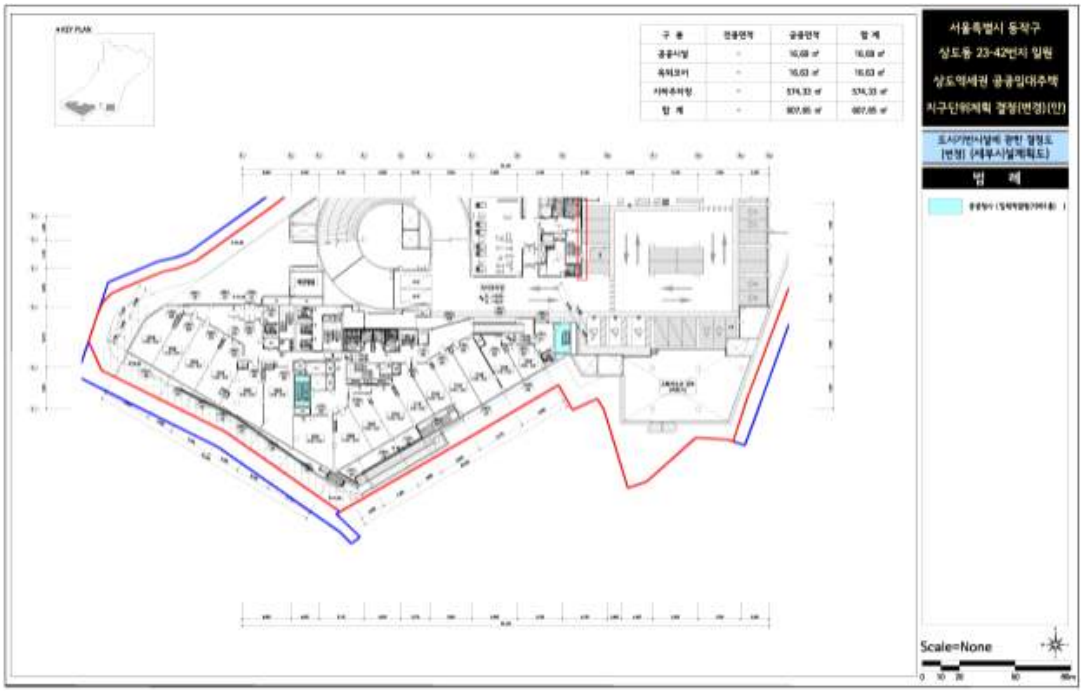

■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변경)도(세부시설계획-지하1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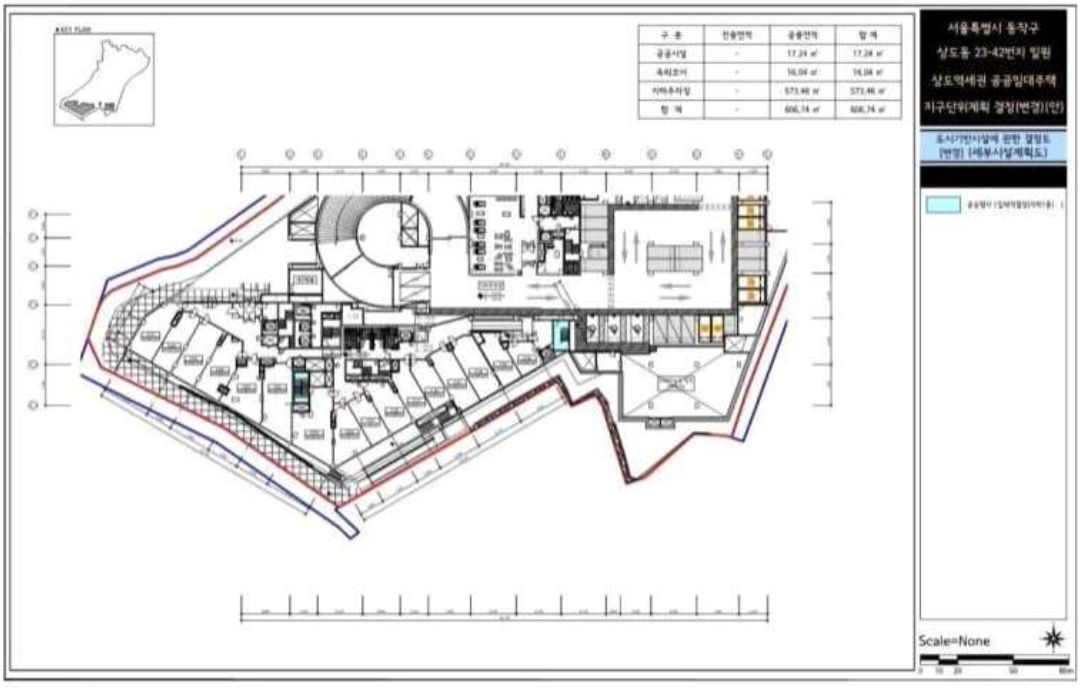

■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기정)도(세부시설계획-지상1층)

■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변경)도(세부시설계획-지상1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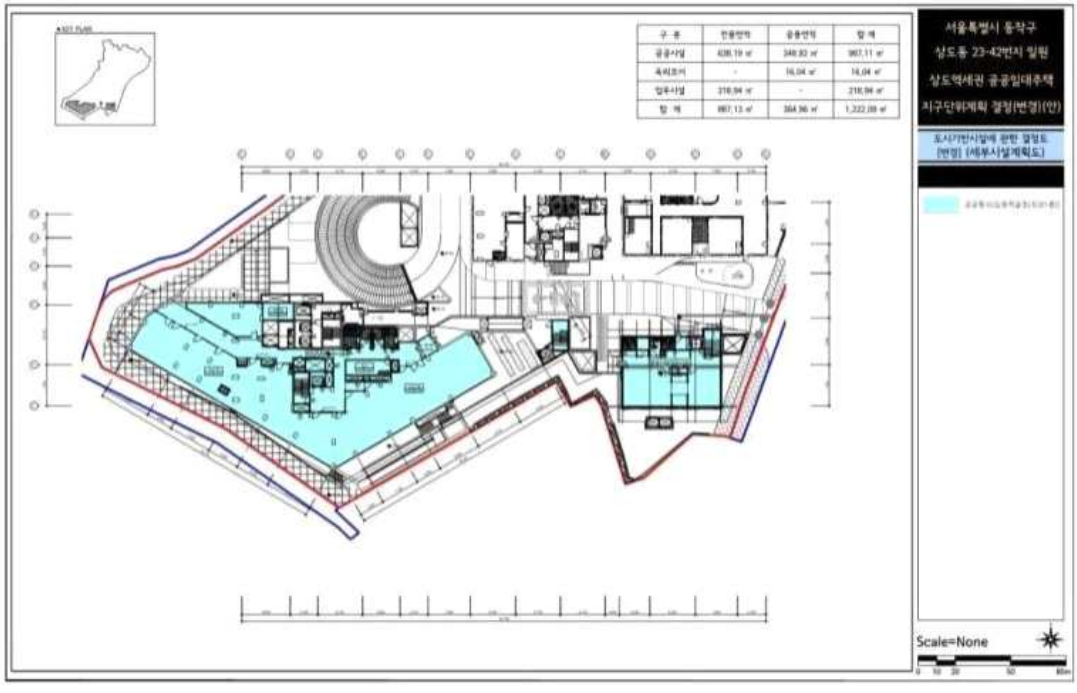

■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기정)도(세부시설계획-지상2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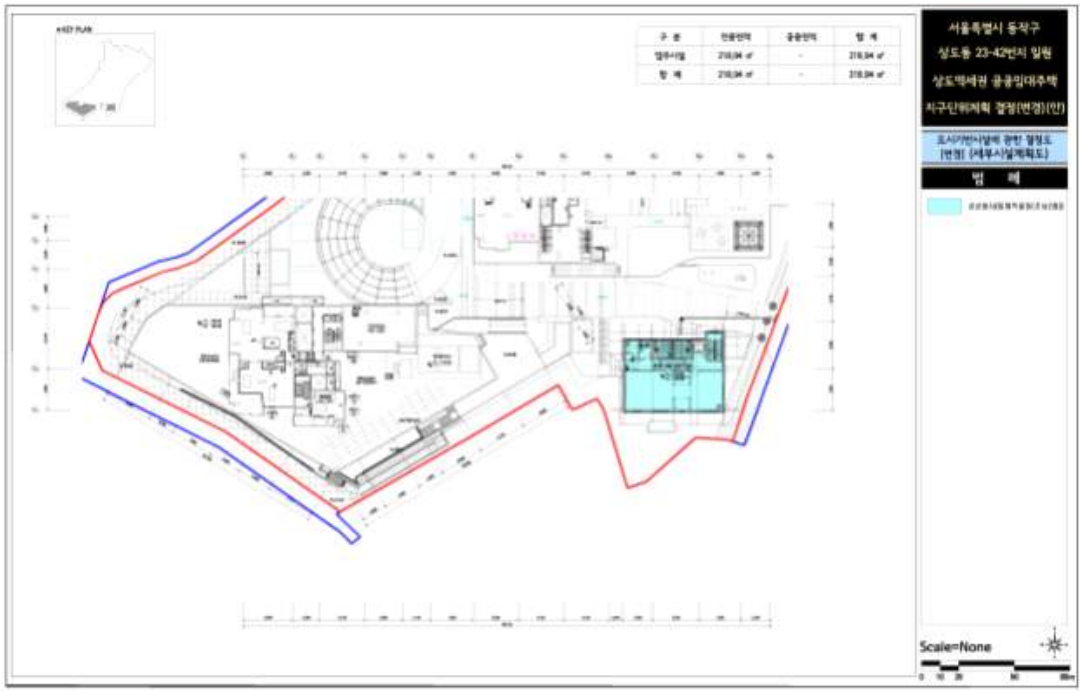

■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변경)도(세부시설계획-지상2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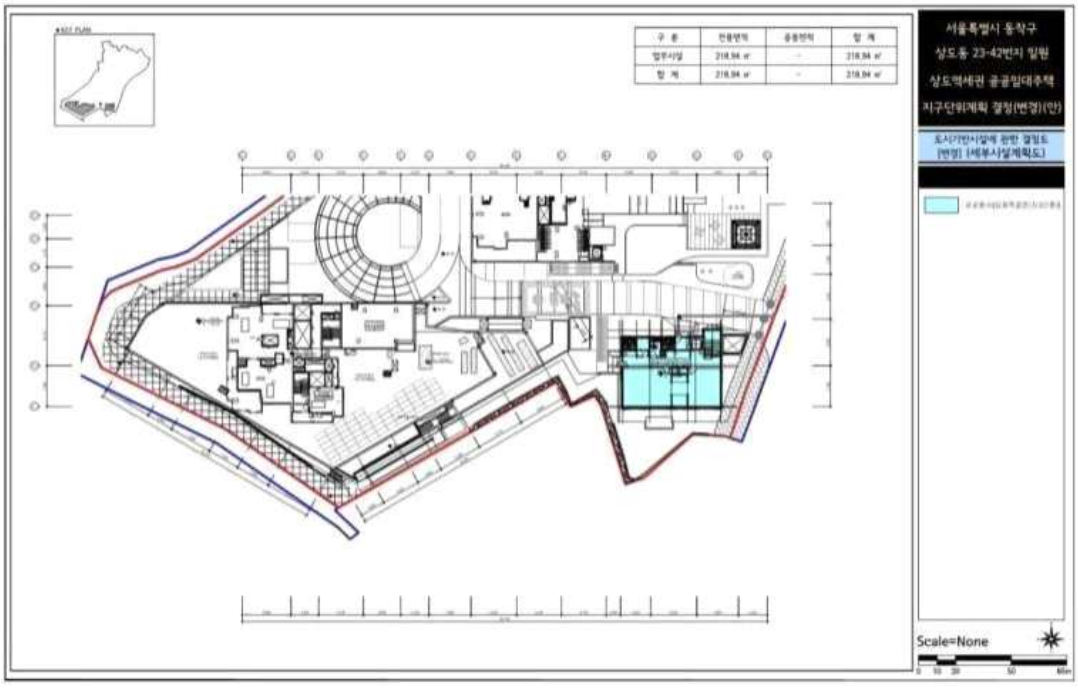

■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기정)도(세부시설계획-지상3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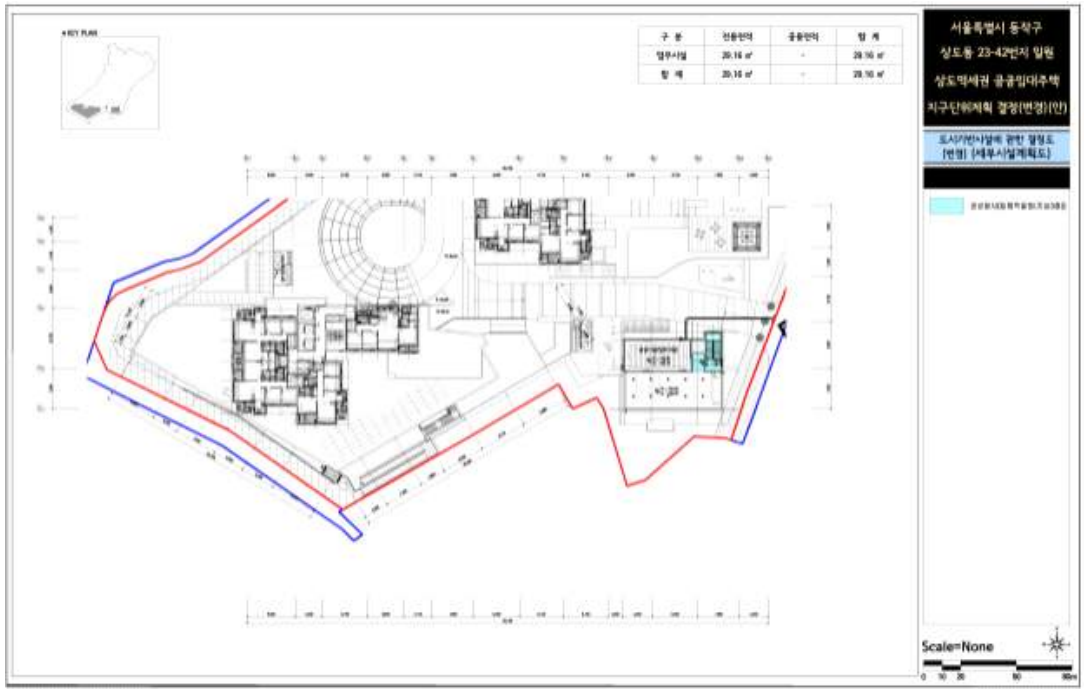

■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변경)도(세부시설계획-지상3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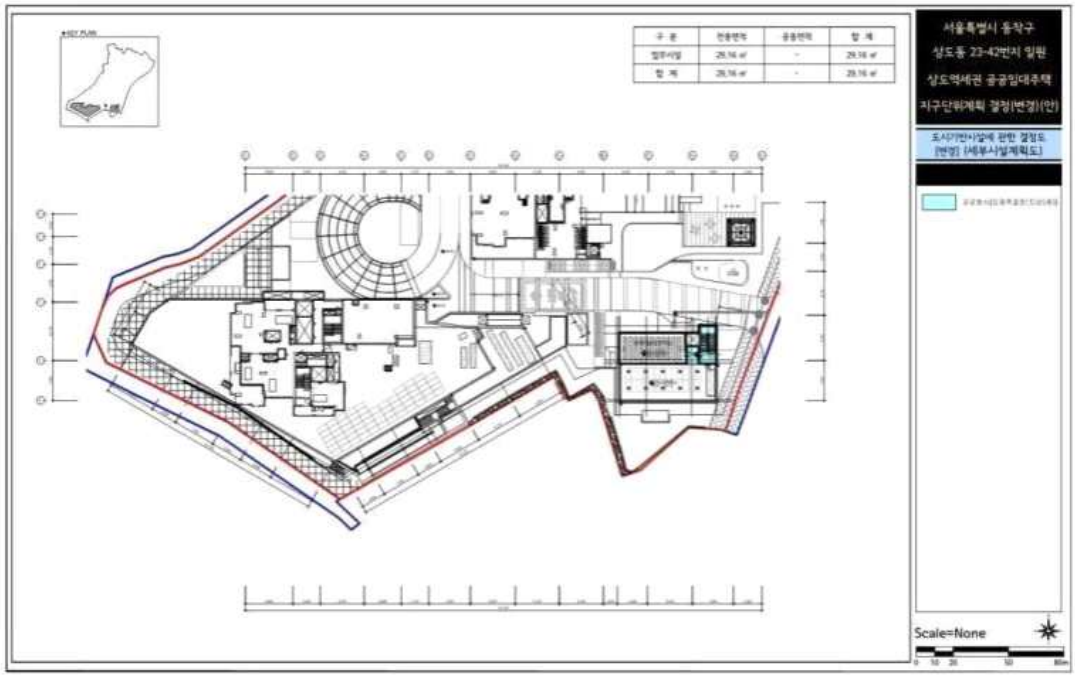

구 공 고

◈ 종로구공고 제2025-1516호

종로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자연경관지구 건폐율 · 높이 완화 결정(변경)(안) 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4-4010호(2024.9.30.)호로 고시된「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일부개정조례 공포에 따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제34조의 변경에 의거, 도시관리계획(부암동 지구단위계획 등 5개 구역)을 결정(변경) 하는 사항에 대하여 제5차 종로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을 이행하고, 그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 및 관련부서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 본 열람공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주민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 기간내에 열람 장소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1월 13일
종 로 구 청 장

□ 북촌 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2. 건폐율에 관한 용도 결정조서 : 변경
1) 건폐율 계획 : 변경
○ 해당 구역별 각 필지의 건폐율은 용도지역 · 지구에 따라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자연경관지구 건폐율 : 30% → 40%(50%)]
○ 건폐율 완화 계획 : 변경(신설)

구 분		완화조건	건폐율 완화 기준	비고
변경	자연 경관지구	•2층 8m 이하로 건축하는 경우	50%로 완화	•다만, 경사지붕으로 조성할 때의 지붕 높이와 층고 1.8미터 이하 다락의 층수는 높이 산정에서 제외한다

○ 건폐율 계획 결정(변경)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	• 건폐율 계획 변경 및 완화계획 신설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의 일부개정 공포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자연경관지구에 한하여 건폐율 결정(변경) 및 완화 적용 함

3. 높이에 관한 용도 결정조서 : 변경 없음(자연경관지구에 따른 높이 제한은 적용하고 있지 않음에 따라 도시계획조례개정 사항 미반영)

□ 경복궁 서측 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2. 건폐율에 관한 용도 결정조서 : 변경
   1) 건폐율 계획 : 변경
   ○ 각 구역에 속한 필지의 건폐율은 용도지역 · 지구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르되, 관계법령에 완화규정이 있을 경우 그에 따른다.
   [자연경관지구 건폐율 : 30% → 40%(50%)]

구 분	건폐율(기정)	건폐율(변경)	비고
물길영향구역-2 일반관리구역-3	30%	40%	자연경관지구

○ 건폐율 완화 계획 : 변경(신설)

구 분	완화조건	건폐율 완화 기준	비고
물길영향구역-2 일반관리구역-3	•2층 8m 이하로 건축하는 경우	50%로 완화	•다만, 경사지붕으로 조성할 때의 지붕 높이와 층고 1.8미터 이하 다락의 층수는 높이 산정에서 제외한다

○ 건폐율 계획 결정(변경)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물길영향구역-2 일반관리구역-3	• 건폐율 계획 변경 및 완화계획 신설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의 일부개정 공포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자연경관지구에 한하여 건폐율 결정(변경) 및 완화 적용 함

3. 높이에 관한 용도 결정조서 : 변경

1) 높이 계획 : 변경

○ 용도지역·지구 또는 문화재 관련 규정 등에 적용되는 높이 기준이 지구단위계획에서 제시된 높이보다 강화된 기준일 경우 이를 우선 적용한다.

구 분	높이(기정)	높이(변경)	비고
일반관리구역	3층이하	4층(16m)이하	자연경관지구
물길영향구역	3층이하	4층(16m)이하	자연경관지구

○ 높이 계획 결정(변경)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물길영향구역-2 일반관리구역-3	•높이 계획 변경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의 일부개정 공포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자연경관지구에 한하여 높이 결정(변경) 함

□ 부암동 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2. 건축물 밀도 결정조서 : 변경

1) 건폐율 계획 : 변경

○ 건폐율 계획 결정(변경)

구 분	건폐율(기정)	건폐율(변경)	비고
인왕구역 C	30%	40%	자연경관지구
백악구역 D	30%	40%	자연경관지구

○ 건폐율 완화 계획 : 변경

구 분			완화조건	건폐율 완화 기준	
				전	후
건폐율 완화	자연경관지구	인왕구역 C	•2층 8m 이하로 건축하는 경우	40% (도시계획조례39조8항2)	50%로 완화 (도시계획조례34조3항2나

구 분			완화조건		건폐율 완화 기준	
		백악 구역 D	•용도계획연계 시	· 주거용도 - 단독주택 건축시 -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건축시 각 6세대 미만	40%로 완화 (도시계획조례 제39조2항2)	50%로 완화 (도시계획조례 제34조3항1가)
			•높이계획 연계 시	· 기타용도 높이8m(2층)이하 건축 시	40%로 완화 (도시계획조례 제39조2항2)	50%로 완화 (도시계획조례 제34조3항1가)

※ 경사지붕으로 조성할 때의 지붕 높이와 층고 1.8미터 이하 다락의 층수는 높이 산정에서 제외한다

○ 건폐율 계획 결정(변경)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인왕구역C 백악구역D	• 건폐율 및 완화계획 결정(변경)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의 일부개정 공포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자연경관지구에 한하여 건폐율 결정(변경) 및 완화 적용 함

3. 높이에 관한 용도 결정조서 : 변경

1) 높이 계획 : 변경

○ 용도지역 · 지구 또는 문화재 관련 규정 등에 적용되는 높이 기준이 지구단위계획에서 제시된 높이보다 강화된 기준일 경우 이를 우선 적용한다.

구 분	높이(변경)	비고
인왕구역 C	4층(16m)이하	자연경관지구
백악구역 D	4층(16m)이하	자연경관지구

○ 높이 계획 결정(변경)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인왕구역C 백악구역D	•높이 계획 변경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의 일부개정 공포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자연경관지구에 한하여 높이 결정(변경) 함

□ 혜화 · 명륜동 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2. 건폐율에 관한 용도 결정조서 : 변경

1) 건폐율 계획 : 변경

○ 건폐율은 용도지역 · 지구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자연경관지구 건폐율 : 30% → 40%(50%)]

구 분	건폐율(기정)	건폐율(변경)	비고
자연경관지구	30%	40%	높이계획과 연계하여 완화 기준 충족 시 완화

○ 건폐율 완화 계획 : 변경

구 분	완화조건	건폐율 완화 기준	비고
자연경관지구	•2층 8m 이하로 건축하는 경우	50%로 완화	•다만, 경사지붕으로 조성할 때의 지붕 높이와 층고 1.8미터 이하 다락의 층수는 높이 산정에서 제외한다

○ 건폐율 계획 결정(변경)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자연 경관지구	• 건폐율 및 완화계획 변경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의 일부개정 공포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자연경관지구에 한하여 건폐율 결정(변경) 및 완화 적용 함

3. 높이에 관한 용도 결정조서 : 변경

1) 높이 계획 : 변경

○ 자연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34조제2항에 따른 4층 이하로서 16미터 이하 규정을 동시에 적용

구 분	높이(기정)	높이(변경)	비고	비고
H-2(명륜2-2,혜화1) 일부 자연경관지구	최고높이 12미터 이하	최고높이 16미터 이하	혜화문 일대 자연경관지구	자연경관지구

○ 높이 계획 결정(변경)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변경내용	변경사유
H-2(명륜2-2, 혜화1) 일부 자연경관지구	•높이 계획 변경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의 일부개정 공포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자연경관지구에 한하여 높이 결정(변경) 함

□ 성균관대 주변 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2. 건폐율에 관한 용도 결정조서 : 변경없음

3. 높이에 관한 용도 결정조서 : 변경없음

▶ 미변경 사유 : 성균관대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자연경관지구에 해당 되는 범위가 도시계획시설(학교로) 제한됨에 따라 건폐율 높이 변경 없음(사업별 별도 반영)

※ 도시계획시설은 사업별 별도 반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 등 별도 정비계획 수립 지역은 개별 정비계획에 따름

■ 기타 사항

○ 궁금한 사항은 종로구 건축과(☎02-2148-28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북촌 지구단위계획 건폐율 결정도 변경(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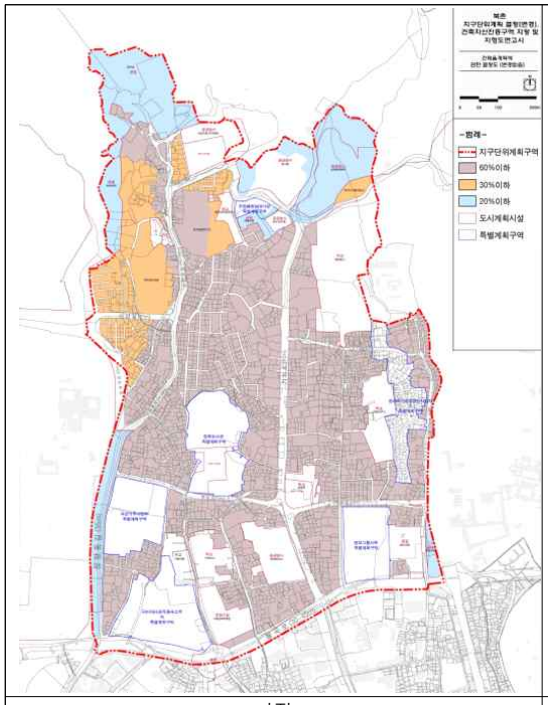

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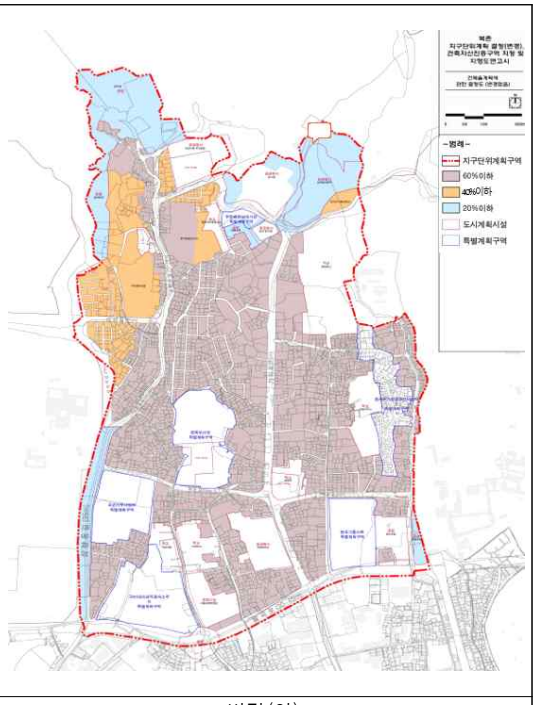

변경(안)

□ 경복궁서측 지구단위계획 건폐율 결정도 변경(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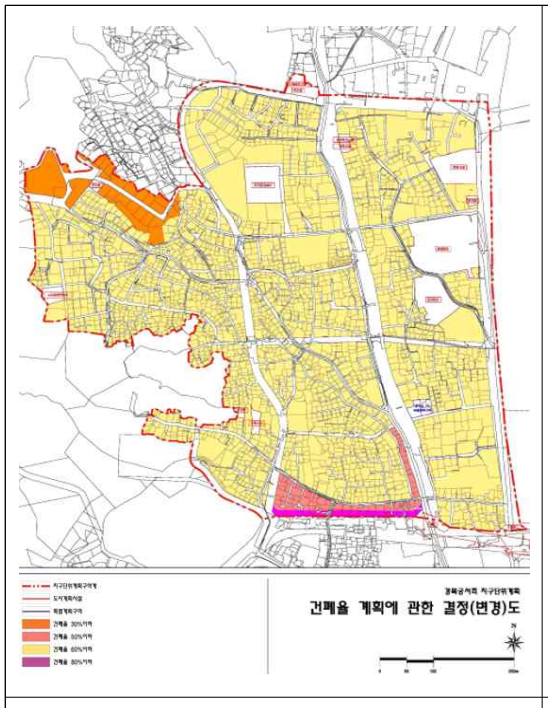

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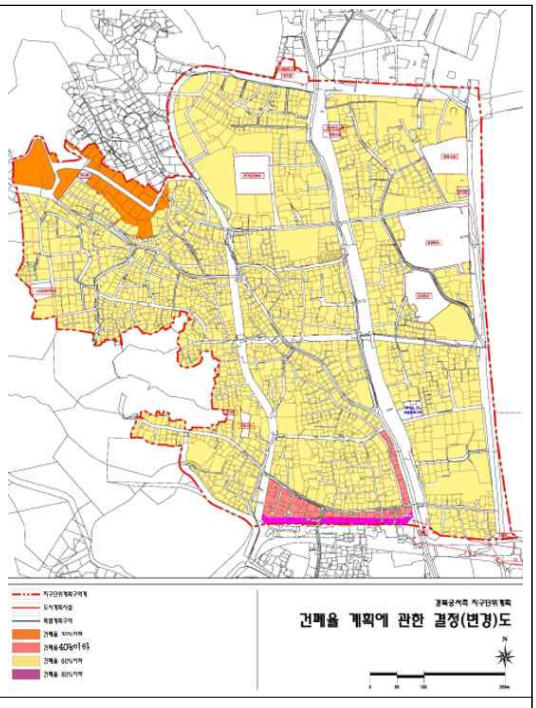

변경(안)

□ 경복궁서측 지구단위계획 높이 결정도 변경(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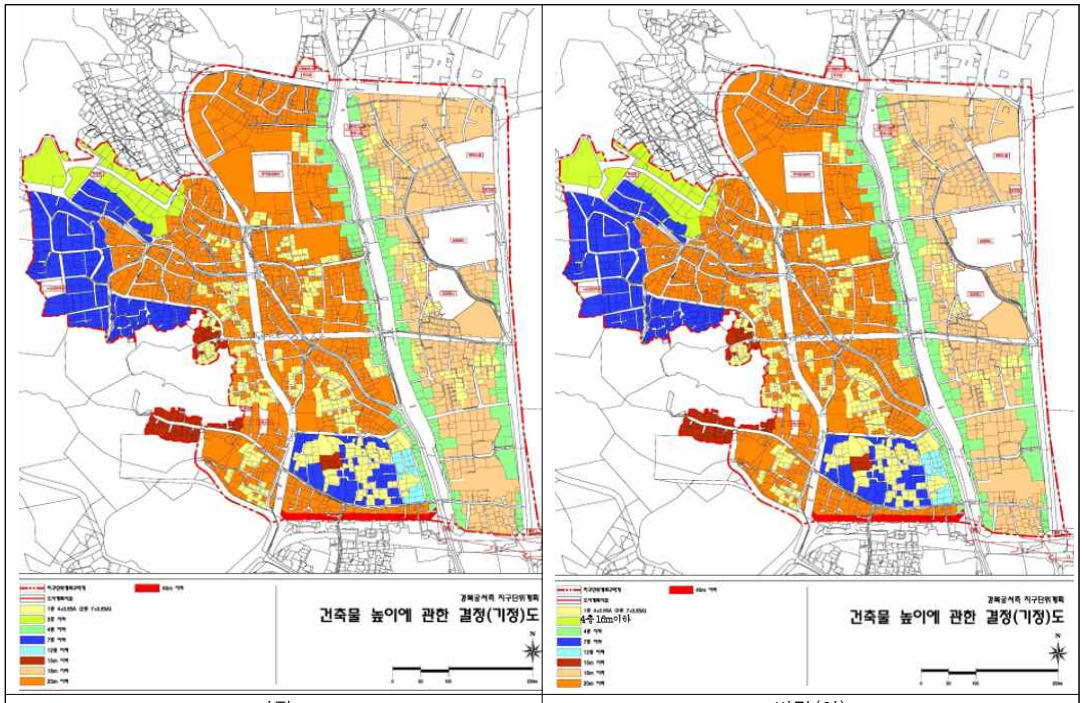

기정	변경(안)

□ 부암동 지구단위계획 건폐율 결정도 변경(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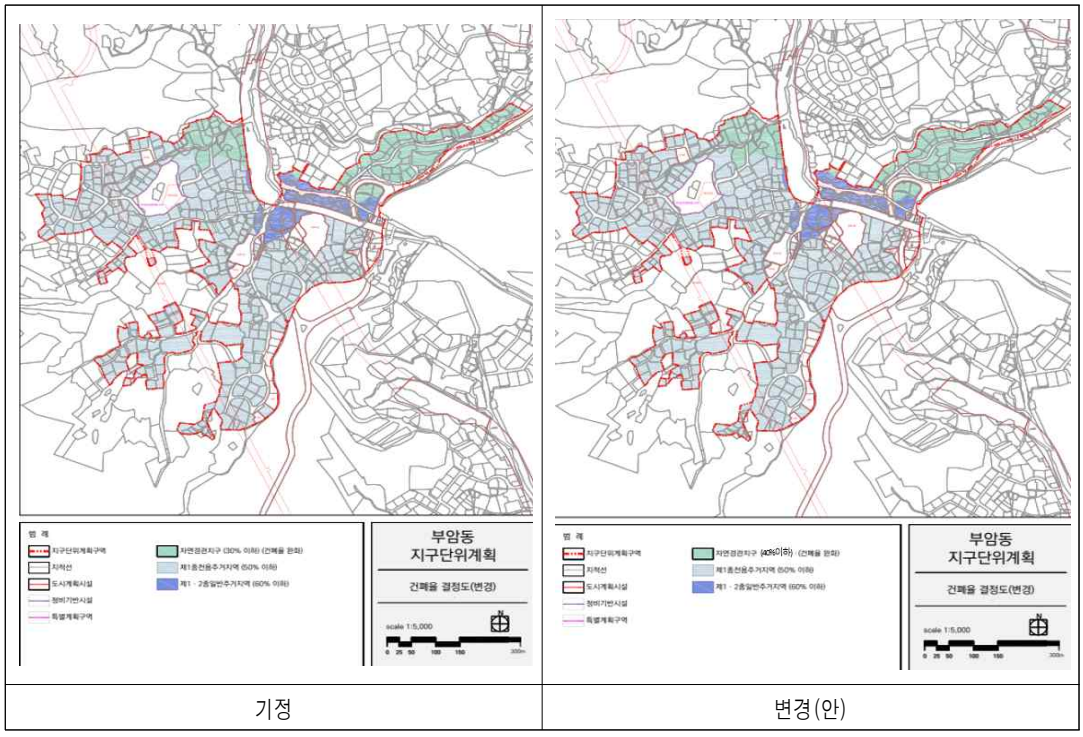

기정	변경(안)

□ 부암동 지구단위계획 높이 결정도 변경(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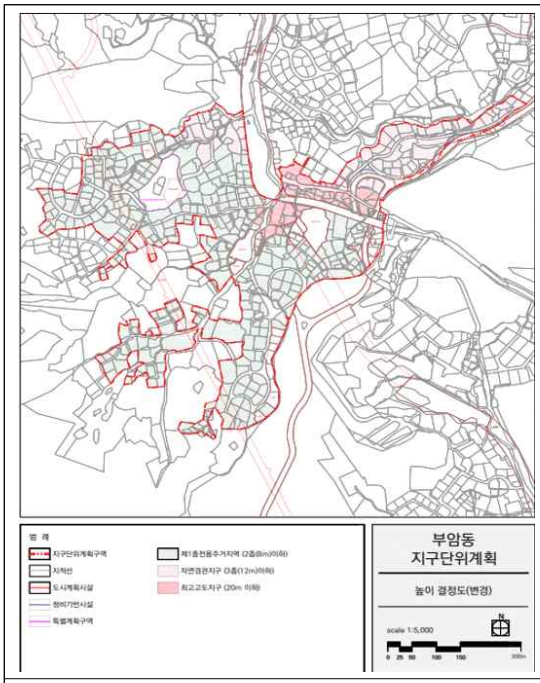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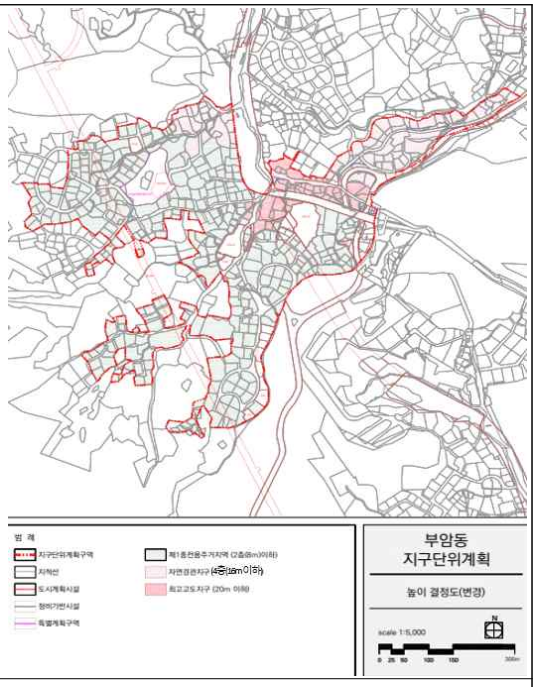

기정	변경(안)

□ 혜화 · 명륜동 지구단위계획 건폐율 결정도 변경(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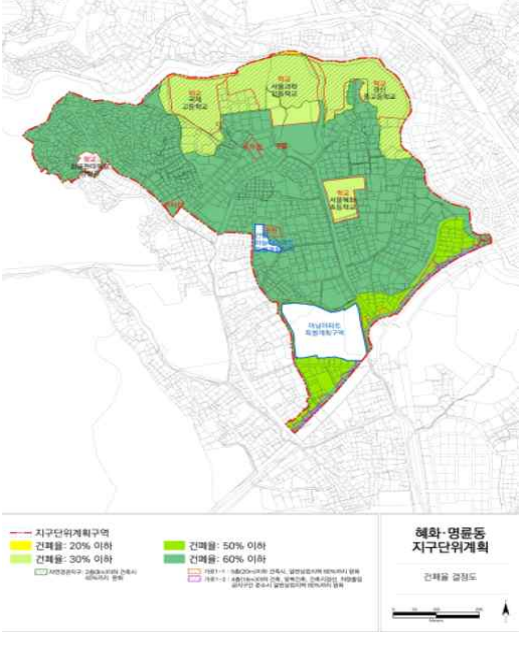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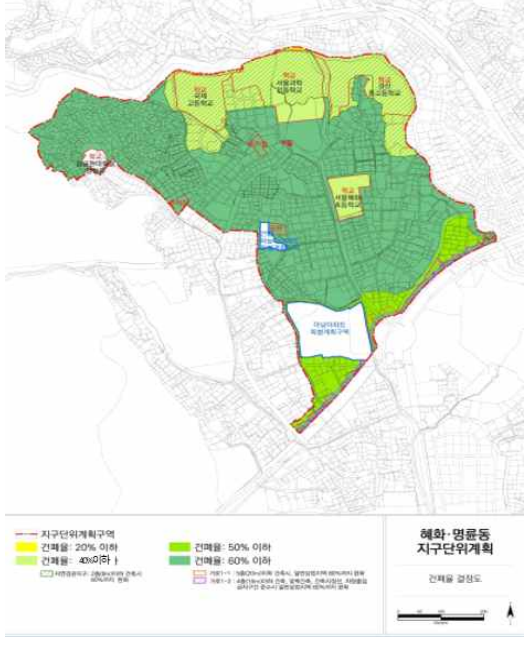

기정	변경(안)

□ 혜화 · 명륜동 지구단위계획 높이 결정도 변경(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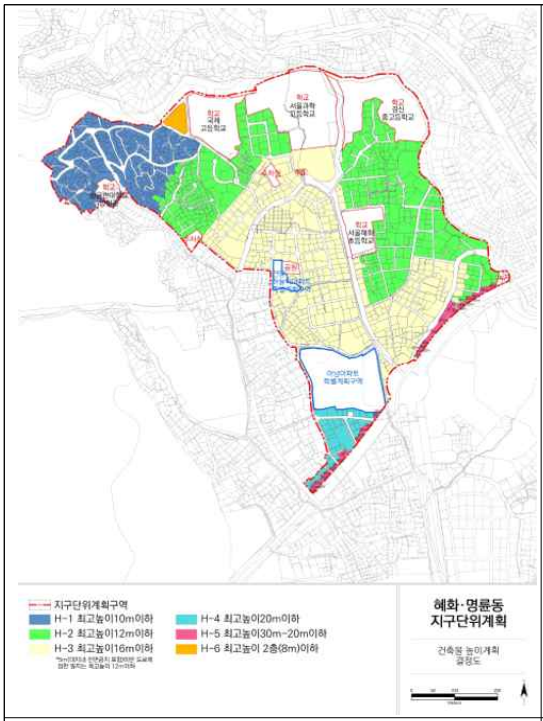

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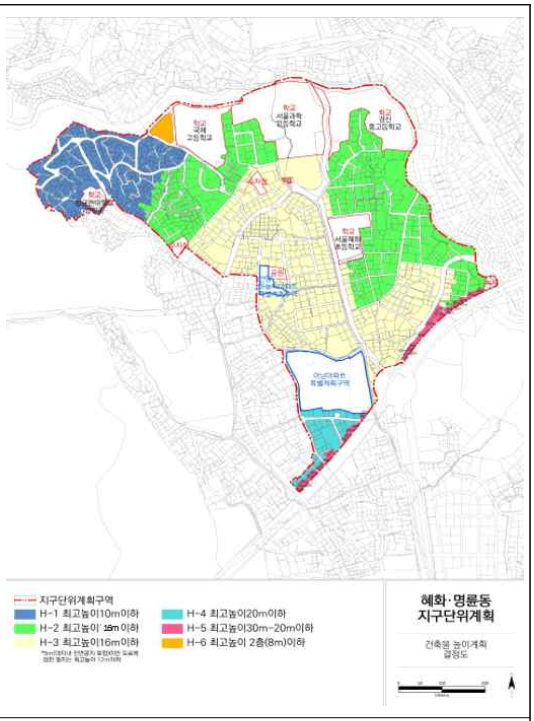

변경(안)

◈ 종로구공고 제2025-1537호

도시계획시설(인왕산근린공원)사업 (부분)완료 공고

1. (1940.03.12.) 도시계획시설(공원) 최초 결정 및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3-367호(2013.01.03.)로 공원조성계획이 결정(변경)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254호(2020.06.29.)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용도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5-404호(2025.07.24.)로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된 인왕산근린공원에 대하여,

2.「서울특별시 종로구 고시 제2020-92호(2020.06.29.)」로 실시계획 인가 및「서울특별시 종로구 고시 제2025-93호(2025.06.27.)로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한 “인왕산근린공원 조성사업”의 (부분) 완료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규정에 따라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3일
종 로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옥인동 47-676 외 7필지
나. 사업의 종류 · 명칭 및 규모 · 면적
  1) 종　　류: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2) 명　　칭: 인왕산근린공원 조성사업
  3) 사업내용: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 및 조성
  4) 사업면적: 8필지 1,421.6㎡
다. 사업기간 : 최초 실시계획인가 고시일로부터 7년(2027.06.28.까지)
라. 공고내용 : 도시공원 보상지 공원조성 (부분)완료에 따른 공사완료공고
마. 공고방법 : 종로구 홈페이지 및 시보게재
바.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사. 관계도서 비치 : 종로구청 도시녹지과(☎02-2148-2832)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 사 업 명: 도시계획시설(인왕산근린공원) 조성사업

연번	소재지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공유지분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옥인동 47-676	대	134.4	134.4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사업 완료
2	옥인동 47-682	대	1.2	1.2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사업 완료
3	청운동 56-39	대	245.6	245.6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4	청운동 56-92	대	168.6	168.6							
5	청운동 56-93	대	433.1	433.1							
6	신교동 2-78	대	247.9	247.9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7	신교동 2-86	대	94.9	94.9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8	신교동 2-99	대	95.9	95.9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조서

▢ 사 업 명: 도시계획시설(인왕산근린공원) 조성사업

연번	소재지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면적(㎡)		소 유 자			이해관계인			비고
					전체면적	편입면적	성명	소유지분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옥인동 47-676	무허가 건축물	목조		65.5	4.8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수목	살구나무		H3.5*R18	1주							
			팽나무		H3.0*R10	1주							
					H4.0*R20	1주							
			뽕나무		H3.0*R8	1주							
			가죽나무		H3.0*R8	3주							
					H4.0*R12	2주							
					H6.0*R20	2주							
			사철나무		H1.0*W0.3	4㎡							
2	청운동 56-39	일반 건축물	연와조	1층	145.45	145.45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3	청운동 56-92			2층	191.27	191.27							
4	청운동 56-93			3층	70.25	70.25							
5	신교동 2-78	일반 건축물	연와조	지하	31.83	31.83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층	87.37	87.37							

연번	소재지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면적(㎡)		소 유 자			이해관계인			비고
				전체면적	편입면적	성명	소유지분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6	신교동 2-86	일반 건축물	연와조	61.75	61.75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7	신교동 2-99	일반 건축물	연와조	66.65	66.65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동대문구공고 제2025-1529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공고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 규정에 의거 동대문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단계별 집행계획을 공고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로과(☎2127-4814) 및 도시계획과(☎2127-4396)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5년 11월 13일
동 대 문 구 청 장

1. 단계별 집행계획 총괄표

(사업비 : 백만원)

시설별	시행기간별									비고
	계			1단계(1~3년차)			2단계(4년차이후)			
	건수	면적(㎡)	사업비	건수	면적(㎡)	사업비	건수	면적(㎡)	사업비	
계	17	18,199	13,912	7	8,073	13,881	10	10,126	31	
도로	16	17,767	13,912	7	8,073	13,881	9	9,694	31	
공공공지	1	432	-	-	-	-	1	432	-	

2. 단계별 집행계획 조서

(사업비 : 백만원)

연번	시설명	위 치	규 모			고시일	해제에 관한의견	단계별 집행계획	재정구분 (사업비)	비고
			폭원 (m)	연장 (m)	면적 (㎡)					
1	도로	회기동 45-58 ~ 52	4	85	343	2007-10-04	존치	1	재정 (1,824)	경희대앞 지구단위 계획구역
2	도로	회기동 73-9 ~ 62-62	2~6	78	358	2007-10-04	존치	1	재정 (1,466)	경희대앞 지구단위 계획구역
3	도로	회기동 60-285 ~45-35	8	177	1,418	2007-10-04	존치	1	재정 (3,246)	경희대앞 지구단위 계획구역

연번	시설명	위 치	규 모			고시일	해제에 관한의견	단계별 집행계획	재정구분 (사업비)	비고
			폭원 (m)	연장 (m)	면적 (㎡)					
4	도로	전농동 295-2 ~ 36-2	6~12	252	2,049	2007-07-05	존치	1	재정 (940)	전농2지구중심 지구단위 계획구역
5	도로	회기동 16-9 ~ 3-38	8	147	1,185	2007-10-04	존치	1	재정 (4,653)	경희대앞 지구단위 계획구역
6	도로	회기동 16-11 ~ 33-1	4	95	380	2007-10-04	존치	1	재정 (1,752)	경희대앞 지구단위 계획구역
7	도로	전농동 26-5 ~ 295-319	12	195	2,340	2007-07-05	존치	1	비재정	전농13 재정비 촉진구역
8	도로	신설동 114-25 ~ 114-6	10~11.5	306	3,192	2011-06-30	존치	2	재정 (31)	신설 지구단위 계획구역
9	도로	신설동 114-87 ~ 114-1	6	61	366	2011-06-30	존치	2	비재정	신설 지구단위 계획구역
10	도로	신설동 104-8 ~ 104-41	7.5	206	1,545	2011-06-30	존치	2	비재정	신설 지구단위 계획구역
11	도로	신설동 103-20 ~ 96-44	9.5	357	3,392	2011-06-30	존치	2	비재정	신설 지구단위 계획구역
12	도로	신설동 104-34 ~ 104-22	4	36	144	2011-06-30	존치	2	비재정	신설 지구단위 계획구역
13	도로	신설동 104-28 ~ 104-30	6	37	222	2011-06-30	존치	2	비재정	신설 지구단위 계획구역
14	도로	신설동 104-10 ~ 104-19	2~3	36	90	2011-06-30	존치	2	비재정	신설 지구단위 계획구역
15	도로	신설동 96-24 ~ 96-22	9.5	47	447	2011-06-30	존치	2	비재정	신설 지구단위 계획구역
16	도로	신설동 96-34 ~ 96-22	4	74	296	2011-06-30	존치	2	비재정	신설 지구단위 계획구역
17	공공 공지	전농동 103-320	-	-	432	2009-03-26	존치	2	비재정	서울시립대주변 지구단위 계획구역

◈ 노원구공고 제2025-1789호

도시관리계획(공릉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재열람공고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고 제2025-1355(2025.8.21.)로 열람공고한 공릉동 670번지 일대 도시관리계획(공릉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제1차 노원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2025.9.26.) 자문결과를 반영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7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재열람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3일
노 원 구 청 장

1. 열 람 기 간 : 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

2. 열 람 장 소 : 노원구청 도시관리과(☎02-2116-3866)

3. 열 람 내 용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구 역 명	위 치	면 적(㎡)			최초결정일
		기 정	변 경	변경후	
공릉 지구단위계획구역	노원구 공릉동 670 일대	35,773	-	35,773	서고 제1996-149호 (1996.06.10.)

2)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결정 : 생략(열람장소 비치 및 홈페이지 게재된 도서 및 도면으로 갈음)

4. 관계도서 : 게재 생략(열람장소에 비치)

5. 본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서울특별시 노원구청 도시관리과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본 계획(안)은 확정된 사항이 아니며, 추후 도시관리계획 결정 절차 이행 중 변경될 수 있습니다.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노원구청 도시관리과(☎02-2116-386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마포구공고 제2025-1846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 열람공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시 제2024-166호로 결정된 마포구 성산동 200-433 ~ 95-9간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시 제2025-29호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시 제2025-66호로 실시계획(변경) 고시,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시 제2025-1321호로 실시계획(변경) 고시,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시 제2025-1529호로 실시계획(변경) 고시된 성산동 200-433 일원 도시계획시설(도로) 도로(확장)공사에 대하여 실시계획(변경)을 작성하였기에 의견을 청취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관계서류를 열람공고 하고자 합니다.

2025년 11월 13일
마 포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없음)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다. 사업면적 및 규모(변경없음)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마. 시행기간(변경)

구분	기정	변경
시행기간	실시계획인가 고시일~2025. 11. 30.	실시계획인가 고시일~2026. 8. 31.

바. 실시계획 변경사유 : 사업토지 수의계약 절차 추가기간 소요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변경없음)
아.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자. 사업계획서 : 생략(열람 장소에 비치)
차. 사업 위치도(변경없음)
카. 열람기간 : 2025. 11. 13. ~ 2025. 11. 27.(14일간)
타.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개선과(☎02-3153-9754)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이며, 본 열람공고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 기간 내 의견서를 열람 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마포구공고 제2025-1848호

신촌지역 마포3구역 3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 공람공고(지구단위계획 내용 포함)

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4-304호(2014.8.28.)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556호(2020.12.17.) 정비계획변경 결정, 마포구 고시 제2021-224호(2021.11.18.) 정비계획변경(경미한사항)결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242호(2023.06.15.)로 정비계획변경 결정된 신촌지역 마포3구역 3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추진을 위하여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제1항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 합니다.
2. 본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공람기간 내에 마포구청 도시계획과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25년 11월13일
마 포 구 청 장

1. 공람기간 : 2025.11.13. ~ 2025.11.27. (14일 이상)

2. 공람장소 : 마포구청 도시계획과 (☎02-3153-9365)

3. 의견제출방법: 서면 제출(전자문서 포함, bus921@mapo.go.kr)

4. 공람내용 : 신촌지역 마포3구역 3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변경(안)

Ⅰ.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1. 신촌지역 마포 3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지정

가. 정비구역 지정 조서(변경없음)

구분		위 치	면 적(㎡)	비고
기정	신촌지역 마포3구역	노고산동 31-6 일대	8,657.8	-

나. 정비사업 시행의 관한 계획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예정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비고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각 지구별 개발에 따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자	269	-

다. 신촌지역 마포 3 도시정비형 재개개발구역 정비계획(안)(변경)

1) 용도지역 결정조서(변경없음)

2) 용도지구 결정조서(변경없음)

3) 토지이용계획(변경)

구분			면적(㎡)	구 분	비고
합계			8,657.8	100	-
정비기반시설	도로		903.7	10.4	-
획지	기정	변경	7,754.1	89.6	-
	3-1지구	1지구	1,464.0	16.9	-
	3-2지구	2지구	2,403.0	27.8	-
	3-3지구	3지구	2,995.9	34.6	사업추진중
	3-4지구	4지구	891.2	10.3	존치

■ 변경사유서

변경내용	변경사유	비고
지구명칭 변경	사업명칭 단순화 등을 위해 명칭 변경	-

4) 도시계획시설 및 기반시설 결정 (변경없음)

5) 기반시설 설치(부담) 계획(변경)

구분		시행면적(㎡)	획지면적(㎡)	분담면적(㎡)	건축물제공(㎡)	순부담비율(%)	비고
기정	1지구	1,576.1	1,464.0	112.1	-	7.1	-
기정	2지구	2,577.5	2,403.0	174.5	-	6.8	-
기정	3지구	3,245.0	2,995.9	249.1	149.8	12.3	-
변경	3지구	3,245.0	2,995.9	249.1	504.5	23.2	-
기정	4지구	915.3	891.2	24.1	-	2.6	-
계		8,313.9	7,754.1	559.8	504.5	8.5%이상	-

■ 변경사유서

변경내용	변경사유	비고
기반시설 부담 계획 변경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 적용에 따른 변경	-

6)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7)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계획(변경)

가)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변경)

구분	가구 또는 획지		위치	주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m)	비 고
	명칭	면적(㎡)						
기정	3-3지구	2,995.9	노고산동 31-77일대	주거	60이하	394/684/806.5이하	100이하	일반정비 (시행중)
변경	3지구	2,995.9	노고산동 31-77일대	주거	60이하	600/678/1,009이하	160이하	일반정비 (시행중)

※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는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_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부분」 준용

※ 3지구 외 변경없음(기재생략)

■ 변경사유서

변경내용	변경사유	비고
용적률, 높이 등 변경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 적용에 따른 변경	-

나) 건축물의 건축선 등에 관한 계획

구분			계획내용	비고
건축선	3-3지구	기정	건축지정선 백범로변 폭 3m 지정 건축한계선 이면부 폭 2m 지정 고층부벽면한계선 폭 6m 지정	-
	3지구	변경	건축한계선 백범로변 폭 3m 지정, 이면부 폭 2m 지정 고층부벽면한계선 폭 6m 지정	-

3지구 외 변경없음(기재생략)

■ 변경사유서

변경내용	변경사유	비고
건축선 변경	주변 경관과의 연속성 등을 고려하여 건축선 변경 → 건축지정선 백범로변 폭 3m 폐지	-

2. 신촌지역 마포3구역 3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변경)

가. 정비사업명칭: 신촌지역 마포3구역 3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나. 정비구역 지정 조서(변경)

구분	구역명	지구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신촌지역 마포3구역	3-3지구	노고산동 31-77일대	2,995.9	-
변경	신촌지역 마포3구역	3지구			-

■ 변경사유서

변경내용	변경사유	비고
지구명칭 변경	사업명칭 단순화 등을 위해 명칭 변경	-

다. 정비구역을 분할·통합하거나 결합하여 시행하는 경우 관련 계획(해당없음)

라. 가구 및 획지선에 관한 계획(변경)

구분	구역명	면적(㎡)	획 지				비고
			획지명	위치	시행면적(㎡)	획지면적(㎡)	
기정	신촌지역 마포3구역	8,657.8	3-3지구	노고산동 31-77일대	3,245.0	2,995.9	-
변경	신촌지역 마포3구역	8,657.8	3지구				

■ 변경사유서

변경내용	변경사유	비고
지구명칭 변경	사업명칭 단순화 등을 위해 명칭 변경	-

마. 용도지역 · 지구 결정조서(변경없음)

1) 용도지역 결정조서(변경없음)

구 분		면 적(㎡)	비 율(%)	비 고
합 계		3,245.0	100.0	-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3,245.0	100.0	-

바.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구 분	명 칭	면 적(㎡)	비 율(%)	비 고
합 계		3,245.0	100.0	-
정비기반시설	도 로	249.1	7.7	-
획지	획 지	2,995.9	92.3	-

사.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조서(변경없음)

구 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3	6	12	국지 도로	40 (40)	노고산동 31-17	노고산동 31-22	일반 도로	-	대현토지구획 정리사업 ('67.7.8)	-
기정	소로	1	3	8-10	국지 도로	167 (75)	노고산동 31-76	노고산동 31-23	일반 도로	-	대현토지구획 정리사업 ('67.7.8)	-

※ ( )는 지구 내 연장임

아. 정비기반시설 등 설치(부담) 계획(변경)

1) 정비기반시설 등 부담계획 총괄표(변경)

구분	시행지구 면적 (㎡)	대지 면적 (㎡)	정비 기반시설 면적 (㎡)	계획기반 시설내 기존 공공용지 (㎡)	대지내 폐지 국공유지	기반시설 순부담 면적 (㎡)	순부담률(%)			비고
							정비기반 시설 등 (토지) 부담률	건축물 기부채납 부담률	합계	
기정	3,245	2,995.9	249.1	-	-	149.8	398.9		12.3	구역내 평균부담률 8.5%이상
변경	3,245	2,995.9	249.1	-	-	504.5	511.6	242	23.2	

※ 순부담률 산출 : 순부담면적 ÷ (시행지구 면적 - 계획기반시설내 기존공공용지 면적 - 대지내 폐지되는 국공유지 면적)

■ 변경사유서

변경내용	변경사유	비고
기반시설 부담 계획 변경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 적용에 따른 변경	-

2) 정비기반시설 등 부담설치계획(변경)

가) 정비기반시설 등 부담면적

구분	시설명	위치			정비기반시설 등 부담면적(㎡)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계					398.9	(증)354.7	753.6	-
신촌지역 마포3구역 3지구	토지	소계			398.9	-	753.6	-
		도로		노고산동 31-77, -79, -80, -84, -85, -86, -91, -120, -139 일부	249.1	-	249.1	-
		임대주택 부속토지 (재개발의무임대, 주거비율완화)		임대주택 22세대 부속토지→ 재개발의무임대주택 15세대 부속토지	149.8	(감) 33.3	116.5	-
		공공임대 업무시설	청년창업정보교육센터	지상2층 건축물 일부 토지지분	-	(증) 70.6	70.6	-
		공공지원 시설	외국인 주민센터	지상2층 건축물 일부 토지지분	-	(증) 75.4	75.4	-
	건물	공공임대 업무시설	청년창업정보교육센터	지상2층 건축물 일부	-	(증) 116.6	116.6	토지환산면적
		공공지원 시설	외국인 주민센터	지상2층 건축물 일부	-	(증) 125.4	125.4	토지환산면적

※ 재개발의무임대주택의 부속 토지는 『도정법』 시행령 제68조 제2항에 따라 감정평가액으로 매입하여야하나 관리청(서울시 임대주택과)와 협의하여 기부채납

나) 기부채납시설 체납행정청(관리청) 지정조서

구분	시설명	위치	면적	관리청
신설	청년창업정보교육센터	지상2층 건축물 일부	1,027.7	마포구청장
신설	외국인주민센터	지상2층 건축물 일부	1,097.9	서울특별시장(다문화지담당관)
기정	공공임대주택 부속토지	공공임대주택 22세대 분 부속토지	149.8	서울특별시장(임대주택과)
신설	재개발의무임대주택 부속토지	재개발 의무임대주택 15세대 분 부속토지	116.5	서울특별시장(임대주택과)
기정	도로	노고산동 31-77, -79, -80, -84, -85, -86, -91, -120, -139 일부	249.1	마포구청장

※ 향후 토지가격 및 건축계획 등에 따라 건축물 면적· 형태 등 조정될 수 있음
※ 공공청사는 관리청으로 귀속되며, 해당 관리청에서 운영 및 관리함
※ 사업시행계획인가, 착공시, 준공인가 전 관리청 부서와 협의하여 조성(안) 마련하고 이에 따라 세부적인 건축계획(안) 변경될 수 있음

자. 현금납부에 관한 사항: 해당없음

차.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해당없음

카. 건축물의 정비 · 개량계획(변경)

1) 기존 건축물의 정비 · 개량계획

구분	구역구분		지구 구분		위 치	정비개량계획(동)					비고
	명 칭	면 적 (㎡)	명 칭	면 적 (㎡)		계	존 치	개 수	철거후 신 축	철거 이주	
기정	신촌지역 마포3구역	8,657.8	3-3지구	2,995.9	노고산동 31-77 일대	18	-	-	18	-	-
변경			3지구								

2) 건축시설 등에 관한 계획(변경)

구분	구역구분		지구 구분		위 치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m)	비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기정	신촌지역 마포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8,657.8	3-3 지구	2,995.9	노고산동 31-77 일대	주거	60 이하	기준 394 이하 허용 684 이하 상한 806.5 이하	100 이하	-
변경			3지구			주거	60 이하	기준 600 이하 허용 678 이하 상한 1,009 이하	160 이하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기정	• 주거용적률 완화에 따른 공공주택 공급(서울특별시고시 제2019-343호) • 건립 규모 및 비율								

구 분	전용면적(㎡)	세대수	비율(%)
일반분양	40㎡ 이하	15	82.3
	40㎡ 초과 ~ 60㎡ 이하	222	

<table>
<tr><th rowspan="2">구분</th><th colspan="2">구 역 구 분</th><th colspan="2">지구 구분</th><th rowspan="2">위 치</th><th rowspan="2">주용도</th><th rowspan="2">건폐율(%)</th><th rowspan="2">용적률(%)</th><th rowspan="2">높이(m)</th><th rowspan="2">비고</th></tr>
<tr><th>명칭</th><th>면적(㎡)</th><th>명칭</th><th>면적(㎡)</th></tr>
<tr><td></td><td></td><td colspan="9">
<table>
<tr><th>구 분</th><th>전용면적(㎡)</th><th colspan="2">세대수</th><th colspan="2">비율(%)</th></tr>
<tr><td rowspan="2">공공임대1)</td><td>40㎡ 이하</td><td>33</td><td rowspan="2">51</td><td>11.5(64.7)</td><td rowspan="2">17.7
(100.0)</td></tr>
<tr><td>40㎡ 초과 ~ 60㎡ 이하</td><td>18</td><td>6.2 (35.3)</td></tr>
<tr><td colspan="2">합 계</td><td colspan="2">288</td><td colspan="2">100.0</td></tr>
</table>
주1) 공공임대주택 21세대에 해당하는 대지지분(149.8㎡) 기부채납
※ 기부채납하는 공공임대주택 세대수 및 대지지분은 건축계획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대지지분 149.8㎡ 이상 범위 내)
※ ( )는 공공임대주택 전체 세대수에 대한 비율임
</td></tr>
<tr><td></td><td>변경</td><td colspan="9">
• 주거용적률 완화에 따른 공공주택 공급(서울특별시 공고 제2025-2441호, 2025.08.14.)
• 건립 규모 및 비율
<table>
<tr><th>구 분</th><th>전용면적(㎡)</th><th colspan="2">세대수</th><th colspan="2">비율(%)</th></tr>
<tr><td rowspan="4">일반분양</td><td>40㎡ 이하</td><td colspan="2">32 (증 17)</td><td rowspan="4" colspan="2">95.0</td></tr>
<tr><td>40㎡ 초과 ~ 60㎡ 이하</td><td colspan="2">212 (감 10)</td></tr>
<tr><td>60㎡ 초과 ~ 85㎡ 이하</td><td colspan="2">38 (증 38)</td></tr>
<tr><td>85㎡ 초과</td><td colspan="2">1 (증 1)</td></tr>
<tr><td rowspan="2">재개발
의무임대1)</td><td>40㎡ 이하</td><td>5 (감 28)</td><td rowspan="2">15
(감 36)</td><td>1.7 (34.0)</td><td rowspan="2">5.0
(100.0)</td></tr>
<tr><td>40㎡ 초과 ~ 60㎡ 이하</td><td>10 (감 8)</td><td>3.3 (66.0)</td></tr>
<tr><td colspan="2">합 계</td><td colspan="2">298 (증10)</td><td colspan="2">100.00</td></tr>
</table>
주1) 재개발 의무 임대주택 15세대에 해당하는 대지지분(116.5㎡) 기부채납
※ 기부채납하는 공공임대주택 세대수 및 대지지분은 건축계획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대지지분 116.5.0㎡ 이상 범위 내)
※ ( )는 재개발 의무임대주택 전체 세대수에 대한 비율임
</td></tr>
</table>

건축물 용적률 계획

기정

① 기준용적률 : 394%
② 공공기여에 따른 허용용적률 완화량 : 290% 적용

구분	목 표	인센티브 대상	기 준		적용(안)	
의무	친환경개발	녹색건축물 인증 건축물에너지소비총량제 신재생에너지이용시설	기준등급 준수 시 허용용적률 총량의 1/2 부여	최대 100%	100%	290% 적용
계획 유도	도시경제 활성화	신성장산업육성을 위한 시설 대학생 창업을 위한 창업지원센터 등	정률방식 (보상계수 0.25)	최대 100%	100%	
	생활SOC 문화인프라	생활SOC,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영화상영관 등	정률부여(0.2)	최대 50%	12%	
	보행가로 활성화	저층부 가로활성화 용도 무장애도시조성	정량부여(30%)	최대 50%	50%	
	안전, 방재	방재관련시설	정량부여(30%)	최대 30%	30%	

③ 공공시설부지 제공에 따른 상한용적률 완화량 : 122.5% 적용

공공시설	산식 = 1.3α x (기준용적률 + 공공기여 인센티브) = 1.3 x {(도로 249.1㎡ + 공공임대주택 대지지분 149.8㎡) ÷ (2,995.9㎡ - 149.8㎡)} x (394% + 290%) = 1.3 x 0.14015 x 684% = 124.62%

※ ① + ② + ③ = 806.5% 이하 적용

변경

① 기준용적률 : 600%
②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완화량 : 78% 적용

목 표	인센티브 대상	기 준		적용(안)	
친환경 개발	신재생에너지 의무확보기준 초과설치	정량부여(20%)	최대 20%	20%	78% 적용
	전기차충전소 설치	정량부여(20%)	최대 20%	20%	
보행가로 활성화	가로지장물 이전/지중화	정률부여(3.0)	최대 100%	18%	
안전·방재	방재 관련시설	정량부여(20%)	최대 20%	20%	

건축물 용적률 계획	변경	

■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중 가로지장물(지상 전주 3본)의 지중화 환산부지면적 산식

구분	내용		비고
㉮ 전력설비 지중화작업 환산부지면적	개략공사비(원)	664,016,000	KEPCO 마포용산지사(664,016,000원), 부가세 별도
	공시지가(원)	15,944,240	대상지 평균공시지가(일반상업지역)
	부지가액(원)	31,888,480	공시지가 2배
	환산부지면적(㎡)	20.0000	개략공사비 ÷ 부지가액
㉯ 통신설비 지중화작업 환산부지면적	개략공사비(원)	333,952,090	KT 용산지점(333,952,000원), 부가세 별도
	공시지가(원)	15,944,240	대상지 평균공시지가(일반상업지역)
	부지가액(원)	31,888,480	공시지가 2배
	환산부지면적(㎡)	10.0000	개략공사비 ÷ 부지가액
가로지장물 지중화 총 환산부지면적(㎡)		30.0000	㉮ + ㉯
2030 도시환경정비 기본계획(변경)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부문]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5-2441호, 2025.08.14.) 허용용적률인센티브_서울도심도심부외		18.02%	도입시설면적은 공사구간 면적 기준. 단, 지상 전주·전선의 이전/지중화시에는 시설공사비 환산면적 기준으로 적용 ※정률방식인센티브량 = 기준용적률 × (도입시설면적 ÷ 대지면적) × 보상계수 : 3.0 = 600.00% × (30.0㎡ ÷ 2,995.9㎡) × 3.0 = 18.02% ≒ 18.00%

※ 부지가액은 사업시행계획인가시 감정평가금액으로 하고, 공사비도 변경될 수 있음

③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에 따른 상한용적률 완화량 : 236.08% 적용

공공시설	산식 = 허용용적률×(1.3×가중치×α토지+1.2×α건축물) = 678.00%×[(1.3×가중치1.0×α토지0.187175) +(1.2×α건축물0.088535)] = 914.08%(완화량 236.08%)

1)공공시설 등 기부채납에 따른 인센티브 : 236.08
- 기반시설(도로) 제공 면적 : 249.1 ㎡
- 건축물 토지지분면적 : 262.5 ㎡
- 건축물 환산부지 면적 : 242.0 ㎡

1-1)가중치 산정
- 가중치 : 사업부지 용적률에 대한 '공공시설 등 제공부지' 의 용적률 비율
= 1

1-2) α 산정
㉠α토지 : 공공시설 등 부지(토지)제공 후의 대지면적 대 공공시설 등 부지(토지) 제공면적 비율
= (249.1㎡ + 146.0㎡ + 116.5㎡) ÷ (3,245.0㎡ - 249.1㎡ - 146.0㎡- 116.5㎡]
= 511.6㎡ ÷ 2,733.4㎡
= 0.187175
㉡ α건축물 : 공공시설 등 부지(토지) 제공 후의 대지면적 대 공공시설 등 부지(건축물 설치 비용 및 현금 환산부지) 제공 면적 비율
= 242.0㎡ ÷ (3,245.0㎡ - 249.1㎡- 146.0㎡ - 116.5㎡)
= 242.0㎡ ÷ 2,733.4㎡
= 0.088535

<table>
<tr><td>건축물
용적률
계획</td><td>변경</td><td>④ 친환경 초과등급 인증에 따른 상한용적률 완화량 : 94.92% 적용
제로에너지 건축물 초과등급 인증에 따른 인센티브
=허용용적률×(제로에너지 건축물 5등급 11%+ 녹색건축 우수 3%)
= 678.00% × (0.11 + 0.03) = 94.92%
→ 친환경 인센티브 = 94.92%
※ ①+②+③+④ = 1,009.0% 이하 적용</td></tr>
<tr><td rowspan="4">주거비율
완화에 관한 계획</td><td>기정</td><td>• 공공주택 공급계획
<table>
<tr><th colspan="2">구분</th><th>일반상업지역</th><th>비고</th></tr>
<tr><td colspan="2">① 재개발 의무 임대</td><td>288세대 × 5% = 14.4세대
⇒ 계획 16세대</td><td></td></tr>
<tr><td rowspan="3">② 주거비율 완화임대</td><td>용적률</td><td>[허용용적률 – {(허용용적률 × 비주거비율 (비주거용적률 / 계획용적률)) + 400%}] ÷ 2
= [684% – {(684% × 0.1623) + 400%}] ÷ 2 = 86.5% 이상
⇒ 계획 105.28%</td><td rowspan="3">①, ② 중복 인정 가능</td></tr>
<tr><td>연면적</td><td>확보 기준 용적률 × 획지면적 = 86.5% × 2,995.9㎡
=지상 연면적 2,591.5㎡ 이상
⇒ 계획 3,154.12㎡</td></tr>
<tr><td>세대수</td><td>확보계획
지상연면적(공급면적) ÷ 임대주택공급면적(전용36A형, 전용49B형)
=전용 36A형(1,834.78㎡ ÷ 36.20㎡) + 전용 49B형(1,319.34㎡ ÷ 48.06㎡)
=전용 36A형(33세대) + 전용 49B형(18세대)
⇒ 51세대</td></tr>
<tr><td colspan="2">③ 총 공공주택 세대수</td><td>① 정비사업 의무 임대 15세대< ② 주거비율 완화 임대 51세대
(큰 값 적용 ⇒ 총 51세대)</td><td></td></tr>
</table>
· 주거비율 : 85.88%(전체연면적기준), 89.98%(전체용적률 기준)
※ 주거용 용적률 400% → 745.34%(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16조 별표2 라목1호에 따라 완화)</td></tr>
<tr><td>변경</td><td>• 공공주택 공급계획
<table>
<tr><th>구분</th><th>일반상업지역</th><th>비고</th></tr>
<tr><td>① 재개발 의무 임대</td><td>= 298세대 × 5% = 14.9세대
⇒ 계획 15세대</td><td></td></tr>
<tr><td>② 주거비율 완화임대</td><td>2030 도시·주거환경기본계획(변경)에 따라 주거용적률 제한 삭제</td><td></td></tr>
<tr><td>③ 총 공공주택 세대수</td><td>① 정비사업 의무 임대 15세대</td><td></td></tr>
</table>
· 주거비율 : 88.4%(전체연면적기준), 87.1%(전체용적률 기준)
※ 주거용 용적률 400% → 859.84%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16조 별표2 라목1호에 따라 완화)</td></tr>
<tr><td rowspan="2">건축물
높이 완화에
관한계획</td><td>기정</td><td>최고높이 100.0m</td></tr>
<tr><td>변경</td><td>높이 : 기준높이 130m + ① + ② = 160.19 ≤ 160m(소숫점아래 절삭)
<table>
<tr><th colspan="2">구분</th><th>내용</th><th>적용계획</th></tr>
<tr><td>①</td><td>기준높이</td><td></td><td>130m</td></tr>
<tr><td>②</td><td>공공용지 제공에 따른 완화높이</td><td>= 기준높이×(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당초의 대지면적) 이내
= 130.00m × (249.1㎡ + 242.0㎡ + 146.0㎡ + 116.5㎡] ÷ 3,245.0㎡
= 130.00m × (753.6㎡÷3,245.0㎡)
= 30.19m</td><td>30.19m</td></tr>
<tr><td colspan="3">합 계</td><td>160.19m</td></tr>
</table></td></tr>
<tr><td rowspan="2">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td><td>기정</td><td>• 건축지정선 : 백범로변 3m • 건축한계선 : 이면부 2m
• 고층부(4층 이상) 벽면한계선 : 백범로변 6m</td></tr>
<tr><td>변경</td><td>• 건축한계선 : 백범로변 3m, 이면부 2m</td></tr>
</table>

		• 고층부(4층 이상) 벽면한계선 : 백범로변 6m
대지내 공지계획 (공개공지)	기정	획지별 지정된 위치를 준수하여 확보기준면적 이상을 설치
기타에 관한 사항	기정	저층부 가로활성화 용도 설치구간: 백범로 변

■ 변경사유서

변경내용	변경사유	비고
용적률, 높이 등 변경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 적용에 따른 변경	-

타.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

사업시행방법	사업시행시기	사업시행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비고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구역지정(변경) 후 4년 이내	토지등소유자	269세대	-

※ 사업시행자 지정 완료 ('25.08.18. 인가번호: 2022-마포구-도시환경시행인가-1(변경1차))

파. 토지등소유자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추정 지분율 산정방식

• 추정지분율 = 분양대상자 투자금액(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 평가액 + 분양예정의 대지평가차액 + 비용부담액) / 총사업비(분양예정의 대지평가액 + 신축건축물 시설평가액)
- 분양예정의 대지평가차액(총 대지평가차액)
  = 분양예정의 대지평가액 - 대지조성비 - 총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 평가액
- 개별 분양예정의 대지평가차액(각 토지등소유자별)
  = 총 대지평가차액 × 분양대상자별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 평가액 비율
- 비용부담액(사업시행자 부담 원칙)
  = 대지조성비 + 신축건축비(신축건축물 시설평가액)

추정 지분율

• 추정지분율 : 100%
- 분양대상자 투자금액/ 총사업비
  = (91,284,022 + 3,201,419 + 321,896,472) / 416,381,913 = 100% = 1 [단위 : 천원]

구분		금액(천원)	비고
종후 토지 및 건물평가금액 (총 사업비)	계	416,381,913	
	분양예정의 대지평가액	171,477,303	①
	신축건물시설 평가액	244,904,610	②
대지조성비		76,991,862	③
총 종전 토지 및 건물평가액		91,284,022	④
총 대지평가차액		3,201,419	① - ③ - ④ = ⑤
비용부담액(사업시행자 부담 원칙)		321,896,472	② + ③ = ⑥

*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종전자산 추산액)은 약식 감정평가한 감정평가 금액, 총사업비(종후 평가금액 추산액)는 향후 관리처분계획을 위한 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종후평가)' 이 나와야 확정할 수 있지만, 분담금을 추산하기 위하여, 정비사업비(추산액)를 로 작성(단, 정확성을 위해 약식 종후평가 권장)

개별 분양대상자 투자금액

• 개별 분양대상자 투자금액(권리가액 상당액)
- 임의 산정(A)의 종전 토지등소유자의 종전 자산(토지 또는 건축물) : 1,000,000(가정)(⑦)
- (A)의 개별 종전토지 또는 건물 평가액 비율 = 1,000,000(⑦) / 91,284,022(④) ≒ 1.0955%(⑧)
- (A)의 개별 대지평가차액 = 3,201,419(⑤) × 1.0955%(⑧) ≒ 35,072(⑨)
- (A)의 개별 분양대상자 투자금액(권리가액 상당액) = 1,000,000(⑦) + 35,072(⑨) = 1,035,072(⑩)
- (A)의 지분율 = 1,035,072(⑩) / 416,381,913(①+②) ≒ 0.2486%

<table>
<tr><td>추정
수익률</td><td>• 추정수익률(사업시행에 따른 개별 종전자산의 수익률) : 103.51%
- 개별 권리가액 상당액 / 개별 종전자산(토지 또는 건축물) X 100%</td></tr>
<tr><td>추정
분담금
산출</td><td>• 추정분담금(개략적인 개별 분담금) 산출방식
- 개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 개별 분양대상자 투자금액
※ 토지등소유자가 분양받는 물건에 비해 토지등소유자의 권리가액 상당액이 높을 경우 개별 분담금인 청산금을 사업시행자로부터 수령(사업시행자 지급), 그 반대인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청산금을 지급(사업시행자 징수)
• (A)의 종전토지 또는 건물 평가액 10억원 가정에 따른 개략적인 개별 분담금(예시)</td></tr>
</table>

구분		토지등소유자 분양가(추산액) (3.3㎡당, 천원)	토지등소유자 분양가 (추산액, 천원)	개별 분양대상자 투자금액 (권리가액 상당액, 천원)	개별 분담금 (천원)	비고
아파트	59A	56,000	1,421,330	1,035,072	386,258	지급
	59B	56,000	1,424,517	1,035,072	389,445	지급
	59C	56,000	1,423,016	1,035,072	387,944	지급
	59D	56,000	1,418,771	1,035,072	383,699	지급
	39A	50,000	844,660	1,035,072	-190,412	수령
	84A	56,000	1,997,218	1,035,072	962,146	지급
	133A	56,000	3,225,158	1,035,072	2,190,086	지급
업무시설	지상3층 전용1,050.8㎡	10,760	3,420,421	1,035,072	2,385,349	지급
근린생활시설	지상1층 (전용443.7㎡)	13,990	1,877,805	1,035,072	842,733	지급
	지하1층 (전용92.4㎡)	19,983	558,558	1,035,072	-476,514	수령

※ 관리처분계획인가 시 개별 물건에 대한 종전자산 감정평가 및 분양가격 확정 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사업비는 사업시행자 부담(사업시행자인 토지등소유자와 사업시행자가 아닌 토지등소유자가 구분되는 경우, 1인 시행)

하.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주택수급에 관한 사항 (변경)

1) 정비구역의 주택멸실 현황(변경없음)

· 건축물 동수

용도별 허가유무별						비고
주거용			비주거용			
소계	유허가	무허가	소계	유허가	무허가	
5	5	-	9	9	-	-

· 거주현황 : 해당사항 없음

2) 정비사업으로 인해 새로 건축되는 주택 현황(변경)

구분			계	일반분양	공공임대			비고
					재개발 의무공공임대	주거비율완화 공공임대	소계	
기정	60㎡ 이하	합계	288	237	16	35	51	-
		30㎡ 이상 ~ 40㎡ 이하	48	15	16	17	33	-
		40㎡ 초과 ~ 50㎡ 이하	240	222	-	18	18	-
		50㎡ 초과 ~ 60㎡ 이하	-	-	-	-	-	-

구분			계	일반분양	공공임대			비고
					재개발 의무공공임대	주거비율완화 공공임대	소계	
변경	133㎡ 이하	합계	298	283	15	-	15	-
		30㎡ 이상 ~ 40㎡ 이하	37	32	5	-	5	-
		50㎡ 초과 ~ 60㎡ 이하	222	212	10	-	10	-
		60㎡ 초과 ~ 85㎡ 이하	38	38	-	-	-	-
		85㎡ 초과	1	1	-	-	-	-

※ 전용면적 기준으로 구분하였음

거. 세입자 주거대책(변경)

1) 주거 및 세입자 대책

- 세입자 전부 퇴거 완료

너. 인구 및 주택의 수용계획(변경)

1) 인구 및 세대수 계획

구 분	수용세대수(호)		비고
공공임대주택	기정	51	-
	변경	15	
분양주택	기정	237	-
	변경	283	
합 계	기정	288	-
	변경	298	

더.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변경)

· 기정 : 재개발 의무임대 16세대, 주거비율완화에 따른 35세대

구 분	내 용
계획 기준	- 임대주택 확보(재개발 의무임대주택) : 200세대 이상 건립 시 상업지역 전체 건립 세대수의 5% (주거비율 완화적용 임대와 중복 적용 가능) - 임대주택 확보(주거비율 완화적용 임대주택) : 주거 용적률 400%를 기준으로 완화되는 용적률의 1/2은 공공주택 공급 - 전용면적 85㎡ 이하 규모의 주택 : 전체 세대수의 80% 이상 건립 - 전용면적 40㎡ 이하 규모의 공공주택 : 전체 공공주택 세대수의 30% 이상 건립

건립규모	임대주택 세대수	임대주택 비율
합계	51	17.7%
30㎡ 이상 ~ 40㎡ 이하	33	11.5%
40㎡ 초과 ~ 60㎡ 이하	18	6.2%

※ 전체 288세대

· 변경 : 재개발 의무임대 15세대

구 분	내 용	
계획 기준	- 임대주택 확보(재개발 의무임대주택) : 상업지역 전체 건립 세대수의 5% 또는 연면적의 5% - 전용면적 85㎡ 이하 규모의 주택 : 전체 세대수의 80% 이상 건립 - 전용면적 40㎡ 이하 규모의 공공주택 : 전체 공공주택 세대수의 30% 이상 건립	
건립규모	재개발 의무임대주택 세대수	재개발 의무임대주택 비율
합계	15	5.0%
30㎡ 이상 ~ 40㎡ 이하	5	1.7%
40㎡ 초과 ~ 60㎡ 이하	10	3.3%
60㎡ 초과 ~ 85㎡ 이하	-	-
85㎡ 초과	-	-

※ 전체 298세대

러. 환경보전,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머.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해당없음)

버. 교통 및 동선처리계획(변경없음) ※ 정비계획 결정도서 참조

서.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어. 기존 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해당없음)

저. 구역 내 옛길, 옛 물길,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건축자산 및 한옥 등 문화자원의 보전 및 활용계획(해당없음)

Ⅱ. 신촌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조서

1. 특별계획구역6 결정조서(변경)

가. 특별계획구역6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특별계획구역 6 (신촌마포3구역)	마포구 노고산동 31-6번지 일대	8,657.8	-

※ 특별계획구역6(신촌마포3구역) 외 기재생략

나. 특별계획구역6 계획지침

(기정)

구 분		계 획 지 침		비 고
토지이용		• 지역의 중심기능 설정 및 상위계획기능의 강화를 위하여 판매, 업무, 문화·집회, 관광숙박용도 등 도입 유도		-
용도지역		• 일반상업지역		-
용도지구		• 중심지미관지구, 방화지구		-
건축물 용도	권장 용도	• 판매, 업무, 관광숙박, 의료시설 중 병원,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세부개발 계획시 제시된 권장용도 중 선택하여 주용도로 설정
	불허 용도	양화로변	• 단독주택, 공동주택(주거복합건축물 제외),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장례식장, 격리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 일반숙박시설, 위락시설,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 시설(주차장 제외), 교정 및 군사시설	전층
		양화로변 외 지역	• 단독주택, 공동주택(주거복합건축물 제외), 일반숙박시설, 장례식장, 격리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 제외), 교정 및 군사시설	
건폐율		• 60% 이하		-
용적률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 일반상업지역 : 600% / 800% 이하		1991. 5. 11 이후 상향 (준주거 → 일반상업)
		• 일반상업지역(용도지역 상향기준 적용지역) : 300% 이하 / 630% 이하 / 법적용적률의 2배 이하		
최고높이		• 100m 이하		-

※ 특별계획구역은 용도, 밀도, 최고높이 이외의 사항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세부개발계획)에서 정한바에 따름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획지계획 등)

(변경)

구 분	계 획 지 침	비 고
토지이용	• 지역의 중심기능 설정 및 상위계획기능의 강화를 위하여 판매, 업무, 문화·집회, 주거, 관광숙박시설 용도 도입 유도	-
용도지역	• 일반상업지역	-
용도지구	해당없음	-
건축물 주용도	• 업무, 판매, 문화 및 집회시설,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주거 등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기본계획(변경)에 따라 따름	-
건폐율	• 60% 이하	-
용적률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 일반상업지역 : 600% / 880% /법적용적률 2배 이하	-
기준높이	• 130m이하	-

※ 2030 도시· 주거환경기본계획(변경)에 따라 용도, 밀도, 높이 등 계획은 수립
※ 중심지미관지구 폐지(서울특별시 고시 제 2019-129호, 2019.04.18), 방화지구 폐지(서울특별시 고시 제2024-504호, 2024.10.24.)

2. 특별계획구역 6 내 신촌지역마포3구역 3지구 세부개발계획

가. 용도지역 결정조서(변경없음)

구 분		면 적(㎡)	비 율(%)	비 고
합 계		3,245.0	100.0	-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3,245.0	100.0	-

나.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구 분	명 칭	면 적(㎡)	비 율(%)	비 고
합 계		3,245.0	100.0	-
정비기반시설	도 로	249.1	7.7	-
획지	획 지	2,995.9	92.3	-

다.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조서(변경없음)

구 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3	6	12	국지 도로	40 (40)	노고산동 31-17	노고산동 31-22	일반 도로	-	대현토지구획 정리사업 ('67.7.8)	-
기정	소로	1	3	8-10	국지 도로	167 (75)	노고산동 31-76	노고산동 31-23	일반 도로	-	대현토지구획 정리사업 ('67.7.8)	-

※ ( )는 지구 내 연장임

라. 정비기반시설 등 설치(부담) 계획(변경)

1) 정비기반시설 등 부담계획 총괄표(변경)

구분	시행지구 면적 (㎡)	대지 면적 (㎡)	정비 기반시설 면적 (㎡)	계획기반 시설내 기존 공공용지 (㎡)	대지내 폐지 국공유지	기반시설 순부담 면적 (㎡)	순부담률(%)			비고
							정비기반 시설 등 (토지) 부담률	건축물 기부채납 부담률	합계	
기정	3,245	2,995.9	249.1	-	-	149.8	398.9	-	12.3	구역내 평균부담률 8.5%이상
변경	3,245	2,995.9	249.1	-	-	504.5	511.6	242	23.2	

※ 순부담률 산출 : 순부담면적 ÷ (시행지구 면적 - 계획기반시설내 기존공공용지 면적 - 대지내 폐지되는 국공유지 면적)

■ 변경사유서

변경내용	변경사유	비고
기반시설 부담 계획 변경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 적용에 따른 변경	-

2) 정비기반시설 등 부담설치계획(변경)

가) 정비기반시설 등 부담면적

구분	시설명	위치			정비기반시설 등 부담면적(㎡)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계					398.9	(증)354.7	753.6	-
신촌지역 마포3구역 3지구	토지	소계			398.9	-	753.6	-
		도로		노고산동 31-77, -79, -80, -84, -85, -86, -91, -120, -139 일부	249.1	-	249.1	-
		임대주택 부속토지		재개발의무임대, 주거비율완화에 따른 임대주택 22세대→ 임대주택 15세대 분 부속토지	149.8	(감) 33.3	116.5	-
		공공임대 업무시설	청년창업정보교육센터	지상2층 건축물 일부 토지지분	-	(증) 70.6	70.6	-
		공공지원 시설	외국인 주민센터	지상2층 건축물 일부 토지지분	-	(증) 75.4	75.4	-
	건물	공공임대 업무시설	청년창업정보교육센터	지상2층 건축물 일부	-	(증) 116.6	116.6	토지환산면적
		공공지원 시설	외국인 주민센터	지상2층 건축물 일부	-	(증) 125.4	125.4	토지환산면적

※ 재개발의무임대주택의 부속 토지는 『도정법』 시행령 제68조 제2항에 따라 감정평가액으로 매입하여야하나 관리청(서울시 임대주택과)와 협의하여 기부채납

나) 기부채납시설 체납행정청(관리청) 지정조서

구분	시설명	위치	면적	관리청
신설	청년창업정보교육센터	지상2층 건축물 일부	1,027.7	마포구청장
신설	외국인주민센터	지상2층 건축물 일부	1,097.9	서울특별시장(다문화지담당관)
기정	공공임대주택 부속토지	공공임대주택 22세대 분 부속토지	149.8	서울특별시장(임대주택과
신설	재개발 의무임대주택 부속토지	재개발 의무임대주택 15세대 분 부속토지	116.5	서울특별시장(임대주택과)
기정	도로	노고산동 31-77, -79, -80, -84, -85, -86, -91, -120, -139 일부	249.1	마포구청장

※ 향후 토지가격 및 건축계획 등에 따라 건축물 면적· 형태 등 조정될 수 있음
※ 공공청사는 관리청으로 귀속되며, 해당 관리청에서 운영 및 관리함
※ 사업시행계획인가, 착공시, 준공인가 전 관리청 부서와 협의하여 조성(안) 마련하고 이에 따라 세부적인 건축계획(안) 변경될 수 있음

마. 건축물의 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에 관한 계획(변경)

구분	구 역 구 분		지구 구분		위 치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m)	비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기정	신촌지역 마포3구역	8,657.8	3-3 지구	2,995.9	노고산동 31-77 일대	주거	60 이하	기준 394 이하 허용 684 이하 상한 806.5 이하	100 이하	-
변경			3지구			주거	60 이하	기준 600 이하 허용 678 이하 상한 1,009 이하	160 이하	-

건축물 용적률 계획 — 기정

① 기준용적률 : 394%
② 공공기여에 따른 허용용적률 완화량 : 290% 적용

구분	목 표	인센티브 대상	기 준		적용(안)	
의무	친환경개발	녹색건축물 인증 건축물에너지소비총량제 신재생에너지이용시설	기준등급 준수 시 허용용적률 총량의 1/2 부여	최대 100%	100%	290% 적용
계획 유도	도시경제 활성화	신성장산업육성을 위한 시설 대학생 창업을 위한 창업지원센터 등	정률방식 (보상계수 0.25)	최대 100%	100%	
	생활SOC 문화인프라	생활SOC,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영화상영관 등	정률부여(0.2)	최대 50%	12%	
	보행가로 활성화	저층부 가로활성화 용도 무장애도시조성	정량부여(30%)	최대 50%	50%	
	안전, 방재	방재관련시설	정량부여(30%)	최대 30%	30%	

③ 공공시설부지 제공에 따른 상한용적률 완화량 : 122.5% 적용

공공시설	산식 = 1.3α x (기준용적률 + 공공기여 인센티브) = 1.3 x {(도로 249.1㎡ + 공공임대주택 대지지분 149.8㎡) ÷ (2,995.9㎡ - 149.8㎡)} x (394% + 290%) = 1.3 x 0.14015 x 684% = 124.62%

※ ① + ② + ③ = 806.5% 이하 적용

<table>
<tr><td></td><td>변경</td><td>① 기준용적률 : 600%
②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완화량 : 78% 적용
<table>
<tr><th>목 표</th><th>인센티브 대상</th><th colspan="2">기 준</th><th colspan="2">적용(안)</th></tr>
<tr><td rowspan="2">친환경
개발</td><td>신재생에너지 의무확보기준
초과설치</td><td>정량부여(20%)</td><td>최대
20%</td><td>20%</td><td rowspan="4">78%
적용</td></tr>
<tr><td>전기차충전소 설치</td><td>정량부여(20%)</td><td>최대
20%</td><td>20%</td></tr>
<tr><td>보행가로
활성화</td><td>가로지장물
이전/지중화</td><td>정률부여(3.0)</td><td>최대
100%</td><td>18%</td></tr>
<tr><td>안전·방재</td><td>방재 관련시설</td><td>정량부여(20%)</td><td>최대
20%</td><td>20%</td></tr>
</table>
③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에 따른 상한용적률 완화량 : 236.08% 적용
<table>
<tr><td>공공시설</td><td>산식 = 허용용적률×(1.3×가중치×α토지+1.2×α건축물)
= 678.00%×[(1.3×가중치1.0×α토지(0.187175)
+(1.2×α건축물0.088535)]
= 914.08%(완화량 236.08%)</td></tr>
</table>
④ 친환경 초과등급 인증에 따른 상한용적률 완화량 : 94.92% 적용
제로에너지 건축물 초과등급 인증에 따른 인센티브
=허용용적률×(제로에너지 건축물 5등급 11%+ 녹색건축 우수 3%)
= 678.00% × (0.11 + 0.03) = 94.92%
→ 친환경 인센티브 = 94.92%
※ ①+②+③+④ = 1,009.0% 이하 적용</td></tr>
<tr><td rowspan="2">건축물
높이 완화에
관한계획</td><td>기정</td><td>최고높이 100.0m</td></tr>
<tr><td>변경</td><td>높이 : 기준높이 130m + ① + ② = 160.19 ≤ 160m(소숫점아래 절삭)
<table>
<tr><th colspan="2">구분</th><th>내용</th><th>적용계획</th></tr>
<tr><td>①</td><td>기준높이</td><td></td><td>130m</td></tr>
<tr><td>②</td><td>공공용지 제공에 따른
완화높이</td><td>= 기준높이×(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당초의 대지면적) 이내
= 130.00m × (249.1㎡ + 242.0㎡ + 146.0㎡ + 116.5㎡] ÷ 3,245.0㎡
= 130.00m × (753.6㎡÷3,245.0㎡)
= 30.19m</td><td>30.19m</td></tr>
<tr><td colspan="3">합 계</td><td>160.19m</td></tr>
</table></td></tr>
<tr><td rowspan="2">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td><td>기정</td><td>• 건축지정선 : 백범로변 3m • 건축한계선 : 이면부 2m
• 고층부(4층 이상) 벽면한계선 : 백범로변 6m</td></tr>
<tr><td>변경</td><td>• 건축한계선 : 백범로변 3m, 이면부 2m
• 고층부(4층 이상) 벽면한계선 : 백범로변 6m</td></tr>
<tr><td>대지내 공지계획
(공개공지)</td><td>기정</td><td>획지별 지정된 위치를 준수하여 확보기준면적 이상을 설치</td></tr>
<tr><td>기타에 관한
사항</td><td>기정</td><td>저층부 가로활성화 용도 설치구간: 백범로 변</td></tr>
</table>

5. 관계도면 : 생략(기타 관계도서는 공람장소에 비치된 도서로 갈음)
6.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공람장소에 비치된 도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해당계획 내용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향후 절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구로구공고 제2025-1934호

도시관리계획(개봉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재열람공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1997-136호(1997. 5.10.)로 구역 지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1-31호(2001. 2. 7.) 및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2-256호(2012. 9.27.)로 계획 수립된 개봉역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고 제2023-429호(2023. 3. 9.)로 개봉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열람공고 하였으며, 해당 개봉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2025년 제12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결과(수정가결)를 반영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재열람공고 합니다.

본 도시관리계획(개봉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재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1월 13일

구 로 구 청 장

가. 열람기간 : 2025. 11. 13. ~ 11. 27.(공고일 다음 날로부터 14일간)

나. 열람 및 의견서 제출 장소 : 구로구청 신관 3층 도시계획과

다. 열람내용 : 도시관리계획(개봉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 사항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구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개봉역 지구단위계획구역	구로구 개봉동 170번지 일원	134,212	1997. 5. 10. (서고 제1997-136호)	-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 사항 : 게재생략(열람장소 비치)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 사항 : 게재생략(열람장소 비치)

4)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 사항 : 게재생략(열람장소 비치)

라. 관련도서 : 게재생략(구로구청 도시계획과에 관계서류와 도면을 비치하고 있음)

마.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도시계획포털(https://urban.seoul.go.kr/) → 고시/공고 → 열람공고에서도 확인 가능.
- 열람내용은 확정된 안이 아니므로 추후 도시관리계획 결정절차 이행 중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로구청 도시계획과(☎02-860-29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악구공고 제2025-2091호

관악산 도시공원 부지사용계약을 위한 주민의견청취 열람공고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에 의거 관악산 도시공원 일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와 부지사용계약(변경)을 체결하기 위해 의견을 청취하고자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2.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청 공원녹지정책과에 비치하여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열람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열람장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개별통지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 제14조에 의거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2025년 11월 13일
관 악 구 청 장

가. 계약위치: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165-1 등 24필지(신림계곡지구, 낙성대지구)
나. 계약면적: 총 38,209㎡
다. 계약목적: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공원,녹지 조성 등을 통하여 시민의 건강, 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킬 것을 목적으로 함
라. 계약내용 : 부지사용계약서(안) 참조
마. 계약기간(변경)
- 당 초: 2020.7.13.~2026.7.11.
- 변 경: 2020.7.13.~2027.7.11.
바. 공고방법: 서울시보 및 서울시 홈페이지 게재
사. 열람기간: 열람공고일로부터 14일간
아. 열람장소 및 문의처: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원녹지정책과(☎02-879-6524)

붙임 도시공원 부지사용계약서(안) 1부. 끝.

■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신설 2021. 4. 6.>

도시공원 부지사용연장계약서(안)(제14조 관련)

토지소유자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를 “토지소유자”라 정하고, 서울특별시(관악구청장)을 “공원관리청”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공원 부지사용계약을 체결한다.[「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제32조(사무위임)]

제1조(목적) 이 계약은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공원·녹지 조성 등을 통하여 시민의 건강, 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무) “토지소유자”와 “공원관리청”은 성실하게 계약내용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3조(계약토지구역의 표시) 계약토지구역의 표시는 다음과 같으며, 그 경계 등은 붙임 도면과 같다.

공원명	토 지 소 재 지	지목	면적(㎡)
관악산근린공원	관악구 신림동 165-1	학교	653
	관악구 신림동 산56-1	임야	689
	관악구 신림동 175-1	학교	1,550
	관악구 봉천동 산41-1	임야	7,969
	관악구 봉천동 257-1	전	509
	관악구 봉천동 257-2	전	288
	관악구 봉천동 산41-5	임야	287
	관악구 봉천동 산41-3	임야	11
	관악구 봉천동 산41-6	임야	108
	관악구 봉천동 산41-4	임야	12,142
	관악구 봉천동 259	전	176
	관악구 봉천동 262-3	답	345
	관악구 봉천동 262-2	전	1,478
	관악구 봉천동 262-17	전	492
	관악구 봉천동 260-3	전	1,363
	관악구 봉천동 262-15	답	1,434
	관악구 봉천동 259-1	전	2,287

공원명	토 지 소 재 지	지목	면적(㎡)
	관악구 봉천동 259-2	전	721
	관악구 봉천동 260-1	전	2,078
	관악구 봉천동 262-16	답	112
	관악구 봉천동 253-1	전	1,441
	관악구 봉천동 253	전	152
	관악구 봉천동 253-7	전	228
	관악구 봉천동 256-1	전	1,696

제4조(해당 토지의 부지사용료 지급) 공원부지사용계약에 따른 부지사용료는 무상으로 한다.

제5조(계약기간) 계약 대상인 토지의 계약기간은 2020년 07월 13일부터 2026년 07월 11일까지의 당초 계약기간을 **2020년 07월 13일부터 2027년 07월 11일까지**로 연장한다.

제6조(공원시설의 설치 · 정비) “토지소유자”와 “공원관리청”은 해당 부지에 다음 각 호와 같은 시설을 협의하여 설치 · 정비하는 것으로 한다.

1. 의자 · 음수대 · 안내표지판 · 산책로 등 시민의 이용을 위한 최소한의 시설
2. 토사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 사방시설, 수목보호를 위한 시설, 배수로, 무분별한 숲길(지름길)의 개설방지를 위한 펜스 · 로프 등과 유사한 시설, 위험방지책(울타리) 등 공원의 녹지보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
3. 녹화를 위한 수목의 식재, 녹화공간의 설치 및 개 · 보수 등

제7조(공원시설의 관리) “토지소유자” 및 “공원관리청”은 계약기간 중 해당 부지를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여 관리하는 것으로 한다.

1. 해당 부지 내에 존재하는 수목의 가지치기, 풀베기, 병충해 방제 등 수목을 양호하게 가꾸기 위하여 필요한 것
2. 해당 부지 내에 설치 · 정비한 시설의 유지 · 보수에 관한 것
3. 해당 부지 내의 청소 등 청결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것

제8조(토지사용의 제한) “토지소유자” 및 “공원관리청”은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협의된 시설의 설치 · 정비 및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토지형질변경 이외에 상호 협의 없이 해당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

제9조(금지행위) “토지소유자”와 “공원관리청”은 계약기간 중 상호 협의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해당 토지에 사용 또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설정하는 행위
2. 해당 토지에 새로운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3. 해당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4. 해당 토지의 나무를 벌채하는 행위
5. 해당 토지에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

제10조(재산세 비과세 등 지원에 관한 사항) “공원관리청”은 “토지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부지사용료를 유상으로 하는 경우 본조 삭제).

1.「지방세법」제109조제2항 본문에 따라 재산세를 비과세 할 수 있다.
2. 제1호에 따라 재산세를 비과세하는 경우 해당 증빙자료와 사실관계 서류를 계약기간 동안 보관한다.

제11조(해당 토지의 개방) “토지소유자”와 “공원관리청”은 계약기간 중 교육·연구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해당 토지를 시민이 일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제12조(계약내용의 변경) 계약의 변경은 토지소유자 또는 공원관리청의 요청에 따라 계약의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다.

제13조(계약의 갱신 및 연장)

1. 계약의 갱신 여부는 만료일 전년도 5월 31일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2.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계약의 갱신 등에 대하여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3. 제1호에 따른 통지가 없는 경우 만료일 다음날로부터 전 계약기간과 같은 기간으로 계약기간이 연장된다.

제14조(계약위반 시 조치) ① “토지소유자” 또는 “공원관리청” 중 어느 한 당사자가 본 계약을 위반했을 경우에 계약상대방은 1개월 이내에 본 계약을 적정히 이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적정한 이행요청을 2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반상태가 지속될 경우에는 계약상대방이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계약 위반을 이유로 서면통보 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전항에 의하여 본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귀책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제15조(계약해지 후 시설물에 관한 사항) 계약해지 후 해당 부지에 설치된 시설물에 대하여는 “토지소유자”와 “공원관리청”이 협의하여 그 시설물을 존치시키거나 철거한다.

제16조(계약내용의 해석 등에 관한 사항) 본 계약내용의 해석과 본 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토지소유자”와 “공원관리청”이 협의하여 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17조(계약서의 보관 등) 본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토지소유자”와 “공원관리청”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5년 10월 일

토지소유자 주소 :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성 명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대표자 이사 (인)

공원관리청 관악구청장 (인)

◈ 서초구공고 제2025-2186호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사업 공사완료 공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91호(2016.04.07.)로 결정(변경)되고, 서울특별시 서초구고시 제2025-160호(2025.09.11.)로 실시계획인가 된 반포동 19-4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에 대하여 공사완료 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따라 공사완료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3일
서 초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19-4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 명칭 :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용도변경
다. 사업의 면적 및 규모
 - 전체 면적 및 규모

구 분	내 용			비 고
지역, 지구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여객자동차정류장			변경없음
대지면적	87,111.00 ㎡			
건축규모	지하 1층, 지상 10층			총 4개동
주 용 도	운수시설(여객자동차터미널), 판매시설, 업무시설 등			변경없음
구 분	기 존	변경후	증 감	
건축면적	23,124.01㎡	23,124.01㎡	-	
연 면 적	110,634.00㎡	110,634.00㎡	-	
용 적 률 산정연면적	90,805.83㎡	90,805.83㎡	-	
건 폐 율	26.54%	26.54%	-	
용 적 율	104.24%	104.24%	-	
주차대수	법정(최고):538대		-	
	계획 : 646대	계획 : 645 대	-1대 감소	-1대 감소
조 경	법정대상 아님		-	변경없음
	계획:1,745.57㎡	계획:1,745.57㎡	-	

– 층별면적

층 별		층별면적(㎡)	비 고
본관동	지하 1층	12,698.69	변경없음
	지상 1층	10,029.97	변경없음
	지상 2층	7,031.33	변경없음
	지상 3층	10,931.50	변경없음
	지상 4층	5,491.36	변경없음
	지상 5층	9,681.43	변경없음
	지상 6층	5,155.90	변경없음
	지상 7층	8,612.27	변경없음
	지상 8층	8,080.09	변경없음
	지상 9층	7,546.06	변경없음
	지상 10층	1,722.50	변경없음
	소 계	86,981.10	변경없음
부속 상가동	지하 1층	5,523.09	변경없음
	지상 1층	3,924.30	변경없음
	지상 2층	3,534.21	변경없음
	소 계	12,981.60	변경없음
정비동	지상 1층	3,744.00	변경없음
	소 계	3,744.00	변경없음
부대 편익동	지하 1층	1,606.39	변경없음

층 별		층별면적(㎡)	비 고
	지상 1층	1,726.15	변경없음
	지상 2층	1,795.32	변경없음
	지상 3층	1,799.44	변경없음
	소 계	6,927.30	변경없음
	총 계	110,634.00	변경없음

– 시설별면적

구분	시설용도			기 존	변경후	증감(㎡) (금회-기존)	시설내비율 (%)	
				면적 (㎡)	면적 (㎡)		기 존	변경후
운수시설	주시설	대합실		6,516.67	6,516.67	-	74.99	74.99
		승강장1) (승차대기장)	실내	1,120.00	1,120.00	-		
			실외	1,235.53	1,235.53	-		
		정류장소2)	승차	2,226.12	2,226.12	-		
			하차	1,268.36	1,268.36	-		
		업무시설		8,916.44	8,916.44	-		
		세차장		912.00	912.00	-		
		박차장3)		31,520.13	31,520.13	-		
		발코니		1,085.44	1,085.44	-		
		전체공유		2,267.46	2,267.46	-		
		소 계		57,068.15	57,068.15	-		
	부대시설	정비고		2,832.00	2,832.00	-	15.86	15.86
		업무시설		975.65	975.65	-		
		주유소		600.30	600.30	-		
		기계실		6,396.58	6,396.58	-		
		폐수처리장		666.12	666.12	-		
		전체공유		599.89	599.89	-		
		소 계		12,070.54	12,070.54	-		
	편익시설	업무시설		1,726.15	1,409.59	316.56	9.15	9.15
		근린생활시설		2,690.10	3,006.66	+ 316.56		
		판매시설		1,410.58	1,410.58	-		
		복도, 홀		521.52	521.52	-		

구분	시설용도	기 존	변경후	증감(㎡) (금회-기존)	시설내비율 (%)	
		면적 (㎡)	면적 (㎡)		기 존	변경후
	전체공유	618.39	618.39	-		
	소 계	6,966.74	6,966.74	-		
	운수시설 소계	76,105.43	76,105.43	-	100.00	100.00
비운수시설	근린생활시설	2,006.93	2,006.93	-	2.81	2.81
	업무시설	8,609.14	8,609.14	-	12.06	12.06
	판매시설	38,635.65	38,635.65	-	54.13	54.13
	제2종근린생활시설	466.22	466.22	-	0.65	0.65
	종교시설	134.96	134.96	-	0.19	0.19
	복도, 홀	7,274.23	7,274.23	-	10.19	10.19
	발코니	3,386.71	3,386.71	-	4.74	4.74
	운동시설	901.84	901.84	-	1.26	1.26
	전체공유	9,826.20	9,826.20	-	13.77	13.77
	외부계단	137.13	137.13	-	0.19	0.19
	소 계	71,379.01	71,379.01	-	100.00	100.00
합 계 (운수+비운수)		147,484.44	147,484.44	옥외시설 포함	변경없음	
합 계 (건축물)		110,634.00	110,634.00			

※ 승강장(실외), 정류장소(승차, 하차), 박차장 면적은 시설면적에 산입되나, 건축연면적 산정시 제외.
※ 운수시설 면적은 '여객자동차터미널 구조 및 설비에 관한 규칙 제8조의 7' 에 따른 별표의 시설기준 이상 확보 함.

- 용도변경

구 분	해당층	시설용도	면적(㎡)	비 고
부대 편익동	지상1층	업무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 (일반음식점)	316.56	운수시설내 세부용도 변경
	운수시설내 용도변경 총면적		316.56	

라. 사업시행자의 주소, 성명
- 성명 : 서울고속버스터미널㈜ 대표: 박주형
-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포로 194

마.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 지번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 · 권리자의 성명 · 주소(변경없음)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사용 또는 수용할 면적(㎡)	소 유 자		소유권외의 권리명세 및 소유자, 권리자 성명주소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반포동	19-4	대	86,725.10	86,725.10	서울고속버스터미널(주)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포로 194(반포동)			
반포동	19-17	대	273.90	273.90	서울고속버스터미널(주)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포로 194(반포동)			
반포동	19-18	대	112.00	112.00	서울고속버스터미널(주)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포로 194(반포동)			
계			87,110.00	87,110.00					

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해당사항 없음)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초구청 도시계획과(☎02-2155-678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소고시

◈ 미래한강본부고시 제2025-446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13일
서울특별시미래한강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허가구역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에스큐엔지니어링㈜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212	서울시계내 한강(원효대교)	(선박1척) 8.77㎡	정밀안전진단을 위한 선박운항	'25. 11. 18. ~ '25. 11. 19.	'25. 11. 10.

◈ 미래한강본부고시 제2025-447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13일
서울특별시미래한강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허가구역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셀파이엔씨㈜	서울시 송파구 새말로 125	서울시계내 한강 (방화대교)	(선박2척) 483.76㎡	지반조사를 위한 선박운항	'25. 11. 24. ~ '25. 12. 31.	'25. 11. 10.

사업소공고

◈ 미래한강본부공고 제2025-445호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위반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제17조 규정을 위반으로 단속된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규정에 의해 과태료부과전에 처분내용을 통지하고자 사전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의견제출 기간 내에 이의제기등의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라며, 의견제출 기간 이후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 드립니다.

2025년 11월 13일
서울특별시미래한강본부장

1. 건　　명 :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위반 행위자(사전통지 과태료 부과고지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제17조 및 제20조
3. 공시송달 대상 : “세부내역 별첨 참조”
4. 공 고 기 간 : 2025. 11. 13. ~ 2025. 11. 26. (14일)
5. 자진납부기간 : 2025. 11. 27. ~ 2025. 12. 10. (14일)
6. 수령방법
   - 서울특별시 미래한강본부 운영총괄과에서 과태료 부과고지서를 수령하시기바랍니다.
7. 공지사항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 미래한강본부 운영총괄과(☏02-3780-08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번	세목 코드	세목명	적발 년월	사전통지 번호	반송 순번	주민/ 법인번호	성명/ 법인명	위반내용	위반 일시	부과 금액	사전 통지일	의견 제출 기한	등기 번호	반송 일자	반송 사유	공시송달 번호	공시 송달	공시 시작일	공시 종료일	우편 번호	납세자 기본주소	납세자 상세 주소	부서코드	부서 명	위반장소
1	10-2 88706	[시일반]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및 이용에 관한 조례 위반 과태료	2025-10	006427	1	761120-*******	한*화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 *자동차	2025-09-20 14:11	50,000	2025-10-13	2025-12-10	1078 8346 3673 6	2025-10-24	기타	제2025-445호	1	2025-11-06	2025-11-13	2025-11-26	17529	경기도안성시일죽면	()	6114357	운영총괄과	뚝섬한강공원 둔치창고앞 주변
2	10-2 88706	[시일반]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및 이용에 관한 조례 위반과태료	2025-10	006431	1	721101-*******	이*호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 *이륜차	2025-09-23 14:53	50,000	2025-10-13	2025-12-10	1078 8346 3672 1	2025-10-22	기타	제2025-445호	1	2025-11-06	2025-11-13	2025-11-26	07811	서울특별시강서구마곡중앙로	()	6114357	운영총괄과	양화한강공원 양화공원자전거쉼터
3	10-2 88706	[시일반]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및 이용에 관한 조례 위반과태료	2025-10	006440	1	821106-*******	한*희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 *자동차	2025-09-13 19:36	50,000	2025-10-13	2025-12-10	1078 8346 3673 9	2025-10-23	기타	제2025-445호	1	2025-11-06	2025-11-13	2025-11-26	03951	서울특별시마포구성암로	()	6114357	운영총괄과	뚝섬한강공원 자양동 앙나들목 주변
4	10-2 88706	[시일반]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및 이용에 관한 조례 위반과태료	2025-10	006452	1	630708-*******	송*찬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 *자동차	2025-09-20 17:28	50,000	2025-10-13	2025-12-10	1078 8346 3671 0	2025-10-24	기타	제2025-445호	1	2025-11-06	2025-11-13	2025-11-26	12066	경기도남양주시진접읍	()	6114357	운영총괄과	뚝섬한강공원 둔치창고앞 주변
5	10-2 88706	[시일반]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및 이용에 관한 조례 위반과태료	2025-10	006454	1	851028-*******	김*지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 *자동차	2025-09-20 19:41	50,000	2025-10-13	2025-12-10	1078 8346 3669 5	2025-10-23	기타	제2025-445호	1	2025-11-06	2025-11-13	2025-11-26	14529	경기도부천시원미구	()	6114357	운영총괄과	뚝섬한강공원 원드서장입구 주변

순번	세목 코드	세목명	적발 년월	사전통지 번호	반송 순번	주민/ 법인번호	성명/ 법인명	위반내용	위반 일시	부과 금액	사전 통지일	의견 제출 기한	등기 번호	반송 일자	반송 사유	공시송달 번호	공시 송달	공시 송달일	공시 시작일	공시 종료일	우편 번호	납세자 기본주소	납세자 상세 주소	부서코드	부서 명	위반장소
6	10-2 88706	[시일반]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및 이용에 관한 조례 위반 과태료	2025-10	006457	1	520810-*******	서*실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 *자동차	2025-09-20 19:55	50,000	2025-10-13	2025-12-10	1078 8346 3670 9	2025-10-23	기타	제2025-445호	1	2025-11-06	2025-11-13	2025-11-26	08783	서울특별시 관악구 쑥고개로 17길	()	6114357	운영총괄과	뚝섬한강공원 윈드서핑장 주변
7	10-2 88706	[시일반]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및 이용에 관한 조례 위반 과태료	2025-10	006458	1	870716-*******	정*준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 *자동차	2025-09-20 19:54	50,000	2025-10-13	2025-12-10	1078 8346 3672 5	2025-10-23	기타	제2025-445호	1	2025-11-06	2025-11-13	2025-11-26	17181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	6114357	운영총괄과	뚝섬한강공원 윈드서핑장 주변
8	10-2 88706	[시일반]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및 이용에 관한 조례 위반 과태료	2025-10	006459	1	881226-*******	강*우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 *자동차	2025-09-20 19:59	50,000	2025-10-13	2025-12-10	1078 8346 3669 2	2025-10-24	기타	제2025-445호	1	2025-11-06	2025-11-13	2025-11-26	11457	경기도 양주시 고암로 2라길	()	6114357	운영총괄과	뚝섬한강공원 윈드서핑장 주변
9	10-2 88706	[시일반]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및 이용에 관한 조례 위반 과태료	2025-10	006461	1	921014-*******	유*영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 *이륜차	2025-09-20 20:14	50,000	2025-10-13	2025-12-10	1078 8346 3671 5	2025-10-22	기타	제2025-445호	1	2025-11-06	2025-11-13	2025-11-26	12284	경기도 남양주시 산지금로 123번길	()	6114357	운영총괄과	뚝섬한강공원 제2주차장 옆 주변
10	10-2 88706	[시일반]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및 이용에 관한 조례 위반 과태료	2025-10	006462	1	940306-*******	서*훈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 *이륜차	2025-09-20 20:15	50,000	2025-10-13	2025-12-10	1078 8346 3670 8	2025-10-23	기타	제2025-445호	1	2025-11-06	2025-11-13	2025-11-26	06358	서울특별시 강남구 양재대로	()	6114357	운영총괄과	뚝섬한강공원 제2주차장 옆 주변

순번	세목 코드	세목명	적발 년월	사전통지 번호	반송 순번	주민/ 법인번호	성명/ 법인명	위반내용	위반 일시	부과 금액	사전 통지일	의견 제출 기한	등기 번호	반송 일자	반송 사유	공시송달 번호	공시 송달	공시 송달일	공시 시작일	공시 종료일	우편 번호	납세자 기본주소	납세자 상세 주소	부서코드	부서 명	위반장소
11	10-2 88706	[시일반] 서울특별시 시한강공원 보전및 이용에 관한 조례 위반과태료	2025-10	006472	1	990514-*******	김*희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 *자동차	2025-09-20 19:58	50,000	2025-10-13	2025-12-10	1078 8346 3669 7	2025-10-23	기타	제2025-445호	1	2025-11-06	2025-11-13	2025-11-26	18273	경기도화성시남양읍	()	6114357	운영총괄과	뚝섬한강공원 서평장 주변
12	10-2 88706	[시일반] 서울특별시 시한강공원 보전및 이용에 관한 조례 위반과태료	2025-10	006473	1	810227-*******	김*철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 *자동차	2025-09-20 20:06	50,000	2025-10-13	2025-12-10	1078 8346 3669 6	2025-10-23	기타	제2025-445호	1	2025-11-06	2025-11-13	2025-11-26	02715	서울특별시성북구길음로13길	()	6114357	운영총괄과	뚝섬한강공원 자양중앙나들목 주변
13	10-2 88706	[시일반] 서울특별시 시한강공원 보전및 이용에 관한 조례 위반과태료	2025-10	006475	1	061226-*******	TA***** **N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 *이륜차	2025-09-20 20:18	50,000	2025-10-13	2025-12-10	1078 8346 3669 1	2025-10-23	기타	제2025-445호	1	2025-11-06	2025-11-13	2025-11-26	05015	서울특별시광진구동일로26길	()	6114357	운영총괄과	뚝섬한강공원 제2주차장 주변
14	10-2 88706	[시일반] 서울특별시 시한강공원 보전및 이용에 관한 조례 위반과태료	2025-10	006476	1	851020-*******	황*호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 *이륜차	2025-09-20 19:45	50,000	2025-10-13	2025-12-10	1078 8346 3674 5	2025-10-24	기타	제2025-445호	1	2025-11-06	2025-11-13	2025-11-26	11620	경기도의정부시안골로	()	6114357	운영총괄과	뚝섬한강공원 서평장 주변
15	10-2 88706	[시일반] 서울특별시 시한강공원 보전및 이용에 관한 조례 위반과태료	2025-10	006478	1	930125-*******	한*호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 *자동차	2025-09-20 19:53	50,000	2025-10-13	2025-12-10	1078 8346 3674 0	2025-10-23	기타	제2025-445호	1	2025-11-06	2025-11-13	2025-11-26	14538	경기도부천시원미구	()	6114357	운영총괄과	뚝섬한강공원 서평장 주변

순번	세목 코드	세목명	적발 년월	사전통지 번호	반송 순번	주민/ 법인번호	성명/ 법인명	위반내용	위반 일시	부과 금액	사전 통지일	의견 제출 기한	등기 번호	반송 일자	반송 사유	공시송달 번호	공시 송달	공시 송달일	공시 시작일	공시 종료일	우편 번호	납세자 기본주소	납세자 상세 주소	부서코드	부서 명	위반장소
16	10-2 88706	[시일반] 서울특별시 시한강공원 보전및 이용에관한 위반과태료	2025-10	006480	1	880108-*******	이*범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 *자동차	2025-09-20 19:51	50,000	2025-10-13	2025-12-10	1078 8346 3671 9	2025-10-23	기타	제2025-445호	1	2025-11-06	2025-11-13	2025-11-26	21089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대로 120번길	()	6114357	운영총괄과	뚝섬한강공원 서핑장 주변
17	10-2 88706	[시일반] 서울특별시 시한강공원 보전및 이용에관한 위반과태료	2025-10	006483	1	621014-*******	이*성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 *이륜차	2025-09-20 19:47	50,000	2025-10-13	2025-12-10	1078 8346 3672 0	2025-10-23	기타	제2025-445호	1	2025-11-06	2025-11-13	2025-11-26	14494	경기도부천시오정구	()	6114357	운영총괄과	뚝섬한강공원 서핑장 주변
18	10-2 88706	[시일반] 서울특별시 시한강공원 보전및 이용에관한 위반과태료	2025-10	006484	1	871220-*******	함*윤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 *자동차	2025-09-20 19:46	50,000	2025-10-13	2025-12-10	1078 8346 3674 1	2025-10-22	수취인 부재	제2025-445호	1	2025-11-06	2025-11-13	2025-11-26	13824	경기도과천시과천대로2길	()	6114357	운영총괄과	뚝섬한강공원 서핑장 주변
19	10-2 88706	[시일반] 서울특별시 시한강공원 보전및 이용에관한 위반과태료	2025-10	006486	1	811208-*******	최*경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 *이륜차	2025-09-20 20:57	50,000	2025-10-13	2025-12-10	1078 8346 3673 0	2025-10-23	기타	제2025-445호	1	2025-11-06	2025-11-13	2025-11-26	04976	서울특별시 사랑진구 자양로	()	6114357	운영총괄과	뚝섬한강공원 뚝섬나들목입구 주변
20	10-2 88706	[시일반] 서울특별시 시한강공원 보전및 이용에관한 위반과태료	2025-10	006490	1	800807-*******	배*환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 *자동차	2025-09-07 15:03	50,000	2025-10-14	2025-12-10	1078 8346 4634 8	2025-10-24	폐문부재	제2025-445호	1	2025-11-06	2025-11-13	2025-11-26	12713	경기도광주시퇴촌면	()	6114357	운영총괄과	뚝섬한강공원 강촌입차 단기앞 주변

순번	제목 코드	제목	적발 년월	사전통지 번호	반송 순번	주민/법인번호	성명/법인명	위반내용	위반 일시	부과 금액	사전 통지일	의견 제출 기한	등기 번호	반송 일자	반송 사유	공시송달 번호	공시 송달	공시 송달일	공시 시작일	공시 종료일	우편 번호	납세자 기본주소	납세자 상세 주소	부서코드	부서명	위반장소
21	10-2 88706	[시일반] 서울특별시 시한강공원 보전및 이용에 관한 조례 위반 과태료	2025-10	006492	1	790728-*******	차*준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 *자동차	2025-09-27 18:28	50,000	2025-10-14	2025-12-10	1078 8346 4641 9	2025-10-24	기타	제2025-445호	1	2025-11-06	2025-11-13	2025-11-26	12197	경기도남양주시화도읍	()	6114357	운영총괄과	양화한강공원내 1호매점 화장실 부근
22	10-2 88706	[시일반] 서울특별시 시한강공원 보전및 이용에 관한 조례 위반 과태료	2025-10	006493	1	621214-*******	전*봉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 *이륜차	2025-09-27 18:42	50,000	2025-10-14	2025-12-10	1078 8346 4640 3	2025-10-24	기타	제2025-445호	1	2025-11-06	2025-11-13	2025-11-26	07220	서울특별시영등포구당산로38길	()	6114357	운영총괄과	양화한강공원내 1호매점 화장실 부근
23	10-2 88706	[시일반] 서울특별시 시한강공원 보전및 이용에 관한 조례 위반 과태료	2025-10	006496	1	970506-*******	김*정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 *자동차	2025-09-27 19:23	50,000	2025-10-14	2025-12-10	1078 8346 4631 1	2025-10-23	기타	제2025-445호	1	2025-11-06	2025-11-13	2025-11-26	07776	서울특별시강서구월정로20길	()	6114357	운영총괄과	양화한강공원내 양화안내센터 주차장
24	10-2 88706	[시일반] 서울특별시 시한강공원 보전및 이용에 관한 조례 위반 과태료	2025-10	006503	1	720719-*******	아*제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 *자동차	2025-09-27 18:07	50,000	2025-10-14	2025-12-10	1078 8346 4639 3	2025-10-24	기타	제2025-445호	1	2025-11-06	2025-11-13	2025-11-26	22696	인천광역시서구승학로506번길	()	6114357	운영총괄과	이촌한강공원 내 서빙고 나들목 쥐변
25	10-2 88706	[시일반] 서울특별시 시한강공원 보전및 이용에 관한 조례 위반 과태료	2025-10	006506	1	820509-*******	ZH**** ***NG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 *자동차	2025-09-27 18:12	50,000	2025-10-14	2025-12-10	1078 8346 4593 3	2025-10-24	폐문부재	제2025-445호	1	2025-11-06	2025-11-13	2025-11-26	15218	경기도안산시단원구	()	6114357	운영총괄과	이촌한강공원 내 서빙고 나들목 쥐변

순번	제목 코드	제목	작발 년월	사전통지 번호	반송 순번	주민/ 법인번호	성명/ 법인명	위반내용	위반 일시	부과 금액	사전 통지일	의견 제출 기한	등기 번호	반송 일자	반송 사유	공시송달 번호	공시 송달	공시 송달일	공시 시작일	공시 종료일	우편 번호	납세자 기본주소	납세자 상세 주소	부서코드	부서 명	위반장소
26	10-2 88706	[시일반] 서울특별시 시한강공원 보전및 이용에 관한 조례 위반과태료	2025-10	006513	1	790731-*******	이*호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 *자동차	2025-09-27 18:26	50,000	2025-10-14	2025-12-10	1078 8346 4639 1	2025-10-24	기타	제2025-445호	1	2025-11-06	2025-11-13	2025-11-26	06345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	6114357	운영총괄과	이촌한강공원 내 서빙고나들목 쥐변
27	10-2 88706	[시일반] 서울특별시 시한강공원 보전및 이용에 관한 조례 위반과태료	2025-10	006515	1	740318-*******	장*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 *자동차	2025-09-27 18:36	50,000	2025-10-14	2025-12-10	1078 8346 4640 1	2025-10-24	기타	제2025-445호	1	2025-11-06	2025-11-13	2025-11-26	04984	서울특별시 서광진구 광나루로	()	6114357	운영총괄과	이촌한강공원 내 서빙고나들목 쥐변
28	10-2 88706	[시일반] 서울특별시 시한강공원 보전및 이용에 관한 조례 위반과태료	2025-10	006516	1	801010-*******	김*호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 *자동차	2025-09-27 18:37	50,000	2025-10-14	2025-12-10	1078 8346 4632 7	2025-10-24	기타	제2025-445호	1	2025-11-06	2025-11-13	2025-11-26	21561	인천광역시 서남동구 구월로	()	6114357	운영총괄과	이촌한강공원 내 서빙고나들목 쥐변
29	10-2 88706	[시일반] 서울특별시 시한강공원 보전및 이용에 관한 조례 위반과태료	2025-10	006520	1	830403-*******	전*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 *자동차	2025-09-27 18:13	50,000	2025-10-14	2025-12-10	1078 8346 4640 2	2025-10-24	기타	제2025-445호	1	2025-11-06	2025-11-13	2025-11-26	01626	서울특별시 서노원구 동일로24 2나길	()	6114357	운영총괄과	이촌한강공원 내 서빙고나들목 쥐변
30	10-2 88706	[시일반] 서울특별시 시한강공원 보전및 이용에 관한 조례 위반과태료	2025-10	006521	1	770514-*******	송*혜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 *자동차	2025-09-27 18:15	50,000	2025-10-14	2025-12-10	1078 8346 4635 5	2025-10-24	기타	제2025-445호	1	2025-11-06	2025-11-13	2025-11-26	24473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내면	()	6114357	운영총괄과	이촌한강공원 내 서빙고나들목 쥐변

순번	제목 코드	제목	적발 년월	사전통지 번호	반송 순번	주민/법인번호	성명/법인명	위반내용	위반 일시	부과 금액	사전 통지일	의견 제출 기한	등기 번호	반송 일자	반송 사유	공시송달 번호	공시 송달	공시 송달일	공시 시작일	공시 종료일	우편 번호	납세자 기본주소	납세자 상세주소	부서코드	부서명	위반장소
31	10-2 88706	[시일반] 서울특별시 시한강공원 보전및 이용에 관한 조례 위반 과태료	2025-10	006524	1	791215-*******	박*준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 *자동차	2025-09-27 18:19	50,000	2025-10-14	2025-12-10	1078 8346 4633 8	2025-10-24	기타	제2025-445호	1	2025-11-06	2025-11-13	2025-11-26	06216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	6114357	운영총괄과	이촌한강공원 내 서빙고 나들목 쥐변
32	10-2 88706	[시일반] 서울특별시 시한강공원 보전및 이용에 관한 조례 위반 과태료	2025-10	006528	1	870210-*******	김*영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 *자동차	2025-09-27 18:27	50,000	2025-10-14	2025-12-10	1078 8346 4630 5	2025-10-27	기타	제2025-445호	1	2025-11-06	2025-11-13	2025-11-26	11812	경기도의정부시송양로	()	6114357	운영총괄과	이촌한강공원 내 서빙고 나들목 쥐변
33	10-2 88706	[시일반] 서울특별시 시한강공원 보전및 이용에 관한 조례 위반 과태료	2025-10	006529	1	940909-*******	NA**** *DO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 *자동차	2025-09-27 18:29	50,000	2025-10-14	2025-12-10	1078 8346 4593 0	2025-10-23	기타	제2025-445호	1	2025-11-06	2025-11-13	2025-11-26	17868	경기도평택시현신3길	()	6114357	운영총괄과	이촌한강공원 내 서빙고 나들목 쥐변
34	10-2 88706	[시일반] 서울특별시 시한강공원 보전및 이용에 관한 조례 위반 과태료	2025-10	006531	1	660205-*******	김*석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 *자동차	2025-09-27 18:35	50,000	2025-10-14	2025-12-10	1078 8346 4632 9	2025-10-24	기타	제2025-445호	1	2025-11-06	2025-11-13	2025-11-26	16865	경기도용인시수지구	()	6114357	운영총괄과	이촌한강공원 내 서빙고 나들목 쥐변
35	10-2 88706	[시일반] 서울특별시 시한강공원 보전및 이용에 관한 조례 위반 과태료	2025-10	006532	1	780711-*******	김*봉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 *자동차	2025-09-27 18:45	50,000	2025-10-14	2025-12-10	1078 8346 4594 2	2025-10-24	기타	제2025-445호	1	2025-11-06	2025-11-13	2025-11-26	16925	경기도용인시수지구	()	6114357	운영총괄과	이촌한강공원 내 서빙고 나들목 쥐변

순번	세목 코드	세목명	적발 년월	사전통지 번호	반송 순번	주민/ 법인번호	성명/ 법인명	위반내용	위반 일시	부과 금액	사전 통지일	의견 제출 기한	등기 번호	반송 일자	반송 사유	공시송달 번호	공시 송달	공시 송달일	공시 시작일	공시 종료일	우편 번호	납세자 기본주소	납세자 상세 주소	부서코드	부서 명	위반장소
36	10-2 88706	[시일반]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및 이용에 관한 조례 위반 과태료	2025-10	006534	1	890225-*******	임*준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 *자동차	2025-09-27 18:12	50,000	2025-10-14	2025-12-10	1078 8346 4639 7	2025-10-23	폐문부재	제2025-445호	1	2025-11-06	2025-11-13	2025-11-26	28327	충청북도 청주시청원구	()	6114357	운영총괄과	이촌한강공원 내 서빙고나들목 쥐똥
37	10-2 88706	[시일반]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및 이용에 관한 조례 위반 과태료	2025-10	006535	1	801026-*******	윤*우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 *자동차	2025-09-27 18:17	50,000	2025-10-14	2025-12-10	1078 8346 4637 1	2025-10-24	기타	제2025-445호	1	2025-11-06	2025-11-13	2025-11-26	08861	서울특별시 서관악구 난곡로	()	6114357	운영총괄과	이촌한강공원 내 서빙고나들목 쥐똥
38	10-2 88706	[시일반]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및 이용에 관한 조례 위반 과태료	2025-10	006538	1	740225-*******	이*희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 *자동차	2025-09-27 18:23	50,000	2025-10-14	2025-12-10	1078 8346 4638 0	2025-10-24	기타	제2025-445호	1	2025-11-06	2025-11-13	2025-11-26	42148	대구광역시 수성구 들안로28길	()	6114357	운영총괄과	이촌한강공원 내 서빙고나들목 쥐똥
39	10-2 88706	[시일반]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및 이용에 관한 조례 위반 과태료	2025-10	006542	1	010307-*******	박*호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 *자동차	2025-09-27 18:33	50,000	2025-10-14	2025-12-10	1078 8346 4634 1	2025-10-24	기타	제2025-445호	1	2025-11-06	2025-11-13	2025-11-26	32757	충청남도 금산군부리면	()	6114357	운영총괄과	이촌한강공원 내 서빙고나들목 쥐똥
40	10-2 88706	[시일반]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및 이용에 관한 조례 위반 과태료	2025-10	006545	1	820924-*******	김*호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 *자동차	2025-09-27 18:39	50,000	2025-10-14	2025-12-10	1078 8346 4632 6	2025-10-24	기타	제2025-445호	1	2025-11-06	2025-11-13	2025-11-26	24331	강원특별자치도 천사효자로150번길	()	6114357	운영총괄과	이촌한강공원 내 테니스장옆

순번	세목 코드	세목명	적발 년월	사전통지 번호	반송 순번	주민/ 법인번호	성명/ 법인명	위반내용	위반 일시	부과 금액	사전 통지일	의견 제출 기한	등기 번호	반송 일자	반송 사유	공시송달 번호	공시 송달	공시 송달일	공시 시작일	공시 종료일	우편 번호	납세자 기본주소	납세자 상세 주소	부서코드	부서 명	위반장소
41	10-2 88706	[시일반]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위반과태료	2025-10	006554	1	970417-*******	양*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 *자동차	2025-09-27 11:25	50,000	2025-10-14	2025-12-10	1078 8346 4636 1	2025-10-23	기타	제2025-445호	1	2025-11-06	2025-11-13	2025-11-26	31994	충청남도 서산시 한마음6로	()	6114357	운영총괄과	이촌한강공원 내 4주차장 진출입로 주변(강변북로 진입로)
42	10-2 88706	[시일반]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위반과태료	2025-10	006556	1	680306-*******	최*숙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 *자동차	2025-09-27 11:22	50,000	2025-10-14	2025-12-10	1078 8346 4642 2	2025-10-27	폐문부재	제2025-445호	1	2025-11-06	2025-11-13	2025-11-26	10263	경기도 고양시덕양구	()	6114357	운영총괄과	이촌한강공원 내 4주차장 진출입로 주변(강변북로 진입로)
43	10-2 88706	[시일반]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위반과태료	2025-10	006558	1	860102-*******	박*훈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 *자동차	2025-09-27 18:07	50,000	2025-10-14	2025-12-10	1078 8346 4633 9	2025-10-24	폐문부재	제2025-445호	1	2025-11-06	2025-11-13	2025-11-26	04323	서울특별시 서울숲길 한강대로	()	6114357	운영총괄과	이촌한강공원 내 자연학습장 옆

순번	세목코드	세목명	적발년월	사전통지번호	반송순번	주민/법인번호	성명/법인명	위반내용	위반일시	부과금액	사전통지일	의견제출기한	등기번호	반송일자	반송사유	공시송달번호	공시송달	공시송달일	공시시작일	공시종료일	우편번호	납세자기본주소	납세자상세주소	부서코드	부서명	위반장소
44	10-2 88706	[시일반] 서울특별시 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25-10	006561	1	990717-*******	김*구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 *자동차	2025-09-27 18:10	50,000	2025-10-14	2025-12-10	1078 8346 4630 9	2025-10-23	폐문부재	제2025-445호	1	2025-11-06	2025-11-13	2025-11-26	13947	경기도안양시동안구	()	6114357	운영총괄과	이촌한강공원 내 자연학습장 옆
45	10-2 88706	[시일반] 서울특별시 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25-10	006569	1	630717-*******	김*숙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 *자동차	2025-09-27 18:19	50,000	2025-10-14	2025-12-10	1078 8346 4594 0	2025-10-24	기타	제2025-445호	1	2025-11-06	2025-11-13	2025-11-26	05320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천면로 41길	()	6114357	운영총괄과	이촌한강공원 내 피크닉 장텐트 존 옆
46	10-2 88706	[시일반] 서울특별시 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25-10	006575	1	1101111-*******	현**** ****회사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 *자동차	2025-09-27 18:25	50,000	2025-10-14	2025-12-10	1078 8346 4643 7	2025-10-27	기타	제2025-445호	1	2025-11-06	2025-11-13	2025-11-26	6312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삼무로	()	6114357	운영총괄과	이촌한강공원 내 피크닉 장 옆
47	10-2 88706	[시일반] 서울특별시 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25-10	006579	1	910515-*******	박*애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 *자동차	2025-09-27 18:30	50,000	2025-10-14	2025-12-10	1078 8346 4634 5	2025-10-21	수취인 불명	제2025-445호	1	2025-11-06	2025-11-13	2025-11-26	0611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22길	()	6114357	운영총괄과	이촌한강공원 내 피크닉 장 옆

순번	세목 코드	세목명	적발 년월	사전통지 번호	반송 순번	주민/ 법인번호	성명/ 법인명	위반내용	위반 일시	부과 금액	사전 통지일	의견 제출 기한	등기 번호	반송 일자	반송 사유	공시송달 번호	공시 송달	공시 송달일	공시 시작일	공시 종료일	우편 번호	납세자 기본주소	납세자 상세 주소	부서코드	부서 명	위반장소
48	10-2 88706	[시일반] 서울특별시 시한강공원 보전및 이용에관한 위반과태료	2025-10	006581	1	950411-*******	이*영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 *자동차	2025-09-27 18:32	50,000	2025-10-14	2025-12-10	1078 8346 4637 5	2025-10-23	기타	제2025-445호	1	2025-11-06	2025-11-13	2025-11-26	2218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낙섬중로	()	6114357	녹색 성장 과	이촌한강공원 내 피크닉장 옆
49	10-2 88706	[시일반] 서울특별시 시한강공원 보전및 이용에관한 위반과태료	2025-10	006583	1	841104-*******	이*태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 *자동차	2025-09-27 18:34	50,000	2025-10-14	2025-12-10	1078 8346 4638 5	2025-10-24	폐문부재	제2025-445호	1	2025-11-06	2025-11-13	2025-11-26	62246	광주광역시 광산구 왕버들로 132번길	()	6114357	녹색 성장 과	이촌한강공원 내 피크닉장 옆
50	10-2 88706	[시일반] 서울특별시 시한강공원 보전및 이용에관한 위반과태료	2025-10	006587	1	630810-*******	양*영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 *자동차	2025-09-27 18:44	50,000	2025-10-14	2025-12-10	1078 8346 4635 9	2025-10-23	폐문부재	제2025-445호	1	2025-11-06	2025-11-13	2025-11-26	13954	경기도안양시 양소동안구	()	6114357	녹색 성장 과	이촌한강공원 내 피크닉장 옆
51	10-2 88706	[시일반] 서울특별시 시한강공원 보전및 이용에관한 위반과태료	2025-10	006588	1	900908-*******	TS**** ****LD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 *자동차	2025-09-27 18:46	50,000	2025-10-14	2025-12-10	1078 8346 4593 2	2025-10-27	기타	제2025-445호	1	2025-11-06	2025-11-13	2025-11-26	11476	경기도양주시옥정동로5길	()	6114357	녹색 성장 과	이촌한강공원 내 피크닉장 옆
52	10-2 88706	[시일반] 서울특별시 시한강공원 보전및 이용에관한 위반과태료	2025-10	006593	1	110111-*******	현**** ****회사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 *자동차	2025-09-27 18:55	50,000	2025-10-14	2025-12-10	1078 8346 4643 8	2025-10-27	기타	제2025-445호	1	2025-11-06	2025-11-13	2025-11-26	6312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삼무로	()	6114357	녹색 성장 과	이촌한강공원 내 피크닉장 옆

순번	세목 코드	세목명	적발 년월	사전통지 번호	반송 순번	주민/ 법인번호	성명/ 법인명	위반내용	위반 일시	부과 금액	사전 통지일	의견 제출 기한	등기 번호	반송 일자	반송 사유	공시송달 번호	공시 송달	공시 송달일	공시 시작일	공시 종료일	우편 번호	납세자 기본주소	납세자 상세 주소	부서코드	부서 명	위반장소
53	10-2 88706	[시일반] 서울특별시 시한강공원 보전및 이용에 관한 조례 위반 과태료	2025-10	006594	1	040820-*******	김*민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 *자동차	2025-09-27 18:57	50,000	2025-10-14	2025-12-10	1078 8346 4632 4	2025-10-27	기타	제2025-445호	1	2025-11-06	2025-11-13	2025-11-26	16619	경기도수원시권선구	()	6114357	운영총괄과	이촌한강공원 내 피크닉장 옆
54	10-2 88706	[시일반] 서울특별시 시한강공원 보전및 이용에 관한 조례 위반 과태료	2025-10	006605	1	870128-*******	한*희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 *자동차	2025-09-21 16:16	50,000	2025-10-14	2025-12-10	1078 8346 4643 3	2025-10-24	기타	제2025-445호	1	2025-11-06	2025-11-13	2025-11-26	05507	서울특별시송파구올림픽로	()	6114357	운영총괄과	뚝섬한강공원 윈드서핑장 주변
55	10-2 88706	[시일반] 서울특별시 시한강공원 보전및 이용에 관한 조례 위반 과태료	2025-10	006606	1	560518-*******	정*연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 *자동차	2025-09-21 16:18	50,000	2025-10-14	2025-12-10	1078 8346 4640 6	2025-10-21	수취인 불명	제2025-445호	1	2025-11-06	2025-11-13	2025-11-26	06058	서울특별시강남구언주로13 6길	()	6114357	운영총괄과	뚝섬한강공원 윈드서핑장앞 안전지대 주변
56	10-2 88706	[시일반] 서울특별시 시한강공원 보전및 이용에 관한 조례 위반 과태료	2025-10	006609	1	780301-*******	김*태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 *자동차	2025-09-21 17:00	50,000	2025-10-14	2025-12-10	1078 8346 4630 3	2025-10-24	기타	제2025-445호	1	2025-11-06	2025-11-13	2025-11-26	02766	서울특별시성북구장월로	()	6114357	운영총괄과	뚝섬한강공원 윈드서핑장 주변
57	10-2 88706	[시일반] 서울특별시 시한강공원 보전및 이용에 관한 조례 위반 과태료	2025-10	006613	1	760409-*******	한*식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 *자동차	2025-09-21 17:16	50,000	2025-10-14	2025-12-10	1078 8346 4643 2	2025-10-24	기타	제2025-445호	1	2025-11-06	2025-11-13	2025-11-26	06230	서울특별시강남구언주로63 길	()	6114357	운영총괄과	뚝섬한강공원 자양나들목앞 주변

순번	세목 코드	세목명	적발 년월	사전통지 번호	반송 순번	주민/법인번호	성명/법인명	위반내용	위반 일시	부과 금액	사전 통지일	의견 제출 기한	등기 번호	반송 일자	반송 사유	공시송달 번호	공시 송달	공시 송달일	공시 시작일	공시 종료일	우편 번호	납세자 기본주소	납세자 상세 주소	부서코드	부서 명	위반장소
58	10-2 88706	[시일반] 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25-10	006614	1	940807-*******	박*수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 *자동차	2025-09-21 17:18	50,000	2025-10-14	2025-12-10	1078 8346 4634 4	2025-10-24	기타	제2025-445호	1	2025-11-06	2025-11-13	2025-11-26	04925	서울특별시광진구 옹마산로 3길	()	6114357	운영총괄과	뚝섬한강공원 자양나들목앞 주변
59	10-2 88706	[시일반] 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25-10	006617	1	030301-*******	강*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 *이륜차	2025-09-21 18:23	50,000	2025-10-14	2025-12-10	1078 8346 4593 7	2025-10-23	기타	제2025-445호	1	2025-11-06	2025-11-13	2025-11-26	02423	서울특별시동대문구 구천천로	()	6114357	운영총괄과	뚝섬한강공원 자양나들목앞 주변
60	10-2 88706	[시일반] 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25-10	006618	1	780602-*******	박*일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 *자동차	2025-09-21 18:25	50,000	2025-10-14	2025-12-10	1078 8346 4634 2	2025-10-27	기타	제2025-445호	1	2025-11-06	2025-11-13	2025-11-26	11812	경기도의정부시용민로	()	6114357	운영총괄과	뚝섬한강공원 자양나들목앞 주변
61	10-2 88706	[시일반] 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25-10	006619	1	930726-*******	금*억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 *자동차	2025-09-21 18:28	50,000	2025-10-14	2025-12-10	1078 8346 4593 9	2025-10-23	기타	제2025-445호	1	2025-11-06	2025-11-13	2025-11-26	48432	부산광역시남구수영로325 번길	()	6114357	운영총괄과	뚝섬한강공원 자양나들목앞 주변
62	10-2 88706	[시일반] 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25-10	006621	1	901113-*******	김*환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 *이륜차	2025-09-21 18:48	50,000	2025-10-14	2025-12-10	1078 8346 4631 6	2025-10-20	주소불명	제2025-445호	1	2025-11-06	2025-11-13	2025-11-26	021111	서울특별시중랑구 중랑역로 3나길	()	6114357	운영총괄과	뚝섬한강공원 정미원화장실앞 주변

순번	세목코드	세목명	적발년월	사전통지번호	반송순번	주민/법인번호	성명/법인명	위반내용	위반일시	부과금액	사전통지일	의견제출기한	등기번호	반송일자	반송사유	공시송달번호	공시송달	공시송달일	공시시작일	공시종료일	우편번호	납세자기본주소	납세자상세주소	부서코드	부서명	위반장소
63	10-2 88706	[시일반] 서울특별시 시한강공원 보전및 이용에관한 조례 위반과태료	2025-10	006625	1	810227-*******	김*태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 *자동차	2025-09-21 21:16	50,000	2025-10-14	2025-12-10	1078 8346 4631 3	2025-10-24	기타	제2025-445호	1	2025-11-06	2025-11-13	2025-11-26	12207	경기도남양주시와부읍	()	6114357	영업운송과	뚝섬한강공원 출입통제소옆 안전지대 주변
64	10-2 88706	[시일반] 서울특별시 시한강공원 보전및 이용에관한 조례 위반과태료	2025-10	006628	1	900417-*******	홍*정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 *자동차	2025-09-21 22:17	50,000	2025-10-14	2025-12-10	1078 8346 4643 9	2025-10-24	기타	제2025-445호	1	2025-11-06	2025-11-13	2025-11-26	04978	서울특별시광진구광나루로	()	6114357	영업운송과	뚝섬한강공원 자양나들목 주변
65	10-2 88706	[시일반] 서울특별시 시한강공원 보전및 이용에관한 조례 위반과태료	2025-10	006640	1	680329-*******	손*라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 *이륜차	2025-09-23 17:05	50,000	2025-10-14	2025-12-10	1078 8346 4635 4	2025-10-24	기타	제2025-445호	1	2025-11-06	2025-11-13	2025-11-26	06010	서울특별시광진구군자로6길	()	6114357	영업운송과	뚝섬한강공원 안내센터앞 주변
66	10-2 88706	[시일반] 서울특별시 시한강공원 보전및 이용에관한 조례 위반과태료	2025-10	006644	1	750401-*******	정*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 *자동차	2025-09-26 18:41	50,000	2025-10-14	2025-12-10	1078 8346 4640 9	2025-10-24	기타	제2025-445호	1	2025-11-06	2025-11-13	2025-11-26	12223	경기도남양주시경춘로1286 번안길	()	6114357	영업운송과	뚝섬한강공원 출입통제소옆 주변

순번	세목 코드	세목명	적발 년월	사전통지 번호	반송 순번	주민/ 법인번호	성명/ 법인명	위반내용	위반 일시	부과 금액	사전 통지일	의견 제출 기한	등기 번호	반송 일자	반송 사유	공시송달 번호	공시 송달	공시 송달일	공시 시작일	공시 종료일	우편 번호	납세자 기본주소	납세자 상세 주소	부서코드	부서 명	위반장소
67	10-2 88706	[시일반] 서울특별시 시한강공원 보전및 이용에관한 위반과태료	2025-10	006646	1	830930-*******	김*리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 *자동차	2025-09-27 10:16	50,000	2025-10-14	2025-12-10	1078 8346 4631 7	2025-10-24	기타	제2025-445호	1	2025-11-06	2025-11-13	2025-11-26	04978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	6114357	운영총괄과	뚝섬한강공원 윈드서핑장 주변
68	10-2 88706	[시일반] 서울특별시 시한강공원 보전및 이용에관한 위반과태료	2025-10	006660	1	001119-*******	PH**** **NH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 *이륜차	2025-09-27 18:11	50,000	2025-10-14	2025-12-10	1078 8346 4593 1	2025-10-24	기타	제2025-445호	1	2025-11-06	2025-11-13	2025-11-26	04999	서울특별시 광진구 면목로1길	()	6114357	운영총괄과	뚝섬한강공원 제3주차장 주변
69	10-2 88706	[시일반] 서울특별시 시한강공원 보전및 이용에관한 위반과태료	2025-10	006664	1	760506-*******	이*미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 *자동차	2025-09-27 18:44	50,000	2025-10-14	2025-12-10	1078 8346 4637 7	2025-10-23	기타	제2025-445호	1	2025-11-06	2025-11-13	2025-11-26	02625	서울특별시 서초대로 구한천로 24길	()	6114357	운영총괄과	뚝섬한강공원 자양나들목 주변
70	10-2 88706	[시일반] 서울특별시 시한강공원 보전및 이용에관한 위반과태료	2025-10	006668	1	220111-*******	주**** 카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 *자동차	2025-09-27 19:09	50,000	2025-10-14	2025-12-10	1078 8346 4641 7	2025-10-23	기타	제2025-445호	1	2025-11-06	2025-11-13	2025-11-26	28120	충청북도 청주시청 원구	()	6114357	운영총괄과	뚝섬한강공원 자양나들목 주변
71	10-2 88706	[시일반] 서울특별시 시한강공원 보전및 이용에관한 위반과태료	2025-10	006671	1	490424-*******	이*한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 *자동차	2025-09-28 21:27	50,000	2025-10-14	2025-12-10	1078 8346 4637 8	2025-10-24	기타	제2025-445호	1	2025-11-06	2025-11-13	2025-11-26	05707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이로	()	6114357	운영총괄과	뚝섬한강공원 제2축구장옆 주변

순번	세목 코드	세목명	적발 년월	사전통지 번호	반송 순번	주민/ 법인번호	성명/ 법인명	위반내용	위반 일시	부과 금액	사전 통지일	의견 제출 기한	등기 번호	반송 일자	반송 사유	공시송달 번호	공시 송달	공시 송달일	공시 시작일	공시 종료일	우편 번호	납세자 기본주소	납세자 상세 주소	부과코드	부서명	위반장소
72	10-2 88706	[시일반] 서울특별시 시한강공원 보전및 이용에관한 위반과태료	2025-10	007715	1	710223-*******	김*호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 **자동차	2025-09-11 09:42	50,000	2025-10-15	2025-12-10	1078 8346 4961 6	2025-10-27	폐문부재	제2025-445호	1	2025-11-06	2025-11-13	2025-11-26	10202	경기도고양시일산서구	(구산동)	6114357	운영총괄과	여의도 한강공원 내 서울항 주변
73	10-2 88706	[시일반] 서울특별시 시한강공원 보전및 이용에관한 위반과태료	2025-10	007717	1	771029-*******	이*원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 **이륜차	2025-09-13 17:16	50,000	2025-10-15	2025-12-10	1078 8346 4969 5	2025-10-27	기타	제2025-445호	1	2025-11-06	2025-11-13	2025-11-26	06076	서울특별시강남구영동대로138길	()	6114357	운영총괄과	여의도 한강공원 내 제1베 단뜬 주변
74	10-2 88706	[시일반] 서울특별시 시한강공원 보전및 이용에관한 위반과태료	2025-10	007726	1	811130-*******	박*수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 **자동차	2025-09-17 12:40	50,000	2025-10-15	2025-12-10	1078 8346 4965 9	2025-10-27	기타	제2025-445호	1	2025-11-06	2025-11-13	2025-11-26	14964	경기도시흥시월곶중앙로70번길	()	6114357	운영총괄과	여의도 한강공원 내 서울항 주변
75	10-2 88706	[시일반] 서울특별시 시한강공원 보전및 이용에관한 위반과태료	2025-10	007733	1	580520-*******	변*연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 **이륜차	2025-09-17 12:37	50,000	2025-10-15	2025-12-10	1078 8346 4970 0	2025-10-24	기타	제2025-445호	1	2025-11-06	2025-11-13	2025-11-26	06945	서울특별시동작구대방동17길	()	6114357	운영총괄과	여의도 한강공원 내 서울항 주변
76	10-2 88706	[시일반] 서울특별시 시한강공원 보전및 이용에관한 위반과태료	2025-10	007734	1	284911-*******	관**** 사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 **자동차	2025-09-17 12:39	50,000	2025-10-15	2025-12-10	1078 8346 4964 8	2025-10-20	수취인 불명	제2025-445호	1	2025-11-06	2025-11-13	2025-11-26	10884	경기도파주시안개초길	()	6114357	운영총괄과	여의도 한강공원 내 서울항 주변

순번	세목코드	세목명	적발년월	사전통지번호	반송순번	주민/법인번호	성명/법인명	위반내용	위반일시	부과금액	사전통지일	의견제출기한	등기번호	반송일자	반송사유	공시송달번호	공시송달	공시송달일	공시시작일	공시종료일	우편번호	납세자기본주소	납세자상세주소	부서코드	부서명	위반장소
77	10-2 88706	[시일반] 서울특별시 시한강공원 보전및 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25-10	007737	1	840127-*******	김*석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 **자동차	2025-09-17 15:14	50,000	2025-10-15	2025-12-10	1078 8346 4960 9	2025-10-24	기타	제2025-445호	1	2025-11-06	2025-11-13	2025-11-26	12138	경기도남양주시진건읍	()	6114357	운영총괄과	여의도 한강공원 이벤트 광장 주변
78	10-2 88706	[시일반] 서울특별시 시한강공원 보전및 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25-10	007741	1	861031-*******	김*대	지정된장소 외의장소에 서의주차행위 위 ********* **이륜차	2025-09-18 21:00	50,000	2025-10-15	2025-12-10	1078 8346 4970 3	2025-10-27	폐문부재	제2025-445호	1	2025-11-06	2025-11-13	2025-11-26	10383	경기도고양시일산서구	()	6114357	운영총괄과	망원한강공원 내제2 주차장 부근 보행로
79	10-2 88706	[시일반] 서울특별시 시한강공원 보전및 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25-10	007742	1	850520-*******	김*재	지정된장소 외의장소에 서의주차행위 위 ********* **이륜차	2025-09-19 21:40	50,000	2025-10-15	2025-12-10	1078 8346 4970 8	2025-10-24	기타	제2025-445호	1	2025-11-06	2025-11-13	2025-11-26	02821	서울특별시성북구 북악산로 1가길	()	6114357	운영총괄과	망원한강공원 내잠두봉교각 옆흡연구역 스
80	10-2 88706	[시일반] 서울특별시 시한강공원 보전및 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25-10	007743	1	971119-*******	정*성	지정된장소 외의장소에 서의주차행위 위 ********* **이륜차	2025-09-21 20:24	50,000	2025-10-15	2025-12-10	1078 8346 4970 6	2025-10-27	폐문부재	제2025-445호	1	2025-11-06	2025-11-13	2025-11-26	10082	경기도김포시청송로	()	6114357	운영총괄과	망원한강공원 내제3 주차장 부근

순번	세목 코드	세목명	적발 년월	사전통지 번호	반송 순번	주민/ 법인번호	성명/ 법인명	위반내용	위반 일시	부과 금액	사전 통지일	의견 제출 기한	등기 번호	반송 일자	반송 사유	공시송달 번호	공시 송달	공시 송달일	공시 시작일	공시 종료일	우편 번호	납세자 기본주소	납세자 상세 주소	부서코드	부서 명	위반장소
81	10-2 88706	[시일반] 서울특별시 시한강공원 보전및 이용에관한 조례 위반과태료	2025-10	007747	1	710503-*******	이*환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 **이륜차	2025-09-23 22:10	50,000	2025-10-15	2025-12-10	1078 8346 4970 4	2025-10-24	기타	제2025-445호	1	2025-11-06	2025-11-13	2025-11-26	04072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4길	()	6114357	운영관리과	망원한강공원 내 서울형 놀이터
82	10-2 88706	[시일반] 서울특별시 시한강공원 보전및 이용에관한 조례 위반과태료	2025-10	007748	1	991203-*******	문*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 **이륜차	2025-09-23 22:24	50,000	2025-10-15	2025-12-10	1078 8346 4970 5	2025-10-24	기타	제2025-445호	1	2025-11-06	2025-11-13	2025-11-26	31156	충남천안시서북구	()	6114357	운영관리과	망원한강공원 내 노을로 입구
83	10-2 88706	[시일반] 서울특별시 시한강공원 보전및 이용에관한 조례 위반과태료	2025-10	007749	1	161511-*******	주***** ****진안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 **자동차	2025-09-02 16:58	50,000	2025-10-15	2025-12-10	1078 8346 4961 8	2025-10-24	기타	제2025-445호	1	2025-11-06	2025-11-13	2025-11-26	31156	충남천안시서북구	()	6114357	운영관리과	여의도 한강공원 내 서울형 놀이터 주변
84	10-2 88706	[시일반] 서울특별시 시한강공원 보전및 이용에관한 조례 위반과태료	2025-10	007754	1	131411-*******	(주**** 경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 **자동차	2025-09-22 16:29	50,000	2025-10-15	2025-12-10	1078 8346 4963 3	2025-10-21	수취인 불명	제2025-445호	1	2025-11-06	2025-11-13	2025-11-26	15613	경기도안산시단원구	()	6114357	운영관리과	여의도 한강공원 내 성모병원 입구 주변

순번	세목 코드	세목명	적발 년월	사전통지 번호	반송 순번	주민/ 법인번호	성명/ 법인명	위반내용	위반 일시	부과 금액	사전 통지일	의견 제출 기한	등기 번호	반송 일자	반송 사유	공시송달 번호	공시 송달	공시 송달일	공시 시작일	공시 종료일	우편 번호	납세자 기본주소	납세자 상세 주소	부서코드	부서 명	위반장소
85	10-2 88706	[시일반] 서울특별시 시한강공원 보전및 이용에 관한 조례 위반과태료	2025-10	007759	1	680221-*******	이*방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 자동차	2025-09-25 09:10	50,000	2025-10-15	2025-12-10	1078 8346 4965 3	2025-10-24	기타	제2025-445호	1	2025-11-06	2025-11-13	2025-11-26	05576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18길	()	6114357	운영총괄과	여의도 한강공원 내 서울항 주변
86	10-2 88706	[시일반] 서울특별시 시한강공원 보전및 이용에 관한 조례 위반과태료	2025-10	007763	1	690730-*******	차*일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 자동차	2025-09-25 12:13	50,000	2025-10-15	2025-12-10	1078 8346 4968 0	2025-10-28	기타	제2025-445호	1	2025-11-06	2025-11-13	2025-11-26	10943	경기도파주시조리읍	()	6114357	운영총괄과	여의도 한강공원 내 서울항 주변
87	10-2 88706	[시일반] 서울특별시 시한강공원 보전및 이용에 관한 조례 위반과태료	2025-10	007764	1	7811021-*******	주*욱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 자동차	2025-09-25 12:14	50,000	2025-10-15	2025-12-10	1078 8346 4961 7	2025-10-27	폐문부재	제2025-445호	1	2025-11-06	2025-11-13	2025-11-26	10576	경기도고양시덕양구	()	6114357	운영총괄과	여의도 한강공원 내 서울항 주변
88	10-2 88706	[시일반] 서울특별시 시한강공원 보전및 이용에 관한 조례 위반과태료	2025-10	007765	1	560118-*******	김*수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 자동차	2025-09-25 12:18	50,000	2025-10-15	2025-12-10	1078 8346 4965 1	2025-10-24	기타	제2025-445호	1	2025-11-06	2025-11-13	2025-11-26	04738	서울특별시 서성동구 독서당로	()	6114357	운영총괄과	여의도 한강공원 내 서울항 주변
89	10-2 88706	[시일반] 서울특별시 시한강공원 보전및 이용에 관한 조례 위반과태료	2025-10	007771	1	670529-*******	노*식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 자동차	2025-09-25 15:09	50,000	2025-10-15	2025-12-10	1078 8346 4962 8	2025-10-24	기타	제2025-445호	1	2025-11-06	2025-11-13	2025-11-26	07643	서울특별시 강서구 수명로1길	()	6114357	운영총괄과	여의도 한강공원 내 서울항 주변

순번	세목코드	세목명칭	적발년월	사전통지번호	반송순번	주민/법인번호	성명/법인명칭	위반내용	위반일시	부과금액	사전통지일	의견제출기한	등기번호	반송일자	반송사유	공시송달번호	공시송달	공시송달일	공시시작일	공시종료일	우편번호	납세자기본주소	납세자상세주소	부서코드	부서명	위반장소
90	10-2 88706	[시일반] 서울특별시 시헌강공원 보전및 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25-10	007777	1	850211-*******	정*영	지정된장소 외의장소에서의주차행위 ***이륜차	2025-09-25 20:14	50,000	2025-10-15	2025-12-10	1078 8346 4971 8	2025-10-24	기타	제2025-445호	1	2025-11-06	2025-11-13	2025-11-26	07519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대로 49길	()	6114357	운영관리과	망원한강공원 내 제4주차장 입구주변
91	10-2 88706	[시일반] 서울특별시 시헌강공원 보전및 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25-10	007779	1	620910-*******	신*수	지정된장소 외의장소에서의주차행위 ***자동차	2025-09-27 09:37	50,000	2025-10-15	2025-12-10	1078 8346 4970 9	2025-10-27	기타	제2025-445호	1	2025-11-06	2025-11-13	2025-11-26	0724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54길	()	6114357	운영관리과	망원한강공원 내 봉원천교하 수단널 내진입
92	10-2 88706	[시일반] 서울특별시 시헌강공원 보전및 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25-10	007783	1	041120-*******	NG*** ***TU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이륜차	2025-09-26 00:44	50,000	2025-10-15	2025-12-10	1078 8346 4969 8	2025-10-24	기타	제2025-445호	1	2025-11-06	2025-11-13	2025-11-26	06926	서울특별시 동작구 만양로11길	()	6114357	운영관리과	여의도 한강공원 내 어라후 진입 보행로 주변
93	10-2 88706	[시일반] 서울특별시 시헌강공원 보전및 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25-10	007786	1	600419-*******	아*순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자동차	2025-09-26 14:15	50,000	2025-10-15	2025-12-10	1078 8346 4966 3	2025-10-24	기타	제2025-445호	1	2025-11-06	2025-11-13	2025-11-26	05317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중로33길	()	6114357	운영관리과	여의도 한강공원 내 안내센터 하부도로 주변

순번	세목 코드	세목명	적발 년월	사전통지 번호	반송 순번	주민/ 법인번호	성명/ 법인명	위반내용	위반 일시	부과 금액	사전 통지일	의견 제출 기한	등기 번호	반송 일자	반송 사유	공시송달 번호	공시 송달	공시 송달일	공시 시작일	공시 종료일	우편 번호	납세자 기본주소	납세자 상세 주소	부서코드	부서 명	위반장소
94	10-2 88706	[시일반] 서울특별시 시한강공원 보전및 이용에 관한 조례 위반과태료	2025-10	007791	1	920104-*******	이*규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자동차	2025-09-26 14:36	50,000	2025-10-15	2025-12-10	1078 8346 4962 3	2025-10-24	기타	제2025-445호	1	2025-11-06	2025-11-13	2025-11-26	08200	서울특별시 서구로구 신도림로 19길	()	6114357	운영총괄과	여의도 한강공원 내 서울하우스 크루즈 유람선 터미널 주변
95	10-2 88706	[시일반] 서울특별시 시한강공원 보전및 이용에 관한 조례 위반과태료	2025-10	007793	1	680221-*******	이*방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자동차	2025-09-26 14:39	50,000	2025-10-15	2025-12-10	1078 8346 4965 4	2025-10-24	기타	제2025-445호	1	2025-11-06	2025-11-13	2025-11-26	05576	서울특별시 서송파구 백제고분로18길	()	6114357	운영총괄과	여의도 한강공원 내 서울하우스 크루즈 유람선 터미널 주변
96	10-2 88706	[시일반] 서울특별시 시한강공원 보전및 이용에 관한 조례 위반과태료	2025-10	007795	1	610811-*******	전*식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자동차	2025-09-26 14:44	50,000	2025-10-15	2025-12-10	1078 8346 4969 3	2025-10-24	기타	제2025-445호	1	2025-11-06	2025-11-13	2025-11-26	03958	서울특별시 서마포구 월드컵로 25길	()	6114357	운영총괄과	여의도 한강공원 내 서울하우스 크루즈 유람선 터미널 주변

순번	세목 코드	세목명	적발 년월	사전통지 번호	반송 순번	주민/ 법인번호	성명/ 법인명	위반내용	위반 일시	부과 금액	사전 통지일	의견 제출 기한	등기 번호	반송 일자	반송 사유	공시송달 번호	공시 송달	공시 송달일	공시 시작일	공시 종료일	우편 번호	납세자 기본주소	납세자 상세 주소	부서코드	부서 명	위반장소
97	10-2 88706	[시일반]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및 이용에 관한 조례 위반과태료	2025-10	007796	1	760926-*******	김*덕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동차	2025-09-26 14:45	50,000	2025-10-15	2025-12-10	1078 8346 4968 1	2025-10-24	기타	제2025-445호	1	2025-11-06	2025-11-13	2025-11-26	02797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5길	()	6114357	여의도 한강공원 내 서울항 운영 총괄과	여의도 한강공원 내 서울항 크루즈 유람선 터미널 주변
98	10-2 88706	[시일반]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및 이용에 관한 조례 위반과태료	2025-10	007797	1	640715-*******	김*애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동차	2025-09-26 14:46	50,000	2025-10-15	2025-12-10	1078 8346 4967 8	2025-10-27	기타	제2025-445호	1	2025-11-06	2025-11-13	2025-11-26	10907	경기도 파주시 미래로	()	6114357	여의도 한강공원 내 서울항 운영 총괄과	여의도 한강공원 내 서울항 크루즈 유람선 터미널 주변
99	10-2 88706	[시일반]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및 이용에 관한 조례 위반과태료	2025-10	007801	1	681113-*******	주*규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동차	2025-09-26 22:57	50,000	2025-10-15	2025-12-10	1078 8346 4967 1	2025-10-24	기타	제2025-445호	1	2025-11-06	2025-11-13	2025-11-26	18101	경기도 오산시 양산로398번길	()	6114357	여의도 한강공원 내 서울항 운영 총괄과	여의도 한강공원 내 서울항 주변
100	10-2 88706	[시일반]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및 이용에 관한 조례 위반과태료	2025-10	007804	1	611205-*******	임*재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동차	2025-09-27 02:46	50,000	2025-10-15	2025-12-10	1078 8346 4965 8	2025-10-27	기타	제2025-445호	1	2025-11-06	2025-11-13	2025-11-26	48034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반연로 167번가길	()	6114357	여의도 한강공원 내 서울항 운영 총괄과	여의도 한강공원 내 쌔기적 환장 주변

순번	세목 코드	세목명	적발 년월	사전통지 번호	반송 순번	주민/ 법인번호	성명/ 법인명	위반내용	위반 일시	부과 금액	사전 통지일	의견 제출 기한	등기 번호	반송 일자	반송 사유	공시송달 번호	공시 송달	공시 송달일	공시 시작일	공시 종료일	우편 번호	납세자 기본주소	납세자 상세 주소	부서코드	부서 명	위반장소
101	10-2 88706	[시일반]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위반 과태료	2025-10	007808	1	600419-*******	이*순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 자동차	2025-09-27 10:24	50,000	2025-10-15	2025-12-10	1078 8346 4966 4	2025-10-24	기타	제2025-445호	1	2025-11-06	2025-11-13	2025-11-26	06317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중로33길	()	6114357	운영총괄과	여의도 한강공원 내 쓰레기 적환장 주변
102	10-2 88706	[시일반]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위반 과태료	2025-10	007809	1	531213-*******	소*섭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 자동차	2025-09-27 13:29	50,000	2025-10-15	2025-12-10	1078 8346 4968 6	2025-10-20	이사불 능	제2025-445호	1	2025-11-06	2025-11-13	2025-11-26	37242	경상북도 상주시로 남2길	()	6114357	운영총괄과	여의도 한강공원 내 제3주차장 무인정산기 주변
103	10-2 88706	[시일반]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위반 과태료	2025-10	007810	1	651112-*******	송*희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 자동차	2025-09-28 08:42	50,000	2025-10-15	2025-12-10	1078 8346 4964 9	2025-10-27	기타	제2025-445호	1	2025-11-06	2025-11-13	2025-11-26	22764	인천광역시 서구청로 라커낼로	()	6114357	운영총괄과	여의도 한강공원 내 마리나 입구 녹지 주변
104	10-2 88706	[시일반]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위반 과태료	2025-10	007811	1	671127-*******	김*만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 자동차	2025-09-29 09:16	50,000	2025-10-15	2025-12-10	1078 8346 4967 7	2025-10-20	주소불 명	제2025-445호	1	2025-11-06	2025-11-13	2025-11-26	13395	경기도성남시중원구	()	6114357	운영총괄과	여의도 한강공원 내 서울항 크루즈 유람선 터미널 주변

순번	세목 코드	세목명	적발 년월	사전통지 번호	반송 순번	주민/법인번호	성명/법인명	위반내용	위반 일시	부과 금액	사전 통지일	의견 제출 기한	등기 번호	반송 일자	반송 사유	공시송달 번호	공시 송달	공시 송달일	공시 시작일	공시 종료일	우편 번호	납세자 기본주소	납세자 상세 주소	부서코드	부서명	위반장소
105	10-2 88706	[시일반] 서울특별시 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과련 위반과태료	2025-10	007812	1	710131-*******	박*민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 자동차	2025-09-29 10:47	50,000	2025-10-15	2025-12-10	1078 8346 4964 4	2025-10-24	폐문부재	제2025-445호	1	2025-11-06	2025-11-13	2025-11-26	22007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	6114357	운영총괄과	여의도 한강공원 내 서울항 쥬변
106	10-2 88706	[시일반] 서울특별시 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과련 위반과태료	2025-10	007823	1	880128-*******	류*중	지정된장소 외의장소에 서의주차행위 ********** 이륜차	2025-10-03 19:19	50,000	2025-10-15	2025-12-10	1078 8346 4971 4	2025-10-28	폐문부재	제2025-445호	1	2025-11-06	2025-11-13	2025-11-26	10543	경기도고양시덕양구	()	6114357	운영총괄과	망원한강공원 내 네티니 스장주변
107	10-2 88706	[시일반] 서울특별시 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과련 위반과태료	2025-10	007830	1	000513-*******	BU*** ****NG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 이륜차	2025-10-01 18:35	50,000	2025-10-15	2025-12-10	1078 8346 4968 9	2025-10-27	기타	제2025-445호	1	2025-11-06	2025-11-13	2025-11-26	16221	경기도수원시장안구	()	6114357	운영총괄과	여의도 한강공원 내 멀티프라자 산책로 쥬변
108	10-2 88706	[시일반] 서울특별시 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과련 위반과태료	2025-10	007833	1	630802-*******	최*욱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 자동차	2025-10-02 14:38	50,000	2025-10-15	2025-12-10	1078 8346 4968 7	2025-10-23	기타	제2025-445호	1	2025-11-06	2025-11-13	2025-11-26	14291	경기도광명시광오로9번길	()	6114357	운영총괄과	여의도 한강공원 내 서울크루즈 쥬변

순번	세목 코드	세목명	적발 년월	사전통지 번호	반송 순번	주민/ 법인번호	성명/ 법인명	위반내용	위반 일시	부과 금액	사전 통지일	의견 제출 기한	등기 번호	반송 일자	반송 사유	공시송달 번호	공시 송달	공시 송달일	공시 시작일	공시 종료일	우편 번호	납세자 기본주소	납세자 상세 주소	부서코드	부서 명	위반장소
109	10-2 88706	[시일반] 서울특별시 시한강공원 보전및 이용에 관한 조례 위반과태료	2025-10	007835	1	761214-*******	정*영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 자동차	2025-10-03 08:55	50,000	2025-10-15	2025-12-10	1078 8346 4966 9	2025-10-28	기타	제2025-445호	1	2025-11-06	2025-11-13	2025-11-26	11120	경기도포천시일동면	()	6114357	운영총괄과	여의도 한강공원 내 서울크루즈 주변
110	10-2 88706	[시일반] 서울특별시 시한강공원 보전및 이용에 관한 조례 위반과태료	2025-10	007841	1	660301-*******	최*천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 자동차	2025-10-07 16:55	50,000	2025-10-15	2025-12-10	1078 8346 4960 4	2025-10-27	기타	제2025-445호	1	2025-11-06	2025-11-13	2025-11-26	10867	경기도파주시동패동길	()	6114357	운영총괄과	여의도 한강공원 내 서울크루즈 주변
111	10-2 88706	[시일반] 서울특별시 시한강공원 보전및 이용에 관한 조례 위반과태료	2025-10	008010	1	760926-*******	조*현	지정된장소 외의장소에서의주차행위 ********** 이륜차	2025-09-26 14:41	50,000	2025-10-15	2025-12-10	1078 8346 6520 6	2025-10-30	폐문부재	제2025-445호	1	2025-11-06	2025-11-13	2025-11-26	10240	경기도고양시일산서구	806동 401호 (탄현동, 탄현마을)	6114357	운영총괄과	맘원한 강공원 내 네슬로 프진출로	로변
112	10-2 88706	[시일반] 서울특별시 시한강공원 보전및 이용에 관한 조례 위반과태료	2025-10	008018	1	900228-*******	이***	지정된장소 외의장소에서의 주차행위** ********** 자동차	2025-09-27 18:41	50,000	2025-10-16	2025-12-10	1078 8346 5654 8	2025-10-27	기타	제2025-445호	1	2025-11-06	2025-11-13	2025-11-26	12284	경기도남양주시다산지금로 146번길	7409동 2404호 (다산동, 다산한강 반도유보라)	6114357	운영총괄과	잠실한 강공원 내 잠실대교 하부 주변(2 58라5 931)자동차	로변

순번	세목 코드	세목명	적발 년월	사전통지 번호	반송 순번	주민/ 법인번호	성명/ 법인명	위반내용	위반 일시	부과 금액	사전 통지일	의견 제출 기한	등기 번호	반송 일자	반송 사유	공시송달 번호	공시 송달	공시 송달일	공시 시작일	공시 종료일	우편 번호	납세자 기본주소	납세자 상세 주소	부서코드	부서 명	위반장소
113	10-2 88706	[시일반] 서울특별 시한강공 원보전및 이용관련 위반과태 료	2025-10	008026	1	134211-*******	리***회사	지정된장소 외의장소에 서의 주차행위* ********* *자동차	2025-10-09 16:28	50,000	2025-10-16	2025-12-10	1078 8346 5622 0	2025-10-28	폐문부재	제2025-445호	1	2025-11-06	2025-11-13	2025-11-26	12760	경기도광주시경안로41번길	104호 (경안동)	6114357	운영총괄과	잠실한강공원 내 잠실대교하부 화장실 주변(153서5212)자동차
114	10-2 88706	[시일반] 서울특별 시한강공 원보전및 이용관련 위반과태 료	2025-10	008028	1	830521-*******	손*주	지정된장소 외의장소에 서의 주차행위* ********* *자동차	2025-09-20 20:25	50,000	2025-10-16	2025-12-10	1078 8346 5654 4	2025-10-28	기타	제2025-445호	1	2025-11-06	2025-11-13	2025-11-26	06610	서울특별시송파구송파대로	302호 (석촌동)	6114357	운영총괄과	잠실한강공원 잠실대교하부 화전교 차로 주변(125하2442)자동차
115	10-2 88706	[시일반] 서울특별 시한강공 원보전및 이용관련 위반과태 료	2025-10	008032	1	941017-*******	김*헌	지정된장소 외의장소에 서의 주차행위* ********* *자동차	2025-10-15 02:38	50,000	2025-10-17	2025-12-10	1078 8346 6174 1	2025-10-29	기타	제2025-445호	1	2025-11-06	2025-11-13	2025-11-26	06202	서울특별시강남구삼성로67길	101동 403호 (대치동)	6114357	운영총괄과	잠실한강공원 내 청소년 광장 주변(221버30511)자동차

순번	세목코드	세목명	적발년월	사전통지번호	반송순번	주민/법인번호	성명/법인명	위반내용	위반일시	부과금액	사전통지일	의견제출기한	등기번호	반송일자	반송사유	공시송달번호	공시송달	공시송달일	공시시작일	공시종료일	우편번호	납세자기본주소	납세자상세주소	부서코드	부서명	위반장소
116	10-2 88706	[시일반] 서울특별시 시한강공원보전및 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25-10	008206	1	570910-*******	박*순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 *자동차	2025-09-21 16:04	50,000	2025-10-17	2025-12-10	1078 8346 6175 9	2025-10-28	기타	제2025-445호	1	2025-11-06	2025-11-13	2025-11-26	14348	경기도광명시일직로72,	()	6114357	운송과	난지한강공원 내 난지캠핑장 주변녹지
117	10-2 88706	[시일반] 서울특별시 시한강공원보전및 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25-10	008207	1	690820-*******	고*두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 *자동차	2025-09-13 12:46	50,000	2025-10-17	2025-12-10	1078 8346 6172 7	2025-10-29	폐문부재	제2025-445호	1	2025-11-06	2025-11-13	2025-11-26	21902	인천광역시연수구청학로	()	6114357	운송과	난지한강공원 내 제3주차장 앞 보행로
118	10-2 88706	[시일반] 서울특별시 시한강공원보전및 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25-10	008218	1	781103-*******	양*철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 *이륜차	2025-09-24 04:59	50,000	2025-10-17	2025-12-10	1078 8346 6178 6	2025-10-29	폐문부재	제2025-445호	1	2025-11-06	2025-11-13	2025-11-26	04329	서울특별시용산구두텁바위로61길	()	6114357	운송과	반포한강공원 내 달빛광장1 주변
119	10-2 88706	[시일반] 서울특별시 시한강공원보전및 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25-10	008219	1	600820-*******	김*주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 *자동차	2025-09-25 08:42	50,000	2025-10-17	2025-12-10	1078 8346 6173 6	2025-10-29	기타	제2025-445호	1	2025-11-06	2025-11-13	2025-11-26	05383	서울특별시강동구천호대로1687길	()	6114357	운송과	반포한강공원 내 예빛섬 주변

순번	제목 코드	제목	적발 년월	사전통지 번호	반송 순번	주민/법인번호	성명/법인명	위반내용	위반 일시	부과 금액	사전 통지일	의견 제출 기한	등기 번호	반송 일자	반송 사유	공시송달 번호	공시 송달	공시 송달일	공시 시작일	공시 종료일	우편 번호	납세자 기본주소	납세자 상세주소	부서코드	부서명	위반장소
120	10-2 88706	[시일반] 서울특별시 시헌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25-10	008220	1	681105-*******	이*원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 *자동차	2025-09-25 08:48	50,000	2025-10-17	2025-12-10	1078 8346 6179 8	2025-10-29	폐문부재	제2025-445호	1	2025-11-06	2025-11-13	2025-11-26	11520	경기도양주시장흥면	()	6114357	운영총괄과	반포한강공원 내 예빛섬 쥐변
121	10-2 88706	[시일반] 서울특별시 시헌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25-10	008222	1	910414-*******	박*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 *이륜차	2025-09-26 15:30	50,000	2025-10-17	2025-12-10	1078 8346 6176 3	2025-10-29	폐문부재	제2025-445호	1	2025-11-06	2025-11-13	2025-11-26	04346	서울특별시 용산구 회나무로 28길	()	6114357	운영총괄과	반포한강공원 내 잠수교 쥐변
122	10-2 88706	[시일반] 서울특별시 시헌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25-10	008227	1	930119-*******	WA*** ***AO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 *이륜차	2025-09-26 23:24	50,000	2025-10-17	2025-12-10	1078 8346 6172 3	2025-10-28	기타	제2025-445호	1	2025-11-06	2025-11-13	2025-11-26	03747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22나길	()	6114357	운영총괄과	반포한강공원 내 제2주차장 쥐변
123	10-2 88706	[시일반] 서울특별시 시헌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25-10	008229	1	630202-*******	박*영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 *자동차	2025-09-27 19:20	50,000	2025-10-17	2025-12-10	1078 8346 6175 8	2025-10-29	기타	제2025-445호	1	2025-11-06	2025-11-13	2025-11-26	05767	서울특별시 송파구 거마로	()	6114357	운영총괄과	난지한강공원 내 거울문수 쥐변 보행로

순번	세목 코드	세목명	적발 년월	사전통지 번호	반송 순번	주민/ 법인번호	성명/ 법인명	위반내용	위반 일시	부과 금액	사전 통지일	의견 제출 기한	등기 번호	반송 일자	반송 사유	공시송달 번호	공시 송달	공시 송달일	공시 시작일	공시 종료일	우편 번호	납세자 기본주소	납세자 상세 주소	부서코드	부서 명	위반장소
124	10-2 88706	[시일반]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및 이용에 관한 조례 위반과태료	2025-10	008237	1	821203-*******	박*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 *자동차	2025-09-27 14:00	50,000	2025-10-17	2025-12-10	1078 8346 6175 2	2025-10-28	기타	제2025-445호	1	2025-11-06	2025-11-13	2025-11-26	07798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서1로	()	6114357	운영관리과	난지한강공원 내 허늘다리 주변(버스진입로)
125	10-2 88706	[시일반]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및 이용에 관한 조례 위반과태료	2025-10	008239	1	860604-*******	함*모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 *자동차	2025-09-27 14:03	50,000	2025-10-17	2025-12-10	1078 8346 6183 9	2025-10-29	기타	제2025-445호	1	2025-11-06	2025-11-13	2025-11-26	0371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가재울미래로	()	6114357	운영관리과	난지한강공원 내 제2주차장 옆 보행로
126	10-2 88706	[시일반]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및 이용에 관한 조례 위반과태료	2025-10	008245	1	851101-*******	이*영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 *자동차	2025-09-27 14:10	50,000	2025-10-17	2025-12-10	1078 8346 6179 9	2025-10-28	기타	제2025-445호	1	2025-11-06	2025-11-13	2025-11-26	22188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오정공원로83번길	()	6114357	운영관리과	난지한강공원 내 제2주차장 옆 보행로
127	10-2 88706	[시일반]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및 이용에 관한 조례 위반과태료	2025-10	008246	1	980221-*******	강*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 *자동차	2025-09-27 14:10	50,000	2025-10-17	2025-12-10	1078 8346 6172 6	2025-10-28	기타	제2025-445호	1	2025-11-06	2025-11-13	2025-11-26	31110	충청남도 천안시서북구	()	6114357	운영관리과	난지한강공원 내 제2주차장 옆 보행로

순번	세목 코드	세목명	적발 년월	사전통지 번호	반송 순번	주민/ 법인번호	성명/ 법인명	위반내용	위반 일시	부과 금액	사전 통지일	의견 제출 기한	등기 번호	반송 일자	반송 사유	공시송달 번호	공시 송달	공시 송달일	공시 시작일	공시 종료일	우편 번호	납세자 기본주소	납세자 상세 주소	부서코드	부서 명	위반장소
128	10-2 88706	[시일반]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위반 과태료	2025-10	008248	1	930514-*******	박*인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 *이륜차	2025-09-27 09:57	50,000	2025-10-17	2025-12-10	1078 8346 6176 4	2025-10-30	기타	제2025-445호	1	2025-11-06	2025-11-13	2025-11-26	11438	경기도 양주시 회천중앙로	()	6114357	운영총괄과	반포한강공원 내 2주차장 주변 보도
129	10-2 88706	[시일반]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위반 과태료	2025-10	008265	1	810330-*******	신*우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 *자동차	2025-09-28 13:14	50,000	2025-10-17	2025-12-10	1078 8346 6178 2	2025-10-30	기타	제2025-445호	1	2025-11-06	2025-11-13	2025-11-26	16687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	6114357	운영총괄과	반포한강공원 내 세빛섬 주변
130	10-2 88706	[시일반]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위반 과태료	2025-10	008267	1	850419-*******	서*섭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 *이륜차	2025-09-28 17:13	50,000	2025-10-17	2025-12-10	1078 8346 6177 3	2025-10-29	기타	제2025-445호	1	2025-11-06	2025-11-13	2025-11-26	0731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로 60길	()	6114357	운영총괄과	반포한강공원 내 달빛광장 2주변
131	10-2 88706	[시일반]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위반 과태료	2025-10	008270	1	920321-*******	박*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 *자동차	2025-09-28 18:12	50,000	2025-10-17	2025-12-10	1078 8346 6175 7	2025-10-29	기타	제2025-445호	1	2025-11-06	2025-11-13	2025-11-26	14534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	6114357	운영총괄과	반포한강공원 내 2주차장 주변

순번	세목 코드	세목명	적발 년월	사전통지 번호	반송 신번	주민/ 법인번호	성명/ 법인명	위반내용	위반 일시	부과 금액	사전 통지일	의견 제출 기한	등기 번호	반송 일자	반송 사유	공시송달 번호	공시 송달	공시 송달일	공시 시작일	공시 종료일	우편 번호	납세자 기본주소	납세자 상세 주소	부서코드	부서 명	위반장소
132	10-2 88706	[시일반]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및 이용에 관한 조례 위반 과태료	2025-10	008278	1	600320-*******	이*준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 *이륜차	2025-09-28 19:34	50,000	2025-10-17	2025-12-10	1078 8346 6180 2	2025-10-29	기타	제2025-445호	1	2025-11-06	2025-11-13	2025-11-26	08852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단지 7길	()	6114357	운송과	반포한강공원 내 제2주차장 주변 보도
133	10-2 88706	[시일반]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및 이용에 관한 조례 위반 과태료	2025-10	008280	1	860520-*******	최*규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 *자동차	2025-09-28 19:35	50,000	2025-10-17	2025-12-10	1078 8346 6182 5	2025-10-28	기타	제2025-445호	1	2025-11-06	2025-11-13	2025-11-26	06693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천로 29길	()	6114357	운송과	반포한강공원 내 제2주차장 주변 보도
134	10-2 88706	[시일반]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및 이용에 관한 조례 위반 과태료	2025-10	008282	1	970410-*******	서*규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 *자동차	2025-09-28 19:41	50,000	2025-10-17	2025-12-10	1078 8346 6177 2	2025-10-29	기타	제2025-445호	1	2025-11-06	2025-11-13	2025-11-26	17772	경기도 평택시 청북로 27번길	()	6114357	운송과	반포한강공원 내 제2주차장 주변
135	10-2 88706	[시일반]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및 이용에 관한 조례 위반 과태료	2025-10	008284	1	810330-*******	신*우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 *자동차	2025-09-29 04:39	50,000	2025-10-17	2025-12-10	1078 8346 6178 3	2025-10-30	기타	제2025-445호	1	2025-11-06	2025-11-13	2025-11-26	16687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	6114357	운송과	반포한강공원 내 세빛섬 해치카 승강장 주변

순번	제목 코드	제목	적발 년월	사전통지 번호	반송 순번	주민/법인번호	성명/법인명	위반내용	위반 일시	부과 금액	사전 통지일	의견 제출 기한	등기 번호	반송 일자	반송 사유	공시송달 번호	공시 송달	공시 송달일	공시 시작일	공시 종료일	우편 번호	납세자 기본주소	납세자 상세 주소	부서코드	부서 명	위반장소
136	10-2 88706	[시일반] 서울특별시 시한강공원 보전및 이용에관한 조례 위반과태료	2025-10	008287	1	010731-********	CA***** *****NG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 *이륜차	2025-09-29 20:48	50,000	2025-10-17	2025-12-10	1078 8346 6171 6	2025-10-28	기타	제2025-445호	1	2025-11-06	2025-11-13	2025-11-26	02459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로 12길	()	6114357	운영총괄과	반포한강공원 내 잠수교 주변
137	10-2 88706	[시일반] 서울특별시 시한강공원 보전및 이용에관한 조례 위반과태료	2025-10	008288	1	920811-********	KI***** ******C ****H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 *자동차	2025-09-29 22:08	50,000	2025-10-17	2025-12-10	1078 8346 6171 8	2025-10-29	폐문부재	제2025-445호	1	2025-11-06	2025-11-13	2025-11-26	15229	경기도안산시단원구	()	6114357	운영총괄과	반포한강공원 내 달빛광장2 주변
138	10-2 88706	[시일반] 서울특별시 시한강공원 보전및 이용에관한 조례 위반과태료	2025-10	008291	1	970612-********	최*규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 *이륜차	2025-09-30 14:31	50,000	2025-10-17	2025-12-10	1078 8346 6183 0	2025-10-29	폐문부재	제2025-445호	1	2025-11-06	2025-11-13	2025-11-26	03481	서울특별시 서초구 가좌로7 가길	()	6114357	운영총괄과	반포한강공원 내 달빛광장1 주변
139	10-2 88706	[시일반] 서울특별시 시한강공원 보전및 이용에관한 조례 위반과태료	2025-10	008300	1	860829-********	성*한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 *자동차	2025-10-08 16:25	50,000	2025-10-17	2025-12-10	1078 8346 6177 4	2025-10-28	기타	제2025-445호	1	2025-11-06	2025-11-13	2025-11-26	0370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수색로	()	6114357	운영총괄과	난지한강공원 내 제2주차장 옆 보행로

순번	제목 코드	세목명	적발 년월	사전통지 번호	반송 순번	주민/ 법인번호	성명/ 법인명	위반내용	위반 일시	부과 금액	사전 통지일	의견 제출 기한	등기 번호	반송 일자	반송 사유	공시송달 번호	공시 송달	공시 송달일	공시 시작일	공시 종료일	우편 번호	납세자 기본주소	납세자 상세 주소	부서코드	부서명	위반장소
140	10-2 88706	[시일반] 서울특별시 시한강공원 보전및 이용에관한 조례 위반과태료	2025-10	008305	1	781214-*******	강*웅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 *이륜차	2025-10-01 13:54	50,000	2025-10-17	2025-12-10	1078 8346 6172 5	2025-10-29	기타	제2025-445호	1	2025-11-06	2025-11-13	2025-11-26	06076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138길	()	6114357	공원녹지과	반포한강공원 내 서래섬 입구 주변
141	10-2 88706	[시일반] 서울특별시 시한강공원 보전및 이용에관한 조례 위반과태료	2025-10	008308	1	960719-*******	김*범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 *이륜차	2025-10-01 23:14	50,000	2025-10-17	2025-12-10	1078 8346 6173 3	2025-10-29	폐문부재	제2025-445호	1	2025-11-06	2025-11-13	2025-11-26	04337	서울특별시 서용산구 신흥로	()	6114357	공원녹지과	반포한강공원 달빛광장2 주변
142	10-2 88706	[시일반] 서울특별시 시한강공원 보전및 이용에관한 조례 위반과태료	2025-10	008314	1	880716-*******	유*재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 *이륜차	2025-10-02 22:49	50,000	2025-10-17	2025-12-10	1078 8346 6179 3	2025-10-29	폐문부재	제2025-445호	1	2025-11-06	2025-11-13	2025-11-26	04327	서울특별시 서용산구 후암로34 길	()	6114357	공원녹지과	반포한강공원 내 2달빛광장 주변
143	10-2 88706	[시일반] 서울특별시 시한강공원 보전및 이용에관한 조례 위반과태료	2025-10	008315	1	850725-*******	김*휘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 *자동차	2025-10-03 02:33	50,000	2025-10-17	2025-12-10	1078 8346 6173 7	2025-10-29	기타	제2025-445호	1	2025-11-06	2025-11-13	2025-11-26	06051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31 길	()	6114357	공원녹지과	반포한강공원 내 반포안내센터 앞 주변

순번	세목 코드	세목명	적발 년월	사전통지 번호	반송 순번	주민/ 법인번호	성명/ 법인명	위반내용	위반 일시	부과 금액	사전 통지일	의견 제출 기한	등기 번호	반송 일자	반송 사유	공시송달 번호	공시 송달	공시 송달일	공시 시작일	공시 종료일	우편 번호	납세자 기본주소	납세자 상세 주소	부서코드	부서 명	위반장소
144	10-2 88706	[시일반] 서울특별시 시한강공원 보전및 이용에관한 조례 위반과태료	2025-10	008317	1	971213-*******	김*우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 *이륜차	2025-10-03 14:12	50,000	2025-10-17	2025-12-10	1078 8346 6174 4	2025-10-29	폐문부재	제2025-445호	1	2025-11-06	2025-11-13	2025-11-26	04338	서울특별시 용산구 신흥로11길	()	6114357	운영총괄과	반포한강공원 내 더리버 슬로프 주변
145	10-2 88706	[시일반] 서울특별시 시한강공원 보전및 이용에관한 조례 위반과태료	2025-10	008320	1	840106-*******	천*범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 *이륜차	2025-10-04 14:43	50,000	2025-10-17	2025-12-10	1078 8346 6182 4	2025-10-29	폐문부재	제2025-445호	1	2025-11-06	2025-11-13	2025-11-26	33166	충청남도 부여군부여읍	()	6114357	운영총괄과	반포한강공원 내 잠수교 주변
146	10-2 88706	[시일반] 서울특별시 시한강공원 보전및 이용에관한 조례 위반과태료	2025-10	008321	1	930809-*******	박*연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 *이륜차	2025-10-04 19:24	50,000	2025-10-17	2025-12-10	1078 8346 6176 0	2025-10-28	기타	제2025-445호	1	2025-11-06	2025-11-13	2025-11-26	48295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60 0번길	()	6114357	운영총괄과	반포한강공원 내 잠수교 주변
147	10-2 88706	[시일반] 서울특별시 시한강공원 보전및 이용에관한 조례 위반과태료	2025-10	008327	1	110111-*******	주**** ***엠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 *자동차	2025-10-08 09:11	50,000	2025-10-17	2025-12-10	1078 8346 6181 5	2025-10-29	기타	제2025-445호	1	2025-11-06	2025-11-13	2025-11-26	0870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난곡로	()	6114357	운영총괄과	반포한강공원 내 슬로프 주변
148	10-2 88706	[시일반] 서울특별시 시한강공원 보전및 이용에관한 조례 위반과태료	2025-10	008328	1	840409-*******	SP***** ****** ****** EN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 *이륜차	2025-10-08 16:46	50,000	2025-10-17	2025-12-10	1078 8346 6172 1	2025-10-29	기타	제2025-445호	1	2025-11-06	2025-11-13	2025-11-26	02713	서울특별시 서성북구 서경로20 길	()	6114357	운영총괄과	반포한강공원 내 서래3교 주변

순번	제목 코드	세목명	적발 년월	사전통지 번호	반송 순번	주민/ 법인번호	성명/ 법인명	위반내용	위반 일시	부과 금액	사전 통지일	의견 제출 기한	등기 번호	반송 일자	반송 사유	공시송달 번호	공시 송달	공시 송달일	공시 시작일	공시 종료일	우편 번호	납세자 기본주소	납세자 상세 주소	부서코드	부서 명	위반장소
149	10-2 88706	[시일반] 서울특별시 시한강공원 보전및 이용에 관한 조례 위반 과태료	2025-10	008330	1	950203-*******	김*주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 *이륜차	2025-10-08 17:13	50,000	2025-10-17	2025-12-10	1078 8346 6174 6	2025-10-23	주소불명	제2025-445호	1	2025-11-06	2025-11-13	2025-11-26	06542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	6114357	운영총괄과	반포한강공원 내 달빛광장1 주변
150	10-2 88706	[시일반] 서울특별시 시한강공원 보전및 이용에 관한 조례 위반 과태료	2025-10	008331	1	920217-*******	변*수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 *이륜차	2025-10-08 18:10	50,000	2025-10-17	2025-12-10	1078 8346 6176 8	2025-10-30	폐문부재	제2025-445호	1	2025-11-06	2025-11-13	2025-11-26	12604	경기도여주시금사면	()	6114357	운영총괄과	반포한강공원 내 더리버 주변
151	10-2 88706	[시일반] 서울특별시 시한강공원 보전및 이용에 관한 조례 위반 과태료	2025-10	008332	1	490801-*******	이*순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 *이륜차	2025-10-08 22:56	50,000	2025-10-17	2025-12-10	1078 8346 6180 6	2025-10-29	기타	제2025-445호	1	2025-11-06	2025-11-13	2025-11-26	21103	인천광역시계양구 효서로	()	6114357	운영총괄과	반포한강공원 내 달빛광장1 주변
152	10-2 88706	[시일반] 서울특별시 시한강공원 보전및 이용에 관한 조례 위반 과태료	2025-10	008334	1	740206-*******	이*욱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 *이륜차	2025-10-09 14:58	50,000	2025-10-17	2025-12-10	1078 8346 6179 7	2025-10-30	폐문부재	제2025-445호	1	2025-11-06	2025-11-13	2025-11-26	10129	경기도김포시고촌읍	()	6114357	운영총괄과	반포한강공원 내 잠수교 주변
153	10-2 88706	[시일반] 서울특별시 시한강공원 보전및 이용에 관한 조례 위반 과태료	2025-10	008336	1	750405-*******	김*민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 *이륜차	2025-10-11 20:11	50,000	2025-10-17	2025-12-10	1078 8346 6173 1	2025-10-29	폐문부재	제2025-445호	1	2025-11-06	2025-11-13	2025-11-26	04414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광로	(보광동)	6114357	운영총괄과	반포한강공원 내 잠수교 주변

순번	세목 코드	세목명	적발 년월	사전통지 번호	반송 순번	주민/ 법인번호	성명/ 법인명	위반내용	위반 일시	부과 금액	사전 통지일	의견 제출 기한	등기 번호	반송 일자	반송 사유	공시송달 번호	공시 송달	공시 송달일	공시 시작일	공시 종료일	우편 번호	납세자 기본주소	납세자 상세 주소	부서코드	부서 명	위반장소
154	10-2 88706	[시일반]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및 이용에 관한 조례 위반 과태료	2025-10	008348	1	990917-*******	김*성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 *자동차	2025-10-12 17:43	50,000	2025-10-17	2025-12-10	1078 8346 6174 2	2025-10-29	기타	제2025-445호	1	2025-11-06	2025-11-13	2025-11-26	0744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디지털로52길	()	6114357	영등포 공원녹지과	반포한강공원 내 제2주차장화장실 주변
155	10-2 88706	[시일반]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및 이용에 관한 조례 위반 과태료	2025-10	008353	1	780730-*******	손*민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 *이륜차	2025-10-12 18:34	50,000	2025-10-17	2025-12-10	1078 8346 6177 5	2025-10-29	기타	제2025-445호	1	2025-11-06	2025-11-13	2025-11-26	08619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96길	()	6114357	영등포 공원녹지과	반포한강공원 내 제2주차장 화장실 주변
156	10-2 88706	[시일반]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및 이용에 관한 조례 위반 과태료	2025-10	008355	1	951212-*******	정*균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 *이륜차	2025-10-12 19:40	50,000	2025-10-17	2025-12-10	1078 8346 6181 1	2025-10-23	이사불명	제2025-445호	1	2025-11-06	2025-11-13	2025-11-26	08753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포로70길	()	6114357	영등포 공원녹지과	반포한강공원 내 제2주차장 버스승강장 주변
157	10-2 88706	[시일반]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및 이용에 관한 조례 위반 과태료	2025-10	008361	1	880118-*******	박*수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 *자동차	2025-09-20 13:47	50,000	2025-10-17	2025-12-10	1078 8346 6176 5	2025-10-28	기타	제2025-445호	1	2025-11-06	2025-11-13	2025-11-26	12284	경기도남양주시다산지금로 123번길	()	6114357	영등포 공원녹지과	반포한강공원 내 세빛섬 주변

순번	세목 코드	세목명	적발 년월	사전통지 번호	반송 순번	주민/ 법인번호	성명/ 법인명	위반내용	위반 일시	부과 금액	사전 통지일	의견 제출 기한	등기 번호	반송 일자	반송 사유	공시송달 번호	공시 송달	공시 송달일	공시 시작일	공시 종료일	우편 번호	납세자 기본주소	납세자 상세 주소	부서코드	부서 명	위반장소
158	10-2 88706	[시일반] 서울특별시 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에관한 위반과태료	2025-10	008362	1	720505-*******	이*일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 *자동차	2025-09-21 11:28	50,000	2025-10-17	2025-12-10	1078 8346 6180 5	2025-10-30	폐문부재	제2025-445호	1	2025-11-06	2025-11-13	2025-11-26	10551	경기도고양시덕양구	()	6114357	운영총괄과	난지한강공원 내 3주차장 주변
159	10-2 88706	[시일반] 서울특별시 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에관한 위반과태료	2025-10	008363	1	860215-*******	하*민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 *이륜차	2025-09-20 19:32	50,000	2025-10-17	2025-12-10	1078 8346 6183 8	2025-10-29	기타	제2025-445호	1	2025-11-06	2025-11-13	2025-11-26	08767	서울특별시관악구조원로18길	()	6114357	운영총괄과	반포한강공원 내 잠수교 주변
160	10-2 88706	[시일반] 서울특별시 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에관한 위반과태료	2025-10	008364	1	790508-*******	고*영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 *자동차	2025-09-18 08:52	50,000	2025-10-17	2025-12-10	1078 8346 6172 9	2025-10-28	기타	제2025-445호	1	2025-11-06	2025-11-13	2025-11-26	0378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연희로 4길	()	6114357	운영총괄과	난지한강공원 내 길대바람길 입구 보행로
161	10-2 88706	[시일반] 서울특별시 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에관한 위반과태료	2025-10	008365	1	600809-*******	자*희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 *자동차	2025-09-18 22:58	50,000	2025-10-17	2025-12-10	1078 8346 6182 2	2025-10-28	기타	제2025-445호	1	2025-11-06	2025-11-13	2025-11-26	22172	인천광역시미추홀구미추로	()	6114357	운영총괄과	반포한강공원 내 흑석초교 주변

순번	세목 코드	세목명	적발 년월	사전통지 번호	반송 순번	주민/ 법인번호	성명/ 법인명	위반내용	위반 일시	부과 금액	사전 통지일	의견 제출 기한	등기 번호	반송 일자	반송 사유	공시송달 번호	공시 송달	공시 송달일	공시 시작일	공시 종료일	우편 번호	납세자 기본주소	납세자 상세 주소	부서코드	부서 명	위반장소
162	10-2 88706	[시일반] 서울특별시 시한강공원보전및 이용에관한 조례 위반과태료	2025-10	008366	1	820210-*******	김*광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 *이륜차	2025-09-16 22:41	50,000	2025-10-17	2025-12-10	1078 8346 6173 5	2025-10-22	수취인 불명	제2025-445호	1	2025-11-06	2025-11-13	2025-11-26	12450	경기도가평군청평면	()	6114357	운영총괄과	반포한강공원 내 반포안내센터 앞 주변
163	10-2 88706	[시일반] 서울특별시 시한강공원보전및 이용에관한 조례 위반과태료	2025-10	008374	1	950815-*******	SU***** ****** *****AL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 *자동차	2025-09-23 16:20	50,000	2025-10-17	2025-12-10	1078 8346 6172 2	2025-10-30	기타	제2025-445호	1	2025-11-06	2025-11-13	2025-11-26	16606	경기도수원시권선구	()	6114357	운영총괄과	난지한강공원 내 잘음의 광장 보행로

기관의 장
선람

공람									

발행인 서울특별시장 편집인 홍보기획관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 02-2133-6455 문의 : ☎120